

■ 2021년도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

신기술보급사업(총괄)

신기술보급사업(총괄)

▶ 이 사업지침(총괄)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분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농촌자원과, 재해대응과, 식량산업기술팀)	기 회 (총 괄)	농촌지도관 안정구 농촌지도사 김창수	063-238-0971 063-238-0972
		식량산업	농촌지도관 강석주 농촌지도관 최윤희 농촌지도관 정병진 농촌지도사 노석원 농촌지도사 전영삼	063-238-1496 063-238-1499 063-238-1501 063-238-1497 063-238-1508
		원예특작, 기초기반	농촌지도관 고인배 농촌지도관 김대성 농촌지도관 김기형 농촌지도관 장정희 농촌지도관 이수미 농촌지도관 박찬순 농촌지도사 차지은 농촌지도사 박환규 농촌지도사 김현철 농촌지도사 배선아 농촌지도사 정성욱 농촌지도사 홍송원 농촌지도사 임은성	063-238-0976 063-238-0980 063-238-0981 063-238-1011 063-238-1016 063-238-1021 063-238-0979 063-238-0977 063-238-0986 063-238-0987 063-238-1012 063-238-1028 063-238-1017
		축 산	농촌지도관 박현경 농촌지도사 이병철	063-238-1041 063-238-1042

1. 사업개요

□ 목적

- 시험연구결과 개발된 신기술에 대한 농가 실증시범사업비 지원으로 새로운 농사기술의 신속한 확산
- 신기술 실증시범 사업장을 인근농가에 새기술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농가 기술수준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증진

□ 추진방향

- 농업R&D 사업과 연계한 현장 맞춤형 특성화 사업 기반조성
- 안전 농축산물 생산과 친환경농업 기술시범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

- 농산물 소비자의 기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시범사업 추진
- 단계별 연시회, 평가회 등을 통한 농업인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 농촌진흥법 제17조(농촌지도사업의 평가)
- 농촌진흥법 제25조2항(정부의 재정적 지원)

□ 연도별 추진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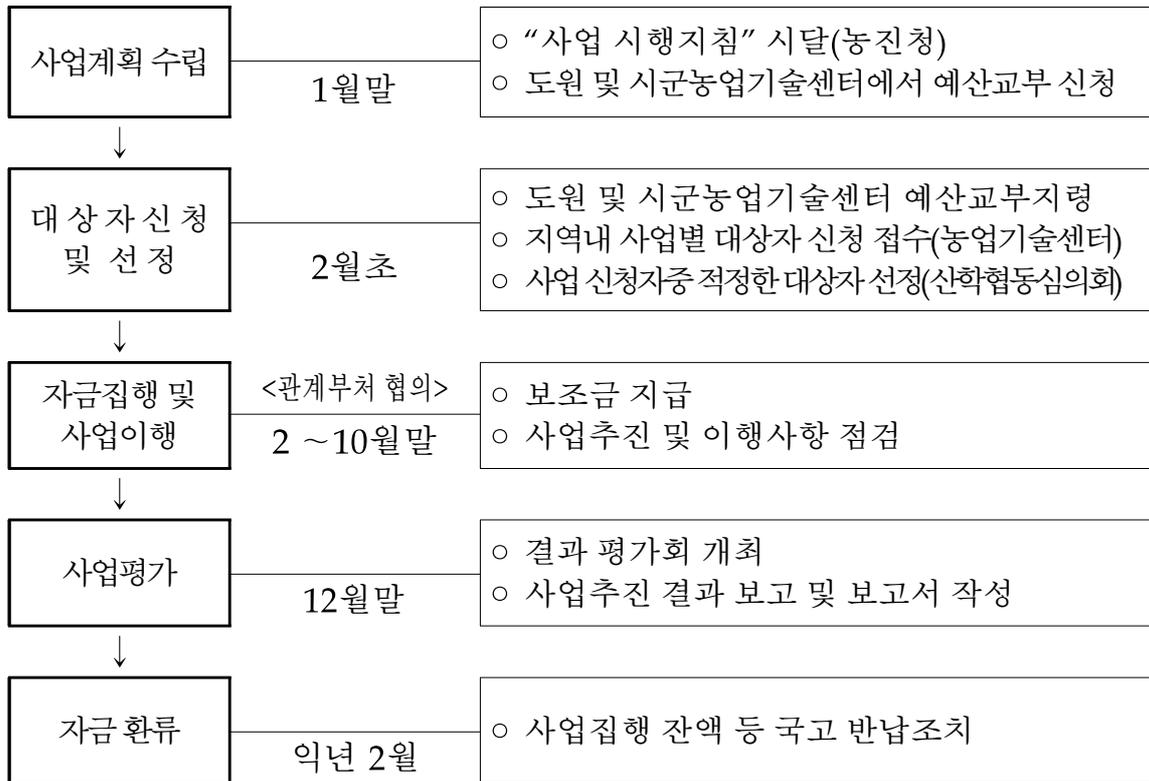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사업량 (개소)	728	839	961	963	847	855	844	837	
사업비	계	67,523	75,026	75,586	79,090	78,166	74,736	78,462	80,812
	국비	34,164	38,308	38,363	40,115	39,673	37,958	40,821	41,321
	지방비	33,359	36,718	37,223	38,975	38,493	36,778	39,641	39,491

□ 성과목표 및 지표

-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 보급·확산
- 최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통한 경쟁력 제고

성과지표	2021 목표치	최근 3년 실적			지표 산출 시기	측정방식
		'18	'19	'20		
▪ 시범농가 비용절감률(%)	20.8	19.5	20.6	20.7	12월 (연1회)	인근농가 경영비(천원/10a) - 시범농가 경영비(천원/10a)/인근농가 경영비×100
▪ 스마트팜 농가 생산성 향상률(%)	18.4	14.2	17.9	18.2	12월 (연1회)	시범농가 단위생산량(kg/10a) - 인근농가 생산량(kg/10a)/인근농가 생산량(kg/10a)×100
▪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율(%)	20.9	21.2	20.3	20.6	12월 (연1회)	(시범농가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량(kg/10a) / 인근농가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량) / (인근농가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량 / 인근농가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량) × 100

□ 사업 추진체계



□ 사업대상 및 자격요건

- 사업 추진 의욕이 강하고, 기술 확산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 기술보급 사업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대상지를 현장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농업인 등으로 이루어진 농업인 단체 및 농업법인, 마을, 단지 등
 - 개발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하여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으로 지원
 - GAP·친환경 인증 등 안전농산물 생산 실천의지가 높은 단체
 - 스마트팜 등 ICT 관련 사업의 효과증대를 위하여 청년농업인 등 기술숙련도 높은 농업인
 - 국내육성 품종 확대 보급 추진 의지가 높은 농업인, 단체 등을 우선 지원
- ※ 시범사업 대상지를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을 동의하지 않는 농업인 또는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 등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

- ※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선정할 경우 농림축산 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별표 6의 농업법인 지원 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적용
- ※ 본 사업은 신기술을 농가에 신속하게 확산 보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신기술보급사업 세부과제별 대상자(사업 신청 시 단체 설립일, 구성원, 인원 등을 확인), 지원범위 등 선정요건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 지원 대상 과제와 연관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자, 농산물소득조사 또는 농가경영기록장 작성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거나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 첨단농업 기술 등 젊은 세대의 수요가 높은 스마트팜 등 사업은 청년 농업인에게 가점을 부여하거나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지원규모(국비) : 10백만원 ~ 300백만원
- 사업비 : 국비 50%, 지방비 50%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국고보조 50%, 지방자치단체 50%로 명시
- 지원사항 : 시범요인 투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농자재 구입비 등
 -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세부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 종류별로 달라질 수 있음
 - ※ 국고보조사업으로 구입하는 시설, 장비, 농자재 등은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았거나 A/S가 보장되는 우수업체 장비 구입

□ 2021년도 사업 내역

(단위 : 개소, 백만원)

과제명	개소수	예산액			개소당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계	837	80,812	41,321	39,491	
□ 품질고급화기술(29)	232	22,300	11,150	11,150	
○ 품질 향상 기술(15)	90	11,660	5,830	5,830	
찰옥수수 칼라패키지 상품화 시범(옥수수 기능성 가공 및 상품화 시범)	4	240	120	120	60
밀 용도별 맞춤형 생산 및 블렌딩 단지 조성 시범	1	200	100	100	200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벼 생산·공급 거점단지 육성	20	4,000	2,000	2,000	200
신품종 조기확산 및 최고품질 벼 선정시범	7	700	350	350	100
용도별 국산밀 품질체계화 패키지형 구축 시범사업	2	600	300	300	300
약용작물 생산수확 후 관리 기술시범	8	1,600	800	800	200
특수미 상품화기술 시범	4	800	400	400	200
안전성과 편이성을 높인 벼셋용 고갈 세척 기술시범	4	80	40	40	20
사포닌 고함유 도라지 품질 고급화 기술 시범	6	420	210	210	70
킬레이트제 용해장치 및 활용기술 보급 시범	6	180	90	90	30
고온건조방식 대인소독장비 활용기술 시범	7	280	140	140	40
젓소 유두 자동세척기 활용 시범	6	240	120	120	40
치즈 숙성실 활용 숙성기술 보급 시범	4	120	60	60	30
자가배합 섬유질배합사료 분석 품질고급화 시범	3	600	300	300	200
한우 우량암소 조기선발 기술 시범	8	1,600	800	800	200
○ 환경 친화형 기술(8)	98	5,110	2,555	2,555	
친환경벼 재배 단지 조성 시범	5	400	200	200	80
외래퇴치어종 활용 친환경 발효액비 제조기술 시범	2	100	50	50	50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시범	19	760	380	380	40
복합기능 미생물 활용 생산성 증대 기술	33	660	330	330	20
유기농 오이 양분공급 및 병해충 관리기술	4	120	60	60	30
천적과 작물보호제를 활용한 해충종합방제기술 시범	19	950	475	475	50
축사 공기정화 질병예방 기술보급 시범	9	720	360	360	80
GAP 실천단지육성사업	7	1,400	700	700	200

과제명	개소수	예산액			개소당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 우리품종 확산 기술(6)	44	5,530	2,765	2,765	
고구마 국내육성 품종 대규모 단지 조성	6	1,200	600	600	200
메밀 신품종 조기 확산 및 종자생산 시범단지 조성	2	200	100	100	100
소비선호형 우리품종 단지조성 시범	14	2,800	1,400	1,400	200
양념채소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	12	720	360	360	60
화훼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	9	540	270	270	60
감귤 국산품종 조기성원화 및 고품질 출하기반 조성 시범	1	70	35	35	70
□ 안정생산 기술(33)	221	16,300	8,150	8,150	
○ 생산성 향상 기술(11)	74	6,078	3,039	3,039	
식량작물 종자 생산기반 단지조성 시범	4	800	400	400	200
기능성 쌀보리 재배단지 조성 및 안정생산기술시범	1	100	50	50	100
팥땅콩 연중공급을 위한 생산단지 조성	4	800	400	400	200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 확산 시범	17	1,700	850	850	100
인삼 고온피해 경감 종합기술 시범	9	540	270	270	60
햇빛차단망 적용 노지과원 일소피해 저감 시범	6	600	300	300	100
딸기 품종 다양화 안정생산기술 시범	11	330	165	165	30
논 이용 콩 생산 생력 기계화 신기술 시범	9	468	234	234	52
한우 숙성기술 활용 저지방부위 부가가치 향상 시범	3	240	120	120	80
젓소 케토시스 사전예측을 통한 생산성 향상기술 시범	4	80	40	40	20
미래형 사과 다축 과원 조성 시범	6	420	210	210	70
○ 생산비 절감 기술(13)	88	7,600	3,800	3,800	
FTA대응 벼 생력재배기술 보급 시범(디지털 벼 생산 기술 보급 시범)	5	1,000	500	500	200
수수 우량품종 기계화 생산단지 육성 시범	1	70	35	35	70
참깨 재배 및 수확 후 관리 기술보급	4	280	140	140	70
벼 안정육묘 자동이송 단지조성시범(벼 안정육묘·이앙 단지조성 시범)	7	1,050	525	525	150
팥 재배 전과정 기계화 및 수확관리 기술 시범	5	250	125	125	50
이상기상 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시범	11	1,100	550	550	100
중소형 수박 생력화 수직재배 시범	6	192	96	96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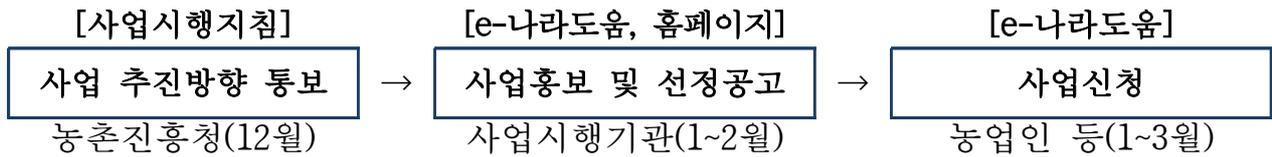
과제명	개소수	예산액			개소당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난지형 미늘 건조비용 절감 가변형 건조시스템 구축 시범	8	368	184	184	46
잔대 우량종금 대량생산 및 시설재배 기술 시범	6	300	150	150	50
원격 병해충 방제 생력화 체계 구축 시범	6	600	300	300	100
양송이버섯 재배용 자주식 배지교반기 시범	3	210	105	105	70
거세 한우 28개월 단기비육기술 보급시범	5	500	250	250	100
드론 활용 노동력 절감 벼 재배단지 육성 시범	21	1,680	840	840	80
○ 농축산물 안전관리 기술(9)	59	2,622	1,311	1,311	
발작물 논 재배 확대를 위한 암거배수 시범	3	300	150	150	100
PLS 대응 발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3	150	75	75	50
토마토 수경재배 작은뿌리파리 종합관리 기술 시범	5	150	75	75	30
시설원예작물 바이러스 종합예방기술 시범	15	600	300	300	40
빠르고 쉬운 현장 맞춤형 대장균(군) 검출기술	5	150	75	75	30
비벡터링 기술 이용 시설 원예작물 주요 병 방제기술	12	312	156	156	26
논재배 옥수수 사일리지의 장기저장기술 보급사업	3	60	30	30	20
신품종 IRG 재배 기술보급 시범	8	400	200	200	50
관수시설 활용 과수 동상해 방지기술 보급 시범	5	500	250	250	100
□ 미래 성장 기술(21)	192	12,642	6,321	6,321	
○ 무인자율화 기술(8)	73	3,652	1,826	1,826	
외부환경 데이터기반 스마트양액 공급기술시범	10	400	200	200	40
느타리버섯 병재배 스마트재배사 및 환경관리 기술 시범	5	350	175	175	70
노지고추 실속형 자동관수시스템 시범	10	280	140	140	28
시설작물 자동관수 및 관비(물+비료동시) 시스템 시범	22	572	286	286	26
작물 수분 스트레스 기반 노지스마트 관개 시스템 기술시범	9	270	135	135	30
축산 스마트팜 통합제어시스템 활용기술 시범	10	1,200	600	600	120
가금왕겨 자동살포 및 퇴비생력화시스템 보급시범	4	280	140	140	70

과제명	개소수	예산액			개소당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무인로봇활용 섬유질 자가배합사료 급여시스템 기술 시범	3	300	150	150	100
○ ICT 적용 기술(8)	73	5,300	2,650	2,650	
발작물 관개시스템 시범	5	500	250	250	100
감자 재배유형별 특성화 시범	3	300	150	150	100
IoT 농기계 교통안전 및 사고감지 알람 기술시범	5	300	150	150	60
스마트 양봉 기술 보급 시범	34	680	340	340	20
한우 유전정보 기반 정밀사양 기술시범	5	500	250	250	100
바이오커튼 활용 돈사 냄새저감 종합기술 시범	10	2,000	1,000	1,000	200
스마트 생체정보 관리시스템 보급 시범	5	300	150	150	60
ICT 활용 돈사 환경관리 기술보급 시범	6	720	360	360	120
○ 에너지 절감 기술(5)	46	3,690	1,845	1,845	
열효율화 기술 활용 시설과수 생육환경 개선 시범	5	500	250	250	100
터널식 해가림을 이용한 인삼재배 신기술 시범	8	640	320	320	80
과채류 맞춤형 에너지절감 패키지기술 시범	9	720	360	360	80
지중 냉온풍 활용 시설과수 비용절감 시범	5	500	250	250	100
기능성 다겹보온 커튼 기술시범	19	1,330	665	665	70
□ 산업기반 구축 기술(23)	154	16,960	8,480	8,480	
○ 신소득원 확대 기술(10)	80	10,870	5,435	5,435	
기능성 쌀귀리 품종 조기보급 및 생산단지 육성	3	300	150	150	100
오감만족 재밌는 쌀 체험여행 교실 운영	3	180	90	90	60
원예활동 전문가 활용 도시농업 시범	15	750	375	375	50
식물 활용 그린 스쿨·오피스 조성 기술 시범	13	520	260	260	40
도시민 참여형 아파트 조경 다층식재 기술 시범	11	440	220	220	40
유럽종 포도 글로벌 선도단지 조성기술 시범	5	1,000	500	500	200
고품질 홍삼 생산기술 시범	4	800	400	400	200
매실 가공기술 시범	4	200	100	100	50
농촌자원 활용 치유프로그램 보급 시범	10	880	440	440	88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12	5,800	2,900	2,900	

과제명	개소수	예산액			개소당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 수출 경쟁력 기술(8)	36	3,430	1,715	1,715	
들깨잎 양액재배 수출단지 육성시범	3	900	450	450	300
고품질 친환경 쌀, 잡곡 등 수출생산단지 육성시범 (고품질 쌀, 잡곡 등 수출생산단지 육성 시범)	4	400	200	200	100
기능성 밀 원맥 생산단지 조성	1	200	100	100	200
딸기 수출용 선도유지 일관체계 기술 시범	9	270	135	135	30
접목선인장 완효성 복합비료 담액재배 및 수출 시범	2	20	10	10	10
원예특용작물 수출 규격화 기술보급시범	6	600	300	300	100
떡볶이 떡 상온유통 기술시범	8	800	400	400	100
농산물 유통 연장을 위한 선도유지 기술 시범	3	240	120	120	80
○ 부가가치 향상 기술(5)	38	2,660	1,330	1,330	
효소처리 농식품 가공 소재화 시범	8	560	280	280	70
종균 활용 장류 품질향상 기술시범	10	700	350	350	70
고품질 베이커리용 과일가공 시범	5	350	175	175	70
약선 소재를 이용한 쌀 조청 제조시범	6	420	210	210	70
치유농업육성 시범	9	630	315	315	70
□ 농업현안해결 종합기술지원사업(6)	38	9,780	4,890	4,890	
가공용쌀 원료곡 생산단지 육성	5	1,020	510	510	204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	10	2,060	1,030	1,030	206
들녘단위 규모화 친환경쌀산업 고도화단지 육성	5	2,500	1,250	1,250	500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	8	2,000	1,000	1,000	250
고품질 밀 생산 및 소비확대 기반조성(우리밀 국내 육성품종 대규모 생산기반조성)	5	1,100	550	550	220
프리미엄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5	1,100	550	550	220
□ 기술보급체계 다변화모델 구축	4	1,650	1,150	500	-
기술 융복합 현장적용 시범 등	2	650	650	-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	2	1,000	500	500	500
□ 사업성과 분석 및 평가	1	180	180	-	180
□ 신기술 확산지원 및 운영	1	1,000	1,000	-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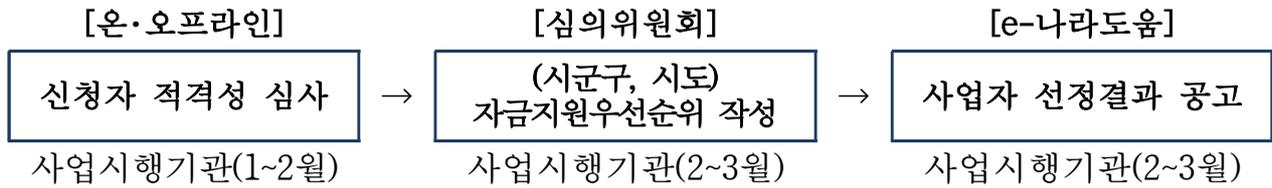
2. 202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사업신청단계



- 농촌진흥청에서 2021 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 시달(전년도 12월)
- 각도 농업기술원장(특·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시·군별 사업물량 및 예산 배정계획을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통보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군별 사업물량 및 예산배정계획에 의거 대상자 선정, 예산집행 등을 포함한 자체 사업계획 수립 추진
-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수립된 세부추진계획을 토대로 군보, e-나라도움, 홈페이지 등에 사업 대상자 신청 홍보 및 공고(2021년 1월중)
 - 사업 수행부서에서는 적격 대상자가 다수 신청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적극 활용하여 세부과제별 신청홍보
 - 주요 공고내용: 사업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등
 - 안내서 비치: 사업안내서는 해당 시군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 등에 비치
 - ※ 공고기간: 30일 이상(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2조)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
 - ※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공모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정보(온라인 자격검증항목, 「기본규정」 제3장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제24조~제31조)에 관한 지침 준수(15일 이상 접수기간 부여, 중요재산 등록 등)
 -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 사업신청자가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등록해야 함
 - ※ 사업대상자가 정보취약계층 등 e나라도움을 사용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침’을 참조(기본규정 제27조)
- 사업신청자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에 따른 별표 6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적합 확인

□ 사업자 선정단계



-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심사를 하되,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현장 실사 및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등의 평가에 의하여 사업대상자 선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8항 각 호에 따른 중복·편중지원 방지, 유사자금 지원여부 등 검토 및 확인, 제8항 각 호에 따른 보조사업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및 제56조제4항에 근거한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에 있는 보조사업자는 선정단계에서 제외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에 의거 2인 이상 현장조사 및 평가 실시
 - ※ 현장조사 사진첨부 등 공정성 확보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 등을 검증·검토 후 선정심의위원회 상정
 -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농업관련 기관, 대출취급기관 등의 사업검토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수 있음
 - 신기술 실증시범 사업장을 인근농가 교육장으로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사업대상자 중 해당 사업과 연관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자를 우선 선정
 -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신청기간이 아닐 경우 사업 선정 후에도 사업 대상자가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단,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작목이 없는 경우 예외)
 -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현장평가 결과 및 사업신청서 등을 심의
 - ※ 사업특성상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판단에 따라 선정할 수 있으나 그 결과를 추후 산학협동심의회에 통보
-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는 선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를 산학협동심의회 등에 상정하여 사업대상자 최종 확정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해연도 3월 이전에 사업대상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확정하여 e-나라도움에 사업자 선정결과를 공고하고,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를 활용하여 도농업기술원장에게 제출, 각도농업기술원장은 타당성 검토 후 농촌진흥청장에게 승인 요청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설치 및 운영기준

- 관련규정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대통령령 제30368호)
- 위원회 구성(시군 기준) : 20인이내(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등)
 - 위원장 : 농업기술센터 소장
 - 위원 : 당해지역 대학교수, 시군 농업관련 담당공무원, 농업단체대표, 선도 농업인 등
- 주요기능 : 신기술보급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농업인력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등
-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 위촉시 행정·지도·학계 등 폭넓은 대상자를 위촉 (농업인학습단체, 퇴직농촌진흥공무원, 농촌진흥청 지역담당관 활용 등)
- ☞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 또는 위원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에서 제척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9조 사업성검토 참조

□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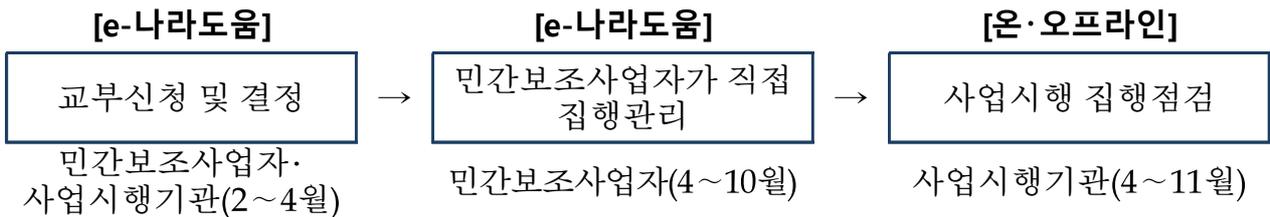
- 도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대상 농업인에게 통보하고 보조금 신청 및 교부조건, 집행 절차 등의 관련 사항에 대한 교육 실시
 - ※ 시범사업에서 탈락한 농가의 경우 탈락 사유에 대한 우편 또는 전화 등을 통한 설명 추진
- 시군농업기술센터는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세부사업별 예산집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농촌진흥청 ATIS시스템에 등록
- 사업대상 농가는 통보일로부터 지정한 기일까지 사업시행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제출
- 보조금 교부 결정시 부기등기제도에 관한 사항을 보조조건에 명시
 - ※ 부기등기제도에 대한 사업대상자에게 교육·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제도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사업 계획 수립시 중점 사항

- 신기술보급사업은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시범적으로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직접적인 비용만 사업계획에 포함
- * 토지 매입비, 단순 농기계·시설 설치 등 사업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비 편성 금지

- 도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시행계획서 승인 후, 사업 대상자가 영농상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 대상자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검토하여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시·군간 조정이 필요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변경 할 경우에는 농업기술원장이 변경 승인하고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
 - ※ 사업별 시범요인 및 지원범위 안에서 시행·추진
- 지원대상 사업자는 사업 신청서와 최종 확정 지원액 등을 근거로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을 보완·시행
- 사업의 관리책임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제4항 별표3에 준하여 표찰(입간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새기술 현장교육장으로 활용
 - ※ 표찰(입간판) 설치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안전관리 또는 도난·훼손의 우려가 있는 약용작물 등의 경우 지자체 판단에 따라 제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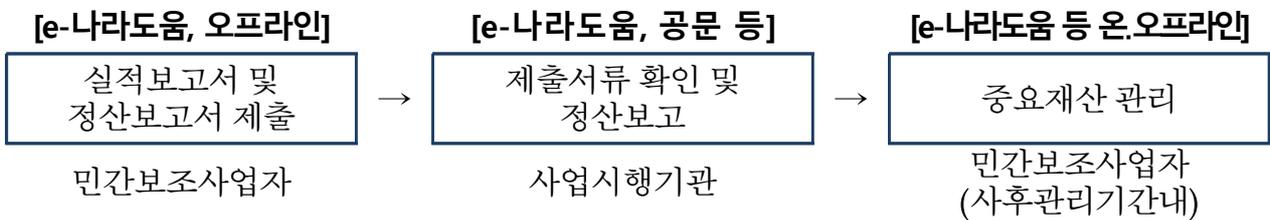
□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 (교부·집행) 증빙자료 제출(보조금 전용 계좌·카드 사용, 전자증빙자료 e나라도움 등록 후 지출) → 민간보조금 예탁(한국재정정보원) → e나라도움을 이용 직접 집행(계약, 집행정보등록, 지출 등)관리
 - 전자세금계산서, 보조사업 전용 카드 등 국세청 등 중복지출 여부, 부적정사용 검증 후 집행
 - ※ 신기술보급 사업 : **비에탁형 교부**(농업인 정보취약계층으로 분류, 보조사업자 계좌로 보조금 직접 교부)
- (모니터링) 온라인·오프라인 수시 점검(사업부서, 지자체)
 - 사업대상자 교육·기술지원, 추진사항 및 예산집행 수시 점검
 - 자금집행 적정, 위약, 준수사항 등 수행여부 확인
- (실적보고) 사업 완료시 실적보고(2개월 이내, 정산보고 포함)

- 도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대상자의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및 지방 자치단체 보조금 관리규정 등의 절차에 의거 추진
 - 농작물재배 또는 가축사육, 양식(養殖)에 대한 시험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수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인 경우(공동 개발된 농자재·농기계 포함)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9호, 66쪽("20.1.1.))" 「지방계약법령 적용 제외사유」로 적용하여 입찰시행 예외
 - ※ 단,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의 시급성,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되므로 사전에 지자체 예산부서 등과 협의 추진

□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



- 도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농가에 대해 핵심기술과 경영기록장 작성 요령 등을 교육 및 현지 기술지원을 실시
- 사업대상자는 농가경영기록장을 작성하고 사업완료시 해당 시군에 제시하며, 사업장 방문 농업인 등에 대해 사후관리기간 동안 작성·비치하고 기록장을 3년간 보관
 - ※ 노지 등 기록장의 상시 비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교육 내용을 결과보고에 기재
- 시군에서는 시범사업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 확인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대상자의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규정 등의 절차에 의거 e-나라도움을 통해 국고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사업 추진 중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거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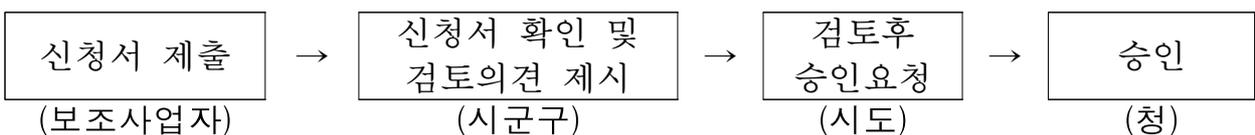
-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②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③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도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위약 등 준수사항 등 수행여부를 확인
- 사업 집행과정에서 발생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 가능
 - ※ 부가가치세 환급금 재사용시 목적외 집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내역의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당초 집행계획 항목에 포함된 지출은 자체 변경, 항목 외 지출은 도기술원 검토·승인 후 변경)
- 보조사업 대상자(1개 단체)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 부터 실적 보고서를 검증 받은 후 제출해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촌진흥청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통보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림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사후 관리 : 보조사업 관련정보 대국민 공개(e나라도움)
 - (정보공시) 보조금 5백만원이상 교부받은 민간보조사업자
 - ※ 교부신청서, 보조사업 수입·지출내역, 정산보고서, 감사 지적사항, 재무재표 등
 - (중요재산) 부동산, 기계·장비 등 취득시 관련 정보 보고 및 공시
 - ※ 재산명, 목적·용도, 취득가액, 현재가액, 주소, 사진 등

※ 처분제한 및 사후관리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장 사후관리, 제72조~제88조에 따라 처분제한 등 사후관리

- 부득이하게 중요재산에 대한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이 필요할 경우(기본규정 제77조 적용) ⇨ 민간보조사업자가 별지 제19호 서식을 사업시행기관(시군센터)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시군센터 및 도농업기술원은 검토의견을 농촌진흥청 사업담당과(소속기관 기술지원과)의 승인의견을 득한 후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최종 결과를 통보함

<농촌진흥사업 승인절차>



* 결과통보 절차 : 청 → 시도 → 시군구 → 신청인(보조사업자)

- 중앙단위 사업이행 및 점검(연 4회) 의무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행 및 점검 실시
- 취득한 재산(부동산, 장비 등)은 기재부 재산등록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목록 제출(반기별) 및 사후관리 실시

□ 성과측정 단계

<신기술 활용 재배면적 변화율>

- 2020년도 추진한 신기술보급사업 과제 중 해당 기술요인을 포함한 2021년도에 지방농촌진흥기관 사업 지원실적
 - 조사기관 : 농촌진흥청 사업담당부서(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협조)
 - 조사시기 : 1 ~ 12월
 - 조사내용 : '21년도 세부 과제별 시도에서 지원한 기술지도 실적

<수혜자 만족도 조사>

- 시범사업 추진실태, 기술지도 서비스, 지원자금의 적정성 등 사업운영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하여 농정현장 중심으로 시범사업 수혜농가 등이 실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연중(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조사기관 : 농촌진흥청 사업담당부서(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협조)
 - 조사대상 : 시범사업 참여 농업인 등 세부사업별 참여농가
 - 조사방법 : 시·군농업기술센터 사업담당자를 통한 설문(지) 조사

<경제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성과분석>

- 신기술보급사업 세부과제 중 종료과제를 중심으로 기술확산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일자리 창출 등 사업 성과 측정
 - 조사시기 : 5~12월중
 - 조사대상 : 시범사업 참여 농업인 등 세부사업별 참여농가
 - 조사방법 : 외부 연구 용역
 - 주요내용 : 세부 과제별 기술 파급효과, 가치 평가 및 투자효과 등

□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원 칙

- 세부사업별 시범사업 농가를 대상으로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사업에 대한 예산 확대 편성 및 부진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등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사업성과 극대화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기관 : 농촌진흥청 세부사업별 담당부서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협조)
- 평가기간 : 11~12월 중
- 평가대상 : 1년 이상 추진된 세부사업과제를 대상으로 평가
- 평가기준 : 별도의 평가기준을 마련 시행
 - 신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단계별 교육 및 평가회 개최
 - 사업에 따라 인근농가와 대비하여 소득분석 실시
 - 인근농가의 기준 : 동일지역내 동일작목, 유사규모, 유사작기 농가 중 해당 시범요인을 수용하지 않은 3농가 내외의 평균 경영성과
 - * 시범·인근농가 조사는 대표성 등을 고려 조사규모를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 가능
 - 농가별 조사한 세부자료는 시군센터에서 별도로 관리하여 보관

<환류>

- 농촌진흥청 사업 담당부서의 자체 평가에 의하여 세부사업별 성과 달성치가 낮게 나타나는 사업은 예산 삭감 및 사업 폐지 등 구조조정 실시
- 세부과제 중 보완되어야 할 기술에 대해서는 연구기관·부서에 환류

세부사업: 신기술보급사업

농업과학기술기반 기술보급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인 버섯용 고깔 세척 기술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 박기춘	063-238-2302
		농촌지도사 임기정	063-238-2311

□ 목적

- 버섯 고깔의 유해미생물 오염 예방기술을 보급하여 버섯의 수출활성화 및 유통 경쟁력 향상 도모

□ 추진방향

- 국내산 버섯 미생물적 안전성 향상으로 안전 먹거리 공급
- 버섯 고깔 세척기 보급으로 노동비, 세척시간, 농가생산비 절감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식중독 세균 제거를 위한 친환경 소독제 선발 및 고깔세척장치 개발('18년, 농과원)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영농활용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 농업기술 → 영농기술 → 영농활용정보
-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책자 검색

□ 사업규모

- 사업비 : 80백만원(개소당 2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모 : 개소당 버섯배재사 1,000㎡이상 보유 농가 및 단체

□ 사업량: 4개소

시도	계	경기	충북	전남	경북
개소수	4	1	1	1	1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버섯 고깔 식중독균 및 이물질 제거를 위한 세척기
- 구연산을 이용한 버섯 고깔 식중독균 저감 기술

○ 지원범위 : 버섯 고깔세척장치 및 살균 소독제(구연산) 등

□ 사업대상

○ 팡이버섯 또는 만가닥버섯 재배 농가 및 생산자 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사업추진 체계 및 지원방식 등

○ 팡이버섯 또는 만가닥버섯 재배 농업인·생산자 단체 우선 선정

* 버섯 재배용 고깔(권지) 사용농가 선정

○ 유해미생물에 오염된 고깔을 0.5% 구연산에 1시간 또는 3% 구연산에 2분 처리 후 고깔에서 유해미생물의 생존 여부 파악(리스테리아균 제거 유무)

○ 구연산에 처리한 고깔을 고깔세척기에 통과시킨 후 고깔에서 구연산 및 유해미생물의 잔류 여부 확인

□ 기대효과

○ 팡이버섯의 미생물학적 안전성 향상을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

○ 고깔 세척시 기존 수작업 대비 인력 및 노동시간 획기적 절감(일일 2만장기준)

- 노동력: 12명 → 2명, 시간: 96시간 → 17시간, 비용: 2억원 → 4천만원

○ 고깔세척기 보급시 팡이버섯의 위생안전성 증진 및 국민건강 보호 기여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사포닌 고함유 도라지 품질 고급화 기술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촌지도관 피정의 농업연구사 김세나	063-238-2313 063-238-2314

□ 목적

- 사포닌 함량이 증진된 다양한 프리미엄 도라지 제품 개발을 통한 차별화 및 시장 경쟁력 강화

□ 추진방향

- 도라지 가공제품 품질 고급화 및 제조 공정 효율화
- 기능성 증가 식품 소재화 기술 적용으로 도라지 가공 상품 다양화

□ 근거법령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20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
- 농촌진흥법 제1조, 농촌진흥법 제15조, 제16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 사업규모

- 사업비 : 420백만원(개소당 7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도라지 추출 및 가공사업장 1식

□ 사업량

도 별	계	강원	충북	전남	경북
개소수	6	1	2	1	2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추출 전 열수침지를 통한 사포닌 고함유 도라지 가공제품개발및 품목제조보고

○ 관련 기술

- 플라티코딘 D 함량이 증가된 도라지의 제조방법, 국내 재배 도라지의 사포닌 함량 정보 제공(2018)

○ 지원범위

- 도라지 가공 시설, 장비 우선 지원, 위생설비 지원 가능
- 건물 신축·증축 비용, 단순 포장재, 원료 구입비 지원 불가

□ 사업대상

- 도라지 주산 지역 우선, 영농조합법인, 2농가 이상 공동참여자

□ 사업추진 체계 및 지원방식 등

○ 추진체계 및 지원방식

- (농촌진흥청) 기본계획 수립, 예산확보, 모니터링, 사업평가, 성과확산, 개발 기술지원, 교육, 워크숍, 자료제공 등
- (도농업기술원) 사업 점검·지도·평가, 사례 발굴,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
- (농업기술센터) 사업대상자 선정·관리, 사업계획·결과보고, 사업자 교육 등
- (사업농가) 사업계획 수립·추진, 교육 참여, 사업장 홍보 등
- * ATIS 승인완료 후 사업비 교부결정(시군센터)

○ 추진 요령

- 사업장 조성 위치가 식품제조가공업인·허가가능지역임을 확인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 적용후 상품화가 가능하도록 추진
-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임을 알리는 표찰을 설치(지자체 규격 따름)

□ 기대효과

- 사포닌 고함유 도라지 제품 생산을 통한 제품의 고급화 및 차별화로 유사 제품과의 시장 경쟁력 강화

□ 행정사항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 사후관리

- 사업 당해 연도에 제품개발, 사업이후 2년차부터 소득 창출
- 사업 후 운영에 대한 결과 보고* 제출 (사업완료 후 3년간 반영)
- * 성과지표 : 소득증가율

킬레이트제 용해장치 및 활용기술 보급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 박기춘	063-238-2302
		농촌지도사 임기정	063-238-2311

□ 목적

- 시설재배지의 문제가 되는 염류장해를 최소화하여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하고 비료 자원 절약 및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
- 킬레이트제 용해장치 보급으로 안정적인 킬레이트제 활용 및 노동력 절감

□ 추진방향

- 킬레이트제 처리기술의 신속한 현장 확산 지원
- 킬레이트제 처리에 따른 염류장해 해결을 통한 작물 생산성 향상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시설재배지 염류장해 해결기술('16, 농과원)
- 염류집적지의 킬레이트제 활용 기술('16 발간책자, 농과원)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영농활용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 농업기술 → 영농기술 → 영농활용정보
 ◦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책자 검색

□ 사업규모

- 사업비 : 180백만원(개소당 3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모 : 개소당 1.5ha 이상(5농가 이상)

□ 사업량: 6개소

시 도	계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인천
개소수	6	1	1	1	1	1	1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시설 염류집적지 대상 화훼류(국화), 시설포도 킬레이트(DTPA) 활용기술
- 토양 분석을 통한 전기전도도 측정으로 적정 사용량 조절
- 킬레이트제 용해장치를 활용하여 안전한 킬레이트제 처리

○ 지원범위 : 킬레이트제(DTPA), 킬레이트제 용해장치, 토양채취기, EC측정기 등

□ 사업대상

○ 시설 화훼류(국화), 포도 재배 작목반, 연구회 등 생산자 단체

□ 사업추진 체계 및 지원방식 등

○ 시설재배지 염류집적으로 사업의 효과가 기대되는 지역 선정

- * 사업대상은 토양분석결과 염류농도(전기전도도)가 2.0dS/m 이상, 유효인산 함량 500mg/kg 이상 농가 추천 / 친환경, GAP 인증 농가 제외

○ 사업 농가 대상 킬레이트제 활용기술 교육 실시

- * DTPA 활용기술 및 유의사항, 올바른 토양채취 방법, 전기전도도별 비료 사용량 조절 등

○ 작기별로 정식 전, 수확 후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 후 시비량 조절

- * 같은 지점의 토양을 채취하여 정확한 EC 변화 정도 측정(작기 전후 비교·분석)

○ 사업 추진과정의 수량, 품질, 소득 등 성과 분석을 위한 경영기록장 작성

○ 사업 성과분석 및 기술 확산을 위한 현장교육장으로 활용, 성과홍보

- * 개선사항 발굴, 성과분석 및 기술확산을 위한 현장평가회 개최

□ 기대효과

○ 킬레이트제 및 구연산 기술 적용으로 비료자원의 절약 및 농가의 소득 향상

○ 킬레이트제 용해장치 보급으로 작업의 안전성 및 편리성 증대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외래퇴치어종 활용 친환경 발효액비 제조기술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 박기춘 농촌지도사 임기정	063-238-2302 063-238-2311

□ 목적

- 외래 퇴치어종을 활용한 미생물 발효액비 제조를 통하여 하천 생태계 교란 예방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 추진방향

- 경제적이고 효과 좋은 발효액비 제조기술 보급활용을 통한 친환경 농업 육성
- 생태계 교란 외래퇴치어종 활용 친환경 액비제조기술의 신속한 현장확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외래퇴치어종 이용 유기액비 제조방법 및 시용효과('18, 경기도원)
 - 어류파쇄 → 냄새 저감장비 → 유용미생물 투입 → 발효처리
 - * 기존 액비제조 대비 냄새 90% 감소, 발효기간 70%(300일→90일) 단축

□ 사업규모

- 사업비 : 100백만원(개소당 5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모 : 개소당 연중 발효액비 5톤 이상 소비가 가능한 단체

□ 사업량: 2개소

도 별	계	경기	강원
개소수	2	1	1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생태계 교란 외래어종을 활용한 발효액비 제조·활용 기술
- 유용미생물 활용 냄새없는 발효액비 연중 생산체계 구축 기술

○ 지원범위 : 냄새 저감장비, 액비제조탱크, 물고기 분쇄장비 등

□ 사업대상

○ 친환경 농산물(벼, 시설원예, 과수재배 등) 생산자 단체

□ 사업추진 체계 및 지원방식 등

○ 외래 퇴치어종을 확보가 가능한 지역으로 액비 제조 및 활용 경험이 있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역(※비료·퇴비 생산판매업체 제외)

□ 기대효과

○ 냄새저감, 발효기간 단축 등 효율적인 액비 생산기술의 조기보급·확대

- 기존 공정 대비 냄새 90% 감소 및 발효기간 70%(300일→90일) 단축

○ 외래어종 활용 액비생산으로 하천생태계 교란방지와 경영비용 절감

- 발효액비 제조단가 : 530원/ℓ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시설원에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 김유호 농업연구사 염성현	063-238-2319 063-238-2303

□ 목 적

- 고효율 단열소재 에어로겔 이용 온실의 난방비용 절감 및 작물 재배환경 개선
- 겨울철 저온기에 온도보상 환기로 에너지 손실 방지 및 환기효과 기술 보급
- 열회수 환기 및 온실 내부 공기질 개선으로 시설딸기 병해발생 억제기술 보급

□ 추진방향

- 겨울철 에너지 손실 방지, 작물 재배환경 개선 및 병해발생 억제 기술 확립
- 시설재배 온실 내 온도 유지 및 환기효과 유지 기술 확립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에어로겔 이용 고효율 다겹보온커튼의 보온성능 평가('18, 농과원)
 - 보온율: 66.7%, 에너지 절감효과: 약 20%(연동온실, 외부 최저 평균기온 -8.8℃)
- 시설딸기 열회수형 온습도 환경제어시스템('15, 농과원)
 - 열회수 효율 85%, 잿빛곰팡이 병 발병율: 71.9% 감소, 딸기 수확량 28.6% 증수
- 농업시설용 열회수형 환기장치('07, 농과원)
 - 열회수 효율 63~80%, 양송이 버섯 수확량 39% 증수(상등품 비율 20% 향상)

-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영농활용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 농업기술 → 영농기술 → 영농활용정보
 -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책자 검색

□ 사업규모

- 사업비 : 760백만원(개소당 4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가) 개소당 단동형 비닐온실 1,400㎡ 내외 또는 연동형 비닐온실 2,000㎡ 내외(* 일정기간 이상 난방가온 온실)
 - (나) 개소당 연동형 비닐온실 3,400㎡ 내외(딸기: 고설베드 설치 온실, 딸기 외 작목: 지면부 또는 온실 공간 상에 비닐덕트를 길이방향으로 설치할 수 있는 온실이어야 하며 연구개발부서의 현장조사를 통한 사전협의 필요)
- * 본 사업은 (가) 에어로겔 다겹보온커튼, (나) 열회수형 환경제어시스템으로 구분하여 적용

□ 사업량: 19개소

구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부산	인천	대전
개소수	19	2	2	1	3	1	1	2	1	2	1	2	1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가) 에어로겔 이용 다겹보온커튼 시범을 통한 보온력 향상 및 투습도 개선, 고효율 단열소재 에어로겔 이용 온실의 난방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 (나) 겨울철 저온기에 온도 보상 열회수 환기 기술로 시설원에 에너지 손실 방지, 온실 내부의 공기질 환경개선으로 병해발생 억제 및 생산성 향상

○ 지원범위

- (가) 에어로겔 이용 시설원에 고효율 보온커튼 시범
- (나) 열회수형 온습도 환경제어시스템(열회수 장치 2대, 공기순환팬, 환기팬 및 컨트롤러 등)

□ 사업대상

- (가) 일정기간 이상 난방가온하는 시설원에 작목반, 연구회 및 생산자 단체 등
- (나) 연동형 비닐온실을 보유한 시설원에 작목반, 연구회 및 생산자 단체 등

□ 사업추진체계 및 요령

- (가) 1,400㎡ 내외 단동형 비닐온실 또는 2,000㎡ 내외 연동형 비닐온실
- (나) 시설재배 온실 내부 또는 작업실에 열회수형 온습도 환경제어시스템 설치
 - 3,400㎡ 내외 규모의 연동형 비닐온실에 열회수형 환경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 외부공기와 온실내부 공기가 열교환을 통해 환기될 수 있도록 베드 하부 등에 비닐덕트 설치
 - 열회수형 시스템은 온실내부 온도 및 상대습도 조건에 따라 4가지 운전모드(공기순환, 열회수환기, 온도보상 열회수환기, 바이패스환기)로 자동운전되는 장치 선정
- (공통) 신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단계별 안전교육 및 평가회 개최
- (공통) 농가현황 주소 ATIS 입력시 장비보관 사업장이나 시범포 주소 입력

□ 기대효과

- 온실의 결로 감소, 투습도 개선, 보온성 향상으로 병해발생 억제
 - 관행 다겹 보온커튼 대비 난방에너지 15~20% 절감
- 겨울철 온도보상 환기로 에너지 손실 방지, 공기질 개선으로 병해 억제 및 생산성 향상
 - 잿빛곰팡이병 발생률 저감: 71.9%(관행 16% → 환경제어 4.5)

□ 행정사항: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복합기능 미생물 활용 고품질 생산성 증대 기술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촌지도관 유혁란 농업연구사 이영보	063-238-2307 063-238-2308

□ 목적

- 작물(고추·감자 등) 생육증진에 유익한 복합기능 미생물 조기 활용
- 비용 및 노동력 절감형 복합기능 미생물활용으로 농가 소득 증대

□ 추진방향

- 복합기능 미생물제 활용 작물의 생산성 및 상품성 향상
- 종자 침지만으로 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과 연계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 농촌진흥법 제17조(농촌지도사업의 평가)
- 농촌진흥법 제25조2항(정부의 재정적 지원)

□ 사업규모

- 사업비 : 660백만원(개소당 2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모 : 개소당 10톤 이상

□ 사업량 : 33개소

시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천
개소수	33	4	4	1	1	6	4	5	6	1	1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유용미생물 GH1-13·PMC12 균주가 함유된 복합기능 세균제제 활용 기술
- 복합기능 세균제제 처리 시 고추·감자 등 작물 수량 증대 및 품질 향상 기술

○ 지원범위

- 농작물 생육증진 미생물제제, 복합기능 세균배양에 필요한 배지 등 재료
- 미생물제제의 침지처리에 필요한 장비(고압분무기) 등

□ 사업대상

- 자체 배양(멸균배양기 보유) 또는 배양액(미생물제)을 공급받아 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추진 체계 및 지원방식 등

- 유용미생물 GH1-13·PMC12균주의 배양액(또는 미생물제품) 준비(센터)
 - 보급 시기 : 작물의 파종시기에 맞추어 농가에 보급
 - 처리 방법 : 한번 만 처리함(종자 침지 또는 살포, 유묘기때 2~3회 추가 가능)
 - 대상 작물 : 감자, 고추 등 다양한 작물에 적용 가능(특히, 뿌리작물에 효과)
- 종자를 파종하는 경우 배양액(또는 미생물제품)의 100배 희석액을 이용하여 종자를 희석액에 침지하거나 살포하여 건조(그늘진 곳)한 후 파종함(농가)
 - 감자의 경우 파종하기 위하여 종서를 자르기 전에 처리함
- 유묘를 이용하여 정식 시 육묘할 때 100배 희석액을 2~3회 관주 처리함
 - 정식한 후에는 100배 희석액을 관주처리 시설을 이용하여 2~3회 관주 처리함
- 시범사업 표찰을 설치하되 규격 및 내용은 기술서 표준(안)을 참고로 제작
- 신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단계별 교육 및 평가회 개최

□ 기대효과

- 친환경 복합기능 미생물제 개발보급에 따른 농촌일손 부족완화 및 소득증대
 - * 작물의 생산성·상품성 향상으로 소득 증대 : 10~20%(17~33만원/10a)
- 복합기능 미생물제의 활용기술 확대로 미생물 종합 재배관리 기술 기반 구축

□ 행정사항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 사후관리

- 성과 측정 후 사업 평가 및 환류

□ 행정사항(보고양식)

1. 사업자 선정 현황 및 사업계획 보고(3. 30 한)

○ 사업담당자 현황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E-mail
도 기술원			
시군센터			

○ 사업자 선정 현황

사업자명	주 소(전화번호)	경력	처리작물 / 면적(평)	비고
농가별				

○ 사업 추진계획

주요 사업 추진내용	사업비 집행실적(천원)			
	지원내역	계	국비	지방비
○				

2. 사업 추진결과 보고(11. 20 한)

○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결과

사업자명	사업내용	지원내역	사업비 집행 실적(천원)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자담	
단체명(대표자)							

○ 사업성과

- 복합기능 미생물 처리 내용 및 결과

농가명	처리작물	처리액	처리방법	처리 횟수	조사내용		비고
					생산량/면적(m ²)	병발생 정도	
시범농가	감자, 무, 고추 등	센터배양액/ 미생물제품	종자처리/ 유묘처리/ 관주처리		처리구 생산량/○○ m ²		농가별 처리구 와 대조구 설정 필요
					대조구(무처리) 생산량/○○ m ²		
인근농가 (평균)		-	-	-			

※ 처리구와 대조구는 농가 포장 내에서 구분해야 함

※ 병발생 정도는 (병 걸린 작물의 수) 또는 (많음 +++, 보통 ++, 적음 +, 없음 0) 으로 표기

○ 지도 및 평가회 추진실적

교 육		현지도도		홍보활동		평 가 회							
횟수 (회)	인원 (명)	횟수 (회)	인원 (명)	신문 방송 (회)	유인물 (부)	횟수	평가결과(시범요인 만족도)						
							계 (명)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족	

○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 제 점	개 선 방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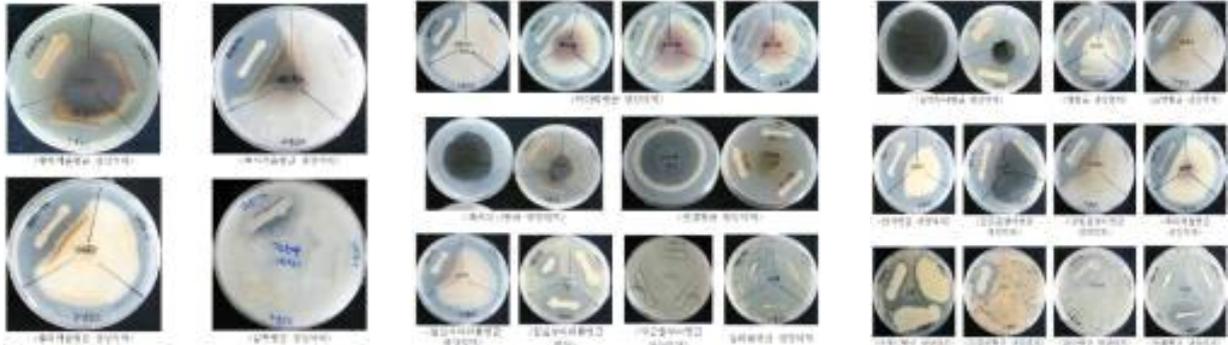
○ 추진단계별 주요 관련사진 첨부(8매 이내)

- 복합기능 미생물 처리 관련사진

참고 **관련 연구 현황**

□ 복합기능 세균 개발

- 작물의 주요 곰팡이병에 강한 길항력을 가진 복합기능 세균 선발



<인삼의 주요 병원균 길항> <벼의 주요 병원균 길항> <채소의 주요 병원균 길항>

- 벼 침지에 의한 뿌리 생장 증진 활성 검정



<볍씨 침지 후 생육 검정>

<벼 뿌리 생육 확인>

- 종자 침지만으로 작물의 생육을 증진시키고 작물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 증진을 유도하는 복합기능 세균 개발(Bacillus GH1-13)

※ (논문)복합기능 세균 GH1-13의 유전체 완전 분석(J. Biotechnol, 영향력지수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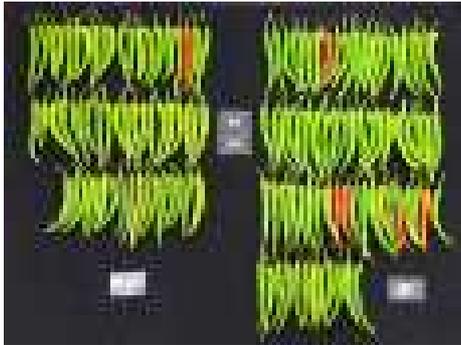
(논문)복합기능 세균의 생육증진 활성 단백질(YxaL) 구명(PLOS ONE, 영향력지수 66)

-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작물 생산성 증대로 농가 소득 증대 기대

○ 주요 성과

- 친환경 벼 재배시 벼키다리병 방제 효율 증대(84% → 92%)
- 표준시비된 밭에 퇴비를 시용하고 고추와 감자를 재배하였음
- 고추 종자 침지 후 육묘하여 정식하여 두 번 수확한 결과 수확량 27% 증대 및 불량과율이 40% 감소함

- 감자 종서 침지 후 파종한 결과 수확량 16% 증대 및 상품성 24% 향상됨



<고추 수량 증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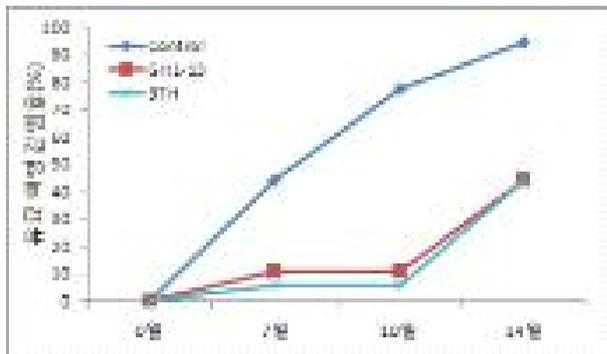


<감자 수량 증대 효과>

- 고추의 종자 침지 후 관행 재배에서

☞ 주요 식물병인 고추역병 53% 방제(유묘시험)

☞ 고추탄저병 병반크기 조사에 의한 억제 효과 64%(1차 수확 고추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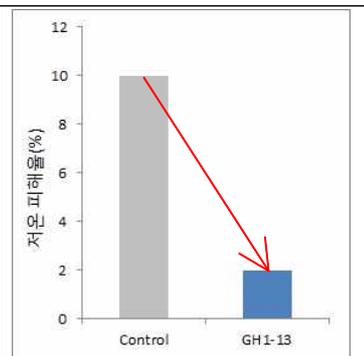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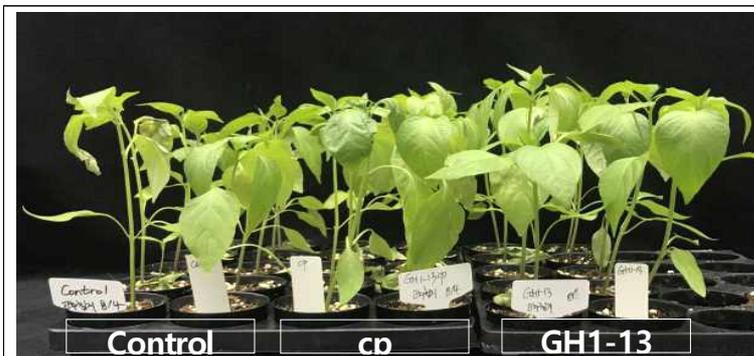


<고추 유묘 역병 감염율>



<고추 수확 후 탄저병 억제 효과 검정>

- 고추 유묘의 저온장해 내성 시험에서 냉해 감소 효과(80% 피해경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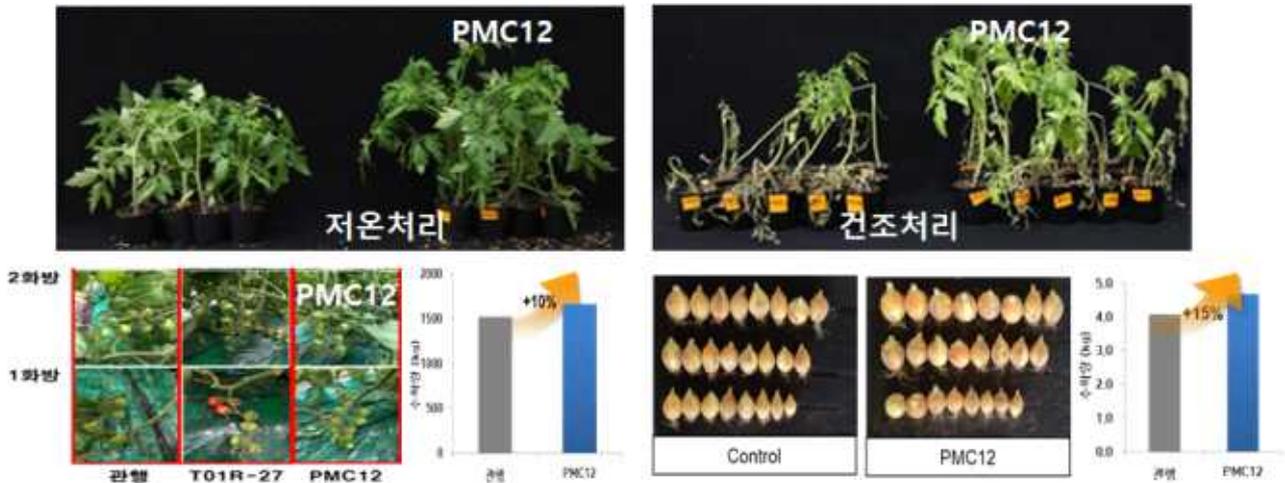


<고추 저온 피해 경감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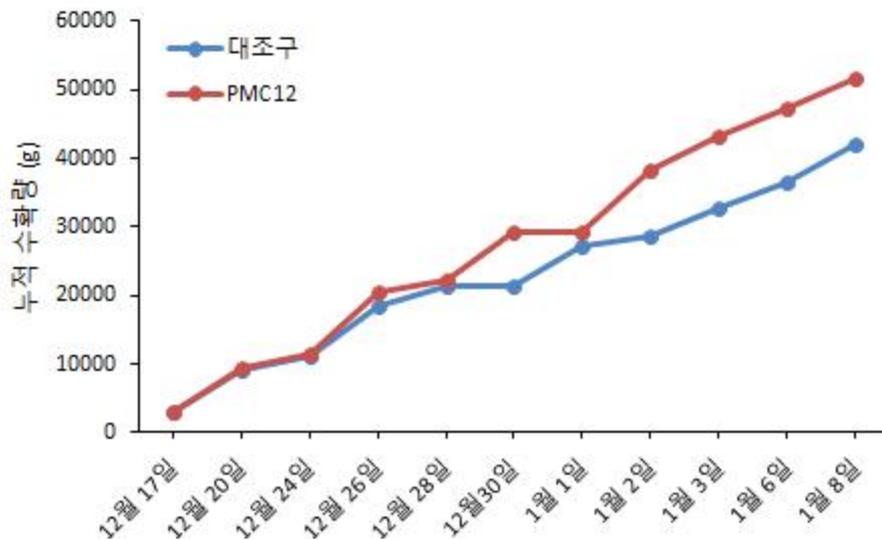
□ 환경장해 저감 세균(PMC12) 개발

○ 토마토, 양파의 염류 피해 완화 미생물 개발

- 균주 : *Variovorax boronicumulans* PMC12
- 처리 : 정식 후 배양액(10⁷cfu/ml) 관주처리 3회
- (효과) 저온(10℃)피해 38%, 건조피해 59% 경감, 풋마름병 예방 38%
- (수확량) 토마토 10%, 양파 15%, 딸기 20% 증가



<토마토 및 양파의 수량 증대 효과>



< 딸기 누적 수확량 >

유기농 오이 양분공급 및 병해충 관리기술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 박기춘	063-238-2302
		농촌지도사 임기정	063-238-2311

□ 목적

- 패키지화된 유기농 오이 재배 기술 적용을 통한 작물 안정생산
- 유기농 오이 재배기술 현장 적용 증대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반확대

□ 추진방향

- 유기농업자재 등 유기농 오이재배 기술의 신속한 현장 확산
- 유기농 오이 양분공급 및 병해충 관리에 대한 패키지 기술 적용강화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유기농 오이 양분공급을 위한 녹비선발('15~'17, 농과원)
- 유기농 오이 생육후기 양분공급을 위한 액비제조 및 활용기술 개발('15~'17, 농과원)
- 유기농 오이 병 관리기술 개발('15~'17, 농과원)
- 유기농 오이 해충관리기술 개발('15~'17, 농과원)

-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영농활용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 농업기술 → 영농기술 → 영농활용정보
 -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책자 검색

□ 사업규모

- 사업비 : 120백만원(개소당 3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0.3ha 내외(3농가 내외)

□ 사업량: 4개소

도 별	계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개소수	4	1	1	1	1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풋거름작물 (호밀+헤어리베치 등) 재배 토양환원 및 생육기 액비처리
- 오이 주요 병해충 관리를 위한 경종적 처리 : 재식거리, 전염원 제거 등
- 오이 주요 병해충 관리를 위한 유기농업 자재처리
- 난방제 해충 관리를 위한 천적과 동반식물(보리, 백일홍) 처리

○ 지원범위

- (토양 및 양분관리) 호밀·헤어리베치·네마장황·수단그라스 등 풋거름 종자, 어분·깻묵·골분·당밀 등 액비 원료, 급수시설 및 액비 공급장치 등
- (병 관리) 토양표면 벚짚피복(실내습도경감), 석회보르도액·황토유황합제·난황유·마늘 등 유기농업자재·환기팬
- (해충 관리) 백일홍, 콜레마니진디벌·지중해이리응애·진디혹파리(천적), 보리(벵커플랜트), 난황유·넙·데리스·고삼·비티제 등 해충방제용 유기농업자재 등

□ 사업대상

○ 친환경 오이 재배 작목반, 연구회,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

- GAP 인증·관행농업에서 친환경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농가 포함
- * 친환경 오이재배에 대한 의지가 크고, 기술력이 높은 농가 선정

□ 사업추진 체계 및 지원방식 등

○ 유기농 오이 재배농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정한 사업대상자 선정

- 포장관리와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가급적 단동 하우스에 투입

○ 오이 재배 단계별 적정 기술(시범요인) 투입을 통한 사업 효과증대

- 예시) 풋거름 작물재배 → 오이정식 → 경종적 방제, 천적+동반식물, 액비, 유기농업자재 투입 등
- * 천적 활용 시에는 천적에 해가 되는 유기농업자재 사용을 지양하고, 천적으로 해충방제가 곤란할 경우 유기농업자재 투입

○ 사업 농가 대상 유기농 오이 양분공급 및 병해충 관리기술 교육실시

○ 사업 농가가 친환경 농산물(무농약 또는 유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 * 연내 인증이 어려울 경우 차기년도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 사업 추진과정의 수량, 품질, 소득 등 성과 분석을 위한 경영기록장 작성

○ 사업 성과분석 및 기술 확산을 위한 현장교육장으로 활용, 성과홍보

- * 개선사항 발굴, 성과분석 및 기술확산을 위한 현장평가회 개최

□ 기대효과

○ 패키지화된 유기농 오이재배 기술확산으로 작물수량 및 농가 소득증대

- 경종적 방법에 따른 병 방제용 농자재 사용량 및 처리횟수 경감 : 9~10 → 2~3회
- 풋거름 작물 및 유기물 발효액비 활용 양분관리기반 구축 및 토양 건전성 증진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천적과 작물보호제를 활용한 해충종합방제기술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 박기춘	063-238-2302
		농촌지도사 임기정	063-238-2311

□ 목적

- 천적과 작물보호제를 활용한 해충방제기술의 신속한 현장 확산
- 천적과 작물보호제를 활용한 안전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 추진방향

- 농약잔류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딸기, 파프리카 등 주요 과채류에 대한 친환경 방제 수단인 천적과 작물보호제 활용하여 농산물 경쟁력 제고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딸기해충의 생물적방제 현장적용 연구('09~'11, 농과원)
 - 점박이응애, 진딧물, 총채벌레, 나방류 친환경적 방제기술
- 파프리카 주요 해충의 천적과 약제에 의한 방제효과('15~'17, 농과원)
 - 진딧물, 담배가루이, 잎응애, 총채벌레 친환경적 방제기술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영농활용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 농업기술 → 영농기술 → 영농활용정보
 ○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책자 검색

□ 사업규모

- 사업비 : 950백만원(개소당 5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모 : 개소당 5ha 이상(10농가 내외)

□ 사업량 : 19개소

시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인천
개소수	19	2	4	2	2	2	1	3	2	1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주요 해충 기본 방제력 이용 적정 시기별 천적 투입기술
 - 천적 등 생물적 방제기술과 작물보호제를 이용한 해충 방제기술
- 지원범위 : 천적, 트랩, 작물보호제, 친환경 방제를 위한 농자재 등

□ 사업대상

- 친환경 농산물 생산 과채류 생산자 단체(작목반, 연구회, 영농조합법인 등)
 - * 대상작물 : 딸기, 참외, 오이, 고추, 파프리카, 가지

□ 사업추진 체계 및 지원방식 등

- 천적 활용 경험이 있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 단지가 있는 지역

□ 기대효과

- 천적을 활용한 해충방제로 농약사용량 감축을 통해 농업환경 개선
- 천적 활용 생산 농산물의 지역특화 브랜드화를 통해 농산물 가격 차별화
- 천적과 작물보호제 활용기술 기반구축과 적정량 공급으로 천적농업 실현
- 친환경 안전 농산물 보급·소비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GAP 실천단지 육성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농촌지도관 김대성	063-238-0980

□ 목 적

- GAP 인증단지 및 마을 조성을 통한 안전먹거리 생산 및 공급처 구축
- 마을단위 단체인증 지원을 통한 GAP 활성화 및 모델구축

□ 추진방향

- GAP 농산물 생산공급 모델을 보급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고품질 안전 먹거리 공급
- 작목별 단지 및 마을단위 GAP 인증면적 및 농가 확대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GAP 생산가이드 및 기본서 등 표준재배기술 확립(농과원)
- 작목별 GAP 자율점검표 11종 개발(농과원)
- 저비용 고효율 현장 맞춤형 대장균(군) 검출기(농과원)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영농활용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 농업기술(농사로, www.nongsaro.go.kr) → 농업 기술정보 → 영농활용기술

□ 사업량 : 7개소

도 별	계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개소수	7	1	1	1	3	1

□ 사업규모

- 사업비 : 1,400백만원(개소당 20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20ha 내외

□ 사업대상

- 원예·특용작물 중심의 주산단지 및 마을
- GAP 단체인증 취득 등 안전농산물 생산 실천의지가 높은 단지 및 마을
- 신규 GAP 인증 단체 및 마을 우선선정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GAP 개별 및 마을단위 단체인증 취득
 - GAP 재배기술 보급 및 실천
 - 표준화된 영농기록장 보급 및 위해요소 관리계획서 작성
 - GAP 인식제고를 위한 컨설팅 추진
 - 재배 작목에 맞는 위생관리 시설 등
- 지원범위
 - 공동 영농폐기물 및 잔재물 처리 장비 및 시설
 - 농산물 및 농업생산환경 위해요소 경감장비 및 물품
 - GAP 인증 필요 자재
 - GAP 단지 조성을 위한 컨설팅(교육포함, 예산의 10%이내), 홍보비 등
 - 환경개선, 안전농산물생산, 수확후 관리시설 외 일반 영농자재 및 장비지원 제외

□ 사업 추진체계 및 요령

- 시범사업 추진 시 시범요인 우선 추진으로 사업 효과 거양
- e-나라도움을 통한 국고보조사업 수행
- 시범사업 추진과정의 소득, 노동력 절감, 생산성 증대 등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경영기록장 작성

□ 기대효과

- GAP 전문생산단지 조성을 통한 유통경쟁력 강화
- 안전농산물 생산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 개선 및 GAP 인증확대 기여
(2022년까지 GAP 인증면적 15% 달성)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논 이용 콩 생산 생력 기계화 신기술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 김유호	063-238-2319
		농업연구사 염성현	063-238-2303

□ 목 적

- 논을 이용한 콩 재배단지 증가에 따라 콩 생산기계화를 통해 노동력 절감 및 경쟁력 제고
- 콩 손상율을 줄이는 건조기술과 정선선별 수확후처리 등을 통한 고품질 콩 생산

□ 추진방향

- 논 타작물 전환사업 일환으로 논 콩 재배에 적합한 기계를 개발하여 파종작업의 노력 절감
- 수확작업의 기계화(콤바인)를 통한 일시 대량 수확에 대응하기 위하여 건조작업의 기계화를 통해 콩의 품질 제고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트랙터 부착형 논 콩 전용 파종기 개발('18, 농과원)
 - 두둑 높이(깊이) 27~30cm, 두둑 폭 100cm, 고랑 20cm, 옥수수 등 파종 가능
- 농산물(콩)이 순환하지 않으면서 건조되는 정치식 건조기 개발('17, 농과원)
 - 건조후 손실량: (순환식) 15~20% → (정치식) 3
 - * 열풍공기 방향 상→하, 하→상으로 반복하여 균일건조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영농활용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 농업기술 → 영농기술 → 영농활용정보
 ◦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책자 검색

□ 사업규모

- 사업비 : 468백만원(개소당 52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콩 재배면적 10ha 내외(가급적 10ha 이상)

□ 사업량: 9개소

구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울산
개소수	9	1	1	1	1	1	1	2	1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두둑을 27cm 이상 높고, 진압판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형성하는 논 콩 파종 기계화 기술
 - * 평두둑 2줄 재배: 두둑 높이(깊이) 27~30cm, 두둑 폭 100cm, 고랑 20cm, 조간 30~35cm 주간 15~20cm
- 트랙터용 논 콩 전용 파종기로 두둑성형+파종+제초제 살포 동시작업
- 농산물(콩)을 순환시키지 않고 건조하는 정치식(비순환식) 콩 건조 기계 기술

○ 지원범위

- 트랙터부착형 논 콩 전용 파종기, 정치식 콩 건조기 및 콩 정선선별기 등

□ 사업대상

○ 논 콩 작목반, 생산 경영체 및 생산단지 등

- 벼농사 대체 작목으로 논을 밭으로 전환하여 콩을 재배하는 평지 포장 대상

□ 사업추진체계 및 요령

- 논에서의 콩 재배면적이 8ha 이상(1필지 면적이 4,000m² 이상인 구역 우선 선정)인 생산단지를 구비한 지역
- 파종기, 건조기 등 농기계 보관시설 반드시 보유
 - 건조기계 보관시설은 비가림시설·창고 등 공간상의 높이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함
- 신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단계별 안전교육 및 평가회 개최
- 농가현황 주소 ATIS 입력시 장비보관 사업장이나 시범포 주소 입력

□ 기대효과

- 논 콩 생산 생력기계화로 노력 및 생산비 절감
 - (파종) 노력 95%, 비용 56% 절감, (건조) 노력 25%, 비용 10% 절감

□ 행정사항: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양송이버섯 재배용 자주식 배지교반기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 김유호 농업연구사 염성현	063-238-2319 063-238-2303

□ 목 적

- 굴삭기 배지 제조보다 교반정도가 우수한 자주식 배지 조제기의 배지 균일도 정립
- 균일하게 조제된 배지에서 생산된 양송이버섯의 수량 및 품질 우수성 확산

□ 추진방향

- 양송이 버섯용 배지생산 노동강도 감소 및 배지 품질 향상을 위한 기계화 기술 확립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자주식 배지교반기 개발('18, 농과원)
 - 자주식 배지교반기를 이용하여 생산된 배지에서 발효에 관여하는 호기성세균, 고온성 세균 및 고온성 방선균의 밀도가 높고, 관행 굴삭기 이용 교반작업 보다 교반 균일도 증가
 - * 1동분(재배상 165m²) 배지 1회 교반 평균작업시간: (관행) 134분 → (배지교반기) 46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영농활용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 농업기술 → 영농기술 → 영농활용정보
-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책자 검색

□ 사업규모

- 사업비 : 210백만원(개소당 7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재배사 20~60동 배지생산 가능(균상면적 165m²/동 기준)

□ 사업량: 3개소

구분	계	충남	대구
개소수	3	2	1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양송이버섯 재배에 필요한 배지를 자주식 교반기로 생산하는 기술
- 양송이버섯 배지생산 기계화 및 공급체계 조기 정착

○ 지원범위

- 자주식 배지교반기, 3상 전기 인입시설(배전반, 고압용 전선 등) 및 농자재 등

□ 사업대상

○ 양송이버섯 작목반, 연구회 및 영농조합법인 등

- 35kW 3상 전기 인입이 가능하고, 균평도 2cm/5m 이내, 15m×30m 이상 배지 생산을 할 수 있는 작업장이 확보된 곳
- 벧짚에 물을 축이기 위한 침수조와 임시 쌓기 및 본 쌓기에 필요한 장비(굴삭기)를 반드시 구비

□ 사업추진체계 및 요령

- 자주식 버섯제조기 보관 가능한 시설을 보유한 대상 우선 추진
- 침수조 및 배지 조제 전후처리 작업에 필요한 굴삭기 필수 보유
- 신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단계별 안전교육 및 평가회 개최
- 농가현황 주소 ATIS 입력시 장비보관 사업장이나 시범포 주소 입력

□ 기대효과

- 고품질 균일배지 생산보급으로 생산성 증대: 22.9%
- 양송이 재배농가 소득증대: 31백만원/년 (재배사 4동, 연간 3.5회 재배 기준)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빠르고 쉬운 현장 맞춤형 대장균(군) 검출기술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 박기춘	063-238-2302
		농촌지도사 임기정	063-238-2311

□ 목적

- 쉽고 저렴하게 농식품 위생 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대장균 검사법의 신속한 현장 기술보급
- 위생관리 상태 상시 점검 및 관리를 통한 안전한 농식품 공급

□ 추진방향

- 빠르고 쉬운 현장 맞춤형 대장균(군) 검출기술에 대한 현장 확산
- 안전한 농식품 관리 및 공급을 위한 위생상태 상시 진단·관리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오염원 확인을 위한 쉽고 빠른 현장 맞춤형 대장균 검출 기술('16~'17, 농과원)
- 저비용 고효율 현장 맞춤형 대장균(군) 검출기 개발('16~'17, 농과원)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영농활용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 농업기술 → 영농기술 → 영농활용정보
 ◦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책자 검색

□ 사업규모

- 사업비 : 150백만원(개소당 3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3개 이상 생산자 단체 또는 농산물 가공사업장
 * 예) 생산자 단체/가공사업장 3개소 or 생산자 단체 1개소+가공사업장 2개소

□ 사업량:5개소

도 별	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개소수	5	2	1	1	1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대장균군/대장균 간이 검사 기술 및 검출기 활용
 - 신선농산물 생산 농가, 농산물 가공사업장, GAP 시설 등 위생관리기술 보급
 - 안전한 농식품 생산을 위한 안전, 위생 관련 교육
- 지원범위: 대장균(군) 검출기, 소모성 물품(연구 시약 등)

□ 사업대상

- 신선농산물(엽채류, 과채류, 새싹채소, 어린잎채소 등) 관련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 농산물 가공사업장
 - 학교급식 납품, HACCP 인증 등으로 위생관리가 필요한 사업장 우선 선정
 - * 농산물 가공사업장은 농업인이 운영하고,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해야함

□ 사업추진 체계 및 지원방식 등

- 상시적인 농식품 위생관리가 필요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의 성과제고
- 대상 사업장별 위생관리가 필요한 시료에 대한 주기적인 분석 및 진단
 <분석 기준(안)>

대 상	대상 시료	분석 횟수
신선농산물 생산자 단체	농산물, 농업용수, 장갑 등	연간 6회 이상 분석 (5농가 이상회 × 4점 이상농가)
농산물 가공사업장	원료, 완제품, 작업도구 및 기기(장갑, 가공기기 등), 용수 등	10점 이상/월

- 사업 농가 대상 대장균(군) 검출기 활용기술 및 위생관리 방법 교육실시
- 대장균(군) 검출기 활용 성과분석 및 기술확산을 위한 현장교육장으로 활용
- 사업 성과분석 및 기술 확산을 위한 현장교육장으로 활용, 성과홍보
 - * 개선사항 발굴, 성과분석 및 기술확산을 위한 현장평가회 개최

□ 기대효과

- 대장균(군) 분석 시간단축·비용절감 및 위생검사의 대중화 실현
 - (전통적 분석법 대비) 시간단축 4일 → 12~18시간, 비용절감: 29,500~30,000원/점
- 식중독 발생을 사전 예방하여 사회·경제적 손실 최소화 및 소비자 신뢰확보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비벡터링 기술 이용 시설 원예작물 주요 병 방제기술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 박기춘	063-238-2302
		농촌지도사 임기정	063-238-2311

□ 목적

- 뒤영벌 이용 비벡터링(Bee-vectoring)¹⁾ 기술 적용으로 시설 원예 주요 병 관리를 통한 친환경 농업 및 생력방제 실현
- 주요 식물병 작물보호제 사용량 절감 및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 추진방향

- 뒤영벌 이용 비벡터링 기술에 대한 이해제고와 현장 적용 강화
- 뒤영벌 이용 비벡터링 기술 적용을 통한 친환경 원예작물 안정생산지원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비벡터링 기술 적용을 위한 기초기반 기술 확립('13, 농과원)
- 비벡터링 기술 이용을 위한 새로운 분배장치 모델개발('13, 농과원)
- 망사케이지를 이용한 미생물제제 선발기술 확립('13, 농과원)
- 매개기술에 이용 가능한 생물농약 3종 선발('13, 농과원)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영농활용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 농업기술 → 영농기술 → 영농활용정보
 ○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책자 검색

□ 사업규모

- 사 업 비 : 312백만원(개소당 26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1ha 이상(5농가 이상)

1) Bee-Vectoring (화분매개충 이용 생물적방제제 매개) 기술은 화분매개충이 수분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는 미생물제제를 식물체에 날라줌으로써 친환경적 방제를 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신기술임

□ 사업량 : 12개소

시 도	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대구	인천
개소수	12	1	2	1	2	2	1	1	1	1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뒤영벌 이용 비벡터링 기술적용을 통한 주요 병 방제
- 뒤영벌 이용 비벡터링 기술에 이용 가능한 생물농약 활용기술
- 뒤영벌 이용 비벡터링 분배장치 활용기술

○ 지원범위 : 뒤영벌통, 분배장치, 생물농약 등

□ 사업대상

- 시설토마토·시설고추 생산자 단체(작목반, 연구회, 영농조합법인 등)

□ 사업추진 체계 및 지원방식 등

- 뒤영벌 이용 시설토마토, 시설고추 재배 지역(친환경 재배농가 우대)

□ 기대효과

- 시설토마토 주요 병방제 노동력 절감 및 효과 증대를 통한 작물 생산성 향상
 - 친환경 시설토마토 잿빛곰팡이병 피해과율: 5% → 0.25%이하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시설작물 자동 관수 및 관비(물+비료) 시스템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 박기춘	063-238-2302
		농촌지도사 임기정	063-238-2311

□ 목적

- 토양수분장력계를 활용한 관수 및 관비 자동화로 노동력 농가의 노동력 절감

□ 추진방향

- 시설작물 관수 및 관비 자동화 기술의 신속한 현장적용 및 확산 지원
- 관수 및 관비의 효율적 관리 및 농가 노동력 절감 효과 극대화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시설 풋고추 및 애호박 물절약 기술('16, 농과원)
- 토양용적수분센서 활용 토양수분 모니터링 및 자동관수방법('19, 농과원)
- 용량수분센서 이용 자동 관수시 용적수분함량 조건표 활용('17, 농과원)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영농활용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 농업기술 → 영농기술 → 영농활용정보
-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책자 검색

□ 사업규모

- 사업비 : 572백만원(개소당 26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모 : 개소당 2.5ha 이상(10농가 내외)

□ 사업량 : 22개소

시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대구	인천	울산
개소수	22	1	3	1	3	3	2	2	2	2	1	1	1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작물 생육단계별 관수 개시기준을 참조하여 자동 관수 실시
- 작물 생육단계별 1주 단위 관비 처방량에 따라 물통에 비료를 넣어 물과 비료를 자동 공급

○ 지원범위 : 관수제어장치, 텐시오미터, 유량계 등

□ 사업대상

○ 시설작물을 재배하는 생산자 및 단체(작목반, 연구회, 영농조합법인 등)

- 대상작물 : 애호박, 수박, 풋고추, 단고추,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열무, 배추

□ 사업추진 체계 및 지원방식 등

○ 텐시오미터를 활용 자동 관수 및 관비 시스템 설치 활용

○ 작물별 관수 개시기준을 참조하여 자동 관개 실시

○ 사업 추진과정의 수량, 품질, 소득 등 성과 분석을 위한 경영기록장 작성

○ 사업 성과분석 및 기술 확산을 위한 현장교육장으로 활용, 성과홍보

□ 기대효과

○ 작물 생육단계별 관비 적정 공급으로 물, 비료 절약 등 경영비 절감

○ 토양 양·수분 균형공급으로 염류집적 예방 및 작물 생산성 증대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작물 수분스트레스 기반 노지 스마트 관개시스템 기술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 김유호	063-238-2319
		농업연구사 염성현	063-238-2303

□ 목 적

- 밭작물 물관리 자동화 기술을 통해 부족한 노동력 문제 해결, 농업 경쟁력 향상 및 효율화
- 노지 스마트 관개기술의 신속한 확산 및 농가 기술수준 향상과 농업 경쟁력 제고

□ 추진방향

- 기상, 토양정보 및 작물정보를 이용한 신속한 물관리 기술 현장적용 및 확산 지원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인공지능 이용 작물 수분스트레스 기반 스마트 관개시스템 개발(17~19, 농과원)
 - 적외선 센서, 기상센서, 토양센서를 이용해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
 - 작물의 수분스트레스 여부를 신속하게 진단 및 관개시기를 결정하는 기술
 - 기상정보를 이용한 작물 증발산량 혹은 토양수분함량을 기반으로 한 관개량 결정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영농활용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 농업기술 → 영농기술 → 영농활용정보
-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책자 검색

□ 사업규모

- 사업비 : 270백만원(개소당 3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1ha 이상(2~3농가, * 2농가 권장)
 - 시범기술 적용 규모: 1,000㎡ 수준(관행대비 사업성과 평가)

□ 사업량: 9개소

구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개소수	9	1	1	2	2	1	2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작물 재배환경(토양, 기상) 및 작물 반응정보(엽온) 실시간 계측 및 정보 제공
- 엽온, 토양 및 기상정보를 이용한 작물 수분스트레스 진단 및 자동 관개
- 사용자 편이를 위한 관개시스템 원격 제어 및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

○ 지원범위

- 센서(엽온, 토양수분, 기상정보), 원격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 및 관개 제어기 등
- * 인근 기상관측소가 없을 경우 별도로 기상센서 구입 필요

□ 사업대상

○ 사과, 복숭아 주산단지 작목반 및 연구회 등

- * 사과·복숭아 외 작목은 적용 불가, 경사지가 아닌 평탄지 위치 농가선정, 작목 수령차가 크지 않은 농가선정(시범과 관행 간 수령대가 비슷하도록 선택)

□ 사업추진체계 및 요령

○ 센서 및 원격 데이터 송·수신시스템을 사과·복숭아 단지(평탄지)에 설치

- 관수시설(스프링클러·점적관수) 보유 및 유·무선 인터넷 설치 농가, 용수 상시공급 가능 농가
- * 전자밸브·물탱크·펌프, 유량계 등 추가 설치
- * 관행(시스템 미설치) 대비 시범사업 효과분석 및 시스템 자동운동을 위해 구간별 개별 설치하고 반드시 사업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품목으로 구입

○ 사업 추진과정의 수량, 품질, 소득 등 성과분석을 위한 경영기록장 작성(권장)

○ 신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단계별 현장교육 및 평가회 등 개최

○ 농가현황 주소 ATIS 입력시 장비보관 사업장이나 시범포 주소 입력

□ 기대효과

○ 생산성 증대 및 품질 향상, 관개소요 노동력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 노력 절감 비용: 약 9억원/년, 연간 농가소득 476억원 증대

○ 작물생육시기에 따른 적기, 적정 관수로 농업용수 절약

- 농업용수 절약: 약 11백만톤/년(약 14개 농업용 저수지 용량)

- * 우리나라 전체 사과 재배면적(33,234ha)의 20%(6,647ha) 적용 시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IoT 농기계 교통안전 및 사고감지 알람 기술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 김유호	063-238-2319
		농업연구사 염성현	063-238-2303

□ 목 적

- 사물인터넷 융합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농기계 교통안전시스템 기술의 현장적용으로 농기계 사고예방 및 안전한 농촌 환경 조성

□ 추진방향

- 농기계사고 예방 ICT 융합 신기술로서 IoT, 센싱, 통신 등 첨단기술 기능 구현
- IoT 기반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농기계부착 단말기 설치로 교통사고 예방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농기계교통안전 및 사고감지 알람시스템 개발('18, 농과원)
 - 교통안전표지판(농기계 주행 알림), 농기계 부착 단말기(사고감지 알람)
- 기술 보완 시작품 제작 및 성능평가('19, 농과원)
 - IoT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전후 차량 평균속도 감속 효과('19, 장성)
 - * 스피드건으로 자동차 1,236대 속도 측정한 결과 속도 9~10% 감속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영농활용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 농업기술 → 영농기술 → 영농활용정보
 ○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책자 검색

□ 사업규모

- 사업비 : 300백만원(개소당 6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교통안전표지판 3대, 단말기 50대 등

□ 사업량: 5개소

구분	계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인천
개소수	5	1	1	1	1	1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교통안전표지판(저속주행 농기계 알림 장치) : IoT 교통표지판에 전방 농기계 접근 정보(농기계 종류, 주행속도, 접근거리, 운전주의신호 등)를 실시간 제공
- 농기계 사고감지 및 정보전달 단말기(감지센서 및 무선통신) : 주행 중인 농기계 사고 발생시 실시간 사고정보(사고자, 사고위치, 사고유형 등) 전달

○ 지원범위

- IoT 교통안전표지판, IoT 농기계 부착 단말기, PC모니터링 프로그램 등

□ 사업대상

- 농기계 교통사고 다발(또는 가능성이 있는) 농촌 지역

□ 사업추진체계 및 요령

- 농기계 교통사고 및 전복·추락사고 많은 지역, 농기계 사고 횟수가 많은 지역 우선 선정
 - 지역 내 경찰청·경찰서·소방서 등 유관기관 사전협의
 - * 교통안전표지판은 사전 관계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 신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단계별 안전교육 및 평가회 개최
- 농가현황 주소 ATIS 입력시 장비보관 사업장이나 시범포 주소 입력

□ 기대효과

- 농기계 교통사고 50% 절감으로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
 - 농기계 교통사고 50% 경감시 연간 사회적 비용 650억원 절감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스마트 양봉 기술 보급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촌지도관 유혁란 농업연구사 이영보	063-238-2307 063-238-2308

□ 목적

- 수벌 번데기 생산 벌집 및 화분매개 전용 벌통 확대 보급으로 양봉 농가의 사양관리 노동력 절감
- 토종벌용 회전식 벌집 사용을 통한 봉군 관리 편리성 제공으로 토종벌 산업 경쟁력 강화

□ 추진방향

- (양봉 수벌) 수벌 번데기 생산용 벌집 매뉴얼 적용
- (양봉 화분매개) 화분매개용 꿀벌 벌통 사용 매뉴얼 적용
 - ※ ICT 기반 화분매개용 전용 벌통 및 여왕벌 위치 추적시스템은 차년도 실증연구 결과에 따라 추후 사업 포함 예정
- (한봉 소초광) 새로운 벌집에 산란하는 특성을 이용 고정식 벌집을 회전식 벌집으로 대체, 벌꿀 생산 증대에 중점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 농촌진흥법 제17조(농촌지도사업의 평가)
- 농촌진흥법 제25조2항(정부의 재정적 지원)

□ 사업규모

- 사업비 : 680백만 원(개소당 20백만 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농가 합산 100봉군 이상

□ 사업량 : 34개소

시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개소수	34	6	4	3	2	5	5	4	1	1	1	1	1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수벌 번데기 생산 전용 벌집 및 사양관리 방법
 - 탈착식 개량형 수벌집을 구성 완전한 형태로 수벌 생산
- 화분매개용 꿀벌 전용 벌통 개발
 - 기존 벌통 보다 부피가 적고 가벼워 하우스 내 이동·관리가 수월
 - 화분매개용(수박, 딸기) 꿀벌 사용 매뉴얼 제작('19)
- 개량 벌통용 회전식 토종 벌집(소광대) 개발
 - 연중 새로운 벌집을 지을 수 있어 토종꿀 생산량 증가

○ 지원범위

- (양봉 수벌) 수벌번데기 생산전용 벌집 및 보관 장비(냉동기, 건조기 등)
- (양봉 화분매개) 화분매개 꿀벌 전용 벌통, 벌통 설치 관련 재료(보온덮개, 받침대 등)
- (한봉 소초광) 개량벌통용 토종벌 생산 벌집(소광대) 구입비

□ 사업대상

- 양봉(수벌생산/화분매개 전용 벌통 이용을 희망하는) 또는 한봉(개량 벌통 사용 농가) 농가경영체(영농조합법인, 연구회, 작목반, 양봉·한봉협회 시군 지부)

※ 개소당 양봉/한봉 100봉군 내외 사육 생산자 단체(농가 합산)

□ 사업추진 체계 및 지원방식 등

- 수벌 번데기 생산용 벌집 및 화분매개 전용 꿀벌통 사업 대상은 양봉농가만 해당 됨

- 수벌 번데기 생산용 벌집·화분매개 전용 꿀벌통 및 회전식 소광대 구입 후 현장에 투입 후 그 효과를 비교구와 대조하여 성과 측정
- 개량벌통용 회전식 소광대 사업은 한봉 농가 대상으로만 한정됨
- 사업별 기술설명회(차년도 1~2월 중), 관련 전문가·사업담당자·시범 농가 참여 세부계획 검토회 개최(3월)
- 시범사업 성과 확인을 위한 사업 전 과정 경영기록장에 작성
- 사업 내용에 대한 표찰 설치 : 기술서 표준(안) 참고로 작성
- 신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단계별 교육 및 평가회 개최

□ 기대효과

- 편리한 사육 장비 사용으로 봉군 작업 환경 개선 및 편리성 증대
 - 수벌 번데기는 고단백 식품원료로 양봉농가의 새로운 틈새 산업(단백질 공급 및 동충하초 재배 등)아이템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음
 - 화분매개용 벌통 구입비 절감(76.5%↓), 기존 벌통 대비 부피·무게 감소, 운송 효율 증가 등
 - 토종벌 회전식 벌집 활용 시 벌꿀 생산량 2배 증가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 사후관리

- 성과 측정 후 사업 평가 및 환류

□ 행정사항(보고양식)

1. 농가선정 현황 및 사업계획 보고(3. 20 한)

○ 사업담당자 현황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E-mail
도 기술원			
시군센터			

○ 사업자 선정 현황

사업자	주 소(연락처)	경력	양봉/토봉	봉군수
단체명(대표자)				

※ 대표농가, 참여농가 모두 작성

○ 사업 추진계획

주요 사업 추진내용	사업비 집행계획(천원)			
	지원내역	계	국비	지방비
○				

2. 사업 추진결과 보고(11. 20 한)

○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결과

사업자명	사업내용	지원내역	사업비 집행 실적(천원)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자담	
단체명 (농가명)							

○ 사업성과

- 수벌 번데기 생산 전용 벌집 : 노동력 및 생산성

구분	사업 전	사업 후	개선율(%)	비고
작업 시간				
생산량				
약제사용 비용				꿀벌응애 방제 약제 대체 등

- 화분매개 전용 별통 보급 : 수정률 및 구입 비용 절감율

구분	인근 사업장	시범사업장	개선율(%)	비고
수정률				
구입 비용				

- 회전식 토종별집 보급 : 벌꿀 생산량 및 관리비용 절감

구분	채밀량	생산비 절감 및 봉군 증식량			비고
		별집 구입비	도거 봉군	증식 봉군	
사업전					
사업후					

○ 경제성 분석 (경영진단표 활용 분석)

구분	경제성 분석(천원/봉군)			기타 특기사항
	조수입	경영비	소득	
사업전				
사업후				

○ 지도 및 평가회 추진실적

교육		현지지도				홍보활동		평가회						
횃수 (회)	인원 (명)	횃수 (회)	인원 (명)	신문 방송 (회)	유인물 (부)	횃수	시범요인 만족도(명)							
							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족		

○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 제 점	개 선 방 안

○ 추진단계별 주요 관련사진 첨부(8매 이내)

참고 1

수벌번데기 생산 전용 벌집 사용 기술

1. 수벌번데기 생산 전용 벌집

가. 수벌의 다수확을 위한 사양관리 기술 수집 및 개선



(A)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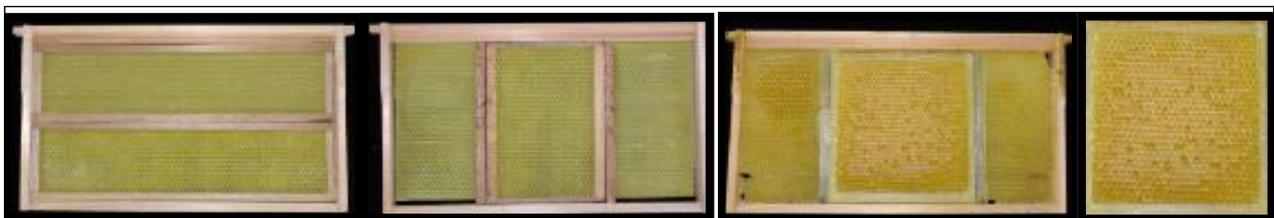
(C)

그림 1. 양봉농가 사용 수벌집.

(A) : 빈 벌집틀을 이용한 수벌양성 (B) : 불규칙적인 형태의 수벌 산란 (C) : 중앙 분리형 수벌집

- 양봉농가의 수벌양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벌집 및 벌집틀
 - 벌집 기초가 없는 상태로 자연적인 수벌집을 양성하는 방법(수벌집형성이 균일하지 못함).
 - 벌집 기초가 있는 수벌집(여왕벌의 산란이 균일하게 이루어지지 않음).
- 양질의 수벌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도의 사양관리 기술이 필요함.
- 양봉농가의 수벌 양성 목적
 - 우수여왕벌로부터 양성된 수벌의 확보를 통한 우수종의 육종
 - 꿀벌해충인 꿀벌응애 방제를 위한 친환경 방제 목적(꿀벌응애는 영양성분이 우수한 수벌에 많이 유인됨)

나. 수벌의 다수확을 위한 수벌 소초광의 개발



(A)

(B)

(C)

(D)

그림 2. 개량형 수벌집 개발.

- (A) : 상하 분리형(장점 : 수벌집과 일벌집의 상호 교환 가능, 단점 : 균일한 산란, 수벌 수확 어려움)
- (B) : 중앙 탈착형(장점 : 균일한 수벌산란, 수벌집 교환용이, 단점 : 수벌 수확 어려움)
- (C), (D) : 이중 소초광 아크릴형(장점 : 균일한 수벌산란, 수벌집 교환용이, 수벌 수확 용이)

- 수벌 다수확을 위한 개량형 수벌집(상하 분리형)의 개발 및 이용
 - 상하분리 및 탈착용으로 제작하여 상하 각각 수벌집과 일벌집을 배치하였으며 수벌 양성 시 상부에 배치된 벌집에는 유밀기에 화분 및 꿀을 저장하여 수벌 양성에 비효율적임
- 수벌 다수확을 위한 개량형 수벌집(중앙 분리형)의 개발 및 이용
 - 전체 벌집들의 중앙에 탈착이 가능한 이중 기초를 삽입한 수벌집의 이용을 통한 수벌집의 양성 시 유밀기 꿀의 저장이 없이 균일한 산란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수벌생산이 가능
 - 이중 기초를 이용하여 수벌집이 앞면과 뒷면이 분리되어 수벌수확에 따른 노동력이 절감되었음
 - 이중 수벌집의 앞뒷면을 개별적으로 이용하여 다양한 수벌번데기 이용 산물 생산에 응용이 가능
- 개량형 수벌집의 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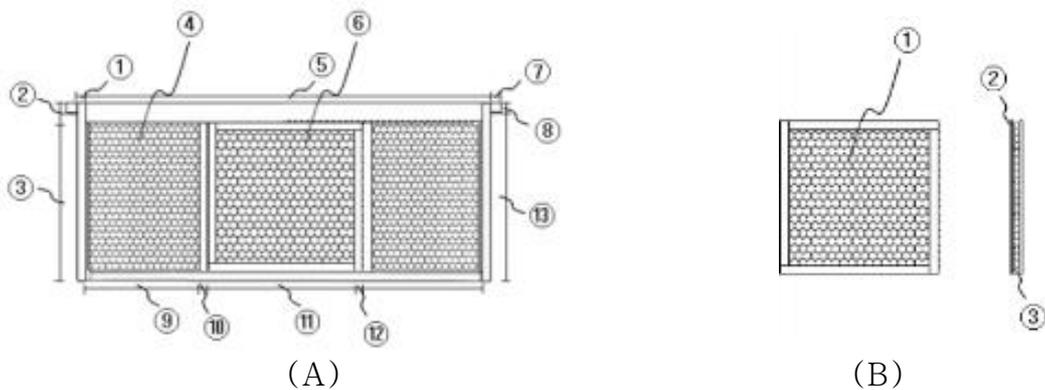


그림 3. 개량 이중 소초광 아크릴형 수벌집 도면.

- (A) : ① 1cm, ② 2.2cm, ③ 21.2cm, ④ 일벌집, ⑤ 45.8cm, ⑥ 수벌집, ⑦ 1.7cm, ⑧ 1cm, ⑨ 12.4cm, ⑩ 1cm, ⑪ 19cm, ⑫ 1cm, ⑬ 22.4cm
- (B) : ① 탈착형 수벌집, ② 0.3mm아크릴 대, ③ 이중 소초강

표 1. 개량 수벌집의 특징

수벌집 종류	수벌방 수	수확율	특징
기존 수벌집	약 2,000개	유밀기 : 약 47.9% 무밀기 : 약 59.9%	○ 생산량 규격화 불가능 ○ 수벌 수확의 어려움
개량 수벌집	약 750개	유밀기 : 약 92.8% 무밀기 : 약 93.0%	○ 생산량 규격화 가능 ○ 수확의 간편화

참고 2

화분매개용 꿀벌 전용 벌통 사용 매뉴얼

1. 딸기 화분매개용 꿀벌 벌통 표준화 및 사용법

가. 딸기 화분매개전용 꿀벌 벌통 표준화

- 기존 사육용 벌통보다 부피와 무게가 적어 운반이나 하우스 작업에 유리
- 기존 벌통과 화분매개효과는 차이가 없어 대체 가능
- 화분매개용으로 이용 후 소각 폐기가 용이
- 기존 스티로폼 벌통보다 1개월 정도 봉군수명이 길지만, 외부단열이 약하므로 하우스 투입 초기나 혹한기에 벌통을 보온해 줄 것



그림 1. 화분매개용 벌통 종류(목재, 스티로폼, 개발된 벌통 종류)

- 1) 벌통 종류 크기 : 사육용 벌통(목재, 10매, 53×35×36cm), 사육용 벌통(스티로폼, 10매, 53×35×36cm), 화분매개전용(목재, 6매, 49.5×20.5×32.5cm)

나. 딸기 화분매개전용 꿀벌 벌통 사용법

- 화분매개용 꿀벌의 준비
 - 월동 사양 전 화분매개용 봉군과 월동 봉군(꿀 수확봉군)을 나누어 관리계획 수립
 - 내역봉 양성 (내역봉 > 외역봉)
 - 소비의 구성 : 식량 저장여부 확인, 반드시 산란할 수 있는 자리 확보
 - 산란촉진을 위하여 대용화분을 반드시 투입
- 설치방법 : 입구에서 20m 지점, 벌통의 방향에 관계없이 설치, 측창 주변 피할 것
- 재배방식별 설치방법
 - (토경) 지면 또는 띄워서 설치
 - (고설) 배드 아래 피할 것, 광선이 잘 비치는 곳, 지면에서 띄워서 설치
- 방사밀도: 10,000 마리 봉군 (소비 4매)
- 봉군관리
 - 대용화분 공급 : 2개월에 1번(1.5kg)
 - 당액 : 소비 내 식량이 거의 없을 때 필요시 공급
- 유의사항 : 난방기, 탄산가스 발생기가 있는 경우 기기에서 먼 곳에 설치

2. 수박 화분매개용 꿀벌 벌통 표준화 및 사용법

가. 수박 화분매개용 꿀벌 벌통 표준화

- 기존 사육용 벌통보다 부피와 무게가 적어 운반이나 하우스 작업에 유리
- 스티로폼 벌통과 목재 벌통, 화분매개전용 벌통의 꿀벌 화분매개 효과
 - 꿀벌의 방화활동, 수박의 착과율 및 수확물 품질에서 차이 없음



화분매개전용과 사육용 벌통



사육용 스티로폼 벌통



화분매개전용 벌통

나. 수박 화분매개전용 꿀벌 벌통 사용법

- 화분매개용 꿀벌의 준비 : 여왕벌이 산란 중, 외역봉이 양성된 봉군을 준비
- 벌통의 설치방법
 - 방사시기 : 목표로 하는 화방(3~4화방)의 꽃이 피기 2~3일 전에 설치
 - 방사기간 : 약 2주 정도 후 목표화방의 착과 확인 후 빼낼 것
 - 설치 방법 및 방사량

방사시기	11월, 3월(반축성, 억제)	12월~2월(축성)
방사량 (660m ²)	5,000마리(소비 2매)	7,500마리(소비 2~3매 이상)
방사위치	시설하우스 입구로부터 10m 이내	시설하우스 입구로부터 20 ~ 50m
벌통설치	출입문 반대방향으로 두둑사이 곁에 설치	두둑위에 올려 야간에 보온비닐이 덮이도록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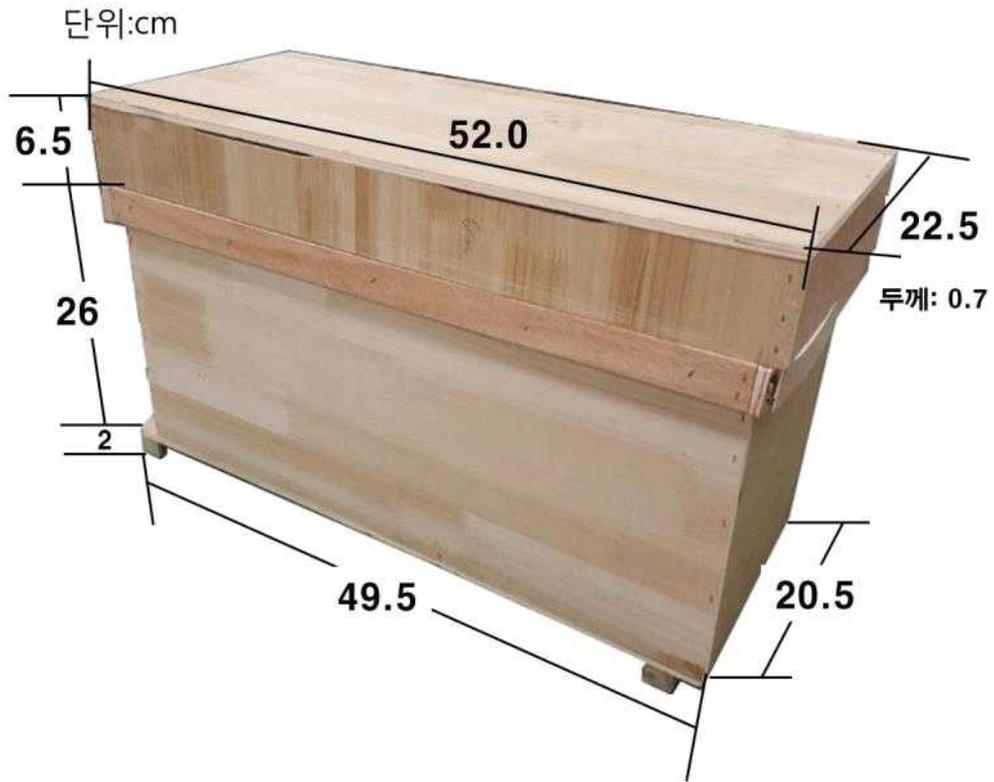
이랑에 설치(3월 이후)



두둑 위 설치(혹한기)

- 꿀벌의 이용효과
 - 인공수분보다 다소 뛰어난 착과율, 같은 수준의 수박 품질
 - 인공수분 대비 수분비용 58% 절감, 164,000원/10a의 수익률

<화분매개 전용 벌통>



<먹이공급 겸용 개포가 안착된 화분매개전용 벌통>



<수직사양기가 없는 개발 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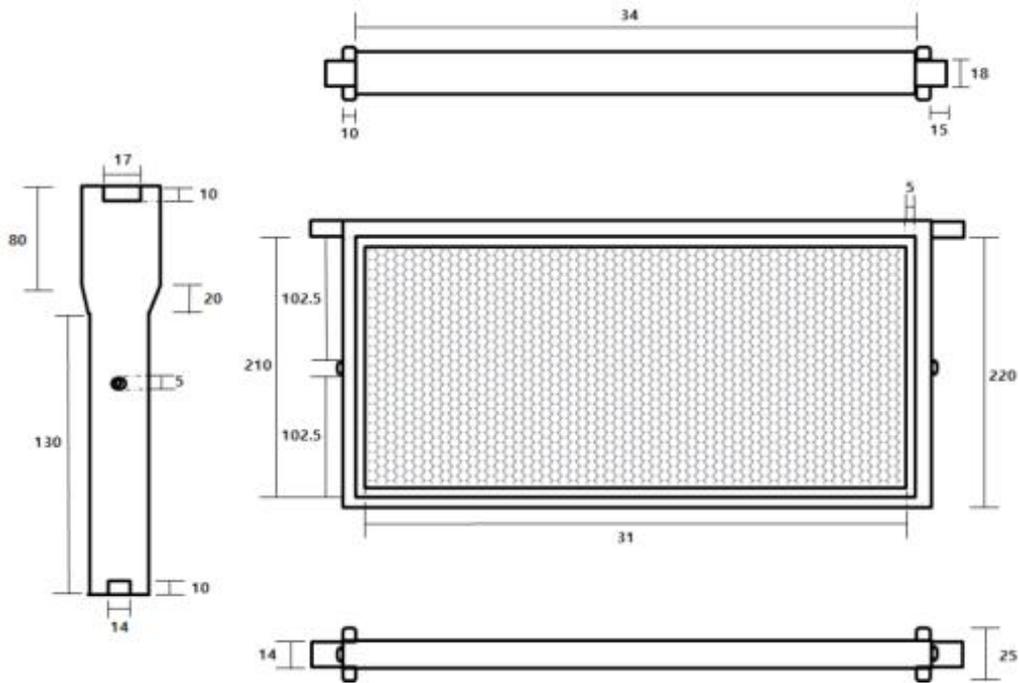


<꿀벌 벌통 위에 개포 내에 설탕물과 화분공급>

참고 3

토종벌 회전식 벌집 및 사용 효과

□ 벌집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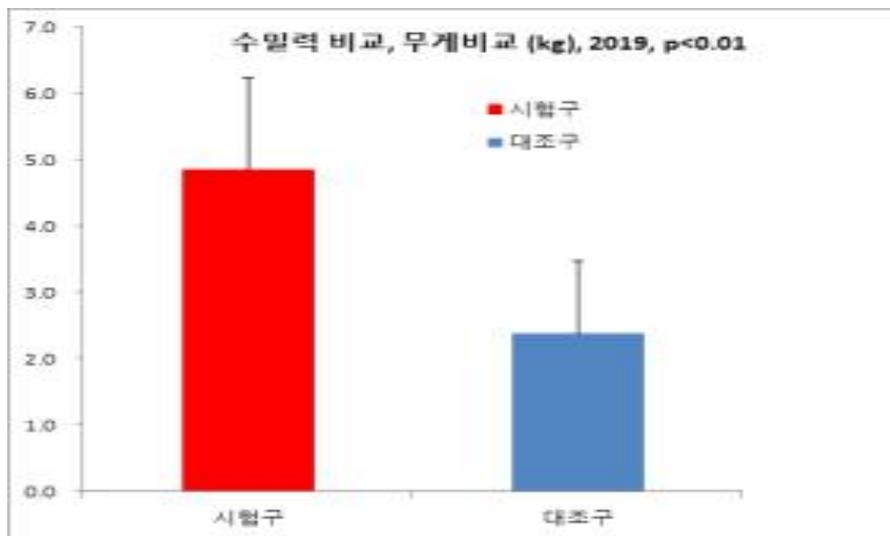
회전식 벌집



벌집 조성



벌꿀 채취 전 벌집



기능성 다겹보온커튼 기술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 김유호	063-238-2319
		농업연구사 염성현	063-238-2303

□ 목 적

- 연동형 비닐온실 난방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다겹보온커튼을 개발하여 영농현장에 보급 촉진
- 통기 및 방수 기능성 다겹보온커튼 시범을 통한 온실 내 습도환경 개선

□ 추진방향

- 원예시설의 겨울철 난방비 절감 및 온실 내 습도 등 재배환경 개선
- 온실 내 통기·방수 기능성 다겹보온커튼 적용기술 확립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난방에너지 절감형 다지붕 연동온실 다겹보온커튼 시스템 개발('15~'17, 농과원)
 - * 야간 기온: 알루미늄스크린 설치 온실에 비해 3~6℃ 정도 높음
 - * 야간 상대습도: 알루미늄스크린 설치 온실에 비해 20% 정도 낮음
 - * 다겹보온커튼 구성: 미니마트+통기·방수 기능성 부직포+중공사슴+통기·방수 기능성 부직포+망사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영농활용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 농업기술 → 영농기술 → 영농활용정보
-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책자 검색

□ 사업규모

- 사업비 : 1,330백만원(개소당 7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연동형 비닐온실 3,000㎡ 내외(측면부 포함) 또는 4,000㎡ 내외(측면부 제외)

□ 사업량: 19개소

구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천
개소수	19	4	2	1	2	2	2	2	2	1	1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연동형 비닐온실의 보온성 향상으로 난방비용 절감
- 온실의 통기 및 방수 기능성 다겹보온커튼 시범을 통한 온실 내 습도환경 개선
- 보온커튼 두께(5~15mm)가 얇아지면서 랙-피니언 개폐방식 적용(광합성량 증가)

○ 지원범위

- 기능성(통기·방수) 다겹보온커튼 및 설치에 필요한 농자재 등

□ 사업대상

- 시설원에 작목반, 연구회 및 생산자 단체 등

□ 사업추진체계 및 요령

-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 딸기, 화훼류 등을 재배(겨울철 일정기간 난방가온)하는 연동형 비닐온실에 통기·방수 기능성 다겹보온커튼을 정밀 시공

○ 연동형 비닐온실 전체에 시범사업 기술을 적용하여야 함

- 온실은 연동형 비닐온실 3,000㎡ 내외로 독립되어 있어야 함(전체 시설면적 중 3,000㎡ 내외를 사업대상으로 하고, 그 외 시설면적에 기존 또는 다른 보온커튼 적용은 불가)
- 3,000㎡ 이상의 경우에는 사업예산을 고려하여 측면부에 기존 또는 다른 보온커튼을 적용할 수 있으나 보온에 문제가 없어야 함
- 벤로형(다지붕) 및 1-2W형 등의 비닐온실에 랙-피니언식과 수평예인식으로 적용가능 (수평권취식은 사업담당자와 협의)

○ 신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단계별 안전교육 및 평가회 개최

○ 농가현황 주소 ATIS 입력시 장비보관 사업장이나 시범포 주소 입력

□ 기대효과

- 연동형 비닐온실의 알루미늄 스크린 대비 난방에너지 절감
 - 통기 및 방수 기능성 다겹 보온커튼으로 난방에너지 19% 절감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고품질 홍삼 생산기술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촌지도관 유혁란 농업연구사 이영보	063-238-2307 063-238-2308

□ 목적

- 건강기능 개선에 효과가 검증된 홍삼의 생산기술 확립 및 기술 보급
- 고품질 홍삼 생산으로 양잠농가의 소득증대 및 산업 기반 확대

□ 추진방향

- 양잠 주산단지, 마을 대상별 홍삼 표준재배 단지 조성
- 홍삼 처리 공정별 위생적 사업 수행으로 품질 고급화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 농촌진흥법 제17조(농촌지도사업의 평가)
- 농촌진흥법 제25조2항(정부의 재정적 지원)

□ 사업규모

- 사업비 : 800백만원(개소당 20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규모 : 개소당 연간 홍삼 300kg 내외 생산

□ 사업량 : 4개소

시도	계	전북	경북	경남
개소수	4	2	1	1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홍잠의 「생산기준」에 따른 연중 대량 생산 및 보급 체계
 - 숙잠의 수거·전처리·전처리시 냉장보관·세척 및 익히기 등
 - 익힌 숙잠의 냉동처리·냉동 후 건조·보관 및 분말화·제품화 등 일관체계화
 - * 익히는 작업 이후부터는 청결한 시설에서 수행(HACCP 적용)
- 지원범위 : 가공시설 신축 또는 리모델링, 스팀 찜기, 조·미 분쇄기 등 가공장비

□ 사업대상

- 양잠 주산단지 및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연구회, 작목반 등)

□ 사업추진 체계 및 지원방식 등

- 시범농가 대상 가공사업장 설치 및 홍잠 가공 기술 교육·컨설팅 실시
 - 위생적인 누에 사육, 수확, 가공장 구조, 환경 조성, 장비 사용법, 홍잠품질기준
 - 재료 보관(냉장·냉동), 찜기, 분쇄기, 건조기 등 가공 동선에 맞는 장비 구비
 - 상품포장, 유통 판매, 홍보 컨설팅 등
- 사업 추진과정의 투입된 사업비, 생산량 등 성과 분석을 위한 경영기록장 및 생산일지 작성 점검
- 사업장 표찰을 설치하되 규격 및 내용은 기술서 표준(안)을 참고로 제작
- 사업 성과분석 및 기술 확산을 위한 현장교육장으로 활용, 성과홍보
 - * 개선사항 발굴, 성과분석 및 기술 확산을 위한 평가회 개최

□ 기대효과

- 홍잠의 연중 안정생산 및 농가보급으로 소득 향상
 - 농가 조수익(예상) : 540만원/10a

□ 행정사항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 사후관리

- 성과 측정 후 사업 평가 및 환류

□ 행정사항(보고양식)

1. 농가선정 현황 및 사업계획 보고(3. 20 한)

○ 사업담당자 현황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E-mail
도 기술원			
시군센터			

○ 사업자 선정 현황

사업자	주 소(연락처)	경력	홍잠
			생산량(kg)
단체명 (대표자)			

※ 대표농가, 참여농가 모두 작성

○ 사업 추진계획

주요 사업 추진내용	사업비 집행계획(천원)			
	지원내역	계	국비	지방비
○ ○				

2. 사업 추진결과 보고(11. 20 한)

○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결과

사업자명	사업내용	지원내역	사업비 집행 실적(천원)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자담	
단체명(대표자)							

○ 사업성과

- 홍잠 생산 및 소득향상 효과(농가별 작성)

시군	구분	홍잠생산		제품판매(kg, 천원)			비고
		누에 생산량(kg)	홍잠 생산량(kg)	제품명	수량	판매액	
	사업후						
	사업전						

○ 경제성 분석(경영진단표 활용 분석)

구분	경제성 분석(천원/봉군)			기타 특기사항
	조수입	경영비	소득	
사업후				
사업전				

○ 지도 및 평가회 추진실적

교육		현지지도		홍보활동		평가회						
횃수 (회)	인원 (명)	횃수 (회)	인원 (명)	신문 방송 (회)	유인물 (부)	횃수	시범요인 만족도(명)					
							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족

○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 제 점	개 선 방 안

○ 추진단계별 주요 관련사진 첨부(8매 이내)

매실 가공기계 기술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 김유호	063-238-2319
		농업연구사 염성현	063-238-2303

□ 목 적

- 생과 위주 매실 유통을 가공품 유통으로 전환하여 매실 수요 창출
- 부가가치가 높은 장아찌, 잼 등 다양한 가공품 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

□ 추진방향

- 매실수요 확대 및 부가가치가 높은 매실 가공품 생산을 위한 가공 기계 기술 확립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공장용 매실 씨 제거장치 개발('19, 농과원)
 - 공급, 이송, 씨 제거, 과육절단 및 배출이 자동으로 이루어짐
 - * 인력절감(명): (수입산, 공급+자세정렬) 8 → (시작기, 자세정렬) 2
 - 생산 효율이 높으면서도 작업자가 다칠 위험이 적어 안전함
 - * 작업성능 216kg/시간, 노력 56.6%↓, 비용 15.2%↓
- 매실 농가 및 가공업체 대상 현장연사회('19, 광양)
 - 설문조사 결과: 작업성능 우수 83%, 취급편리 90%, 보급 필요 90%
- 매실 수확후 가공기계 시스템 현장실증('20, 하동)
 - 씨제거 및 과육절단 → 세척(버블) → 탈수(공기) 연속작업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영농활용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 농업기술 → 영농기술 → 영농활용정보
-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책자 검색

□ 사업규모

- 사업비 : 200백만원(개소당 5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매실가공 처리능력 연간 20톤 이상

□ 사업량: 4개소

구분	계	충북	전남	경남
개소수	4	1	2	1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매실 씨제거 → 과육절단 → 물 세척 → 탈수작업 가공처리시스템

○ 지원범위

- 매실 씨제거, 과육절단장치, 세척기, 탈수기 및 기계사용에 필요한 소모품 등
- * 매실 씨제거 및 과육절단장치, 매실 세척기, 매실 탈수기

□ 사업대상

- 농산물 가공공장 및 농산가공시설을 갖춘 농업법인회사(*농가단위가 아닌 법인체 대상)

□ 사업추진체계 및 요령

○ 매실 가공시설을 갖춘 장소에 설치하여 매실 가공품 생산

- 일정규모(1.7톤/일) 이상의 처리량 확보 필요
- 연간 처리량이 많은 지역, 공동 처리작업장, 세척기·탈수기를 구비한 곳, 가공제품 생산 경력과 유통망을 확보한 곳 우선 선정

○ 신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단계별 안전교육 및 평가회 개최

○ 농가현황 주소 ATIS 입력시 장비보관 사업장이나 시범포 주소 입력

□ 기대효과

○ 다양한 매실 가공품 생산으로 수요창출 및 농가 소득 향상

- 매실을 장아찌로 가공하면 생과에 비해 부가가치 32배 향상
- * 생과 1,552원/kg('19, 가락시장) → 매실 장아찌 49,500(9개 업체 평균)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농촌자원 활용 치유프로그램 보급사업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촌지도관 피정의	063-238-2313
		농업연구사 김세나	063-238-2314
		농업연구사 이영보	063-234-2308

□ 목적

- 농촌치유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소득원 발굴
- 곤충과 연계된 치유기능 상품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원 발굴 및 국민 정서 함양

□ 추진방향

<마을형>

- 마을경관·문화콘텐츠·인적자원을 활용한 치유프로그램 개발
- 치유형 농촌관광마을 선정 평가 지표, 프로그램 개발 가이드 활용
- 치유프로그램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기 설치로 신뢰성 확보

<경영체형>

- 정서곤충 사육시설 및 관련 치유 프로그램 개발, 과학적 운영
- 주요 대상과 핵심활동, 운영인력과 역량에 맞는 서비스 상품 개발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조, 제15조, 제16조
- 치유농업법 제1조, 제8조, 제10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 18조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제14조
-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

□ 사업규모

- 사업비: 880백만원
- <마을형> 600백만원(개소당 100백만원, 국비·지방비 각 50%)
- <경영체형> 280백만원(개소당 70백만원, 국비·지방비 각 50%)
- 규모: 농촌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공간 조성 1식

□ 사업량: 10개소

- 10개소(마을형 6개소, 경영체형 4개소)

유형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마을형	6	1	1	1	1	-	-	1	1	-
경영체형	4	-	1	1	-	1	1	-	-	-

□ 사업내용

○ 시범요인

<마을형(공유자원 활용)>

- 치유프로그램 유형의 현지 적용 및 운영 매뉴얼 개발
- 주민참여형 치유관광 서비스를 위한 숙박·식단 상품개발 운영, 운영자 교육 훈련
- 프로그램 유형별 실내·외 치유공간 조성(교류형·휴식형·운동형)
- 치유과학실 설치 및 운영

<경영체형(곤충자원 활용)>

- 곤충매개 치유프로그램에 필요한 환경 조성(체험장 등)
- 심리치유 가능 곤충 선발(나비, 귀뚜라미 등) 및 적용 프로그램 개발
- 곤충·치유 전문가 연계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 관련 기술

- 농촌치유자원의 사업화 방법('18)
- 소방관 심신건강 농촌치유 프로그램 개발('18)
- 농촌자원의 치유관광 활용기술 개발 및 현장적용 연구('18~'20)
- 치유형 농촌관광마을·농촌관광프로그램 평가지표, 운영가이드 개발
- 곤충·생태·치유프로그램 '호랑나비와 함께 날자'(2019)
- 마음을 치유하는 '왕귀뚜라미'(2020)
- 의식주로 즐기는 텃밭정원 이야기, 텃밭정원의 구획 디자인(농촌진흥청 e-book'농서남북')

* '농사로' : 치유농업, 텃밭, 원예치료, 팜투테이블 등 키워드 검색

○ 지원범위 * 건물 신축·증축 비용 지원 불가

<마을형(공유자원 활용)>

- 치유환경에 알맞는 공간 조성, 치유프로그램 활용 수익구조 창출 방안 등 컨설팅, 주민 교육 훈련 등
- 치유 프로그램 관련 시설 및 장비 구입설치, 교재, 교구 구비

<경영체형(곤충자원 활용)>

- 치유 프로그램 개발 운영, 컨설팅, 교육, 효과 분석 등

□ 사업대상

○ <마을형(공유자원 활용)>

- 치유관련 농업 및 경관 소재, 행정 및 서비스 인적자원 등을 보유한 마을 (청정 환경을 보유한 마을 우선 선정)

○ <경영체형(곤충자원 활용)> 지역 내 2농가 이상 경영체 참여(영농조합법인 등)

* 법인구성 없이 2농가 이상 개별농가의 공동 참여 가능, 공동 참여 확인 요망

□ 사업추진 체계 및 지원방식 등

○ 추진체계 및 지원방식

- (농촌진흥청) 기본계획 수립, 예산확보, 모니터링, 사업평가, 성과확산, 개발기술지원, 교육, 워크숍, 자료제공 등
 - (농업기술원) 사업 점검·지도·평가, 사례 발굴,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
 - (농업기술센터) 사업대상자 선정·관리, 사업계획·결과보고, 사업자 교육 등
 - (사업농가) 사업계획 수립·추진, 교육참여, 사업장 홍보 등
- * ATIS 승인완료 후 사업비 교부결정(시군센터)

○ 마을형 사업 추진 요령

- (마을 선정) 마을 어메니티, 식사·숙박 기반시설, 프로그램 운영 인력 등이 중요하므로 기반이 있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등 우선 선정
- (추진위원회 구성) 치유프로그램 운영 준비모임 조직, 10명 내외
- (프로그램 개발)
 - ① 프로그램 : 치유식단, 치유숙박, 마을공간·전통문화 및 농업 소재 이용 치유타일 등 프로그램
 - * 숙박, 심신치유 등 일부 프로그램은 지역의 시설,전문인력 연계 가능
 - ② 프로그램 유형: 당일형, 1박 2일형, 2박 3일형 등
- (필수 장비) HRV(자율신경) 측정기기 2대 이상 설치
- (컨설팅) 컨설팅업체(컨설턴트)가 농촌진흥청 주관 사업설명회, 교육에 1회이상 참여토록 해야 함
- (교육훈련) 주민 전체, 정예 진행요원 교육 구분 필요
- (프로그램 시연회) 도·시군담당 필히 포함, 1회 이상 개최
- (사업장 관리) 마을에서 관리규정을 만들고 준수,
 - *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임을 알리는 표찰을 설치(법령 규격 따름)
- (단계적 발전) 사업의 안정화를 위한 단계별 목표설정
 - 1년차) 프로그램 개발, 시설 조성, 1박프로그램 시연회
 - 2년차) 기관 단체 연수 유치, 지역 협업 네트워크 구성
 - 3년차) 치유마을 프로그램 조달 등록, 운영체계 안정화

□ 기대효과

- 농촌 고유자원 활용 치유콘텐츠 개발, 일반적 체험 프로그램과 차별화
- 고객(핵심 타겟층)에 맞는 관광상품 개발로 농촌관광 고도화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참고

관련 연구현황

□ 필요성

○ (시장변화) 소비트렌드 반영으로 정체된 농촌관광의 새로운 활로 모색이 절실

- 일회성 체험활동으로 인한 체류프로그램 부재, 재방문객 유도 미흡

* 농촌관광 만족도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점('16, 농진청) : 관광콘텐츠(63.7점)

- 농촌관광객의 관광 동기는 '일상탈출·휴식'에 대한 동기가 가장 높고, 활동은 '휴식·휴양'에 대한 선호가 높아 치유형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농촌관광 동기 : 일상탈출·휴식(47.1%, 1위), 선호활동 : 휴식·휴양(27.6%, 1위)(농촌진흥청, 2019)

- 신체적 질환이 대다수를 차지했던 과거와 달리 현대인들은 정신적 피로, 번아웃 증후군, 공황장애 등 많은 다양한 정신 질환과 비만, 대사성 질환 등 만성질환이 사회문제로 대두

* 전세계 인구의 30%가 비만 또는 과체중(미국 워싱턴대 건강측정평가연구소, 2014)

* 한국인의 58.9%가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 경험(The Statistical Portal, 2015), 2020년 경 우울증이 모든 연령에서 나타나는 질환 중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세계보건기구, 2014)

- 조화로운 삶에 대한 가치 확산, 치유·힐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며 치유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으나 소비자의 수요 충족 미흡

○ (해결방안) 농촌의 다양한 치유자원 활용 맞춤형 프로그램 도입·운영

- 치유자원을 소재로 농촌다움의 지역정체성과 다양한 지역문화 콘텐츠 경험, 주민과의 관계형성 등으로 심신의 스트레스 해소와 일상회복력 증진

- 소비자 선호를 바탕으로 한 세분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소비자의 만족도 및 치유프로그램의 효과 증대

* 농촌 치유관광객이 선호하는 여행일정 : 평균 2.4일('19, 농과원)

* 선호하는 치유시설 : 산책로 15.8%, 힐링푸드 체험시설 10.4%, 요가·명상시설 10.3%, 숙박시설 10.0%, 온천요법 및 사우나시설 9.8%, 족욕시설 9.3%, 치유정원 8.9% 등('19, 농과원)

□ 기술 개발 내용

○ 농촌자원의 치유관광 활용기술개발 및 현장적용 연구('18~'20)

○ 치유형 농촌관광마을 선정지표 개발(28항목)

- 환경자원(자연자원, 지역문화자원, 풍경자원), 공동체자원(주민참여, 리더역량, 관리운영), 시설자원(숙박시설, 문화체험시설) 등

○ 치유형 농촌관광 프로그램 평가지표 개발(19항목)

- 치유형, 프로그램 전문성, 장소성, 매력성, 경관성, 만족, 행동의도 등

○ 유형별 치유형 농촌관광 프로그램 현장시연 및 운영 가이드 개발:3유형

- 유형별(교류치유형, 휴식치유형, 운동치유형) 주요대상, 핵심활동, 필요어건, 운영방법, 운영인력, 운영자 필요 역량, 안전 및 위생관리 방안 등

- 유형별 치유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심리적 치유 효과

* 교류치유형 프로그램:

삶의 만족도 향상(3.45→3.85점/5점 척도), 무력감 감소(2.08→1.80).

* 휴식치유형 프로그램

주관적 행복감 향상(3.90→4.30점/5점 척도), 회복 경험 인식 향상(3.96→4.31), 마음챙김 향상(3.65→4.27)

* 운동치유형 프로그램:

회복탄력성 향상(3.89→4.15점/5점 척도), 주의회복력 향상(3.37→4.23), 주관적 활력도 향상(3.70→4.14)

○ 유형별 치유마을 조성 모델 개발:3유형

- 유형별 기본모델 개발, 시설개선 및 신규 도입시설 제안

* 교류치유형: 커뮤니티 공간, 마을판매장, 야외 전시공간, 공동치유텃밭, 농장 손님맞이 및 작업공간 등

* 휴식치유형: 수치유시설, 나무그늘쉼터, 경관 감상길, 숲속쉼터 등

* 운동치유형: 힐링워킹길, 피톤치드 체험공간, 자전거 운동치유길, 어린이용 힐링에코놀이터 등

*치유형 농촌관광: 일상에서 벗어나 농촌에서 치유적 요소를 가진 관광과 체험활동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와 심신의 일상회복, 건강증진 등을 추구하는 활동

○ 치유형 농촌관광과 농촌 체험관광의 차별성

- (치유형 농촌관광) 치유적 요소를 가진 관광과 체험활동이 주요 목적이며 스트레스 해소와 심신의 일상회복, 건강증진을 기대함

- (농촌 체험관광) 농업·농촌의 경험, 여가활동, 교육체험 등이 주요 목적이며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와 경험의 확대, 교육적 효과 등을 기대함

* 치유형 농촌관광은 농촌관광의 연장선 상에서 볼 수 있으나, 치유라는 개념이 접목된 것임

<기술 위험요인 및 투입효과 등>

○ 위험요인: 치유 프로그램 참여자의 안전사고

○ 개발기술 특허여부: 해당없음

○ 농가소득 증대 등 투입효과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농촌지도관 이수미	063-238-1016
	농촌자원과	농촌지도사 홍송원	063-238-1028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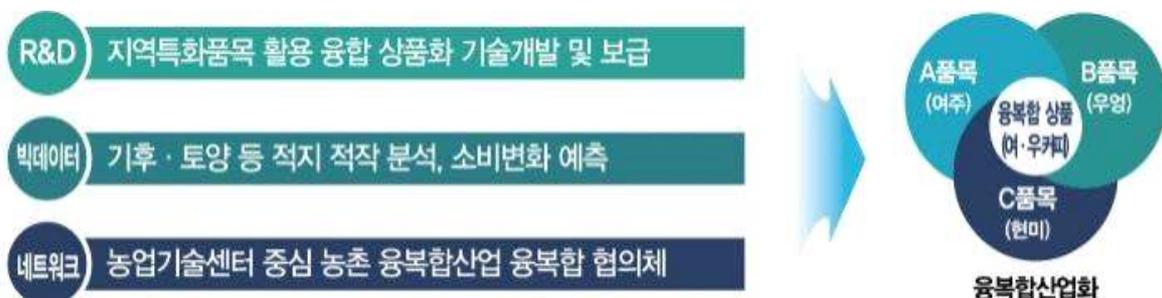
- 특화작목 및 R&D 연구개발기술, 농업·농촌자원을 연계한 융복합기술보급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특산품 육성 및 부가가치 향상

<사업의 필요성>

- ▶ 지역에서 특화작목을 육성하고 있으나 적지적작 검토, 소비 트렌드 변화 대응과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하여 지역 핵심산업으로 육성·발전에 어려움
- ▶ 지역 스스로 지역 여건에 적합한 특화작목을 선정하고 특화작목 중심으로 융복합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책 및 시범사업 필요

□ 추진방향

- 개별 작목으로 성장 효과가 낮은 여러 개의 특화작목을 서로 결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융복합 상품개발을 통한 산업화 기반 지원
 - * 사업단계별 모니터링, 성과관리, 평가를 통한 우수모델 육성 및 성과 확산
- 특화작목의 지속 성장을 위한 새로운 융복합상품 개발 및 산업화 지원
 - * 지역별 차별화된 특화품목 육성 및 융복합 상품화 관련 기술·정보 공유
- 특화작목, 연구개발기술, 빅데이터 활용 및 네트워크 구축·운영
 - * 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화 핵심기관으로 농업기술센터 역할 확립을 위한 사업기획 단계부터 산·학·연 등의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



□ 추진방식 : 사업 전년도에 사업계획서 공모·심사 및 선정

□ 공모대상 : 시군농업기술센터 * 보조사업자 : 농업법인 등

□ 사업규모

○ 사업량 : ('21) 12개소(1년차 7, 2년차 5) * 개소당 2년간 지원

○ 사업비 : ('21) 5,800백만원(1년차 2,800 2년차 3,000) * 국비·지방비 각 50%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사업량	소계	12	2	2	2	2	2	2
	1년차	7	1 (안성)	1 (진천)	2 (서산, 부여)	1 (고창)	1 (영덕)	1 (함안)
	2년차	5	1 (이천)	1 (괴산)	-	1 (장수)	1 (영광)	1 (거창)
사업비	소계	5,800	1,000	1,100	400	1,000	1,000	400
	1년차	2,800	400	400	800	400	400	400
	2년차	3,000	600	600	-	600	600	600

* 개소당 2년간 1,000백만원(1년차 400백만원, 2년차 평균 600백만원, 1년차 결과 평가로 차등 지원)

* 1년차 충남 부여, 전북 고창은 연구-지도-민간 블렌딩 모델사업 연계하여 1년간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범위

- 농업기술센터 중심의 지역단위 사업추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사업참여자의 지역 특화작목을 활용한 융복합 상품화 역량강화
- 특화작목 활용 융복합 상품의 생산·판매 등 산업화 기반 조성
- 특화작목 활용 융복합 상품·브랜드·포장 디자인 개발, 홍보·마케팅 등

○ 사업유형

유형	추진방향
품 목 융복합	지역 특화작목을 활용한 차별화된 특산품을 육성하기 위해 서로 다른 작목을 연계하고 관련 R&D 기술투입으로 새로운 융복합 상품을 개발·생산하는 유형 * 사례 : 전남 영광(모시잎송편 : 가공용쌀(보람찬)+동부(옥당)+모시잎 등)
기능 융복합	지역 특화작목을 활용한 차별화된 특산품을 육성하기 위해 서로 다른 작목의 공통성(블랙푸드 등), 상호보완성(항당뇨식품 등) 등을 하나의 기능으로 연계하고 관련 R&D기술 투입으로 새로운 융복합 상품을 개발·생산하는 유형 * 사례 : 충북 충주(항당뇨 상품화 : 여주, 우엉, 보리, 명월초 등 기능성 부각)
종합형	지역 특화작목을 활용한 차별화된 특산품을 육성하기 위해 서로 다른 작목을 활용하여 작목 간 결합(작목융복합) 및 작목별 특성 결합(기능융복합) 유형을 연계하고 관련 R&D기술 투입으로 새로운 융복합상품 개발·생산하는 유형 * 전북 군산(미식산업 : 짬뽕면(쌀+보리+밀) 수제맥주(맥주보리+쌀), 투어코스 개발)

□ 보조사업 추진체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및 관련규정 참조

○ 보조사업자 선정

- 농업기술센터는 보조사업자 선정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등 확보를 위한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 확정
- 보조금 교부조건에는 사업의 적기추진, 보조금 적정집행 및 정산, 현장점검, 성과 조사(소득, 매출, 일자리 등)에 적극 협조하는 내용 포함하도록 함
- 보조사업장(시설장비 포함)에는 중요재산관리의 책임성 강화, 사업효과 확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2조 제4항 별표3)에 따라 반드시 표찰(입간판)을 설치

○ 사업비 편성, 집행 및 정산 처리(e-나라도움)

- 농업기술센터는 사업비를 민간자본보조로 우선 편성하되 지역협의체 운영, 사업참여자 교육, 성과 확산 등을 위해 경상보조로 일부 편성 가능
- 사업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규정 등에 의거해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 즉시 등록 하고 사업완료 후 정산처리하여 실집행률 제고에 적극 협조

○ 사업추진 계획보고(ATIS 등록)

- 농업기술센터는 사업 전년도에 공모한 사업계획서를 전문가의 평가의견, 농촌진흥청 담당부서 검토의견,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등을 반영하여 수정한 사업추진 계획서를 행정사항에 명시한 기한 내 ATIS에 등록
-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센터가 검토 요청한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집행계획, 세부 추진계획 및 방법 등을 검토·보완한 후 농촌진흥청에 승인 요청
- 농촌진흥청은 농업기술센터의 사업계획서가 사업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승인요청을 반려
- 사업계획서가 반려된 경우, 해당 농업기술센터는 내용을 보완하여 재등록 하고 농업기술원은 면밀히 재검토 후 승인 요청

○ 사업추진 모니터링 및 중간보고(ATIS 등록)

- 농촌진흥청은 신규사업 희망시군 및 사업시군의 사업계획, 추진전략·방향, 성과 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융복합 기술지원 자문단 구성·운영

-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센터의 사업현황 점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도 단위 기술지원 자문단 구성·운영
- 농업기술센터는 사업을 지역단위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고 보조사업자의 역량강화,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 점검 실시
- 사업추진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보조사업 대상자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경 승인한 후 해당 농업기술원을 통해 농촌진흥청에 즉시 보고
- 단, 변경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농업기술원에 변경 승인을 요청하고 농업기술원은 변경승인 요청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변경 승인한 후 농촌진흥청에게 즉시 보고
- 농업기술센터는 상반기 사업추진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 ATIS에 등록

○ 사업추진 성과분석, 평가 및 결과보고(ATIS 등록)

- 농촌진흥청은 평가 당해연도에 1년차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추진결과를 평가하여 2년차 사업비를 차등 배정하고 사업성과분석을 위해 1년차 및 2년차 사업대상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성과조사 및 분석
 - * 성과지표: 사업참여 농가소득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일자리 창출(명), 상품개발실적(건), 지식재산권 확보실적(건), 체험방문객 수(명) 등
- 농업기술센터는 사업추진 결과보고서를 행정사항에 명시한 기한 내 ATIS에 등록하고 농업기술원은 결과보고서를 검토·보완 후 승인 요청

□ 기대효과

- 특화작목 중심의 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화 모델 육성 및 확산
- 특화작목의 부가가치 향상과 성장기반 마련으로 농가소득 증대 기여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2021년도 사업추진계획 보고 : '21. 3. 20. 한(제1호 서식)
- 2021년도 상반기 추진현황 보고 : '21. 6. 30. 한(제2호 서식)
- 2021년도 사업추진결과 보고 : '21. 11. 20. 한(제3호 서식)

떡볶이 떡 상온유통 기술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촌지도관 피정의	063-238-2313
		농업연구사 김세나	063-238-2314

□ 목적

- 유통기간 중 제품 품질유지 기술을 이용한 떡가공 농산업체의 현장 애로 해결 및 떡산업 활성화

□ 추진방향

- 떡볶이 떡 상온 유통을 위한 미생물 저감 및 차단 기술을 적용해 생산 비용 절감 및 가공 공정 효율화

□ 근거법령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20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
- 농촌진흥법 제1조, 농촌진흥법 제15조, 제16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 사업규모

- 사업비 : 800백만원(개소당 10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떡볶이 떡(조리용 떡) 가공사업장 1식

□ 사업량

도 별	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개소수	8	1	2	1	2	1	1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산침지-가열살균 복합처리 기술을 적용한 상온에서 유통 가능한 **떡볶이떡 (조리용떡)개발및 품목제조보고**

○ 관련 기술

- 상온에서 장기유통이 가능한 떡볶이 떡 제조방법(2019)

○ 지원범위

- 떡볶이떡(조리용떡) 살균기 우선 지원, 위생설비 지원 가능
- 건물 신축·증축 비용, 단순 포장재, 원료 구입비 지원 불가

□ 사업대상

- 소규모 떡볶이 떡 가공을 추진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이나 2농가 이상 공동참여자
 - HACCP 설비, 떡 가공 기반을 갖춘 사업자를 우선 선정

□ 사업추진 체계 및 지원방식 등

○ 추진체계 및 지원방식

- (농촌진흥청) 기본계획 수립, 예산확보, 모니터링, 사업평가, 성과확산, 개발 기술지원, 교육, 워크숍, 자료제공 등
- (도농업기술원) 사업 점검·지도·평가, 사례 발굴,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
- (농업기술센터) 사업대상자 선정·관리, 사업계획·결과보고, 사업자 교육 등
- (사업농가) 사업계획 수립·추진, 교육참여, 사업장 홍보 등
- * ATIS 승인완료 후 사업비 교부결정(시군센터)

○ 추진 요령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 적용후 상품화가 가능하도록 추진
-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임을 알리는 표찰을 설치(지자체 규격 따름)

□ 기대효과

○ 떡볶이 떡 유통성 연장으로 수출 확대 및 쌀 소비 활성화

- 떡볶이 떡 시장 추이 : ('19) 72,400 톤 → ('23) 176,400 (신장율 15% 전망)

□ 행정사항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 사후관리

○ 사업 당해 연도에 제품개발, 사업이후 2년차부터 소득 창출

- 사업 후 운영에 대한 결과 보고* 제출(사업완료 후 3년간 반영)

* 성과지표 : 소득증가율

효소처리 농식품 가공 소재화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촌지도관 피정의 농업연구사 김세나	063-238-2313 063-238-2314

□ 목 적

- 효소처리 기술 이용 농식품 가공 소재화를 통한 가공 이용성 증대 및 부가가치 증진

□ 추진방향

- 유용성분 추출 증진 기술 투입으로 뿌리채소 활용도 증대
- 소비자의 기호성과 편리성에 맞춘 식품 소재화 기술 적용으로 뿌리채소 가공 상품 다양화

□ 근거법령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20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
- 농촌진흥법 제1조, 농촌진흥법 제15조, 제16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 사업규모

- 사업비 : 560백만원(개소당 7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뿌리채소 효소처리 가공사업장 1식

□ 사업량 : 8개소

도 별	계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세종
개소수	8	1	1	2	1	1	1	1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효소처리 뿌리채소 추출물 이용 가공제품개발및 품목제조보고
- 관련 기술
 - 생강 유용성분 추출 증진을 위한 고압효소처리 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2017)

○ 지원범위

- 효소처리 뿌리채소 추출물 제조 시설, 장비 우선 지원, 위생설비 지원 가능
- 건물 신축·증축 비용, 단순 포장재, 원료 구입비 지원 불가

□ 사업대상

- 영농조합법인, 2농가 이상 공동참여자 * 사업대상 뿌리채소 : 생강, 더덕, 도라지

□ 사업추진 체계 및 지원방식 등

○ 추진체계 및 지원방식

- (농촌진흥청) 기본계획 수립, 예산확보, 모니터링, 사업평가, 성과확산, 개발 기술지원, 교육, 워크숍, 자료제공 등
- (도농업기술원) 사업 점검·지도·평가, 사례 발굴,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
- (농업기술센터) 사업대상자 선정·관리, 사업계획·결과보고, 사업자 교육 등
- (사업농가) 사업계획 수립·추진, 교육참여, 사업장 홍보 등

* ATIS 승인완료 후 사업비 교부결정(시군센터)

○ 추진 요령

- 사업장 조성 위치가 식품제조가공업인·허가가능지역임을 확인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 적용후 상품화가 가능하도록 추진
-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임을 알리는 표찰을 설치(지자체 규격 따름)

□ 기대효과

- 뿌리채소 추출물 활용 제품 생산시 고품분 함량과 지표성분의 함량 증가로 원료소재 생산비의 50%까지 원가절감 효과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 사후관리

- 사업 당해 연도에 제품개발, 사업이후 2년차부터 소득 창출

- 사업 후 운영에 대한 결과 보고* 제출 (사업완료 후 3년간 반영)

* 성과지표 : 소득증가율

종균 활용 장류 품질향상 기술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촌지도관 피정의 농업연구사 김세나	063-238-2313 063-238-2314

□ 목 적

- 전통장의 안전성 확보 및 연중 안정화된 생산체계 구축으로 전통장의 산업화 촉진
- 국산 농산물 이용한 장류 상품화로 부가가치 향상과 농업·농촌의 융복합 산업화 촉진

□ 추진방향

- 발효식품의 제조공정 개선과 전용 발효종균사용으로 생산원가 절감 및 품질향상으로 발효 식품산업 기반 구축

□ 근거법령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20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
- 농촌진흥법 제1조, 농촌진흥법 제15조, 제16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 사업규모

- 사업비 : 700백만원(개소당 7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장류 가공 사업장 1식

□ 사업량 : 10개소

도 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개소수	10	2	2	1	1	1	2	1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발효종균을 활용한 개량식 콩알메주 생산 및 가공제품 개발, 품목제조보고
- 관련 기술
 - 시판 황국 종균을 사용한 개량식 메주 제조법(2018)

○ 지원범위

- 종균활용 콩알메주 제조 시설, 장비 우선 지원, 위생설비 지원 가능
- 건물 신축·증축 비용, 단순 포장재, 원료 구입비 지원 불가

□ 사업대상

- 영농조합법인, 2농가 이상 공동참여자

□ 사업추진 체계 및 지원방식 등

○ 추진체계 및 지원방식

- (농촌진흥청) 기본계획 수립, 예산확보, 모니터링, 사업평가, 성과확산, 개발 기술지원, 교육, 워크숍, 자료제공 등
- (도농업기술원) 사업 점검·지도·평가, 사례 발굴,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
- (농업기술센터) 사업대상자 선정·관리, 사업계획·결과보고, 사업자 교육 등
- (사업농가) 사업계획 수립·추진, 교육참여, 사업장 홍보 등
- * ATIS 승인완료 후 사업비 교부결정(시군센터)

○ 추진 요령

- 사업장 조성 위치가 식품제조가공업인·허가가능지역임을 확인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 적용후 상품화가 가능하도록 추진
-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임을 알리는 표찰을 설치(지자체 규격 따름)

□ 기대효과

- 우리 농산물 활용 장류 생산으로 농산물 소비 높이고 부가가치 증진
- 국산 원료를 활용한 고품질의 장류 생산으로 내수시장 확보 및 국내외적 장류산업의 경쟁력 향상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 사후관리

- 사업 당해 연도에 제품개발, 사업이후 2년차부터 소득 창출
- 사업 후 운영에 대한 결과 보고* 제출 (사업완료 후 3년간 반영)
- * 성과지표 : 소득증가율

고품질 베이커리용 과일가공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촌지도관 피정의 농업연구사 김세나	063-238-2313 063-238-2314

□ 목 적

- 소비자 기호 적합성 및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과일 가공품의 다양화
- 경쟁력 있는 과일 가공 실용기술의 맞춤형 보급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 추진방향

- 고급형 베이커리시장 성장과 제과용 과일소재 수요증가에 따른 과일 가공기술 적용으로 비용 절감과 공정시간을 단축한 신수요 창출

□ 근거법령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20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
- 농촌진흥법 제1조, 농촌진흥법 제15조, 제16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 사업규모

- 사업비 : 350백만원(개소당 7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과일 가공사업장 1식

□ 사업량 : 5개소

도 별	계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세종
개소수	5	1	1	1	1	1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베이커리용 과일(복숭아, 감귤) 가공제품 개발 및 품목제조보고
- 관련 기술
 - 효소를 활용한 감귤 과피 잼 대량 생산 공정(2019), 통째로 얼려 만드는 감귤

콩포트 제조법, 크림성이 향상된 복숭아 크림 제조법, 냉동 복숭아 가공 기술 및 체험키트 정보 제공(2018)

○ 지원범위

- 과일 가공 제조 시설, 장비 우선 지원, 위생설비 지원 가능
- 건물 신축·증축 비용, 단순 포장재, 원료 구입비 지원 불가

□ 사업대상

- 영농조합법인, 2농가 이상 공동참여자

□ 사업추진 체계 및 지원방식 등

○ 추진체계 및 지원방식

- (농촌진흥청) 기본계획 수립, 예산확보, 모니터링, 사업평가, 성과확산, 개발 기술지원, 교육, 워크숍, 자료제공 등
 - (도농업기술원) 사업 점검·지도·평가, 사례 발굴,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
 - (농업기술센터) 사업대상자 선정·관리, 사업계획·결과보고, 사업자 교육 등
 - (사업농가) 사업계획 수립·추진, 교육참여, 사업장 홍보 등
- * ATIS 승인완료 후 사업비 교부결정(시군센터)

○ 추진 요령

- 사업장 조성 위치가 식품제조가공업인·허가가능지역임을 확인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 적용후 상품화가 가능하도록 추진
-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임을 알리는 표찰을 설치(지자체 규격 따름)

□ 기대효과

- 품질 좋은 먹거리 공급으로 지속 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
- 과일 가공용 국내 농산물 사용 확대로 농식품자원 신수요 창출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 사후관리

- 사업 당해 연도에 제품개발, 사업이후 2년차부터 소득 창출
 - 사업 후 운영에 대한 결과 보고* 제출 (사업완료 후 3년간 반영)
- * 성과지표 : 소득증가율

약선 소재를 이용한 쌀조청 제조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촌지도관 피정의 농업연구사 김세나	063-238-2313 063-238-2314

□ 목 적

- 약선 소재 첨가 쌀 조청의 품질개선 기술로 농산물 이용 확대
- 국산 약선 소재를 활용한 기능성 조청 상품화로 부가가치 증진 및 산업화 촉진

□ 추진방향

- 약선 소재를 이용해 기능성이 향상된 약선 조청을 개발함으로써 조청의 기호도 및 풍미를 증진시키고 쌀 조청 제조공정을 효율화

□ 근거법령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20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
- 농촌진흥법 제1조, 농촌진흥법 제15조, 제16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 사업규모

- 사업비 : 420백만원(개소당 7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조청 가공사업장 1식

□ 사업량 : 6개소

도 별	계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인천
개소수	6	1	1	1	1	1	1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황기/백수오/ 지황/ 생강/ 아로니아 약선 조청 1종 이상 개발 및 품목제조보고

○ 관련 기술

- 황기 첨가 조청 제조방법(2017), 생강 아로니아 첨가 쌀 조청 제조방법(2017)

○ 지원범위

- 조청 가공 제조 시설, 장비 우선 지원, 위생설비 지원 가능
- 건물 신축·증축 비용, 단순 포장재, 원료 구입비 지원 불가

□ 사업대상

- 영농조합법인, 2농가 이상 공동참여자

□ 사업추진 체계 및 지원방식 등

○ 추진체계 및 지원방식

- (농촌진흥청) 기본계획 수립, 예산확보, 모니터링, 사업평가, 성과확산, 개발 기술지원, 교육, 워크숍, 자료제공 등
- (도농업기술원) 사업 점검·지도·평가, 사례 발굴,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
- (농업기술센터) 사업대상자 선정·관리, 사업계획·결과보고, 사업자 교육 등
- (사업농가) 사업계획 수립·추진, 교육참여, 사업장 홍보 등
- * ATIS 승인완료 후 사업비 교부결정(시군센터)

○ 추진 요령

- 사업장 조성 위치가 식품제조가공업인·허가가능지역임을 확인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 적용후 상품화가 가능하도록 추진
-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임을 알리는 표찰을 설치(지자체 규격 따름)

□ 기대효과

- 품질 좋은 먹거리 공급으로 지속 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
- 약선 조청 개발을 통한 소비자 인식 변화 및 약선 조청의 신수요를 창출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 사후관리

- 사업 당해 연도에 제품개발, 사업이후 2년차부터 소득 창출
- 사업 후 운영에 대한 결과 보고* 제출 (사업완료 후 3년간 반영)
- * 성과지표 : 소득증가율

치유농업 육성 기술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각 소속기관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농촌지도관 박찬순 농촌지도사 임은성	063-238-1021 063-238-1017

□ 목적

- 식물과 연계된 농업자원의 치유기능 상품화를 통해 농업인 소득원 발굴 및 국민의 신체적·정서적 건강 도모

□ 추진방향

- 원예활동 등 농업활동을 통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모델 구축
- 어린이, 청·장년, 노인 등 고객 유형에 따른 농장환경 조성
- 치유고객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성 확보
-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운영자의 치유농업 역량을 갖추고, 치유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 품질, 농장환경을 조성하여 치유농업 차별화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조, 농촌진흥법 제15조, 제16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 개정안 제43조의2(치유농업의 진흥)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20. 3)

□ 사업규모

- 사업량 및 사업비: 9개소, 630백만원(개소당 7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시도별 현황

지역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인천
사업량(개소)	9	1	1	1	1	1	2	1	1

□ 사업대상

- 사업대상: 2농가 이상 참여 농업경영체(영농조합법인 등)
 - * 법인구성 없이 2농가 이상 개별 농가의 공동 참여도 가능하나 이 경우 공동 참여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 제출(합의서, 공증서 등)

□ 사업내용 및 지원범위

○ 사업내용

- 원예작물(식량작물 포함) 매개 치유 활동에 필요한 환경 구축
- 농장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 운영

※ 필수 추진내용

- 원예작물(식량작물 포함)을 활용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1식)
 - * 프로그램 내용 : 프로그램 설계, 교재, 교구
- 개발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1종에 대하여 1회 이상 시범운영 및 평가
-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치유농업 역량교육 의무 참석(사업대상자 교육)

○ 지원범위

- 치유농업프로그램 개발, 치유농장조성, 컨설팅, 교재·교구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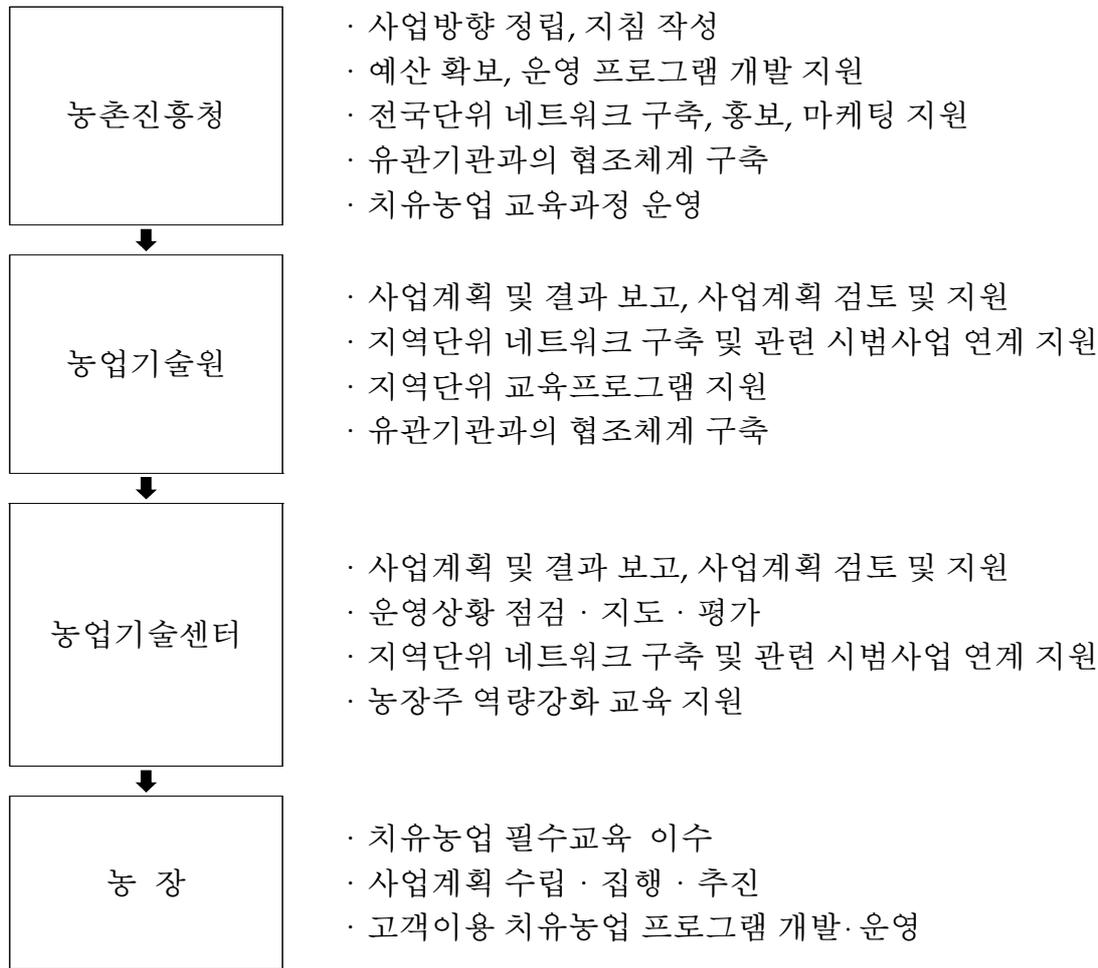
<지원제한>

- 건물 신축 및 증축 비용 지원 불가(리모델링 가능)
- 체험에 필요한 원재료, 단순 포장재 구입비, 인건비 지원 불가
단, 체험 활동과 연계된 패키지 개발 및 디자인 개발 지원은 가능

<유의사항>

- 농촌진흥청에서 사업계획 ATIS 승인이 완료된 후 사업대상자에게 교부결정할 수 있음

□ 추진체계



□ 추진요령

- 농진청에서 개발한 치유농업 기술을 프로그램에 적용
- 치매안심센터 등과 연계하여 사업 초기 사업 안정화
- 사업추진 후 사업 결과 평가회를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추진
- 표찰을 설치하되 규격 및 내용은 지방농촌진흥기관 자체적으로 결정

□ 기대효과

-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서비스 상품화로 소득원 창출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2021년도 사업추진계획 보고 : 2021. 3. 20 한
- 2021년도 상반기 추진현황 보고 : 2021. 6. 20 한
- 2021년도 사업추진결과 보고 : 2021. 11. 20 한

참고

치유농업 관련 농진청 연구·개발 기술

□ 치유농업 관련 연구과제 목록('11~'18)

연번	연구과제명	비고
1	치유농업 정착을 위한 전략개발	사업기획
2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개념 정립과 사업화 전략 개발	사업기획
3	치유형 농촌관광마을 모델 개발 및 현장적용	사업기획
4	농촌관광마을 치유관광 현황 분석 및 도입방안	사업기획
5	농업체험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	사업기획
6	치유농업 전문인력의 직무설계와 활용방안	운영역량
7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운영역량
8	치유농업 전문인력 기준 설정과 직무설계	운영역량
9	농촌관광마을 치유관광 프로그램 및 운영자 역량 개발	운영역량
10	생애 전·후반기 대상 치유농업 서비스설계 및 전략계획 연구	프로그램
11	치유관광 식단 및 가공 식품 개발	프로그램
12	치유형 농촌관광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및 적용	프로그램
13	심리치유용 체험 곤충 수요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14	농업체험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의 용어사용 기준 설정	프로그램
15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원예활동 프로그램 구축	프로그램
16	사회복귀 예정자를 위한 원예활동프로그램개발 및 적용	프로그램
17	스트레스 조절을 위한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분석	프로그램
18	심뇌혈관 질환 관리를 위한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분석	프로그램
19	예비 실버세대의 노화 적응 요구도와 치유농업 프로그램 효과 분석	프로그램
20	실버세대 유형에 적합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기준 설정 및 평가	프로그램
21	실버세대를 고려한 치유 공간 조성과 활용 평가	프로그램
22	암환자 회복 관리를 위한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분석	프로그램
23	생애주기 맞춤형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 체계화 연구	프로그램
24	학교텃밭과 연계한 학교꼬꼬 모델 적용	프로그램
25	동물농장 모델 개발 및 활성화 방안	프로그램
26	왕귀뚜라미 이용을 위한 메뉴얼 개발	프로그램
27	이동약자를 고려한 치유공간 조성과 활용 평가	환경조성
28	왕귀뚜라미 돌보기의 노령층 심리학적 심리치유효과 구명	효과검증
29	치유농업 현황분석 및 사회경제적 기여효과 추정	효과검증
30	식물재배 활동의 작업적 요소에 따른 치료적 요인 구명	효과검증
31	식물재배 활동에서 식물 및 환경의 치료적 요인 구명	효과검증
32	식물재배 프로그램 내 인적자원 상호작용에 따른 치료적 요인 구명	효과검증
33	식물재배 프로그램의 치료효과 발현 매커니즘 구명	효과검증

세부사업: 신기술보급사업

식량작물 기술보급

찰옥수수 칼라패키지 상품화 시범
*** 옥수수 기능성 가공 및 상품화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 김영진	063-238-5370
		농업연구사 안승현	063-238-5378

□ 목적

- 다양한 색 기반 기능성 풋옥수수(찰옥수수) 재배단지 육성 및 산업화
- 소비자 well-being 수요 부응 찰옥수수 칼라패키지 상품화

□ 추진방향

- 단순 색상(흰색)에서 차별화 색상(분홍, 갈색, 진한자색)으로 소비부각
- 용도별(팝콘용, 혼반용 등) 옥수수 단지화, 품질 고급화로 경쟁력 강화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품종개발 및 레토르트 포장 기술개발
 - 품종개발 : 강원도농업기술원 옥수수 연구소(박기진, 서영호)
- 레토르트파우치 방법에 의한 찰옥수수 저장성 향상
 - 강원도농업기술원(허남기) 한국작물학회지 50(S)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영농활용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 농업기술(농사로, www.nongsaro.go.kr) → 농업기술정보 → 영농활용기술

□ 사업량 : 4개소

도 별	계	강원	충북	전남
개소수	4	1	2	1

□ 사업규모

- 사업비 : 240백만원(개소당 6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5ha 내외

□ 사업대상

- 차별화된 색상의 컬러 찰옥수수 재배 가능 단지, 작목반, 연구회, 농업법인 (영농 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용도 및 품종별 격리단지 조성 및 생산 : 품종별 1~2ha
- 소비자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한 식용 옥수수 용도별 선발 및 조합 구성
- 다양한 용도별(팝콘용, 혼반용 등) 및 기능성 옥수수 재배 등
 - * 증숙·냉동 레토르트 포장 제품 또는 간편식, 밥밑용 컬러알곡 등

○ 지원범위

- 식용 옥수수 용도별 전용품종 보급을 위한 종자
- 고품질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비료, 농약 등 농자재
- 규모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력화 농기계
 - * 사업비의 50% 이상 소요 단일품목 농기계 구입 불가(트랙터, 범용 콤바인 등)
- 식용 옥수수 상품화 기계·포장재 및 브랜드 개발
- 신기술 신품종 재배기술 교육, 홍보, 연시회 및 평가회
- 신품종 비교전시포(또는 증식포) 설치용 자재 및 입간판
 - * 소모성 농자재(농약, 비료 등) 지원은 최소화(30% 이내)하고 사업방향 및 목적에 맞게 예산집행

□ 사업 추진체계 및 요령

- 용도별 식용 옥수수 품종의 격리 재배단지 조성 가능지역 선정
- 시범사업 추진 시 시범요인 우선 추진으로 사업 효과 거양
- 시범사업 단지의 재배 종자는 국내 개발 품종 및 우량종자 사용
- 지역 농협, 산업체 등과 유통·판매를 위한 수매계약 후 추진
- 시범사업 추진과정의 소득, 노동력 절감, 생산성 증대 등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경영기록장 작성

□ 기대효과

- 단순포장, 유통에서 컬러화, 고급화, 이용성 증진으로 가치향상
 - 이삭당 가격향상 : 풋옥수수 400~500원/개 ⇒ 600~700
냉동 1,000원/개 ⇒ 1,500
- 풋옥수수 이삭당 가격향상 : 400~500원/개 ⇒ 600~700고급화 전략으로 안정적인 생산단지 정착으로 농가소득화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 추후 ATIS 작성시 기준 : 계획보고(3.30. 한), 결과보고(11.20. 한)

참고

찰옥수수 ‘칼라패키지’ 단지 조성 및 상품화

○ 찰옥수수 ‘칼라패키지’ 품종개발(강원도농업기술원 옥수수연구소)

품종명	개발년도	과피색	출사일수(일)	이삭길이(cm)	풋이삭중(kg/10a)	품종상태(공급가능량)	종자확보방법
미백 2호	'05	흰색	69	18.8	1,217	등록완료(79톤)	농협(유상)
미 흑 찰	'04	자주색	79	17.7	1,192	등록완료(28톤)	농협(유상)
흑점 2호	'08	흰색+자주색	73	17.1	1,116	등록완료(8톤)	농협(유상)
청 춘 찰	'13	진자색	72	18.9	1,090	등록완료(56kg)	연구소(유상)
골 드 찰	'15	노란색	73	20.0	1,339	등록완료(202kg)	연구소(유상)



【미백2호】



【미흑찰】



【흑점2호】



【청춘찰】



【골드찰】



【유색찰】

※ 옥수수연구소 색소찰관련 문의 : 농업연구사 남궁민(033-248-6923)

※ 공급대행 기관 및 대금정산 : 홍천농협두촌지점(033-430-3678)

○ 풋옥수수의 단색 판매가 아닌 기능성 색소찰옥수수를 활용한 시각적 고급화 및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 가치향상

- 풋이삭 판매 가격향상 : 기존 풋옥수수 400~500원/개 ⇒ 600~700원/개
 냉동찰옥수수 1,000/개 ⇒ 1,500원/개

- 건조알곡에 대한 상품화 추진 : 옥수수 쌀, 옥수수 차 등

○ 고급화 전략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단지 정착 및 마을기업 활성화

○ 적용범위 : 레토르트 가공시설 등 기초적인 생산 설비를 갖춘 생산단지

○ 주의사항

- ‘청춘찰’은 최근 이상기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풋이삭 판매보다는 알곡을 활용한 상품화에 적합함

- 안토시아닌의 색소찰은 안토시아닌 색소의 침출로 인하여 다른 옥수수에 염색될 수 있음. 단색 포장 및 상품화에 주의 필요

- 풋옥수수 수확시기는 이삭수염 출현 후 22~26일(최적수확시기 자체 결정)

밀 용도별 맞춤형 생산 및 블렌딩 단지 조성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 김영진	063-238-5370
		농업연구사 안승현	063-238-5378

□ 목적

- 수입밀과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신품종을 보급하기 위한 밀 용도별 맞춤형 품종 지역적응
- 밀 블렌딩 기술 기반 가공품 생산을 통한 수익모델 개발로 농가소득 향상

□ 추진방향

- 밀 용도별 품종 생산단지 조성 및 블렌딩 기술 이용 고품질 밀 가공 수익모델 개발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제빵용 밀 품종 개발
 - 백강('15) : 제빵용, 조숙, 대립, 고제분, 경질밀, 수량 520kg/10a
- 다용도용 밀 품종
 - 새금강('15) : 수발아 및 붉은곰팡이병 저항성, 수량 566kg/10a
- 국수용 밀 품종
 - 호중('12) : 내한, 수발아 강, 저아밀로스, 국수식미 우수, 수량 510kg/10a
 - 수안('09) : 적립계, 답리작 적응 다수성, 내한성, 수량 578kg/10a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영농활용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 농업기술(농사로, www.nongsaro.go.kr) → 농업 기술정보 → 영농활용기술

□ 사업량: 1개소(전북)

□ 사업규모

- 사업비 : 200백만원(개소당 20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50ha 내외
- * 지역 영농규모에 맞게 분리 가능하나 경영체(단지) 대표는 동일해야 함

□ 사업대상

- 밀 재배 주산단지 연구회, 작목반, 영농조합 등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용도별 고품질 밀 생산단지 조성
- 밀의 용도별 품질에 맞는 품종별 원맥 블렌딩(혼합) 기술 투입
- 블렌딩을 통한 밀 가공상품 개발 및 유통 연계 사업추진

- 지원범위

- 블렌딩용 밀 품종별 생산을 위한 종자
- 블렌딩용 밀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비료, 농약 등 농자재
- 규모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력화 농기계
 - * 사업비의 50%이상 소요 단일품목 농기계 구입 불가(트랙터, 범용 콤파인 등)
- 원맥 블렌딩 및 가공 관련 시설
 - * 소모성 농자재(농약, 비료 등) 지원은 최소화(30% 이내)하고 사업방향 및 목적에 맞게 예산집행

□ 사업 추진체계 및 요령

- 시범사업 추진 시 시범요인 우선 추진으로 사업 효과 거양
- 시범사업 단지의 재배 종자는 국내 개발 품종 및 우량종자 사용
- 사업 전 블렌딩용 밀 원맥 소비업체와 수매계약 체결
- 균일한 원맥 생산을 위한 단지 조성 및 블렌딩·가공이 가능한 보조사업자 선정

□ 기대효과

- 수확·건조·저장 후 밀가루 제분을 위한 원맥 출하시 고품질 빵용 밀의 블렌딩 기술 적용으로 신제품 생산 가능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 추후 ATIS 작성시 기준 : 계획보고(3.30. 한), 결과보고(11.20. 한)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벼 생산공급 거점단지 육성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팀	농촌지도관 강석주	063-238-1496
		농촌지도사 노석원	063-238-1497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촌지도관 박선용	063-238-5360
		농촌지도사 엄미옥	063-238-5362

□ 목적

- 지역 적합 최고품질 품종 쌀 생산단지 조성 확대로 벼 외래품종을 우수한 국산 품종으로 대체 시스템 구축
- 국내 육성 최고품질 벼 품종과 지역 고품질 브랜드(RPC)를 연계하여 최고품질 쌀 생산·유통 단지 조성 확대

□ 추진방향

- 지역 여건에 맞는 국내육성 최고품질 품종 보급 확대로 지역 특성화 및 차별화를 통한 고품질 쌀 산업 육성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개방화 대비 품질경쟁력 향상 위해 최고품질 벼 품종 개발·보급('03~)
 - * 품종 개발수(누적) : ('07) 5품종 → ('12) 12 → ('18) 16(등록 16, 심사 중 2)
 - * 최고품질 품종 재배면적 비율(%) : ('06) 1.2 → ('09) 18.9 → ('14) 20.2 → ('18) 25.2
- 수요자 맞춤형 품종 '해들'등 최고품질 품종과 '참드림', 새청무 등 지역 전략 품종 개발 보급 확대
 - * 삼광벼, 진수미, 알찬미, 해들, 참드림, 진상미, 새청무, 조명1호, 골든퀸3호 등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영농활용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 농업기술(농사로, www.nongsaro.go.kr) → 농업 기술정보 → 영농활용기술

□ 사업량: 20개소

도 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개소수	20	3	2	2	2	3	4	2	2
1년차	9	1	1	1	1	1	2	1	1
2년차	11	2	1	1	1	2	2	1	1

※ 본 사업은 2년 연속사업임(2021년 선정시군은 2022년까지 계속 지원)

□ 사업규모

- 사업비 : 4,000백만원(개소당 20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100~200ha 내외
 - * 30~50ha 내외 5~6개 단위로 분리 가능하나 경영체(단지) 대표는 동일해야 함

□ 사업대상

- 규모화 최고품질 벼 재배 및 고품질 쌀 생산·유통 RPC 연계 가능한 선도단지, 작목반, 연구회, 농업법인, 들녘경영체, 농협 RPC 등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사업유형) 지역 특성에 맞게 3개 유형으로 분류 추진
 - * (제1유형) 외래품종 대체, (제2유형) 최고품질쌀 확대보급, (제3유형) 지역 전략품종 보급
 - (적용품종) 최고품질 품종, 지역적응품종, 민간육성 품종 1~2개 선정
 - * 농진청 개발 적정수량 최고품질 벼 품종(12개) 및 참드림, 새청무 등
 - (핵심기술) 공동농작업 실천, 질소비료 감축, 생산비 절감기술 등 적용
 - 공동작업을 통한 적량파종·적기모내기 실천
 - 공동육묘, 잡수제거 등 품종 혼입방지와 적기수확 실시
 - * 농업인, 농협·RPC, 농업기술센터 협의체 구성 운영
 - 최고품질 쌀 단지 연계 생산비 절감 드문모심기 재배 기술 보급
 - 병해충 방제 최소화와 질소비료 감축으로 친환경적 재배
 - * 미질향상을 위해 질소시비량 조정(10a당 9kg → 7)
 - 행정, 지도, 농협, 단지대표 등 공동참여 전필지 포장심사
 - * 도복, 병해충 및 잡초발생 등에 대한 포장심사를 실시하되 심사기준에 의해 탈락된 필지는 최고품질 쌀 단지 생산 쌀로 수매 불가
 - (유통판매) 농협(RPC)과 연계 쌀 유통·판매 및 브랜드화를 통한 품질관리
 - * 완전미율 : 96% 이상, 단백질함량 : 6.0%이하, 품종혼입율 : 10%이하
- 지원범위
 - 최고품질 품종 재배를 위한 종자 및 농자재
 - 규모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력화 농기계
 - * 사업비의 50%이상 소요 단일품목 농기계 구입 불가(트랙터, 범용 콤바인 등)

- 지역 특화 단지 조성을 위한 브랜드 및 가공·유통 시설 지원
- 신품종 신기술 재배기술 교육, 홍보, 컨설팅, 연시회 및 평가회
- 신품종 비교 전시포 및 증식포 설치용 자재 및 입간판
 - * 소모성 농자재(농약, 비료 등) 지원은 최소화(30% 이내)하고 사업방향 및 목적에 맞게 예산집행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벼논 물관리 실천 기술>

1. 중간물떼기(간단관개) : 벼 이앙 후 한 달간 논물을 깊이 대고 2~3주 정도 물을 떼서 논바닥에 실금이 보이면 물을 다시 댐(상시담수 대비 25.2% 온실가스감축)
2. 논물 걸러대기 : 중간물떼기 후 논물을 얇게(3~5cm)대고 자연적으로 말리며 다시 얇게 대어줌, 이삭이 익을 때까지 반복함(상시담수 대비 63.0% 온실가스 감축)

□ 사업 추진체계 및 요령

- 시범사업 추진 시 시범요인 우선 추진으로 사업 효과 거양
- 국내 육성 최고품질 벼 품종 재배기술력이 높고, 유통 RPC 연계가 가능한 단지 선정
- 단지운영 및 재배기술, 포장심사, 원료곡 수매 등 매뉴얼에 의거 진행
- 시범사업 추진과정의 소득, 노동력 절감, 생산성 증대 등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경영기록장 작성

□ 기대효과

- 외래품종 대체 지역적합 우수품종 조기보급 및 최고품질 쌀 생산으로 경쟁력 강화
- 지역 명품쌀 브랜드 개발을 위한 최적 품종 선정으로 농가소득 향상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 추후 ATIS 작성시 기준 : 계획보고(3.30. 한), 결과보고(11.20. 한)

신품종 조기확산 및 최고품질 벼 선정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촌지도관 박선용	063-238-5360
		농촌지도사 엄미옥	063-238-5362

□ 목적

- 신품종 종자 조기 확산 및 현장 적용을 통한 지역 최적 품종 선정
- 최고품질 후보 벼 품종 현장 적용으로 수요자 평가·환류 및 신속 보급 촉진

□ 추진방향

- 지역 여건에 맞는 최적 품종 선정을 통한 지역 특화 품종 육성
- 수요자 평가 반영 최고품질 벼 선정 및 신품종 조기 보급으로 농가 소득 향상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최고품질 벼 품종 개발·보급('03~), 최고품질 벼 품종 선정 기준
 - * 품종 개발수(누적) : ('07) 5품종 → ('12) 12 → ('18) 16(등록 16, 심사 중 2)
- 벼 등숙기 온도 변화에 따른 적정 이앙시기 변경('18, 식량원)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영농활용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 농업기술(농사로, www.nongsaro.go.kr) → 농업 기술정보 → 영농활용기술

□ 사업량: 7개소

도 별	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인천
개소수	7	1	2	1	1	1	1
1년차	2		1	1			
2년차	5	1	1		1	1	1

※ 본 사업은 2년 연속사업임(2021년 선정시군은 2022년까지 계속 지원)

□ 사업규모

- 사업비 : 700백만원(개소당 10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20ha 내외

□ 사업대상

- 신품종 벼 재배 가능 선도단지, 작목반, 연구회,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농협 등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신품종 재배 확대를 위한 재배단지 조성(2년간)
- 2년간 재배실적 및 소비자 반응을 반영한 최고품질벼 품종 선정
 - * 재배 품질 관리 등 기본 생육상황 공유 및 수확 후 소비자 반응조사 추진(년 1회 이상)
- 최고품질벼 단지화를 통한 지역 특화 명품쌀 확산

○ 지원범위

- 신품종 종자 재배 확대를 위한 종자 및 농자재
- 신품종 벼 재배에 필요한 생력화 농기계
 - * 사업비의 50%이상 소요 단일품목 농기계 구입 불가(트랙터, 범용 콤바인 등)
- 지역 특화품종 단지화를 위한 포장재 및 브랜드 개발 등
- 최고품질 벼 선정에 필요한 교육, 홍보, 컨설팅, 연사회 및 평가회
- 신품종 비교 전시포 설치용 자재 및 입간판
 - * 소모성 농자재(농약, 비료 등) 지원은 최소화(30% 이내)하고 사업방향 및 목적에 맞게 예산집행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벼논 물관리 실천 기술>

1. 중간물떼기(간단관개) : 벼 이앙 후 한 달간 논물을 깊이 대고 2~3주 정도 물을 떼서 논바닥에 실금이 보이면 물을 다시 댐(상시담수 대비 25.2% 온실가스감축)
2. 논물 걸러대기 : 중간물떼기 후 논물을 얇게(3~5cm)대고 자연적으로 말리며 다시 얇게 대어줌, 이삭이 익을 때까지 반복함(상시담수 대비 63.0% 온실가스 감축)

□ 사업 추진체계 및 요령

- 시범사업 추진 시 시범요인 우선 추진으로 사업 효과 거양
- 신품종에 대한 수요 의사가 높고 재배기술력이 좋으며 특화단지 조성이 가능한 지역 및 사업대상자 선정
- 연사회 및 평가회를 통한 재배품종의 소비자 반응 확인
- 시범사업 추진과정의 소득, 노동력 절감, 생산성 증대 등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경영기록장 작성

□ 기대효과

- 지역에 알맞은 신품종 조기보급 및 최고품질 쌀 생산으로 경쟁력 강화
- 신품종 현장반응 수렴 및 수요자 의사 반영 최고품질 벼 품종 선정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 추후 ATIS 작성시 기준 : 계획보고(3.30. 한), 결과보고(11.20. 한)

용도별 국산밀 품질체계화 패키지형 구축 시범사업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 김영진	063-238-5370
		농업연구사 안승현	063-238-5378

□ 목적

- 밀 브랜드단지 연계 품질체계 확립을 위한 패키지형 시스템 구축으로 가공용도별 맞춤형 원맥의 안정적 생산 공급

□ 추진방향

- 용도별 밀 생산단지 조성, 밀 품질분석기(NIR) 이용 밀 원맥 품질등급별 구분수매·저장 관리의 패키지형 시스템 보급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근적외선 분광분석법의 검량식(특허출원 및 기술이전 체결)
 - 근적외선 분광법을 이용한 밀의 품질검사 방법(특허: 10-2013-0082109)
- 용도별 밀 품질기준 설정 및 단지조성('19): 17개소, 2,800ha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영농활용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 농업기술(농사로, www.nongsaro.go.kr) → 농업 기술정보 → 영농활용기술

□ 사업량 : 2개소

도 별	계	전북	경남
개소수	2	1	1

□ 사업규모

- 사업비 : 600백만원(개소당 30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50ha 내외
 - * 지역 영농규모에 맞게 분리 가능하나 경영체(단지) 대표는 동일해야 함

□ 사업대상

- 지역별 밀 브랜드단지 참여농가, 밀 수매업체(영농법인 등) 등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밀 용도별(품종별) 브랜드단지 조성 및 재배 매뉴얼화
 - 밀 품질분석기(NIR) 활용 품질등급별 구분수매·저장 관리
- 지원범위
 - 밀 용도별 브랜드단지 조성을 위한 종자, 농약, 비료, 농자재 및 농기계
 - * 사업비의 50%이상 소요 단일품목 농기계 구입 불가(트랙터, 범용 콤바인 등)
 - * 소모성 농자재(농약, 비료 등) 지원은 최소화(30% 이내)하고 사업방향 및 목적에 상반되는 예산집행 지양
 - 밀 품질분석기(NIR), 원맥 분석용 건조기, 품질등급별 원맥 저장시설 등
 - 신기술·신품종 교육 및 홍보(연사회 및 평가회), 품종비교전시포 운영

□ 사업 추진체계 및 요령

- 시범사업 추진 시 시범요인 우선 추진으로 사업 효과 거양
- 시범사업 단지의 재배 종자는 국내 개발 품종 및 우량종자 사용
- 지역 농협, 산업체 등과 유통·판매를 위한 수매계약 후 추진
- 밀 품질 기준에 따른 원료곡 매입 저장이 가능한 경영체 선정 운영

□ 기대효과

- 밀 품질 등급화로 인한 농촌 현장의 고품질 밀 원맥 생산 유도
- 가공업체의 가공 이용성 확대기반 마련을 통한 소비기반 확대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 추후 ATIS 작성시 기준 : 계획보고(3.30. 한), 결과보고(11.20. 한)

특수미 상품화 기술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촌지도관 박선용	063-238-5360
		농촌지도사 엄미옥	063-238-5362

□ 목적

- 특수미 신품종 농가 조기보급, 명품 쌀 생산 유통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쌀 산업 경쟁력 제고
- 특수미 특산단지 조성으로 산업화 기반 구축 및 신소비 시장 창출

□ 추진방향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특수미 단지조성 확대로 시장 경쟁력 강화
- 쌀 소비 시장 확대를 위한 다용도 특수미 재배 확대로 농가 소득 향상
- 특수미 품질 고급화 및 경쟁력 강화로 침체된 쌀산업 활성화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농촌진흥청 육성 특수용도 벼 품종 및 주요특성(참고자료)
- 특수미 상자육묘 시 파종량 추천('07, 식량원, 전원태)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영농활용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 농업기술(농사로, www.nongsaro.go.kr) → 농업기술정보 → 영농활용기술

□ 사업량 : 4개소

도 별	계	경기	강원	전북	경남
개소수	4	1	1	1	1

□ 사업규모

- 사업비 : 800백만원(개소당 20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20ha 내외

□ 사업대상

- 특수미 재배가 가능한 단지, 작목반, 연구회,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사업자 선정시 벼분야 청년창업농 우선 고려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기능성 특수미 재배로 신수요처 확대 및 경쟁력 강화
- 다양한 특수미 품종(향미, 흑미 등 혼반용) 소포장 상품 개발
- 즉석 도정, 소포장 상품화를 위한 지역 동네 정미소 운영
- 브랜드 개발, 자체종자증식포장 조성(1ha 격리 및 홍보용)

○ 지원범위

- 특수미 전용품종 보급을 위한 종자
- 특수미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비료, 농약 등 농자재
- 규모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력화 농기계
 - * 트랙터, 콤바인 등 단순 지원 농기계 구입 불가
- 소포장 상품 개발, 브랜드 개발(상표, 디자인, 박스 등) 등
- 동네 정미소 운영을 위한 소형 도정 및 가공시설 등
- 신기술 신품종 재배기술 교육, 홍보, 컨설팅, 연시회 및 평가회
- 신품종 비교전시포(또는 증식포) 설치용 자재 및 입간판
 - * 소모성 농자재(농약, 비료 등) 지원은 최소화(30% 이내)하고 사업방향 및 목적에 상반되는 예산집행 지양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벼논 물관리 실천 기술>

1. 중간물떼기(간단관개) : 벼 이앙 후 한 달간 논물을 깊이 대고 2~3주 정도 물을 떼서 논바닥에 실금이 보이면 물을 다시 댐(상시담수 대비 25.2% 온실가스감축)
2. 논물 걸러대기 : 중간물떼기 후 논물을 얇게(3~5cm)대고 자연적으로 말리며 다시 얇게 대어줌, 이삭이 익을 때까지 반복함(상시담수 대비 63.0% 온실가스 감축)

□ 사업 추진체계 및 요령

- 참고자료 특수용도 벼 품종 재배
- 시범사업 추진 시 시범요인 우선 추진으로 사업 효과 거양
- 시범사업 단지의 재배 종자는 국내 개발 품종 및 우량종자 사용

- 시범사업 추진과정의 소득, 노동력 절감, 생산성 증대 등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경영기록장 작성

□ 기대효과

- 다양한 소비욕구에 따른 고객 맞춤형 품종 보급
- 특수미 신육성 품종 조기 정착으로 쌀 소비시장 확대
- 단지별 종자 자급화 특수미 종자생산 체계구축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 추후 ATIS 작성시 기준 : 계획보고(3.30. 한), 결과보고(11.20. 한)

참고

특수용도 벼 품종 및 주요특성

용도	품종수	품종명	가공적성 및 주요특성
기능성	1	영안벼	- 어린이 성장 '라이신' 함량 높음 - 영양식, 유아이유식
	1	고아미4호	- 빈혈예방 - 철분, 아연 등 고함유(41~67%)
	2	고아미2호, 고아미3호	- 다이어트, 난소화성전분 고함유 - 밥쌀용으로는 부적당
	4	큰눈, 눈큰흑찰, 눈큰흑찰1호, 큰품	- 쌀눈 크기 3배, GABA 고함유 - 발아현미, 혼반용, 혈압강하
	2	건양미, 건양2호	- 신장병 환자식, 저글루테린
다수성	20	남천, 다산, 다산1호, 다산2호, 아름, 안다, 큰섬, 한아름, 한아름 2, 세계진미, 담일, 드래찬, 보람찬, 한마음, 희망찬, 한아름3호, 한아름4호, 금강1호, 이루미, KGHR1	- 통일형 초다수(금강1호 817kg/10a) - 차포니카형 초다수(보람찬 733kg/10a)
찰 벼	24	상주찰, 운백찰, 운일찰, 진부찰, 진설찰, 청백찰, 눈보라, 보람찰, 보석찰, 신선찰벼, 한강찰1호, 해평찰, 화선찰, 동진찰, 백설찰, 백옥찰, 백진주(아밀로스 9%), 백진주1호(11%), 만미(13%), 월백(12%), 설백(10%), 한아름찰, 미호(11%), 미르찰	- 찰벼: 아밀로스가 없어 찰기가 높은 품종 · 전통식품, 떡, 한과 등 - 중간찰벼: 아밀로스(9~13%) · 김밥, 현미밥(당노식) - 통일형 찰벼: 다수성 찰벼
유색미	19	적진주, 적진주찰, 흥진주, 건강홍미, 조생흑찰, 조은흑미, 흑진주, 선향흑미, 흑광, 흑설, 보석흑찰, 청향흑미, 흑남, 흑수정, 흑진미, 적진주2호, 다홍미, 진흑찰	- 흑색 및 적색미 - 현미 혼반식 - 노화억제, 항산화작용 - 천연색소용(화장품, 과자 등)
향 미	9	설향찰, 미향, 아랑향찰, 향남, 향미벼1호, 향미벼2호, 아로미, 드래향, 향열	- 향에 의한 식미증진 - 혼반용, 떡 및 식혜 가공용 등
쌀가루	4	한가루, 신길, 미시루, 가루미2	- 연질 특성의 쌀가루 품종 - 건식 및 습식 제분에 의한 쌀가루 생산
양조용	2	설갱, 양조	- 연질미, 쌀에 공극이 많음, 양조용
고아밀로스	7	고아미, 새고아미, 미면, 팔방미, 도담쌀, 새미면, 새로미	- 고아밀로스, 쌀면용, 쌀겉용
대립미	1	대립벼1호	- 쌀알 크기 1.5배의 대립종 - 튀김, 양조용 겸용
당질미	1	단미	- 단맛이 나는 쌀, 쌀과자, 음료 등
현미용	1	보드라미	- 호화잘되고 부드러운 물성, 현미밥용
발 벼	2	농림나1호, 상남발벼	- 발재배 가능, 찰벼
사 료	10	녹양, 목우, 목양, 녹우, 영우, 조농, 청우, 미우, 조우, 고우	- 조사료용, 고바이오패스, 목우(2,059kg/10a)

※ 통일형 품종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촌지도관 박선용 농촌지도사 엄미옥	063-238-5360 063-238-5362

□ 목적

- 효율적 양분관리를 통한 안정적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
- 철저한 관리를 통한 친환경 벼 재배로 소비자 신뢰 제고

□ 추진방향

- 지역별, 토양별 철저한 분석에 따른 친환경 벼 재배 관리로 안정적 친환경 농산물 생산
- 유기자원 사용 처방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 양분관리로 유기벼 재배 기반 조성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논토양에서 유기자원 처리에 따른 질소 무기화량 및 무기화속도 구명을 통한 유기자원 양분관리모델 개발(농과원, 2017)
- 유기자원 양분관리모델 현장적용성 평가(완주)
- 유기벼 재배를 위한 유기자원 사용 처방시스템 구축
 - 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과 연동하도록 서비스 시스템 구축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영농활용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 농업기술(농사로, www.nongsaro.go.kr) → 농업기술정보 → 영농활용기술

□ 사업량 : 5개소

도 별	계	경기	강원	경남	서울
개소수	5	1	2	1	1

□ 사업규모

- 사업비 : 400백만원(개소당 8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10ha 내외

□ 사업대상

- 무농약, 유기 인증 벼 재배단지, 작목반, 연구회, 농업법인(영농 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친환경 벼 재배를 위한 토양 및 양분관리 등 기반 조성
- 흙토람을 활용한 토양분석 및 유기재배의 경우 유기자원 사용 처방
- 겨울철 휴한기 녹비작물 재배를 통한 토양 및 양분관리
- 친환경 쌀 생산 및 판매 확대를 위한 브랜드 개발 및 홍보 등

○ 지원범위

-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용 종자
-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비료, 농약 등 농자재
-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에 필요한 생력농기계
- 농가활용 유기자원 성분분석 및 토양검정 지원 등
- 브랜드 개발, 교육, 홍보, 컨설팅, 연시회 및 평가회
- 신품종 비교 전시포 설치용 자재 및 입간판
- * 소모성 농자재(농약, 비료 등) 지원은 최소화(30% 이내)하고 사업방향 및 목적에 맞게 예산집행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벼논 물관리 실천 기술>

1. 중간물떼기(간단관개) : 벼 이앙 후 한 달간 논물을 깊이 대고 2~3주 정도 물을 떼서 논바닥에 실금이 보이면 물을 다시 댐(상시담수 대비 25.2% 온실가스감축)
2. 논물 걸러대기 : 중간물떼기 후 논물을 얇게(3~5cm)대고 자연적으로 말리며 다시 얇게 대어줌, 이삭이 익을 때까지 반복함(상시담수 대비 63.0% 온실가스 감축)

□ 사업 추진체계 및 요령

- 시범사업 추진 시 시범요인 우선 추진으로 사업 효과 거양
- 시범사업 단지의 재배 종자는 국내 개발 품종 및 우량종자 사용
- 친환경 벼 재배 및 유기벼 재배를 위한 효율적 양분관리가 필요한 단지 선정
- 시범사업 추진과정의 소득, 노동력 절감, 생산성 증대 등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경영기록장 작성

□ 기대효과

- 친환경 벼 재배 확대를 통한 벼 농사의 공익적 기능 확대
- 적정 유기자원 사용에 따른 과학적인 양분관리 실천 및 지속가능한 농업생태계 유지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 추후 ATIS 작성시 기준 : 계획보고(3.30. 한), 결과보고(11.20. 한)

고구마 국내육성 품종 대규모 단지 조성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 김영진	063-238-5370
		농업연구사 안승현	063-238-5378

□ 목적

- 국내육성 고구마 우량품종 보급·확대로 외래 고구마 품종 대체

□ 추진방향

- 고구마 생산 기반조성 및 기계화 적응품종 보급·확대
- 전과정 기계화 등 고구마 재배기술 및 가공·유통 연계 생산단지 육성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농촌진흥청 육성 고구마 75품종 실증시험포 재배(2000~, 여주시농업기술센터)
- 고구마 기계화 적응 재배양식 설정('14, 식량원, 남상식)
- 고구마 전과정 기계화 작업체계 확립('15, 농과원, 최용)

□ 사업량 : 6개소

도 별	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개소수	6	1	2	1	1	1

□ 사업규모

- 사업비 : 1,200백만원(개소당 20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10ha 내외

□ 사업대상

- 고구마 생산 및 유통기반을 갖춘 작목반, 연구회, 농업법인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국내육성 고구마 품종 대규모 안정생산단지 조성

○ 지원범위

- 고품질 고구마 생산을 위한 국내 육성 품종 종서 및 종순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력화 농기계 및 농자재
 - * 사업비의 50%이상 소요 단일품목 농기계 구입 불가(트랙터, 범용 콤바인 등)
- 고구마 증식을 위한 배양묘 증식시설, 저장시설, 큐어링시스템 등
- 포장·세척 등 수확 후 관리 시설,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 등
- 신품종 비교전시포(또는 증식포) 설치용 자재 및 입간판
 - * 소모성 농자재(농약, 비료 등) 지원은 최소화(30% 이내)하고 사업방향 및 목적에 맞게 예산집행

□ 사업 추진체계 및 요령

- 국내육성 고구마 재배 및 특산화가 용이한 단지 선정 운영
- 시범사업 단지의 재배 종자는 국내 개발 품종 및 우량종자 사용
- 지역 농협, 산업체 등과 유통·판매를 위한 수매계약 후 추진
- 시범사업 추진과정의 소득, 노동력 절감, 생산성 증대 등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경영기록장 작성

□ 기대효과

- 밀반입 외국품종 재배에 따른 외래 병해충 발생 사전 예방과 국산 우수품종 보급 확대
- 국내 육성 고구마 품종 재배에 따른 생산안정성 증대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 추후 ATIS 작성시 기준 : 계획보고(3.30. 한), 결과보고(11.20. 한)

메밀 신품종 조기 확산 및 종자 채종 시범단지 조성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 김영진	063-238-5370
		농업연구사 안승현	063-238-5378

□ 목적

- 신품종 종자 조기 확산 및 현장 적용을 통한 지역 최적 품종 선정
- 국내육성 메밀 품종 채종 단지 구축으로 순도 높은 메밀 종자 보급

□ 추진방향

- 순도 높은 메밀 품종의 안정 확대를 위한 메밀 채종 단지 육성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종자생산체계 구축에 관한 시책건의(식량원, 2003)
 - 메밀 장려품종 보급확대를 위한 채종체계 구축 및 직불제 시행
 - 장려품종 이용 시 수량 107% 증수 (135kg/10a)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영농활용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 농업기술(농사로, www.nongsaro.go.kr) → 농업기술정보 → 영농활용기술

□ 사업량 : 2개소

도 별	계	강원	제주
개소수	2	1	1

□ 사업규모

- 사업비 : 200백만원(개소당 10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5ha 내외

□ 사업대상

- 메밀 재배 및 채종단지 구축이 가능한 단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지역에 적합한 국내육성 메밀 품종 선발
- 망실을 이용한 국산 품종 채종 단지 조성 등 메밀 안정 생산 기반 조성
- 수확 후 관리 시설 및 장비(정선기, 선별기 등) 등

○ 지원범위

- 메밀 단지 조성 및 채종 재배를 위한 종자, 생력농기계, 농자재 등
 - * 사업비의 50%이상 소요 단일품목 농기계 구입 불가(트랙터, 범용 콤바인 등)
- 신품종 비교전시포(또는 증식포) 설치용 자재 및 입간판
 - * 소모성 농자재(농약, 비료 등) 지원은 최소화(30% 이내)하고 사업방향 및 목적에 상반되는 예산집행 지양

□ 사업 추진체계 및 요령

- 메밀 재배 단지화 및 채종 단지 조성이 가능한 지역
- 시범사업 단지의 재배 종자는 국내 개발 품종 및 우량종자 사용
- 지역 농협, 산업체 등과 유통·판매를 위한 수매계약 후 추진
- 시범사업 추진과정의 소득, 노동력 절감, 생산성 증대 등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경영기록장 작성

□ 기대효과

- 메밀 종자생산 체계 구축으로 국산 품종 우량종자 안정적 공급
- 순도 높은 메밀 생산으로 브랜드 가치 상승 및 농가 소득 증대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 추후 ATIS 작성시 기준 : 계획보고(3.30. 한), 결과보고(11.20. 한)

식량작물 종자 생산기반 단지조성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촌지도관 박선용	063-238-5360
		농촌지도사 엄미옥	063-238-5362

□ 목적

- 국내 육성 식량작물 종자 보급 보관시설 확대로 종자 안정보급 및 생산성 향상
- 식량작물 종자 생산기반 시설 구축으로 종자 생산·보급 확대

□ 추진방향

- 식량작물(벼, 밭작물) 우량종자용 보급종자용 보관시설·장비 및 종자 품위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
- 종자보관 중 발생하는 피해립 방지를 위한 보관시설 보완 및 지원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콤바인 수확에 적합한 조·수수의 기계화 재배양식(2014, 식량원)
- 내탈립·내도복·고위 착협성 우수 콩 품종(12품종)('18, 식량원)
- 콩 재배 기계화율 향상(전과정 64.8%) (2018, 농과원)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영농활용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 농업기술(농사로, www.nongsaro.go.kr) → 농업 기술정보 → 영농활용기술

□ 사업량 : 4개소

도 별	계	경기	강원	충북
개소수	4	1	1	2

□ 사업규모

- 사업비 : 800백만원(개소당 20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10~20ha 내외
- * 밭작물의 경우 2~5개 작물로 분리 가능하나 경영체(단지) 대표는 동일해야 함

□ 사업대상

- 식량작물 생산·보급이 가능한 채종단지, 채종단지 운영이 가능한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국내육성 식량작물 우량종자 생산기반 조성
- 우량종자 생산 및 자율교환을 위한 재배·수확·건조·저장 기술 지원
- * 우량종자 채종포 조성, 기계화기술 적용, 우량종자 전용보관창고, 건조시설 등

○ 지원범위

- 우량종자 채종단지 조성을 위한 종자 및 농자재
- 우량종자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생력화 농기계
- * 관리기, 파종·정식기, 배토기, 수확기 등 종자생산기반 조성장비 등
- * 사업비의 50%이상 소요 단일품목 농기계 구입 불가(트랙터, 범용 콤파인 등)
- 종자 품질 유지를 위한 품질 관리시설 및 건조·저장 시설 등
- 신기술 신품종 재배기술 교육, 홍보, 컨설팅, 연사회 및 평가회
- 신품종 비교 전시포 설치용 자재 및 입간판
- * 소모성 농자재(농약, 비료 등) 지원은 최소화(30% 이내)하고 사업방향 및 목적에 맞게 예산집행

□ 사업 추진체계 및 요령

- 시범사업 추진 시 시범요인 우선 추진으로 사업 효과 거양
- 시범사업 단지의 재배 종자는 국내 개발 품종 및 우량종자 사용
- 식량작물 우량종자 생산 후 자체 소비 또는 보급 대상이 있는 사업대상자 선정
- 시범사업 추진과정의 소득, 노동력 절감, 생산성 증대 등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경영기록장 작성

□ 기대효과

- 우량종자 생산·수확·건조·보관을 통한 품질향상으로 종자 경쟁력 강화
- 식량작물 우량종자 생산·보관으로 종자 보급확대 및 농가소득 향상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 추후 ATIS 작성시 기준 : 계획보고(3.30. 한), 결과보고(11.20. 한)

기능성 쌀보리 재배단지 조성 및 안정 생산기술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 김영진	063-238-5370
		농업연구사 안승현	063-238-5378

□ 목적

- 차별화된 기능성 쌀보리 품종 조기보급 및 원맥 안정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
- 기능성 보리 신품종 이용 가공제품 개발 및 판매로 보리산업 활성화

□ 추진방향

- 쌀보리 재배단지 조성을 통한 기능성 신품종 보급 확대
- 차별화된 기능성 보리원맥의 안정생산으로 지역특산물 연계 보리산업화 촉진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기능성 쌀보리 품종개발
 - 보리국수용 '강호청'('16 품종등록), 갈변현상이 없는 찰성쌀보리 '영백찰'('15 품종등록), 베타글루칸 고함유 '베타원'('15 품종출원)

□ 사업량: 1개소(전남)

□ 사업규모

- 사업비: 100백만원(개소당 10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모: 20ha 내외

□ 사업대상

- 보리 생산기반 및 가공·유통기반을 갖춘 작목반, 연구회 및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기능성 쌀보리 생산단지 조성 및 고품질 원맥의 안정생산 기술 보급
- 기능성 쌀보리 품종 이용 신상품 개발 등 산업화 확대기반 구축

○ 지원범위

- 강호청 등 기능성 쌀보리 신품종 보급을 위한 종자
- 기능성 쌀보리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비료, 농약 등 농자재
- 규모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력화 농기계
 - * 사업비의 50%이상 소요 단일품목 농기계 구입 불가(트랙터, 범용 콤바인 등)
- 기능성 쌀보리 가공제품 생산·유통 관련 시설 및 브랜드 개발
- 신기술 신품종 재배기술 교육, 홍보, 컨설팅, 연사회 및 평가회
 - * 소모성 농자재(농약, 비료 등) 지원은 최소화(30% 이내)하고 사업방향 및 목적에 맞게 예산집행

□ 사업 추진체계 및 요령

- 기능성 쌀보리 품종의 규모화된 생산단지 조성 및 상품화 가능 지역
- 시범사업 단지의 재배 종자는 국내 개발 품종 및 우량종자 사용
- 사업전 쌀보리 가공 또는 유통업체와 수매 계약체결
- 기능성 쌀보리 유통업체와 제품사용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규모화 단지화 가능한 사업대상자 선정

□ 기대효과

- 차별화된 기능성 쌀보리 생산단지 조성으로 보리산업 활성화 및 소비촉진
- 국내 건강기능식품 및 국수시장 증가추세에 부합한 기능성 국수용 보리 원맥 안정공급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 추후 ATIS 작성시 기준 : 계획보고(3.30. 한), 결과보고(11.20. 한)

풋땅콩 연중공급을 위한 생산단지 조성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 김영진	063-238-5370
		농업연구사 안승현	063-238-5378

□ 목적

- 풋땅콩 신품종 및 안정 재배기술 보급으로 땅콩 재배면적 확대
- 풋땅콩 시장확대 및 신규시장 개척으로 농가소득 증대

□ 추진방향

- 풋땅콩 생산단지 조성 및 수확 후 저온저장 기술보급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 기회 제공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풋땅콩 신품종 ‘세원’(’17, 식량원)
- 풋땅콩 수확 후 가공방법 특허 등록(’99, 식량원)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영농활용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 농업기술(농사로, www.nongsaro.go.kr) → 농업 기술정보 → 영농활용기술

□ 사업량 : 4개소

도 별	계	충북	전북
개소수	4	3	1

□ 사업규모

- 사업비 : 800백만원(개소당 20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10ha 내외

□ 사업대상

- 땅콩 주산단지, 작목반, 연구회,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세원' 등 풋땅콩 국내육성 신품종 보급
- 흑색비닐피복 고품재배 및 수확작업 기계화 등 생력기계화 기술 투입
- 파종시기 조절로 풋땅콩 수확시기 분산(8월 중순~10월 중순)
- 풋땅콩 연중판매를 위한 수확 후 급속냉동 및 저온저장 기술 투입

○ 지원범위

- '세원' 등 풋땅콩 신품종 종자, 비료, 농약 및 농자재
 - * 소모성 농자재(농약, 비료 등) 지원은 최소화(30% 이내)하고 사업방향 및 목적에 상반되는 예산집행 지양
- 생력화를 위한 농기계(땅콩 선별기, 탈곡기, 비닐피복기 등) 및 냉장·냉동시설
 - * 사업비의 50%이상 소요 단일품목 농기계 구입 불가(트랙터, 범용 콤파인 등)
- 풋땅콩 급속냉동 및 저온저장 관련 장비 및 시설
- 신품종 재배 기술교육, 홍보, 평가회 및 브랜드 개발
- 신품종 비교전시포(또는 증식포) 설치용 자재 및 입간판

□ 사업 추진체계 및 요령

- 땅콩 주산단지로 신품종 땅콩 생산, 가공 연계가 가능한 지역
- 시범사업 추진 시 시범요인 우선 추진으로 사업 효과 거양
- 시범사업 단지의 재배 종자는 국내 개발 품종 및 우량종자 사용
- 지역 농협, 산업체 등과 유통·판매를 위한 수매계약 후 추진
- 시범사업 추진과정의 소득, 노동력 절감, 생산성 증대 등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경영기록장 작성

□ 기대효과

- 신품종 종자공급으로 풋땅콩 생산량 증대
 - 기존품종 생산수량 800kg/10a → 신품종 생산수량 1,000kg/10a(125%)
- 기존 풋땅콩 거래보다는 냉동 풋땅콩 생산 출하로 부가가치 증대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 추후 ATIS 작성시 기준 : 계획보고(3.30. 한), 결과보고(11.20. 한)

FTA대응 벼 생력재배기술 보급 시범
*** 디지털 벼 생산기술 보급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촌지도관 박선용 농촌지도사 엄미옥	063-238-5360 063-238-5362

□ 목적

- 디지털 벼 농사기술 실용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향상
- 농촌인구 고령화 등 일손부족에 따른 벼 완전 생력화 기반 조성

□ 추진방향

- 실용화된 국내외 스마트생산기술 중심 벼농사 모델 현장 적용
- 단위기술별 생력화 기술보급하고 향후 전과정 생력화 모델 구축하여 과학화 된 농업실현 및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벼 종자분의 및 육묘 상자처리에 의한 본논병해충 방제효과('03, 영농활용, 김현주)
- 경운·수확 작업을 제외한 벼 재배 전과정 무인헬기 활용('15, 영농활용, 경남도원, 김영광)
- 벼 생력화 재배 현장 실증시험결과(2011~2014, 군산시농업기술센터)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영농활용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 농업기술(농사로, www.nongsaro.go.kr) → 농업 기술정보 → 영농활용기술

□ 사업량 : 5개소

도 별	계	경기	강원	충남	경북	경남
개소수	5	1	1	1	1	1

□ 사업규모

- 사업비 : 1,000백만원(개소당 20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45~55ha 내외
 - * 지역 영농규모에 맞게 분리 가능하나 경영체(단지) 대표는 동일해야 함

□ 사업대상

- 쌀 생산 규모화 및 단지화가 가능한 지역으로 벼 주산단지, 작목반, 연구회,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들녘경영체 등
 - * 벼 대규모 재배지역 및 광역방제가 가능한 생산단지 등
 - * 들녘단위로 조직 운영되는 전문경영체, 한계논 또는 논 이용 타작물 이모작 재배 경영체, GAP 인증 예정단지 우선 선정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드론, 균평기, 무인이앙기, 무인 자동 물관리 기술 등을 활용한 실용가능 디지털 벼 재배기술
- 악성노동력 절감기술 투입 : 가변시비, 드론 활용 제초제 살포, 병해충 방제 등
- 이앙동시 제초제 사용으로 적기·적량 사용에 따른 환경농업 추진, 로봇제초 등

○ 지원범위

- 디지털 벼 재배기술(무인 자동 물관리 기술 등) 등
- 무인이앙기(2대 이하), 드론(2대 이하), 균평기, 직파기 등 디지털 생력농기계
 - * 사업비의 50%이상 소요 단일품목 농기계 구입 불가(트랙터, 범용 콤바인 등)
- 병충해 방제를 위한 위탁 광역 방제비
- 신기술 신품종 재배기술 교육, 홍보, 연시 및 평가회
- 신품종 비교전시포(또는 증식포) 설치용 자재 및 입간판
 - * 소모성 농자재(농약, 비료 등) 지원은 최소화(30% 이내)하고 사업 방향 및 목적에 맞게 예산집행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벼논 물관리 실천 기술>

1. 중간물떼기(간단관개) : 벼 이앙 후 한 달간 논물을 깊이 대고 2~3주 정도 물을 떼서 논바닥에 실금이 보이면 물을 다시 댐(상시담수 대비 25.2% 온실가스감축)
2. 논물 걸러대기 : 중간물떼기 후 논물을 얇게(3~5cm)대고 자연적으로 말리며 다시 얇게 대어줌, 이삭이 익을 때까지 반복함(상시담수 대비 63.0% 온실가스 감축)

□ 사업 추진체계 및 요령

- 시범요인 우선 추진으로 사업 효과 거양
- 시범사업 단지의 재배 종자는 국내 개발 품종 및 우량종자 사용
- 쌀 생산단지 규모화 및 조직화를 통한 공동작업으로 생산비 절감
- 시범단지는 농업인 교육 효과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지역 농협, 산업체 등과 유통·판매를 위한 수매계약 후 추진
- 시범사업 추진과정의 소득, 노동력 절감, 생산성 증대 등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경영기록장 작성

□ 기대효과

- 농촌 고령화 및 인력부족에 따른 인력작업 전과정 생력화 추진
 - 악성 인력작업 자동화 : 전과정(파종, 시비, 이앙, 병해충방제, 수확 등)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 추후 ATIS 작성시 기준 : 계획보고(3.30. 한), 결과보고(11.20. 한)

수수 우량품종 기계화 생산단지 육성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 김영진 농업연구사 안승현	063-238-5370 063-238-5378

□ 목적

- 파종 및 수확 생력 재배기술 보급을 통한 수수 생산성 향상
- 기계화 적응 품종과 단지 생력화 기술의 패키지화를 통한 찰수수 생산 단지 조성

□ 추진방향

- 기계화에 적합한 우수 품종 보급 및 우량종자 정선기술 보급
- 수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전과정 기계화 기술 보급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콤바인 수확을 위한 수수 육묘 기계 이식 재배에 적합한 재식거리 ('14, 영농활용, 정기열)
- 잡곡 파종~수확까지 전과정 기계화 기술 개발('17, 농촌진흥청)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영농활용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 농업기술(농사로, www.nongsaro.go.kr) → 농업 기술정보 → 영농활용기술

□ 사업량 : 1개소(인천)

□ 사업규모

- 사업비 : 70백만원(개소당 7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10ha 내외

□ 사업대상

- 수수 기계화 기술 적용이 가능한 작목반, 농업법인(영농 조합법인, 농업 회사법인) 등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고품질 발작물 생산을 위한 우량품종 및 생산기술 투입
- 지역에 적합한 수수 기계화 생산기술 보급(이식기, 건조기 등)
- * 발작물 기계화 농작업(파종·이식→수확)에 의한 생산비 절감 기술 등

○ 지원범위

- 기계화 전용 수수 품종 보급을 위한 종자
- 수수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비료, 농약 등 농자재
- 규모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력화 농기계
- * 소모성 농자재(농약, 비료 등) 지원은 최소화(30% 이내)하고 사업방향 및 목적에 맞게 예산집행
- 종자 증식포, 비교 전시포 설치, 농업인 현장교육 등

□ 사업 추진체계 및 요령

- 시범사업 추진 시 시범요인 우선 추진으로 사업 효과 거양
- 지역 농협, 산업체 등과 유통·판매를 위한 수매계약 후 추진
- 기계화 작업이 가능한 단지 선정 추진

□ 기대효과

- 수수 육묘 이식기를 통한 생산성 향상 : 280kg/10a→360
- 파종→수확 일관 기계화로 기계화율 향상 : 20~60%→40~80%
- 수수 재배농가의 수확 노동력 91% 절감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 추후 ATIS 작성시 기준 : 계획보고(3.30. 한), 결과보고(11.20. 한)

참깨 재배 및 수확 후 관리 기술 보급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 김영진	063-238-5370
		농업연구사 안승현	063-238-5378

□ 목적

- 지역별 참깨 재배법 기계화 표준재배법 보급을 통한 농가 생산성 향상
- 참깨 수확 후 접이식 건조대 자동탈립·정선희과에 의한 노동력 절감

□ 추진방향

- 참깨 지역별 파종시기를 달리하여 도복 발생 감소를 통한 생산량 증대
- 참깨 예취기 사용을 위한 분지특성에 따른 표준 재배법 보급 및 노동력 절감
- 참깨는 수확 후 탈곡작업이 노동력 절감을 위한 시설 보급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참깨 기계수확을 위한 적정 파종기 및 재식거리('16, 식량원, 배진우)
 - (5월 5일) 경기·충북, (5월 20일) 경북·경남·전남
 - 소분지(건백)와 다분지(아름) 모두 고품 2열(휴폭 110cm, 조간 30cm) 재배 시 주간거리 15~20cm로 파종
- 하우스형 접이식 농작물 건조대 특허출원('17, 충북)
- 접이식 건조대 특허기술 3개업체 기술이전('17, 충북)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영농활용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 농업기술(농사로, www.nongsaro.go.kr) → 농업 기술정보 → 영농활용기술

□ 사업량 : 4개소

도 별	계	충북	전북
개소수	4	3	1

□ 사업규모

- 사업비 : 280백만원(개소당 7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5ha 내외

□ 사업대상

- 참깨 재배기술 수준이 높고 기계화 및 단지화가 가능한 주산단지, 작목반, 연구회,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지역별 참깨 수확 기계화를 위한 재배기술(파종시기, 재식거리) 보급
 - * 파종시기 : (5월 5일) 경기·충북, (5월 20일) 경북·경남·전남
 - * 재식거리 : 고품 2열(휴폭 110cm, 조간 30cm) 재배 시 주간거리 15~20cm로 파종
 - 참깨 수확 후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력건조 시스템 보급
 - * 접이식 건조기+측창 자동개폐장치+환풍기+농자재(건조용)
- 지원범위
 - 참깨 파종기, 수확기(예취/바인더), 하우스형 접이식 농작물 건조대, 측창 자동개폐장치, 파종용 트레이 등
 - 고품질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비료, 농약, 비닐 등 농자재
 - 신기술 신품종 재배기술 교육, 홍보, 연시 및 평가회
 - 신품종 비교전시포(또는 증식포) 설치용 자재 및 입간판
 - * 소모성 농자재(농약, 비료 등) 지원은 최소화(30% 이내)하고 사업 방향 및 목적에 맞게 예산집행

□ 사업 추진체계 및 요령

- 전과정 기계화 작업이 가능한 단지 선정 추진
- 일관기계화 작업이 가능한 단지 선정 추진
- 시범사업 추진 시 시범요인 우선 추진으로 사업 효과 거양
- 시범사업 단지의 재배 종자는 국내 개발 품종 및 우량종자 사용

- 지역 농협, 산업체 등과 유통·판매를 위한 수매계약 후 추진
- 시범사업 추진과정의 소득, 노동력 절감, 생산성 증대 등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경영기록장 작성

□ 기대효과

- 참깨 수확작업 예취기 사용을 통한 노동력 96%절감
- 노지 건조 대비 탈곡·정선 노동력 70%절감
- 참깨 수확 후 생력건조로 농가소득 382천원 증대(10a 기준)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 추후 ATIS 작성시 기준 : 계획보고(3.30. 한), 결과보고(11.20. 한)

벼 안정육묘 자동이송 단지조성 시범
 * 벼 안정육묘 · 이앙 단지조성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촌지도관 박선용 농촌지도사 엄미옥	063-238-5360 063-238-5362

□ 목적

- 벼 육묘관리 및 치상이동 자동시스템을 이용한 육묘작업 노동력 절감
- 벼 육묘 · 이앙시 생산비 절감 기술 투입으로 농가소득 향상

□ 추진방향

- 육묘 · 이앙시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벼 육묘상자 자동화 설비 및 드문모심기 맞춤 재배 기술 보급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벼 육묘상자 이송 자동화 기계를 설치하여 대규모 육묘공장(65,000상자 육묘)에서 노동력 70% 절감
 - 노동력 절감효과 : 70%(1일 작업량 1,500상자/2인 ⇒ 5,000상자/2인)
- 드문모심기 적정 과종량 및 육묘일수, 전용육묘상자 사용기술('19, '20, 식량원)
- 드문모심기 시 육묘상자 요소추가 시비, 질소 비료 분시방법('20, 식량원)
- 드문모심기 시 주요 벼 재배품종의 평당 이삭수 변화, 적정 재식본수('20 식량원)
- 드문모심기 재식밀도에 따른 출수기, 중간물때기 및 수확적기 변화('20 식량원)
- 드문모심기 시 이앙동시 제초제, 육묘상 살충제 사용방법('20 식량원)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영농활용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 농업기술(농사로, www.nongsaro.go.kr) → 농업 기술정보 → 영농활용기술

□ 사업량 : 7개소

도 별	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세종
개소수	7	3	1	1	1	1

□ 사업규모

- 사업비 : 1,050백만원(개소당 15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45~55ha 내외

□ 사업대상

- 벼 기본 육묘장 시설을 갖춘 작목반, 연구회,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들녘경영체 등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상토 자동공급장치 등 육묘를 위한 자동화 시설
- 건전모 육성을 위한 자동화 및 정밀육묘 재배기술
- 드문모심기 맞춤 재배 기술 적용을 통한 생산비 절감(전용육묘상자, 이앙기 등)

○ 지원범위

-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종자 및 농자재
- 상토자동공급장치, 벼 육묘상자 자동이송장치 등 육묘를 위한 자동화시설
- 드문모심기 기술 적용을 위한 생력농기계
 - * 사업비의 50%이상 소요 단일품목 농기계 구입 불가(트랙터, 범용 콤바인 등)
- 자동화시설 설치를 위한 컨설팅, 교육, 홍보, 연사회 및 평가회
- 신품종 비교 전시포 설치용 자재 및 입간판
 - * 소모성 농자재(농약, 비료 등) 지원은 최소화(30% 이내)하고 사업방향 및 목적에 맞게 예산집행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벼논 물관리 실천 기술>

1. 중간물떼기(간단관개) : 벼 이앙 후 한 달간 논물을 깊이 대고 2~3주 정도 물을 떼서 논바닥에 실금이 보이면 물을 다시 댐(상시담수 대비 25.2% 온실가스감축)
2. 논물 걸러대기 : 중간물떼기 후 논물을 얇게(3~5cm)대고 자연적으로 말리며 다시 얇게 대어줌, 이삭이 익을 때까지 반복함(상시담수 대비 63.0% 온실가스 감축)

□ 사업 추진체계 및 요령

- 시범사업 추진 시 시범요인 우선 추진으로 사업 효과 거양
- 육묘부터 이앙까지 자동화시설 및 드문모심기 기술 적용이 가능한 단지

- 시범사업 추진과정의 소득, 노동력 절감, 생산성 증대 등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경영기록장 작성

□ 기대효과

- 육묘시스템 자동화 및 안정화로 건전묘 육성 및 농가 소득 증대
- 벼 재배시 육묘상자 절감으로 벼 생산비 절감 및 농가소득 향상
 - 육묘상자 50~70% 절감, 생산비 50%이상 절감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 추후 ATIS 작성시 기준 : 계획보고(3.30. 한), 결과보고(11.20. 한)

팥 재배 전과정 기계화 및 수확관리 기술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 김영진	063-238-5370
		농업연구사 안승현	063-238-5378

□ 목적

- 파종 및 수확 작업의 인력 의존도가 높은 직립형 팥의 기계화율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재배 및 수확관리 기술 보급
- 팥 생산비 절감 기계화 재배기술 보급 확산으로 농가 생산성 향상

□ 추진방향

- 팥 기계화 재배와 수확 관리 보급으로 생산성 향상 및 국산 팥 자급률 제고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직립형 팥의 콤바인 기계 수확에 적합한 넓은 이랑 줄뿌림 재배기술('15, 정기열)
- 팥 재배농가의 주요 수량격차요인 및 수량증대 방안('15, 류종수)
- 직립형 팥의 높은 이랑 점뿌림 재배시 적정 파종기('16, 류종수)
- 팥 종실 크기별 선별을 위한 선별망 크기 기준 설정('17, 한원영)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영농활용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 농업기술(농사로, www.nongsaro.go.kr) → 농업기술정보 → 영농활용기술

□ 사업량 : 5개소

도 별	계	강원	충북	전북	경북	제주
개소수	5	1	1	1	1	1

□ 사업규모

- 사업비 : 250백만원(개소당 5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2ha 내외
- * 지역 영농규모에 맞게 분리 가능하나 경영체(단지) 대표는 동일해야 함

□ 사업대상

- 팔 재배 주산단지, 작목반, 연구회,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기계화 적성이 우수한 신품종 보급으로 재래종 대체
- 전과정 기계화 일관작업 체계(파종-수확-정선)에 의한 생산비 절감기술 투입

- 지원범위

- 생력화 농기계(휴립복토기, 파종기, 정선 선별기 및 수확기 등)
 - * 사업비의 50%이상 소요 단일품목 농기계 구입 불가(트랙터, 범용 콤바인 등)
- 기계화 적용 신품종 종자, 비료 및 농자재 등
 - * 소모성 농자재(농약, 비료 등) 지원은 최소화(30% 이내)하고 사업 방향 및 목적에 상반되는 예산집행 지양
- 신기술 신품종 재배기술 교육, 홍보, 연시 및 평가회
- 신품종 비교전시포(또는 증식포) 설치용 자재 및 입간판

□ 사업 추진체계 및 요령

- 두류 주산단지, 작목반, 연구회로 생력화 가능지역
- 시범사업 추진 시 시범요인 우선 추진으로 사업 효과 거양
- 시범사업 단지의 재배 종자는 국내 개발 품종 및 우량종자 사용
- 시범사업 추진과정의 소득, 노동력 절감, 생산성 증대 등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경영기록장 작성

□ 기대효과

- 팔 재배 농가 생산성 향상 및 파종 노력비 절감
 - 농가 소득 향상 : 인력점과 대비 50.7% 소득 증가
 - 파종 노동력 절감 : 인력점과 대비 23.0시간/10a 절감
- 기계화 적성이 우수한 신품종 보급으로 재래종 대체
- 파종-수확-정선 일관기계화 기술 보급으로 기계화율 향상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 추후 ATIS 작성시 기준 : 계획보고(3.30. 한), 결과보고(11.20. 한)

참고

팥 생산비 절감을 위한 줄뿌림 재배기술

- 직립형 팥의 콤바인 기계 수확에 적합한 넓은이랑 줄뿌림 재배기술
 - 포장 정지 후 트랙터 부착 줄뿌림 파종기를 이용하여 150cm의 넓은 두둑을 만들고 동시에 이랑너비 40cm, 포기사이 15cm 너비에 2알을 5cm 깊이로 줄뿌림 하고 진압롤러로 다짐함



- 직립형 팥의 보통형 콤바인 이용 기계수확 기술

재배양식	예취높이 (cm)	손실률(%)	
		예취부	배진구
넓은이랑	10.5±1.28	12.23±1.06	8.55±1.04
줄뿌림	6.9±0.35	3.39±0.32	3.35±0.19

- 팥의 파종 방법별 노력 투여 시간 비교('15, 식량원) (시간/10a)

구분	시비	경운·정지	파종	제초제	숙음	수확	탈곡	계	단축시간
인력점파	0.23	1.99	2.21	0.15	3.63	11.78	5.66	25.66	-
기계점파	0.23	0.25	0.53	0.15	1.52	1.03	-	3.71	21.95
줄뿌림	0.23	0.25	0.69	0.15	0.41	0.86	-	2.60	23.06

- 직립형 팥의 줄뿌림 생력재배기술의 경제성 분석('15, 식량원) (천원/10a/1인)

재배양식	수확 방법	노력비 (천 원/10a)	경영비 (천 원/10a)	조수익 (천 원/10a)	소득 (천 원/10a)	소득 지수
인력점파	인력 수확	279.0	411.4	1,470	1,058	100
기계점파	콤바인 수확	40.3	172.7	1,506	1,334	126
줄뿌림	콤바인 수확	28.3	190.6	1,785	1,595	150

드론활용 노동력 절감 벼 재배단지 육성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팀	농촌지도관 강석주	063-238-1496
		농촌지도사 노석원	063-238-1497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촌지도관 박선용	063-238-5360
		농촌지도사 엄미옥	063-238-5362

□ 목적

- 농업용 드론(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을 활용한 벼 재배단지 육성으로 농촌 노동력 해소 및 쌀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추진방향

- 드론 이용 벼 직파 파종, 시비, 병해충 방제 등 벼 직파재배 신기술 투입
- 규모화 단지 조성 및 공동작업 추진으로 생산비 절감과 안정생산 도모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경운 수확작업을 제외한 벼 재배 전과정 무인헬기 활용('15, 경남도원, 김영광)
- 잡초성벼의 출현특성, 담수처리에 따른 잡초성벼 출현변화('17·'18, 식량원)
- 벼 드론 직파 시 파종 전 논 조성 방법 및 논조성 후 적합 파종시기('20, 식량원)
- 벼 드론직파 시 적정 최아 방법, 운행방법('20, 식량원)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영농활용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 농업기술(농사로, www.nongsaro.go.kr) → 농업 기술정보 → 영농활용기술

□ 사업량 : 21개소

도 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개소수	21	1	2	2	4	2	3	3	4

□ 사업규모

- 사업비 : 1,680백만원(개소당 8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30~50ha 내외 (드론직파 5ha 이상)

□ 사업대상

- 벼 직파 주산단지, 작목반, 연구회,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들녘경영체 등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드론(멀티콥터) 이용 벼 직파 파종, 파종시기(5월하순), 파종량(3kg/10a) 준수
- 노동력 절감기술 투입 : 육묘생략, 시비, 제초제 살포, 병해충 공동방제 등

○ 지원범위

- 농업용 드론(2대 이하), 종자코팅기, 배수골조성기, 입모확인(망원경 등) 장비, 항공 살포용 부품 및 부속장비(추가 배터리) 등
-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 검정을 통과한 형식의 제품 구입 활용
- 항공 살포용 농기자재 및 드론 관리비용, 평가 및 연사회 등 지원
- 신기술 신품종 재배기술 교육, 홍보, 연사회 및 평가회
- 신품종 비교전시포(또는 증식포) 설치용 자재 및 입간판
- * 소모성 농자재(농약, 비료 등) 지원은 최소화(30% 이내)하고 내구연한이 짧은 장비 등 사업방향과 목적에 상반되는 예산집행 사양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벼논 물관리 실천 기술>

1. 중간물떼기(간단관개) : 벼 이앙 후 한 달간 논물을 깊이 대고 2~3주 정도 물을 떼서 논바닥에 실금이 보이면 물을 다시 댐(상시담수 대비 25.2% 온실가스감축)
2. 논물 걸러대기 : 중간물떼기 후 논물을 얇게(3~5cm)대고 자연적으로 말리며 다시 얇게 대어줌, 이삭이 익을 때까지 반복함(상시담수 대비 63.0% 온실가스 감축)

□ 사업 추진체계 및 요령

- 시범사업 추진 시 시범요인 우선 추진으로 사업 효과 거양
- 시범사업 단지의 재배 종자는 국내 개발 품종 및 우량종자 사용
- 지역 농협, 산업체 등과 유통·판매를 위한 수매계약 후 추진
- 시범사업 추진과정의 소득, 노동력 절감, 생산성 증대 등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경영기록장 작성

□ 기대효과

- 드론활용 직파재배를 통한 생산비 절감 신기술 확대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신 성장산업 활성화 도모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 추후 ATIS 작성시 기준 : 계획보고(3.30. 한), 결과보고(11.20. 한)

발작물 논 재배 확대를 위한 암거배수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 김영진	063-238-5370
		농업연구사 안승현	063-238-5378

□ 목적

- 발작물 논 재배 확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배수개선 기술보급
- 배수 불량 논에 재배환경 개선을 통해 콩·옥수수 등 발작물 생산성 향상 및 주산단지 규모화·집단지 유도

□ 추진방향

- 땅속 배수를 통해 논 발작물 재배 시 생육기간 중 강우, 습해 예방
- 논에 발작물 재배로 쌀과 타 식량작물 간의 곡물 자급률 격차감소
- 장기계획으로 논에 발작물 재배확대를 위한 배수개선 기반시설 확보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논에 범용화를 위한 트랙터 부착형 저비용 무굴착 암거배수 기술('18 식량원, 정기열)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영농활용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 농업기술(농사로, www.nongsaro.go.kr) → 농업기술정보 → 영농활용기술

□ 사업량 : 3개소

도 별	계	경기	강원	충남
개소수	3	1	1	1

□ 사업규모

- 사업비 : 300백만원(개소당 10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2~4ha 내외(계단식 논/ 현재 논둑 형태 유지)

□ 사업대상

○ 밭작물 논 재배 주산단지, 작목반, 연구회 등

* 논에 밭작물 재배 시 강우 등 습해로 인한 피해지역 우선 선정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밭작물 논 재배 확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땅속배수개선 기술보급
- 배수불량 논에 재배환경 개선을 통해 콩·옥수수 등 밭작물 생산성 향상
- 밭작물 논 재배를 위한 토양 경반층 심토파쇄 기술 투입
- 지하수·빗물 저장용 둠벙 조성 등을 통한 농업용수 확보 및 가뭄피해 방지 기술 보급(시범지역의 농업용수 공급여건에 따라 선택적 적용)

○ 지원범위

- 밭작물 논 재배를 위한 땅속배수 시공 관련 비용 및 자재
 - * 암거배수 시공 관련 비용을 우선 집행하고, 집행 잔액 발생 시 총 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소모성 농자재(농약, 비료 등) 구입 가능
- 신기술 신품종 재배기술 교육, 홍보, 연시회 및 평가회
- 신품종 비교전시포(또는 증식포) 설치용 자재 및 입간판

□ 사업 추진체계 및 요령

○ 시범사업 추진 시 시범요인 우선 추진으로 사업 효과 거양

○ 시범사업 단지의 재배 종자는 국내 개발 품종 및 우량종자 사용

○ 시범사업 추진과정의 소득, 노동력 절감, 생산성 증대 등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경영기록장 작성

□ 기대효과

○ 배수개선 기반시설 설치 경제적 효과 : 밭작물 생산성 30~40% 향상

○ 밭작물 재배확대로 자급률 향상 및 쌀 수급 안정화에 기여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 추후 ATIS 작성시 기준 : 계획보고(3.30. 한), 결과보고(11.20. 한)

PLS 대응 발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 김영진	063-238-5370
		농업연구사 안승현	063-238-5378

□ 목적

-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에 대응하여 발작물의 안정생산을 위한 종합적인 병해충관리 시스템 구축

□ 추진방향

- 발작물 병해충의 조기예찰 및 적기방제를 통한 체계적인 병해충 방제 체계 구축으로 발작물 품질 향상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조 애긴노린재 요방제 수준설정 및 약제방제 처리시기('10, 영농기술)
- 기장 세균줄무늬병의 특징 및 관리방법('09, 영농기술)
- 수수 재배시 조명나방의 방제시기 설정 및 방제제 선발('14)
-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발생 시기 구명 및 예찰방법 개발('09 & '17, 영농기술)
- 두과작물 나방류·노린재류 모니터링 및 관리기술 개발('15~'17, 식량원)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영농활용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 농업기술(농사로, www.nongsaro.go.kr) → 농업기술정보 → 영농활용기술

□ 사업량 : 3개소

도 별	계	강원	충남	인천
개소수	3	1	1	1

□ 사업규모

- 사업비 : 150백만원(개소당 5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10ha 내외

□ 사업대상

- 콩 및 잡곡(조, 기장, 수수) 재배단지, 작목반, 연구회,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콩, 잡곡(조, 기장, 수수)의 작물 생육시기별 발생 주요 병해충 적기 방제
- 페로몬을 활용한 노린재 및 나방류 해충의 예찰 및 적기방제
- LAMP 진단법을 활용한 병 조기진단 및 조기방제
- 종자소독 : 종자 구입 후 단지내 일괄 종자 소독 실시

○ 지원범위

- 콩, 잡곡(조, 기장, 수수) 종자, 비료, 농약 및 농자재
- 드론 등 약제 살포를 위한 장비
- 약제 수거함 및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연계 장비 등
- 교육, 홍보, 컨설팅, 연시회 및 평가회
- 신품종 비교 전시포 설치용 자재 및 입간판
- * 소모성 농자재(농약, 비료 등) 지원은 최소화(30% 이내)하고 사업방향 및 목적에 상반되는 예산집행 지양

□ 사업 추진체계 및 요령

- 시범사업 추진 시 시범요인 우선 추진으로 사업 효과 거양
- 시범사업 단지의 재배 종자는 국내 개발 품종 및 우량종자 사용
- 발작물 종합관리가 가능한 단지 서정
- e-나라도움을 통한 국고보조사업 수행
- 시범사업 추진과정의 소득, 노동력 절감, 생산성 증대 등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경영기록장 작성

□ 기대효과

- 발작물 병해충 적기 방제로 발작물의 품질 향상 및 수량 증대
- PLS 시행에 대응한 등록약제 사용으로 안전농산물 생산 및 국민건강 증진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 추후 ATIS 작성시 기준 : 계획보고(3.30. 한), 결과보고(11.20. 한)

발작물 관개시스템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 김영진	063-238-5370
		농업연구사 안승현	063-238-5378

□ 목적

- ICT 기반 노지 발작물 재배지에 적합한 한국형 정밀 물관리 기술 확대 보급을 통한 발작물 생산성 향상

□ 추진방향

- 발작물 물 부족에 따른 관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농업용수 절감 관개기술 보급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트랙터 부착형 지중점적관 매설기 개발('17, 이상훈, 특허출원)
- 발작물 지중 점적관개시스템 설치기준 설정('16~'17, 식량원)
- 지중점적관개시스템에 의한 발작물 생산성 향상 효과분석('16~'17, 식량원)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영농활용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 농업기술(농사로, www.nongsaro.go.kr) → 농업 기술정보 → 영농활용기술

□ 사업량: 5개소

도 별	계	경기	강원	충북	경북
개소수	5	1	1	1	2

□ 사업규모

- 사업비 : 500백만원(개소당 10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1~3ha 내외(지중점적관매설기 임차시 면적확대)

□ 사업대상

- 콩·팥·녹두 등 발작물 재배 단지, 작목반, 연구회,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지중점적관개관 매설기술 보급
 - 근권층 토양수분 함량을 기준으로 자동 제어시스템 기반 조성
 - 지하수·빗물 저장용 둌병 조성 등을 통한 농업용수 확보 및 가뭄피해 방지 기술 보급(시범지역의 농업용수 공급여건에 따라 선택적 적용)
- 지원범위
 - 관개시스템 설치 비용 및 자재
 - * 사업추진 시 암거(땅속)배수 또는 명거배수 필수 설치
 - 관개시스템 설치 및 운영 관련 교육, 홍보, 연시회 및 평가회
 - 신품종 비교전시포(또는 증식포) 설치용 자재 및 입간판
 - * 관개배수 시설 관련 비용을 우선 집행하고, 집행 잔액 발생 시 총 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소모성 농자재(농약, 비료 등) 구입 가능

□ 사업 추진체계 및 요령

- 시범사업 추진 시 시범요인 우선 추진으로 사업 효과 거양
- 시범사업 단지의 재배 종자는 국내 개발 품종 및 우량종자 사용
- 지역 농협, 산업체 등과 유통·판매를 위한 수매계약 후 추진
- 시범사업 추진과정의 소득, 노동력 절감, 생산성 증대 등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경영기록장 작성

□ 기대효과

- ICT 기반 정밀 물관리 기술 실용화로 작물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
 - * 발작물 생산성 20~30% 향상 및 관수노력비 30% 절감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 추후 ATIS 작성시 기준 : 계획보고(3.30. 한), 결과보고(11.20. 한)

감자 재배유형별 특성화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 김영진	063-238-5370
		농업연구사 안승현	063-238-5378

□ 목적

- 감자를 남부 동해안 가을 시설재배 작목으로 특화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 하고자 함

□ 추진방향

- 감자 하우스 시설재배를 통한 감자 수확시기 조절에 따른 소득증대 기여
- 지역에 맞는 감자품종을 남부 동해안 시설재배 작목으로 육성하고자 함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남부지역 가을감자 수확시기 연장을 위한 피복재배기술 개발('06, 원예원, 안승준)
- 경사지에서 가을감자 재배시 토양유실 경감방법('07, 제주도원, 강호준)
- 오륜감자의 동해안 가을 시설재배 작형
 - 오륜종서는 저장성이 좋아 기존 종서를 4개월 더 저장 사용 가능하며 전년 여름 종서 사용시 2,035kg의 상서가 생산됨
- 동해 남부지역 오륜감자 가을 시설재배 시 소득 효과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영농활용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 농업기술(농사로, www.nongsaro.go.kr) → 농업기술정보 → 영농활용기술

□ 사업량 : 3개소

도 별	계	강원	충북	경남
개소수	3	1	1	1

□ 사업규모

- 사업비 : 300백만원(개소당 10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3ha 내외

□ 사업대상

- 감자 재배 단지, 작목반, 연구회,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부패방지를 위한 씨감자 절서 및 큐어링 방법
 - 감자 싹 조기 출현 및 입모율 확보를 위한 관수 관리
 - 생육후기 하우스 온도관리 및 병해충 관리
- 지원범위
 - 감자종서, 하우스비닐(골조지원 불가), 포장박스, 농자재 등
 - 신기술 신품종 재배기술 교육, 홍보, 연사회 및 평가회
 - 신품종 비교전시포(또는 증식포) 설치용 자재 및 입간판

□ 사업 추진체계 및 요령

- 시범사업 추진 시 시범요인 우선 추진으로 사업 효과 거양
- 시범사업 단지의 재배 종자는 국내 개발 품종 및 우량종자 사용
- 지역 농협, 산업체 등과 유통·판매를 위한 수매계약 후 추진
- 시범사업 추진과정의 소득, 노동력 절감, 생산성 증대 등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경영기록장 작성

□ 기대효과

- 가을철 단순 채소류 재배 대체로 신소득 작목화 가능
- 감자 재배 품종 및 작형의 다양화로 안정생산 및 농가 소득 제고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 추후 ATIS 작성시 기준 : 계획보고(3.30. 한), 결과보고(11.20. 한)

기능성 쌀귀리 품종 조기보급 및 생산단지 육성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 김영진	063-238-5370
		농업연구사 안승현	063-238-5378

□ 목적

- 향산화 기능성 물질 ‘아베난스라마이드’ 고함유가 확인된 쌀귀리 ‘대양’ 품종의 이용 확대와 가공제품화를 위한 원료곡 안정생산 기술보급

□ 추진방향

- ‘대양’ 귀리 재배단지 조성을 통한 기능성 귀리 신품종 보급 확대
- 차별화된 기능성 귀리 안정생산으로 지역특산물 연계 귀리산업화 촉진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대립종 쌀귀리 품종 ‘대양’ 개발('07, 박형호, 식량원)
- ‘대양’ 귀리의 아베난스라마이드 고함유 특성 구명('07, 이유영, 식량원)
- 귀리 아베난스라마이드의 항치매 및 난청예방 효과 구명('07, 이유영, 식량원)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영농활용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 농업기술(농사로, www.nongsaro.go.kr) → 농업기술정보 → 영농활용기술

□ 사업량 : 3개소

도 별	계	경기	전북	전남
개소수	3	1	1	1

□ 사업규모

- 사업비 : 300백만원(개소당 10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10ha 내외 * 춘파 권장지역의 경우 5ha 내외

□ 사업대상

- 쌀귀리 생산이 가능한 단지, 연구회, 작목반,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대양귀리’ 생산 특화단지 조성
 - 고품질 원맥의 안정생산 및 관리 기술 보급
- 지원범위
 - 기능성 쌀귀리 신품종 보급을 위한 종자
 - 기능성 쌀귀리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비료, 농약 등 농자재
 - 규모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력화 농기계
 - * 사업비의 50%이상 소요 단일품목 농기계 구입 불가(트랙터, 범용 콤바인 등)
 - 고품질 원맥 생산 및 상품화를 위한 수확 후 관리 시설·장비(정선기, 선별기 등)
 - 신기술 신품종 재배기술 교육, 홍보, 컨설팅, 연사회 및 평가회
 - 신품종 비교 전시포 설치용 자재 및 입간판
 - * 소모성 농자재(농약, 비료 등) 지원은 최소화(30% 이내)하고 사업방향 및 목적에 상반되는 예산집행 지양

□ 사업 추진체계 및 요령

- 시범사업 추진 시 시범요인 우선 추진으로 사업 효과 거양
- 식량작물 우량종자 생산 후 자체 소비 또는 보급 대상이 있는 사업대상자 선정
- 시범사업 추진과정의 소득, 노동력 절감, 생산성 증대 등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경영기록장 작성
- e-나라도움을 통한 국고보조사업 수행

□ 기대효과

- 기능성 귀리 품종의 조기 확대 보급 및 균일한 원료곡 생산을 위한 용도별 대규모 단지화 조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 수입산 귀리와의 차별화를 통한 국내산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 추후 ATIS 작성시 기준 : 계획보고(3.30. 한), 결과보고(11.20. 한)

오감만족 재밌는 쌀 체험여행 교실 운영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촌지도관 박선용	063-238-5360
		농촌지도사 엄미옥	063-238-5362

□ 목적

- 우리쌀을 이용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소비자 참여 유도
- 식량작물을 활용한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으로 소비 저변의 확대

□ 추진방향

- 농업인과 소비자를 연계한 기존 생산중심에서 대상중심의 시범사업 추진
-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쌀 소비촉진 프로그램 운영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쌀가루 체험학교 프로그램 개발(2019, 식량원)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영농활용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 농업기술(농사로, www.nongsaro.go.kr) → 농업기술정보 → 영농활용기술

□ 사업량 : 3개소

도 별	계	경기	강원	대구
개소수	3	1	1	1

□ 사업규모

- 사업비 : 180백만원(개소당 6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우리쌀 이용 체험장 조성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사업대상

- 우리쌀 이용 체험농장 운영이 가능한 농업경영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우리쌀 이용 체험농장 운영으로 도시소비자 농촌관광 유도
- 교육대상자별 우리쌀 이용 체험·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 확대
- 어린이집, 학교 등 교육기관과의 매칭으로 전문적인 교육과정 운영

○ 지원범위

- 체험용 쌀가루 가공을 위한 시설, 체험농장 조성(장비, 교구, 교재 등)
- 쌀가루 활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자 역량교육 및 컨설팅

*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는 총 사업비의 30% 이내로 편성

□ 사업 추진체계 및 요령

- 시범사업 추진 시 시범요인 우선 추진으로 사업 효과 거양
- 쌀가루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장 조성이 가능한 대상 선정
- 시범사업 추진과정의 소득, 노동력 절감, 생산성 증대 등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경영기록장 작성
- e-나라도움을 통한 국고보조사업 수행

□ 기대효과

- 지속적인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체험 기반 조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 체험을 통한 우리 쌀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새로운 가치 창출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 추후 ATIS 작성시 기준 : 계획보고(3.30. 한), 결과보고(11.20. 한)

참고

쌀 및 가공품 활용 연령별 체험 프로그램

○ 5세 이하~7세 체험 프로그램

대상	5세이하			6-7세이상		
구분	1set	2set	3set	1set	2set	3set
1교시	쌀오감체험	쌀가루비치볼	쌀반죽화석	무지개물고기	쌀반죽목걸이	모내기
2교시	인절미치기	꼬물이떡	둥지떡	쌀가루다식	쌀요리팔죽	모내기밥상

○ 8-13세 체험 프로그램

대상	저학년(1-3학년)			고학년(4-6학년)		
구분	1set	2set	3set	4set	5set	6set
1교시	모내기	클레이생물	쌀반죽화석	색깔쌀만다라	쌀반죽목걸이	클레이그림
2교시	쌀그림과 멧돌	쌀그림과 멧돌	쌀가루화분	쌀가루다식	클레이그림	쌀그림과 멧돌
3교시	모내기밥상	꼬물이떡	쌀요리떡살	쌀떡무지개를	쌀가루쿠키	쌀떡핏자

○ 실버 체험 프로그램

주제	주중 프로그램			주말프로그램		
	우리가족 힘내라	우리가족 하루 농사꾼!	우리가족 중 최고는?	행복한 우리가족	선물하고 싶어요	가족의 소원은!
1교시	색깔쌀만다라	모내기	클레이액자	클레이액자	쌀반죽목걸이	클레이그림
2교시	쌀그림과멧돌	쌀그림과멧돌	쌀그림과 멧돌	색깔쌀만다라	쌀가루화분	달님소원빌기
3교시	쌀요리떡살	모내기밥상	꼬물이떡	쌀떡무지개를	쌀요리떡살	둥지떡

○ 가족 체험 프로그램

주제	주중 프로그램			주말프로그램		
	우리가족 힘내라	우리가족 하루 농사꾼!	우리가족 중 최고는?	행복한 우리가족	선물하고 싶어요	가족의 소원은!
1교시	색깔쌀만다라	모내기	클레이액자	클레이액자	쌀반죽목걸이	클레이그림
2교시	쌀그림과멧돌	쌀그림과멧돌	쌀그림과 멧돌	색깔쌀만다라	쌀가루화분	달님소원빌기
3교시	쌀요리떡살	모내기밥상	꼬물이떡	쌀떡무지개를	쌀요리떡살	둥지떡

들깨잎 양액재배 수출단지 육성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 김영진	063-238-5370
		농업연구사 안승현	063-238-5378

□ 목적

- 우량 신품종을 적용한 고품질 들깨 잎 특산단지 조성
- 들깨 잎 수출 상품화를 통한 부가가치 증대

□ 추진방향

- 고품질 들깨 잎 양액재배 수출 단지 조성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들깨 신품종 농가실증 및 특산단지 조성('09~'15, 식량원, 송득영)
- 다수확이면서 기름함량이 높은 『다유들깨』 개발(2004, 식량원)
- 들깨 탈곡작업 기계화로 노동력 절감(2015, 식량원, 송득영, 영농활용)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영농활용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 농업기술(농사로, www.nongsaro.go.kr) → 농업 기술정보 → 영농활용기술

□ 사업량 : 3개소

도 별	계	충남	경남	부산
개소수	3	1	1	1

□ 사업규모

- 사업비 : 900백만원(개소당 30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양액 재배 시설 5,000㎡ 내외

□ 사업대상

- 잇들께 작물 재배기술 수준이 높으며 양액재배 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 또는 잇들께 주산단지, 작목반, 연구회,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국내 육성 고품질 잇들께 품종 재배
- 잇들께 생산을 위한 양액재배시설
- 고품질 잇들께 생산, 선별, 포장, 가공 시설 및 수출기반 조성
- 잇들께 상품화 및 수출전략 수립

○ 지원범위

- 잇들께 양액재배시설, 생력화 농기계 등
- 선별장,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포장 설비 등 수출 기반조성
- 신품종 비교·전시포 구성에 필요한 농자재 및 입간판
- 교육, 홍보, 연시·평가회 및 마케팅 등 지원
- 수출 촉진을 위한 품질검사비, 인증심사비, 국내외 물류비, 방역비 등
 - * 인증심사는 인증취득 가능시 집행, 그 외 비용은 증빙서류 구비 가능시 집행
 - * 소모성 농자재(농약, 비료 등) 지원은 최소화(30% 이내)하고 사업 방향 및 목적에 상반되는 예산집행 지양
 - * 항공료, 해외 체재비 등 여비 편성 금지

□ 사업 추진체계 및 요령

- 시범사업 추진 시 시범요인 우선 추진으로 사업 효과 거양
- 시범사업 단지의 재배 종자는 국내 개발 품종 및 우량종자 사용
- 시범사업 추진과정의 소득, 노동력 절감, 생산성 증대 등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경영기록장 작성

□ 기대효과

- 들께 수출진흥단지 1,000ha 조성으로 연간 농가소득 증가 : 96억원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 추후 ATIS 작성시 기준 : 계획보고(3.30. 한), 결과보고(11.20. 한)

고품질 친환경 쌀, 잡곡 등 수출생산단지 육성 시범
 * 고품질 쌀, 잡곡 등 수출생산단지 육성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촌지도관 박선용	063-238-5360
		농촌지도사 엄미옥	063-238-5362

□ 목적

- 새로운 소비처 개발 및 식량작물 가공식품 수출로 우리 식량작물의 해외 시장 개척
- 수출 대상국의 기호에 맞는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고품질 쌀, 잡곡 생산 마케팅을 통하여 우리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 확보

□ 추진방향

- 식량작물의 품질기준 및 재배기술 보급으로 고품질 농산물 수출기반 조성
- 수출 대상국별 소비자 기호도에 맞는 전략 품종 생산단지 조성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수출용 쌀 생산단지 운영개선 방안('14, 식량원)
- 지역특화농산물 수출상품화 매뉴얼개발 및 시범수출('17, 수출농업지원과)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영농활용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 농업기술(농사로, www.nongsaro.go.kr) → 농업 기술정보 → 영농활용기술

□ 사업량 : 4개소

도 별	계	경기	전북	전남	경북
개소수	4	1	1	1	1

□ 사업규모

- 사업비 : 400백만원(개소당 10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벼 및 잡곡 등 10ha 내외

□ 사업대상

- 식량작물 수출이 가능한 단지, 작목반, 농업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수출 대상국별 소비자 기호도에 맞는 전략품종 생산단지 조성
- 쌀 및 잡곡의 수확 후 관리 기준 도입(GAP, 친환경인증 등)
- 수출단지 농업인 대상 재배기술, 경영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실시
 - 수출용 쌀 포장 시 디자인, 규격, 형태, 포장방법 컨설팅
-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인증을 위한 지원
 - * 해외인증 : 할랄(JAKIM, MUI, MUIS, KMF 등), 코셔,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해외유기인증, ISO22000 등

○ 지원내역

- 식량작물 가공 및 도정시설 보완,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농자재, 농기계 및 브랜드 개발 등
 - * 사업비의 50%이상 소요 단일품목 농기계 구입 불가(트랙터, 범용 콤바인 등)
- 수출컨설팅 및 해외유통업체 판촉행사, 전문컨설팅, 시식, 장치비, 임차비, 샘플 운송비, 해외 홍보(매체광고, 판촉물, 전단지 등)
- 마케팅 전략 등 단지회원 컨설팅 및 교육, 연시·평가회 지원 등
- 신품종 비교전시포(또는 증식포) 설치용 자재 및 입간판
- 수출 촉진을 위한 품질검사비, 인증심사비, 국내외 물류비, 방역비 등
 - * 인증심사는 인증취득 가능시 집행, 그 외 비용은 증빙서류 구비 가능시 집행
 - * 소모성 농자재(농약, 비료 등) 지원은 최소화(30% 이내)하고 사업 방향 및 목적에 맞게 예산집행
 - * 항공료, 해외 체재비 등 여비 편성 금지

□ 사업 추진체계 및 요령

- 해외인증 확대를 통한 식량작물 수출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
- 시범사업 추진 시 시범요인 우선 추진으로 사업 효과 거양
- 시범사업 단지의 재배 종자는 국내 개발 품종 및 우량종자 사용

- 시범사업 추진과정의 소득, 노동력 절감, 생산성 증대 등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경영기록장 작성

□ 기대효과

- 식량작물 수출마케팅으로 새로운 소비시장 개척
- 해외인증 확대를 통한 우리농산물 수출 경쟁력 향상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 추후 ATIS 작성시 기준 : 계획보고(3.30. 한), 결과보고(11.20. 한)

기능성 밀 원맥 생산단지 조성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 김영진	063-238-5370
		농업연구사 안승현	063-238-5378

□ 목적

- 기능성 밀 원맥안정생산 및 보급으로 농가소득 향상
- 수입밀과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신품종을 조기보급하고 기능성 밀 원맥 이용 가공제품 생산 및 판매로 국산밀 산업 활성화

□ 추진방향

- ‘오프리’ 등 기능성 밀 생산 전과정에서 종자혼입 방지 관리로 고품질 원맥 생산
- 가공업자와 계약재배 가능 기능성 밀 생산단지 조성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세계 최초 알러지 저감 밀 ‘오프리’(2016)
 - 글루텐불내성 및 밀 의존성 운동 유발성 과민증의 개선 및 예방용
 - 알러지 저감 오프리를 이용한 쿠키 가공적성 향상기술 개발
- 안토시아닌 고함유 유색밀 ‘아리흑’(2017)
 - 밀 신계통 아리흑 또는 이를 포함하는 향산화용 식품조성물
 - 유색밀 ‘아리흑’ 주요 농업적형질 및 향산화특성 규명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영농활용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 농업기술(농사로, www.nongsaro.go.kr) → 농업기술정보 → 영농활용기술

□ 사업량 : 1개소(광주)

□ 사업규모

- 사업비 : 200백만원(개소당 20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30ha 내외
- * 지역 여건에 따라 2~3개로 분리 가능하나 경영체(단지) 대표는 동일해야 함

□ 사업대상

- 기능성 밀 생산 가능 작목반 또는 농업법인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고품질 기능성 밀 품종 원맥 생산단지 조성
- 고순도 종자 보급 및 생산을 위한 종자혼입 방지기술 투입
- 기능성 밀 품종 종자 증식포 및 비교 전시포 설치

○ 지원범위

- 기능성 밀 전용품종 보급을 위한 종자
- 기능성 밀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비료, 농약 등 농자재
- 기능성 밀 품종 종자혼입 방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
 - * 사업비의 50%이상 소요 단일품목 농기계 구입 불가(트랙터, 범용 콤바인 등)
- 고품질 밀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건조기, 저온창고 등
- 신기술 신품종 재배기술 교육, 홍보, 컨설팅, 연사회 및 평가회
- 신품종 비교전시포(또는 증식포) 설치용 자재 및 입간판
 - * 소모성 농자재(농약, 비료 등) 지원은 최소화(30% 이내)하고 사업방향 및 목적에 맞게 예산집행

□ 사업 추진체계 및 요령

- 시범사업 추진 시 시범요인 우선 추진으로 사업 효과 거양
- 지역 농협, 산업체 등과 유통·판매를 위한 수매계약 후 추진

□ 기대효과

- 차별화된 특성을 지닌 ‘오프리’ 등 기능성 밀 품종 생산으로 국산 밀 산업 발전 및 소비촉진을 통한 자급률 향상에 기여
- 기능성 밀 가공업자와 연계된 원료곡 안전 공급으로 농가소득 향상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 추후 ATIS 작성시 기준 : 계획보고(3.30. 한), 결과보고(11.20. 한)

가공용쌀 원료곡 생산단지 육성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촌지도관 박선용	063-238-5360
		농촌지도사 엄미옥	063-238-5362

□ 목적

- 쌀 수급안정 및 소비확대를 위해 가공용 원료곡 전문 생산단지 육성과 가공 및 유통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협업모델 육성

□ 추진방향

- 가공용 쌀 산업 육성 및 소비 다양화를 위한 안정적인 원료곡 생산과 가공·마케팅 연계 협업체계 구축
 - * 협력모델(안) : 들녘경영체 + RPC + 가공업체 + 유통·마케팅(판매, 수출) 등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쌀 대량소비 및 신수요처 발굴을 위한 쌀 맥주 가공기술개발
 - * (특허출원) 100% 국산 원료(한가루 40% + 광맥 60%)를 사용한 쌀맥주 제조기술
- 쌀막걸리 원료곡용 벼 품종 추천('17, 식량원, 이지운)
- 쌀음료 가공시 증자조건을 이용한 효과적 당화방법('15, 식량원, 박혜영)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영농활용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 농업기술(농사로, www.nongsaro.go.kr) → 농업기술정보 → 영농활용기술

□ 사업량 : 5개소

도 별	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개소수	5	1	1	1	1	1

□ 사업규모

- 사업비 : 1,020백만원(개소당 204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20ha 내외

□ 사업대상

- 재배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기반 및 유통기반을 갖춘 작목반, 연구회,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들녘경영체, RPC, 지역농협 등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재배기술) 가공용 품종, 농기계·생력화 방법 등 생산 기반조성, 수량 증대, 병해충 방제 기술 등 생산기술 적용
- (가공·유통) 가공용 쌀 활용 신제품 개발 기술,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
- * 가공용 쌀 : 밥쌀용, 사료용을 제외한 쌀(벼 품종해설서 참고)

○ 지원범위

- 가공용 품종 보급을 위한 종자
 - * 가공용 품종 : 제과, 제빵, 면, 쌀음료, 떡, 곡류가공(쌀튀밥, 누룽지, 선식류, 시리얼 등), 죽, 가공밥(무균포장밥, 레토르트밥 등), 찰벼 등
 - * 전용실시 품종의 경우 5년이상 계약재배 체결시 가능
- 고품질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비료, 농약 등 농자재
- 규모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력화 농기계
 - * 사업비의 50%이상 소요 단일품목 농기계 구입 불가(트랙터, 범용 콤바인 등)
- 가공품 생산을 위한 가공·저장·유통 관련 시설 및 브랜드 개발
- 신기술 신제품 재배기술 교육, 홍보, 연사회 및 평가회 등
- 신제품 비교전시포(또는 증식포) 설치용 자재 및 입간판
 - * 소모성 농자재(농약, 비료 등) 지원은 최소화(30% 이내)하고 사업방향 및 목적에 맞게 예산집행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벼논 물관리 실천 기술>

1. 중간물떼기(간단관개) : 벼 이앙 후 한 달간 논물을 깊이 대고 2~3주 정도 물을 떼서 논바닥에 실금이 보이면 물을 다시 댐(상시담수 대비 25.2% 온실가스감축)
2. 논물 걸러대기 : 중간물떼기 후 논물을 얇게(3~5cm)대고 자연적으로 말리며 다시 얇게 대어줌, 이삭이 익을 때까지 반복함(상시담수 대비 63.0% 온실가스 감축)

□ 사업 추진체계 및 요령

- 시범사업 추진 시 시범요인 우선 추진으로 사업 효과 거양
- 시범사업 단지의 재배 종자는 국내 개발 품종 및 우량종자 사용
- 가공용 쌀 생산기반 조성 및 가공이 가능한 경영체 우선 선정
- 시범사업 추진과정의 소득, 노동력 절감, 생산성 증대 등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경영기록장 작성

□ 기대효과

- 다양한 쌀 가공품 개발로 쌀 소비 확대 및 신소득원 창출
- 쌀을 활용 부가가치 높은 가공품 개발로 농가 소득 증대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 추후 ATIS 작성시 기준 : 계획보고(3.30. 한), 결과보고(11.20. 한)

발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 김영진 농업연구사 안승현	063-238-5370 063-238-5378

□ 목적

-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 및 전과정 기계화를 위해 생산·가공·유통 연계 신기술 실천 특화단지 육성

□ 추진방향

- 발작물 생산 기반조성 및 기계화 적응품종 보급
- 표준재배기술, 작목별 전과정기계화 기술, 가공·유통 연계 선도단지 육성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트랙터 및 굴삭기 부착형 무굴착 암거관 매설기 개발 중('17~'18)
- (콩) 논 재배기술, (잡곡, 참깨) 입지조건별 기계화 재배양식 표준화
 - * 개발 완료(7) : ('16) 콩, 팥, 조, 수수, 기장, 참깨, 고구마
- 트랙터 작업기 탈부착방법 개선 연구('17~'18, 농과원)
 - 트랙터는 일반적으로 작업기를 부착시켜 이용하나 탈부착이 어렵고 여성·고령 농업인이 증가 추세에 있음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영농활용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 농업기술(농사로, www.nongsaro.go.kr) → 농업 기술정보 → 영농활용기술

□ 사업량 : 10개소

도 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인천
개소수	10	2	3	1	1	1	1	1

□ 사업규모

- 사업비 : 2,060백만원(개소당 206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20ha 내외

□ 사업대상

- 시범 작목(품목) 주 재배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기반 및 유통기반을 갖춘 작목반, 연구회,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들녘경영체 등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기반조성) 암거배수 또는 명거배수, 심토파쇄, 자동물관리 등
- (품종보급) 기계화에 적합한 우수한 발작물 신품종
- (재배양식) 작물별 생력기계화 및 수량성을 고려한 표준재배 기술 반영
- (전과정 기계화) 파종·이식부터 수확 및 수확후 처리 기계화

○ 지원범위

- 발작물 논 재배를 위한 배수시설 등의 기반조성 사업
- 트랙터용 작업기 탈부착장치를 이용한 작업기 탈부착 기술
-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비료, 농약 등 농자재 및 기계화 적합 종자
- 규모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력화 농기계
 - * 사업비의 50%이상 소요 단일품목 농기계 구입 불가(트랙터, 범용 콤바인 등)
- 가공·저장·포장·유통 등 수확 후 관리시설 및 브랜드 개발
- 신기술 신품종 재배기술 교육, 홍보 및 연사회, 평가회 등
- 신품종 비교전시포(또는 증식포) 설치용 자재 및 입간판
 - * 소모성 농자재(농약, 비료 등) 지원은 최소화(30% 이내)하고 사업방향 및 목적에 맞게 예산집행

□ 사업 추진체계 및 요령

- 시범사업 추진 시 시범요인 우선 추진으로 사업 효과 거양

- 시범사업 단지의 재배 종자는 국내 개발 품종 및 우량종자 사용
- 지역 농협, 산업체 등과 유통·판매를 위한 수매계약 후 추진
- 시범사업 추진과정의 소득, 노동력 절감, 생산성 증대 등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경영기록장 작성

□ 기대효과

- 밭작물 재배 생력기계화로 단지화, 규모화하여 노력 및 생산비 절감
- 식량작물 수급 안정과 밭 식량작물 자급률제고 및 농가소득 향상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 추후 ATIS 작성시 기준 : 계획보고(3.30. 한), 결과보고(11.20. 한)

특별단위 규모화 친환경 쌀 산업 고도화 단지 육성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팀	농촌지도관 강석주	063-238-1496
		농촌지도사 노석원	063-238-1497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촌지도관 박선용	063-238-5360
		농촌지도사 엄미옥	063-238-5362

□ 목적

- 친환경 쌀 수요 증가 대응 및 기존 관행농가의 친환경 참여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친환경 농업 방향 제시

□ 추진방향

- 생산·가공·유통 시스템의 고도화 지원과 친환경 쌀 생산·소비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경제 수익모델 산업으로 육성
- * 전용 건조·저장·가공+유통·소비 시스템 구축 → 농가소득 향상 및 친환경 참여 유도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저온저장, 포장기술을 통한 유통연장 기술개발
- 특수미 품종들의 다양한 가공적성 및 활용분야 연구
- 미세도정 현미 최적 포장기술 활용 및 유통 온도환경 조건 연구
- 가공용 벼 품질 유지를 위한 저장 가능기간 제시

-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영농활용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 농업기술(농사로, www.nongsaro.go.kr) → 농업기술정보 → 영농활용기술

□ 사업량 : 5개소

도 별	계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남
개소수	5	1	1	1	1	1
1년차	2	1		1		
2년차	3		1		1	1

*본 사업은 2년 연속사업임(2021년 선정시군은 2022년까지 계속 지원)

□ 사업규모

- 사업비 : 2,500백만원(개소당 50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50ha 이상

□ 사업대상

- 들녘경영체가 가능한 무농약·유기 친환경 쌀 생산·가공사업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추진의욕 높은 법인, 작목반, 연구회 등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 및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드문모심기 재배, 직파재배 등)
- 친환경(무농약, 유기)쌀 생산·가공식품 학교급식 및 친환경농업 소비 다양화 기술도입
- 친환경 급식연계 쌀 가공식품사업 지역 특화 가공제품 생산시설 구축

○ 지원범위

< 공통 >

- 규모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력화 농기계
 - * 사업비의 50%이상 소요 단일품목 농기계 구입 불가(트랙터, 범용 콤바인 등)
- 가공품 생산을 위한 가공·저장·유통 관련 시설 및 브랜드 개발
- 고품질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비료, 농약 등 농자재
- 신기술 신품종 재배기술 교육, 홍보, 연사회 및 평가회 등
- 신품종 비교전시포(또는 증식포) 설치용 자재 및 입간판
 - * 소모성 농자재(농약, 비료 등) 지원은 최소화(30% 이내)하고 사업방향 및 목적에 맞게 예산집행
- 푸드플랜 연계 마케팅 전략 등 단지회원 컨설팅 및 교육, 연시·평가회 지원 등

< 1년차 >

- 공동 수확 및 수매를 위한 건조시설, 저온저장 시설 설치 보완
- 친환경 쌀 생산 공급을 위한 선별 및 도정시설 설치

< 2년차 >

- 친환경 쌀 가공시설 및 쌀 블랜딩 시설 등 설치
- 친환경 원료곡 활용 생산제품 저온저장고 등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벼논 물관리 실천 기술>

1. 중간물떼기(간단관개) : 벼 이앙 후 한 달간 논물을 깊이 대고 2~3주 정도 물을 떼서 논바닥에 실금이 보이면 물을 다시 댐(상시담수 대비 25.2% 온실가스감축)
2. 논물 걸러대기 : 중간물떼기 후 논물을 얇게(3~5cm)대고 자연적으로 말리며 다시 얇게 대어줌, 이삭이 익을 때까지 반복함(상시담수 대비 63.0% 온실가스 감축)

□ 사업 추진체계 및 요령

- 시범사업 추진 시 시범요인 우선 추진으로 사업 효과 거양
- 시범사업 단지의 재배 종자는 국내 개발 품종 및 우량종자 사용
- 시범사업 추진과정의 소득, 노동력 절감, 생산성 증대 등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경영기록장 작성

□ 기대효과

- 친환경농산물 수요에 효과적 대응체계 구축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친환경 쌀 산업을 지역경제 수익모델 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쌀 생산·소비 시스템 구축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 추후 ATIS 작성시 기준 : 계획보고(3.30. 한), 결과보고(11.20. 한)

고품질 밀 생산 및 소비확대 기반조성
*** 우리밀 국내육성 품종 대규모 생산기반 조성**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 김영진	063-238-5370
		농업연구사 안승현	063-238-5378

□ 목적

- 고품질 밀 생산 체계 확립을 위한 대규모 생산기반조성
- 원료곡 안정 재배를 통한 차별화된 국산밀 가공품 생산으로 소비확대

□ 추진방향

- 가공용도에 맞는 고품질 밀 생산 및 품질 높은 가공품 생산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근적외선 분광분석법의 검량식 개발('16, 식량원)
 - 근적외선 분광법을 이용한 밀의 품질검사 방법
- 국산밀 품질균일도 제고를 위한 원맥의 표준규격('16, 식량원)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영농활용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 농업기술(농사로, www.nongsaro.go.kr) → 농업 기술정보 → 영농활용기술

□ 사업량 : 5개소

도 별	계	전북	전남	경북	제주
개소수	5	1	2	1	1

※ 본 사업은 2년 연속사업임(2021년 선정시군은 2022년까지 계속 지원)

□ 사업규모

- 사업비 : 1,100백만원(개소당 22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10ha 내외

□ 사업대상

- 밀 재배 규모화 및 가공품 생산이 가능한 재배단지, 연구회,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들녘경영체 등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밀 용도별(품종별) 브랜드단지 조성 및 재배 매뉴얼화
- 밀 품질균일화를 위한 재배관리, 수확 후 관리
- 국산밀 가공품 개발 및 체험을 통한 소비 확대

○ 지원범위

<1년차> 고품질 밀 생산 및 품질 유지를 위한 저장 기반 조성

- 밀 용도별 브랜드단지 조성을 위한 종자, 농자재, 생력농기계 등
 - * 사업비의 50%이상 소요 단일품목 농기계 구입 불가(트랙터, 범용 콤바인 등)
- 밀 품질분석기(NIR), 건조 및 저온저장시설 등

<2년차> 고품질 원맥을 활용한 가공품 생산·판매·유통 확대

- 국산밀 활용 빵, 맥주, 과자 등 가공품 생산·판매·유통 지원
- 국산밀 재배 단지 및 가공품 활용 체험지원 등
- 신기술·신품종 교육 및 홍보(연사회 및 평가회) 등
 - * 사업대상지 특성에 따라 지원범위 연차별 유동 적용 가능
 - * 소모성 농자재(농약, 비료 등) 지원은 최소화(30% 이내)하고 사업방향 및 목적에 맞게 예산집행

□ 사업 추진체계 및 요령

- 시범사업 추진 시 시범요인 우선 추진으로 사업 효과 거양
- 시범사업 단지의 재배 종자는 국내 개발 품종 및 우량종자 사용
- 고품질 밀 생산 및 가공품 판매 및 소비가 가능한 단지 선정
- 시범사업 추진과정의 소득, 노동력 절감, 생산성 증대 등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경영기록장 작성
- e-나라도움을 통한 국고보조사업 수행

□ 기대효과

- 국내육성 품종 활용 고품질 밀 원맥 생산 유도
- 고품질 밀 가공품 생산 연계로 소비 확대 및 국산밀 자급률 증대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 추후 ATIS 작성시 기준 : 계획보고(3.30. 한), 결과보고(11.20. 한)

세부사업: 신기술보급사업

원예·특용작물 기술보급

약용작물 생산 수확 후 관리기술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 배영석	063-238-6450
		농촌지도사 김채희	063-238-6451

□ 목 적

- 단계별 품질관리기술 보급으로 고품질 약용작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확립
- 소비자 신뢰제고를 통한 수요 확대로 약용작물 시장 활성화

□ 추진방향

- 품질향상과 안정적 공급을 위한 약용작물 단지화, 생력화 및 GAP기술 투입
- 생산자단체 조직화를 통한 약용작물 생산기반, 수확 후 관리시설·기술 공동 활용 유도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GAP표준재배기술 70종 개발('18, 원예원)
- GAP약용작물 생산을 위한 토양비료 기술('17, 농과원)
- 지역특성을 고려한 산지조직화 사업화 지원모델 개발('14, 원예원)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농업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www.rda.go.kr) → 농업기술(www.nongsaro.go.kr) → 영농기술 → 영농활용정보 → 영농활용기술

□ 사업규모

- 사업비 : 1,600백만원(개소당 20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3.0ha 내외

□ 사업량: 8개소

시 도	계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개소수	8	2	3	1	1	1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안정적 GAP 인증을 위한 약용작물 표준재배기술 실천(70종)
- 고품질 약용작물 재배를 위한 토양관리 기술
- GAP 인증 확대를 위한 세척, 건조 장비, 수확 후 관리 기술 등

○ 지원범위

- GAP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종자, 농자재, 기계, 수확 후 관리를 위한 장비 및 시설(세척, 건조, 저장) 등

□ 사업대상(선정기준)

- 약용작물 주산단지 작목반, 연구회, 영농조합법인 등

□ 사업 추진체계 및 요령

- 약용작물 GAP 인증 의지가 높은 사업대상 선정
- 사업 농가 대상 GAP 기술 교육 실시
- 수확후 관리시설은 GAP 기준에 맞게 구성하고 시설 기계화, 작업동선 효율을 고려하여 추진
- 표찰을 설치하되 규격 및 내용은 지방농촌진흥기관 자체적으로 결정
- 신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단계별 교육, 평가회 및 성과홍보 추진

□ 기대효과

- 안정적 품질관리 실천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시장 확대
- 고품질 약용작물 안정생산으로 수입 농산물 대체 효과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소비선호형 우리품종 단지조성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 김성중	063-238-6430
		농촌지도사 김영란	063-238-6432

□ 목적

- 중소과, 껍질째과, 이색과 등 최근 소비선호도 부응 맞춤형 공급체계 구축
- 최근 선호도 높은 국산품종 규모화로 전문생산단지 조성 전초기지 확보

□ 추진방향

- 중소과, 껍질째과, 이색과 전용품종군 보급으로 시장변화 능동 대응
- 유통비중 적은 국산품종의 집산지 육성으로 출하기 시장교섭력 확보
- 숙기분산형 품종 활용 명절 등 홍수출하에서 일상생활 출하로 방향 전환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소과종 사과 신품종 '루비에스' 무적과 재배 과실품질 및 수량('18, 원예원)
- 배 신품종 그린시스 과실 숙기판정 기준('17, 원예원)
- 포도 홍주씨들리스 수확기 판정을 위한 색차계 및果皮색깔 활용('17, 원예원)
- 수확 후 CO₂ 처리에 의한 복숭아 유미 상온유통 부패억제 효과('18, 원예원)
- 단감 신품종 로망 품종 결과모지 신초 발생수에 따른 착과수준('17, 원예원)
- 감귤 신품종 신예감 수체생육 및 과실품질 특성('18, 원예원)
- 키위 신품종 감록 노지기준 발아 및 개화 특성('18, 원예원)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농업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www.rda.go.kr) → 농업기술(www.nongsaro.go.kr) → 영농기술 → 영농활용정보 → 영농활용기술

□ 사업규모

- 사업비 : 2,800백만원(개소당 20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5ha 내외 (사업기간 2년 내)
 ※ 단 시설과수(포도, 감귤, 참다래) 3ha 내외 / 21년 선정된 신규 시군 2ha 내외

□ 사업량: 14개소(2년 계속사업)

※ 본 사업은 2년 계속사업으로 '20년 선정시군을 '21년까지 연속 지원

시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울산
개소	14	3	1	2	2	2	1	1	2

* 21년 선정된 신규 시군은 1년 지원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최근 소비선호도 대응 가능한 전용품종군 중심 산지조직화 유도
- 다수 품종보다 핵심 품종을 활용한 규모화 출하여건 조성
- 품종 편중현상 해소를 위한 과종별 숙기분산 모델 확보

○ 지원범위

- (품종전환) 3유형 전용 우리품종(중소과, 껍질째, 이색과)
- (기반조성) 과원 안정생산 기반시설
 - * 명거·암거배수, 심토파쇄, 지주 및 덕시설, 관수·관비시설, 생력화 시설 등
- (품질향상) 결실안정, 재해대응 등 고품질화 자재
 - * 자연·인공수분 자재, 성페로몬트랩, 교미교란제 등
- (역량강화) 교육 및 현장컨설팅 등
- (출하홍보) 우리품종 소비지 홍보판매 제반비용(총사업비20%내,선택)
 - * '소비지'란 생산자·소비자 직접 연계 개념으로 수출 및 도매시장 경매는 제외. 단, 도매법인 활용 정가수의매매 형식의 소비지 연계는 가능
 - * 사용범위 : 온라인·오프라인 판촉행사 마케팅비(블로그, SNS, 바이럴 등), 홍보전단 및 시식홍보비, 온라인 택배비, 상품화박스 제작·구매, 기타 신품종 홍보·판매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 (기타) 산지조직화 진전을 위한 공동이용기자재 사용 등
 - * 공동이용기자재 예시 : 석회유황합제, 조피제거기, 부가가치 향상(가공) 등
 - * 단, 개별농가로 지원되는 농약·비료 등 직접 투입재 및 소모성 자재, 난방시설, 내구연한 짧은 장비, 기타 사업방향 및 목적과 상반되는 시설·장비 구입 사양

□ 사업대상(선정기준)

○ 본 사업 해당 과종 주산지 작목반, 공선회, 연구회, 법인 등

* 해당과종(7)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감귤, (참)다래

- 기존 사업과 연계한 우리품종 단지화 가능성 높은 지역 우선 선정
- 국산품종 갱신 및 규모화 의지 높고 구체적 유통·출하계획 보유 대상자
- 국산품종 활용 지역특화작목 육성 희망 대상자
 - ※ 단, 사과·배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화상병 등 식물방역법 관련 검역병해충 발생 시군은 사업대상에서 제외(연속사업 기간 중 검역병해충 발생 시 중단 가능)

□ 사업 추진체계 및 요령

- 사업자 모집 전 하단 세부유형별 전용품종군 사전선택(택1) 후 지침시달
 - * 종 소 과 : 피크닉, 황옥, 아리수(사과), 한아름·황금(배) 등
 - * 껍 질 껍 : 감홍(사과), 조이스킨(배), 홍주씨들리스(포도), 연수(단감) 등
 - * 이 색 과 : 루비에스(사과), 그린시스(배), 레드비타(참다래) 등
- 묘목 식재·갱신은 반드시 종묘재배업 허가 업체에서 우량묘목으로 구입
 - * 국산품종 범위 : 농촌진흥기관(청·도원) 육성 품종
- 포도의 경우 배수양호 토양으로의 기반조성 및 우량묘목 양성 필요
 - * 묘목식재 시 기존 포도나무 사이 혼식 금지 및 열과 등 생리장해 방지를 위한 지하수위 확보 필요
- 기존 사업과 연계한 우리품종 단지화 가능성 높은 대상 우선 선정
 - * 연계사업: 탐푸르트 생산시범, 과수 조기출하 우리품종 생산단지 조성 시범, 과수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 소비자 선호형 고품질 중·소과 생산시범
- 표찰을 설치하되 규격 및 내용은 지방농촌진흥기관 자체적으로 결정

□ 기대효과

- 최근 소비선호도 대응 국산과일 경쟁력 향상으로 내수 소비 촉진
- 과종 품종 편중현상 해소를 통한 일상생활 섭취용 우리과일 확대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양념채소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 장석우	063-238-6420
		농촌지도사 정은수	063-238-6422

□ 목적

- 마늘, 양파, 고추 신품종 시범재배를 통해 국내육성 품종의 재배면적 확대
- 기능성 등 다양한 양념채소 신품종 보급을 통하여 소비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여

□ 추진방향

-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한 가공·생식용 등 기능에 적합한 국내육성 품종보급
- 외국 도입종 난지형 마늘의 연작에 따른 품질 및 수량개선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내재해성 극조생 양파 ‘전남 1호’(‘16년, 전남도원), 백색 ‘화이트윈’(‘15, 원예원)
- 국내육성 마늘 ‘홍산’, ‘화산’ 품종개발(‘15, 원예원)
- 국내육성 난지형 마늘 ‘단영’ 품종개발(‘14 전남도원)
- 다기능성 적색 ‘엄지나라’, 연녹색 ‘스위트그린’ 품종 개발(‘13, 원예원)
- 다수성 극조생종 ‘싱싱볼플러스’(‘16, 제주도원), ‘탐라볼’(‘12, 제주도원)
- 향당뇨 고추 ‘원기1호’(‘08, 원예원)

□ 사업규모

- 사업비 : 720백만원(개소당 6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1.0ha 내외

□ 사업량 : 12개소

시 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개소수	12	1	2	2	2	1	1	2	1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이상기상 대응 안정생산 및 지역에 적합한 국내육성 품종 재배
- 지원범위
 - 종자, 멀칭비닐 및 부직포, 육묘·파종·수확기, 품종홍보 등

□ 사업대상

- 신품종 재배 의향이 높은 주산단지 연구회, 공선회 영농조합법인 등 단체

□ 사업추진 체계 및 요령

- 사업대상 선정 직후 대상 품종별 신품종 종자 확보를 위한 사전협의
- 시범사업 추진과정의 소득, 노력절감효과, 생산성 증대 등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경영기록장 기재
- 표찰을 설치하되 규격 및 내용은 지방농촌진흥기관 자체적으로 결정
- 신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단계별 교육 및 평가회 추진

□ 기대효과

- ‘홍산’으로 재래 한지형, 외래도입 난지형 대체 시 수량증수 및 소득증가
- 로열티 대응 국내육성 양과 품종보급률 확대 : ('15) 19.1% → 50%
- 기능성 양과 품종보급으로 다양한 소비자 기호도 충족에 의한 소비확산

□ 행정사항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화훼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 장석우	063-238-6420
		농업연구사 이해진	063-238-6423

□ 목적

- 로열티 절감을 위한 국내육성 화훼품종 보급 확대
- 새로운 수출전략품목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

□ 추진방향

- 품목별 주산지, 로열티 지급대상 품목 중심의 국내육성품종 시범단지 운영
- 최근 개발된 국내육성품종의 현장 보급률 확대 및 우리품종 소비자 홍보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국화 ‘백마’ 품종 신장 억제를 위한 비나인 농도 및 처리시기 설정(‘18, 원예원)
- 국산 안개초 ‘드림송’ 절화 재배시 개화 촉진을 위한 전조처리(‘17, 전북도원)
- 국내육성 나리 품종 ‘그린스타’의 구근크기별 적정 정식밀도(‘16, 원예원)
- 국내육성 칼라 품종 ‘립글로’의 절화재배용 양액조성(‘15, 원예원)
- 국내육성 프리지아(‘샤이니골드’, ‘골드리치’) 양액재배 배지 선발(‘15, 원예원)

□ 사업규모

- 사업비: 540백만원(개소당 6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장미, 국화 : 개소당 0.5ha이상
 - 난, 나리, 카네이션, 거베라, 글라디올러스, 칼라, 프리지아 등 : 개소당 0.3ha 이상
 - ※ 사업규모는 사업 종료시까지 달성되어야 하는 국내품종 식재 면적

□ 사업량: 9개소

시 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부산
개소수	9	1	1	1	1	1	1	1	1	1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생산) 안정생산 기반조성, 국내육성품종 우량묘 보급, 품종별 재배기술 및 양액관리기술 보급(현장컨설팅, 교육, 매뉴얼보급), 생력화 기술, 공동선별 및 출하(선별기 등)
- (가공) 수확후 관리, 포장, 절화수명 연장, 매직플라워, 보존화 등 부가가치 향상 기술
- (유통) 국내육성품종의 특성에 맞는 홍보방안 컨설팅 및 수출유통 시스템 구축 (저온유통, 최소공정 등)
- (홍보) 지역축제 또는 대도시 소비자, 해외바이어 대상 홍보행사

○ 지원범위

- (생산) 고품질 안정생산 및 생력화시설(무인방제기, 양액시설, 양액, 관수, 관비시설, 암막시설, 습도조절장치, 보광시설, 공중 꽃대 지주봉 설치 등), 에너지절감 시설, 국내육성품종 묘목(삽수, 삽목묘)공급
- (가공) 자동선별기, 포장, 수확 후 처리 및 가공상품 제작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유통) 유통시스템 매뉴얼 도입, 절화 및 분화 유통을 위한 박스 디자인 및 브랜드 네이밍 개발 등
- (홍보) 대도시 소비자, 지역축제, 해외바이어 홍보물 제작 및 행사참가 소비자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사업대상(선정기준)

- 화훼재배 주산단지 작목반(공선회), 연구회, 영농조합법인 등
- 화훼 국내육성품종에 재배에 대한 의욕이 높고 단지화 및 수출 가능지역

□ 사업추진 체계 및 요령

- 사업규모는 사업 종료시까지 달성되어야 하는 국내품종 식재 면적
- 표찰을 설치하되 규격 및 내용은 지방농촌진흥기관 자체적으로 결정
- 신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단계별 교육 및 평가회 추진

□ 기대효과

- 화훼 국내육성품종 보급률 제고로 로열티 절감 및 농가 경영비 절감
- 화훼상품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
- 생산에서 유통까지 종합기술보급을 통한 안정생산 및 공급 기반구축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감귤 국산품종 조기성원화 및 고품질 출하기반 조성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 김성중	063-238-6430
		농촌지도사 김영란	063-238-6432

□ 목 적

- 미 수익기간이 긴 감귤 신품종의 산지 확대보급을 위한 갱신 시스템 조성
- 기존 품종과 다른 소비지 각광받는 신품종의 고품질 출하를 위한 기반 조성

□ 추진방향

- 포트묘 생산기술 이용 대묘육성 시스템 구축 및 정밀 수분관리 기술 적용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무가온하우스 재배 하례조생 감귤의 과실비대기 점적관수 효과('20, 원예원)
- 브랜드감귤 생산을 위한 하례조생 비가림 재배력 및 매뉴얼('18, 원예원)
- 비가림재배 하례조생의 고품질 과실생산 적정 엽과비('18, 원예원)
- 무가온하우스 재배 하례조생 중소형과 생산 적과시기('17, 원예원)
- 미니향 대묘 조기 획득을 위한 시설내 접목시기 결정('16, 원예원)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농업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www.rda.go.kr) → 농업기술(www.nongsaro.go.kr) → 영농기술 → 영농활용정보 → 영농활용기술

□ 사업규모

- 사업비 : 70백만원(개소당 7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1.0ha 내외

□ 사업량 : 1개소(전남)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무가온하우스 재배 선도농가 내 대묘육성 기반조성
- 품질기준 설정 및 맞춤형 고품질 출하체계 구축

○ 지원범위

- 국내 신품종 묘목, 포트, 관수시설 등 대묘육성 생산 기반시설
- 점적관수 및 토양수분계, 휴대용당도계 등 고품질 생산 기반시설

□ 사업대상

- 감귤 신품종 재배의사 높은 연구회, 작목반, 법인 등 생산자단체
- 새로운 국산·도입품종 활용 지역특화작목 육성 희망 지역

□ 사업 추진체계 및 요령

- 묘목 식재·갱신은 반드시 종묘재배업 허가 업체에서 우량묘목으로 구입
 - * 신규과원 조성을 통해 지원된 품종은 향후 5년간 다른 품종 전환불가
- 대묘육성·재배 시스템 기술 교육과정 적용 권장
- 표찰을 설치하되 규격 및 내용은 지방농촌진흥기관 자체적으로 결정

□ 기대효과

- 우량대표 생산으로 신품종 미 수익기간 단축 : (기존) 4년 → (개선) 2년
- 감귤 국산품종 보급 확대 : ('18) 2.8% → ('24) 7.0% → ('29) 20%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확산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 김성중	063-238-6430
		농촌지도사 김영란	063-238-6432

□ 목 적

- 이상기상으로 인한 서리·고온·결실불량 등 기상피해 예방 종합기술 투입
- 과원 생산·편의성 향상을 위한 환경제어기술 적용 고품질 상품과 안정생산

□ 추진방향

- 개화·생육기 이상기상 등 불량 기상환경 대응 패키지화 기술보급
- 과원 생산·편의성 향상 및 농작업 생력화 생산체계 구축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햇빛 차단망 활용 사과 일소피해 경감 정책제안('19, 의성센터)
- 여름철 고온에 의한 사과 과피온도 변화 양상('18, 원예원)
- 폭염기 수관상부 미세살수 이용 일소과 경감방법('18, 원예원)
- 적습온도 및 예상강수량 근거 배 무봉지재배 흑성병 예방방제 기술('18, 원예원)
- 무봉지재배 과실 수확 후 상처경감을 위한 에어캡 난좌 효과('17, 원예원)
- 열·송풍장치 연결 및 관수시설 온풍처리로 배 개화기 서리피해 경감('17, 원예원)
- 저·고온기 온실 에너지 순환을 위한 풍향가변형 공기순환팬 운용('17, 농과원)
- 사과원 서리피해 방지를 위한 방상선 가동 시 열풍기 추가효과('15, 원예원)
- 개화기 기상불량시 사과수정에 적합한 화분매개곤충 선발 및 이용법('13, 원예원)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농업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www.rda.go.kr) → 농업기술(www.nongsaro.go.kr) → 영농기술 → 영농활용정보 → 영농활용기술

□ 사업규모

- 사업비 : 1,700백만원(개소당 10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2ha 내외

□ 사업량: 17개소

시도	계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부산	대전	울산
개소	17	3	4	1	3	2	1	1	1	1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서리 및 저온, 고온 등 기상피해 예방 종합관리 시설
- 이상기상에 따른 고품질 무대과 안정생산 시스템 구축
- ICT 자동제어기술 기반 편의성 향상 및 생력화 체계 구축
- 동절기·개화기 이상기상 대응 결실·품질향상 및 자연재해 대응 등

○ 지원범위(순위)

- (저온대응)(1) 열풍·개량형 방상팬, 관수시설 활용 동상해 방지기술
 - (고온대응)(1) 햇빛차단망 시설, 시설하우스 공기순환팬, 미세살수장치
 - (환경대응)(1) 무대과 안정생산 기자재(망시설 등) ※ 해당과종: 배, 복숭아
 - (자동제어)(2) ICT 적용 자동제어시스템 ※ 본사업시범요인에 적용
 - (재해대응)(2) 결실·품질향상 및 예찰·방제자재(총사업비 0~20%내외, 선택)
- * 자연·인공수분 자재, 예찰·방제트랩(성페로몬, 교미교란제 등)

□ 사업대상(선정기준)

- 과수 주산단지 연구회, 공선회, 법인 등
- 이상기상 대응 안정생산 기술 도입 및 생산성 향상, 확산이 기대되는 단지

□ 사업 추진체계 및 요령

- 연간 기상피해 발생 빈번한 지역 중점 선정으로 기술확산 효과 증대
- 지역 특성을 고려하되, 가능한 다양한 시범요인이 적용되도록 안배
- 사업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1)순위 지원범위 희망자를 선순위로 선정
- ICT 자동제어시스템 도입 희망자는 사업대상자 선정 시 우선 선정
- 표찰을 설치하되 규격 및 내용은 지방농촌진흥기관 자체적으로 결정

□ 기대효과

- 서리·저온·고온·결실불량 등 기상피해 예방·경감으로 과원 생산성 향상
- 결실안정 및 생력화 기술적용 안정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10%)

□ 행정사항: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인삼 고온피해 경감 종합기술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 배영석	063-238-6450
		농촌지도사 김채희	063-238-6451

□ 목 적

- 폭염대비 인삼 고온피해 경감 종합기술 보급 및 확산
- 인삼 해가림 시설 설치 및 관리 생력화를 통한 편리성 증진 및 노동력 절감

□ 추진방향

- 인삼 재배 시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피해가 높은 지역 기술보급
- 고온피해 경감기술과 차광망 설치·관리 생력화 기술 패키지화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녹색차광지의 인삼 고온피해 경감 효과('18, 원예원)
- 관수와 무관수에 따른 인삼의 고온피해 정도('18. 원예원)
- 해가림 차광망 고정장치('18, 양주시농업기술센터)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농업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www.rda.go.kr) → 농업기술(www.nongsaro.go.kr) → 영농기술 → 영농활용정보 → 영농활용기술

□ 사업규모

- 사업비 : 540백만원(개소당 6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1.0ha 내외

□ 사 업 량: 9개소

시 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개소수	9	2	2	2	1	1	1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고온피해 경감을 위한 차광 및 관수 기술 : 차광지, 차광망, 관수시설 등
- 노동력 절감 해가림 차광망 설치·관리 기술 : 차광망 고정장치

○ 지원범위

- 고온피해 경감을 위한 자재(차광지; 녹색, 청색, 은색), 관수 시설, 노동력 절감을 위한 차광망 고정 장치 등

□ 사업대상

- 인삼 재배 작목반, 연구회, 영농조합법인 등 농가 및 단체

□ 사업 추진체계 및 요령

- 연간 기상피해 발생 빈번한 지역 중점 선정으로 기술확산 효과 증대
- 지역 특성을 고려하되, 가능한 다양한 시범요인이 적용되도록 안배
- 농가 1개소에 시범요인을 모두 설치하여 현장교육장으로 활용 권장
 - 차광망 고정집게는 지주목 크기가 큰 낙엽송 재질에는 설치가 곤란하므로 자체적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
- 표찰을 설치하되 규격 및 내용은 지방농촌진흥기관 자체적으로 결정
- 신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단계별 교육, 현장평가회 추진 및 성과홍보

□ 기대효과

- 인삼 고온피해 경감으로 생산성 7% 향상
 - 수량(4년근, kg/10a) : 580('17) → 620('20)
- 차광망 설치 생력화를 통한 노동시간 감소(95.7%) 및 인건비 절감(87.6%)
 - 노동시간 : 관행 96시간/1ha → 생력화 4.16, 인건비: 관행 3,000천원/1ha → 생력화 372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햇빛차단망 적용 노지과원 일소피해 저감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 김성중	063-238-6430
		농촌지도사 김영란	063-238-6432

□ 목 적

- 고온·폭염 장기화에 대비한 노지과원 일소피해 최소화 대응체계 구축
- 여름철 고온기 햇빛차단을 통한 착색증진 등 품질향상으로 소득 증대

□ 추진방향

- 기존 노지과원 지주시설 개선을 통한 수관 상부 햇빛차단망 시스템 적용
- 지역별 국지 기상정보 활용 등 폭염기 차단망 활용 고품질 안정생산 도모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기존 우박방지망 활용 햇빛차단망 시설 구축('18, 의성센터)
- 여름철 고온에 의한 사과 과피온도 변화 양상('18, 원예원)
- 햇빛차단망 적용 일소피해 저감 테스트베드 실증('19, 원예원)

□ 사업규모

- 사업비 : 600백만원(개소당 10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1.0ha 내외

□ 사업량 : 6개소

시도	계	경기	강원	충북	경북	경남
개소	6	1	1	1	2	1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기존 지주시설 개선형 햇빛차단망 시설 적용
 - 생력화 운영을 위한 ICT 기반 자동제어 시스템 적용

○ 지원범위

- 지주시설 개선, 햇빛차단망 시설
- ICT 자동제어시스템(제어부, 모터) ※ 본사업 시범요인에 한정

□ 사업대상(선정기준)

- 사과 주산단지 연구회, 공선회, 법인 등
- 고온기 일소과 발생 심하여 햇빛차단망 적용 시범효과 과급이 기대되는 단지

□ 사업 추진체계 및 요령

- 연간 고온피해 발생 빈번한 지역 중점 선정으로 기술확산 효과 증대
- ICT 자동제어시스템 도입 희망자는 사업대상자 선정 시 우선 선정
 - ※ 내재형 규격은 없으나 지역 여건에 맞게 내구성 있는 시설자재로 시공 유의
- 표찰을 설치하되 규격 및 내용은 지방농촌진흥기관 자체적으로 결정

□ 기대효과

- 고온·폭염에 따른 일소, 비대정체 등 생리장해 경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 일소피해 경감 : (차광 전) 40~20% → (차광) 10~5%
 - 기타효과 : 고온생육(LAI) 30% 증진, 착색도 20% 향상, 우박회피 70% 내외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딸기 품종 다양화 안정생산기술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 장석우	063-238-6420
		농촌지도사 정은수	063-238-6422

□ 목적

- 지역별 맞춤형 신품종 보급을 통한 신품종의 안정적인 정착 및 품종 다양화에 따른 딸기 산업 경쟁력 제고

□ 추진방향

- 신품종 보급단계에 현장 수요자(농업인, 소비자, 중도매인 등) 적극 참여와 현장 평가를 통해 신품종의 보급 확대 및 시장성 강화
- 다양한 품종 개발과 지역특화 품종보급을 통한 딸기 산업 경쟁력 제고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딸기 국내육성 품종 주요특성 및 재배 유의점('19, 원예원)
- 딸기 수출 및 내수용 지역별 맞춤형 우량 계통 현장 실증과 매뉴얼 개발('16~'18)

□ 사업규모

- 사업비 : 330백만원(개소당 3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0.3ha 이상

□ 사업량: 11개소

시 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광주
개소수	11	2	1	1	1	1	1	1	2	1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딸기 육성 신품종(품종출원·등록, 최근 5년 이내) 시범재배

○ 지원범위

- 딸기묘, 우량묘 생산 육묘 자재, 환기 등 시설환경 개선 자재 및 홍보물 등

□ 사업대상

- 딸기 주산지의 신품종 재배 의향 높고 기술력이 높고 시설이 양호한 선도 생산자 단체

* 해당(인근)지역 농촌진흥기관(도원, 센터)에서 육성된 신품종을 도입하려는 생산자 단체 우선 선정

□ 사업추진 체계 및 요령

- 사업대상 선정 직후 대상 품종별 신품종 우량묘 확보를 위한 사전협의
- 시범사업 추진과정의 소득, 노력절감효과, 생산성 증대 등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경영기록장 기재
- 표찰을 설치하되 규격 및 내용은 지방농촌진흥기관 자체적으로 결정
- 신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단계별 교육 및 평가회 추진

□ 기대효과

- 수입농산물 전면 개방에 대비하여 고품질 다수성 딸기 신품종의 조기 선발과 보급 확대를 통한 딸기 산업 경쟁력 제고
- 딸기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품종 요구 충족으로 미래 성장 잠재력과 추진 동력의 지속적인 유지와 발전 기대

□ 행정사항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미래형 사과 다축 과원 조성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 김성중	063-238-6430
		농촌지도사 김영란	063-238-6432

□ 목 적

- 미래지향형 생산시스템 적용으로 사과산업 신성장동력 확보
-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다수확 및 노동절감형 과원 구축

□ 추진방향

- 기존수형 대비 경제성 확보 가능한 다수확 및 노동력 절감수형 구축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사과기계화 유망 이축수형 유목기 줄기 간 수세 불균일 조절 요령('19, 원예원)
- 후지 M9 밀식재배 사과나무 주요 수형별 기본특성 및 관리방법('13, 원예원)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농업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www.rda.go.kr) → 농업기술(www.nongsaro.go.kr) → 영농기술 → 영농활용정보 → 영농활용기술

□ 사업규모

- 사업비 : 420백만원(개소당 7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1.0ha 내외

□ 사업량 : 6개소

시도	계	충북	전북	경북	경남
개소	6	1	1	3	1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기계전정, 자동화 작업관리 등 미래지향형 사과 다축(이축)수형 과원 조성
- 줄기간 수세 불균일 조절 및 결과지 갱신 요령 컨설팅 등

○ 지원범위

- (묘목구입) 다축(이축)수형 과원 조성 묘목
 - (기반조성) 지주, 철선, 관수시설, 토양개량 등
 - (역량강화) 교육 및 현장컨설팅 등
- * 본 사업은 새로운 과원 조성 사업으로 개별농가로 지원되는 농약·비료 등 직접 투입재 및 단순 소모성 기자재, 내구연한 짧은 장비, 기타 사업방향 및 목적과 상반되는 시설·장비 구입 지양

□ 사업대상(선정기준)

○ 사과 주산단지 연구회, 공선회, 법인 등

- ※ 사과 주산지 중심 현장확대 가능성 높은 거점에 조성

□ 사업 추진체계 및 요령

- 묘목 식재·갱신은 반드시 종묘재배업 허가 업체에서 우량묘목으로 구입
- 다축(이축)수형 재배기술 교육과정 운영
- 표찰을 설치하되 규격 및 내용은 지방농촌진흥기관 자체적으로 결정

□ 기대효과

- 새로운 과원 체계 보급으로 생산성 증대 및 품질향상 / 노동력절감
 - 단수증대(kg/10a) : ('18) 2,173 → ('25) 2,303
 - 품질향상(%) : ('18) 38.2 → ('25) 51.8
 - 노동시간(h/10a) : ('18) 139.7 → ('25) 110.0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이상기상 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 장석우	063-238-6420
		농촌지도사 정은수	063-238-6422

□ 목적

- 온난화, 폭염, 저온 등 이상기상에 의한 개화 및 수정불량, 광합성 저하 등 생육장해예방을 위한 원예작물 안정생산기술보급으로 생산성 및 품질향상

□ 추진방향

- 원예작물 여름철 고온기 재배비율이 높은 지역, 작형, 작목 중심 보급
- 이상기상 대응 통한 사계절 채소류 안정생산으로 농가 부가가치창출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여름 배추 고온피해 경감을 위한 생리활성제 엽면 살포('19, 원예원)
- 고랭지 배추 고온·건조 피해경감 생리활성제 효과('19, 원예원)
- 병충해 피해 방지 기능을 갖는 비닐하우스 통풍용 부직포('19 성주센터)
- 시설재배 온실 고온기 피해경감 포그냉방 설치기준('18, 원예원)
- 비닐하우스 친환경 차광도포제의 희석배수에 따른 차광효과('15, 원예원)
- 단동 비닐하우스에서의 지붕 환기장치 적정 설치기준('15, 원예원)

□ 사업규모

- 사업비 : 1,100백만원(개소당 10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1.0ha 내외

□ 사업량 : 11개소

시 도	계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부산	광주
개소수	11	4	1	1	1	1	1	1	1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고랭지 배추 글루탐산 처리 고온피해 경감
- 포그 냉방시스템(분무량, 고압펌프용량, 분무입자크기, 환기팬 등) 설치기준 설정
※ 분무시설 활용 시설내 온도 5~10℃ 저감 및 습도 28% 상승, 재배환경 조절
- 시설원예작물 저온기 측면 부직포 활용 보온 및 환기 개선(생산량 10% 증대)

○ 지원범위

- 고온 피해경감 생리활성제, 쿨네트, 차광막, 환기팬, 포그분무시설, 차광도포제, 측창 통풍용 부직포 등

□ 사업대상

- 원예작물 재배 생산자 연구회, 공선회, 영농조합법인 등 단체

□ 사업추진 체계 및 요령

- 시범사업 추진과정의 소득, 노력절감효과, 생산성 증대 등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경영기록장 기재
- 표찰을 설치하되 규격 및 내용은 지방농촌진흥기관 자체적으로 결정
- 신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단계별 교육 및 평가회 추진

□ 기대효과

- 고랭지 배추 글루탐산 처리 생산량 18.8% 증가 및 관행 비료처리 대비 비용 93% 절감
- 고온기 시설채소 생리장해 경감으로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온도 5~10℃ 저감

□ 행정사항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중소형 수박 생력화 수직재배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 장석우	063-238-6420
		농촌지도사 정은수	063-238-6422

□ 목적

- 작은 과일 선호 소비 트렌드 맞춤형 수박 중소형과 재배기술 확립
- 농촌 인구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 대비 생력화 기술 개발
- 관행 포복 재배 시 노동 과부하, 불리한 작업성 개선

□ 추진방향

- 소형 수박 집약생산 가능 작형 보급으로 작업효율 향상 및 소득 증대
- 대과종 생산 중심 수박 재배 및 유통 형태 다변화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수박 소형과 생산 수직유인재배 적정 지주유형 및 재식거리('18, 충북도원)
- 수박 수직재배시 재식거리에 따른 수박 크기 조절('19, 원예원)

□ 사업규모

- 사업비 : 192백만원(개소당 32 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0.4ha

□ 사업량: 6개소

시 도	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세종
개소수	6	1	1	1	1	1	1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포복재배 박과류 작물 재배의 농작업 효율성 향상을 위한 수직재배 지주유형
※ 이동 조립식 밀식재배 이동식 지주 형태로 설치 후 철거작업 없이 로터리, 관리기 작업 등의 포장 정지 작업 가능

○ 지원범위

- 소형 수박 우량품종 종묘비, 수박 수직재배용 지주 설치 등

□ 사업대상

- 중소형 수박 수직재배 도입 희망 작목반, 연구회, 농업경영체 등

□ 사업추진 체계 및 요령

- 시범사업 추진과정의 소득, 노력절감효과, 생산성 증대 등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경영기록장 기재
- 표찰을 설치하되 규격 및 내용은 지방농촌진흥기관 자체적으로 결정
- 신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단계별 교육 및 평가회 추진

□ 기대효과

- 농가고령화 대응 노동 강도 저감형 및 재배안정성 확보(노동 강도 50% 경감)
※ 수직재배 경제성(2018년 농산물소득자료 기준) : 3,020천원 증가/10a
※ 관행 포복재배 대비 수량 2.6배 증가, 수직재배 설치비 : 5,400천원/10a

□ 행정사항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난지형 마늘 가변형 건조시스템 기술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 장석우 농촌지도사 정은수	063-238-6420 063-238-6422

□ 목적

- 간이건조시스템을 이용한 마늘 예건 및 건조의 비용 절감 및 품질향상
- 개발 기술 농가 신속보급을 통한 마늘 수확 후 관리기술 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

□ 추진방향

- 마늘 수확 후 관리에 농가단위 보급형 건조시스템 적용으로 시범효과 향상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가변형 열풍 건조시스템 특허출원('17, 충북도원)

□ 사업규모

- 사업비 : 368백만원(개소당 46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5ha

□ 사업량: 8개소

시 도	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개소수	8	1	1	1	1	2	1	1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마늘 수확 후 비용 절감을 위한 가변형 건조시스템 도입
- 저비용 설치(300만원/대) : 건조시스템+파렛트+박스(마늘 4.5톤/50a 물량)

○ 지원내역

- 가변형 마늘 건조기, 파렛트, 플라스틱 이동박스 등

□ 사업대상

- 마늘 주산단지 연구회, 공선회, 영농조합법인 등 단체

□ 사업추진 체계 및 요령

- 콘크리트 바닥 및 지붕이 있으며 지게차가 드나들 수 있는 공간 확보
- 건조기(배풍기)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야기하지 않을 독립된 공간 확보
- 시범사업 추진과정의 소득, 노력절감효과, 생산성 증대 등 사업성과를 분석 할 수 있도록 경영기록장 기재
- 표찰을 설치하되 규격 및 내용은 지방농촌진흥기관 자체적으로 결정
- 신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단계별 교육 및 평가회 추진

□ 기대효과

- 난지형마늘 재배농가의 저비용 고품질 건조시스템 도입 가능
 - ※ 열풍건조기 대비 82% 설치비용 절감, 입출·운송 노동력 50% 절감
- 농가 신속보급을 통한 마늘 수확 후 관리기술 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

□ 행정사항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잔대 우량종근 대량생산 및 시설재배 기술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 배영석	063-238-6450
		농촌지도사 김채희	063-238-6451

□ 목 적

- 우량종묘근 생산기술 보급을 통한 종근 안전확보 및 재배법 개선
- 시설하우스 재배를 통한 재배년수 단축 및 조기 시장 출하로 농가소득 증대

□ 추진방향

- 잔대 입모율 향상 및 종근 안전 확보를 위한 삼색부직포 재배 기술 보급
- 잔대 우량종근 대량생산, 종근재배 년수 단축과 조기수확을 위한 ICT 시설 하우스 구축 및 기술 확산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잔대 입모율 향상 및 종근 안전확보를 위한 삼색부직포 피복 효과('17, 충북도원)
- 잔대 우량 종근 다수확을 위한 적정 파종시기('18, 충북도원)
- 싹채 겸용 잔대 안정생산을 위한 비가림, 피복 재배기술 개발('11, 전남도원)

□ 사업규모

- 사업비 : 300백만원(개소당 5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660m²

□ 사 업 량: 6개소

시 도	계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개소수	6	1	3	1	1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삼색부직포를 활용 잔대 입모을 향상 및 우량종근 안전생산 기술
- 잔대 등 약용작물 비가림 시설재배 기술
- 시설하우스 재배 잔대 쌈채소 및 종근 수확 기술

○ 지원범위

- 종자, 삼색부직포 등 농자재, 시설하우스(내재해 규격, 660㎡)
- ICT 복합 환경 제어 시스템 : 관수 및 온습도 제어, 차광 및 보온 제어, 병해충 자동방제시스템 등

□ 사업대상

- 지역별 약초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및 연구회 등 농가 및 단체

□ 사업추진 체계 및 요령

- 잔대 재배 주산지로 재배농가가 많고, 우량종근 확보가 필요한 지역
- 내재해형 규격의 미사용 시설하우스(660㎡ 이상)를 보수하여 ICT 환경제어 시스템 구축도 가능
- 사업 성과분석 및 기술 확산을 위한 현장평가회 추진, 성과홍보
- 표찰을 설치하되 규격 및 내용은 지방농촌진흥기관 자체적으로 결정

□ 기대효과

- 잔대 비가림 시설재배시 노지재배 대비 수량 40% 증수 및 농가 소득 33% 향상
- 잔대 우량 종근 대량생산으로 종근 안전생산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원격 병해충 방제 생력화 체계 구축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 김성중	063-238-6430
		농촌지도사 김영란	063-238-6432

□ 목 적

- 고령화 시대 과원 병해충 방제 생력화로 농업인 편의향상 도모
- 원격 병해충 방제 체계 구축을 통한 과수 전업농 농약노출 피해 경감

□ 추진방향

- 노지·시설과원에 적용 가능한 병해충 원격·생력화 방제시스템 구축
- 병해충 정밀예찰 및 적기방제 기술보급으로 방제작업 효과 거양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ICT 기반 미래형 사과원 약제살포 자동화 시스템 개발('19, 원예원)
- 사과원 지주식 무인약제 살포장치의 병해충 방제 적정 노즐크기('19, 원예원)
- 상하이동회전식 스프링클러 이용 노지 온주밀감 병해충 방제('16, 원예원)
- 노동력 절감 농약살포시스템 지원에 대한 정책제안('16, 원예원)
- 에어포그 무인방제시스템 이용 시설 감귤원 병해충 방제('16, 원예원)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농업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www.rda.go.kr) → 농업기술(www.nongsaro.go.kr) → 영농기술 → 영농활용정보 → 영농활용기술

□ 사업규모

- 사업비 : 600백만원(개소당 10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1ha 내외

□ 사업량 : 6개소

시도	계	경기	강원	충북	경북	경남	제주
개소	6	1	1	1	1	1	1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과원 병해충 원격·생력화 방제시스템 구축 종합관리기술 적용
- 병해충 방제 자동화로 과종별 주요 병해충 일시·적기방제
- ICT 자동제어기술 기반 병해충 방제 생력화 체계 구축

○ 지원범위

- 원격·고정형 무인방제시스템 일체(분사장치, 제어기 등)
 - * '원격·고정형'이란 시설물 등에 일정 간격으로 부착 설치되어 방제작업 시 사용자가 이격된 거리에서 조정이 가능하고 농약노출 위험이 없는 형식을 일컫음
 - * (적용예시) 에어포그 무인방제시스템, 상하이동회전식 스프링클러, 기타 과수 지주목 무인방제 설치구조물 등 상기 '원격·고정형' 정의에 합당한 시스템
 - ※ 성능·경제성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시스템으로 자율 선정
- (자동제어) ICT 적용 자동제어시스템 ※본사업시범요인에 적용

□ 사업대상(선정기준)

- 과수 주산단지 연구회, 공선회, 법인 등
- 방제작업 원격·생력화 기술 도입 및 생산성 향상, 확산이 기대되는 단지

□ 사업 추진체계 및 요령

- 병해충 방제가, 도입비용·경제효과 등 지역 여건 적합성 사전검토 후 적합 시스템 자율 선정
- 방제노출의 경우 가능한 막힘 방지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 자재 선정
- ICT 자동제어시스템 도입 희망자는 사업대상자 선정 시 우선 선정
- 표찰을 설치하되 규격 및 내용은 지방농촌진흥기관 자체적으로 결정

□ 기대효과

- 병해충 방제 생력화를 통한 노지과원 약제살포 시간 절감 : 95%
 - * 상하이동스프링쿨러 약제살포 시간 : (관행) 180분 → (개선) 9분 / 1ha
 - * 마이크로스프레이시스템 약제살포 시간 : 48초 / 0.3 ha
- 과원 원격방제 시스템 구축으로 농업인 농약노출 피해 경감 : 100%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토마토 수경재배 작은뿌리파리 종합관리 기술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 장석우	063-238-6420
		농촌지도사 정은수	063-238-6422

□ 목적

- 토마토 수경재배 작은뿌리파리 종합 방제로 안정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
- 천적을 활용한 생물적 방제 및 끈끈이 트랩을 활용한 물리적 방제 투입

□ 추진방향

- 토마토 수경재배 해충방제 종합기술투입으로 안전·고품질 토마토 생산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양액재배 토마토에서 포식성 천적을 이용한 작은뿌리파리의 생물적 방제('15, 원예원)
 - ※ 아큐레이퍼응애를 10a 당 6병씩 5회 방사 시 무처리구 피해율 17.4% 대비 4.3% 이내로 피해를 줄일 수 있음
- 원예작물 근권파리류와 토양병의 상호관계 구명 및 관리기술 개발('15~'17)
 - ※ 포식성 천적과 황색 끈끈이트랩을 종합 활용하여 나리 근권 파리 방제기술

□ 사업규모

- 사업비 : 150백만원(개소당 3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2.0ha이상

□ 사업량: 5개소

시 도	계	충북	전북	전남	대구
개소수	5	1	1	2	1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끈끈이트랩(황색, 물형) 설치로 예찰 및 물리적 방제
- 포식성 천적살포로 알, 유충, 번데기 방제

○ 지원내역

- 끈끈이트랩, 포식성 천적, 포획기, 친환경제제 등

□ 사업대상

- 토마토 수경재배 주산단지 연구회, 공선회,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

□ 사업추진 체계 및 요령

- 토마토재배 작은뿌리파리에 의한 작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농가를 선정
- 사업 농가 대상 천적, 트랩 활용기술 교육 실시
- 시범사업 추진과정의 소득, 노력절감효과, 생산성 증대 등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경영기록장 기재
- 표찰을 설치하되 규격 및 내용은 지방농촌진흥기관 자체적으로 결정
- 신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단계별 교육 및 평가회 추진

□ 기대효과

- 근권 파리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수경 토마토 재배농가 15% 소득 증대
- 토마토 수경재배 안정생산 기술보급으로 내수 및 수출 다변화 기여

□ 행정사항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시설원예작물 바이러스 종합예방기술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 장석우	063-238-6420
		농촌지도사 정은수	063-238-6422

□ 목적

- 시설원예작물의 바이러스 매개충인 진딧물, 총채벌레, 담배가루이 등의 종합방제기술투입을 통한 안전농산물 생산도모

□ 추진방향

- 시설원예 작물 바이러스 매개충의 물리·화학적 종합방제기술 투입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광 유인트랩을 활용한 미소해충 방제효과('19, 원예원)
- 고추 육묘시 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병(CMV) 예방 기술('18, 원예원)
- 시설고추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 피해경감 총채벌레 방제기술('18, 전남도원)
- 미소해충 광유인트랩을 활용한 시설채소 친환경 재배기술('17, 원예원)

□ 사업규모

- 사업비 : 600백만원(개소당 4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1.0ha 내외

□ 사업량 : 15개소

시 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대구	인천	세종
개소수	15	3	3	1	1	2	1	1	1	1	1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바이러스 매개충 사전차단 종합관리기술 투입(트랩, 피복재, 방충망 등)

※ 하우스 측창 하부의 잡초 발생지를 필름으로 피복 총채벌레 유입 사전차단

- 황색 발광트랩 활용 방제효율 향상 및 피해 최소화

※ 방제효율 약 3배 향상 : (무광원 트랩) 60 → (발광트랩) 283마리/트랩

○ 지원내역

- 해충 광유인트랩, 방충망, 점착트랩, 하우스 측창 하부 피복, 육묘 재료 등

□ 사업대상

○ 시설원예작물 재배 연구회,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단체

□ 사업추진 체계 및 요령

○ 시범사업 추진과정의 소득, 노력절감효과, 생산성 증대 등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경영기록장 기재

○ 표찰을 설치하되 규격 및 내용은 지방농촌진흥기관 자체적으로 결정

○ 신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단계별 교육 및 평가회 추진

□ 기대효과

○ 바이러스 대응기술 종합관리 적용을 통한 바이러스 매개충 유입차단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도모

○ 친환경 방제를 통한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도 향상

□ 행정사항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관수시설 활용 과수동상해 방지기술 보급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 김성중	063-238-6430
		농촌지도사 김영란	063-238-6432

□ 목 적

- 최근 상시화되는 봄철 이상저온에 대응 가능한 피해예방 기술 확립
- 저비용 및 단순화된 실용기술로 신속한 주산지 저온대응 체계 구축

□ 추진방향

- 상시화되는 이상저온에 효과적 대응 가능한 열원 추가기술 적용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관수시설 활용 열·송풍처리에 의한 배 개화기 서리피해 경감('17, 원예원)
- 관수시설 활용 저비용 배 냉해 방지시설 적용 실증('19, 울산센터)
- 관수시설 활용 배 동상해 방지기술 현장적용·검증('20, 울산센터)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농업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www.rda.go.kr) → 농업기술(www.nongsaro.go.kr) → 영농기술 → 영농활용정보 → 영농활용기술

□ 사업규모

- 사업비 : 500백만원(개소당 10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10호

□ 사업량 : 5개소

시도	계	경기	전남	경북	경남
개소	5	1	1	2	1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화목보일러 등 열원 추가된 스프링클러 활용 과수 동상해 예방
- 농업기상정보 및 SMS 연동 농업기술센터 시범농가 현장지도

○ 지원범위

- 대용량 관수탱크 및 화목보일러·급열기 등 열원 추가기술
- 열원 추가 시 안전성·효율성 확보를 위한 작업실·보온재 등

□ 사업대상(선정기준)

○ 과수 주산단지 연구회, 공선회, 법인 등

- ※ 봄철 동상해 심한 지역 우선 선정(농작물 재해보험 등 근거자료 활용)

○ 관수시설 활용 동상해 방지기술 도입 및 생산성 향상·확산이 기대되는 단지

□ 사업 추진체계 및 요령

○ 봄철 동상해 상습지역 우선 선정으로 기술확산 효과 증대

○ 미온수 살수 효과 향상을 위해 기존 스프링클러 관수 농가 우선 선정

○ 온수 확보를 위한 보일러실 주변, 화재예방 대책 수립

- ※ 저수탱크 용량 및 내열온도 확인(일반 농업용 저수탱크 내열성 30℃이하)

- ※ 저수탱크 온도계 및 수량계 설치 시 효과검증 용이

○ 적기 살수를 위한 자동화 센서 활용

- ※ 기온 0℃부터 살수 또는 최저기온 내습 시간대 예약설정 기능 필요.

○ 표찰을 설치하되 규격 및 내용은 지방농촌진흥기관 자체적으로 결정

□ 기대효과

○ 상시 발생하는 봄철 이상저온 대응으로 노지과수 안정생산 지원

○ 저비용 및 단순화된 실용기술로 신속한 주산지 저온대응 체계 구축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외부환경 데이터 기반 스마트 양액공급기술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 장석우	063-238-6420
		농촌지도사 정은수	063-238-6422

□ 목적

- 고온, 장마, 겨울철 일조부족 등 불량한 외부기상환경에 대응한 시설환경관리 및 양액관리 자동화
- 계절 및 일변화 환경에 대응한 데이터 기반 최적 작물생육환경 조성으로 경영비 절감 및 소득증대

□ 추진방향

- 외부기상의 계절별 변화 및 일변화에 자동으로 대응하여 양액농도 및 양액조성을 조절하는 스마트 양액공급 기술보급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계절, 일사량 등 기상변화에 따른 관수량, 양분조성, 양분농도 자동조절기술
 - 관수량(2013년 특허등록), 양분농도(2017년 특허등록), 일정관리(2017년 특허등록)

□ 사업규모

- 사업비 : 400백만원(개소당 4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0.3ha 내외(개소당 2농가)

□ 사업량: 10개소

시 도	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개소수	10	2	1	1	2	1	2	1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외부환경 센서(온도, 습도, 일사센서)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일사누적속도에 따른 자동 양액제어 시설 구축으로 최적 작물생육 환경 조성

○ 지원내역

- 스마트 양액공급기, 외부환경 센서, 양액배관 시설 등

□ 사업대상

○ 시설원예(수경재배) 작물 연구회, 공선회, 농업경영체 등

- ※ 스마트팜이 갖춰지지 않은 시설원예재배 단지(파프리카, 토마토, 딸기 등)

□ 사업추진 체계 및 요령

- 시범사업 추진과정의 소득, 노력절감효과, 생산성 증대 등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경영기록장 기재
- 표찰을 설치하되 규격 및 내용은 지방농촌진흥기관 자체적으로 결정
- 신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단계별 교육 및 평가회 추진

□ 기대효과

- 수경재배 양액비용 22% 절감(582천원/10a), 수량 17% 증 ⇒ 농가소득 18% 향상 (관행 14,531 → 시범요인 투입 17,160천원)
- 겨울철 질소 및 관수량 조절 양액관리(파프리카) ⇒ 동계수량 87% 증수

□ 행정사항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느타리버섯 병재배 스마트재배사 및 환경관리 기술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 배영석 농촌지도사 김채희	063-238-6450 063-238-6451

□ 목 적

- ICT를 활용한 느타리버섯 병재배 스마트팜 표준재배사 및 생육모델 보급
- 재배사 및 환경관리 표준화를 통한 농작업 편의성 및 소득 증대

□ 추진방향

- 개발된 ICT기술 활용 및 확산을 위한 패널형 표준재배사 보급
- 외부 환경변화와 관계없이 항상 같은 품질의 버섯을 생산할 수 있는 최적의 데이터를 활용한 환경관리 기술 전파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버섯재배사 스마트팜 모델 활용 방법('17, 농과원·원예원 공동)
- 느타리버섯 스마트팜 재배용 최적 생육모델 개발('17, 농과원·원예원 공동)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농업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www.rda.go.kr) → 농업기술(www.nongsaro.go.kr) → 영농기술 → 영농 활용 정보 → 영농활용기술

□ 사업규모(선정기준)

- 사업비: 350백만원(개소당 70백만 원: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개소당 120㎡(6×20m)

□ 사 업 량: 5개소

시 도	계	경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개소수	5	1	1	1	1	1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느타리버섯 병재배 스마트팜용 패널형 표준재배사 3종
- 느타리버섯(춘추, 수한, 흑타리) 3품종 최적 생육 모델 DB
- 스마트팜용 기기와 장비의 설치를 통한 생육환경 제어기술(스마트폰 기반 앱, 환경관리 빅데이터 수집, 원격 모니터링 등)

○ 지원범위

- 생육환경 모니터링 및 자동제어 시스템(사업비의 25% 내외 편성)
 - * 환경정보 수집장치, 통합제어장치, 생육환경정보관리시스템, LED 보광장치 등
- 패널형 표준 재배사 및 냉난방 공조시스템(사업비의 75% 내외 편성)
 - * 표준재배사 자재, 공조시스템, 냉난방기 등

□ 사업대상

- 느타리버섯 재배 생산자 단체 및 농가 등

□ 사업 추진체계 및 요령

- 스마트팜 기기 장비 등 활용 능력이 우수한 사업대상자 선정
- 표준재배사는 현장여건에 따라 준비실 설치 등 설계변경 가능
- 표찰을 설치하되 규격 및 내용은 지방농촌진흥기관 자체적으로 결정
- 신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단계별 교육 및 현장평가회 추진, 성과홍보

□ 기대효과

- 느타리 생산의 안정성 증대, 농작업의 편의성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행정사항: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노지 고추 실속형 자동 관수시스템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 장석우	063-238-6420
		농촌지도사 정은수	063-238-6422

□ 목적

- 노지 고추 자동관수 시스템을 활용한 수분스트레스 경감 및 안정생산 도모
- 토양수분 장력센서를 활용한 안정적인 관수시스템 보급

□ 추진방향

- 토양수분함량 측정센서 기반 설치비용 절감 및 확장성을 겸비한 기본형자동 관수시스템 보급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노지고추 재배지 토양수분장력 센서 이용 자동관수 시스템의 구성 및 활용 방법('19 원예원)
- 노지고추 자동관수 시스템을 활용한 관수 효과('19 원예원)

□ 사업규모

- 사업비 : 280백만원(개소당 28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1ha 내외(개소당 4농가)

□ 사업량 : 10개소

시 도	계	경기	강원	충북	전남	경북	경남	인천
개소수	10	2	2	2	1	1	1	1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토양수분장력센서 및 간단한 운용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유지관리, 편리성 향상

※ 토양 조건에 따라 관수 개시점, 관수 시간/1회, 단수 시간을 설정하여 운용

※ 설정 예 : 관수 개시점(30kPa), 관수 시간/1회(15mm), 단수 시간(60min)

○ 지원내역

- 자동관개 제어모듈, 토양수분 자동계측 센서, 유량계, 관수자재 등

□ 사업대상

○ 노지 고추 생산자 단체(작목반, 연구회, 영농조합법인 등)

□ 사업추진 체계 및 요령

○ 관수, 전기 연결이 가능한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

○ 시범사업 추진과정의 소득, 노력절감효과, 생산성 증대 등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경영기록장 기재

○ 표찰을 설치하되 규격 및 내용은 지방농촌진흥기관 자체적으로 결정

○ 신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단계별 교육 및 평가회 추진

□ 기대효과

○ 정밀 물관리 기술 실용화로 작물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

- 생산성 20~30% 향상 및 관수 노력비 30% 절감

□ 행정사항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열효율화 기술 활용 시설과수 생육환경 개선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 김성중	063-238-6430
		농촌지도사 김영란	063-238-6432

□ 목 적

- 한파·폭염 등 생육기 이상기상에 대응한 과수 안전재배 기반 구축
- 저·고온기 과원 내 열교환 환경 개선으로 고품질 과일 출하 촉진

□ 추진방향

- 최근 봄·여름 고온 등 불량환경 가속화로 인한 수확지연 등 생산성 저하 회피
- 개화 및 수확기 급랭·한파로 인한 서리피해, 생리장해 대응 안전성 확보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시설감귤 난방에너지 절감 및 보온·습도 환경조절 기술('18, 원예원)
- 무가온 감귤온실 냉해방지를 위한 최적기술 도출 : 열회수환기장치('18, 농과원)
- 저·고온기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풍향가변형 공기순환팬 운용('17, 농과원)
- 시설하우스 공기순환 환풍시스템 개발('17, 천안센터)
- 시설원에 열회수형 온습도 환경제어시스템 활용결과('15, 농과원)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농업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www.rda.go.kr) → 농업기술(www.nongsaro.go.kr) → 영농기술 → 영농활용정보 → 영농활용기술

□ 사업규모

- 사업비 : 500백만원(개소당 10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0.5ha 내외

□ 사업량 : 5개소

시도	계	충남	전남	경남	제주도	대전
개소	1	1	1	1	1	1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시설 내부 풍향가변형 공기순환팬, 열회수환기장치 적용
- 생력화 운영을 위한 ICT 기반 자동제어 시스템 적용

○ 지원범위

- 풍향가변형 공기순환팬, 열회수환기장치
- (자동제어) ICT 적용 자동제어시스템 ※ 본 사업 시범요인에 적용

□ 사업대상(선정기준)

○ 시설과수 주산단지 연구회, 공선회, 법인 등

- *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연동형 하우스 보유대상자 우선 적용

○ 월동 및 조기가온작형 등 열교환 환경 개선 시범효과 파급이 기대되는 단지

- * 예시 : 만감류, 시설포도(가온) 등

□ 사업 추진체계 및 요령

○ 열교환 환경개선 중점 선정으로 기술확산 효과 증대

○ ICT 자동제어시스템 도입 희망자는 사업대상자 선정 시 우선 선정

○ 표찰을 설치하되 규격 및 내용은 지방농촌진흥기관 자체적으로 결정

□ 기대효과

○ 저·고온기 시설 내 온도보정을 통한 재배 안전성 확보 및 에너지 효율 증대

- 온도보정 : (순환팬) 고온기 5℃ 내외 강하, 저온기 7% 내외 절감
- 효율증대 : (열회수환기장치) 외부배출 열량 회수 평균 85% 내외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터널식 해가림 이용 인삼재배 신기술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 배영석	063-238-6450
		농촌지도사 김채희	063-238-6451

□ 목 적

- 노동력 절감형, 자연재해 경감용 터널식 신형 해가림 시설 보급
- 고품질·친환경 인삼 생산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 추진방향

- 터널식 신형 해가림 시설 점진적 보급 및 생육상황 관찰을 통한 지역별 재배기술 정립
- 자재 재활용률 증가, 농작업 편의성 등 장기적인 생산비 절감 유도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터널 하우스형 인삼 재배 시설('18, 원예원 특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재 골조 - 폭 3.6m(2두둑) - 높이(전면 2m, 후면 1.8) - 앞동과 뒷동은 40~50cm 겹치게 설치, 전면부와 후면부의 높이차(20cm) 통풍 공간 형성 	<p>The image contains two sets of technical drawings. Each set includes a small cross-section diagram at the top and a larger side-view diagram below. The side-view diagrams show a long, low-profile structure with a slight slope. Dimensions are provided in meters (m) and centimeters (cm). Labels include '전면부' (front section), '후면부' (rear section), and '통풍공간' (ventilation space). The drawings illustrate the structural details and how the front and rear sections overlap to create a ventilation gap.</p>
---	---

□ 사업규모

- 사업비: 640백만원(개소당 80백만 원: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개소당 1.0ha 내외

□ 사업량: 8개소

시 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개소수	8	1	1	3	1	1	1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인삼 터널식 해가림 시설 규격 및 설치 기술
- 병해충 저감 친환경 방제 및 수분관리 기술

○ 지원범위 : 터널식 해가림 시설에 필요한 자재, 차광지, 차광망, 관수시설 등

□ 사업대상

○ 인삼 재배 작목반, 연구회, 영농조합법인 등 농가 및 단체

□ 사업추진 체계 및 요령

- 인삼 주산단지로 노동력 절감, 자연재해 경감이 필요한 지역
- 내재해형 규격 터널식 해가림은 2종으로 자체적으로 선택하고 설치비용
과다 소요 시 면적을 축소하여 설치
- 사업 성과분석 및 기술 확산을 위한 현장평가회 추진 및 성과홍보
- 표찰을 설치하되 규격 및 내용은 지방농촌진흥기관 자체적으로 결정

□ 기대효과

- 인삼 고온,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 경감으로 생산성 약 10% 향상
- 노동력 및 병해 절감, 내재해형 해가림시설 보급으로 소득 향상 : 649만원/10a/6년근

□ 행정사항: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과채류 맞춤형 에너지절감 패키지기술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 장석우	063-238-6420
		농촌지도사 정은수	063-238-6422

□ 목적

- 지역 및 작목에 적합한 시설하우스 난방비 절감 패키지기술 확산
- 주요 과채류 재배환경 개선을 통한 병해충 방제와 수량 및 농가소득 증대

□ 추진방향

- 에너지절감 단위기술들을 지역 및 작목별 패키지모델 적용으로 시범효과 향상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농업에너지절감모델개발사업단 현장실증연구결과('17, 원예원)
 - 알루미늄필름, 국부난방, 다겹보온커튼, 열회수형장치, 공기열히트펌프, 공기막단열재 등 8종

□ 사업규모

- 사업비 : 720백만원(개소당 8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0.2~0.3ha

□ 사업량 : 9개소

시 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인천
개소수	9	1	1	1	1	1	1	1	1	1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농업에너지절감모델개발사업단 현장실증연구를 기반으로 한 지역 및 작목에 적합한 에너지절감 패키지기술 적용

○ 지원내역

- 작목 및 시설구조 고려 에너지절감 패키지기술 중 2~3종 패키지화

※ 사례 : 토마토(알루미늄스크린+공기열회수시스템), 딸기(다겹보온+수막+근권난방)

□ 사업대상

○ 시설원에 과채류 주산단지 연구회, 공선회, 영농조합법인, 농업경영체 등

※ 시설원에 내재해형 규격설계 하우스 우선적용

□ 사업추진 체계 및 요령

○ 기존 다겹보온커튼 등 에너지절감 요인 1가지 이상 보유시설 농가 선정

○ 시범사업 추진과정의 소득, 노력절감효과, 생산성 증대 등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경영기록장 기재

○ 표찰을 설치하되 규격 및 내용은 지방농촌진흥기관 자체적으로 결정

○ 신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단계별 교육 및 평가회 추진

□ 기대효과

○ 시설유형 및 작목별 패키지기술 적용으로 에너지절감: 33.6~59.0%

○ 보온 및 가온을 통한 재배환경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6.0~46.4%

□ 행정사항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지중 냉온풍 활용 시설과수 비용절감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 김성중	063-238-6430
		농촌지도사 김영란	063-238-6432

□ 목 적

- 고유가 시대 지중냉온풍 활용 에너지 절감으로 경영수지 개선
- 저·고온기 시설과수 환경 개선으로 생리장해 예방 및 품질 고급화

□ 추진방향

- 고유가 대응 환경친화적 저에너지 기술보급으로 경영비 절감
- 시설과수에 적합한 생육환경 개선으로 고품질화 안정생산 도모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시설포도 지중냉온풍장치 도입에 따른 효과 및 경영성과('13, 충북도원)
- 포도 시설하우스 지중냉·온풍장치 활용 에너지 절감 및 품질고급화('10, 천안센터)
- 저·고온기 온실 에너지 순환을 위한 풍향가변형 공기순환팬 운용('17, 농과원)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농업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www.rda.go.kr) → 농업기술(www.nongsaro.go.kr) → 영농기술 → 영농활용정보 → 영농활용기술

□ 사업규모

- 사업비 : 500백만원(개소당 10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0.5ha 내외

□ 사업량 : 5개소

시도	계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개소	5	1	1	1	1	1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저·고온기 지중냉온풍 활용 난방비 절감 및 생육증진, 품질고급화
- 지중냉온풍 열교환 장치를 활용한 저·고온기 생리장애 예방

○ 지원범위

- 지중냉온풍 장치 일체(열교환기, 자동제어기 등)
- 냉온풍 효율 극대화를 위한 공기순환팬 등(총사업비 0~10% 내외, 선택)

□ 사업대상(선정기준)

○ 시설과수 주산단지 연구회, 공선회, 법인 등

- * 시설과수 : 포도, 복숭아, 감귤(만감) 및 기타 시설과수

○ 에너지 절감 기술 도입 및 생산성 향상, 확산이 기대되는 단지

□ 사업 추진체계 및 요령

○ 기존 시설보유 농업인 중 ① 신규개원(작목전환), ② 유목기(식재 2년 내)

해당 농업인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

- ※ 본 사업 시공과정 상 성목과원은 지중공간 확보 애로 예상

○ 표찰을 설치하되 규격 및 내용은 지방농촌진흥기관 자체적으로 결정

□ 기대효과

○ 시설과수 에너지 절감 및 품질 고급화로 농가소득 증대

- 난방비 절감 : 약 60%(관행 8천L, 시범 3.2천L / 0.06ha)
- 착색·성숙 촉진(포도) : 약 20일 / 착색도 향상 : 칼라차트 7→8번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원예활동 전문가 활용 도시농업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 장석우	063-238-6420
		농업연구사 이혜진	063-238-6423

□ 목적

- 도시농업 및 원예·정원 기술 등 전문가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도시농업 전문가를 통한 마을환경 개선 및 주민 공동체 활동 강화
- 주민과 함께하는 공공텃밭을 통해 나눔과 소통으로 건강한 사회공동체 형성

□ 추진방향

- 도시마을 활력 증대를 위한 도시농업전문가의 재능기부 등 봉사활동으로 도시농업 활성화
- 도시농업 전문가를 활용한 텃밭, 정원 등 도시농업 공간조성 및 교육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아파트 공용 공간 활용 텃밭 조성 및 관리기술 개발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아파트 텃밭 조성 요구 및 목적, 활동, 식재식물, 필요 시설 및 지원('19, 원예원)
- 도시 환경개선을 위한 컨테이너 정원 개발 및 유지관리 기술('17, 원예원)
- 한국형 정원 표준화 및 기능별 조성 가이드라인 개발('14, 원예원)

□ 사업규모

- 사업비 : 750백만원(개소당 5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지역별 특성 고려 규모 선정

□ 사업량: 15개소

시 도	계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개소수	15	2	1	1	2	1	1	1	1	1	1	2	1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Master Gardener를 활용한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농업 활동
 - * 도시 텃밭, 생활형 공동체 정원 조성 등
- 보수 교육을 통한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및 역량강화
- 도시농업 활성화 행사 및 홍보 활동 등
- 공동주택 텃밭 조성 및 활용 프로그램

□ 사업대상(선정기준)

○ 농업기술센터, 도원(인력양성) 및 도시마을 공동체 등

○ 지원범위

- 도시농업전문가 양성 교육
- 도시농업 텃밭 및 공원 조성, 도시 자생 봉사활동 등

□ 사업추진 체계 및 요령

- 사업대상 및 규모 선정 시 가능 여부 확인 및 사전 협의
- 신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단계별 교육 및 평가회 추진
- 표찰을 설치하되 규격 및 내용은 지방농촌진흥기관 자체적으로 결정

□ 기대효과

- 마을, 텃밭, 공원 등 도심지역에 농업기술을 기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이용자에 대한 사회적 기여
- 도시농업 교육과 수행을 통한 농업의 긍정적인 가치 제고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식물활동 그린스쿨 · 오피스 조성기술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 장석우	063-238-6420
		농업연구사 이혜진	063-238-6423

□ 목적

- 공기 정화 식물을 활용한 공간 특성에 맞는 그린 스쿨 · 오피스 공간 조성
- 미세먼지 및 공기 오염물질 저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추진방향

- 교실 및 사무공간 부피 대비 2% 공기정화율을 통한 그린 인프라 조정
- 지역 내 화훼 농가와 연계한 식물 공급, 도시농업 전문가 연계 식물관리
- 센서 등 계측장치를 활용한 공기정화식물 사용효과 측정 및 홍보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미세먼지 없는 건강한 초등학교를 위한 그린스쿨 프로그램('18, 원예원)
- 개인용 식물-공기청정기 ‘미니 바이오월’ 현장적용('17, 원예원)

□ 사업규모

- 사업비 : 520백만원(개소당 4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 학교 : 개소당 20백만원, 사무실 : 개소당 20백만원
- 규 모 : 개소당 65㎡ 내외

□ 사업량 : 13개소

시 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인천	광주
개소수	13	3	1	1	1	1	1	1	1	2	1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헬스케어 식물, 바이오월 등 도시농업 기술 활용 공간 조성
- ICT 활용 공기 질 측정 및 미세먼지 관리
- 공기정화식물 효과, 재배 및 관리 교육

○ 지원범위

- 공기정화식물, 바이오월, 파티션온가든, 화분, 측정 센서, 컨설팅(교육) 등

□ 사업대상(선정기준)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공공기관 등

□ 사업추진 체계 및 요령

- 농촌진흥기관 설치는 가급적 지방
- 표찰을 설치하되 규격 및 내용은 지방농촌진흥기관 자체적으로 결정
- 신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단계별 교육 및 평가회 추진

□ 기대효과

- 실내공간 식물 식재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화훼농가 소득 증대
 - 전국 학교 20% 그린스쿨 조성 시 3.5만개 일자리 창출
- 미세먼지 저감 식물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 기여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도시민 참여형 아파트 조경 다층식재 기술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 장석우	063-238-6420
		농업연구사 이혜진	063-238-6423

□ 목적

- 주민이 참여하는 아파트 정원관리를 통해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 다양한 정원용 식물 소재를 활용한 차별화된 화단 공간 조성

□ 추진방향

- 지역공동체, 도시경관 조성으로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 제공
- 생산농가, 센터, 지역주민 협의체 구성으로 수요자 맞춤형 사업 추진
- 마을 주민 주도의 정원 공간 조성 및 운영 활성화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아파트 주동화단 교목하부 보식기술 정보제공('18, 원예원)
- 정원장식 에스펠리어(Espelier)로 활용 가능한 유실수 추천('17, 원예원)
- 정원의 다층구조 식재를 위한 하부식재용 초화류 식물추천('16, 원예원)

□ 사업규모

- 사업비 : 440백만원(개소당 4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아파트 1~2개단지 정도(4~10동 내외)

□ 사업량: 11개소

시 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서울	부산	광주	대전
개소수	11	2	1	1	1	1	1	1	1	1	1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다층 구조 식재 기준에 따른 적정 초본, 관목류 배치 및 식재
- 아파트 환경에 맞는 생울타리, 매트형태의 관목 및 초화류 식재
- 마을 주민 자체 관리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 지원범위

- 화단 기반조성, 관목 및 초화류, 관·배수시설, 다양도 기능성 식물매트, 컨설팅 (교육) 등

□ 사업대상(선정기준)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등

□ 사업추진 체계 및 요령

- 표찰을 설치하되 규격 및 내용은 지방농촌진흥기관 자체적으로 결정
- 신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단계별 교육 및 평가회 추진

□ 기대효과

- 주민이 참여한 아파트화단 관리로 식물소비 확대 및 관리 비용 절감
- 다층식재를 통한 식물 도입량 증가로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유럽종 포도 글로벌 선도단지 조성기술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 김성중	063-238-6430
		농촌지도사 김영란	063-238-6432

□ 목 적

- 유럽종 포도 선도단지 조성으로 최근 소비선호도 및 수입 공세 대응
- 기 개발 기술 종합 패키지화로 고품질 유럽종 포도 조기산업화 유도

□ 추진방향

- 다양한 껍질째·무핵 유럽종 포도 전용품종 도입 및 다배색 상품 출하
- 유럽종 포도 토양환경 개선 및 수형·전정방법, 시설 등 생산시스템 확립
- Global GAP 인증 등 관련기술 함양 교육으로 내수·해외출하 전초기지 마련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유럽종 포도 전용품종군 및 생산시스템 구축 매뉴얼('19, 원예원)
- 포도 직무육성 신품종 스텔라·샤이니스타 특성 구명('19, 원예원)
- 포도 샤인머스켓 품종 생육단계별 물관리 방법('18, 경북도원)
- 유허패드를 활용한 포도 샤인머스켓 선도유지 효과('18, 원예원)
- Global GAP 인증을 위한 포도 재배매뉴얼('17, 원예원)
- 포도 홍주씨들리스 색차계 및 과피색값 활용 수확기 판정('17, 원예원)
- 시설포도 재배농가 유럽종 품종 활용 만족도 및 수익성('16, 경북도원)
- 포도 샤인머스켓 무핵재배 적정 화수 정리 방법('16, 충남도원)
- 껍질째 먹는 포도 샤인머스켓 고품질 생산 적정 착과량('15, 경북도원)
- 포도 배수불량과원 개선을 위한 집수정형 배수장치 효과('14, 원예원)
- 대립계 포도 덕시설 연장형 비가림 시설('11, 원예원)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농업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www.rda.go.kr) → 농업기술(www.nongsaro.go.kr) → 영농기술 → 영농활용정보 → 영농활용기술

□ 사업규모

- 사업비 : 1,000백만원(개소당 20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3ha 내외(사업기간 2년 내)

□ 사업량 : 5개소(2년 계속사업)

* 본 사업은 2년 계속사업으로 '20년 선정시군을 '21년까지 연속 지원

시도	계	경기	충남	전북	경북
개소	5	2	1	1	1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껍질째·무핵 가능한 다양한 품종의 유럽종 전용품종 갱신 (3배색 이상)
- 토양개량제 활용 물리성 개선 및 배수불량지 집수정형 배수장치 적용
- 유럽종 포도 생산시스템 구축 (수형구성 및 광폭형 표준 비가림 등)
- Global GAP 인증, 생산기술 교육 등 산지경쟁력 강화 (재배매뉴얼, 컨설팅 활용)

○ 지원범위 : 유럽종 포도 전용품종, 비가림 시설 개선, 토양환경 개선, 글로벌 GAP 등

- (품종도입) 껍질째·무핵 가능한 유럽종 품종 중 3배색 이상 품종 도입
 - ※3배색:적색·흑색·녹색계/전용품종군범위내3색으로생산자단체자율선택
 - ※샤인머스켓 품종은 1ha이상식재금지
- (기반조성) 개량자재(왕겨·집수정 등) 활용 토양물리성 개선 ※압거불가
- (시설개선) 유럽종 적합 광폭형 시설 개선 및 지주·덕시설, 토양개량·관수 자재, 기타 겨울철 동해 방지 자재(부직포 등)
- (인증지원) Global GAP 인증 및 컨설팅 비용(총사업비20%내외,선택)
- (품질향상) 고품질 생산 및 생력화 관련 단순 기자재(총사업비10%내외,선택)
 - * 자연·인공수분 자재, 성페로몬트랩, 교미교란제, GA처리·표식기 등
- (역량강화) 교육 및 현장컨설팅 등(총사업비5%내외,선택)
 - ※유럽종재배기술및마케팅등교육적용권장
 - ※GlobalGAP인증추진시컨설팅교육과병행운영가능
- (출하홍보) 배색 포도 소비지 홍보판매 제반비용(총사업비 10% 내, 필수)
 - ※사업기간(2년)내 1회이상필수

- * ‘소비지’란 생산자·소비자 직접 연계 개념으로 수출 및 도매시장 경매는 제외.
단, 도매법인 활용 정가수의매매 형식의 소비지 연계는 가능
- * 사용범위 : 온라인·오프라인 판촉행사 마케팅비(블로그, SNS, 바이럴 등),
홍보전단 및 시식홍보비, 온라인 택배비, 상품화박스 제작·구매 등

□ 사업대상(선정기준)

- 기존 유럽종 포도 재배지역 중 시설하우스 등 기초 기반시설 보유 및 규모화 단지
조성으로 대단위 집산물량 유통·출하 가능한 연구회, 생산자 단체
- 다배색 상품 출하를 위한 구체적인 색상별 품종도입 계획 보유 대상자
- 토양환경 개선, 수형구성 등 새로운 기술실천 의지 높은 연구회, 생산자 단체
- Global GAP 인증 및 수출시장 개척 의지 높은 연구회, 생산자 단체

□ 사업 추진체계 및 요령

- 품종도입 시 유럽종 계열 중 껍질째, 무핵(GA 포함) 가능 및 최소한 3배색이상
품종으로 선택
 - ※ 3배색(최소):적색, 흑색, 녹색계/전용품종군범위내
- 묘목 식재·갱신은 반드시 종묘재배업 허가 업체에서 우량묘목으로 구입
 - ※ 묘목식재시기존포도나무사이 혼식 금지(우량목양성)
- 유럽종 포도 안정생산을 위한 배수양호 토양으로 기반조성 필요
 - ※ 열과등생리장애 방지를위한지하수위 확보 필요
- 유럽종 재배기술 확립을 위한 교육 운영 권장(글로벌 GAP 인증과 병행 가능)
- 중부 이상 지역 및 동절기 저온 상습지역은 동해 예방계획 수립 필요
- 표찰을 설치하되 규격 및 내용은 지방농촌진흥기관 자체적으로 결정

□ 기대효과

- 다양한 유럽종 포도 생산 확대로 소비시장에서의 새로운 상품트렌드 정착
- 글로벌 수준 유럽종 포도 비교우위 기술 확립 및 전전후 출하 교두보 마련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딸기 수출용 선도유지 일관체계 기술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 하두중	063-238-6470
		농업연구사 김단혜	063-238-6471

□ 목 적

- 수출 딸기 수확 후 물러짐 현상과 부패 방지를 위하여 “선도유지 일관체계 기술” 도입을 통한 수출 딸기 신선도 향상
- 수출 딸기 신선도 향상으로 수출 확대 및 농가 소득 향상

□ 추진방향

- 딸기 수확 후 물러짐과 부패 방지를 위한 관련 기술 투입
- 수출 딸기 신선도 향상을 위한 「수확 후 일관체계화 시스템」 도입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딸기 수확 후 물러짐 방지를 위한 CO₂ 처리기술 도입 및 보급(2002)
- 딸기 수확 후 물러짐과 부패 방지를 위한 기능성 용기 개발(2018)
- 딸기 수확 후 물러짐과 부패 방지를 위한 복합처리기 개발(2019)

□ 사업규모

- 사업비 : 270백만원(개소당 3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규모(개소당) : 1개 설치(일관체계화 시스템)
 - ① 복합처리기 [CO₂ + ClO₂] : 경도 증진 + 미생물 제어
 - ② 포장재 [기능성 1단 용기] : 후숙 지연 + 선도유지

□ 사업량 : 9개소

시 도	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개소수	9	1	1	1	1	2	1	2

□ 사업대상(선정기준)

- 수출 딸기 신선도 향상에 적극적인 주산지 APC
- 5농가 이상 수출참여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우선 선정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선도유지 일관체계 도입
 - 딸기 수확후 물러짐 방지를 위한 CO₂ 처리기술
 - 딸기 수확후 물러짐과 부패 방지를 위한 기능성 용기
 - 딸기 수확후 물러짐과 부패 방지를 위한 복합처리기 도입
- 지원내역 : 딸기 선도유지 일관체계화 시스템
 - 복합처리기 [CO₂ + ClO₂] : 경도 증진 + 미생물 제어
 - 포장재 [기능성 1단 용기] : 후숙 지연 + 선도유지

□ 사업 추진체계 및 요령

- 시범사업 추진과정의 소득, 노력절감효과, 생산성 증대 등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경영기록장 기재
- 포찰을 설치하되 규격 및 내용은 지방농촌진흥기관 자체적으로 결정
- 신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단계별 교육 및 평가회 추진

□ 기대효과

- 수출 딸기 신선도 향상으로 딸기 수출 확대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접목선인장 완효성 복합비료 담액재배 및 수출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 장석우	063-238-6420
		농업연구사 이혜진	063-238-6423

□ 목적

- 접목선인장 생산 생활화를 통한 노동력 경감 및 용토 폐기물 감소
- 간편한 복합비료 재배방식 보급을 통한 양액 및 간이양액재배 방식 대체

□ 추진방향

- 수출용 접목선인장 양액재배 이용 상품 고급화 생산기술 현장 보급
- 고품질 생산을 위한 시설 설치, 재배환경 조성 기술 지원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완효성 복합비료를 이용한 접목선인장 소형 상품 담액식 생력재배법(‘18, 원예원)

□ 사업규모

- 사업비 : 20백만원(개소당 1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300㎡ 이상

□ 사업량: 2개소

시 도	계	충북	경북
개소수	2	1	1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생력형 트레이와 재배상자를 이용한 완효성 비료 담액식 재배
 - 타이머, 관수장치를 이용한 수분공급 자동화

○ 지원범위

- 트레이, 재배상자, 관수장치(모터, 배관 등), 비료 등

□ 사업대상

- 수출 선인장 재배 연구회, 작목반, 영농법인, 공선회 등

□ 사업추진 체계 및 요령

- 시범사업 추진과정의 소득, 노력절감효과, 생산성 증대 등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경영기록장 기재
- 표찰을 설치하되 규격 및 내용은 지방농촌진흥기관 자체적으로 결정
- 신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단계별 교육 및 평가회 추진

□ 기대효과

- 복합비료 담액재배를 통한 용토조제 비용 및 인건비 절감 : 100천원/10a
- 수출 작업 시 출하작업(뽑기 및 뿌리절단) 작업 능률 향상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원에 특용작물 수출 규격화 기술보급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 하두중	063-238-6470
		농업연구사 김단체	063-238-6471

□ 목 적

- 수출 대상국 소비자 기호에 맞는 수출 규격품 생산으로 원예특작분야 수출 확대
- 기술수준의 상향평준화를 통한 균일품질 생산체계 확립 필요

□ 추진방향

- 고품질 수출 농산물 생산기술 종합 투입 및 해외시장 판로연계
- 동일규격 수출품 생산을 위한 농가별 맞춤형 현장기술지원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대미수출시 호접란 선도유지를 위한 배지건조처리조건('19, 원예원)
- 유기농자재를 활용한 수출용 단감 로망품종의 품질향상('17, 원예원)
- 동남아 수출단감 방제력 개발 및 활용방법('14, 원예원)
- 수출용 추황배 증소과 생산을 위한 적정 착과량('14, 원예원)

□ 사업량 : 6개소

시 도	계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개소수	6	2	1	1	1	1

□ 사업규모

- 사업비 : 600백만원(개소당 10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5ha(시설원예 2ha 이내, 단 화훼는 0.1ha 이상)

□ 사업대상(선정기준)

- 원예특용작물 및 그 가공품 생산자 단체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수출을 위한 규격품 생산, 시장선호 품종 재배, 안정적 수출량 확보
 - 균일화된 품질 생산을 위한 맞춤형 생산 기술 및 자재 투입
- 지원내역
 - 품질고급화, 에너지 절감, 생력화, 수확 후 관리 자재 및 기반시설
 - 기술교육 및 컨설팅, 바이어 초청, 수출박람회 홍보 등 행사지원
 - * 항공료, 해외 체재비 등 여비 편성 금지

□ 사업 추진체계 및 요령

- 시범사업 추진과정의 소득, 노력절감효과, 생산성 증대 등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경영기록장 기재
- 표찰을 설치하되 규격 및 내용은 지방농촌진흥기관 자체적으로 결정
- 신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단계별 교육 및 평가회 추진

□ 기대효과

- 생산에서 수출까지 전 단계에 대한 기술지원으로 실질적인 수출증대에 기여
- 수출 규격품 생산단지 구축으로 안정적인 수출물량 확보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농산물 유통 연장을 위한 선도유지 기술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 장석우	063-238-6420
		농촌지도사 정은수	063-238-6422

□ 목적

- 농산물 수확 후 선도유지를 위한 품질관리 기술의 현장보급을 통해 상품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

□ 추진방향

- 작목별 특성에 맞춘 수확-저장-선도유지 종합관리 기술 투입으로 유통 경쟁력 향상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도서지역 신선 산나물 저장유통 개선 시스템 실증연구('20, 원예원)
- 참외 수확 후 열수처리 및 MAP포장 선도 연장 효과('19, 원예원)
- 고구마 선도유지 일관체계화 기술 효과('19, 원예원)
- 고구마 수출전 미생물 제어 이산화염소 처리 효과('19, 원예원)
- 수삼 수확 후 APC 적용 선도유지 일관체계화 기술('13, 원예원)

□ 사업규모

- 사업비 : 240백만원(개소당 8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1ha 내외

□ 사업량: 3개소

시 도	계	충남	전남	경북
개소수	3	1	1	1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농산물 수확 후 저장·유통 기술 종합 적용
- 도서지역 신선 산나물 선도유지 저장유통 개선 기술 적용
- 참외 선도유지 저장기술
- 고구마 선도유지 일관체계화 기술 및 미생물에 의한 부패저감 효과
- 수삼 수확 후 선도유지 일관체계화 기술 및 수삼 전용 포장재 개발

○ 지원내역

- 수확 후 복합처리 장치(세척조+열수처리장치, 예냉시설) CO₂, 이산화염소 발생기 및 센서, 선별기, 선도유지 기능성 MA 포장재(필름 및 용기), 팻릿 포크리프트, 파레트랩포장기 등

□ 사업대상

- 대상작목별 주산단지 공선회, 영농조합법인, 산지유통센터(APC) 등

□ 사업추진 체계 및 요령

- 시범사업 추진과정의 소득, 노력절감효과, 생산성 증대 등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경영기록장 기재
- 표찰을 설치하되 규격 및 내용은 지방농촌진흥기관 자체적으로 결정
- 신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단계별 교육 및 평가회 추진

□ 기대효과

- 농산물 선도 유지에 따른 손실률 감소 및 노동비, 세척시간, 농가생산비 절감
- 농산물 수확 후 일관체계화 관리기술 적용으로 관행대비 상품성 146% 증진 및 소비자 신뢰도 향상

□ 행정사항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 김성종	063-238-6430
		농촌지도사 김영란	063-238-6432

□ 목 적

- 국내 환경여건에 최적화된 우수 우리품종 광역화 전문생산단지 조성
- 우리품종 일관체계 구축 및 명품브랜드 육성으로 품목별 대표조직 모델화

□ 추진방향

- 기존 육성단지 우리품종 도입 및 일관체계 구축을 통한 전문생산단지 조성
 - * 탐프루트,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 등 관련사업 연계 우리품종 생산거점 확보
- 집단화된 전문생산단지 중심 사업운영으로 품목 경쟁력 제고
 - * 영농시설 및 장비, 가공·포장기계 등 각종 농자재 개별농가 일괄지원 지양
- 우리품종과 연계한 대단위 광역화 품목대표조직 모델화
 - * 지역을 넘어 시군→도→전국단위 조직으로 발전 가능한 상생·협력 네트워크
- 우리품종 시장진출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내수·해외시장 전략적 개척
 - * 판로확보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 MOU, R&D 기술 등 집중 지원
- 단지 소속 농업인 기술역량 및 전문성 향상 종합교육 강화
 - * 신지식 수용 등 단지역량 상향평준화를 통한 FTT(Field Think Tank) 육성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사과종 사과 신품종 ‘루비에스’ 무적과 재배 과실품질 및 수량(’18, 원예원)
- 사과 아리수 품종 세장방추형 안정생산 측지관리 방법(’18, 원예원)
- 사과 중소과 품종의 착과량에 따른 과일품질 및 수량(’17, 원예원)
- 스테이플을 이용한 배 고접법 개발(’18, 원예원)
- 배 신품종 그린시스 과실 숙기판정 기준(’17, 원예원)
- 배 국내육성 신화 품종 열과 발생시기 및 관리요령(’15, 원예원)

- 포도 홍주씨들리스 수확기 판정을 위한 색차계 및 과피색깔 활용('17, 원예원)
- 수확 후 CO2 처리에 의한 복숭아 유미 상온유통 부패억제 효과('18, 원예원)
- 국내육성 완전단감 감풍 품종의 적정수확기 판정('19, 원예원)
- 브랜드감귤 생산을 위한 하례조생 비가림 재배력 및 매뉴얼('18, 원예원)
- 키위 신품종 감록 노지기준 발아 및 개화 특성('18, 원예원)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농업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www.rda.go.kr) → 농업기술(www.nongsaro.go.kr) → 영농기술 → 영농활용정보 → 영농활용기술

□ 사업량: 8개소(3년 계속사업)

* 본 사업은 3년 계속사업으로 '21년 선정시군을 '23년까지 연속 지원

시도	계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개소	8	1	1	2	1	2	1

□ 사업규모

- 사업비 : 2,000백만원(개소당 25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10ha 내외(사업기간 3년 내)
- * 기존 국내육성품종 과원 재배면적 합산 가능

□ 사업대상(선정기준)

- 대상품목(7)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감귤, 참다래
- 사업대상 : 상기품목 도입 희망 대단위 단지(연구회, 영농·회사법인 등)

* 단지규모 : 참여농가 20호 이상

○ 세부 선정기준

- 우리품종 갱신 및 규모화 의지 높고 품종브랜드 유통·출하계획 보유 대상자
- 우리품종 일관체계 및 대단위 광역조직화 구축 계획 보유 대상자
- * 농진청 주관 사업 중 기존 '과수 우리품종' 연계사업 관련 시범단지 대상
- * 연계사업: 탐프루트 생산시범, 과수 조기출하 우리품종 생산단지 조성 시범, 과수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 소비자 선호형 고품질 중·소과 생산시범
- ※ 단, 사과·배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화상병 등 식물방역법 관련 검역병해충 발생 시군은 사업대상에서 제외(연속사업 기간 중 검역병해충 발생 시 중단 가능)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기존 단지 내 우리품종 안정생산을 위한 전문생산·출하체계 구축
 - * 신품종 면적 확대 및 숙기분산 지속출하를 위한 접수·묘목 등 생산체계 확립
 - * 수확 후 관리, 선별, 포장, 유통, 가공 등 농산물 처리 전과정 공동화
 - * 최고품질 과일 생산기준 근거 고품질화 달성 및 전략적 내수·해외시장 개척
- 우리품종 연계 품목별 대단위 재배단지 조성으로 광역화 확산 도모
 - * 인근 동일품종 재배농가 결속판매 강화로 우리품종 광역화 단지조성 촉진
 - * 농산물 안전성 확보(GAP, 글로벌GAP 등) 및 대표브랜드 육성으로 비교우위 강화
 - * 신품종 판매를 위한 적숙기 판단 시 반드시 운영주체와 협의 하에 진행
-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속적 역량강화로 전문단지 육성 마스터플랜 적용
 - * (1단계)품종보급·일관체계→(2단계)내수·해외 전속출하→(3단계)품목대표조직화
- 시군별 사업추진 성과분석(소득, 매출액, 일자리 등) 및 평가·환류
 - ※ 1지역 1특산품 연계 품목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감귤, 참다래

○ 지원범위

- (출하홍보) 우리품종 소비자 홍보판매 제반비용(총사업비20%내외,필수)

※ 사업기간(3년)추진중매년1회이상필수

- * 본 사업 핵심목표는 동일품종 중심 소비자 홍보판매 및 산지조직화 진전으로 사업추진 2년차부터는 총사업비 20% 내외 소비자 홍보판매 진행 필수
- * ‘소비지’란 생산자·소비자 직접 연계 개념으로 수출 및 도매시장 경매는 제외. 단, 도매법인 활용 정가수의매매 형식의 소비지 연계는 가능
- * 사용범위 : 온라인·오프라인 판촉행사 마케팅비(블로그, SNS, 바이럴 등), 홍보전단 및 시식홍보비, 온라인 택배비, 상품화박스 제작·구매, 기타 신품종 홍보·판매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 (품종전환) 아리수, 홍금, 감홍, 신화, 그린시스, 슈퍼골드, 흑보석, 홍주씨들리스, 유미, 옐로드림, 조완, 원추, 윈터프린스, 골드윈 등 국내육성품종
 - * 신규과원 조성 및 고접갱신 등을 통해 지원된 품종은 향후 5년간 다른 품종 전환불가
- (일관체계) 수확 후 관리, 선별, 포장, 유통, 가공 등 일관체계화 지원
 - * 단지중심 집단체계 구축으로 개별농가 소모성 자재 및 설비 지원 지양
 - ※ 토지구입이나 단순 리모델링, 차량구입 등 목적 외 사용 불가
(재배단지 공동으로 사용하는 필수 기자재에 한하여 집행 가능)
- (품질향상) 결실안정, 재해대응 등 고품질화 자재

- * 자연·인공수분 자재, 성페로몬트랩, 교미교란제 등
- (역량강화) 교육 및 현장컨설팅 등

□ 사업 추진체계 및 요령

- 묘목 식재·갱신은 반드시 종묘재배업 허가 업체에서 우량묘목으로 구입
 - * 국산품종 범위 : 농촌진흥기관(청·도원) 육성 품종
- 고접의 경우 스테이플 접목기술 활용 등 자력 접목 권장
- 배는 이른 추석 GA 무처리 대응 가능한 조·중생종 품종 5ha 이상 필수
- 표찰을 설치하되 규격 및 내용은 지방농촌진흥기관 자체적으로 결정

□ 기대효과

- 시장선도 가능한 고품질 우리품종 규모화 단지 조성으로 과수산업 저변 확대
 - 국산품종 보급률 4% 제고 : ('14) 12.4천 → ('23) 17천/99천ha
- 브랜드 중심 일원화된 출하체계 확립으로 우리품종 품목대표조직 모델화
 - 품종브랜드 활용 소비지 홍보출하 : ('18) 3 → ('23) 15 브랜드 이상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프리미엄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농업연구관 김영창 농촌지도사 김광식	063-238-0680 063-238-0681

□ 목 적

- 신기술보급사업 우수 성과기술의 패키지를 통한 프리미엄 농산물 수출로 우리 농산물 인지도 및 수출 경쟁력 제고
- 프리미엄 농산물 생산 및 수출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 추진방향

- 프리미엄 수출 농산물 품질 기준 설정
 - 과일·과채 대상 탑프로젝트 생산 기준을 참고하되, 사업참여 농업경영체에서 수출대상국 요구수준에 부합토록 자체 품질 기준 마련
 - ※ **프리미엄이란?** 제품의 특성과 품질을 경쟁상품과 차별화함으로써 신뢰도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가치가 부여된 프리미엄 상품은 소비자의 관심과 로열티 확보가 가능<프리미엄 수출농산물 상품기준 조사·분석('19)>
- 프리미엄 농산물 생산부터 수출까지 적정 기술을 시범 적용
- 최고품질 수출물량의 안정적 확보와 체계적인 품질관리 체계 기반 지원
- 프리미엄급 국내 농산물 수출을 통해 해외 농산물과의 가격 경쟁력 확보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수출포도(샤인머스켓) 경영체 종합기술지원 효과분석('19, 영농활용)
- 샤인머스켓 포도 수출규격품 수출농가 품위 권장기준 설정('19, 영농활용)
- 딸기 수출 시 대용량 MA 처리에 따른 선도유지 효과('19, 영농활용)
- 수출용 딸기 색상 및 형상 선별장치 사용 방법 및 이용 효과('18, 영농활용)
- 황금배 착과량 및 적과시기에 따른 중소과 생산 정도('18, 영농활용)
- 황금배의 동녹방지용 국산 전용봉지 사용('06, 영농활용)
- 농업인 디자인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활용 가이드('16, 영농활용)
 - ◆ 영농활용기술: 농촌진흥청 「농업기술」 → 영농기술 → 영농활용기술
 - ◆ 수출농업정보: 농촌진흥청 「농사로」 → 영농기술 → 수출농업

□ 사업량: 5개소

도 별	계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울산
개소수	5	1	1	1	1	1

□ 사업규모

- 총 사업비 : 1,100백만원(개소당 22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 2년 연속사업으로, '21년 선정 시군을 '22년까지 지원
- 사업내용 : 개소당 품목별 생산·품질관리시설 및 수출기반 현대화 지원

□ 사업 대상

- 생산자 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품목공선출하협의체 등 농업경영체
 - 농업경영체란 품목별 생산기반(5ha, 동일 품종 재배면적),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유통, 수출 역량(실적)을 지닌 경영체를 말함
 - ※ 국내 생산여건 외에 수출 경험, 수출관련 경력(수출교육, 수출상담회 참가, 해외 전시회 참가 등), 매출액 및 수출액, 품질인증 현황(HACCP, ISO 등), 경영체 소개서 및 제품 소개서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대상을 선정

□ 시범요인

- (품종) 국내 육성 품종 보급 및 보급 품종의 프리미엄 상품 기준 특성
- (생산) 국가 및 품목별 프리미엄(제품관점, 소비자관점, 마케팅 관점) 시장·상품기준, 프리미엄화 사례, 생산 및 수출매뉴얼 적용
 - ※ 프리미엄 수출농산물 상품기준 조사·분석('19), 품목별 수출 매뉴얼 외 연구성과
- (유통) 프리미엄 수출 농산물 품질 유지를 위한 선도유지 기술 활용
 - ※ 수출 신선농산물 수확 후 품질관리 기술 요약집('19) 외 연구성과
- (수출) 수출유망품목 발굴 및 시범 수출을 위한 매뉴얼 및 브랜드 활용
 - ※ 신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시장 조사분석 및 유망품목 수출가능성 평가('20) 외 연구성과
- (교육·컨설팅) 농촌진흥기관에서 실시하는 품목별 교육프로그램, 컨설팅 적용

□ 지원범위

- 세척기, 건조기, 선별기,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포장설비 등 수출 품목별 농산물 일관 처리가 가능한 수확 후 관리 기기 및 설비
- ClO₂ 처리시설, 선도유지제(유황패드 등), MA필름 등 선도유지 및 장기 저장기술 투입이 가능한 시설 및 자재
- 상표 및 디자인 등 브랜드를 개발·적용한 포장재, 재배단지 상징 조형물
- 수출 농산물 공동마케팅을 위한 홍보, 국내외 전시 활동, 판촉활동
- 교육 및 컨설팅, 사업성 평가 등 농업경영체 수출역량 프로그램 제공

□ 사업운영

- (협업) 농촌진흥기관을 중심으로 생산-수확-유통-수출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산학연 협의(업무협약) 체계를 구성
- (상품) 수출용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지속적인 생산·출하체계 구축
 - 최고품질 생산단지 조성을 통한 품목별 경쟁력 제고 → 안정적 공급
 - 재배, 수확, 저장, 포장, 운송과정 중 상품성 관리 강화 → 수출가격 우위
- (역량) 확고한 수출의지, 조직화와 공동경영을 통한 수출경영 인식 전환
 - 전문가 활용 컨설팅, 생산자 대상 수출 교육 기획 제공
 - ※ 농촌진흥청 ‘찾아가는 수출현장 종합컨설팅’(농약 안전성 포함), 교육과정, 연차별 수출관련 품목별 연구과제와 연계한 컨설팅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농촌진흥기관) 수출 관련 교육, 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
- (지원) 수출 신시장 개척 및 수출 활성화 지원을 통한 수출 여건 개선
 - 해외시장 분석, 수출유망품목 발굴, 수출품목 안전관리기준 관리, 홍보 등
- (피드백) 시군별 사업추진 성과 분석 및 평가·환류
 - ※ 예산집행 실적, 성과목표 달성, 사업내용 적절성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 시 차등 지원할 수 있음

□ 성과관리

- 가격, 품질, 수출 측면에서 프리미엄 기준 달성에 부합하는 적정 지표 설정
- 사업 연차별 지속적으로 예산집행, 목표 달성 점검 및 관리

- ※ 생산비 절감, 농가기술수준향상도,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율, 수출 노력도 (농업경영체의 자체적인 회원농가역량, 상품품질향상 등 노력 포함), 수출용 상품(프리미엄) 비율, 교육·컨설팅지원 등 사업목적달성 및 지자체 정책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개발

□ 사후관리

- 공통적인 사업관리, 정보공시, 중요재산 취득·처분 제한 등은 이 시행지침 '신기술보급사업(총괄)' 부분을 참고

□ 기대효과

- 국내 농산물 인지도 제고 및 일반 농산물 수출가격 동반 상승 유도
- 품질 고급화와 수출시장 다변화로 국내 농산물 수출규모 확대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
 - 사업계획(3월 말), 결과 보고(11월 말)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농촌지도관 김기형	063-238-0981
	기술보급과	농촌지도사 배선아	063-238-0987

□ 사업목적

- 연구-지도-민간이 블렌딩된 수평적 多對多 네트워크 기술보급 적용 및 지역 주도의 농업 발전모델 구축
- 농업기술보급 기관간 실증연구 협업으로 지역 현안 해결 촉진

□ 추진방향

- (중앙) 지역계획의 실천적 추진 지원을 위하여 관련 사업(R&D, 기술보급) 컨설팅 등 기술지원 추진
- (지방) 지역 여건을 고려한 농촌지도사업 발전 구상(중점 사업 방향, 과학영 농기반조성, 역량강화 등) 및 지역 주체 참여 사업 방안(네트워크 구성, 자체 사업 연계, 거점지역 육성 등) 제시

□ 사업량 2개소(전북, 전남)

□ 사업비 : 500백만 원(국비 50%, 지방비 50%) * 2년 연속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시군농업기술센터 * 보조사업자 : 농업법인 등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지역농업발전 실현을 위한 청-시군간 협업모델 추진 협약과 네트워크형 기술보급 추진

- 파급효과는 높으나 고도화된 전문성과 위험요인이 높은 기술의 현장적용
- 민간업체, 농업인 등 현장에서 개발한 민간 R&D성과 발굴과 사업화

○ 사업유형 : 자치단체자본보조, 민간자본(경상)보조

○ 지원범위

- 지역에 의미있는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신기술 확대 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 자율형 통합 기술지원

- 사업유형(예)

유형	추진방향
지역특화 (농촌형)	지역 농업환경에 맞는 생력화 기술과 경영비 절감기술 확산으로 부가가치 향상 * 예시 : 아열대 작목 + 스마트팜 기술 + 공동브랜드 개발 등
안전먹거리 공급 (도시형)	지역산 식재료 공급율(현재 20~30% → 미래 70% 이상) ⇒ 지역별 먹거리 자급률 제고를 위해 품목 다양화로 먹거리 체계 구축 * 예시 : 안전먹거리 생산기반 조성 + 싱글푸드 생산 시범 + 수확후 관리시설 + 신선식품 스마트 유통 시스템
일자리 창출 (도농복합형)	신소득원 개발로 창업 확대 ⇒ 도시-농촌 연계한 곤충 소득화, 수제맥주·떡류 국산화 등 현대화 지원 * 예시 : 식용곤충 소득화 생산기반 조성 + 맥주보리밀 품종 이용 수제 맥주 국산화 + 품질관리 지원

□ 보조사업 추진체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및 관련규정 참조

○ 보조사업자 선정 및 운영, 사후관리

- 농업기술센터는 보조사업자 선정시 시범사업에 준하여 확정
- 보조금 교부 및 보조사업장(시설장비 포함) 등 시범사업에 준한 사업관리

○ 사업비 편성, 집행 및 정산 처리(e-나라도움)

□ 기대효과

- 기술보급체계 변화를 통한 농업현장 애로사항의 신속한 해결
- 지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네트워크형 기술보급 체계 정착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세부사업: 신기술보급사업

축산 기술보급

고온건조방식 대인소독장비 활용기술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촌지도관 강신곤	063-238-7201
		농촌지도사 김창한	063-238-7203

□ 사업목적

- 편리성이 향상된 고온건조방식 소독장비 활용으로 효율적인 차단방역 시스템 구축 및 대인소독에 대한 기피현상 방지

□ 추진방향

- 병원체 사멸에 보다 효과적인 고온건조방식 소독방법 연중 활용 기술 보급
- 농가의 적극적인 차단방역 활동을 통해 소독효과에 대한 불신해소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조, 농촌진흥법 제15조, 제16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고온건조 대인소독방식 개발('16, 축산원)
 - 특허(2016-0151682, 고온 건조식 대인 소독장치) 및 기술이전('17)

-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영농활용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 농업기술 → 영농기술 → 영농활용정보

□ 사업량 : 7개소

시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개소수	7	1	1	1	1	1	1	1

□ 사업규모

- 사업비 : 280백만원(개소당 4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2농가(농가당 돼지 3,000두 이상)

□ 사업대상

- 돼지 다두사육 지역의 고온건조방식 소독기 적용이 가능한 양돈 농업 경영체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기존 분무소독 또는 자외선소독 방식의 대인소독장비 대체 고온건조 방식(75℃ 5분, 80℃ 3분) 소독장비 운영
 - 양돈농가 출입자의 1차 소독장비로 활용(출입구 설치)
- 지원범위 : 고온건조 소독장비 및 기술지원 등

□ 사업추진체계 및 요령

- 시범사업 추진과정의 소득, 노동력절감 효과, 생산성증대 등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국립축산과학원 똑똑한 축산농장관리 프로그램 ‘축사로’ 가입 활용
- 국비지원 시설 및 기자재 화재사고 대비를 위한 ‘축사 및 시설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권장
- 농촌진흥청 개발 기술 우선 투입
- 표찰을 설치하되 규격 및 내용은 지방농촌진흥기관 자체적으로 결정
- 신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단계별 교육 및 평가회 추진

□ 기대효과

- 기존 대인소독장비의 문제점 해결 및 사용의 편리성 제공
 - 고온과 건조에 약한 병원체의 효과적인 사멸, 인체 무해한 대인소독 방식을 활용하여 대인소독기 활용도 향상
- 소독효과에 대한 불신해소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소독장비 활용가능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젖소 유두 자동세척기 활용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촌지도관 강신곤	063-238-7201
		농촌지도관 어윤종	063-238-7205
		농촌지도사 김창한	063-238-7203

□ 사업목적

- 젖소 착유환경 개선을 통한 고품질 우유 생산과 노동력 절감 및 착유 세정수 최소화

□ 추진방향

- 젖소 착유우의 유두세척 자동화를 통해 축산업의 선진화 유도
- 유두 마사지 및 정밀 세척관리로 고품질 우유 생산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조, 농촌진흥법 제15조, 제16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젖소유두 세척장치 관련 유두 세척장치를 고안 및 특허('14, 축산원)
- 유두 자동 세척장치 개발 제작('17, 축산원)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영농활용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 농업기술 → 영농기술 → 영농활용정보

□ 사업량 : 6개소

시도	계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개소수	6	1	1	1	1	1	1

□ 사업규모

- 사업비 : 240백만원(개소당 4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규모 : 개소당 2농가(농가당 착유우 30두 이상)

□ 사업대상

- 젖소 다두사육 지역의 검정농가로 고품질 우유 생산을 위해 노력하는 유두 자동세척장치 설치가 가능한 젖소사육 농업경영체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유두 자동세척장치 이용 노동력절감 및 위생적인 유두세척
- 지원범위 : 유두자동세척시스템 등

□ 사업추진체계 및 요령

- 시범사업 추진과정의 소득, 노동력절감 효과, 생산성증대 등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국립축산과학원 똑똑한 축산농장관리 프로그램 ‘축사로’ 가입 활용
- 국비지원 시설 및 기자재 화재사고 대비를 위한 ‘축사 및 시설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권장
- 농촌진흥청 개발 기술 우선 투입
- 표찰을 설치하되 규격 및 내용은 지방농촌진흥기관 자체적으로 결정
- 신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단계별 교육 및 평가회 추진

□ 기대효과

- 유두 자동세척기를 이용한 세척노동력 절감 및 최적의 세척액 사용으로 환경오염 방지
- 전동 마사지를 통한 젖 내림 개선으로 고품질 우유 생산 등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치즈 숙성실 활용 숙성기술 보급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촌지도관 강신곤 농촌지도사 김창한	063-238-7201 063-238-7203

□ 사업목적

- 국산 우유 소비 증가를 위한 목장유가공 숙성치즈 제조 활성화
- 유가공 낙농가 숙성치즈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술지원 기반 마련

□ 추진방향

- 숙성실 운영 및 숙성기술 보급으로 농가 숙성치즈 제조 활성화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조, 농촌진흥법 제15조, 제16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치즈 숙성 중 곰팡이 오염 저감법 개발('19, 축산원)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영농활용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 농업기술 → 영농기술 → 영농활용정보

□ 사업량 : 4개소

시도	계	경기	강원	전남	경남
개소수	4	1	1	1	1

□ 사업규모

- 사업비 : 120백만원(개소당 3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숙성실 10㎡ 이상, 숙성치즈 90kg 이상 생산

□ 사업대상

- 치즈를 생산하면서 치즈숙성실 설치 운영으로 숙성치즈 생산이 가능한 젓소 사육 농업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등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치즈 숙성실을 활용한 숙성치즈 생산
 - 숙성기술 및 품질관리 기술 투입 고부가가치 숙성치즈 제조
- 지원범위 : 치즈숙성실 설치 또는 리모델링, 숙성실 기자재, 숙성기술 등

□ 사업추진체계 및 요령

- 시범사업 추진과정의 소득, 노동력절감 효과, 생산성증대 등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국립축산과학원 똑똑한 축산농장관리 프로그램 ‘축사로’ 가입 활용
- 국비지원 시설 및 기자재 화재사고 대비를 위한 ‘축사 및 시설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권장
- 농촌진흥청 개발 기술 우선 투입
- 표찰을 설치하되 규격 및 내용은 지방농촌진흥기관 자체적으로 결정
- 신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단계별 교육 및 평가회 추진

□ 기대효과

- 숙성치즈의 안정적 생산을 통한 유가공품 부가가치 향상
 - 우유의 부가가치 약 8배 증가 : 납유 1,100원/kg → 숙성치즈 8,000원/100g
- 자연치즈 제품의 다양화로 목장형 치즈 소비 확대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자가배합 섬유질배합사료 분석 품질 고급화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촌지도관 강신곤 농촌지도사 김창한	063-238-7201 063-238-7203

□ 사업목적

- 농가제조 섬유질배합사료(TMR) 성분 분석 및 발효상태 측정을 통한 품질향상

□ 추진방향

-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섬유질배합사료 성분 분석기기 등 구축
- 섬유질배합사료 분석 결과 활용 현장 기술지원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조, 농촌진흥법 제15조, 제16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유산균, IRG 사일리지 혼합 섬유질배합사료 급여 착유우 사료효율 및 산유량 개선('16, 축산원)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영농활용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 농업기술 → 영농기술 → 영농활용정보

□ 사업량 : 3개소

시도	계	경기	경북	울산
개소수	3	1	1	1

□ 사업규모

- 사업비 : 600백만원(개소당 20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섬유질배합사료 분석 100점 이상

□ 사업대상

- 농가 자가제조 TMR 급여 한우·젓소 다두사육 지역으로 사료성분 분석 기기 등 설치 운영이 가능한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섬유질배합사료 성분 분석 및 발효상태 측정 기술 투입
 - 축종별 시기별 사양표준에 맞는 TMR 급여로 생산성 제고
- 지원범위 : 농가제조 TMR(섬유질배합사료)의 수분, 조단백, 조지방, NDF, ADF, Ash 등 사료성분 분석을 위한 기기 등

□ 사업추진체계 및 요령

- 표찰을 설치하되 규격 및 내용은 지방농촌진흥기관 자체적으로 결정
- 신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단계별 교육 및 평가회 추진

□ 기대효과

- 농가제조 섬유질배합사료 성분분석 및 발효상태 측정을 통한 배합비 조정, 발효조건 설정 등으로 품질 향상
- 시군농업기술센터 사료품질관리실 구축으로 대농민 서비스 향상
- 사료성분분석, 미생물 측정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로 일자리 창출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한우 우량암소 조기선발 기술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촌지도관 강신곤 농촌지도사 김창한	063-238-7201 063-238-7203

□ 사업목적

- 체계적 한우 번식우 개량단지 조성을 통한 한우 경쟁력 강화
- 한우 우수 생산단지 조성으로 지역 내 고품질 축산물 안정적 생산 및 공급

□ 추진방향

- 초음파진단, 유전정보 활용으로 우수 암소 선발 및 고능력 한우 생산 기반조성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조, 농촌진흥법 제15조, 제16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초음파기술을 활용한 농가단위 한우 우량 암소 조기선발 방법('17, 축산원)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영농활용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 농업기술 → 영농기술 → 영농활용정보

□ 사업량 : 8개소

시도	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개소수	8	2	1	1	2	1	1

□ 사업규모

- 사업비 : 1,600백만원(개소당 20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10농가 이상(농가당 한우 번식우 80두 이상)

□ 사업대상

- 한우 다두사육 지역으로 개량에 노력하는 한우 번식우 사육 농업경영체, 단지 등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암소 육질 초음파 진단기술 투입으로 효율적인 개체 선발
 - 유전정보 활용 기술을 통한 농가단위 암소 선발체계 구축
 -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 사양관리 기술 투입
- 지원범위 : 전문컨설팅, 유전자분석, 초음파진단, 체중측정기 및 유도로, 미생물발효사료기 등

□ 사업추진체계 및 요령

- 시범사업 추진과정의 소득, 노동력절감 효과, 생산성증대 등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국립축산과학원 똑똑한 축산농장관리 프로그램 ‘축사로’ 가입 활용
- 국비지원 시설 및 기자재 화재사고 대비를 위한 ‘축사 및 시설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권장
- 표찰을 설치하되 규격 및 내용은 지방농촌진흥기관 자체적으로 결정
- 신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단계별 교육 및 평가회 추진

□ 기대효과

- 우량 암소 조기 선발 한우 고급육 생산기반 조성으로 소득향상 (17%)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축사 공기정화 질병예방 기술보급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촌지도관 강신곤 농촌지도사 김창한	063-238-7201 063-238-7203

□ 사업목적

- 축사에 유입되는 세균이나 먼지 등을 정화하여 축사 내 오염물질 유입 방지로 가축의 질병 예방

□ 추진방향

- 무창 축사에 유입되는 공기에 대한 살균 및 분진저감 기술 보급
- 축사 공기 개선으로 위생적인 축사 환경 조성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조, 농촌진흥법 제15조, 제16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축사 입배기 공기 분진 저감 장치 설치 효과('18, 축산원)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영농활용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 농업기술 → 영농기술 → 영농활용정보

□ 사업량 : 9개소

시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개소수	9	2	1	1	1	1	1	1	1

□ 사업규모

- 사업비 : 720백만원(개소당 8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2농가(농가당 닭 50,000수 이상)

□ 사업대상

- 축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며 질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닭 다두사육 지역의 무창축사 양계 농업경영체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축사에 유입되는 공기에 대한 살균 및 먼지 제거 기술 투입
 - 축산 농가 규모에 맞는 시설 설치 및 운영 기술지원
- 지원범위 : 바이오필터 등 축사 유입 공기 살균 및 분진 저감 시설 등

□ 사업추진체계 및 요령

- 시범사업 추진과정의 소득, 노동력절감 효과, 생산성증대 등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국립축산과학원 똑똑한 축산농장관리 프로그램‘축사로’ 가입 활용
- 국비지원 시설 및 기자재 화재사고 대비를 위한 ‘축사 및 시설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권장
- 표찰을 설치하되 규격 및 내용은 지방농촌진흥기관 자체적으로 결정
- 신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단계별 교육 및 평가회 추진

□ 기대효과

- 축사에 유입되는 세균이나 먼지 등으로 인한 질병 발생 감소
 - 축사 내 유입되는 공기의 분진 저감 94%, 세균수 89% 감소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한우 숙성기술 활용 저지방부위 부가가치 향상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촌지도관 강신곤 농촌지도사 김창한	063-238-7201 063-238-7203

□ 사업목적

- 한우고기 저등급·저지방 부위의 활용성 증진 및 부가가치 향상

□ 추진방향

- 한우고기 생산 현장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숙성기술 보급으로 저지방 부위 및 저등급육의 소비촉진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조, 농촌진흥법 제15조, 제16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한우 저지방·저등급육 활용한 건조숙성 최적조건 확립('16, 축산원)
 - 1등급 저지방부위를 활용한 온·습도 조절 건조숙성 최적조건 확립
- 한우저등급육 사분도체를 활용한 건조숙성 최적조건확립('17, 축산원)
 - 풍미미생물활용 건조숙성을 통한 2등급육의 육질 및 기호도증진 효과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영농활용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 농업기술 → 영농기술 → 영농활용정보

□ 사업량 : 3개소

시도	계	경기	강원	충남
개소수	3	1	1	1

□ 사업규모

- 사업비 : 240백만원(개소당 8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한우 연 50두이상 가공판매 사업체

□ 사업대상

- 한우를 사육하면서 가공 및 자체 판매장을 보유하고 숙성실 설치가 가능한 브랜드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농업경영체 등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건식숙성) 온·습도 조절 숙성시설 확보, 품질 및 위생관리 매뉴얼 전수, 한우고기 대분할 또는 소분할 부위별 숙성기술 현장적용
 - (습식숙성) 저온냉장 숙성시설 확보, 품질 및 위생관리 매뉴얼 전수, 연도관리프로그램 설치 및 활용기술, 한우고기 대분할 또는 소분할 부위별 숙성기술 현장적용
- 지원범위 : 건식숙성실 및 습식숙성실 설치 또는 리모델링, 풍미미생물, 포장기 등

□ 사업추진체계 및 요령

- 숙성용 한우고기 부위별 관리 및 포장방법, 숙성관리 기술 보급
- 국비지원 시설 및 기자재 화재사고 대비를 위한 ‘축사 및 시설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권장
- 농촌진흥청 개발 기술, 미생물 우선 투입
- 표찰을 설치하되 규격 및 내용은 지방농촌진흥기관 자체적으로 결정
- 신기술 보급을 위한 교육 및 평가회 추진, 소비자 만족도 조사

□ 기대효과

- 부가가치 상승효과 : 약 223백만원/개소/연 100두 판매 가정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젖소 케토시스 사전예측을 통한 생산성 향상 기술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촌지도관 강신곤	063-238-7201
		농촌지도관 어윤중	063-238-7205
		농촌지도사 김창한	063-238-7203

□ 사업목적

- 젖소대사성질병 발생 사전대응으로 치료효율 향상 및 생산성 손실방지

□ 추진방향

- 신속한 질병 검진과 초기 단계의 치료로 가축의 회복 및 노동력 절감으로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조, 농촌진흥법 제15조, 제16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국내 젖소 대사성 질병 발생유형 분석 및 미생물 균총 조절을 통한 질병제어 효과 검정 ('17, 축산원)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영농활용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 농업기술 → 영농기술 → 영농활용정보

□ 사업량 : 4개소

시도	계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개소수	4	1	1	1	1

□ 사업규모

- 사업비 : 80백만원(개소당 2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2농가(농가당 착유우 30두 이상)

□ 사업대상

- 젖소 다두사육 지역의 검정농가로 사육기술 수준이 높고 케토시스 등 대사성질병 예방에 노력하는 젖소 사육 농업경영체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케토시스 예방 및 조기 치료를 위한 준임상형 및 임상형케토시스 조기검진 기술 투입
 - 우군의 대사판정과 시료분석 및 전문가 컨설팅 추진
- 지원범위 : 혈액 채취 및 분석, 전문가 컨설팅, 환경관리기자재 등

□ 사업추진체계 및 요령

- 시범사업 추진과정의 소득, 노동력절감 효과, 생산성증대 등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국립축산과학원 똑똑한 축산농장관리 프로그램 ‘축사로’ 가입 활용
- 국비지원 시설 및 기자재 화재사고 대비를 위한 ‘축사 및 시설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권장
- 표찰을 설치하되 규격 및 내용은 지방농촌진흥기관 자체적으로 결정
- 신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단계별 교육 및 평가회 추진

□ 기대효과

- 국내에서 높은 발생률을 나타내는 준임상형 케토시스를 조기 발견하여 예방 및 치료효율 제고
- 케토시스 예방을 통한 산유량 증가, 번식률 향상 등 농가 생산성 증대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거세 한우 28개월 단기비육 기술 보급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촌지도관 강신곤	063-238-7201
		농촌지도사 김창한	063-238-7203

□ 사업목적

○ 한우 거세우 단기비육(28개월)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사료비 절감

□ 추진방향

○ 단기비육 프로그램 적용 한우거세우 28개월 비육기술 보급 및 확산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조, 농촌진흥법 제15조, 제16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거세한우 28개월 고영양 단기사양 프로그램 개발('18, 축산원)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영농활용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 농업기술 → 영농기술 → 영농활용정보

□ 사업량 : 5개소

시도	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개소수	5	1	1	1	1	1

□ 사업규모

○ 사업비 : 500백만원(개소당 10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2농가 이상(농가당 한우 거세우 100두 이상)

□ 사업대상

- TMR 사료배합기를 활용하여 TMR을 자가배합 급여하고 있으며 축산원 개발 한우 거세우 28개월 비육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는 한우사육 농업 경영체

※ 배합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컴퓨터 사용 가능 농가 선정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한우거세우 28개월 고영양 단기비육 프로그램 적용
- 지원범위 : 단기비육 사료배합 교육 및 컨설팅, 체중측정기 및 유도료, 벗짚절단기, 환경관리기자재, 사료분석비 등

□ 사업추진체계 및 요령

-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한우단기비육 프로그램 적용 컨설팅 추진
- 시범사업 추진과정의 소득, 노동력절감 효과, 생산성증대 등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국립축산과학원 똑똑한 축산농장관리 프로그램 ‘축사로’ 가입 활용
- 국비지원 시설 및 기자재 화재사고 대비를 위한 ‘축사 및 시설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권장
- 표찰을 설치하되 규격 및 내용은 지방농촌진흥기관 자체적으로 결정
- 신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단계별 교육 및 평가회 추진

□ 기대효과

- 한우거세우 단기비육(28개월)으로 사료비 및 생산비 절감
 - 사료비 7.9% 절감, 생산비 6.3% 절감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논재배 옥수수 사일리지의 장기저장기술 보급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촌지도관 강신곤	063-238-7201
		농촌지도사 김창한	063-238-7203

□ 사업목적

- 논 이용 고품질 옥수수 사일리지 생산으로 수입조사료 대체 및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
- 쌀 생산 적정성 유지 및 유휴 논 활용 토지 이용도 증대

□ 추진방향

- 사일리지 장기 저장 및 개봉 시 부패(2차 발효)로 인한 사일리지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는 첨가제 이용 기술 보급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조, 농촌진흥법 제15조, 제16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곱팡이 억제 젖산균이용 사일리지 제조 기술 개발('12~'14, 축산원)

-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영농활용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 농업기술 → 영농기술 → 영농활용정보

□ 사업량 : 3개소

시도	계	강원	충북	충남
개소수	3	1	1	1

□ 사업규모

- 사업비 : 60백만원(개소당 2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10ha 이상

□ 사업대상

- 조사료 재배 경영체 또는 생산단지 등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논에 생산된 옥수수 수확 시 발생하는 곰팡이병 및 독소 등 가축의 위해요소 제거
 - 옥수수 수확기간을 7일에서 17일 정도 늘림으로 단기간 수확해야 하는 난제 해소
 - 특히 젖산균 생성균주의 집종을 통한 사일리지 생산 시 변형을 막고 발효를 통한 품질향상
 - * 사일리지 첨가 미생물 1개(100g)/50톤(생초) 투입
- 지원범위 : 옥수수 수확 및 장기저장기술(미생물) 투입, 종자, 농자재, 관련 기술지원 등

□ 사업추진체계 및 요령

- 시범사업 추진과정의 소득, 노동력절감 효과, 생산성 증대 등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경영기록장 기재
-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첨가제(미생물) 우선 투입
- 국내육성 품종 및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작부체계 투입
- 시범사업 단지의 재배 종자는 보증 받은 우량종자 사용
- 표찰을 설치하되 규격 및 내용은 지방농촌진흥기관 자체적으로 결정
- 신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단계별 교육 및 평가회 추진

□ 기대효과

- 옥수수 수확기간 연장(기존 7일 → 17일)으로 노동력분산 및 품질향상
- 옥수수 사일리지 품질 향상 및 저장성 증대로 장기간 품질 유지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신품종 IRG 재배 기술보급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촌지도관 강신곤	063-238-7201
		농촌지도사 김창한	063-238-7203

□ 사업목적

- 국내 육성 IRG 신품종 보급 확대로 국내산 조사료 생산 증가
- 양질 동계사료작물 생산체계 구축으로 사료비 절감

□ 추진방향

- 국내 육성 신품종 이탈리아라이그라스(IRG) 그린콜 등 보급 확대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조, 농촌진흥법 제15조, 제16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국내 개발 IRG 그린콜 생육 특성 및 수량성('17, 축산원)
- 드론을 이용한 이탈리아 라이그라스의 입모종 파종 기술('19, 축산원)
- 간척지 IRG 종자생산을 위한 토양관리 및 재배기술 개발('19, 식량원)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영농활용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 농업기술 → 영농기술 → 영농활용정보

□ 사업량 : 8개소

시도	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개소수	8	1	1	2	1	1	1	1

□ 사업규모

- 사업비 : 400백만원(개소당 5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10ha 이상

□ 사업대상

- 조사료 재배 경영체 또는 생산단지 등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신품종 이탈리아라이그라스(IRG) ‘그린콜’ 등 재배 기술 투입
 - 드론 활용 동계사료작물 파종으로 노동력 절감 및 조사료 생산 확대
- 지원범위 : IRG 종자, 진압기, 집초기, 랩핑기, 예취기, 비료, 드론(무인 헬기) 파종비 등

□ 사업추진체계 및 요령

- 시범사업 추진과정의 소득, 노동력절감 효과, 생산성 증대 등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경영기록장 기재
-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신품종 IRG ‘그린콜’ 등 재배
- 표찰을 설치하되 규격 및 내용은 지방농촌진흥기관 자체적으로 결정
- 신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단계별 교육 및 평가회 추진

□ 기대효과

- 국내개발 신품종 재배면적 확대 및 수입종자 대체
- 양질 조사료 자급 생산 급여 확대로 사료비 절감
- 드론 활용 기술보급 및 사료작물 파종 노동력 절감
 - 인력 입모 중 파종 대비 노동력 80% 절감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축산 스마트팜 통합제어시스템 활용 기술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촌지도관 강신곤	063-238-7201
		농촌지도사 정종민	063-238-7210
		농촌지도사 김창한	063-238-7203

□ 사업목적

-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한 축사 운영 자동화
- 사육 가축의 접촉 감소로 스트레스 해소에 의한 증체율 증가와 사료효율 증진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

□ 추진방향

- 통합제어를 통해 최적의 축사환경을 제공하여 가축의 성장률 향상과 사료비 절감
- 통합제어 스마트팜 기반조성으로 빅데이터 확보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조, 농촌진흥법 제15조, 제16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품목별 1세대 스마트팜 기술개발(양돈분야) 실증시험('16~'17, 축산원)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영농활용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 농업기술 → 영농기술 → 영농활용정보

□ 사업량 : 10개소

시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울산
개소수	10	1	1	1	1	1	1	1	2	1

□ 사업규모

- 사업비 : 1,200백만원(개소당 12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3농가 내외(농가당 한우 100두 이상, 모돈 100두 이상, 젓소 착유우 30두 이상)

□ 사업대상

- 스마트팜 운영 역량을 갖춘 한우, 젓소, 돼지 일관사육 농업경영체
 - ※ 스마트팜 등 ICT 관련사업의 효과증대를 위하여 ICT 관리 기술 숙련도가 높은 농업인 우선 선정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ICT 통합관리 프로그램 활용 축사 통합제어 스마트팜 운영 및 빅데이터 확보
- 지원범위 : ICT 통합관리프로그램, ICT 통합컨트롤러, 무선신호전달망, 축산환경측정시스템, CCTV, 사료량 측정장치, 음용수 수급 측정 장치 등

□ 사업추진체계 및 요령

- 시범사업 추진과정의 소득, 노동력절감 효과, 생산성증대 등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국립축산과학원 똑똑한 축산농장관리 프로그램‘축사로’ 가입 활용
- 국비지원 시설 및 기자재 화재사고 대비를 위한 ‘축사 및 시설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권장
- 농촌진흥청 개발 기술 우선 투입
- 표찰을 설치하되 규격 및 내용은 지방농촌진흥기관 자체적으로 결정
- 신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단계별 교육 및 평가회 추진

□ 기대효과

- 통합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사료비절감 및 가축의 생산성 향상 : 30%↑
- 안정적 축산물의 생산을 통해 축산물 가격 안정과 국민에게 안심 먹거리 제공으로 국민 건강 증진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가금 왕겨자동살포 및 퇴비생력화시스템 보급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촌지도관 강신곤	063-238-7201
		농촌지도사 정종민	063-238-7210
		농촌지도사 김창한	063-238-7203

□ 사업목적

- 오리·육계사 왕겨 자동살포 시스템으로 무인 비접촉식 살포에 의한 외부 오염물질 유입 방지 및 노동력 절감
- 가금분뇨 생력 처리로 유해가스 및 분진저감 위생적인 축사환경 조성

□ 추진방향

- ICT 기반 축사 모니터링 및 왕겨 자동살포를 통한 위생적인 축사관리
- 분뇨·수분조절제 분리 처리로 가축분 퇴비 수거 방법 개선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조, 농촌진흥법 제15조, 제16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오리사 바닥재 수분함량 저감을 위한 왕겨 살포 기준('18, 축산원)
- 깔집수분 및 암모니아 수준에 따른 닭고기 도체 외관품질 손상발생율 ('08, 축산원)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영농활용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 농업기술 → 영농기술 → 영농활용정보

□ 사업량 : 4개소

시도	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개소수	4	1	1	1	1

□ 사업규모

- 사업비 : 280백만원(개소당 7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2농가 내외(농가당 오리 또는 육계 10,000수 이상)

□ 사업대상

- 가금류 다두사육 지역의 위생적으로 축사를 관리하면서 왕겨자동살포 시스템 설치가 가능한 오리 또는 육계 사육 경영체
- 가금류 다두사육 지역의 퇴비생력화기기 이용 가능한 오리 또는 육계 사육 경영체(축사 전실 출입구 폭 2미터, 높이 2미터 이상)
 - ※ 스마트팜 등 ICT 관련 사업의 효과증대를 위하여 ICT 관리 기술 숙련도가 높은 농업인 우선 선정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ICT 기반 왕겨 자동살포 시스템 투입 및 축사 모니터링
 - 축사 내 축적되어 있는 분뇨와 수분조절제(왕겨) 분리 처리
- 지원범위 : 가금 왕겨자동살포시스템, 퇴비생력화기기 등

□ 사업추진체계 및 요령

- 시범사업 추진과정의 소득, 노동력절감 효과, 생산성증대 등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국립축산과학원 똑똑한 축산농장관리 프로그램 ‘축사로’ 가입 활용
- 국비지원 시설 및 기자재 화재사고 대비를 위한 ‘축사 및 시설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권장
- 농촌진흥청 개발 기술 우선 투입
- 표찰을 설치하되 규격 및 내용은 지방농촌진흥기관 자체적으로 결정
- 신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단계별 교육 및 평가회 추진

□ 기대효과

- 정기적인 왕겨 살포로 축사 환경 개선 및 살포 노동력 50% 절감
- 무인 살포로 외부 오염물질 유입 방지 및 AI 등 질병예방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무인로봇 활용 섬유질 자가배합사료 급여시스템 기술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촌지도관 강신곤	063-238-7201
		농촌지도사 정종민	063-238-7210
		농촌지도사 김창한	063-238-7203

□ 목 적

- 섬유질배합사료 급여 시스템의 무인 로봇화로 노동력 절감 및 가축 생산성 향상
- 무인로봇 활용 사료급여시스템 개선을 통한 대사성질병 예방 및 사료 효율 개선
- 한우거세우 단기비육(28개월)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사료비 절감

□ 추진방향

- ICT 융복합 기술을 활용 웹·모바일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원격 관리시스템 구축
- 무인로봇 급이기 활용 섬유질배합사료 급여시스템 기술 보급
- 단기비육프로그램 적용 한우거세우 28개월 비육기술 보급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조, 농촌진흥법 제15조, 제16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자율주행 방식의 급이로봇 시스템 개발('16, 축산원)
- 거세한우 28개월 고영양 단기사양 프로그램 개발('18, 축산원)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영농활용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 농업기술 → 영농기술 → 영농활용정보

□ 사업량 : 3개소

시도	계	경기	충북	경남
개소수	3	1	1	1

□ 사업규모

- 사업비 : 300백만원(개소당 10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2농가(농가당 거세한우 100두 이상)

□ 사업대상

- 한우 다두사육 지역으로 TMR 사료배합기를 활용 자가배합 급여하고 있으며, TMR 급여 로봇이 주행가능한 축사를 보유하고, 한우거세우 단기비육 프로그램 적용이 가능한 한우사육 농업경영체
- ※ 배합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컴퓨터 사용 가능 농가 선정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무인로봇 활용 TMR 사료급여 시스템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기술
 - 센서를 통한 자율주행 방식의 TMR 급여로봇 시스템의 효과 평가
 - 한우거세우 단기비육(28개월) 고영양 단기비육 프로그램 적용
- 지원범위 : 무인로봇시스템(TMR 급여로봇, 충전시스템, 원격제어시스템, 통합제어시스템, 센서설치), 단기비육 기술지원 등

□ 사업추진체계 및 요령

-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한우단기비육 프로그램 적용 컨설팅 추진
- 시범사업 추진과정의 소득, 노동력절감 효과, 생산성증대 등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국립축산과학원 똑똑한 축산농장관리 프로그램‘축사로’ 가입 활용
- 국비지원 시설 및 기자재 화재사고 대비를 위한 ‘축사 및 시설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권장
- 농촌진흥청 개발 기술 우선 투입
- 표찰을 설치하되 규격 및 내용은 지방농촌진흥기관 자체적으로 결정
- 신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단계별 교육 및 평가회 추진

□ 기대효과

- 급여 시스템의 무인로봇화를 통한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 및 소득향상
 - 노동력 50% 절감, 생산비 4% 절감, 소득 8% 향상
- 한우거세우 단기비육(28개월)으로 사료비 및 생산비 절감
 - 사료비 7.9% 절감, 생산비 6.3% 절감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한우 유전정보 기반 정밀사양 기술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촌지도관 강신곤 농촌지도사 김창한	063-238-7201 063-238-7203

□ 사업목적

- 유전체 분석을 통한 개체별 맞춤형 사양으로 출하시기 조절 및 고급육 생산
- 거세한우 도체중 및 고급육 향상 종합 사양기술 적용으로 농가 소득 증대

□ 추진방향

- 육량 증가와 육질개선을 통한 생산비 절감 및 쇠고기 품질 향상 기술 적용으로 한우사육 농가의 경쟁력 강화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조, 농촌진흥법 제15조, 제16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육질형 유전능력 개체를 이용한 거세한우 정밀사양 방법('17, 축산원)
- 근내지방 섬세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비육기 영양관리('17, 축산원)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영농활용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 농업기술 → 영농기술 → 영농활용정보

□ 사업량 : 5개소

시도	계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개소수	5	1	1	1	1	1

□ 사업규모

- 사업비 : 500백만원(개소당 10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2농가 이상(농가당 거세한우 100두 이상, 송아지 50두 이상 보유, 유전자 분석 50두 이상)

□ 사업대상

- 한우 다두사육 지역의 한우 거세우를 사육 하면서 유전정보 기반 개체별 군 분리 사양이 가능한 한우사육 농업경영체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유전체분석 육질형 고급육 생산, 성장형 저지방육 생산 사양기술 투입
 - 육질형 유전능력 개체를 이용한 거세한우 정밀사양 기술 투입
- 지원범위 : 유전자 검사, 체중측정기 및 유도로, 사료자동급이기, 벗짚절단기, 환경관리기자재 등

□ 사업추진체계 및 요령

- 시범사업 추진과정의 소득, 노동력절감 효과, 생산성증대 등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국립축산과학원 똑똑한 축산농장 관리프로그램‘축사로’ 가입 활용
- 국비지원 시설 및 기자재 화재사고 대비를 위한 ‘축사 및 시설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권장
- 농촌진흥청 개발 기술 우선 투입
- 표찰을 설치하되 규격 및 내용은 지방농촌진흥기관 자체적으로 결정
- 신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단계별 교육 및 평가회 추진

□ 기대효과

- 맞춤형 사육 생산비 절감, 육질 및 육량 등급 개선으로 농가소득 향상
 - 육질 1+이상 출현율 17.5%, 육량 A 출현 5.2%, 소득 38% 향상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바이오 커튼 활용 돈사 냄새저감 종합기술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촌지도관 강신곤	063-238-7201
		농촌지도사 김창한	063-238-7203

□ 사업목적

- 축사에서 발생하는 분진 및 냄새 저감기술 보급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 추진방향

- 바이오커튼 및 냄새저감 장치를 통한 돈사 냄새저감 기술 보급
- Synbiotics(미생물+미생물에너지원) 활용 돈사피트내 슬러리의 효율적 분해로 돈사 내 유해가스 감소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조, 농촌진흥법 제15조, 제16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돈사측벽 배출 공기 악취 저감을 위한 바이오커튼 설치 방법 및 효과 ('18, 축산원)
- 돈사냄새 억제위한 프리바이오틱(미생물의에너지원) 활용('18, 축산원)
- 농가 보급형 실시간 축산냄새 측정기 개발('19, 축산원)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영농활용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 농업기술 → 영농기술 → 영농활용정보

□ 사업량 : 10개소

시도	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개소수	10	2	2	1	1	1	1	2

□ 사업규모

- 사업비 : 2,000백만원(개소당 20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2~3농가(농가당 돼지 1,000두 이상)

□ 사업대상

- 돼지 다두사육 지역의 돈사 냄새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바이오커튼(2단) 설치 및 Synbiotics 활용 가능한 돼지사육 농업경영체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바이오커튼(2단), 오존수, Synbiotics를 활용한 냄새저감 기술 투입
- 지원범위 : 바이오커튼(2단), Synbiotics(냄새저감미생물+에너지원), 오존수분무시스템, 축산환경측정시스템 등

□ 사업추진체계 및 요령

- 시범사업 추진과정의 소득, 노동력절감 효과, 생산성증대 등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국립축산과학원 똑똑한 축산농장관리 프로그램 ‘축사로’ 가입 활용
- 국비지원 시설 및 기자재 화재사고 대비를 위한 ‘축사 및 시설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권장
- 돈사 냄새의 외부 배출 감소 뿐만 아니라 내부 냄새 발생 감소를 통한 종합적인 냄새 감소를 위하여 사육규모에 맞는 Synbiotics 투입
- 농촌진흥청 개발 기술 우선 투입
- 표찰을 설치하되 규격 및 내용은 지방농촌진흥기관 자체적으로 결정
- 신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단계별 교육 및 평가회 추진

□ 기대효과

- 축사 냄새저감 기술보급으로 냄새 감소 등 축사환경 개선
 - 암모니아 90% 감소, 분진 92% 감소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스마트 생체정보 관리시스템 보급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촌지도관 강신곤	063-238-7201
		농촌지도사 정종민	063-238-7210
		농촌지도사 김창한	063-238-7203

□ 사업목적

- ICT 활용 축우 건강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한 생체정보 빅데이터 활용
- 반추위 환경 데이터기반 최적 사양관리로 노동력절감 및 생산성 향상

□ 추진방향

- 농촌진흥청 개발 축우 건강관리 시스템 보급을 통한 빅데이터 확보
- 생체 정보를 활용한 번식, 사양, 질병 등 맞춤 사양관리 기술 보급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조, 농촌진흥법 제15조, 제16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ICT 활용 젖소 생체정보 분석 및 건강 예측 기술 개발('18, 축산원)

-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영농활용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 농업기술 → 영농기술 → 영농활용정보

□ 사업량 : 5개소

시도	계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개소수	5	1	1	1	1	1

□ 사업규모

- 사업비 : 300백만원(개소당 6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3농가 이상(농가당 한우 15개월령 이상 번식우 50두 이상, 젖소 착유우 50두 이상)

□ 사업대상

- 소 다두사육 지역으로 반추위 환경 정보를 활용한 스마트 사양관리 역량을 갖춘 한우 번식우 또는 젖소 착유우 사육 농업경영체
 - ※ 스마트팜 등 ICT 관련사업의 효과증대를 위하여 ICT 관리 기술 숙련도가 높은 농업인 우선 선정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반추위 삽입형 생체정보 관리 시스템 활용 기술 투입
- 지원범위 : 스마트 생체정보 관리 시스템(반추위체류형센서, 수신기 등), ICT 통합관리 프로그램, 스마트팜 관련기기 등

□ 사업추진체계 및 요령

- 시범사업 추진과정의 소득, 노동력절감 효과, 생산성증대 등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국립축산과학원 똑똑한 축산농장관리 프로그램 ‘축사로’ 가입 활용
- 국비지원 시설 및 기자재 화재사고 대비를 위한 ‘축사 및 시설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권장
- 농촌진흥청 개발 기술 우선 투입
- 표찰을 설치하되 규격 및 내용은 지방농촌진흥기관 자체적으로 결정
- 신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단계별 교육 및 평가회 추진

□ 기대효과

- 국내 개발 시스템으로 데이터 확보 및 축산 스마트농업 경쟁력 강화
- 생체 정보 기반 최적 사양관리로 소득 향상 6%(두/젖소/년)
- 반추위 환경 빅데이터 활용 인공지능 최적 사양관리 기술 개발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ICT 활용 돈사 환경관리 기술보급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촌지도관 강신곤	063-238-7201
		농촌지도사 정종민	063-238-7210
		농촌지도사 김창한	063-238-7203

□ 사업목적

- ICT 적용 계절별 돈사 내 적정 환경 유지를 통한 폐사율 감소
- 온습도 모니터링, 원격제어시스템으로 효율적인 사양관리 생산성 향상

□ 추진방향

- ICT 활용 계절별 적정 온습도 유지 관리로 호흡기 질병 예방 생산성 향상 및 빅데이터 확보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조, 농촌진흥법 제15조, 제16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스마트 돈사 데이터 수집 및 인공지능을 이용한 최적 돈사관리('16, 축산원)
- ICT 적용 이유자돈사 환경관리 장치 활용('15, 축산원)
- 동물복지용 사육 통합관리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17, 축산원)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영농활용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 농업기술 → 영농기술 → 영농활용정보

□ 사업량 : 6개소

시도	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개소수	6	1	1	1	1	1	1

□ 사업규모

- 사업비 : 720백만원(개소당 12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2~3농가 (농가당 돼지 1,000두 이상)

□ 사업대상

- 돼지 다두 사육지역의 ICT 활용 돈사 환경관리에 역량을 갖춘 무창돈사 돼지 사육 농업경영체
 - ※ 스마트팜 등 ICT 관련사업의 효과증대를 위하여 ICT 관리 기술 숙련도가 높은 농업인 우선 선정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돈사 내부 폐열 이용 환기시스템 활용, 기화열 이용 냉풍시스템 활용 기술투입 에너지 절감 및 돈사 적정 환경관리
 - ICT 통합관리 프로그램 활용 돈사 환경 원격제어시스템 기술 투입 및 빅데이터 확보
- 지원범위 : ICT 통합관리 프로그램, ICT 컨트롤러, 무선 신호전달망, 열교환환기 및 기화열냉풍시스템, 축사환경측정시스템 등

□ 사업추진체계 및 요령

- 시범사업 추진과정의 소득, 노동력절감 효과, 생산성증대 등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국립축산과학원 똑똑한 축산농장관리 프로그램 ‘축사로’ 가입 활용
- 국비지원 시설 및 기자재 화재사고 대비를 위한 ‘축사 및 시설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권장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개발 기술 우선 투입
- 표찰을 설치하되 규격 및 내용은 지방농촌진흥기관 자체적으로 결정
- 신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단계별 교육 및 평가회 추진

□ 기대효과

- 사계절 종합환경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폐사율 50% 감소
- 혹서기 및 환절기 적정 사육환경 조성에 따른 출하일령 5일 단축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 2021년도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

스마트영농지원체계 구축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농촌지도관 안정구	063-238-0971
		농촌지도사 차지은	063-238-0979
		농촌지도사 김현철	063-238-0986

□ 목적

- 스마트팜, 빅데이터, ICT 장비, 농업용 로봇 등 4차 산업 기술의 농가확산과 신소득 작목 재배농업인을 위한 스마트영농 체험장 및 첨단교육장 조성
- 지방농촌진흥기관을 4차 산업혁명의 농업현장 기술적용 거점센터 육성하여 스마트농가 및 면적을 확대하고 스마트 영농기술 보급체계 마련

□ 추진방향

-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여 대농업인 스마트농업 체험 및 교육장으로 활용
- 스마트농업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 농업환경정보 네트워크 구축 및 컨설팅, 교육병행 추진
- 미래 농업기술정보 활용을 위한 분야별 스마트농업 종합환경정보 분석 및 최적의 생산환경조성
- 다양한 농업기술정보의 지속적인 축적 및 관리로 빅데이터 기반조성
- 지역 여건에 맞는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발굴 및 확산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영농활용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 농업기술(농사로, www.nongsaro.go.kr)
 → 농업기술정보 → 영농활용기술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2조(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제15조(농촌지도사업의 조정),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 사업규모

- 사업비 : 5,356백만원(개소당 206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스마트온실, 노지모델 등 165m² 이상 지역 대표품목 스마트농업 구축

□ 사업량 : 26개소

도 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부산
개소수	26	2	3	1	2	6	5	3	3	1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① (테스트베드) 스마트농업기술 소개 및 검증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
- ② (체험형 교육)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농업인 대상 체험 및 교육
 - 품목별 데이터를 활용한 교육 및 컨설팅 기반 지원
- ③ (운영체계) 수집되는 농업데이터 공유, 현장지원단 운영 및 컨설팅

구 분	세부내용	운영계획
테스트베드	스마트온실, 노지모델 *복합환경제어 온실 165㎡ 이상 *품목, 지역 여건에 따라 노지적용 데이터 활용 교육 기반 * 센터, 교육농가 연계	스마트농업 기술 소개 및 실증 → 신기술보급사업 발굴, 신속 확산 작목, 유형 등에 따라 데이터 활용 기반 → 재배기술을 결합한 현장컨설팅
체험형 교육	스마트농업 시스템 제작 및 응용, 시범운영 등	농업인, 학생, 스마트농업전문가, 공무원, 도시민 대상 교육 및 홍보

○ 지원범위

- 지역 대표품목 스마트농업 구축(다양한 품목의 적용을 위해 사전협의)
- ① (테스트베드) 스마트온실 및 축사, 버섯사, 노지 등 스마트농업 구축(유지·보수 중심)
 - 시설·노지 내외부 환경측정 센서, 제어기, 환경제어프로그램 등
 - * 농진청 개발기술 실증 : 센서 및 기기 표준안, 스마트농업 R&D기술
 - 스마트 농작업 : 수확·방제·자동접목 로봇, 이동식 재배시스템 등
- ② (체험형 교육) 스마트농업 기기, 운영, 시스템, 데이터수집 및 분석까지 교육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테스트베드, 과학영농실증포, 교육 받은 관내 농가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정보를 표출, 교육 및 컨설팅 할 수 있는 시스템 연계
 - * 빅데이터 측정 기준 및 항목은 농촌진흥청 데이터 수집·전송체계를 따름
 - * 농촌진흥청 『스마트영농 지원시스템(SFES)』 시스템 활용

□ 사업대상 : 스마트영농 지원체계 구축을 희망하는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집행관리

※ 생활 SOC 사업으로 재정조기집행 중점관리 대상

○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은 기반시설과 관련장비 등 세목 조정, 사업계획 변경된 경우(A시설→B시설, A장비→B장비) 집행잔액(낙찰차액)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중앙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 추진

* 절차 : 시군센터(제1호 서식 작성, 공문 요청) → 도원(검토후 공문 요청)

→ 농촌진흥청(검토 후 도원 및 센터에 승인내역 통보)

○ 감사 등 지적되지 않도록 변경 승인 여부를 중앙 담당자와 협의
(지방자치단체 추경예산편성 감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 승인 요청)

* 승인대상 : 사업자체 변경, 시설 준공 후 또는 장비 집행 후 낙찰차액 사용
(단, 준공전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당초예산범위내 사업비증감은 승인 대상아님, 일상감사 규정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후 사업 실시)

□ 사업 추진요령

○ 사업추진 계획 및 추진결과 ATIS 보고 : 계획(3.31.), 결과(11.20.)

○ 담당자는 '스마트농업전문지도사양성' 과정 필수참여

□ 기대효과

○ 스마트온실 구축, ICT 운영, 빅데이터 활용 등 스마트농업 기술실증과 교육을 통한 농업분야 4차 산업혁명의 신속한 현장 확산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테스트베드교육장 운영매뉴얼 참고

□ 사후관리

○ (1년차) 조성완료 (2년차 이후) 자체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성과보고

○ 분기별 현장 점검 및 결과제출 : (합동) 중앙·도원, (자체) 도원·시군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농촌지도관 안정구	063-238-0971
		농촌지도사 차지은	063-238-0979
		농촌지도사 김현철	063-238-0986

□ 목적

- 한국형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활용한 진보되는 R&D결과의 신속한 현장적용으로 농업혁신성장 지원

□ 추진방향

- 스마트농업 R&D결과 → 테스트베드 교육장 실증 → 현장 조기정착
 - * ('18~'20) : 1세대+빅데이터 → ('20~'25) 기술 고도화 : 2세대+지능형제어 → ('25이후) : 3세대
- 스마트농업 기술실증을 통한 신규 사업 발굴 및 농업인 기술수용 확대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영농활용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 농업기술(농사로, www.nongsaro.go.kr)
 → 농업기술정보 → 영농활용기술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2조(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제15조(농촌지도사업의 조정),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 사업규모

- 사업비 : 900백만원(개소당 5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스마트온실, 노지모델 등 165㎡ 이상 지역 대표품목 스마트농업 구축

□ 사업량 : 18개소

도 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천
개소수	18	2	2	2	2	2	3	2	1	1	1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스마트농업기술의 연구결과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시설 보완 및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기술실증 고도화

○ 지원범위

- (시스템 실증) 분야별 정밀환경계측(영상, 이미지, 지상·지하부 등) 및 스마트 농업 연구결과 실증 및 사업화
- (빅데이터 실증) 환경·생산 데이터 활용 모델실증, 센터-농가간 데이터 공유기반 확대, 활용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농업인 소득향상 지원
 - * 빅데이터 측정 기준 및 항목은 농촌진흥청 데이터 수집·전송체계를 따름
 - * 농촌진흥청 『스마트영농 지원시스템(SFES)』 시스템 활용

□ 사업대상 : '19~'20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 사업집행관리

※ 생활 SOC 사업으로 재정조기집행 중점관리 대상

-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은 기반시설과 관련장비 등 세목 조정, 사업계획 변경된 경우(A시설→B시설, A장비→B장비) 집행잔액(낙찰차액)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중앙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 추진

* 절차 : 시군센터(제1호 서식 작성, 공문 요청) → 도원(검토후 공문 요청)
→ 농촌진흥청(검토 후 도원 및 센터에 승인내역 통보)

- 감사 등 지적되지 않도록 변경 승인 여부를 중앙 담당자와 협의

(지방자치단체 추경예산편성 감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 승인 요청)

* 승인대상 : 사업자체 변경, 시설 준공 후 또는 장비 집행 후 낙찰차액 사용
(단, 준공전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당초예산범위내 사업비증감은 승인 대상아님, 일상감사 규정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후 사업 실시)

□ 사업 추진요령

- 사업추진 계획 및 추진결과 ATIS 보고 : 계획(3.31.), 결과(11.20.)
- 담당자는 '스마트농업 전문지도사양성' 과정 필수참여

□ 기대효과

- 스마트농업 기술을 접목한 생산부문 성과제고 및 농업경쟁력 강화
 - * 4차 산업 기술수준 : 최고그룹 미국 대비 한국 기술격차 4.5년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테스트베드교육장 운영매뉴얼 참고

□ 사후관리

- 자체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성과보고, 홍보 등
- 분기별 현장 점검 및 결과제출 : (합동) 중앙·도원, (자체) 도원·시군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농촌지도관 안정구	063-238-0971
		농촌지도사 차지은	063-238-0979
		농촌지도사 김현철	063-238-0986

□ 목적

-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계적인 최적생산모델 적용으로 품목별 스마트팜 상위 거점 농가 육성

□ 추진방향

- 품목별 데이터 기반 최적 생산모델 보급 및 데이터 공유를 통한 동반성장
 - * 생산모델 연구 : ('20)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 ('21 이후) 참외, 오이 등
- 스마트농업 기술실증을 통한 신규 사업 발굴 및 농업인 기술수용 확대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영농활용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 농업기술(농사로, www.nongsaro.go.kr)
 → 농업기술정보 → 영농활용기술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2조(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제15조(농촌지도사업의 조정),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 사업규모

- 사업비 : 800백만원(개소당 20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 동일단지 2년 계속사업: (1년차) 데이터 정밀측정 → (2년차) 시기별 최적 환경제어
- 규 모 : 개소당 5~10농가 이상 참여, 농가 당 3,300m²이상

□ 사업량 : 4개소

도 별	계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개소수	4	1	1	1	1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품목별 생산성 향상 모델 적용
 - * ('21~'22) 적용품목: 딸기(설향), 파프리카(여름)
 - * 토마토 모델 적용시: 3.3m²당 최대 156kg 수확(상위 20%, 평균 84.7kg/3.3m²)
- 생육 단계별 데이터 정밀측정 및 최적 환경제어
 - * 『스마트영농 지원시스템(SFES)』, 『스마트팜 최적환경설정 알림서비스』 연계 필수

○ 지원범위

- (데이터 정밀측정) 환경, 생육 품질에 대한 데이터 정밀 측정 기기 및 장비
 - * (환경) 온·습도, 이산화탄소, 함수율 등, (생육) 광합성, 증산량, 양수분 등, (품질) 당도, 산도, 크기 등
- (시기별 최적 환경제어) 데이터 분석을 통한 환경 및 생육 제어기기 등
 - * 자동 유동·가습·제습·열교환기기, 시스템보완, 누적일사량 비례제어, 함수량 기준 제어 등
- ※ 단순 소모성 자재(양액재료, 배지, 영양제, 육묘 등)는 예산편성 불가
- ※ 단, 사업목적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센서 등 내구연한이 짧은 기자재는 집행 가능

□ 사업대상 : 과채류 주산지 중심 연구회, 공동선별회, 영농조합법인 등

- 재배환경 및 생육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며, 데이터 공유를 통한 기술향상에 관심이 높은 스마트팜 생산단체

□ 사업 추진요령

- 사업추진 계획 및 추진결과 ATIS 보고 : 계획(3.31.), 결과(11.20.)
- 담당자는 '스마트농업전문지도사양성' 과정 필수참여

□ 기대효과

- 품목별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계적인 최적 생산모델 적용
- 단계적 적용 품목확대 : ('21~'22) 2 → ('22~'24) 5품목 이상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운영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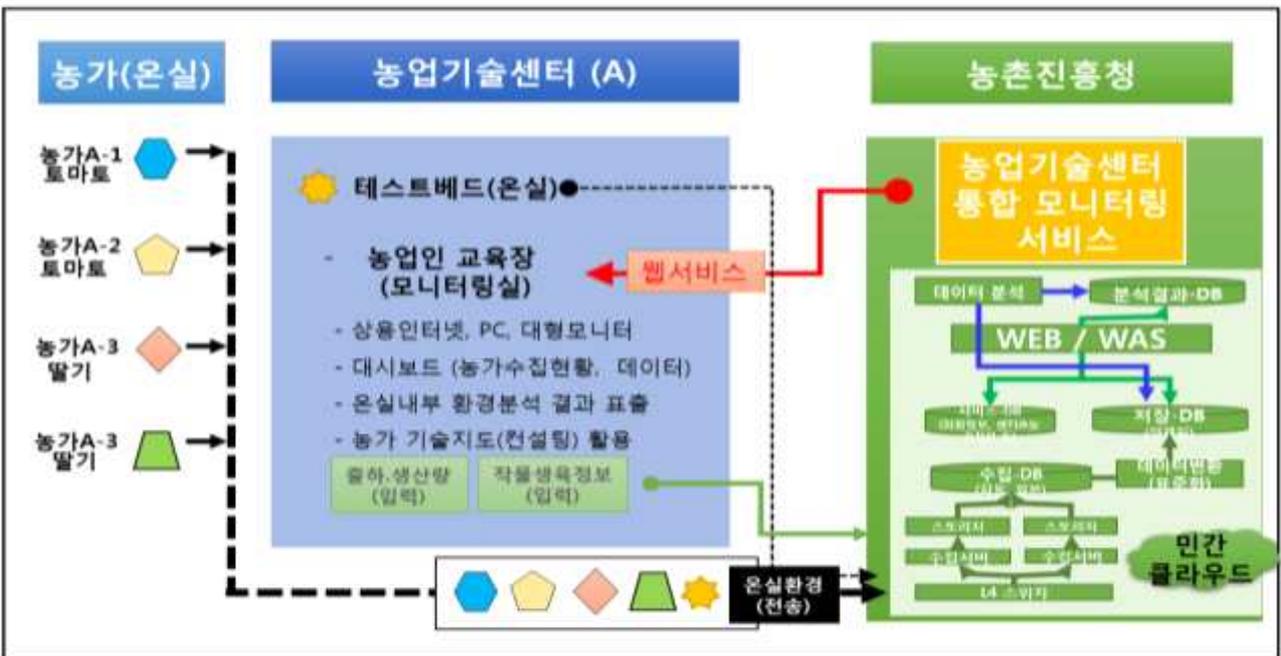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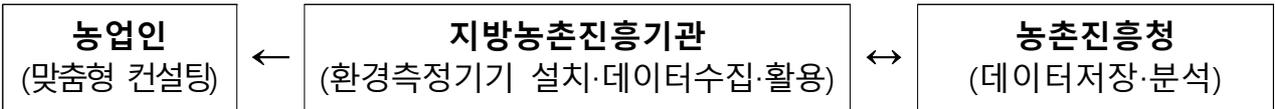
- (1년차) 선도농가 중심 (2년차) 일반농가 확대
- (운영체계) 수집되는 농업데이터 공유, 현장지원단 운영 및 컨설팅
- 분기별 현장 점검 및 결과제출 : (합동) 중앙·도원, (자체) 도원·시군

참고 **스마트영농지원 시스템(Smart Farming Extension System)**

* <https://smarter.rda.go.kr>

□ 운영체계

- (도원·센터) 환경측정기기 설치 및 데이터 전송, 교육화면 구축
- (농진청) 데이터 저장·분석 지원, 시스템 관리



* (기술보급과) 현장데이터 수집 및 활용 ↔ (농업빅데이터일자리팀) 시스템 구축·운영

□ 주요기능

- 테스트베드 시설 내 설치된 환경측정기기에서 수집되는 데이터 관리 및 분석
 - 24시간 평균온도, 주/야간 평균온도, 주차별 평균온도, 적산온도, 절대수분량, 이슬점, 수분부족량, 상대습도 등
- 폴리머 다이어그램을 활용한 분석 알고리즘 탑재
- 데이터수집 채널 관리를 통한 맞춤형 수집항목 관리기능 및 채널교류
- 사용자별/계층별 수집 및 관리 데이터 공유 기능

【제1호 서식】

0000사업 변경 계획

□ 사업개요

【기본계획】 * 사업계획, 추진사항(사업명, 위치, 사업량, 금액 등) / ATIS 사업계획 기준

-
-

【변경계획】 * 사업내용 자세히 기재(사업명, 장비명, 사업량, 금액 등)

-
-

□ 사업변경 내역 * 작성 예시

구분	당 초(국비, 천원)		변 경(국비, 천원)			비고
	사업내용	예산액	사업내역	예산액	증감	
시도 시군	(테스트베드) ○ 스마트온실 - 내외부 환경측정 센서 3종 - 원격자동제어 1식 - 제어기 2식	100,000	(테스트베드) ○ 스마트온실 - 내외부 환경측정 센서 3종 - 원격자동제어 1식 - 제어기 2식	85,000	△15,000	○ 보조비율 -국비 50%, -지방비 50%
			(교육장) ○ 교육장비 - 전기·전자 실습 장비 - 교육용 영상장비			

□ 변경사유(필요성)

- 집행잔액(낙찰차액) 교육장비, 테스트베드 교육장 환경보완 등 필요
-

□ 향후계획(구체적 일정 기재) *추경예산 반영, 집행일정 등

- 추경예산편성 : 00년 0월 0한
- 장비구입발주 : 00년 0월 0한
- 장비구입완료 : 00년 0월 0한

□ 도 농업기술원 검토의견

-
-

■ 2021년도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

농촌가치확산기술지원

농경문화소득화 모델구축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농촌지도관 박찬순	063-238-1021
		농업연구사 손호기	063-238-1015

□ 목적

- 농업·농촌의 가치를 높이는 농경문화자원에 대한 실질적 활용을 통하여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 촉진

□ 추진방향

- 농업활동과 관련된 전통농법·지식, 농업문화, 농촌경관 등 농경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농촌 활력 자원으로 활용
- 지역의 농경문화자원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보전·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
- 귀농·귀촌 도시 청년과 은퇴자, 지역 주민의 역량이 공동 발휘될 수 있는 사업운영으로 새로운 인력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 공동체 활력 제공
- 마을의 자원을 보전해야 할 것, 가꾸어야 할 것, 발전시킬 것을 구분하여 체계적 관리·활용과 판매용 소품 개발 등 연계 사업 추진

□ 추진근거

- 농촌진흥법 제1조, 농촌진흥법 제15조, 제16조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8조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제14조
-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5조, 제50조, 제51조

□ 사업규모

- 사업량 : 10개소(1년차 5, 2년차 5)
- 사업비 : 2,100백만원(1년차 1,050, 2년차 1,050) *개소당 210백만원(국비·지방비 각 50%)
 - * 2년차 사업비는 1년차 평가를 반영하여 차등 지원
- 지역별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사업량	계	10	1	2	1	2	2	2
	1년차	5	-	1(진천)	-	1(정읍)	2(곡성, 화순)	1(밀양)
	2년차	5	1(홍천)	1(청주)	1(공주)	1(완주)	-	1(창원)
사업비	계	2,100	210	420	210	420	210	420
	1년차	1,050	-	210	-	210	210	210
	2년차	1,050	210	210	210	210	-	210

* 총사업비 : 개소당 410백만원(사업기간 2년)

□ 사업대상 : 보전·활용가치가 높은 농경문화자원 보유 농촌마을

□ 사업내용

- 농경문화자원 발굴 및 자료화
- 농경문화자원 활용 체험·관광 기반 조성
- 농경문화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인력 개발
- 농경문화자원 전시 및 판매환경 조성
- 주민주도 농경문화자원 보전·관리 실천

<지원제한>

- 토지·부지의 매입비 또는 임차,
- 건물 신축·증축 비용 또는 임차
- 타사업과 중복되는 지원
- 사업장 운영 인력에 제공되는 인건비, 단순 포장재 및 소모품
- 가공원료, 체험재료 구입비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비용

<유의사항>

- 농촌진흥청에서 사업계획 ATIS 승인이 완료된 후 사업대상자에게 교부결정할 수 있음

<연차별 사업내용 예시>

1년차	2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및 지원체계 구축 ◦ 농경문화자원 발굴 및 자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유산, 세시풍속, 전통행사, 전통공동체 자료화 - 전통솜씨(제조방법), 전래놀이(놀이 설명서), 세시음식 자료화 - 경관자원, 생태자원 등 체험·관광소재 발굴 조사 ◦ 발굴된 농경문화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 공연(미당극, 인형극, 놀이, 음식, 교재, 교구 등)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기술전수, 해설, 서비스) ◦ 농경문화 체험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학습 등의 제공을 위한 시설·장비 ◦ 솜씨 상품화를 위한 체험형 소규모 공방(제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느질, 목공, 도자기, 천연염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관광 만족도를 높이는 구매환경 구축(전시·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경문화 소재 소품 등 판매, 농경문화자원 전시(사진, 자료) ◦ 농경문화 체험 연계 사업장(기존) 콘텐츠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시음식(농사일바라지음식, 떡, 차 등), 양조장(세시풍속 연계), 방앗간(디딜, 연자 등), 농경문화자원 진로체험 ◦ 운영 프로그램 세분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의 전통문화, 명인연계 한류관광 등 ◦ 판매, 마케팅, 홍보 지원 ◦ 농경문화 체험·관광 상품 확대 및 전시·판매 기반 조성 ◦ 주민주도 농경문화자원 보전·관리 실천 계획 수립

□ 추진체계 및 추진요령

○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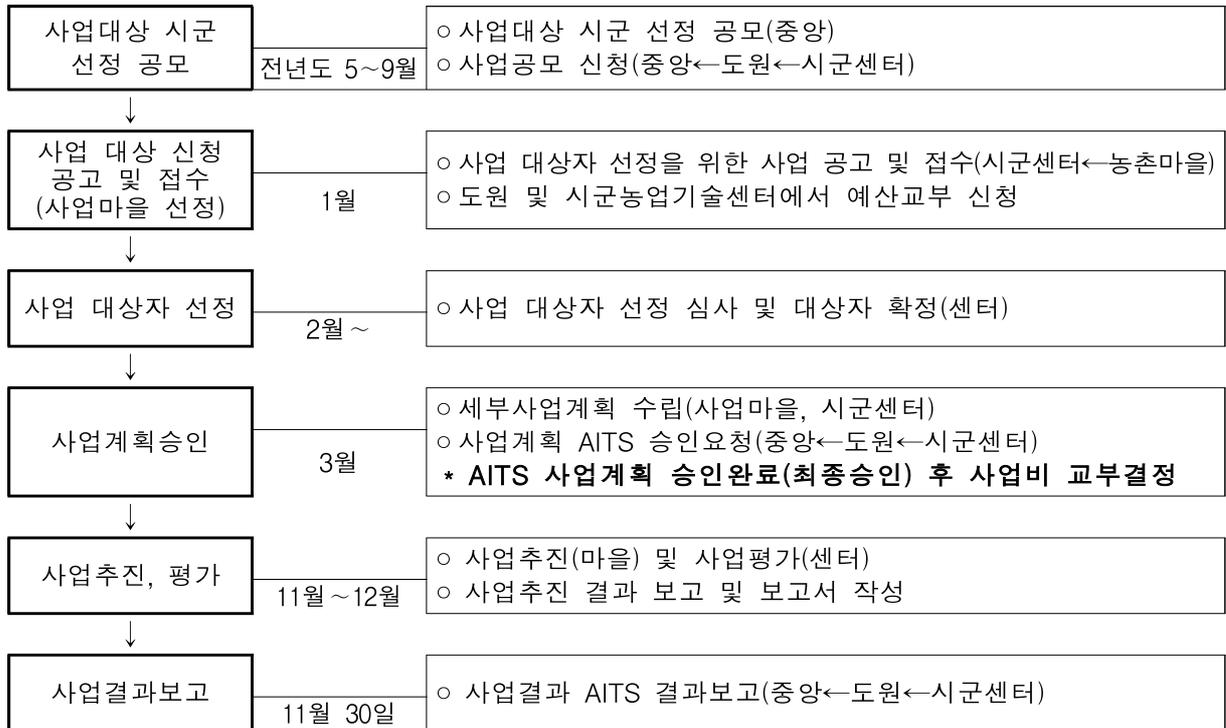
<중앙-도원-시군센터>

- (농촌진흥청) 기본계획 수립, 예산확보, 사업대상 시군공모, 모니터링, 사업 평가, 성과확산, 개발기술지원, 교육, 워크숍, 자료제공 등
- (도농업기술원) 사업 점검·지도·평가, 우수사례 발굴, 지역단위 네트워크구축 등
- (농업기술센터) 사업대상자 선정·관리, 사업계획·결과보고, 사업자 교육 등
- (사업마을) 사업계획 수립·추진, 교육참여, 사업장 홍보 등

<연구-지도-정책>



○ 추진절차



○ 추진요령

- (마을선정) 사업마을은 보전·활용 가치가 있는 농경문화 자원을 보유하여야 함
 - * 농경문화자원 : 전통공동체, 전통유물, 전통의례, 전통행사, 마을숲, 전통농법, 농업경관, 전통농법, 토종종자, 세시풍습 등
- 사업마을의 세부계획 수립 시 마을의 농경문화자원 활용, 지역자원 연계, 농경문화 자원 전시·판매, 공동체 활성화 기여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 사업마을은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협의과정을 거쳐 진행
- 체험장, 전시장 등을 위한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최소 10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비 지원기간(2년)이후에는 마을에서 조성한 체험장, 전시장 등에 대하여 마을에서는 관리규정을 만들고 이를 준수함
- (컨설팅) 마을자원 조사,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종합 컨설팅은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설명회, 교육에 1회 이상 참여한 컨설팅 업체(컨설턴트)로부터 받아야 함. 단, 예외로 설명회(교육 포함)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농진청 과제 수행 등에 참여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가 있는 업체(컨설턴트)는 컨설팅 가능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지원 마지막 년도	1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주요 기계·장비	다음년도	5년간	

□ 성과지표

1년차	2년차
농경문화자원 발굴 건수	매출액
농경문화자원 활용 프로그램 개발 건수	일자리 창출
농경문화자원 활용 제품개발 건수	농경문화자원 인식 변화도
공동체 활동 참여	

□ 기대효과

- 농촌만의 특화된 농경문화자원활용으로 농촌체험·관광 차별화, 체험·관광 소득 증대
- 농업유산, 경관자원 등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도시민 유입 효과 기대
- 농촌경관 보전, 생물다양성 증진, 지역브랜드 가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통해 국민 휴식 공간 조성 및 고용창출 도모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2021년도 사업추진계획 보고 : 2021. 3. 20 한
- 2021년도 상반기 추진현황 보고 : 2021. 6. 20 한
- 2021년도 사업추진결과 보고 : 2021. 11. 20 한

참고 1 농경문화자원 소득화 모델 추진내용

□ 농경문화 핵심자원을 선정하고 주변자원을 연계한 소득화 모델(예)



□ 사업추진 과정

자원 조사	 정자	 돌확	 돌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마당극 공연	 굴렁쇠 굴리기	 마을유물 탐방 프로그램
전시 판매장 체험관	 농경 문화전시	 판매장(소품, 염색 등)	 체험관

참고 2

농경문화자원 농진청 연구·개발 기술

□ 농경문화 관련 연구과제 목록('11~'18)

연번	연구과제명(기간)
1	향토상품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디자인 개선 방안 연구(2011~2012)
2	지역마케팅을 위한 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연구(2011~2012)
3	농촌 무형유산 발굴 및 활용방안 연구(2013~2015)
4	전통농업기술의 유기농업 적용방안 연구(2015-2017}
5	농촌마을 세시풍속 실태조사 및 활용 콘텐츠 개발(2015~2017)
6	전통마을숲의 경관생태적 가치평가 및 관리체계 연구(2015~2017)
7	농촌지역 전통마을숲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2015~2017)
8	농업·농촌유산의 유지·보전 체계 및 주민역량강화 방안 도출(2014~2015)
9	공간정보를 이용한 농업·농촌 유산 기록화 연구(2014~2015)
10	농촌 무형유산 발굴 및 활용방안 연구(2014~2015)
11	농촌 사회적기업의 전통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 연구(2015~2016)
12	농촌 전통자원 활용 사회적기업 모델 구축 방안 연구(2015~2016)
13	국가농업유산 후보지역 발굴 및 지정 확대 방안 연구(2016~2018)
14	농업유산 가치 확산 방안 연구(2016~2018)
15	마을공동체 전통 생활유물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2016~2017)
16	전통 공동체조직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2016~2017)
17	마을공동체 전통 생활유물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2016~2017)
18	농업유산 지역 교육, 체험, 테마여행 프로그램 개발(2017~2018)
19	지역특성별 농촌경관정책 실행 모델 개발 연구(2017~2018)
20	농촌가치 향상을 위한 경관자원 이용주체별 역할정립 연구(2018)
21	지역경관 보전을 위한 대표경관 선정기준 및 운영방안 연구(2018)
22	PIS 폭염에 따른 전통 수리관개시설 이용 실태조사(2018)

참고 3

농경문화자원 농진청 연구·개발기술

지역	전통공동체	전통유물·의례·행사	마을 숲 조사	세시풍속 프로그램화	농업유산발굴
경기	이중계(양평) 대동계(여주)	마을숲·화재집(양평 2) 학령산제(과주) 터줏가리·군웅제(군포) 상석·터줏가리(화성) 우물·당제·우물계(안성 4) 누정·대동굿(광주) 산제(군포 3, 용인 2, 안성 2, 양주) 공동빨래터(안산) 장승·장승제(의왕, 부천)		대보름 용줄다리기 (용인)	
강원	대동계(강릉, 원주) 유사계(영월) 사냥놀이(평창)	썰다리·서낭당(영월 3) 물레방아(정선) 서낭당·돌탑(강릉, 고성)	구정·학산마을숲(강릉 2) 학무정숲(속초) 성황림(원주)	구릿대피리불기(홍천) 행구농악(원주) 삼굿놀이(영월) 지경다지기(철원)	고랭지발농업(태백) 송이임업시스템(양양) 메밀발농업문화(평창)
충북	오티별신제(제천) 대동계(괴산, 충주)	서낭당(제천) 돌탑·장승·솟대(옥천)	은사뜰숲(보은) 오기리느티나무(괴산)	풍년기원제(청주) 수살제(청주)	
충남	산제계(논산) 대동계(금산, 부여) 삼베길쌈(예산) 대동회(보령)	농벼우끄시기(금산) 물레기농요(금산) 물레방아·장승·입석(공주 4) 돌탑·장승(금산)		기우제(금산)	한산모시농업문화(서천)
전북	위친계(담양) 일관회(김제) 기로서(고창) 고현향약(정읍) 계남향약(장수)	썰다리(무주) 들돌·승경도(김제)	계산·삼늬마을숲(남원 2) 방동마을숲(임실) 노하마을숲(장수) 양신마을숲(장수) 은천·화초마을숲(진안 2)	백중놀이(김제) 땃불놀이(군산)	봉동생강저장(완주) 전통관개시스템(완주) 계단식논(남원) 붓도랑농업유산(임실)
전남	쌍계정(나주) 대동계(진도) 농악위친계(구례) 유촌계(곡성)	천룡제단·동화정(담양) 황금들노래(담양) 연자방아·정자·우물(구례 3) 당산·돌탑(구례 2) 모정·우물(곡성) 장승·제당(진도) 정자(나주, 담양)	고마마을숲(나주) 광방제림(담양) 모평마을숲(함평) 숲정이(화순) 호동마을숲(화순)	백중놀이(담양) 백중놀이(함평) 별신제(고흥) 길쌈놀이(화순)	메실밭(광양) 간척지농업(신안) 붓도랑(화순)
경북	동군계(안동) 동계(영양) 별소계(봉화)	천왕제(칠곡) 당샘·제당(영덕)	성안숲(군위) 마애숲(안동) 솔향기마을숲(영주) 사촌서림(의성)	낙화놀이(칠곡)	꽃감농업유산(상주) 대마농업(안동) 경사지발농업(울릉) 전통못관개(의성)
경남	대동회(함양) 대동회(통영) 대동회(남해)	들다리·미륵·밥무덤(남해 2) 연자방아(하동) 당산숲(함양)	동호마을숲(거창)	법흥상원놀이(밀양) 삼갈날새불러오기(산청) 새떼기 쫓기(거제) 동신제(의령, 하동)	덤벙(고성) 선상지(사천) 다락논(산청) 계단식논(함양)
농경문화자원(예)					
	<p><담양-황금들노래> <울릉-산간밭농업> <고성-덤벙></p>				

* 농진청 농경문화자원 연구(169개소): 농촌경관 9개소, 세시풍속 23개소, 지역·마을축제 15개소, 마을숲 33개소, 농업유산 후보발굴 29개소, 전통 공동체 30개소, 농촌전통유물 30개소

참고 4

국가중요농업유산

□ 국가중요농업유산 후보지역 발굴(농진청) : 20지역

① 인천 강화(강화 갯벌 간척지 농업유산)	② 광주 북구(광주 무등산 푸랭이수박 농업시스템)
③ 강원 강릉(강릉 고랭지 밭농업 시스템)	④ 강원 양양(양양 송이 임업시스템)
⑤ 강원 평창(평창 메밀밭 농업문화)	⑥ 충남 보령(보령 청라은행 농업유산)
⑦ 충남 서산(서산 생강저장굴 농업유산)	⑧ 충남 서천(서천 한산모시 농업문화)
⑨ 전북 완주(완주 봉동생강 저장굴 농업유산)	⑩ 전북 완주(호남평야 전통 관개시스템)
⑪ 전남 광양(섬진강 매실밭 농업시스템)	⑫ 전남 신안(섬지역 간척지 농업시스템)
⑬ 전남 화순(화순 붓도랑과 마을숲 농업유산)	⑭ 경북 상주(상주 꽃감 농업문화)
⑮ 경북 안동(안동 대마농업과 삼베문화유산)	⑯ 경북 울릉(나리분지와 산간지역 밭농업시스템)
⑰ 경북 의성(의성 못 관개시스템)	⑱ 경남 고성(고성 둥명 관개시스템)
⑲ 경남 산청(산청 다락논 농업시스템)	⑳ 경남 함양(함양 지리산 계단식논 농업시스템)

※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현황(15개소)

제1호 완도 청산도 구들장논	제9호 울릉 화산섬 밭농업
제2호 제주 밭담	제10호 의성 전통수리
제3호 구례 산수유농업	제11호 보성 전통차농업
제4호 담양 대나무밭	제12호 장흥 발효차 청태전
제5호 금산 인삼농업	제13호 완주생강전통농업시스템
제6호 하동 전통차농업	제14호 고성해안지역 둥명관개시스템
제7호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	제15호 상주 전통꽃감
제8호 부안 양잠농업	

* 농진청 농업유산 연구로 발굴한 2개 자원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

□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

○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개념: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가가 지정한 농업유산

* 농업유산: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자원

○ 지정목적

-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여 농촌가치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12년 도입)

○ 관련규정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활용)

- 농어업인 삶의 질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2부터 제2조의7

- 농업유산 지정관리기준(농식품부고시 2015-143호, '15.10.08.)

- 지원사업: 농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

* 국가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을 사업대상지로 유산자원의 발굴,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예산 지원 3년간 약15억원(국비 10억)을 지원하여 체계적인 보전관리

○ 지정기준 및 절차

- (기준) ① 역사성과 지속성, ② 생계유지, ③ 고유한 농업기술, ④ 전통 농업문화, ⑤ 특별한 경관, ⑥ 생물다양성, ⑦ 주민참여

- (절차) 지자체 신청 → 신청서 검토 및 보완사항 자문(농업유산자문위원회) → 현장조사 → 최종결정(농식품부)

치유농업센터 구축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농촌지도관 박찬순 농촌지도사 임은성	063-238-1021 063-238-1017

□ 목적

-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지역의 치유농업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국민 치유 서비스 제공 실행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육성

□ 추진방향

- 치유농업을 희망하거나 치유농장을 운영하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기술 지원
- 지역의 치유농업 수요를 발굴하고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 치유농업 수요-공급 매칭 지원을 위한 치유농장·고객 DB 구축
- 치유농업의 효과적인 지원과 성과 창출을 위한 농업, 심리학, 작업치료 등 전문가와 협력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원단 운영
- 안전과 고객 특성을 고려한 치유농장 환경, 치유 프로그램, 운영자 역량 지원을 통한 치유농장에 대한 품질관리
- 치유농업 현장 지원 전문가인 치유농업사 양성 기관으로 활용

□ 추진근거

- 농촌진흥법 제1조, 농촌진흥법 제15조, 제16조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8조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제14조
-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5조, 제50조, 제51조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13조

□ 사업규모

- 사업량 : 2개소(경상북도농업기술원,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 사업비 : 500백만원 (개소당 500백만원, 국비·지방비 각 50%)
* 2년간 1,000백만원(1년차 500, 2년차 500)

□ 사업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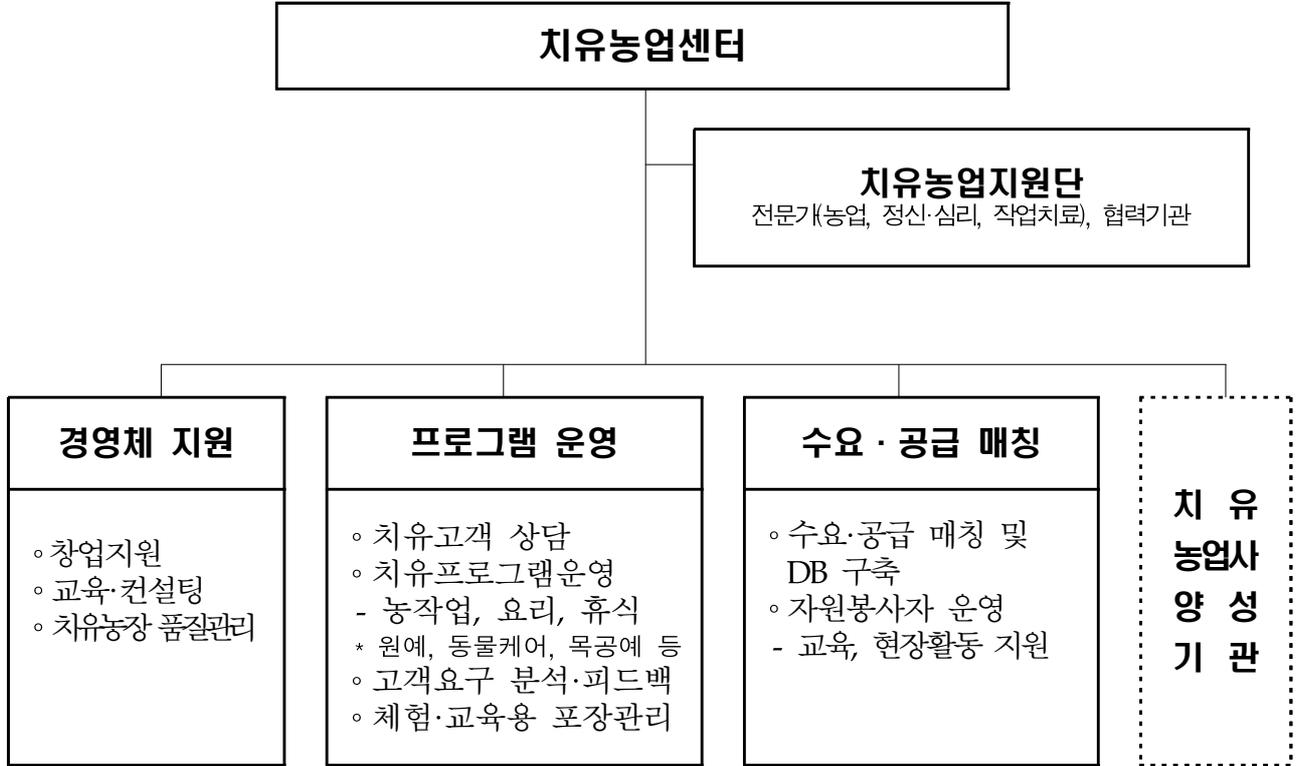
- 도농업기술원, 특·광역시농업기술센터

□ 사업내용

- 실내·외 교육·체험장 조성 및 시설·장비 지원
- 치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농작업 도구, 작업실 설치
- 직영 치유농장 조성(식물재배, 동물 사육)
- 치유효과 측정 등 실증연구 지원 장비, 치유고객 이용 휴식공간 조성 등

□ 주요역할

- (경영체 지원 및 관리) 창업 컨설팅, 사업장 품질관리, 운영자 교육·훈련
- (고객관리) 치유고객 수요-공급 매칭, 고객요구 분석 및 피드백
- (제도협력) 치유농업사 양성·활동 지원 및 정책 연계 지원
- (시범포 운영) 센터 직영 치유시설 운영 프로그램 실증 연구



□ 추진체계 및 추진요령

<추진체계>

- (농촌진흥청) 기본계획 수립, 예산확보, 사업대상 공모, 모니터링, 사업 평가, 성과확산, 교육, 워크숍, 자료제공 등
- (도농업기술원/특광역시센터) 사업계획 수립, 조직·인력 지원, 서비스 환경, 경영체 지원 및 유관기관 협력, 우수사례 발굴 등

<추진요령>

- 치유농업 교육·체험장은 안전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조성
- 농업인이 치유농장을 조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치유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식물재배, 동물사육 등 농장 조성
 - 식물재배는 치유고객 안전을 고려하여 유기농으로 재배하고 동물은 사람과 친화력이 있으며 온순한 동물 선택
-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으로 신청하고 치유농업사 양성교육 운영
- “치유농업센터” 조성 가이드(‘20.12)를 참조하여 조성

□ 기대효과

- 농업·농촌의 치유산업 활력 도모 및 신 소득원 창출
- 농촌의 공익적 기능 활용 국민의 심리적·신체적 건강 증진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2021년도 사업추진계획 보고 : 2021. 3. 20 한
- 2021년도 상반기 추진현황 보고 : 2021. 6. 20 한
- 2021년도 사업추진결과 보고 : 2021. 11. 20 한

참고

치유농업센터 세부내용(안)

구분		세부내용
직영 치유시설	실내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서곤충(귀뚜라미, 나비 등)을 이용한 심리치유 활동실 ◦ 그리기, 만들기 등 창작 치유 활동실 ◦ 장작 자르기, 쌓기 등 목공 작업실 ◦ 음식을 통한 치유 활동실
	실외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예 작물 등 식물 재배(노지, 시설) - 치유고객 안전을 위한 유기농 재배 - 초화목으로 경관을 고려한 농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농장(사육시설, 동물 입식) - 친화력이 좋고 온순한 동물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유활동 보조도구 정리 창고
리모델링 및 공간조성	보조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유고객 활동 준비 및 정리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유고객 휴게실, 소통 및 교류 공간
	회의실, 분임실, 교육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실, 분임실, 교육실, 화장실 - 회의장, 교육 기자재 - 화장실 : 안전을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 - 보행보조 : 안전바, 헬체어 등 * 운영자, 자원봉사자, 치유고객 교육·회의 등
	치유 진단분석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유상담실, 행동분석실, 작업치료실
	사무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 공간조성, 책상, 사무 기자재(컴퓨터 등)
전문 기자재	치유효과 진단 및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트레스 측정기, 호르몬 분석기, 뇌파분석기, 근력측정기, 작업치료 장비

■ 2021년도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종합검정실 운영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팀	농촌지도관 정병진	063-238-1501
		농촌지도사 전영삼	063-238-1508

□ 목적

- 토양검정을 통한 적정시비지도로 농업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환경오염 예방
- 농업농촌공익직불제, 친환경·GAP 인증 등 정책 업무지원
- 농업자원(토양, 수질)에 대한 분석으로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 추진방향

- 시군센터 종합검정실 운영내실화로 환경오염 부담 경감 기반 확보
- 지역 특성 및 농업 현장 위주의 농업자원(토양, 수질 및 유해물질 등) 분석 진단
- 시군 센터의 토양분석실 분석요원 전문화 및 정확도 향상 운영 지원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5조(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 농촌진흥법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 친환경농어업법 제9조(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 친환경농어업법 제11조(농어업 자원·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평가)
 -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기준[농촌진흥청고시 제2017-12호]
- 친환경농어업법 제13조(친환경 농어업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 농산물우수관리기준[농촌진흥청고시 제2019-3호]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 가축분뇨법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 가축분뇨법 제21조(퇴비·액비의 적정한 살포를 위한 행정지도 등)

□ 연도별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구 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개소수	164	163	164	163	163	163	163	162	162	162
사업비	2,920	3,908	3,648	4,378	4,378	4,378	4,378	5,378	4,572	4,652

□ 사업규모

- 총사업비 : 4,652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도) 종합검정실 운영 지원
 - 사업량 : 9개소(각 도 농업기술원)
 - * (19개소 이상) 150백만원/ (12~17개소) 100/ (제주) 50
 - 사업비 : 1,050백만원(개소당 차등지급, 국비 50%, 지방비 50%)
 - 운영방향 : 시군 성과관리, 담당자 교육,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 등
- (시군) 종합검정실 운영 지원
 - 사업량 : 153개 센터
 - 사업비 : 3,601백만원(개소당 차등지급,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량

- 사업량 : 162개소(도농업기술원 9, 시군농업기술센터 153개소)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계	사업량	162	21	17	12	16	15	22	24	19	4	1	2	2	3	1	1	1	1
	사업비	4,652	572	443	345	481	444	756	605	543	108	23	54	62	80	34	31	31	40
도	사업량	9	1	1	1	1	1	1	1	1	-	-	-	-	-	-	-	-	-
	사업비	1,050	150	100	100	100	100	150	150	150	50	0	0	0	0	0	0	0	0
시군 사업비	사업량	153	20	16	11	15	14	21	23	18	3	1	2	2	3	1	1	1	1
	개소별	1,530	200	160	110	150	140	210	230	180	30	10	20	20	30	10	10	10	10
	실적별	1,611	192	153	105	186	174	330	225	183	28	3	6	6	4	6	3	3	12
	특광	120	0	0	0	0	0	0	0	0	0	10	28	36	46	18	18	18	18
	목표달성	261	30	30	30	45	30	66	0	30	0	0	0	0	0	0	0	0	0
합계	3,522	422	343	245	381	344	606	455	393	58	23	54	62	80	34	31	31	40	

□ 예산운영

- 일반운영비, 재료비, 국내여비, 장비유지비, 보험료, 특수건강검진비 등 종합검정실 운영을 위한 예산 활용
- 토양검정 시료채취, 시료 분석 전처리 및 업무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 기간제근로자는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 기술지원분야 사업운영 전반에 효율적 활용 가능
- ①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는 편성 금지(단, 실험실 안전, 연구결과 개발장비 및 시급한 분석장비 구입은 필요시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
 - * 연구사업 결과 개발장비 : 생물학적 위해요소 분석능력 향상을 위한 대장균검출기 및 휴대용 토양 이온분석기 등은 예산범위내에서 편성 가능
- ② 도 농업기술원에서 시군센터 예산 배정시 도(시군) 배정예산에 대해 효율적으로 운영 가능
 - * 도 농업기술원 사업비(기본+추가예산)에서 재량배정 가능

□ 사업내용

□(도) 종합검정실 운영

- 시군농업기술센터 검정실 분석담당자 및 지원인력(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교육, 연찬회 등 종합검정실 운영 기술지원
- 토양검정실이 미 설치된 시군에 대해서는 시군 시료 분석 협조
- 시군농업기술센터 분석 신뢰도 확보를 위한 정도관리 추진

□(시군) 종합검정실 운영

-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검정계획(중앙 협의)을 수립 및 추진
 - 연간 1,000~10,000점(기본검정 1,000점 및 주요작목 재배지 검정 등) 기준
 - 미 검정 필지는 연차적으로 검정계획을 수립 주기적으로 토양검정 실시
 - 토양 화학성분·중금속·식물체 및 수질, 가축분뇨 퇴·액비 등 분석 확대하되 분석방법은 “종합검정실 분석 매뉴얼” 준수
 - 농업인 대상 포장시료 채취요령 교육을 추진하여 분석시료 신뢰성 확보

- 검정결과에 따른 토양관리 비료사용처방서 발부 및 현지 농가지도
 - 토양검정 실시 농가에 대해서는 시비처방서 활용법 및 비료시비 기술지도
 - 비료사용처방 농가 실천도 표본조사 실시 및 실천도 향상 기술지원
 - 가축분뇨 적정사용을 위한 퇴·액비 시비처방서 발급
- 농식품부 공익직불제, 친환경·GAP 인증, 가축분뇨 분석연계 토양시비처방, 친환경농자재 지원, 석회소요량 산정 등 정책사업 및 국립농업과학원 대표필지 토양검정(농식품부 토양개량제 소요량 산정 근거활용) 지원
 - * 직불제·대표필지 사업 별도계획 시달
- 토양검사 시 논토양은 유효규산, 밭토양은 pH 항목 항시 검정 흙토람 입력으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대표필지 산출 지원
- 검정 후 비료사용처방서 발급 시에는 반드시 “흙토람” 이용 처방서 발급
 - * 지방농촌진흥기관 평가,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등 각종 평가 시 “흙토람” 활용 실적 사용

□ 운영요령

□ 검정요령

- 시비처방에 필요한 항목은 표준분석법에 의거 정밀분석
- 검정결과외의 정확도 유지를 위하여 성분별 분석 절차에 의거 검정
- 검정 보조요원에 대한 시료 조제, 건조 및 분석 능력 교육 추진
- 검정결과는 항상 기록을 유지하고 분석하여 시비기술 지원자료로 활용

□ 종합검정실 운영관리

- 종합검정실의 분석 전문기술 확보 및 분석 데이터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계약직 근로자 추가확보 및 가급적 무기계약직(공무직) 배치
 - * 지역별 분석량 수요증가에 따른 보조인력 추가확보
- 노후 검정장비에 대하여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예산활용 연차적으로 교체를 추진하고, 검정 후 기자재는 청결상태 유지로 현안대응 상시 검정체계 확립
- 장비보전 및 분석오차를 줄이기 위한 종합검정실 내 온·습도 유지
- 화학약품 등에 의한 유해가스 발생 방지를 위한 환풍시설 설치로 쾌적한 토양검정 분석환경 유지

- 분석 검정 후 폐액 등 처리는 간이 집수장 등에서 관리하고, 전문 업체에 위탁 폐기로 2차 오염 방지
- 토양분석실의 안전·환경에 대한 위험요소 관리(위험물 안전보험, 폐기물 처리보험 가입, 분석요원 건강검진 등) 추진
- 종합검정실 담당공무원 및 지원인력 변경 시 1년 이내 교육 수료
- 취득한 재산(분석장비, 시설 등)은 기재부 재산등록 시스템에 등록 및 사후관리 실시(중요재산 공시관리 철저)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운영계획 : 2021.2.28.까지
- 결과보고 : 2021.11.30.까지

과수 과학영농 기술보급 장비지원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농촌지도관 김기형	063-238-0981
		농촌지도사 배선아	063-238-0987

□ 목적

- 과학적인 진단·예방으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증대
- 친환경·안전 과실 생산을 위한 진단 체계 구축

□ 추진방향

- 과수원 영양진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생리장해를 사전에 진단하여 예방
- 과수 바이러스 진단으로 바이러스 원인 병해 사전 예방
- 인공수분으로 과실의 결실률 향상과 정형과 안정생산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조, 제15조, 제16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 사업규모

- 사업량: 12개소
- 사업비: 432백만원(개소당 36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대상 : 꽃가루은행, 영양진단실, 과수시험포, 바이러스·바이로이드 진단실 미 설치 시·군이나 기존 장비 교체, 확장을 원하는 시·군농업기술센터 지원

□ 사업량: 12개소

시 도	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사업량	12	2	1	2	1	1	3	2

□ 사업내용

- 시기별, 생리장해 발생 시 잎을 채취하여 분석 후 영양 진단 처방
- 과학적인 병해충 예찰·진단으로 안전 과실 생산
- 당도계, 산도계, 착색판별기, 조도계 등 고품질 과일생산 필요 기자재
- 인공수분으로 과실의 결실률 향상과 정형과 안정생산
 - 꽃가루 발아율검사실, 개약실에 신설·확장에 필요한 기자재, 장비
- 과수 바이러스 진단으로 바이러스 원인 병해 사전 예방 등
 - 과수 바이러스·바이로이드 진단실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장비, 소모품

□ 사업대상

- 꽃가루은행, 영양진단실, 과수시험포, 바이러스·바이로이드 진단실 미설치 시·군이나 기존 장비 교체, 확장을 원하는 시·군농업기술센터 지원

□ 기대효과

- 인공수분으로 과실의 결실률 향상과 정형과 안정생산
- 시기별, 생리장해 발생 시 잎을 채취하여 분석 후 영양 진단 처방
- 과학적인 진단·예방으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증대

□ 사후관리

- 취득한 재산(분석장비, 시설 등)은 기재부 재산등록 시스템에 등록 및 사후관리 실시(중요재산 공시관리 철저)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운영계획 : 2021.2.28.까지
- 결과보고 : 2021.11.30.까지

조직배양실 운영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농촌지도관 고인배	063-238-0976
		농촌지도사 박환규	063-238-0977

□ 목적

- 국내육성 작목 등을 활용한 조직배양 기술로 건전묘 증식 보급
- 지역 소득작물을 대량 증식 보급하여 향후 특화작목으로 육성

□ 추진방향

- 농업기술센터 내 조직배양묘 생산으로 다수의 농업인에게 공급
- 농업인이 희망하는 국내 육성 작목 등의 배양기술 습득으로 조직배양묘 분양률 증대
- 건전묘 배양 전문기술 함양을 위한 전담 인력의 지속적 교육지원 등

□ 사업규모

- 사업비 : 198백만원(개소당 18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량

시 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사업량	11	1	2	1	1	2	1	2	1

□ 사업내용

- 농가에서 소득화 할 수 있는 국내 육성 작목 등의 조직배양묘 배양 및 증식
-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전문성 있는 과학영농시설로 활용

○ 방문객을 위한 교육, 견학, 홍보 장소로 활용하여 농촌진흥기관의 이미지 제고

□ 사업대상

○ 시군농업기술센터 조직배양실

* 조직배양묘 대량 증식보급으로 지역특화작목 육성이 가능한 시군

* 조직배양 전문교육을 이수한 담당자가 있는 농업기술센터

□ 지원내역

○ 조직배양묘 시료 채취와 증식, 순화를 위한 재료비, 시약구입비

○ 조직배양실 장비 부품 구입, 점검 수리를 위한 장비유지비

○ 과학영농시설 활용도 향상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

※ 조직배양실 운영목적 이외의 고가장비 구입과 인건비 집행 금지

□ 기대효과

○ 조직배양기술을 이용한 건전묘 증식, 보급으로 작목 품질향상 및 수확량 증대

○ 지역 소득작물 대량 증식 보급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발전에 기여

□ 사후관리

○ 취득한 재산(분석장비, 시설 등)은 기재부 재산등록 시스템에 등록 및 사후관리 실시(중요재산 공시관리 철저)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운영계획 : 2021.2.28.까지

○ 결과보고 : 2021.11.30.까지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농촌지도관 박현경 농촌지도사 이병철	063-238-1041 063-238-1042

□ 목 적

-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한 위생관리기술 확산 및 소모성질병 예방관리
- 농가 대상 교육·홍보 등 가축방역 활동 지원으로 가축질병 피해 최소화

□ 추진방향

- 친환경축산관리실 장비를 활용한 축사환경개선 등 과학영농 실현
-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차단방역 교육 및 홍보지원

□ 사업량 : 60개소

도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인천	울산	세종
개소수	60	10	7	7	10	6	8	9	1	1	1

□ 사업규모 : 60개소

- 사 업 비 : 600백만원(개소당 1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대상 : 시군농업기술센터

* 친환경축산관리실 또는 미생물배양실을 운영하며 가축질병예방, 고품질 축산물 생산, 차단방역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농업기술센터

□ 추진요령

- 운영요령
 - 시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 지역여건에 맞는 위생환경개선 및 안전축산물 생산 관련사업 등 추진
- 실험실 검사장비 운영, 재료구입, 홍보물 제작 등
- 친환경축산관리실 보유 장비 효율적인 운영으로 질병피해 저감

○ 사업내용

- 실험실 검사 및 진단(유방염, 임신·설사 진단 등) 및 초유 생산 공급
 - * 가축질병 진단 관련 지자체 공수의 등 전문가 인력풀 활용
- 초음파 육질진단 및 축사 내 유해가스 등 환경위생 검사
- 주요 가축질병에 대한 국가방역업무 지원(소독점검 등)
- 농업인(축산농가) 교육 시 차단방역 교육 및 홍보
- 축산용 미생물 생산·공급으로 유해가스 저감 등 축산환경 개선

○ 지원내역

- 축산환경측정기자재(열화상카메라, 축산냄새측정장비 등)
- 초유 생산 및 공급 운영비(초유 면역글로블린 진단키트 등)
- 임신진단 및 송아지 설사 검사 키트, 정액활력조사 재료비, 가축방역 홍보물 및 재료비, 축산용 미생물 생산 재료비 등
 - * 축산환경기자재 또는 검사장비는 총사업비의 50% 이내 구입
 - * 재료비, 방역홍보비, 축산환경측정기자재 등은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
 - * 인건비는 사업비 집행 불가

□ 사후관리

- 취득한 재산(분석장비, 시설 등)은 기재부 재산등록 시스템에 등록 및 사후관리 실시(중요재산 공시관리 철저)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운영계획 : 2021.2.28.까지
- 결과보고 : 2021.11.30.까지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운영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농촌지도관 고인배	063-238-0976
		농촌지도사 박환규	063-238-0977

□ 목적

- 시군농업기술센터 내에 새로운 기술 및 현장애로기술 실증시범 포장 운영·활성화로 지역농업 핵심기관으로 육성

□ 추진방향

- 시군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노후시설 개선 및 신규설치
- 지역특화품목 발굴·확대를 위한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 시범포를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농가수준별 체계적인 실습교육 지원

□ 사업규모

- 사업비 : 3,600백만원(개소당 20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량

시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사업량	18	2	2	2	2	2	3	3	2

□ 사업내용

- 시군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설보수 등 기반구축
- 지역 여건에 맞는 새로운 특화품목 발굴 및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
- 영농시기별 실증시범포를 활용한 신기술 현장교육 및 연시 등 실시

□ 사업대상

-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설치 시군농업기술센터

□ 운영요령

- 당초 농진청 사업담당부서에 제출한 세부사업계획을 준수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철저
 - ※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세부사업계획 등을 수립하여 ATIS시스템에 등록한 후 농촌진흥청에 승인요청(도원에서는 시군 사업계획에 대해서 적정성, 효과성 등을 검토)
- 사업목적에 맞지 않은 국내여비 등 편성 및 집행 지양
- 사업 기간내에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가급적 상반기에 시범포 설치를 완료하고 농가 수준별 체계적인 실습교육을 실시하여 성과 조기 달성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업비 재편성 등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비율에 따라 해당 도원 및 농촌진흥청의 검토·승인을 받아야 함
 - 농촌진흥청 승인사항 : 변경 금액이 총사업비의 20% 이상인 경우
 - 해당 도원 승인사항 : 변경 금액이 총사업비의 20% 미만인 경우
- ※ 도원 및 특광역시센터의 변경 승인한 내역은 즉시 공문으로 제출(변경된 사업계획서 첨부)

* 특광역시센터는 변경금액 비율에 상관없이 농촌진흥청에 승인 요청할 것
 - 단, 하위 시군센터의 변경승인 요청 처리는 타 시군센터의 경우와 같음

□ 기대효과

- 신기술 및 현장 실증시범을 통한 농업현장 애로기술의 신속해결
- 영농시기별, 농가수준별 체계적인 실습 교육장으로 활용

□ 사후관리

- 취득한 재산(분석장비, 시설 등)은 기재부 재산등록 시스템에 등록 및 사후관리 실시(중요재산 공시관리 철저)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운영계획 : 2021.2.28.까지
- 결과보고 : 2021.11.30.까지

신기술실증시험연구활동지원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농촌지도관 고인배	063-238-0976
		농촌지도사 박환규	063-238-0977

□ 목적

- 농가에서 필요한 현장애로기술 해결 및 문제해결 가능성 제고
- 지역농업현안의 해결 및 새로운 작목의 도입과 발전 가능성 확보
- 과제연구를 통한 지도공무원의 과학적 분석 및 지도 능력 향상

□ 추진방향

- 사업추진계획(1년) 및 예산범위 내에서 연구과제를 완료토록 사업 추진
- 현장 애로기술을 수시로 파악하고 결과를 시범사업 기획에 환류
- 개인 또는 공동연구를 통한 정보교류와 책임 있는 연구과제 수행

□ 사업규모

- 사업비 : 300백만원(개소당 10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량

시 도	계	충남	전북	전남
사업량	3	1	1	1

□ 사업내용

- 우리 청에서 개발한 연구개발 결과의 실증연구 또는 영농 현장에서 발생 되는 애로기술의 해결을 위한 연구
- 친환경,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농식품 가공 등을 위한 기술개발
- 경영·마케팅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과제의 수행 등

□ 사업대상

○ 지방농촌지도기관 소속 지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 지도직, 연구직 가능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일반운영비 :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심사수당,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비, 임차료, 재료비, 수수료 등

○ 공공운영비 : 시설장비유지비

○ 인건비 : 민간인근로자 임금기준 적용(상시고용금지)

○ 여비 : 국내여비

○ 자산취득비(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총사업비 10%이내)

- 사업기간 및 예산규모를 고려(지방계약법령,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참조)하되 사업수행에 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기타 장비는 센터 내 시설활용)

* 비목별 세부편성은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름

○ 취득한 재산(부동산, 장비 등)은 기재부 재산등록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목록 제출(반기별) 및 사후관리 실시

□ 추진요령

〈'21년 연구과제〉

○ 농촌진흥청에서 사업추진요령, 연구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할 수 있음

○ 사업추진은 가급적 농촌진흥기관 실증시험포 또는 연구시설을 활용

○ 연구과제 변경 시에는 공문으로 통보하도록 함

- 사업계획서에 따른 과제 및 과제수행자는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 단, 다른 지자체 간 인사이동, 퇴직 및 기상재해 등 과제내용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제변경을 사업주관부서에 요청

○ 연구과제 및 과제수행자, 과제진도관리 등을 위하여 중간 진도관리를 현장실사 및 기타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

○ 사업결과평가는 평가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발표 또는 서면심사 등으로 실시할 수 있음

- 사업결과는 자체 시범사업으로 개발 확산하거나 보고서를 발간하여 농업인 교육 자료 등으로 활용
 - * '21년 사업결과보고서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DB화 예정
- 〈'22년 연구과제〉
- 사업계획서 작성은 가용예산범위에서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기획
 - * 사업계획 작성 시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사업종합관리시스템(ATIS), 지역농업특성화기술개발지원사업, 농업인기술개발과제 등 연구과제조사를 통하여 사전 중복여부를 반드시 고려하여 작성
- 시도에서는 시도 및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지역기술수요, 연구필요성, 현장성, 기존연구과제 중복성, 사업완료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농촌진흥청에 제출
- 과제선정은 사업계획서를 농촌진흥청에서 시도 사업량, 예산 등을 고려하여 심의·선정 실시
 - * 동일한 과제 수행자에 대해 과제 선정 후 2년 이내 재 지원 불가하며, '21년도 예산편성 규모 및 방향에 따라 시도별 사업규모를 조정 실시

□ 기대효과

- 복합적인 실증시험(재배, 병해충, 가공 등)으로 지역특화작목 육성기간 단축
- 실증결과 우수기술 시범사업 추진 및 맞춤형 재배기술 매뉴얼 보급

□ 사후관리

- 취득한 재산(분석장비, 시설 등)은 기재부 재산등록 시스템에 등록 및 사후관리 실시(중요재산 공시관리 철저)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운영계획 : 2021.2.28.까지
- 결과보고 : 2021.11.30.까지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팀	농촌지도관 정병진	063-238-1501
		농촌지도사 전영삼	063-238-1508

□ 목 적

- PLS 시행에 대응한 출하전 농산물 안전성 분석으로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 지자체 생산·유통 농산물 지자체 주관 안전성 확보를 통해 푸드플랜 지원

□ 추진방향

- 농산물 출하전 신속분석을 위한 안전농산물 출하 검증 시스템 구축
- 지자체 푸드플랜 실현을 위한 지역내 생산·유통 농산물 로컬푸드·학교급식·군급식·공공급식 등 안전성 확보
- 지치체 인증 농산물 등 안전성 확보업무 중추적 역할 기반조성
- 농업인 대상 안전농산물 생산교육 병행 추진으로 농산물 안전성 확보

□ 근거법령

- 농산물직거래법 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0조(안전관리계획)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6조(농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 친환경농어업법 제9조(환경오염 방지)
- 친환경농어업법 제11조(친환경농어업 실태조사)
- 친환경농어업법 13조(친환경농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 사업규모

- 사업대상 :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 업 비 : 12,500백만원(개소당 50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 본 사업은 2년 연속사업임(2021년 선정시군은 2022년까지 계속 지원)

□ 사업량 : 25개소(1년차 10, 2년차 15)

○ 배정시군

구분 (개소)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특광
1년차 (10)	파주	-	-	부여 공주 서산	군산 순창	광양 진도	-	거창 양산	-
2년차 (15)	화성 평택 양주	-	옥천	청양	완주	해남 나주 신안	구미 청송 상주	거제 진주 밀양	-
'19~'20	김포	횡성	청주 괴산	-	고창, 전주	함평	경주 의성	-	대전

□ 사업내용

○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에 필요한 분석장비 구축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등 관련법이 정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구축

○ 지원범위

- 잔류농약 분석 항목(320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 일체

*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48호), [별표2] LC 및 GC MS/MS 분석성분 및 질량분석 조건에 부합하는 장비(LC, 207성분 / GC, 113성분)

- 분석기기 설치목적 공조 및 건물내장을 위한 시설 개선 등 리모델링 (총 예산의 20% 이내)

- 농산물 유해미생물 모니터링을 위한 장비구입(총 예산의 5% 이내)

□ 운영요령

○ 농산물 중심의 잔류농약 분석기기 및 전처리 기자재 (외자)구매 신속 추진

○ 농산물 안전분석실 설치·운영 및 검사 수수료(무료 권장) 등에 대한 조례 제정

○ 지자체 농산물 인증 시스템 구축시 토양, 잔류농약 등 사업 연계 추진

○ 지자체 푸드플랜 추진 부서 및 농협 등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한 농산물안전 분석실 업무 확보

- 로컬푸드 납품 회원농가 잔류농약 안전성 관리 출하전 및 유통중 검사

* 조례 제정을 통해 업무추진 근거 확보로 부적합 농가 관리방안 확립 필요

- 지자체 특화작목 출하전 안전성 컨설팅을 통해 주요작목 안전성 확보
- 농산물 출하전 잔류농약 신속분석 지원 및 컨설팅으로 안전농산물 적기출하 지원
- 농업인 대상 농약 사용요령 교육 및 부적합 농가 대상 사후 관리 추진
- 분석 신뢰성 확보를 위한 중앙단위 정도관리 평가에 반드시 참여
- 농산물안전분석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담당자 정원확보(전문경력관 등) 및 잦은 인사이동 지양
-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을 통해 건물(분석실)설치 사전준비 필요
- 취득한 재산(분석장비, 시설 등)은 기재부 재산등록 시스템에 등록 및 사후관리 실시(중요재산 공시관리 철저)
- 지자체 생산 농산물 안전관리 실적 및 대국민 홍보 추진
- 농산물안전분석실 사업 성과평가를 위한 로컬푸드 등 이용고객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 민간 분석기관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인증용(유통업체 및 인증업체 제출용) 성적서 발급은 가급적 지양

□ 기대효과

- 푸드플랜, 로컬푸드 확산 등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
- 과학영농기반 구축으로 컨설팅 강화 등 농업인의 소득 안전망 확충
- 안전 먹거리 생산기술 지원으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농업인 등 신뢰 확보
- 시군센터 잔류농약 분석업무 확대로 대국민 과학영농 서비스 강화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운영계획 : 2021.2.28.까지
- 결과보고 : 2021.11.30.까지

가축분뇨 부속도 측정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팀	농촌지도관 정병진	063-238-1501
		농촌지도사 전영삼	063-238-1508

□ 목 적

-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부속도 관리기술과 유해물질 측정기술 보급으로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가능 농업기반 구축
- 가축분뇨 퇴액비 분석 인프라구축으로 농업인 민원 해결 및 신규정책 안정정착 지원

□ 추진방향

- 가축분뇨법의 축산분뇨 배출 기준 판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운영
- 가축분뇨 농경지 살포를 위한 퇴액비 분석,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서 발급 등 살포 지도
- 축산농가 의무분석 이외 퇴액비 안정적 자원화를 위한 분석 및 살포 지도

□ 근거법령

- 가축분뇨법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5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 * (별표6)퇴비·액비의 성분: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 가축분뇨법 제21조(퇴비·액비의 적정한 살포를 위한 행정지도 등)
 -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10조(퇴비·액비의 살포 지도 등)

□ 사업규모

- 사업대상 :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 *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6조(지방농촌진흥기구)
 - * 농업기술센터내 과학적 분석기능이 있는 토양검정실에서 담당 권장(부속도 이외 수분·중금속·염분 등 연계분석으로 업무 효율성 강화)

- 사업비 : 6,28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도원 : 192백만원(물량기준 배정 14.4 + 인건비 24)
 - 시군 : 6,088백만원(물량기준 2~40 + 기반조성 3~18 + 인건비 12~24)
 - * 시군 축산업 상황에 따라 적의편성 운영하되 기간제근로자 최대한 채용

□ 사업량 : 145개소(도원 5개소 + 시군센터 140개소)

구분	합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개소	145	16	17	11	14
금액(천원)	6,280,000	764,600	681,600	452,000	698,400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부산
14	21	22	18	3	1
644,800	1,001,800	953,000	751,200	100,000	14,000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	2	1	1	1	1
42,000	38,000	24,000	23,000	40,000	51,600

□ 사업내용

- 시군농업기술센터 내 가축분뇨 퇴액비 분석 인프라 구축 및 운영
 - * 분석성분 : 부숙도 · 수분 · 염분 · 구리 · 아연
- 분석실 운영 지원 및 분석시료 전처리 등의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 퇴액비 농경지 적정사용을 위한 비료시비처방서 발급 및 살포지도
- 지원범위
 - 가축분뇨 퇴액비 분석을 위한 부숙도측정기, 항온기, 건조기, 환기후드(내산성), 가열기(다공성), 시료보관 냉동고 등 분석 기반조성 및 분석시약·키트 등 소모성 재료
 - 가축분뇨 퇴액비 분석 전처리 및 업무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 *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 기술지원분야 사업운영 전반에 효율적 활용 가능

□ 운영요령

- (시료채취) 농업인이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등재된 방법(원추4분법 등)을 활용하여 채취

- * 퇴비더미에서 덜 부숙된 부분중 15개소에서 채취하여 2kg 제조 → 원추 4분법으로 2회이상 반복하여 500g 채취하여 시료봉투에 담아서 송부

○ (시료분석)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추진하고, 결과를 우편 등으로 농업인에게 통지

- * 분석방법은 비료의 품질검사 및 시료채취 기준에 준함
- * 분석이 완료된 시료는 장소가 확보될 때까지 보관하지 아니함('21년 구매요망)

○ 가축분뇨 의무검사 기준

구분	배출시설의 규모 및 종류	측정건수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퇴비화시설	허가(가분법 시행령 별표 1)	의무검정 2회
	신고(가분법 시행령 별표 2)	의무검정 1회

○ 가축분뇨 의무검사 항목 · 적합기준 및 시행일자

종류	항목	적합기준	시행일
모든 가축	부숙도	1,500m ² 이상/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20.3.25
		1,500m ² 미만/부숙중기	
돼지	함수율	함수율 70% 이하	'15.3.25
	구리	500mg/kg 이하	
	아연	1,200mg/kg 이하	
소 · 젖소	염분	2.5% 이하	

○ (결과보관) 결과를 통보받은 농업인은 3년 동안 성적서 보관

○ (퇴비반출) 의무검사 결과가 축사내 모든 퇴비의 적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퇴비 반출시 자체 관능검사등의 실시등을 통해 부숙도를 측정할 것

- * 부숙도 의무 검사와 별개로 미부숙 퇴비 반출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 * 출하예정 퇴비의 부숙도가 의심될 경우 시군센터 재검사 가능

□ 기대효과

- 적절하게 부숙된 퇴액비 농경지 투입으로 축산분뇨 원인 오염물질 저감
- 가축분뇨 부숙을 통한 냄새 저감으로 축산악취 민원 발생건수 감소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운영계획 : 2020.2.28.까지
- 결과보고 : 2020.12.15.까지

■ 2021년도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사업

병해충 예찰 · 방제 기술지원(총괄)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농업연구관 서수정	063-238-1045
		농촌지도사 이우일	063-238-1046
		농촌지도관 채의석	063-238-1053
		농업연구사 홍성준	063-238-1063
		농촌지도관 이희용	063-238-1048
		농촌지도사 이경재	063-238-1049

□ 목 적

- 예찰체계에 의한 정기·수시예찰 강화로 신속한 방제 기술지도
- 병해충 종합진단실 장비보강으로 현장의 신속진단 서비스 강화
- 병해충 예찰회의 및 전문가 의견 반영 정확한 발생정보 발표
- 식물방역법에 따른 신속한 병해충 예찰·방제체계 구축

□ 추진방향

- 병해충 예찰 및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정확한 정보제공
- 농작물 병해충 방제 업무 추진체계 조기 정착
-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공급을 위한 병해충 적기 방제 기술지원
- 돌발·외래병해충 효율적 방제를 위한 공적 방제 지원체계 확립

□ 근거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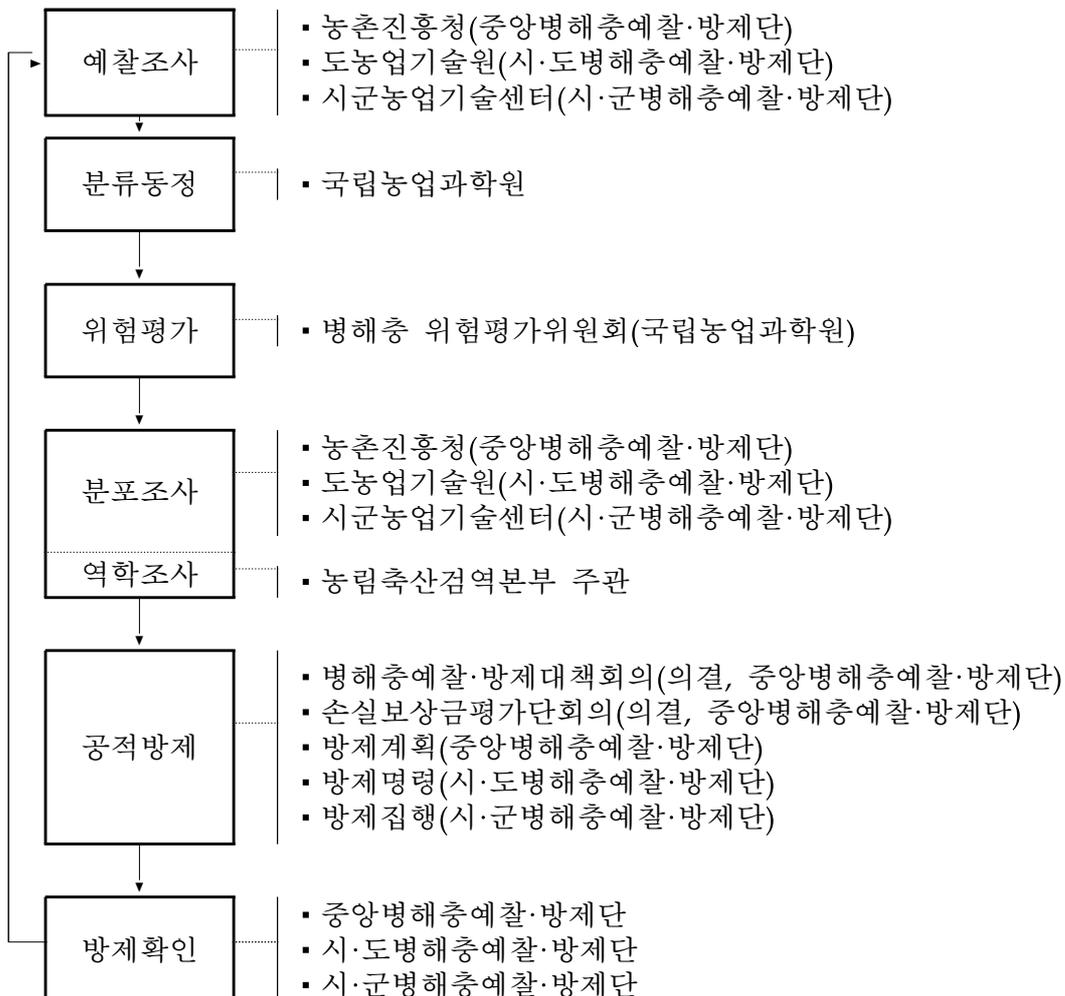
- 식물방역법 제30조의2~제39조(예찰 및 방제), 제43조(포상금)
-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의2~제5조(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운영 등)
- 농촌진흥법 제2조 제3호(예찰 및 방제정보 확산)
-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농진청고시 제2017-36호)
- 농촌진흥청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농진청 고시 제2017-37호)
- 농촌진흥청 식물방제관 운영에 관한 규정(농진청고시 제2017-38호)
- 농작물 병해충 위험평가에 관한 규정(농진청고시 제2017-39호)
-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조사에 관한 규정(농진청훈령 제1127호)

□ 추진계획

○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지원 체계 확립

- 도, 시·군별 지역에 맞는 예찰·방제단 조기 구성 운영 : 165개소
 - * 「식물방역법」 제31조의4 :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군에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두며,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종사자를 식물방제관으로 지정운영 : 1,000명
 - 예찰·방제단 업무, 병해충 분포조사, 역학조사 지원 등
-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NCPMS) 보완 및 맞춤 정보 제공
 - 병해충 예찰, 관찰포 조사결과 입력, 자료 분석으로 발생 예측
 - 수량감소 예측 및 병해충 판독 기능보완 등 시스템 보강
 - * 병해충 사진, 잡초 등 DB 추가 보완 및 사용자 매뉴얼 제작 보급

<병해충 예찰·방제 체계>



- * 예찰 및 방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은 농촌지원국 재해대응과에서 병해충 업무를 총괄
- * 도원 및 시군 센터에서는 병해충 담당부서를 두고 업무를 총괄하며, 작물별 담당자가 예찰·조사 및 방제 실시

○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협력지원

- 시·도 및 시·군병해충 예찰·방제단 조례제정 및 구성·운영
- 행정 등과 연계한 예찰·방제 기술지원 운영으로 공동 대응체계 구축
 - 병해충예찰 및 방제업무 기관별 역할 분담 등 지원체계 구축
- 공동방제 추진 시 행정,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력 기술지원
 - 공동방제 시 예찰·방제 기술지원 및 적기 방제 추진
 - 행정, 지도 공동 협력으로 효율성 높은 병해충 방제추진

○ 병해충 업무 담당자 업무능력 배양

- 병해충 담당자는 인사이동을 지양하여 업무추진 전문능력 배양
- 예찰 전담 보조원(무기 계약직 등)을 확보하여 사업기간 중 활용
- 농업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신규담당자 단계별 교육 추진
- 병해충 담당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인센티브 부여 방안 강구

○ 병해충 업무 담당자 및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홍보

- 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위한 식물방제관 전문교육 추진
 - '21년 「병해충 진단」 전문교육 이수 권장
- 주요시기별 병해충방제 리플릿 등 홍보자료 제작 지원 : 3종
-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시 병해충 방제, NCPMS 활용 등 중점 교육 : 1~2월

○ 병해충 정밀 예찰·진단 및 적기방제를 위한 자료·정보 제공

- 예찰포·진단실 운영 144개소, 관찰포 2,120개소, 발생정보 제공 15회
- 한·중 비래해충 협력사업 추진 : 2018 ~ 2022(5년간)
 - 중국에 예찰포 설치, 비래해충 발생조사 및 국내 방제대책 수립

○ 월동 애멸구 보독충률 조사

- 조사시기 : 매년 4월 16일 1회
- 시군센터는 애멸구 예찰 및 채집결과를 농업기술원으로 송부
- 도농업기술원은 시군별 애멸구 발생밀도 및 보독충률을 조사하여 농촌진흥청 및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방제대책 계획 수립

○ 비래해충 예찰

- 예찰시기 : 7월 상순 ~ 8월 하순
- 예찰요령

주관	예찰활동
중앙	- 1차 : 최초 비래일 20일후부터 비래지역 중심 임의로 지역선정 밀도조사 - 2차 : 8월 중하순 다 비래지역 중심 임의로 밀도조사
도원	- 1차 : 최초 비래일로부터 20일후 비래지역 중심 밀도조사 - 2차 : 6~7월중 최다비래일로 부터 20일후 다비래 지역 중심 조사 - 3, 4차 : 8월 중하순에 도내 전 지역 대상 밀도조사
시군	- 최초비래일 20일후부터 수시로 예찰 - 피해 우려 시 예찰반 편성 취약지 중심 추적 예찰 및 방제통보

- * 중앙예찰시 가급적 도원과 시군의 협조를 받아 합동예찰
- * 다 비래일 : 유아등에서 1일 유살량 10마리 이상 시(연속 누계 유살량이 20마리 이상 시는 그중 가장 많이 유살된 날)
- * 최다비래일 : 6~7월중 유아등에서 가장 많이 비래한 날
- 시기별 방제를 요하는 벼멸구, 흰등멸구 밀도기준(마리/20주)

구 분		밀도기준(마리/20주)			
		7월 하순~8월 상순	8월 중순	8월 하순	9월 상·중순
벼멸구	조 생 종	20	100	400	-
	중만생종	15	50(단시형 20)	100(단시형 40)	400
흰등멸구		100	400	400	400

○ 주요시기 현장 예찰 강화 및 벼 병해충 방제기술 체계 확립

- 비래해충 등 예찰 강화로 발생예측 및 적기 방제 기술지원
- 지역 실정에 맞는 방제체계 확립
 - 법씨소독 + 육묘상자 처리 + 본논(기본·보완방제)
 - * 방제의 생력화를 위해 공동방제 지원확대(농협, 영농법인 등)

○ 돌발병해충에 의한 피해 발생 우려지역 공동방제 추진

- 돌발병해충 사전방제를 위한 방제비 지원 : 9,390백만원
- * 검역병해충, 돌발병해충(벼, 과수, 채소 등) 사전방제
- 지역별 병해충 발생예측에 따라 사전·사후 공동 방제비 지원

○ 새로 발생되어 피해 우려가 높은 병해충 공적방제 추진

- 문제 병해충 발생상황 조기 파악과 신속한 방제정보 제공
- 검역대상 병해충 발생시 유관기관과 연계 확산방지에 주력
- * 방제대상 : 과수화상병, 자두곰보병, 과수가지검은마름병, 씨스트선충류 등
- 검역병해충 공적 방제 추진 및 손실보상 : 9,588백만원

○ 돌발·외래병해충 예찰 및 분포조사

- 식물방역법 제31조의5(분포조사)에 따라 필요시 분포조사 실시
- 조사대상 : 돌발병해충, 외래(검역)병해충
- 조사시기 : 연중(병해충별 주요 발생시기 연 1~4회)
- * 돌발해충 월동난 조사(3월), 돌발해충 성충 발생조사(7월)
- 조 사 자 : 시·군 센터 해당 작목 담당 또는 유관기관 협조 운영
- ※ 상시예찰 중 외래병해충 발견 시 즉시 보고

○ 병해충 임상진단 의뢰

- 지역에서 진단이 불확실한 병해충은 도원 경유 중앙에 임상진단 의뢰
- 식물표본을 의뢰서식과 동봉하여 농과원 작물보호과로 송부

○ 농약안전사용 교육 확대로 안전농산물 생산 기술 확산

-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시 농약안전사용 중점 교육

병해충 진단실(예찰포) 운영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농업연구관 서수정	063-238-1045
		농촌지도사 이우일	063-238-1046

□ 목 적

- 병해충 예찰포 운영을 통해 병해충 발생 예측 및 방제정보 제공
- 병해충 적기방제로 농작물 피해최소화 및 쌀 안정생산 추진
- 시군센터의 병해충 진단실을 지역의 식물 종합병원으로 활용
- 종합진단실 운영에 의한 신속한 진단·처방으로 농업인 애로기술 해결

□ 추진방향

- 벼 병해충 예찰포 설치 운영 및 장비를 이용한 정밀예찰 추진
-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과 분석으로 발생전망 예측
- 병해충 예찰·진단 및 처방에 충분한 기술지원 체계 구축
- 담당자 전문능력 배양으로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품질 향상

□ 사업량 : 146개소(도원 9, 시군센터 137)

(단위 : 개소, 백만원)

시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특·광역시
사업량	146	18	14	11	15	14	22	23	18	5	6
사업비	2,728	346	258	200	308	274	434	420	330	46	112

* 특광역시 : 부산, 광주, 울산, 세종 각 1개소, 인천 2개소

□ 사업규모

- 사 업 비 : 2,728백만원 (개소당 18백만원)
 - * 무인공중포충망 설치 시·군 40개소(22백만원), 제주 5개소(9.2백만원)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규모 : 벼 예찰포 20a/개소, 지역 실정에 알맞은 진단실 설치 운영

□ 사업대상

- 도 농업기술원 : 시·군 기술지원, 예찰포·진단실 운영(해당 시도) 등
- 시·군 농업기술센터 : 예찰포·진단실 운영 등
 - * 예찰포·진단실 운영비(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 운영요령

【벼 예찰포】

- 사업규모 : 개소당 20a 규모의 예찰포장 설치 운영
- 사업내용 및 운영요령
 - 예찰포 설치 : 무방제(다비)구와 표준방제(보비)구로 구분 관리
 - 무방제(다비)구 : 일반계 2품종 이상 재배하되 제1품종은 병해충에 약한 품종(호평벼, 일미벼, 일품벼, 동진1호, 청담벼, 낙동벼, 대산벼 등), 제2품종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품종을 5년 이상 고정 재배
 - * 병해충 조사는 2품종만 조사하여 전산 입력하고, 기타 품종은 달관조사 및 자체 자료로 활용
 - 표준방제(보비)구 : 무방제(다비)구와 동일한 2품종 이상 재배
 - * 외래 벼 품종 재배 사양
 - ※ 표준방제구는 지역 실정에 맞게 친환경방제구 등으로 변경 활용 가능
 - 예찰장비 설치 : 포자채집기, 유아등, 공중포충망 등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요강」에 따라 설치
 - 포자채집기 : 도열병 분생포자 조사(6.11.~7.31.), 매일 NCPMS 입력
 - 유아등 : 9종 해충 유살량 조사(5.1.~8.31.), 매일 NCPMS 입력
 - 병해충 발생상황 조사·입력
 - 포장 조사 : 22종(병 10, 해충 12), 10일 간격으로 조사
 - 장비 활용조사 : 도열병 분생포자, 유아등, 공중포충망 등
 - * 조사결과는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NCPMS)에 입력 필수
 - 공중포충망 조사 : 50개소
 - 조사해충 : 애멸구, 벼멸구, 흰등멸구, 흑명나방, 멸강나방 등 비래해충
 - 조사지역 : 50개시·군
 - * 경기(8), 강원(2), 충북(3), 충남(15), 전북(5), 전남(10), 경북(3), 경남(3), 제주(1)

- 조사기간 : 5. 1 ~ 7. 31(3개월)
- 조사방법 : 매주 목요일 10:00경에 1주일간 공중포충망에 채집된 해충을 분류하여 조사(목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금요일 조사)
- * 비래시기 및 기상을 고려하여 공중포충망 주요 채집시기 매일 입력 가능
- * 무인자동공중포충망 설치 시군은 매일조사

<공중포충망 조사양식>

조사일	조사해충(마리수)						특기사항
	애멸구	벼멸구	흰등멸구	흑명나방	멸강나방	열대거세미나방	
○월 ○일							
○월 ○일							

○ 예찰포장 설치 및 관리요령

- 예찰포장은 무방제(다비)구, 표준방제(보비)구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논물이 방제구별로 이동하지 않도록 설치
- 예찰포 시비량은 각 구별 면적을 정확히 측정하고 토양검정 결과를 참고하여 기준량을 결정하되 무방제(다비)구에는 농가포장 기준량 중에서 질소 비료는 2배로 시용
- 예찰포 토양은 3년 1회 무방제(다비)구, 표준방제(보비)구별로 정밀 분석하여 시비관리
- 전년도에 병해충 미 발생 또는 주위 포장보다 경미하게 발생하였을 때는 포장상태를 감안하여 시비량 조절
- * 주변 농가포장보다 먼저 병해충 예찰이 가능하도록 관리(포장 및 논두렁 잡초는 수시로 제거)

○ 모내기 작업

- 1모작 : 관내 인근 농가의 모내기 시작 시기에 모내기 실시
- 2모작 : 70% 이상 2모작 재배지역은 2모작 모내기 시작 시기에 모내기

○ 약제 살포

- 무방제(다비)구 : 살균, 살충제 등 약제방제를 하지 않음
- 표준방제(보비)구 : 지역의 방제 모형에 준하여 방제
- * 친환경방제구의 경우 지역의 친환경 방제 모형에 준하여 방제

○ 전기 시설물 안전관리

- 전류차단기, 자동점멸기 등을 전기 안전물을 설치하여 내방농업인 위험시설 사전 고지 및 안전사고 방지
- 정기적인 전기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전기시설물에 위험표시판 수립으로 안전 사고 예방

○ 교육

- 병해충 담당자 전문교육 및 현장 진단 교육(도농업기술원 대상)
- * 시·군 센터는 도농업기술원 주관 교육(연1~2회 이상), 교육 자료 및 강사 지원(농촌진흥청)

○ 기 타

- 예찰 일용 인부임 활용 시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예찰결과가 해당 지역의 병해충 예방 및 방제에 직접 활용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 생산에 노력

○ 벼 병해충 예찰포 무방제(다비)구 조사대상 및 시기(병 10종, 해충 12종)

- 조사대상 및 시기(병)

병해충별	조사내용	조사기간	조 사 일	조사횟수	비 고	
병	잎도열병	병무늬면적률	6. 20~7. 30	매 순	5회	조사직후 전산입력
	이삭도열병	병든이삭률	8. 30~9. 20	조생종 8.30 중생종 9.10 만생종 9.20	1회 (숙기별)	"
	잎집무늬마름병	병든줄기율	7. 10~8. 20	매 순	5회	"
	흰잎마름병	병무늬면적률	7. 10~8. 30	"	6회	"
	세균벼알마름병	병든이삭률	8. 20~9. 10	조생종 8.10 중생종 8.30 만생종 9.10	1회 (숙기별)	"
	줄무늬잎마름병	병든줄기율	7. 10~8. 20	매 순	5회	"
	검은줄오갈병	"	"	"	5회	"
	오갈병	"	"	"	5회	"
	이삭누룩병	병든이삭률	8. 30~9. 20	조생종 8.30 중생종 9.10 만생종 9.20	1회 (숙기별)	"
	깨씨무늬병	병무늬면적률	8. 30~9. 20	"	"	"

- 조사대상 및 시기(해충)

병해충별		조사내용	조사기간	조 사 일	조사횟수	비 고
해 충	벼잎벌레	피해잎률	6. 20~7. 20	매 순	4회	”
	벼잎굴파리류	”	”	”	4회	”
	벼줄기굴파리	피해줄기율	”	”	4회	”
	애멸구	20 포기당 마리수	”	”	4회	”
	끝동매미충	”	”	”	4회	”
	벼멸구	”	7. 10~9. 20	”	8회	”
	흰등멸구	”	”	”	8회	”
	벼물바구미	”	6. 20~7. 20	”	4회	”
	흑명나방	피해잎률	7. 20~8. 30	”	5회	”
	멸강나방	”	6. 20~9. 20	”	10회	”
	떡노린재	20 포기당 마리수	6. 30~8. 30	”	7회	”
	이화명나방	피해줄기율	6. 20~9. 10	발 아 최성일후	3회	”
				1화기 (30일) (45일)	7. 10 7. 20	
			2화기 (25일)	9. 10		

- 예찰장비에 의한 조사항목 및 조사시기

조사항목		조사기간	조사일	조사횟수	비 고
포자채집기	포자 비산량	6. 11~7. 31	매 일	51회	조사직후 전산입력
유아등	10종 해충 유살량 (열대거세미나 방포함)	5. 1~8. 31	”	123회	”

【병해충 진단실】

-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등 예찰사업과 연계하여 농업인의 농작물의 병해충관련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식물종합병원으로 육성
- 병해충 업무 담당자 전문교육 및 농업인에 대한 중점교육 추진
 - 새해농업인실용교육(1~2월) 등을 통한 병해충 방제, NCPMS 활용교육
- 진단 장비 및 진단 이동차량 등 기 지원된 장비 최대한 활용
 - 병해충진단장비 : 포자채집기, 공중포충망, 디지털 현미경 등 병해충 예찰 및 진단에 필요한 장비
 - 순회 예찰 차량 : 병해충 업무추진(이동병원 역할)
 - 기타 예찰장비 : 원예작물 바이러스 진단키트, 과수 페로몬 트랩 등
- 내방 농업인 및 영농현장의 문제점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방
 - 현장방문 시는 예찰 및 이동 진단장비 등을 적극 활용
- 지역에서 진단이 어려운 병해충이 발생한 경우 중앙에 진단 의뢰
 - 병해충 표본을 의뢰서식(양식1)과 함께 국립농업과학원 작물보호과로 송부

□ 행정사항

- 예찰결과는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http://ncpms.rda.go.kr>)」에 조사 직후에 입력, 돌발병해충 발생 시 우선으로 우선 보고
- 병해충 진단실 운영 결과보고 : 2021.11.30일까지(양식 2)
- 수시보고 : 병해충 발생상황 보고(예찰포, 진단실 미설치 시군 포함)
 - * 병해충 발생 특이상황 등

[양식 1]

■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병해충 정밀검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 고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고 내용	병해충 구분	[] 병 [] 해충 [] 잡초
	추정 병해충명	
	발견 일자	년 월 일
	발생(발견)지역 (주소)	
	재배자 성명	
	발생 농작물 (품종 등)	
	피해증상 및 발생상황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병해충 발생 사진 및 시료를 첨부하여 정밀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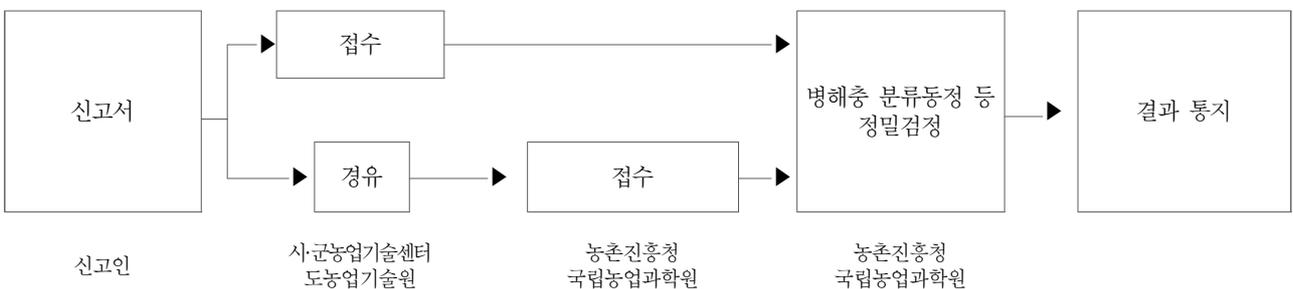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국립농업과학원장 귀하

첨부	1. 농작물 피해 증상 및 신고 병해충 사진 2. 농작물 피해 증상 시료 및 신고 병해충 표본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 80g/㎡]

병해충 관찰포 운영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재해대응과, 기술보급과, 식량산업기술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농촌지도관 채의석	063-238-1053
		농촌지도사 이우일	063-238-1046
		농업연구사 홍성준	063-238-1049
	기술보급과	농촌지도관 고인배	063-238-0976
		농촌지도관 김기형	063-238-0981
		농촌지도사 박환규	063-238-0977
식량산업기술팀	농촌지도관 강석주	063-238-1496	
	농촌지도사 노석원	063-238-1497	

□ 목 적

- 벼, 밭작물, 채소, 과수 등 작목별 관찰포를 주산단지 중심으로 선정하고 주기적으로 농작물 병해충 발생상황에 대한 정확한 예찰을 추진하고 적기 방제대책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

□ 추진방향

- 각 시군 주산단지 중심으로 일반 포장이나 농업기술센터 보유포장 중 적합한 곳을 관찰포로 선정하여 시기별로 병해충 발생 상황을 조사하여 발생정보 발표 및 방제대책에 활용

□ 사업량 : 2,120개소

- 작목별 설치계획 : 벼 690, 밭작물 204, 채소 671, 과수 555

* 벼, 밭작물(보리, 콩), 채소(고랭지무·배추, 가을무·배추, 고추, 마늘, 양파), 과수(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사업량	2,120개소	3	7	15	15	8	16	13
사업비	636,000	900	2,100	4,500	4,500	2,400	4,800	3,900

구 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량	170	219	173	247	250	358	355	247	24
사업비	51,000	65,700	51,900	74,100	75,000	107,400	106,500	74,100	7,200

□ 사업규모

- 사업비 : 636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개소당 30만원
- 규 모 : 개소당 10~50a내외(시군단위 주산단지 포장)

□ 사업대상

-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농가 포장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 *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운영비(농가보상비, 재료비, 표찰 등) 등 지원

□ 운영요령

【벼】

- 사업량 : 690개소

구 분	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설 치 시군수	136	16	14	9	14	13	21	22	18	1	1	3	1	1	1	1
관찰포 개소수	690	75	45	42	99	87	126	96	81	3	3	15	6	3	6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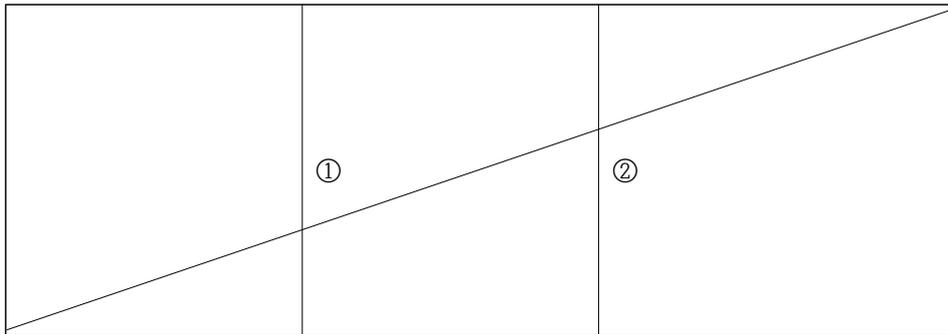
○ 사업내용

- 벼 생육조사와 동일한 포장을 벼 병해충 관찰포로 활용, 병해충 발생조사
- 조사결과 자체 활용 및 전산 입력, 전국 발생상황 추정 자료로 활용

○ 세부 추진요령

- 관찰포 지정 기준 : 시군별 벼 식부면적에 따라 3~9개소 설치
 - * 5,000ha미만(3개소), 5,001~11,000ha(6개소), 11,001ha이상(9개소)
 - 산간지, 중간지, 평야지 등 지대별 면적에 따라 분산하여 지정하되 조사 필지는 최소 면적이 1,000㎡ 이상 되는 필지를 선정
 - * 재배면적이 15,000ha이고 산간지 2,000ha, 중간지 5,000ha, 평야지가 8,000ha인 경우, 관찰포는 산간지 1, 중간지 3, 평야지 5개소 설치
- 병해충 조사지점 선정
 - 조사필지를 길이방향으로 3등분 한 선과 길이방향으로 대각선을 그어 교차되는 2개 지점을 조사 기준점으로 선정
 - 조사기준 지점에 표시 막대를 설치하고 좌우 10포기를 조사지점으로 하여 연중 동일 지점 동일 포기에서 조사

<조사지점 선정방법>



- 조사 시기 및 횟수 : 6~9월(매월 1, 16일 총 8회 조사)
- 조사대상 병해충 : 22종(병 10, 해충 12)

병	잎도열병, 이삭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흰잎마름병, 세균벼알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검은줄오갈병, 오갈병, 깨씨무늬병, 이삭누룩병
해충	벼잎벌레, 벼잎굴파리, 벼줄기굴파리, 애멸구, 끝동매미충, 흰등멸구, 벼멸구, 벼물바구미, 흑명나방, 멸강나방, 먹노린재, 이화명나방

- 조사결과 활용 : 조사결과는 지역별 병해충 방제대책 자료로 활용
 - * 조사결과는 조사당일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에 입력
 - * 병해충 발생이 극소일 경우 발생면적을 그 비율에 맞게 조정하여 입력
- 기타사항 : 농작물 병해충 예찰요강 및 생육조사요령 참고

<벼 병해충 관찰포 조사대상 및 시기>

병해충별		조사내용	조사기간	조 사 일	조사횟수	비 고
병	잎도열병	병무늬면적률	6. 16~8. 1	매 월 (1, 16일)	4회	조사직후 전산입력
	이삭도열병	병든이삭률	8. 16~9. 16	”	3회	”
	잎집무늬마름병	병든줄기율	6. 16~9. 16	”	7회	”
	흰잎마름병	발병면적률	7. 16~9. 16	”	5회	”
	세균벼알마름병	병든이삭률	8. 16~9. 16	”	3회	”
	줄무늬잎마름병	병든줄기율	6. 16~8. 16	”	5회	”
	검은줄오갈병	”	”	”	5회	”
	오갈병	”	”	”	5회	”
	이삭누룩병	병든이삭률	8. 16~9.16	”	3회	”
	깨씨무늬병	병무늬면적률	7. 16~9. 16	”	5회	”
해충	벼잎벌레	피해잎률	6. 1~7. 16	”	3회	”
	벼잎굴파리류	”	”	”	3회	”
	벼줄기굴파리	피해줄기율	”	”	3회	”
	애멸구	20 포기당 마리수	6. 16~7. 16	”	3회	”
	끝동매미충	”	”	”	3회	”
	벼멸구	”	7. 1~9. 16	”	6회	”
	흰등멸구	”	”	”	6회	”
	벼물바구미	”	6. 1~8. 1	”	5회	”
	흑명나방	피해잎률	6. 16~9. 16	”	7회	”
	멸강나방	”	”	”	7회	”
	먹노린재	20 포기당 마리수	6. 1~9. 16	”	8회	”
	이화명나방	피해줄기율	6.16~9.16	”	7회	”

【발작물 및 원예작물】

○ 사업량 : 1,430개소

작 목	시 기	시·군 수	관찰포 개소수	설 치 구 분
13개작목	-	406	1,430	
보리	5~6월	55	110	주산지 시군당 2개소
콩	7~9월	47	94	"
마늘	3~5월(6회)	33	66	주산지 시군당 2개소
양파		23	46	"
고추	6~9월(8회)	71	355	주산지 시군당 5개소
고랭지배추	6~9월(6회)	5	50	주산지 시군당 10개소
고랭지무		4	40	"
가을배추	9~10월(5회)	29	58	주산지 시군당 2개소
가을무		28	56	"
사과	4~8월	25	125	주산지 시군당 5개소
배	4~8월	22	110	"
복숭아	4~6월	21	105	"
포도	5~7월	20	100	"
단감	5~7월	19	95	"
감귤	2~11월	4	20	"

○ 사업내용

- 농가포장에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설치, 발생상황 조사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병해충 발생상황을 정확히 조사하여 결과를 신속히 집계 분석한 후 방제대책 자료로 활용
- 관찰포 조사 일에 조사결과를 전산망을 이용하여 보고
- 농촌진흥청에서는 시군 조사결과를 취합하여 병해충 발생정보 발표·유관기관에 통보 및 병해충 발생자료로 활용

○ 관찰포 조사

-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 요강」 참고
- * NCPMS → 병해충정보 → 병해충발생정보에서 다운로드

□ 행정사항

- 조사결과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http://ncpms.rda.go.kr>)」 입력
 - 병해충 관찰포 선정결과 : 2021. 6. 28. 까지 ATIS 입력(양식 1)
 - 병해충 관찰포 운영결과 : 2021. 10. 31. 까지 ATIS 입력(양식 2)

[양식 1]

□ 병해충 관찰포 선정 결과(2021. 6. 25)

도, 시군	작목 (품종, ha)	포장주소 (읍면, 리동, 번지)	농가명 (핸드폰)

* 관찰포 농가현황은 기상재해나 병해충 사전모니터링 조사 자료로 활용 예정
이므로 선정된 농가에 사업취지 설명

□ 관찰포 병해충 조사 및 전산입력(조사일)

○ 조사결과는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http://ncpms.rda.go.kr>)」 을
이용하여 입력하고 돌발병해충 발생 시 우선으로 우선 보고

[양식 2]

□ 병해충 관찰포 운영 결과 (2021. 10. 29)

○ 병해충 관찰포 운영결과

도, 시군명	작목 (품종, ha)	작황 및 병해충 상황(요약)	집행실적(천원)		
			계	국 비	지방비

○ 관찰포 운영 우수사례

시군명	내 용

○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항 목	문 제 점	개 선 방 안

참고 **관찰포 작목별 대상시군**

○ 보리

도별	시군수	대 상 시 군
계	55	
충북	2	옥천, 영동
충남	5	서산, 논산, 부여, 예산, 태안
전북	10	군산, 익산, 완주, 임실, 남원, 순창, 정읍, 고창, 부안, 김제
전남	14	담양, 광양, 순천,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나주, 함평, 영광, 완도, 진도
경북	10	경주, 청도, 고령, 영천, 의성, 영덕, 포항, 울진, 경산, 칠곡
경남	14	진주, 의령, 함안, 창녕, 밀양, 마산, 통영, 거제, 고성, 사천, 하동, 산청, 거창, 합천

○ 콩

도별	시군수	대 상 시 군
계	47	
경기	7	여주, 화성, 양평, 포천, 이천, 연천, 파주
강원	5	홍천, 횡성, 영월, 정선, 원주
충북	6	청주, 보은, 충주, 제천, 단양, 괴산
충남	6	공주, 서산, 홍성, 예산, 태안, 보령
전북	6	익산, 정읍, 순창, 고창, 부안, 군산
전남	5	여수, 고흥, 보성, 장흥, 함평
경북	6	상주, 안동, 문경, 청도, 영덕, 예천
경남	4	진주, 의령, 밀양, 고성
제주	2	제주, 서귀포

○ 채소

구 분	마늘	양파	고추	고랭지배추	고랭지무	가을배추	가을무
계	33	23	71	5	4	29	28
경 기	-	-	화성, 이천, 양평	-	-	화성, 평택	화성
강 원	삼척(한지)	-	원주, 삼척, 홍천, 정선	강릉, 태백, 정선	강릉, 홍천, 정선	춘천, 영월, 평창	춘천, 영월, 평창
충 북	제천(한지), 증평(한지), 단양(한지)	-	청주, 증평, 옥천, 괴산, 단양	① (6.16부터 5.20) ② (7.16부터 6.20) ③ (8.16부터 7.20)	조사 시작 및 정식 조사 시작 및 정식 조사 시작 및 정식	청주	청주
충 남	태안(한지)	-	천안, 보령, 서천, 청양, 태안	-	-	보령, 아산, 서산, 홍성, 태안	보령, 아산, 서산, 태안
전 북	완주, 부안	부안	정읍, 완주, 무임고	-	-	정읍, 김제, 완주, 고부	정읍, 김제, 완주, 고부
전 남	여수, 고령, 함평, 신안	여수, 고령, 함평, 신안	여수, 나주, 함평, 신안	-	-	나주, 함평, 진안	나주, 함평, 진안
경 북	경주(한지), 영천(한지), 군위(한지), 의성(한지), 예천(한지)	김천, 영천, 군위, 청도, 예천	포항, 구미, 영천, 문성, 영양, 영동, 봉화	-	-	안동, 구미, 영덕	안동, 구미, 영덕
경 남	통영, 거창, 하동, 합천	거창, 함양, 합천	창녕, 거창	-	-	김해, 함안	김해, 함안
대구	달성	달성	-	-	-	-	-
광 주	-	-	-	-	-	광주	광주

※ 마늘은 한지형(11시군)과 난지형(23시군) 구분하여 조사

○ 과수

구 분	사 과	배	복숭아	포 도	단 감	감 귤	
계	25	23	21	19	19	4	
경 기	가 평 포 천	평택 안양 남양주	이천 천주	안성 화성	-	-	
강 원	춘천 원주	원주	원주 춘천	-	-	-	
충 북	충주 제천 영동	청주	음성 영동	옥천 천동	-	-	
충 남	예산 당진 아산	천안 아산 논산	공주	천안 보령	-	-	
전 북	정읍 무주	완주 고창 김제	전주 임실	남원 김제	-	-	
전 남	곡성 장성	나주	순창 천안	담양	천안 진안 담양 장성 구례 순창	-	
경 북	안동 영양 상주 경주 의령 청도	상주 주주	청주 경주 영의 김천	천안 천안 산주 경상	경주 경주	-	
경 남	거창 합천	진주 산하	진주 창녕	밀양 양창	창녕 진주 김창 밀양	진주 창녕 해령 양창	-
제 주	-	-	-	-	-	제주, 서귀포, 동부, 서부	
인 천	-	-	-	-	-	-	
광 주	-	-	-	-	광주	-	
대 전	-	-	-	대전	-	-	
울 산	-	울산	-	-	울산	-	
세 종	-	세종	세종	-	-	-	

농작물 병해충 방제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농촌지도관 이희용	063-238-1048
		농촌지도사 이경재	063-238-1049

□ 목 적

-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을 발생 전과 발생 후에 신속하게 방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수급에 기여
- 국내에 유입된 외래병해충을 긴급 방제하여 확산방지 및 피해 최소화

□ 근거법령

- 식물방역법 제30조의2~제39조(예찰 및 방제), 제43조(포상금)
-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농진청고시 제2017-36호)
- 농촌진흥청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농진청 고시 제2017-37호)
- 농촌진흥청 식물방제관 운영에 관한 규정(농진청고시 제2017-38호)

□ 사업내용

【병해충 방제 비용 지원】

- 사 업 비 : 9,390백만원
- 시행주체 :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
- 지원조건 : 자치단체경상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내용 : 검역병해충¹⁾이나 돌발병해충²⁾,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에 대한 방제 비용
 - 사전방제 : 병해충 특성상 사후방제 보다 사전방제 효과가 높은 병해충으로 최근 3년간 100ha이상 또는 해당 지역 재배면적의 5%이상 피해를 입었던 시·군·구(인접 시·군·구 포함)의 방제 비용

1) 식물방역법 제2조제5호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조의 검역병해충

2)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돌발적으로 발생되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토착 또는 외래병해충

* 사전방제 병해충 발생정보 확인은 NCPMS 또는 병해충 발생보고 공문

* 사업비 집행 잔액 발생시군은 다음년도 사업비 차등 배정

예) 줄무늬잎마름병(애멸구), 복숭아씨살이좀벌, 열대거세미나방, 돌발해충 등

* 돌발해충 방제사업 추진 시 산림부와 공동 예찰·방제단을 구성하여 방제

- 사후방제 : 당해 연도에 대상 병해충이 50ha이상 발생한 시·군·구(인접 시·군·구 포함 시 100ha)의 방제 비용

예) 벼멸구, 애멸구,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 등

* 당해 연도 돌발병해충 발생으로 추가 긴급방제 필요시 지원예산 검토

- 검역병해충 : 발생 면적에 상관없이 방제가 필요한 시·군·구의 방제 비용

예) 과수화상병, 과수가지검은마름병, 사탕무씨스트선충, 자두곰보병 등

○ 지원단가 :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추진

* 검역병해충과 적극 방제의 필요성이 있는 일부 병해충에 대해서는 위험도, 확산 정도를 고려하여 방제횟수, 면적, 지원단가 등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함.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집행>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는 병해충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병해충 발생에 따라 신속히 방제(재해 예방 및 대책마련)하도록 국고보조금을 지자체에서 사업 변경·집행 할 수 있다.

- 관련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농어업재해 대책법 제2조1호, 제3조, 제4조 제2항 제2호 * 농업재해(가뭄, 홍수, 병해충, 태풍 등)

【공적방제 손실보상 지원】

○ 사업비 : 9,588백만원

○ 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

○ 지원조건 : 직접수행 또는 지자체 보조(국비 100%)

○ 지원내용 : 검역병해충과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인정한 병해충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명령³⁾으로 손실을 받은 농가 등에 대한 보상

○ 지원단가 : 「농촌진흥청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농촌진흥청 고시)」에 따라 보상금 산출

3) 식물방역법 제36조의 방제명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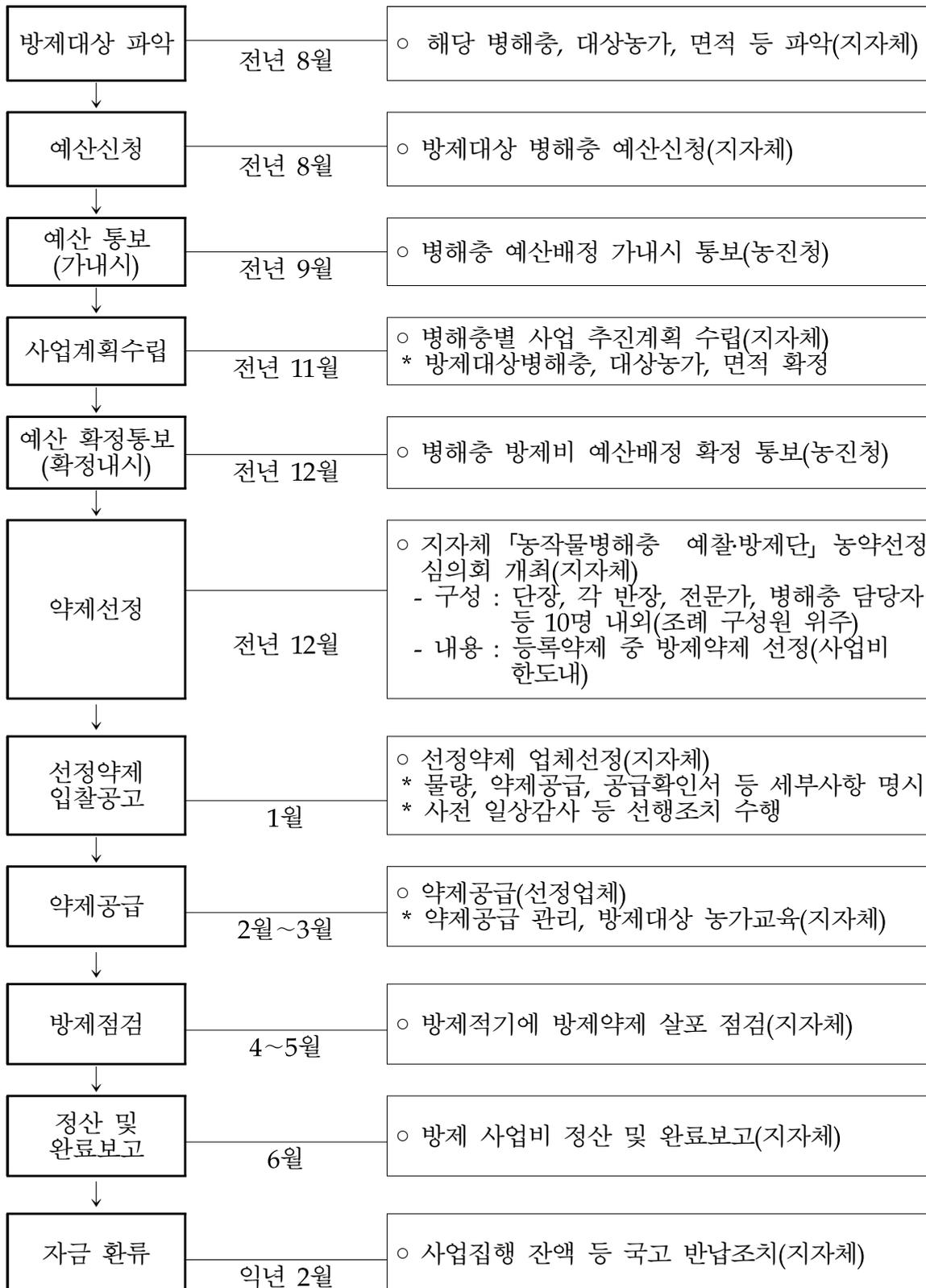
□ 추진요령

- (사업계획 수립) 방제대상 병해충, 대상농가, 방제면적, 방제시기 등 병해충 방제사업 계획 수립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방제대상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
 - * 본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하므로 경작면적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경영체 등록정보 현행화 지속 필요
- (약제선정) 시·군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협의회를 통해 방제대상 병해충의 약제를 결정함
 - * 협의회 구성(단장, 각 반장, 해당 작목 팀장, 농협조합장, 관련전문가 등 5~10명)
- (계약·입찰) 사업비에 따라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을 통한 업체선정
 - * 대상농가에게 약제 공급 및 확인서 작성 제출 하도록 계약서에 명시
- (교육·홍보) 대상농가 사전교육 실시 및 방제 홍보
- (사업추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및 지급, 방제사업 적기추진 및 사업비 적정사용 점검, 약제방제 확인서 등 점검

□ 추진체계

<p>농촌 진흥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해충 방제 기본계획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방제) 시·도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사업량 결정 및 사업대상자 선정 * '19년 8월의 병해충 방제비 사전조사 결과 근거 반영 - (사후방제) 발생면적, 확산 가능성 검토 등을 통하여 사업결정 ○ 중앙 병해충예찰·방제단의 대책회의를 통한 긴급·공적방제 여부 결정 및 긴급·공적방제계획 수립, 방제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실보상) 보상금평가회의를 통하여 보상금 확정·지급 ○ 병해충 방제를 위한 기술자문 및 현장 기술지원 ○ 시·도(시·군·구)의 사업추진 실태 점검 및 개선사항 도출 ○ 사업평가 등을 통하여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
<p>↓ ↑</p>	
<p>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시·도의 병해충 방제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방제) 최근 3년간의 피해사례, 예찰결과 등을 포함하는 시·도 단위 방제사업 계획서 제출 - (사후방제) 예찰정보, 기상여건 등을 감안한 예상 피해정도와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도 단위 방제사업 계획서 제출 ○ 외래병해충 등에 대한 긴급·공적방제명령 및 관리·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실보상) 손실보상 청구 내용 검토 후 지급 요청 ○ 사전 및 사후방제, 긴급·공적방제 결과 보고
<p>↓ ↑</p>	
<p>시·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시·군의 병해충 방제계획 수립 및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방제) 최근 3년간의 피해사례, 예찰결과 등을 포함하는 시·군 단위 방제사업 계획서 제출 - (사후방제) 예찰 결과 병해충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을 경우 예상 피해정도를 포함하는 방제사업 신청서 제출 ○ 사전·사후방제 집행, 긴급·공적방제 현장 확인과 관리·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실보상) 손실규모 파악 등을 통한 손실보상청구서 제출 ○ 사전 및 사후방제, 긴급·공적방제 결과 보고

□ 추진체계(예시, 과수화상병)



* 방제대상병해충별 방제적기를 고려하여 추진일정 조정가능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21년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 계획서 제출(2021.3.31.까지)
 - 계획서는 <양식 1>을 활용
- '21년 병해충 사후방제비는 돌발병해충 발생시 신청(수시)
 - 방제비 신청은 <양식 1>, <양식 2>, <양식 3>을 활용
- 긴급·공적방제 후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손실보상 청구서와 「농촌진흥청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농촌진흥청 고시)」의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의 방제이행확인서 등 제출(방제 완료 후 30일 이내)
- '21년 병해충 사전·사후방제 결과 보고(2021.11.9.까지)
 - 결과 보고는 <양식 4> 활용
- '22년 사전방제 사업량 수요조사 결과 제출(2021.8.10.까지)
 - 최근 3년간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로 대상병해충에 대한 '22년 방제대상 사전방제비 신청, <양식 1> 활용

[양식 1]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사업계획(○○ 도)

(단위 : 호,ha,천원)

시군명	방제대상면적		방제소요예산					대상병해충
			계	국고	지방비			
	농가수	면적			계	도비	시군비	
계								

* 대상 병해충별 작성(예, 과수화상병,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등)

[양식 2]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신청서						
신청기관	도 [○○시, ○○시, ○○군, ○○군]					
발생상황	병해충명					
	발생지역					
	발생면적 (ha)	합 계	○○시	○○시	○○군	○○군
소요액	총사업비	백만원[○○ha×○○천원/ha]				
	부담구분	국비 ○○백만원, 도비 ○○백만원, 시군비 ○○백만원				
사용약제						
원인 및 전망						
방제방법						
붙임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 세부계획서 1부.					
<p>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병해충 방제사업비(국고)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농촌진흥청장 귀하</p>						

[양식 3]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 세부계획서

1. 사업목적

○

2. 추진배경

○

3. 추진방향

○

4. 피해발생 현황

- 병해충명
- 주요 발생지역
- 피해양상
- 최근 3년간 발생면적

연 도	'○○	'○○	'○○
합 계			
병			
병			

5. 세부추진계획

- 방제대상 병해충
- 방제시기
- 방제약제
- 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 (ha)	사 업 비			
		총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합 계					
○○시					
○○군					

6.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

7. 기타사항

○

[양식 4]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사전) 사업 결과보고

시도	시군	작물·병해충	방제면적 (ha)	사 업 비(천원)			
				배정액	집행액	잔액	집행내역
합 계							

* 대상 병해충별 작성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사후) 사업 결과보고

시도	시군	작물·병해충	방제면적 (ha)	사 업 비(천원)			
				배정액	집행액	잔액	집행내역
합 계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농촌지도관 채의석	063-238-1045
		농촌지도사 이우일	063-238-1046

□ 목 적

- 외래·검역병해충 등 확산방지를 위한 적기 예찰·방제 체계 구축
- 외래병해충 신규 유입 시 중앙-지방 연계 신속대응 및 정보공유
- 병해충 전문인력 및 장비 활용을 통한 현장중심 예찰·방제체계 강화

□ 추진방향

- 국가관리 병해충(외래·검역 등) 예찰·방제기술의 현장 조기 적용
- 국가관리 병해충의 상시 예찰 및 과학적 분석으로 발생예측 대응
 - * 국가관리병해충 디지털농업화 실현을 위한 발생·방제정보 수집 및 분석
- 병해충 진단 및 적기 방제기술 컨설팅 지원으로 현장애로 해결
 - * 병해충 종합진단실, 예찰포·관찰포 활용 정밀진단 및 발생상황 공유(NCPMS)
- 유관부처(기관) 및 중앙-지방 연계를 통한 국가 관리시스템 기반 마련
-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 홍보자료 작성 및 농업인 교육 확대

□ 근거법령

- 「식물방역법」 제31조의4(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등)
-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의3(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등)

□ 사업량 : 40개소

(단위 : 개소, 백만원)

시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특광역시
사업량	39	5	5	5	5	4	4	5	4	1	1

* 특광역시 : 부산, 인천

□ 사업 규모

- 사업비 : 3,600백만원(개소당 90백만원)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규모 : 40개소
 - * 국가관리 병해충 발생·우려 시군 등에 예찰·방제단 지원

□ 사업 대상

- 도 농업기술원 : 도 예찰·방제단 운영(시·군 기술지원, 인건비, 예찰·방제 장비 임차, 재료비, 운영비 등)
- 시·군 농업기술센터 : 시·군 예찰·방제단 운영(인건비, 예찰·방제 장비 임차, 재료비, 운영비 등)
 - * (공통) 인건비 : 40백만원(인력 2명 이상), 운영비 : 50백만원(임차료, 재료비 등)

□ 주요 사업내용 * 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과 연계추진

【시·도 예찰·방제단】

- 시·도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수립
- 병해충 상습발생 지자체 대상 도원-지자체 합동 예찰 추진
- 시군 발생 외래·검역병해충 예찰 및 현장방제 지도 점검
- 지역 검역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을 통한 예찰·방제정보 연계 및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 체계 고도화
- 시군 예찰·방제단 전문교육 및 현장 기술 지원
- 검역병해충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검역병해충 예찰·방제 정보 공유 및 중앙-지방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검역병해충에 대한 국가적 관리시스템 기반 마련

【시·군 예찰·방제단】

- 지역중심 주요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수립 및 운영체계 구축
- 국가관리(외래·검역) 병해충 및 주요 농작물병해충 예찰조사
 - * 검역병해충 발생확인 및 조기방제를 통한 확산방지를 위해 상시 예찰 필수
 - * 예찰·방제 전문인력은 병해충 발생 기간 동안 주 2회 이상 주요 농작물 재배 지역 및 병해충 발생 상습지역 예찰 등 주요 병해충에 대한 조기 예찰 추진
- 병해충 진단, 임시조치, 분포조사, 방제추진(방제대상확인, 방제현장 관리·감독, 손실보상금산정 등), 방제 효과확인 등 추진

- 농림지(농경지+산림지) 동시발생 돌발해충 합동예찰 및 공동방제 추진
- 검역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홍보자료 제작 및 교육추진
 - * 검역병해충 해당작목 농업인대상 예찰·방제교육 및 홍보 추진
- 외래·검역병해충 진단·분석을 위한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
 - * 지역 발생 검역병해충 정밀진단 및 방제효과 분석, 예찰포 및 관찰포 예찰 추진
- 국가관리병해충 및 주요 병해충 발생조사 결과 NCPMS 적기 입력
- 국가관리병해충 발생 시 ‘농작물병해충 위기대응 실무매뉴얼’(18.12.발행)에 따라 신속 대응 추진

□ 운영 요령

-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전문인력 채용 및 운용
 - (자격요건) 국가관리(외래·검역 등) 병해충 예찰 및 방제 관련 업무수행 및 기술보급 가능한 전문인력으로 시군 자체기준 설정 운영
 - * (예시) 농고, 농과대 졸업자(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선순위 부여), 농업 관련 자격증 소지자(기사, 기능사 등), 농업관련분야 근무경력자 등
 - (보수체계) 지자체별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인건비, 여비 등)
 - * 전문인력 채용계획 수립 시 인건비 총액을 40백만원 이상 적의 조정
 - (운영기간) 병해충 예찰·방제 가능 시기 중심 채용 운영
 - (전문교육) 중앙 및 도 단위 병해충 관련교육 이수
 - * 채용 후 중앙·도 단위 관련교육 참여 및 자체교육 추진 실시
-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비 집행요령
 - (임차료) 예찰·진단장비, 긴급 방제장비 및 예찰·방제용 차량 임대 등 지자체 여건에 맞는 장비 임차 등
 - * 예찰·진단 및 긴급 방제장비 : 방제기, 무인항공기 등 지자체 병해충 발생 여건에 적합한 장비
 - * 예찰·방제용 차량 : 긴급방제장비 운반 및 예찰·방제인력 탑승 가능 차량
 - (재료비) 과수화상병 진단키트, 예찰용 페로몬, 주요 바이러스(토마토퇴록바이러스, 사탕무황화바이러스, 순무황화모자이크바이러스 등) 진단용 시약 구입, 새로운 병해충(외래·검역병해충) 긴급 방제용 약제 구입비 등
 - (운영비) 회의·행사·교육 운영비, 임차차량 유류비, 사무관리비(예찰·방제복 구입, 홍보물 제작 등) 등

□ 행정 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운영계획 수립(ATIS 양식 활용) : ATIS 등록(2021.3.31.까지)
- 운영결과 보고(ATIS 양식 활용) : ATIS 등록(2021.11.20.까지)

병해충 예찰 · 발생정보 발표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농업연구관 서수정	063-238-1045
		농촌지도사 이우일	063-238-1046
		농촌지도관 채의석	063-238-1053
		농업연구사 홍성준	063-238-1063

□ 추진방향

- 농작물 병해충 정밀 예찰을 통한 발생 조기에측 및 발생정보 제공
- 병해충 발생정보에 따른 적기 방제 추진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

□ 근거법령

- 식물방역법 제33조(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 제34조(보고의무)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7(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 농작물 병해충 예찰 · 방제에 관한 규정(농진청고시 제2017-36호)

□ 사업량

- 병해충 예찰을 통한 발생정보 발표(제공) : 15회
 - *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는 지역여건에 알맞은 정보 제공

□ 추진요령

- 농작물 병해충 예찰회의 개최 및 정보발표
 - 시기 : 6~8월(1회), 1~5월·9~12월(특별 상황발생시 개최)
 - 병해충 발생증가로 예찰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찰회의를 소집 운영하고 긴급 발생 정보를 발표
 - * 병해충 발생이 거의 없을 경우 예찰위원장이 인정할 때 예찰회의 생략 가능
 - 각 도에서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시기와 횟수를 조정하여 예찰회의 운영
 - 참석대상(예찰위원 : 23명)
 - 농식품부, 학계, 기상대, 농협중앙회, 한국작물보호협회, 연구운영과, 재해대응과, 기술보급과,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각 도 농업기술원 관계관 등

- 병해충 적기 방제 추진을 위해 연중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제공
 - 발표시기 : 연중 15회(6~8월은 월 2회, 1~5월과 9~12월은 월 1회)
 - 발표요령 : 농진청, 도원에서 교대로 발표
 - ┌ 농진청 : 작물별 병해충별 발생추세 전망 위주 정보 발표
 - └ 도 원 : 지역특성을 감안 병해충 방제요령까지 구체적으로 발표
- 병해충 발생정보는 발생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발표
 - 예보(연록색) : 병해충의 일반적인 발생 상황을 알리고 발생 상태에 따라서는 방제를 필요로 할 때
 - 주의보(황색) :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반드시 방제가 필요 할 때
 - 경 보(적색) : 병해충 발생이 급진적으로 만연하여 방제에 긴급을 요하고 방제를 하지 않을 경우 극심한 피해가 우려될 때
 - ※ 예찰포, 관찰포 조사 및 현장예찰 등 예찰결과와 기상경과·기상전망을 분석하여 신뢰 높은 병해충 발생정보를 제공
- 시군단위 지역방제협의회 운영
 - 주 관 : 시군 농업기술센터
 - 참석대상 : 행정, 지도, 농협 등 병해충 예찰·방제 관련기관
 - 시 기 : 지역의 주요 병해충 발생 시기를 감안하여 조절
 - *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시기와 횟수를 결정하여 추진
 - 주요 협의내용
 - 관내 주요 병해충 발생상황 및 전망분석을 통한 기본방제 통보
 - 병해충 방제적기, 적정 농약 추천 및 적기방제대책 추진 협의 등
 - * 행정, 농협 등 유관기관 협의체 구축 공동대처로 방제효율성 증대
- 병해충 기본방제 통보
 - 시 기 : 지역 방제협의회 후
 - 대 상 : 유관기관 및 리·동장, 방제단장 등
 - 방 법 : 우편, 통신수단 등 적절한 방법 선택 활용

□ 추진 순기표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병해충 예찰회의 개최												
○ 병해충 발생정보 제공												

□ 기대효과

- 정확한 병해충 예찰에 의한 발생 조기에측 및 적기 방제체계 확립
- 병해충 적기 방제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농가소득 향상

■ 2021년도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

농가경영개선지원

강소농 육성 지원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	농촌지도관 박인구 농촌지도사 이선주	063-238-0941 063-238-0942

□ 목적

- 농가경영개선 실천교육,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한 농업경영체·조직체 자립 역량 강화 및 소득 향상

□ 추진방향

- 중소규모 농업경영체 중심 강소농 선정 및 현황 분석
- 진단·분석에 의한 단계별 농가경영개선 실천교육 추진 및 컨설팅 등을 통한 농가 경영개선 지원
- 강소농의 경쟁력 향상 및 지속 성장을 위한 조직체(기존 및 신규 자율모임체) 집중 육성 및 관리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조(목적), 농촌진흥법 제15조(농촌지도사업의 조정),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3393호, 2015.7.20)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428호, 2015.7.24)

□ 예산내역

- 사업량 : 162개소
- 사업비 : 4,008백만원(국비50%, 지방비50%)

○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국비 50%, 지방비50%)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사 업 량	162	1	2	2	3	1	1	1	1
사 업 비	4,008	24	48	48	72	24	24	24	24
구 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 업 량	19	19	12	15	15	22	24	19	5
사 업 비	488	490	284	356	356	524	620	490	112

□ 사업대상 : ~'21년 강소농

□ 사업내용

○ 중소규모 농업경영체 중심의 강소농 선정

- 강소농 교육 대상자 DB 구축(전년도 11월 ~ 당해연도 2월 중)

* (방법) 아미스 또는 엑셀 등 활용 연도별 강소농 교육 이수자 명단 확보 및 강소농 교육 이수 이력 기재

- 강소농 교육 대상자 모집·선정(전년도 11월 ~ 당해연도 2월 중)

* (방법) 공공기관 플래카드 게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고, SMS 발송, 농업인 관련 각종 행사에서 강소농 교육 홍보 및 현장접수, 센터 내 각 분야별 담당자와의 연계를 통한 교육생 확보 등

* (등록) 신규강소농으로 선정된 경영체에 대한 정보를 아미스에 입력
(아미스 접속 경로 및 입력 방법 : 농촌진흥청 농업경영종합정보시스템 (<http://amis.rda.go.kr>) → 농가경영개선지원 → 농장조회 및 신규등록)

- 교육과정별 참여자 구분 및 사전 오리엔테이션 추진

* (방법) 기 구축된 강소농 교육 대상자 DB와 강소농 사업 신청서를 확인하여 기초, 전문과정 대상자 구분

< 참고사항 >

※ '20~'21 강소농 선정 농가 중 강소농 프로그램에 재참여 의사가 있는 경영체는 기초과정 또는 전문과정에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신규 강소농 선정 인원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예시) '20~'21 강소농 참여자 50명, '20 신규 강소농 50명일 경우

· 강소농 육성프로그램 100명 운영, 결과 보고 시 신규 강소농 50명, 기존 50명으로 제출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포함 선정 가능

※ 강소농 선정 및 교육, 컨설팅 추진, 우수사례 발굴 등 사업추진 시 양성평등 고려

○ 경영개선실천교육 운영

- 강소농 교육 운영 실무 매뉴얼을 기반으로 현장상황에 맞도록 교육 추진

구분	시행주체	교육목표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
기초 과정	시군 농업기술센터	경영역량 강화	영농 초기단계 귀농인, 강소농 교육기 이수자 중 보수교육을 원하는자	6h	기본교육 (표준(역량)진단, 농업환경 변화와 대응방향, 강소농 육성 프로그램 이해 등)
				14h	심화교육 (농업경영의 이해, 장단기 목표 설정 방법, 비품고기역 개념 이해, 경영개선 실천노트 작성·점검 등)
				24h 이내	후속교육 (실행보고서 점검, 자율모임체 구 성·운영, 크로스코칭 및 현장컨 설팅 등)
				16h 이내	역량강화교육 (경영전략, 세무, 6차산업, 온라인 마케팅, 브랜드 정립 등)
전문 과정	시군 농업기술센터	비즈니스 모델 구축	이전강소농 기초과정 이수자, 선도농가 중경영전략 수립을원하는자	4h	기본교육 (표준(역량)진단, 농업환경 변화와 대응방향 등)
				4h	심화교육 (농업경영의 이해, 경영개선 실천 노트 작성·점검 등)
				32h 이내	비즈니스모델링 교육 (농장경영환경분석, 비즈니스모델 정의 및 적용, 농가별 단기·중 장기 경영전략 수립 등) * 농가별 사전 정밀현장컨설팅 필수 추진
				20h 이내	역량강화교육 (경영전략, 세무, 6차산업, 온라인 마케팅, 브랜드 정립 등)
최고 과정	도농업기술원	지역리더 육성	자율모임체 및 농업인단체 임원 강소농 전문과정수료자 중우수한자	40h	비즈니스모델 (비즈니스모델링, 모임체 운영 전략, 심화컨설팅 등)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조직관리 등)
					중장기 사업전략 (사업계획 실천 로드맵, 사업 계획서 작성 등)

※ 표준(역량)진단 결과는 아미스에 입력

※ 교육 단계 및 세부내용은 센터 상황에 맞게 적의 조절

※ 비대면 교육 추진 및 강소농 육성을 위한 자료 제작 지원 등

○ **강소농 자율모임체 육성 지원** *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가능

- 강소농 자율모임체 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견학 등 추진
- 우수 자율모임체에 대해 민간경상보조사업 지원 가능
 - ※ 자율모임체 성격에 따라 품목농업인연구회 등 관련조직체와 지원 연계 가능
 - 단, 이 경우 지속적인 자율경영실천을 위한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여야 함
 - ※ 민간경상보조사업비는 현지견학, 교육, 디자인개발 등 경상적 경비지출에 한함

○ **농가맞춤형 컨설팅 지원** * 교육, 컨설팅 민간위탁 시 합산하여 총 사업비의 40% 이내 가능

- 경영개선실천교육 전문과정 참여자를 대상으로 정밀현장컨설팅 추진
- 강소농 민간전문가 활용 분야별 컨설팅 지원(멘토·멘티 활동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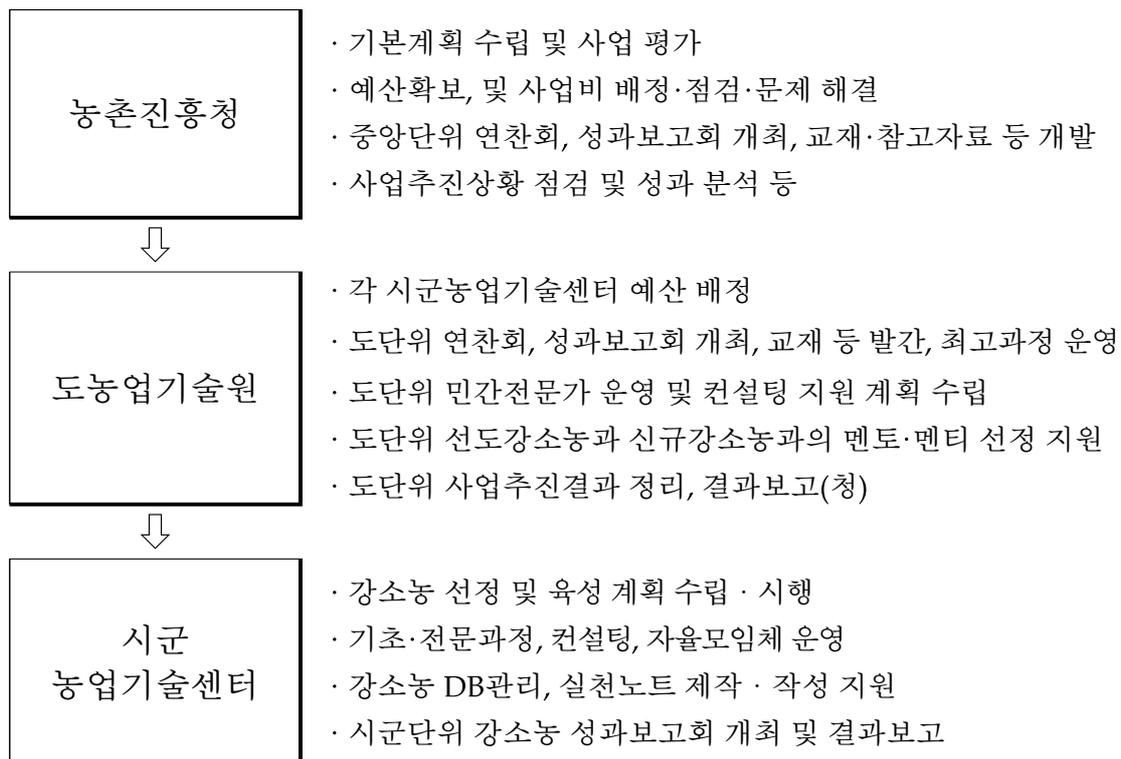
○ **농가경영개선 실천노트 제작 및 작성 지원**

- 실천노트 자체 제작 배부 및 작성 지도(실천노트 중앙 제작지원 없음)

○ **강소농 DB관리(아미스)**

- 강소농가 기본 현황(신청서 기준), 표준(역량)진단표 등 관리

□ **사업추진 체계 및 지원방식 등**



□ 기대효과

- 농업경영체의 역량 강화와 체질 변화로 지속적 소득 향상 지원
- 강소농 육성으로 농가경영개선 지원체계 구축 및 현장 확산

□ 행정사항 : ATIS 활용

- 계획 보고 : '21. 3.20일한 (ATIS 양식 활용)
- 결과 보고 : '21.11.30일한 (ATIS 양식 활용)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	농촌지도관 박인구	063-238-0941
		농촌지도사 이선주	063-238-0942

□ 목적

- 강소농의 자립역량 강화와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관리 및 평가·환류
- 강소농 지원 체계 구축 및 성과홍보 등으로 강소농 관리기반 강화

□ 추진방향

- 강소농 우수사례 확산으로 농업인의 강소농 참여의지 제고
- 사업 참여농가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효과의 지속적 홍보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조(목적), 농촌진흥법 제15조(농촌지도사업의 조정),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3393호, 2015.7.20)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428호, 2015.7.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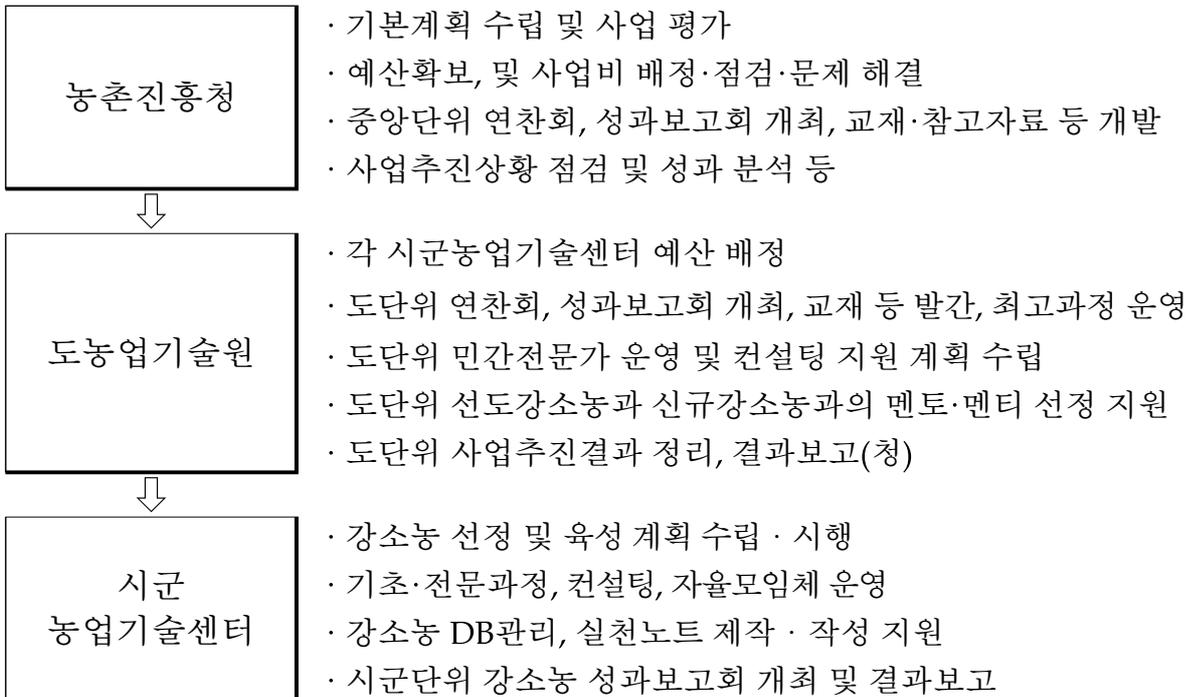
□ 예산내역

- 사업량 : 161개소
- 사업비 : 1,770백만원(국비50%, 지방비50%)
-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사업량	161	1	2	2	2	1	1	1	1
사업비	1,770	10	20	20	20	10	10	10	10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량	19	19	12	15	15	22	24	19	5
사업비	210	214	134	164	170	240	260	214	54

□ 추진체계



□ 사업내용

<농업기술원>

- 도단위 담당자 교육(워크숍 포함)을 연 2회 이상 추진
 - 연초에 시군센터 담당자, 민간전문가와와의 합동 추진으로 강소농 사업 방향 공유
- 시군농업기술센터별 강소농 사업 추진상황 파악을 위한 현장 방문
- 도단위 성과보고회 연 1회 이상 추진(강소농대전 연계추진 가능)
- 민간전문가 컨설팅 활동 지원
- 사업활성화를 위한 자료 제작, 사례집 발간, 홍보 등

<농업기술센터>

- 강소농가 지도용 자료 제작, 우수사례집 발간, 홍보영상 제작 등
- 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도를 위한 현장 방문
- 연 1회 이상 성과보고회 개최(강소농대전 연계추진 가능)

□ 행정사항 : ATIS 활용

- 사업계획 보고 : '21. 3. 20(ATIS 양식 활용)
- 추진실적 보고 : '21. 11. 30(ATIS 양식 활용)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분석 컨설팅사업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	농촌지도관 박인구 농업연구사 이상래	063-238-0941 063-238-0943

□ 목적

- 청년창업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경영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경영상태 진단·분석 후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청년창업농의 조기 영농 정착을 위한 경영컨설팅 및 교육 동시 실시
- 경영목표 달성과 지속적 경영개선을 위해 컨설팅·코칭 병행 실시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조, 농촌진흥법 제15조, 제16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 사업규모

- 사업비 : 720백만원(국비 360, 지방비 360)
- * 산출근거(1인당) : 도 300천원, 시군 600천원, 특광역시 900천원

□ 사업량

- 사업량 : 154개소
- 도농업기술원 9, 시군농업기술센터 145
- 지원내역

(단위 : 개소, 백만원, 명)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사업량	154	1	2	2	3	1	1	1	1
사업비	720	1.8	5.4	7.2	4.5	7.2	3.6	4.5	2.7
컨설팅계획	800	2	6	8	5	8	4	5	3

구 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량	20	16	12	15	15	21	23	19	1
사업비	90	58.5	56.7	76.5	90	94.5	103.5	88.2	25.2
컨설팅계획	100	65	63	85	100	105	115	98	28

□ 사업내용

① 도농업기술원(역량강화교육 1인당 2회 이상)

- 도단위 전문컨설팅팀 구성 및 운영
 - (팀구성) 지역 내 연구기관, 대학교 등 전문가 연계한 POOL 구축
 - (컨설팅 대상)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문제해결이 어려운 경영체 등
 - (주요역할) 시군단위 기초컨설팅 지원, 문제점 해결 컨설팅 실시
- 시군 컨설팅팀의 역량강화 지원 및 강소농 농민간전문위원의 시군 연계
- 청년창업농 역량 제고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회)
- 발굴된 컨설팅 우수사례 홍보 및 농가 현장 지도에 활용
- 사업추진 결과 분석 및 정리, 결과 보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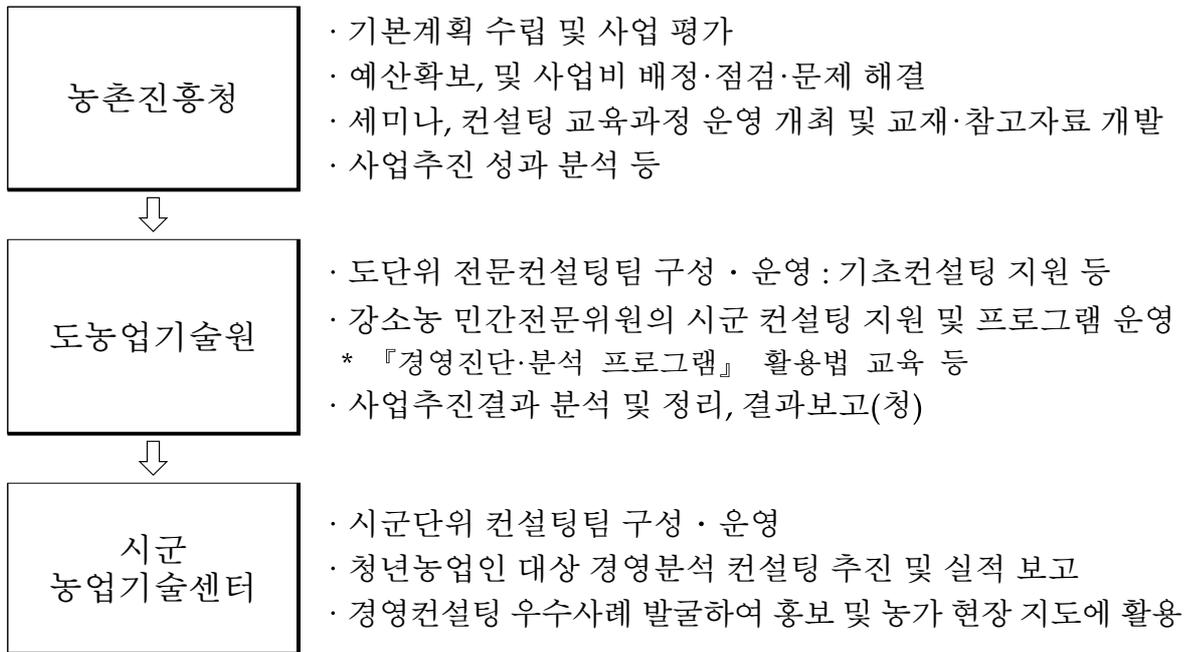
② 시군농업기술센터(1인당 3회이상), 특광역시센터(1인당 5회 이상)

- 기초컨설팅팀 구성·운영
 - (팀구성) 강소농 민간전문위원, 시군 전문컨설턴트 등
 - (주요역할) 컨설팅 희망 청년농업인 대상 컨설팅·코칭 병행 실시
 - * 컨설팅 흐름도 : 영농현황분석(소득+역량진단+기술진단) → 문제점 파악 → 1차 처방 → 농가와 연간 향후계획 협의 → 최종 처방(농가별 컨설팅 관리카드 작성)
 - * 코칭은 농가별 컨설팅 관리카드를 활용하여 주기적 실천 사항 점검 및 효율적 실행과제 수행 대안발굴 등 실시
- 대학 등 컨설팅 전문가 POOL 구축 및 청년창업농 대상 컨설팅 지원
- 「농업 경영분석 컨설팅」 우수사례 발굴(시군당 1건 이상)
- 사업추진 결과 분석 및 정리, 결과 보고(도)

□ 사업대상

-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및 청년농업인

□ 사업추진 체계 및 지원방식 등



□ 기대효과

- 경영진단·분석·처방을 통한 청년농업인의 조기 영농 정착 및 소득 증대
- 청년창업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

□ 행정사항

- [교육인정] 컨설팅 대상농가에 대해 교육시간(자율) 8시간/회 인정
 - 컨설팅 및 교육 실적은 농진청 '교육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농정원 연동)
 - * 8시간 산출기준 : 컨설팅 준비(자료 등), 상담시간(3~4시간), 피드백(보고서 등)
- 사업추진 계획 보고 : '21. 1. 30(제1호 서식)
- 사업추진 결과 보고(ATIS 참고) : '21. 11. 20(제2호 서식)
- (참고)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대상자 선정시 고려사항
 1. 컨설팅 대상자는 창업예비농을 먼저 고려하여 추진
 2. 기존에 컨설팅을 받지 않는 청년농업인을 우선 고려
 3. 경영규모가 영세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절실한 청년농업인 등 고려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	농촌지도관 박인구	063-238-0941
		농업연구사 이상래	063-238-0943

□ 목 적

- e-비즈니스 리더양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업인의 전자상거래 경영기술 확산
- 인터넷·모바일·SNS 등 활용, 고객기반 확충 등 농업비즈니스 인프라 구축 강화

□ 추진방향

- e-비즈니스 리더양성 프로그램 운영 및 전자상거래 경영기술 확산
- 하이팜 가입농가, 정보화 농업인 등의 농업경영 비즈니스 역량 향상 지원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조(목적), 농촌진흥법 제15조(농촌지도사업의 조정),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4.1.1. 법률 제112161호), 동법 시행령(2014.7.17. 대통령령 제25478호)

□ 사업규모

- 사업비 : 97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량

- 사업량 : 79개소(도원 9, 시군 70)
- 지원내역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합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부산	광주	세종
사업량	79	10	10	8	6	8	9	11	11	3	1	1	1
사업비	970	120	120	100	80	100	110	130	130	50	10	10	10

※ 도원 30백만원, 시군 10백만원 내외, 지역여건에 맞게 자체 편성

□ 사업내용

① 도 농업기술원

○ 도단위 e-비즈니스 리더양성 프로그램 운영

- 시군센터 교육과정 수료 2~3개 시군농가 대상으로 차별 있는 특별교육과정 운영

*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여성 농업인을 위한 별도 교육시간 편성

- 프로그램의 효과분석을 위해 참여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 및 만족도 조사

○ 도별 사이버 농업인의 정보화 역량 강화 지원

- 농업인 정보화 역량 향상 세미나, 연찬회 등

② 시군 농업기술센터

○ 시군단위 e-비즈니스 리더양성 프로그램 운영

- 인터넷 마케팅 기법, 농업회계 및 세무과정, e-비즈니스 운영과정 및 마케팅 핵심전략 수립 등 자율적 교육 콘텐츠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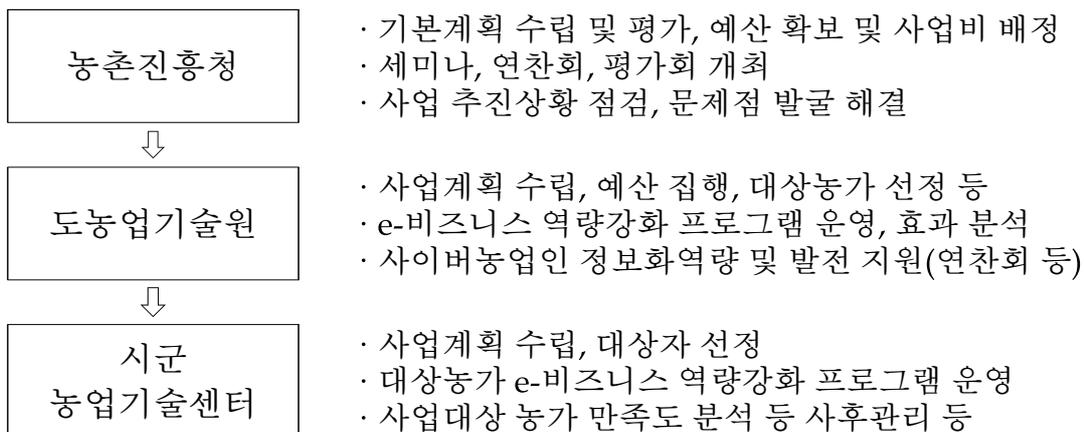
- 프로그램의 효과분석을 위해서 참여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 및 만족도 조사

○ 시군별 하이팜 등 전자상거래 농가 역량향상 지원 등

□ 사업대상

○ 사이버 농업인 및 연합회

□ 사업추진 체계 및 지원방식 등



□ 기대효과

○ 농업인 정보화 및 e-비즈니스 역량 향상으로 농가소득 제고

○ 농업인 정보기술 활용능력 향상으로 신기술 현장 확산 강화

□ 행정사항 : ATIS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보고 : '21. 1. 30(제1호 서식)

○ 사업추진 결과 보고 : '21. 11. 30(제2호 서식)

귀농창업활성화 지원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역량개발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역량개발과	농촌지도관 이옥희	063-238-1880
		농촌지도사 김현해	063-238-1881

□ 목 적

- 귀농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귀농인 맞춤형 지원거점 육성
 - 지방농촌진흥기관의 특화된 농업기술인프라와 민간역량 연계
- 기존 현장실습형 귀농교육 이후 창업설계 지원을 통한 소득기반 지원
 - 신규농업인의 창업역량 강화 및 농업기술기반형 일자리 창출

□ 추진방향

- 시군단위 기초영농기술교육 및 현장실습형 귀농교육과 연계한 귀농창업설계 지원
 - * 예시 : 창업계획수립→아이템구현→사업성분석→창업화 시뮬레이션&피드백
- 농업분야 스타트업 창업교육(영농기술 기반) 및 지원프로그램 운영
 - 창업전문가를 통한 창업기술 자문·컨설팅, 소자본 창업기반 지원
 - 우수 아이디어 및 창업아이템 발굴, 권리화(지적재산권 등) 지원
 - * 지방농촌진흥기관 영농기술 및 경영컨설팅 등으로 특화된 창업정보제공

□ 사업규모 : 9개소, 도농업기술원, 891백만원(국비)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량	9	1	1	1	1	1	1	1	1	1
사업비	891	120	84	99	99	66	99	129	129	66

※ 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70%

□ 사업대상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을 마친 자
-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으로 전업하는 자
(귀농인확인서 등 관련법령·지침에 따라 증명가능한 자)
-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사업대상자제외>

1. 사업시작 연도 기준(2021.1.1.) 귀농한지 5년 초과자
2. 동일시군에서 동일시군으로 이주한 자, 단, 도농복합시의 도시지역에서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3. 금융기관 연체종인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종인 자
4.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미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5.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상근근로자)이 있는 자
6. 농업 외 타 산업분야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7.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

□ 사업운영 형태

○ (1안) 도농업기술원 중심형

- 귀농창업지원센터 설치 또는 센터 기능수행
- 신규농업인 창업교육, 컨설팅, 예비창업자 선정·지원 등을 모두 수행
- 시군농업기술센터 : 교육 적격자 추천, 현지 사업점검

○ (2안)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간 병행형

- 도농업기술원 : 신규농업인 창업 심화교육, 컨설팅 등
- 시군농업기술센터 : 자체심의회를 통한 창업대상자 추천, 예비창업 지원금 집행 관리 및 현지 사업 점검

○ (3안)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독립형

- 도농업기술원 : 귀농창업활성화지원사업 예산 지원 및 사업관리
-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 대상자선정, 교육·컨설팅, 창업자금지원 등

□ 사업내용

【귀농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 귀농창업지원센터를 특화센터 또는 일반센터 중 기능을 고려해서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도원에 설치·운영)
 - 특화센터 기능 : 귀농창업활성지원사업 총괄 역할(별도조직 설치)
 - 일반센터 기능 : 시군농업기술센터 신규농업인 창업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운영하는 지역거점역할(기존 업무범위 내 운영)
 - * 귀농창업지원센터 필요 시 인력채용은 코칭, 컨설턴트(매니저)를 우선 확보
- 농업분야 스타트업 창업교육(영농기술 기반) 및 지원프로그램 운영
 - 멘토링 : 창업활동 현황파악 및 수시상담을 통한 지속적 성장관리
 - 창업단계별 교육 및 소그룹 실습강의로 창업정보 및 창업가 역량강화
 - 창업아이템별 전문가 집중관리를 통한 실습형 창업코칭
 - 정기평가 : 창업활동 전반에 대한 정량/정성평가를 통한 창업실행력 점검
 - 창업전문가를 통한 창업기술 자문·컨설팅, 소자본 창업기반 지원
 - 우수 아이디어 및 창업아이템 발굴, 권리화(지적재산권 등) 지원 등 창업 실행비 지원

◇ 일부 시도 또는 시군에 설치·운영하는 귀농지원센터 등 기존 귀농귀촌지원 업무와 통합하거나 중복하여 운영할 수 없음

【창업교육】

- 창업교육형태
 - 독립형 : 지방농촌진흥기관 자체 창업교육프로그램 설계 운영
 - 위탁형 : 창업 전문기관에 위탁교육 운영
 - 혼합형 : 독립형과 위탁형을 병행 실시
- 귀농창업 이해교육 및 심화교육
 - 교육대상 : 신규농업인 대상 교육수요조사 실시
 - * 우선선정 : 시군 기초영농기술교육 또는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수료자
 - 교육인원 : 도별 10~30명(도별 예산 사정에 자율 조정 가능)
 - 주요내용 : 창업모델 개발 및 우수사례 작성, 창업모델을 통한 수익성 확보 심화교육 지원
 - *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활용
- 현장실습교육 이후 창업계획·비즈니스모델 역량 교육지원
 - 반려동물, 곤충산업 등을 새로운 소득창출 창업모델로 발굴

○ 교육내용(예시)

- 동기부여 : 귀농정책, 농업·농촌이해, 귀농마인드 확립 등
- 창업지원 : 창업관련 지원사업 컨설팅 및 안내
- 지역주민과의 융화 : 갈등관리
- 사례분석 : 창업분야 선배 성공·실패, 기술컨설팅 등
- 창업설계 : 창업계획서, 창업모델개발, 기술창업모델 등
- 창업심화코칭 : 내외부 전문가 코칭
- 현장실습 및 현장탐방 : 강소농, 6차산업 우수 영농법인 등
 - * 교육내용은 시도 및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 * 민간경상보조 활용방안, 비용대비 성과 극대화 방안, 정산서류(엑셀, 자료증빙, 사진, 영수증 등) 등 행정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행정절차에 대한 코칭 추진(필수)

【컨설팅 지원】

○ 사업모델 혁신, 창업아이템 개선·보강, 시장전문가 멘토링

- 외부전문가를 통한 창업 진단평가(서면→대면·발표→현장)
- 창업자역량 및 잠재능력, 사업아이템 경쟁력, 사업모델 차별성, 시장확장성 등 창업활동 전반에 필요한 사항

【창업지원】

○ 지원규모 : 도별 10명 내외(도별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 지원대상 : 지방농촌진흥기관 창업교육을 참가한 예비 귀농창업 실행가능자

- * 내·외부 전문가를 통한 코칭·컨설팅, 창업계획서 등 심사 후 예비창업실행비 지원

○ 선정방법 : 예비창업자가 제출한 서류검토, 심사 등을 거쳐 시군별 산학협동 심의회 의결 또는 도농업기술원에서 일괄심사

○ 추진절차(예시)

- ① 선정계획 공고
- ② 평가자료 제출
- ③ 내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서류, 발표심사로 대상자 선정
- ④ 평가결과 통보
- ⑤ 예비창업실행자금 집행

○ 심사내용

- 창업자 역량 : 창업자의 사업가적 자질과 능력
- 창업 의지 : 조속한 창업의지, 구체적 사업계획, 전략 등
- 창업 아이템 : 창업아이템의 적절성 및 발전가능성
 - * 제품, 시장, 자원, 생산·원가, 위험과 관련된 발전가능성

○ 지원내용

- 귀농창업 아이디어 및 창업아이템 발굴, 권리화(지적재산권 등)를 위한 창업 지원자금 지원
- 예비창업실행비 지원 : 1인 최대 10백만원 이내에서 차등지원할 수 있음
 - * 예비창업실행비 : 귀농창업계획서, 교육참여도, 각 종 공모전 선정 등 일정 심사 또는 행사결과에 따라 지원여부 판단

★ 도원 및 시군센터 사업담당자는 창업교육 초기부터 예비창업실행비는 경상보조로 집행하여야 함을 교육(사업) 대상자들에게 공지하고, 예비창업실행비 집행시 자본보조 집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예비창업실행비 활용 예시 】

- ① 홍보자료 개발, 마케팅, 역량개발, 임차료, 시장조사, 책자구입, 종묘구입
- ② 출품비, 시제품제작, 쇼핑몰 등록 및 웹 페이지 개선
- ③ 농장 상징 로고개발 및 홍보물 제작, 지적재산권확보 컨설팅비
- ④ 소포장재, 브랜드 개발, 유통채널 개척 등

□ 사업추진 순기표(예)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사업계획 수립												
○ (1단계) 창업 교육												
○ (2단계) 창업 심화코칭 준비 및 추진												
○ (3단계) 창업지원 준비 및 추진												
○ 사업평가												

□ 사업성과

○ 창업지표 풀(Pool)

- 창업교육 및 컨설팅 인원(명), 교육프로그램운영수(개), 교육만족도(점), 창업 모델계획(건), 사업계획서(건), 창업관련 콘테스트 참여(건), 지적재산권 출원·등록(건), 사업자등록(건), 농업경영체등록(건), 생산량(kg), 매출액(원), 체험·서비스인원(명)

□ 행정사항

○ e-HRD 시스템 입력

- 교육과정(교육 전), 수료생등록(교육 후 2주 이내), 교육실적(교육 후 2주 이내)

○ ATIS 등록

- 사업계획 보고 : '21. 3. 31일까지, <양식 1> 참조
- 추진실적 보고 : '21. 11. 30일까지, <양식 2> 참조

<양식 1>

귀농창업활성화지원사업 추진계획(○○도)

구분	인원(명)			예산(천원)			주요내용 (월별)	비고
	계	남	여	계	국비	지방비		
계								
도							○ 상반기 모집(3월) ○	
○○군							○ ○	
○○군							○ 교육프로그램 ○ 컨설팅	
○○군								

<양식 2>

귀농창업활성화지원사업 추진실적(○○도)

① 추진실적

구분	인원(명)			예산(천원)			주요내용 (월별실적)	비고
	계	남	여	계	국비	지방비		
계								
도							○ 상반기 모집(3월) ○	
○○군							○ ○	
○○군							○ 교육프로그램 ○ 컨설팅	

② 예산

구분	계	인건비	운영비			창업실행비	비고
			교육	컨설팅	홍보 등		
계							
도							
○○군							
○○군							

③ 지표별 주요성과

구분	창업교육 및 컨설팅 인원 (명)	교육 프로그램 운영수 (개)	교육 만족도 (점)	창업모델계획 (건)	사업계획서 (건)	창업관련 컨테스트 참여 (건)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건)	사업자등록 (건)	농업경영체 등록 (건)	생산량 (kg)	매출액 (원)	체험·서비스 인원 (명)
계												
도												
○○군												
○○군												

④ 사업대상자(교육생)별 추진실적

시군	성명	성별	연령	주소	이메일	연락처(HP)	창업희망 분야	현장실습 수료여부	창업실행비 지원여부	창업실행비 집행내역	주요 성과

* 창업실행비 집행내역은 창업실행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만 작성(구매항목 및 구매금액 표기)

■ 2021년도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

농업전문인력양성

현장문제해결 역량개발프로젝트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역량개발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역량개발과	농업연구관 김은자	063-238-1870
		농업연구사 박기영	063-238-1871
		농촌지도사 권은경	063-238-1873

□ 목 적

- 농업현장의 다양한 기술수요에 부응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공무원에 대한 경력단계별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으로 기술보급 전문인력 양성

□ 추진방향

-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 및 신속한 확산을 위한 교육 강화
 - 신규 교육개발과 내용의 지속 보완 및 자기주도적 무형식학습 확대
 - * 생산기술 중심 → 가공·경영·마케팅·유통·수출 등 융복합 교육으로 전환
 - 농업정책과 새로운 농업기술, 청의 연구성과의 신속한 현장 확산
-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수요자별 특화된 맞춤형 교육 강화
 - 농촌진흥공무원 : 경력단계별 체계적 역량개발
 - * 지도직·연구직·행정직 등 : 신규자, 업무전환자, 중견자, 관리자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9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제20조(교육훈련과정 등 연구·개선), 제21조(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 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에 관한 규정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 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4조(교육여비의 지급)

□ 2021년도 사업비 내역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국비·지방비 각 50%)

사업명		시도별 사업비 내역									
총계	시도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사업량	456	3	8	3	11	7	4	4	7	
	사업비	1,700	20	25.3	10.1	29.7	17.2	13.7	6.8	17.2	
	시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량	56	42	29	39	54	72	64	42	11	
사업비	160.3	184.8	132.2	154	201.3	203.3	281.3	160.8	82		
기술보급실무	시도	소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사업량	80		2		4	2			2	
	사업비	256		6.4		12.8	6.4			6.4	
	시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량	8	8	4	10	10	12	14	2	2	
사업비	25.6	25.6	12.8	32	32	38.4	44.8	6.4	6.4		
농경영전문인력양성 (농업경영컨설팅)	시도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사업량	40		1			1		1	1	
	사업비	144		3.6			3.6		3.6	3.6	
	시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량	5	1	2	4	3	8	6	6	1	
사업비	18	3.6	7.2	14.4	10.8	28.8	21.6	21.6	3.6		
현장실습	시도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사업량	150	1	1	1	3	1	2	1	1	
	사업비	120	0.8	0.8	0.8	2.4	0.8	1.6	0.8	0.8	
	시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량	21	15	9	12	18	25	19	18	2	
사업비	16.8	12	7.2	9.6	14.4	20	15.2	14.4	1.6		
전문연수 (장기교육)	전문연수 (2개월)	시도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사업량	48		1		1	1	1		1
		사업비	193		4		4	4	4		4
		시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량	4	4	5	4	6	8	7	4	1
	사업비	17	16	20	16	24	32	28	16	4	
	농업문제해결 (1년)	시도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사업량	17	1							
		사업비	306	18							
		시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량		1	2	1	2	1	1	4	3	1	
사업비	18	36	18	36	18	18	72	54	18		

전문연수 (장기교육)	농업 컨설팅 전문가 (2년 1년차)	시도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사업량	6								
		사업비	126								
		시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량		2	1		1		1		1
		사업비		42	21		21		21		21
	농업 컨설팅 전문가 (2년 2년차)	시도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사업량	2								
		사업비	39.6								
		시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량						1		1			
사업비					19.8		19.8				
경영자 워크숍	시도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사업량	40		1	1	1	1		1	1	
	사업비	48		1.2	1.2	1.2	1.2		1.2	1.2	
	시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량	8	3	3	1	3	8	4	3	1	
	사업비	9.6	3.6	3.6	1.2	3.6	9.6	4.8	3.6	1.2	
변화 관리 리더	시도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사업량	40	1	1		1	1		1	1	
	사업비	48	1.2	1.2		1.2	1.2		1.2	1.2	
	시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량	5	4	1	3	7	6	4	3	1	
	사업비	6	4.8	1.2	3.6	8.4	7.2	4.8	3.6	1.2	
조직 학습	시도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사업량	33		1	1	1		1			
	사업비	419.4		8.1	8.1	8.1		8.1			
	시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량	4	3	3	3	4	4	4	3	1	
	사업비	49.3	41.2	41.2	41.2	49.3	49.3	49.3	41.2	25	

□ 추진 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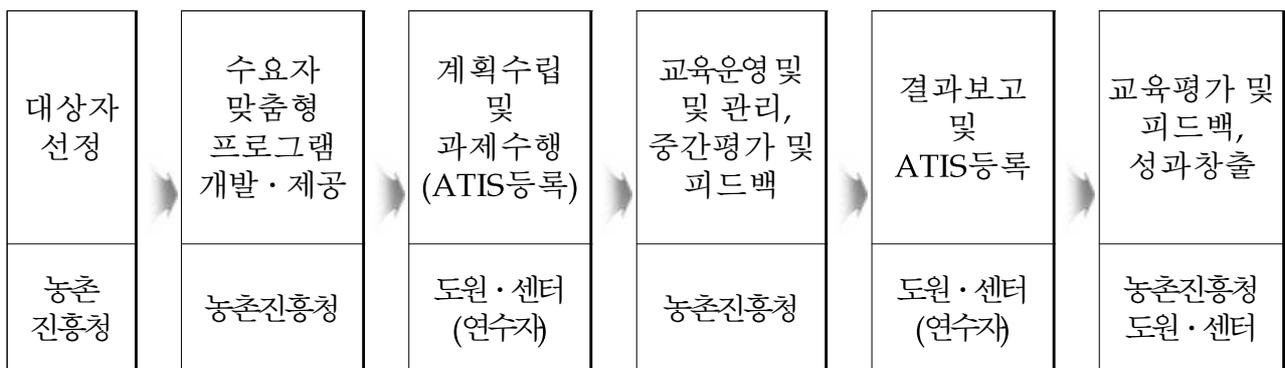
1) 공통사항

- 사업대상 :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공무원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예산편성 : 국내여비, 일반운영비, 직원능력개발비 등
- 사업내용
 - 지방농촌진흥공무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교육 및 직무 경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전문역량 향상 지원
 - (기술보급실무) 신규임용 3년 이내자 또는 업무전환자의 농업 기초기술 습득과 기관내 멘토링을 통해 축적된 지도기법 및 업무별 심화기술의 체계적 전수 지원으로 농촌지도공무원의 현장기술 지원 역량 강화
 - ※ 멘토링 학습프로그램으로 1기관당 사업량 2명(멘토+멘티)으로 운영(필수)
 - (농업경영전문인력양성) 경쟁력 강화 및 부가소득 창출을 위해 작목 전문가를 대상으로 경영·유통·마케팅 지도로 안정적 기술경영을 지도할 전문 컨설턴트 양성
 - (현장실습) 중견지도사 대상으로 품목별 세분화된 핵심 신기술을 실습·토론 등 참여식학습으로 기술경쟁력을 갖춘 현장지도 전문가 양성
 - (전문연수, 장기교육) 지역의 특산품 육성을 위하여 해결할 현안 문제를 과제화하여 분야별 전문가(멘토) 지도하의 자기주도 학습 추진으로 재배기술 및 경영, 유통, 마케팅, 융·복합 기술 등 변화하는 농업인 기술수요에 적극 대응할 최고의 농업 전문인력 양성
 - * 전문연수(2개월), 농업문제해결(1년), 농업컨설팅전문가(2년)
 - (경영자워크숍) 사업 통찰력을 갖춘 최고 경영자로서 조직의 비전 설정·공유 및 경영마인드 함양 등 조직활성화 능력 배양
 - (변화관리리더) 변화촉진자로서 조직활성화를 위한 기획·소통능력 배양
 - (조직학습) 지역전략·특화작목, 예찰·분석기술 등 농촌진흥공무원 학습조직 활동 및 신규 농촌진흥공무원 집합교육, 농촌진흥기관 활성화를 위한 조직문화에 맞는 직원 대상 교육운영 등

○ 추진주체별 역할

농촌진흥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수립·평가, 중장기 방향 설정, 예산 확보 · 역량개발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 · 경력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전국단위 전문가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
농업기술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단위 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개발 계획 수립 · 도단위 경력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지역단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운영 · 역량개발 촉진 및 학습분위기 조성
농업기술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단위 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개발 자체계획 수립 · 시군단위 경력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역량개발 촉진 및 학습분위기 조성

○ 사업추진절차



○ 행정사항 : 붙임 서식으로 ATIS 활용 보고

- 제1호 서식 : 2021년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추진계획(3월 31일 한)
- 제2호 서식 : 2021년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추진결과(11월 30일 한)
- 제3호 서식 : 조직학습 추진결과(11월 30일 한)

2) 기술보급실무

○ 규 모 : 80명(멘티 40명, 멘토 40명)

* 멘토링 학습프로그램으로 1기관당 사업량 2명(멘토+멘티)으로 운영

○ 사업비 : 256백만원(단가 6,400천원, 멘티+멘토), 국비·지방비 각 50%

* 예산 편성 : 공통교육(교육비 : 멘토 3일*2회, 1,200천원 / 멘티 5일* 2회, 2,000) 및 개인별 심화교육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위탁 교육비, 재료비 등), 국내여비 등

○ 기 간 : 2021. 2월 ~ 11월

○ 주요내용

- 멘티(학습자) : 40명(임용 3년이내 및 업무전환자)

· 교육시간 : 98시간 이상/년, 시기(2 ~ 11월)

· 교육방법 : 집합교육(3회, 이론·현장견학·실습·토론) + 팀·개인과제 수행(현장문제 해결) + 개인별 심화교육(농촌진흥기관 제외 교육기관)

· 교육내용 : 농업기초(재배원론, 토양 등) 및 업무별 심화교과 학습

- 멘토 : 40명(학습자 소속기관의 선임공무원)

· 교육시간 : 52시간 이상, 시기(2 ~ 11월)

· 교육방법 : 집합교육(2회, 회수별 3일간)+ 개인별 심화교육(농촌진흥기관 제외 교육기관), 멘토링 활동

· 교육내용 : 리더십/코칭/멘토링 스킬 향상

	구분	역할 및 기대효과
조직 차원	멘토 멘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진흥기관의 비전, 가치관, 조직문화의 계승·강화 · 성장가능성이 높은 핵심인재의 육성 · 지식이전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신입 및 업무전환자의 조직과 업무에 대한 신속한 적응
	멘토 멘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지식 및 기술 확보 가능 ·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 리더십/코칭/멘토링 스킬 향상, 조직으로부터 인정과 보장 · 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노하우 습득 · 농촌진흥공무원으로서 조직 생활에 대한 자신감 · 경력개발 및 시장가치 향상, 폭넓은 대인관계 형성

3) 농업경영전문인력양성(농업경영컨설팅)

○ 규 모 : 40명

○ 사 업 비 : 144백만원(단가 3,600천원), 국비 · 지방비 각 50%

* 예산 편성 : 공통교육(교육비: 1주2회, 2,000천원) 및 개인별 심화교육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 재료비 등), 국내여비 등

○ 시행방법 : 교육 참여, 과제수행, 교육운영

○ 주요내용

- 교육시간 : 84시간 이상(공통교육 + 개인별 심화교육)

- 교육기간 : 2021. 2월 ~ 11월

- 교육방법 : 집합교육(토론 · 참여식), 팀별 · 개인별 프로젝트 진행

· 교육방법 : 집합교육(2회, 회수별5일간), 개인별 심화교육(농촌진흥기관 제외 교육기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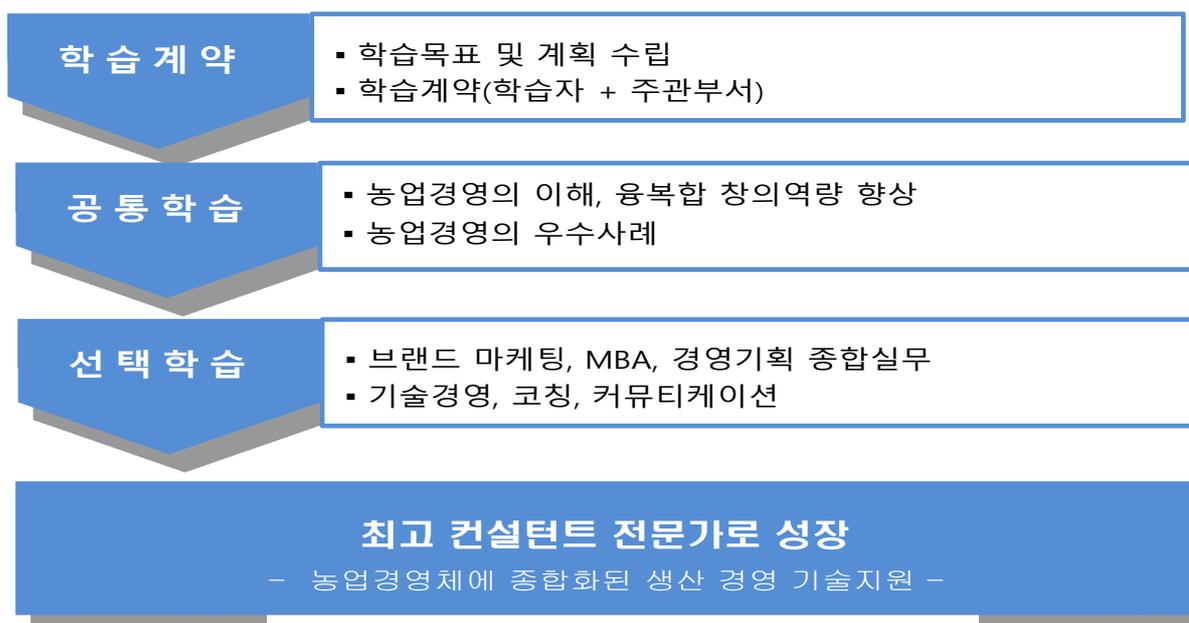
- 교육내용

· 작물재배 및 축산, 농식품 가공, 6차산업화전문가로서 유통 · 마케팅 및 농가경영 지도 등 컨설팅 역량을 배양

· 농업경영체를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컨설팅 능력 함양

· 농업회계 및 기술경영 · 마케팅, 코칭 및 퍼실리테이션 등 선택학습

《과정예시》



4) 현장실습(중견지도사과정)

○ 규 모 : 150명

○ 사 업 비: 120백만원(단가 800천원), 국비·지방비 각 50%

* 예산 편성 : 교육(3일, 비합숙, 교육비 500천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 시행방법 : 교육 참여

○ 추진방향

- 품목별 세분화된 핵심기술 교육으로 경쟁력을 갖춘 현장지도 전문가 양성
- 과수전정, 농업시설, 신소득 작목 등 핵심기술 습득을 위한 소수정예교육으로 직무핵심 역량·실습위주의 참여식 현장 교육 운영
- 현장업무 담당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 농업현장의 문제해결·성과 중심의 고품질 프로그램 운영
- 이론교육을 최소화하고 업무 적용을 위한 실습·견학 등 확대

○ 주요내용

- 교육시간 : 14~21시간/년, 1회(2~3일간)
- 교육시기 : 2021. 2월 ~ 10월
- 교육장소 : 농촌진흥청 각 소속 연구기관, 도 단위 시험연구기관, 시군농업기술센터, 우수농가현장 등
- 교육방법 : 집합교육(현장견학, 실습, 연시, 토론 중심)
 - * 단일품목 중심의 고도화된 기술 이전을 위한 집중교육
- 교육내용 : 기술보급현장에 바로 투입되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품목별 세분화된 핵심기술과 신기술 등 현장의 전문기술 습득
- 분야별 개설과정 :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지원, 10과정 내외
 - * e-HRD 신청 → 승인·확정(농촌진흥청) → 교육추진 → 결과제출(ATIS)

5) 전문연수(2개월)

○ 규 모 : 48명

○ 사 업 비: 193백만원(단가 4,000천원), 국비·지방비 각 50%

* 예산 편성 : 국내여비, 일반운영비(별도 교육비 없음. 단, 연수수행을 위한 도서구입비, 재료비,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 교재발간 등 사용 가능) 등

○ 연수기간 : 2021. 2월 ~ 11월

○ 연수기관 : 연수주제 및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기관

*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 특화시험장, 우수센터, 대학, 공공·민간 연구기관 등

○ 추진방향

- 자율적 개인연수과제 발굴,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액션러닝 추진
- 연구기관의 시설·장비를 활용한 현장 실습교육
- 연구기관 전문가의 지도(멘토-멘티제 운영)하에 연수 추진
- 추진절차: 사전교육 → 연구기관 및 멘토선정 → 연수계획서 수립 및 심의 → 공통교육 → 연수활동 및 중간지도관리 → 결과평가 및 현장적용

학습기관 (연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Network 확장, 지역 문제상황 신속 판단 및 공조 대응 가능 · 현장감 있는 기술수요 파악과 연구원의 현장 간접경험 기회 · 열린연구·현장연구·실용연구 활성화 계기 조성
연수자 (농촌진흥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애로기술의 해결을 위한 체계적 능력 개발 · 전문분야별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최신 지식·기술습득
도원, 시군센터 (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준 높은 대농업인 지도역량을 갖춘 지도인력 양성 및 센터 위상제고 · 자율적 역량 개발 분위기 조성 및 센터의 외부네트워크 확장

○ 주체별 역할분담

연수자 (멘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목적 달성을 위하여 연수에 최선을 다해 전문능력 배양에 노력하고 멘토의 지도에 적극 협조 · 소속기관(도원, 센터)과 연수기관의 상호 이익을 위해 노력
연수기관 (멘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자의 전문능력향상을 위한 기초교육과 기술이전 등 기술교육 · 원활한 연수를 위한 내부정보시스템, 편의시설의 사용 지원과 협조 · 연수자의 복무관리(연수 중 애로사항 발생시 주관부서와 협의)
주관부서 (역량개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자-연수기관(멘토)와 수시 협조 체계 유지 및 교류 · 연수자의 복무지침 수립 및 공지 · 연수자 및 연수기관 정기 순회로 애로사항 대처

○ 연수 추진절차

㉠ 사전교육 : 연수과정 오리엔테이션, 연수계획 워크숍 등

㉡ 연수기관 및 멘토 선정

- 연수목적 달성을 위한 연수기관을 자율 선정하여 주관부서와 협의 후 확정
- 연수자는 연수진행과정을 지도·조언할 연수기관 멘토를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주관부서에 제출

㉢ 연수계획서 수립

- 연수계획은 멘토와 협의하여 분야별 수행 가능한 연수계획 수립
 - * 2개월 과정은 연수기간 내에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토록 유의하여야 하며, 2개월 간 연속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작기에 맞는 시기별 추진이 효과적인 경우 최소 2주 이상의 단위로 세부연수계획을 수립해야 함

㉣ 계획심의

- 연수계획서는 워크숍과 개인과제활동을 통해 1차 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계획평가 시 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한 뒤 최종 계획서 확정 제출

㉤ 공통교육

- 연수 추진 및 현업적용에 필요한 공통역량 개발

㉥ 연수활동

- 연수자는 품목별 재배 등 분야별 전문기술, 경영·유통, 마케팅 등 농업·농촌 현장의 문제해결 능력 배양을 위한 연구 활동
- 연수분야 관련 학회, 세미나, 워크숍, 전시회 등을 활용한 정보 수집

㉦ 중간진도 관리

- 서류평가(연수시작 후 3~4주 중 제출)

㉧ 결과평가

- 결과보고서를 기한(종료 2주전)내에 제출
 - * 계획 및 결과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연수자 포상(농촌진흥청장상)

○ 교육훈련계획의 변경

- 교육훈련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관, 멘토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와 사전에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 변경

- * 부득이한 사정이란 기관 및 멘토의 사정(장기출장, 전근, 휴직, 파견 등)을 말하며, 연수자의 업무변경 등은 인정하지 않음
- 교육훈련 계획 심의후 계획서의 변경은 연수목적 달성에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멘토 및 주관부서와 사전협의 후 변경
- 연수자 복무관리는 전문연수(장기교육)의 훈련생 복무관리를 따름

6) 전문연수(장기교육) 『농업문제해결(1년), 농업컨설팅전문가(2년)』

- 규 모 : 25명 [2년 8명(2년차 2명, 1년차 6명), 1년 17명]
- 교육대상 : 도원·시군센터 지방농촌지도(농업연구)사(실근무경력 2년 이상인자)
- 사업비 : 471.6백만원, 국비·지방비 각 50%
 - * 예산 편성 : 국내여비, 일반운영비(별도 교육비 없음. 단, 연수수행을 위한 도서 구입비, 재료비,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 교재발간 등 사용 가능) 등
- 과정별 지원내역

구 분	2년(2년차)	2년(1년차)	1년
규 모	2명	6명	17명
사업비	39.6백만원	126백만원	306백만원
단 가	19,800천원	21,000천원	18,000천원

- 연수기간
 - 2년 : '21. 2. 8. ~ '22. 11. 11.(2년, 92주)
 - * 2년 2년차 교육생의 연수기간은 '21. 11. 12.까지임
 - 1년 : '21. 2. 8. ~ '21. 11. 12.(1년, 40주)
- 연수기관 : 연수주제 및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기관
 - *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 특화시험장, 우수센터, 대학, 공공·민간 연구기관 등
- 추진방향
 - 농업문제해결과정(1년)
 - (현장문제해결능력 강화) 지역농업현안에 대응하는 전문지도능력 배양
 - (자기주도형학습 강화) 리더십, 자기개발 등을 통한 자기주도성 함양
 - (창의적 직무전문가 양성) 다양한 사안에 대한 창의적 해결능력 강화
 - 농업컨설팅전문가과정(2년)
 - (최고기술전문가 육성) 기술담당자로서의 문제해결 능력 배양
 - (연구·학습활동 강화) 연구과제 수행을 통한 개별 역량 강화
 - (체계적 전문역량 배양) 과정별 기초(1년차), 심화(2년차)과정 운영

학습기관 (연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Network 확장, 지역 문제상황 신속 판단 및 공조 대응 가능 · 현장감 있는 기술수요 파악과 연구원의 현장 간접경험 기회
연수자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애로기술의 해결을 위한 체계적 능력 개발 · 전문분야별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최신 지식·기술습득
도원, 시군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준 높은 대농업인 지도역량을 갖춘 지도인력 양성 및 센터 위상제고 · 자율적 역량 개발 분위기 조성 및 센터의 외부네트워크 확장

○ 주체별 역할분담

연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목적 달성을 위하여 연수에 최선을 다해 전문능력 배양에 노력하고 멘토의 지도에 적극 협조 · 소속기관(도원,센터)과 연수기관의 상호 이익을 위해 노력
연수기관 (멘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자의 전문능력향상을 위한 기초교육과 기술이전 등 기술교육 · 원활한 연수를 위한 내부정보시스템, 기자재 및 편의시설의 사용 지원과 협조 · 연수자의 복무관리(연수 중 애로사항 발생시 주관부서와 협의)
주관부서 (역량개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자-연수기관(멘토)와 수시 협조 체계 유지 및 교류 · 연수자의 복무지침 수립 및 공지 · 연수자 및 연수기관 정기 순회로 애로사항 대처

○ 연수 추진절차

㉠ 사전교육 : 연수과정 오리엔테이션, 연수계획서 작성 워크숍 등

㉡ 연수기관 및 멘토 선정

- 교육훈련 달성을 위한 연수기관을 자율 선정하여 주관부서(역량개발과)와 협의 후 확정(2년 연수의 경우 2개 이내의 복수 선정 가능)
- 훈련생은 연수진행과정을 지도·조언할 연수기관 멘토를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주관부서에 제출

㉢ 교육훈련계획서 수립

- 교육훈련계획은 멘토와 협의하여 분야별 수행 가능한 계획 수립

㉠ 계획심의

- 교육훈련계획서는 사전교육과 개인과제활동을 통해 1차 안(연수성과물 명시)작성, 제출하고 계획평가심의 결과가 반영된 최종계획서를 수정 제출한다.
- 심의는 공통교육 기간 중 실시한다.

㉡ 공통교육

- 장기교육훈련 가이드, 연구프로세스, 셀프리더십 등 포함
- 강의기법, 퍼실리테이션 등 필수유용교육 및 정기적 코칭 지원

㉢ 연수활동

- 연수자는 품목별 재배 등 분야별 전문기술, 경영·유통, 마케팅 등 농업·농촌 현장의 문제해결 능력 배양을 위한 연구 활동
- 연수분야 관련 학회, 세미나, 워크숍, 전시회 등을 활용한 정보 수집
- 공통과제 : 영농활용자료에 대한 지역의 활용 현황과 평가서 제출

㉣ 중간진도 관리

- 월 1회 연수보고서 제출, 중간진도 관리(7월 중 실시, 예정)

㉤ 결과평가

- 결과보고서를 기한(종료 2주전)내에 제출
- 최종연수성과물(결과평가), 현장활용사례(수료 후 2년 이내) 필수제출
- 제출된 보고서는 인쇄 배부 및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게재
- 평가위원은 농촌진흥청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위촉
- 계획 및 중간, 결과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연수자 포상(농촌진흥청장상)

○ 교육훈련계획의 변경

- 교육훈련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관, 멘토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와 사전에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 변경
 - * 부득이한 사정이란 기관 및 멘토의 사정(장기출장, 전근, 휴직, 파견 등)을 말하며, 연수자의 업무변경 등은 인정하지 않음
- 교육훈련 계획 심의 후 계획서의 변경은 연수목적 달성에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멘토 및 주관부서와 사전협의 후 변경
 - * 1년 과정은 연수종료 3개월 이내에는 계획 변경 불가

○ 주관부서의 관리

- 연수자와 멘토의 유기적인 협력 지원을 위한 연수기관 방문
- 연수수행 관련 의견 수렴 및 연수 추진현황 점검 관리
- 연수자 사후관리를 위하여 연수 후 협의회를 개최하여 연수자의 현장적용 성과 평가 및 활용 촉진

○ 훈련생 복무관리

- ㉠ 훈련생 소속기관은 연수기간에 대하여 훈련생을 농촌진흥청 주관부서(역량개발과)로 교육훈련 과건 명령 통보
- ㉡ 훈련생은 연수기간 동안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준수
- ㉢ 훈련생의 복무관리는 연수기관이 감독하며, 아래 규정 외 필요한 경우 연수기관의 위임사항에 따름
 - 연수기간 중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연수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체 근무상황내역(연가, 특별휴가 등)을 수료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주관부서는 교육과건 기간 중 근무상황내역을 교육수료시 훈련생 소속기관에 통보함
 - *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결강은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함
 - 연수기간 중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름
- ㉣ 훈련생 복무관리는 연수기관의 전자결재시스템을 활용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근무상황부 양식을 활용하여 관리
- ㉤ 연수를 위한 체재비 등은 훈련생 소속기관(도원, 센터)에서 여비로 지급
- ㉥ 훈련생이 연수기간 중 교육을 목적으로 연수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타지역으로 출장시, 훈련생 소속기관은 추후 정산하여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음
- ㉦ 연수기관 및 멘토는 연수 중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역량개발과)와 협의하여 처리
- ㉧ 연수 불실성자에 대하여는 '공무원교육훈련법 및 동시행령'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 규정(훈령 제15호, '20. 8. 26)'에 따름
- ㉨ 훈련생은 소속기관 복귀 후 공식적인 연수결과 발표회를 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보고(12월말까지)

- ㉠ 훈련생 소속기관(도원, 센터)은 연수 수료자에 대해 연수분야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 복무하도록 하여야 함(2년 최소 2년간 / 1년 최소 1년간)
- ㉡ 훈련생은 연수 후 원 소속기관(도원, 센터)에 연수기간과 동일한 기간 의무 복무를 하여야 함
- ㉢ 훈련생 소속기관(도원, 센터)의 장은 훈련생의 의무복무기간 중에 면직, 휴직 또는 전직, 전출 등으로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의무복무 위반 및 미 수료 시 연수소요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함.
- ㉣ 연수 중 특별한 사유 없이 연수를 포기한 시군은 국비 예산 지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부득이하게 연수 포기 시 남은 연수기간에 대해 훈련생의 소속기관에서 다른 훈련생으로 대체하여 추진
- ㉤ 수료자는 사전·공통교육을 이수하고 계획심의, 중간진도관리, 결과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제㉠항 규정의 결강 일을 초과하지 않은 자로 함

7) 경영자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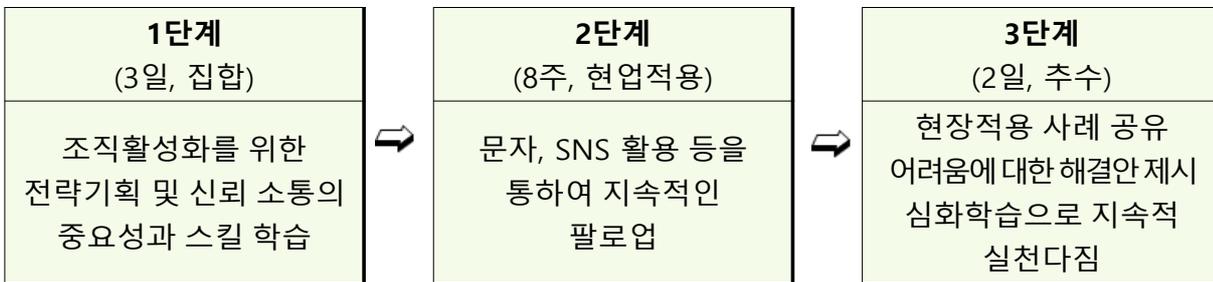
- 사업목적 : 관리자의 조직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조직 구성원들과 효과적으로 신뢰관계를 형성, 소통하여 조직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규 모 : 40명
- 교육대상 : 도원·시군센터 소장, 과장
- 사업비 : 48백만원(단가 1,200천원), 국비·지방비 각 50%
 - * 예산 편성 : 교육(1차: 3일, 2차: 2일, 비합숙, 교육비 800천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 시행방법 : 토론·참여식 운영
- 주요내용
 - 교육시간 : 35시간 (3일 + 추수교육 2일)
 - 교육기간 : 2021. 2월 ~ 11월
 - 교육방법 : 집합교육(합숙, 비합숙)
 - 교육내용 : 사업 통찰력을 갖춘 최고 경영자로서 조직의 비전 설정, 공유, 경영마인드 함양 등 조직활성화 능력 배양

- 조직특성에 따라 관리자에게 필요한 구체적 리더십 행동 이해
- 리더로서의 자기이해 및 유형별 강약점, 성장방법
- 조직활성화 스토리텔링, 리더의 소통기법
- 신뢰와 소통의 리더십 적용 계획 수립 및 발표

8) 변화관리리더

- 사업목적 : 효과적인 조직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조직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조직의 변화를 지향하며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 규 모 : 40명
- 교육대상 : 도원 · 시군센터 팀장
- 사 업 비 : 48백만원(단가 1,200천원), 국비 · 지방비 각 50%
 - * 예산 편성 : 교육(1차: 3일, 2차: 2일, 비합숙, 교육비 800천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 주요내용
 - 교육기간 : 2021. 2월 ~ 11월 [35시간 (3일 + 추수교육 2일)]
 - 교육방법 : 집합교육, 토론 · 참여식 운영
 - 교육내용 : 농촌진흥기관 변화관리촉진자로서의 전문능력 배양
 - 조직활성화를 위한 전략 기획
 - 농업기술 부문의 시장분석, 기술 가치평가, 전략적 기술경영 수행 등
 - 변화리드, 변화관리, 신뢰와 열정, 리더십 개발 계획 수립

관리자리더십 과정



9) 조직학습

○ 규 모 : 33개소(도 9, 시군 24)

○ 사 업 비 : 419.4백만원, 국비·지방비 각 50%

* 예산 편성 : 자체 학습 계획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강사료, 위탁교육비, 임차료, 교재제작 등), 국내여비(사업비 20% 이내 편성) 등

○ 시행방법 : 교육 참여, 과제수행, 교육운영

○ 주요내용

- 교육기간 : 2021. 2월 ~ 11월 [자체 계획 수립]

- 교육내용

· (도) 도단위 특화 및 주요작목, 실습·실험장비 공동학습, 기관 워크숍, 시군 신규자 워크숍 등

* 활용의 예 : ○○도는 도내에서 재배되는 △△작목 재배기술의 상향 평준화를 위하여 시군 △△작목 담당자를 대상으로 격월(매월, 분기, 반기 등)로 교육을 진행(시군 순회). ◇◇도는 농업*** 생산(분석) 업무 담당 직원의 기술교육 프로그램의 위탁교육 운영

· (시군) 직원 직무역량 강화 교육, 워크숍, 세미나 등 자체 및 위탁교육

* 10인 이상 추진, 도원·시군센터 조직문화에 맞는 조직 구성원 학습 촉진과 멘토링 공감대 형성 등

< 기타 조직학습 유형 >

구 분	내 용
강사출강형	▶ 조직 내 교육 전문 강사를 직접 초빙하여 직원 교육
위탁교육형	▶ 시설과 강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진행
공개참여형	▶ 외부 기관의 공개교육에 예산범위 내 교육 참석
네트워크형	▶ 지역별 센터(2~3개)가 연합 하여 교육 과정 개설/운영
전문심화형	▶ 조직의 기존 워크숍이나 교육을 개선하여 병행 진행

[제1호 서식] (엑셀 형으로 작성)

2021년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추진계획(3.31)

○ 사업비 집행계획(엑셀 워크시트 1)

기관명	세부사업명	참여인원	사업비 집행계획(단위:천원)						
			소계	여비	교육비		기타		
					예산	과목	예산	과목	
○○시군	-기술보급실무	○명							
	-농업경영컨설팅								
	-현장실습								
	-전문연수(2개월)								
	-전문연수(2년, 1년차)								
	-전문연수(2년, 2년차)								
	-전문연수(1년)								
	-경영자워크숍								
	-변화관리리더								
	-조직학습								

- * 기관별 세부사업에 해당되는 분야만 작성
- * 교육비 및 기타예산은 금액 및 예산과목(위탁교육비, 일반운영비 등)을 작성
- * 기술보급실무, 농업경영컨설팅 과정의 ‘선택학습’은 자체 교육계획 수립후 추진
- * 장기교육훈련 및 전문연수과정은 여비산정 후 잔액에 대해서는 자율탐구학습 등 연수대상자의 지도공무원 역량개발에 관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경 시 과목조정 등을 통해 추진 완료(국외여비, 자산취득비 불가)

○ 사업추진계획(엑셀 워크시트 2)

기관명	세부사업명	교육계획			주요내용	교육기관명	기타내용
		기간	일수	시간			
○○시군	-기술보급실무	00.00~00.00	3	21			
	-농업경영컨설팅						
	-현장실습						
	-전문연수(2개월)						
	-전문연수(2년, 1년차)						
	-전문연수(2년, 2년차)						
	-전문연수(1년)						
	-경영자워크숍						
	-변화관리리더						
	-조직학습						

- * 기관별 세부사업에 해당되는 분야만 작성

[제2호 서식] (엑셀 형으로 작성)

2021년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추진결과(11.30)

○ 사업비 집행결과(엑셀 워크시트 1)

기관명	세부사업명	참여인원	사업비 집행내역(단위:천원)						
			소계	여비	교육비		기타		
					예산	과목	예산	과목	
○○시군	-기술보급실무								
	-농업경영컨설팅								
	-현장실습								
	-전문연수(2개월)								
	-전문연수(2년,1년차)								
	-전문연수(2년,2년차)								
	-전문연수(1년)								
	-경영자워크숍								
	-변화관리리더								
	-조직학습								

○ 사업추진결과(엑셀 워크시트 2)

기관명	세부사업명	교육계획			주요내용	교육기관명	기타내용	참여자소감	주요성과	건의사항
		기간	일수	시간						
○○시군	-기술보급실무									
	-농업경영컨설팅									
	-현장실습									
	-전문연수(2개월)									
	-전문연수(2년,1년차)									
	-전문연수(2년,2년차)									
	-전문연수(1년)									
	-경영자워크숍									
	-변화관리리더									
	-조직학습									

* 기관별 세부사업에 해당되는 분야만 작성

[제3호 서식]

조직학습 추진결과(11. 30.)

□ 추진개요

- 기관명 :
- 교육기간 :
- 교육인원 :
- 교육장소 :
- 조직학습 유형
 - * 예) 강사출강, 위탁교육, 공개참여, 네트워크, 전문심화 등
- 교육기관 :
- 주요내용 :
- 소요예산 :

□ 세부추진내용

○

-

*

□ 교육시간표

교육일자	00.00.(월)	00.00.(화)	00.00.(수)
교육장소	장소	장소	장소
강의시간			
10:00~10:50	교육내용 (강사)		
		편집하여 사용	

□ 주요성과

- 정량성과 : 만족도, 현업도움정도(5점척도 설문조사 결과 등)
- 정성성과 : 참가자 의견, 내외부 홍보 성과, 기타 내용 등

□ 문제점 및 개선방안(건의사항)

○

□ 관련사진(편집기준 : 용량 작게, 1쪽에 6~10장 정도 배열)

지도공무원 글로벌 역량향상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	농촌지도관 박수선	063-238-0921
		농촌지도사 정태욱	063-238-0922

□ 목 적

- 국제협력사업 참여를 통한 개도국 농업기술지원 및 역량 강화
- 선진 농업기술 정보 습득 및 해외 농촌지도사업 영역 확대
- 세계 농촌지도사업 동향분석 및 한국농촌지도사업 발전방안 모색

□ 추진방향

- KOPIA 센터 및 전문지도연구회를 통한 개도국 맞춤형 농업기술 지원
- 현안해결 및 농업·농촌 주요 정책개발을 위한 선진국 팀제 훈련
- 대륙별 국제협력사업 참여 및 농촌지도 해외 동향파악 등 교류 지원

□ 세부 과정별 운영

1) 국제협력 과정(지방농촌지도직 전문가 KOPIA 기술공여 사업)

- 사업량: 12개소
- 사업비: 75,200천원(국비 50%, 지방비 50%)
- 출장기간: 출입국 날짜를 포함하여 29일 이하
- 사업내용: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를 통한 개도국 농업기술 보급
 -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전문가가 현지에 거주하며 우리나라의 선진 농업기술 전수
- 국제협력 과정 참여 시군

KOPIA 센터		지역	
국가	전문분야	도	시군
우즈벡	농촌지도	특광	세종
	식량작물(벼)	충남	논산
	축산(소, 사양, 번식)	강원	평창

KOPIA 센터		지역	
국가	전문분야	도	시군
미얀마	식량작물(감자)	충북	기술원
베트남	원예(과수)	충북	보은
필리핀	원예작물(엽채류)	충북	괴산
우간다	원예(감귤, 오렌지)	제주	서부
세네갈	토양비료	특광	대전
짐바브웨	원예(엽채류)	경북	포항
파라과이	원예작물(양파)	경북	영천
볼리비아	식량(옥수수)	충남	공주
	식량(밀)	충남	천안

○ 행정사항 : 관련 문서 공문 제출

- 국제협력(지방 지도직 KOPIA 기술공여 사업) 추진계획서 (제1호 서식, '21. 1. 31.까지)
 - * 해당 KOPIA 센터 관계관과 협의 후 추진계획 작성 제출
- 귀국보고서(제2호 서식, 국외출장 종료 후 20일 이내)
- 불가피한 사유로 파견대상자 변경 시 해당 KOPIA 센터에서 요청한 전문분야와 동일한 전문가로 변경 추진
 - * 대상자 변경 승인요청 공문 시행 필수(변경 대상자 업무추진 실적 포함 제출)

2) 팀제훈련 과정

- 사업량 : 45개소
- 사업비 : 162,000천원(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내용 : 농업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지방 관련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해외 선진 농업기술 정보 습득 및 공유를 위한 훈련 지원
- 훈련분야 : 도 단위 동일 훈련과정 수행
 - ※ 도 단위 훈련분야 수요조사 등 추후 별도공문 시행 예정('21년 상반기)

3) 국제교류 과정

- 사업량: 48개소(각도 및 특·광역시 별 1~6개소)
- 사업비: 17,280천원(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내용: 농촌지도 정책 발굴 등 기획형 국외 훈련 지원
- 훈련분야: 추후 별도공문 시행 예정('21년 상반기)

4) 국외 기술지도 과정

- 사업량: 15개소
 - 선진해외기술연수(8): 경기 포천, 강원 평창, 충남 금산, 충남 홍성, 전북 전주, 전남 곡성, 경북 청송, 대전
 - 국외지도(7): 경기 용인, 충북 음성, 충남 청양, 충남 논산, 전북 남원, 전북 군산, 세종
- 사업비: 30,000천원(국비 50%, 지방비 50%)
- 대상자: 한국농업전문지도연구협의회 임원과 우수 전문지도연구회 임원 및 회원을 대상으로 지원
- 사업내용
 - 개발도상국에 한국 농촌지도사업 체계와 성공사례, 우수 농업기술 전파
 - 선진 농업기술 연수 및 국제안목 확대
- 기타: 세부 추진계획 별도 공문 시행

<제1호 서식>

2021년 국제협력과정
(지방농촌지도직 KOPIA 기술공여 사업) 추진계획

대상자

시군	직급	성명	대상국가	연수기간

연수목적

○

주요 연수일정(안)

기간	방문지(지역)	업무 수행내용
1주차 (. . ~ . .)		○ ○
2주차 (. . ~ . .)		○ ○
3주차 (. . ~ . .)		○ ○
4주차 (. . ~ . .)		○ ○

<제2호 서식>

귀국보고서

○ ○ ○ ○ ○
(제 목)

20○○년 ○월
(월까지만 표시)

○ ○ ○
(작성자의 소속기관을 표시)

I. 공무국의출장 개요

1. 목적 : ※ 출장의 전체 목적 및 방문 기관별 목적을 구체적으로 작성
2. 기간 :
3.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4. 출장자 인적사항 :

II. 주요업무 수행내용 (출장목적에 따라 변경작성 가능)

- ※ 출장의 목적 달성을 위해 수행한 업무를 사안별로 작성
- ※ 업무사안별로는 업무 수행 중 보고, 듣고, 느낀 사항을 상세히 기술

1. 수행 개요

- 일시 및 장소
- 참석자
- 협의 진행 방식

2. 수행 내용

- ※ 업무 관련 협의 내용을 보고 들은 대로 상세히 기술

3. 수행 결과

- ※ 협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 협의 진행 상황, 양측 입장 차이, 추후 협의 및 보완할 내용 등을 기술

4. 향후 추진 계획

- ※ 협의 결과 및 시사점에 대한 조치 및 대응방안 제시, 업무반영 계획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1. 시사점

※ 협의를 통해 느낀점, 개선, 보완, 발전시킬 사항 등을 상세히 기술

2. 기타 협의 및 참고 사항

※ 기타 언급이 필요한 협의사항 또는 관련 법령, 제도, 문화, 생활 등 관련 업무 추진에 참고할 정보를 기술
(농업현황, 농업정책, 농업발전을 위한 협력 분야 등 포함)

3. 관련 사진

4. 수집 자료 및 참고 문헌

Ⅳ. 종합 결론

- ※ ① 출장 목적 달성을 위해 수행한 업무 사안별 결과
- ② 업무사안별 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
- ③ 향후 추진 및 발전시킬 사항 등을 중심으로 종합 기술

Ⅴ.기 타

현장기술지도활동 지원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농촌지도관 안정구 농촌지도사 김창수	063-238-0971 063-238-0972

1. 도·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 목 적

- 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활동 지원으로 농업기술 개발 보급 촉진
- 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활동 지원으로 지역 농업기술지도 활동 촉진

□ 추진방향

- 도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지역단위 산학협동 활동 강화로 지역에 적합한 농업 기술 개발 보급과 지도사업 활성화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9조(교육훈련실시), 제20조(교육훈련과정 등 연구·개선), 제21조(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 연도별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사업비	237	237	237	247.2	246.4	246.4

□ 추진 요령

- 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 9개소
 - 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학술활동, 산학협동 활성화 활동 지원 등
- 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 140개소
 - 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관련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등
- 예산편성 :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등(국외여비 불가)
 - ※ 심의회운영이 행정으로 편입된 경우 시범사업 기술지원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 등

□ 2021년도 사업비 내역

(단위 : 개소, 백만원, 국비·지방비 각 50%)

사업명	시도별 사업비 내역										
	시도	소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 운영(도)	사업량	9	1	1	1	1	1	1	1	1	1
	사업비	50.4	5.6	5.6	5.6	5.6	5.6	5.6	5.6	5.6	5.6
	시도	소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 운영(시군)	사업량	140	1	2	-	3	1	1	1	1	
	사업비	196	1.4	2.8	-	4.2	1.4	1.4	1.4	1.4	
	시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량	19	17	11	15	14	21	22	11	-	
	사업비	26.6	23.8	15.4	21	19.6	29.4	30.8	15.4	-	

2. 도·시군 농촌진흥사업활력화지원

□ 목 적

- 시군 센터의 상담소 운영 활성화 지원을 통하여 농업인의 당면 영농 애로 기술 해소 및 퇴직 전문가 활용 역량개발 지원
- 도원·시군센터의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활동 지원

□ 추진방향

- 시군 센터의 농업인상담소 기능 활성화 지원
- 도원·시군센터의 국고보조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기술지원 활동 강화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9조(교육훈련실시), 제20조(교육훈련과정 등 연구·개선), 제21조(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 연도별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사업비	999	999	999	988.8	989.6	989.6

□ 추진 요령

- 도원·시군센터에서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 등 시범사업 기술 지원, 상담 보조원 활용 등
- 지도경험이 풍부한 퇴직자를 선발하여 시군센터에 배치 활용
 - 지도공무원 전문연수(2년, 1년, 2개월) 교육생의 대체인력으로 활용
 - 신규지도인력의 멘토로서 직무 능력과 개인적 성장 지원
 - 농업인 상담을 통해 시급한 농업인의 기술적 요구를 충족하고 신규자에게 상담 지도 모델 제시
- 예산편성 :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등
 - ※ 자산취득비, 시설비, 국외여비 편성 불가

□ 2021년도 사업비 내역

(단위 : 개소, 백만원, 국비·지방비 각 50%)

사업명	시도별 사업비 내역										
	시도	소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농촌진흥사업 활력화지원 (도)	사업량	9	1	1	1	1	1	1	1	1	1
	사업비	64.8	7.2	7.2	7.2	7.2	7.2	7.2	7.2	7.2	7.2
	시도	소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농촌진흥사업 활력화지원 (시군)	사업량	154	1	2	2	3	1	1	1	1	-
	사업비	924.8	6	12	12	18	6	6	6	6	-
	시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사업량	20	18	11	14	14	20	23	18	4	-
	사업비	120	108	66	84	84	120	138	108.8	24	-

□ 행정사항

- 결과보고 : 붙임서식으로 ATIS 활용 보고(11. 30일 한)

기관명	세부사업명	사업비 집행내역(단위:천원)				추진내용
		소계	인건비	일반운영비	기타	
○○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농촌진흥사업활력화지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활동 지원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	농촌지도관 유범선	063-238-0945
		농촌지도사 윤성환	063-238-0946

□ 목적

-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여 농촌진흥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문제 해결, 중앙과 지방의 연계 강화를 위한 자율적 학습공동체 육성
 - * 전문지도연구회 과제교육 및 한국농업전문지도연구협의회 사업·활동 등 지원

□ 추진방향

- 현장문제 해결역량을 강화하고 참석률 제고 등으로 과제교육 내실화
- 농촌진흥청 등 참여 확대로 지방과 중앙의 정보교류 및 소통 강화
- 급격한 농촌진흥공무원 세대교체에 대응한 구성원 간 지식공유 강화
- 현장중심, 성과중심의 평가로 농촌진흥사업 성과 향상 지원
- 생산된 지식의 공유·확산을 위한 우수기술 자료집 체계화

□ 추진근거

- 「농촌진흥법」 제19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제29조(시상)
- 「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에 관한 규정」 제5조(전문지도연구회 설치 등), 제6조(한국농업전문지도연구협의회의 설치 등), 제7조(연구회에 대한 지원) 등

□ 사업규모

- 사업량 : 53개 연구회, 1,900명 기준
- 사업비 : 475백만원(국비)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량(명)	303	152	154	280	224	211	293	149	20
사업비(백만원)	75.75	38	38.5	70	56	52.75	73.25	37.25	5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합계
사업량(명)	9	19	13	16	5	18	14	20	1,900
사업비(백만원)	2.25	4.75	3.25	4	1.25	4.5	3.5	5	475

□ 사업내용 및 운영요령

1) 지원대상

- 전문지도연구회 임원 및 회원 :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지방농촌지도사, 지방 농업연구사, 전임계약직, 전문경력관 나군 등의 농촌진흥공무원
- 한국농업전문지도연구협의회 임원 * 임원의 범위는 협의회 회칙에 따름

2) 지원내용

- 전문지도연구회나 한국농업전문지도연구협의회 활동(과제교육, 워크숍, 임원 회의, 총회 등) 참석 또는 (비대면)과제교육과 연계한 행사·교육 관련 국내 여비
 - * 소속 연구회 활동과 관련 있는 농업관련 단체나 기관 개최 전시·교육·세미나 참여, 시·도 또는 시·군별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전문지도연구회원 역량강화 교육 등
 - * 농가 컨설팅·현장실습(실증) 등 단체(개인) 과제활동 포함
- 과제교육, 워크숍, 컨설팅, 교재 및 보고서 제작 등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개인과제활동 포함)을 위한 수용비, 재료비 등

3) 전문지도연구회 개설 및 폐지

- 신규 설립, 변경, 폐지 등은 매년 12월에 농촌진흥청(사무국)으로 신청
 - 설립 : 농촌진흥공무원 10인 이상이 합의하여 신설을 제안하거나 농촌진흥청 관련 부서에서 신설을 제안하는 경우
 - 변경 : 다른 연구회와 통폐합, 명칭 변경, 사업내용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 폐지 : 활동이 저조하거나 기타 사유로 폐지를 희망하는 경우
- 신청서 양식, 폐지 조건 등 세부사항은 전문지도연구회 운영계획에 따름

4) 전문지도연구회 회원 관리

- 연구회 회원 가입, 변경 등은 매년 1~2월에 농촌진흥청(사무국)으로 신청
 - 가입 : 가입을 희망하는 연구회 임원과 사전 협의 후 신청서 제출
 - 제명 : 활동이 저조한 회원은 농촌진흥청 또는 연구회에서 일괄 제명
- 신청서 양식, 회원 자격상실 등 세부사항은 전문지도연구회 운영계획에 따름

5) 전문지도연구회 과제활동

- 과제교육은 연간 3회 이상(1회당 2일 기준) 실시하되 10월 31일까지 완료하고 각 과제교육 후 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제출
- 과제발표, 분임토의, 특강, 실습, 현장견학, 농가컨설팅 등의 과제교육 내용은 각 전문지도연구회 활동목적에 맞는 내용으로 편성하되 생산기술 뿐만 아니라 분야별 가공, 마케팅 및 유통분야도 포함

6) 국외 기술지도

- 한국농업전문지도연구협의회 임원과 우수 전문지도연구회로 선정된 연구회의 임원이나 회원을 대상으로 지원
 - 개발도상국에 한국의 농촌지도사업 체계와 성공사례, 우수 농업기술을 전파하거나 농업선진국의 기술연수, 국제안목 확대를 위하여 추진
- *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분야 ‘국외 기술지도’ 참조
- * 국외여비 지원이 가능한 전문지도연구회와 한국농업전문지도연구협의회 임원이 소속된 지역은 별도로 통보하며 그 외 지역은 국외여비 편성 및 집행 불가

7) 한국농업전문지도연구협의회

- 협의회 운영은 「한국농업전문지도연구협의회 회칙」에 따름

8) 전문지도연구회 평가

- 전문지도연구회별 특성과 성과 완성도를 고려한 종합평가 실시
- 생산된 지식과 경험을 전체 연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평가에 반영
- 평가결과는 우수 연구회 및 우수 회원 등에 대한 포상에 반영하며 세부 평가계획은 별도 통보

□ 기타사항

- 전문지도연구회는 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자율적인 학습모임체이므로 한국농업전문지도연구협의회 의결에 따라 연구회 개설 및 폐지, 회원가입, 과제활동 등에 대한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변경된 내용은 2021년도 전문지도연구회 운영계획에 따름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농업인대학 운영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역량개발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역량개발과	농촌지도관 이옥희	063-238-1880
		농촌지도사 김현해	063-238-1881

□ 목 적

- 지역농업의 특화 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장기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합리적인 농장 경영 및 과학영농 실천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 양성
- 전문농업분야에 대한 이론의 체계화로 지식기반 사회에 적합한 농업인력을 육성하여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9조(교육훈련실시), 제20조(교육훈련과정 등 연구·개선), 제21조(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 중점방향

- 지역특산물 브랜드화 등 지역농업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품목별 전문경영인으로서의 기업가적 마인드 형성을 위한 교육
-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는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농장관리와 관련된 각종 정보수집 및 분석능력 향상에 필요한 체계적인 교육
- 교육기간은 과정별 특성에 따라 6개월 이상~1년 이내 과정으로 운영
 - 과정별 최소기준 : 월 2회 이상(회당 4시간 기준)으로 편성
 - * 1과정을 1년 단위, 상·하반기로 탄력적 운영 가능
 - 교육인원 : 20~40명 수준(교육품질 및 환경 최적화 유도)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귀농창업활성화지원사업 수료자 심화교육으로 연계 권장
- 양성평등 촉진을 위하여 '성평등 의식 또는 인권 감수성 교육'을 실시하며, 여성농업인 참여확대를 위하여 시군 여건을 고려하여 '돌봄여건 지원'
- 농업인대학 교육 품질향상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육인원 축소
 - 과정확대는 지양하고, 교육인원은 체험 위주의 학습이 가능하도록 최적화
- 농업인대학내 청년농업인과정 운영 및 여성농업인 참여율 높은 시군에는 강사와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평가시 가점 적용

- 지역 내 농업인 대상으로 교육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집합 교육, 실기 실습교육, 현장 견학 등의 방법 선택 운영
- 졸업 후 졸업생 자유편입 운영 유도 등 사후관리 체계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신속히 보급하고, 시범사업 지원, 연구사업 공동수행 등 지역농업을 선도 하는 그룹으로 육성
- 과정 운영상 필요한 자치활동, 현장학습 프로그램 등에 자율적 참가비 부담 등으로 학습 참여 및 효과를 높이도록 할 것
- 중간 탈락자를 방지하기 위한 강의/수업보충/현장실습 등 방안강구로 수료율 향상
- 곤충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기관 운영(지방농촌진흥기관) : 12개소

□ 추진계획

- 교육기간 : 2021. 1~12월(총 20회 이상, 100시간 이상)
 - * 100시간 = 형식학습 + 무형식학습(학습조직, 프로젝트 추진, 견학, 코칭, 온라인 등)
 - * 일정협조 : 10월말 학습종료 → 11월 학습평가 → 12월 대외홍보, 새해계획
- 교육장소 : 시군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 영농 현장, 온라인 학습장 등
- 시행주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및 도농업기술원
- 지원규모 : 1,890백만원(일반회계, 국비)
 - 농업인대학 운영 : 1,830백만원(146개소)
 - 곤충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기관 지원 : 60백만원(12개소)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사업량	146	(1)	1(1)	1	3	1	1(1)	1	1
사업비	1,890	5	15	10	37	10	15	10	10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량	18(2)	16	11(2)	16	14(2)	21(2)	22	19(1)	0
사업비	235	220	143	205	186	210	299	280	0

-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 농업인대학 별도편성
- * 곤충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 : 12개소(경기2, 충북2, 전북 2, 전남 2, 경남 1, 특광 3)
- * ()는 각 지역별 곤충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 개소수

□ 운영요령

○ 학사관리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 농촌진흥기관의 인적자원 최대 지원(프로그램 컨설팅, 강사지원 등)
- 농업인 대학 운영 표준매뉴얼(2013.11월)을 기본 지침으로 활용
 - * 매뉴얼은 <http://hrd.rda.go.kr> '열린마당>자료실>일반자료'에서 다운로드 가능
- 농업인교육 강사 POOL 활용(농촌진흥기관 농업기술전문가, 외부전문가 등)
 - * e-HRD 시스템 활용(hrd.rda.go.kr/ehrd_agri)

○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

- 농업기술센터 교육에 출강하는 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현실화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강사수당 등의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 보조강사, 일반강사, 특별강사의 일반 지급기준 외에도 지역 실정에 맞게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
- 특별강의, 단체 예술공연, 보조강사 범위, 동일강사 중복출강 등에 대해 지역 실정에 맞는 강사수당 지급특례 기준을 세워 추진

(참고)농업인대학-곤충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육성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곤충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지방농촌진흥기관
- 사업량 : 12개소(경기도원, 전남도원, 경남도원, 양주, 청주, 옥천, 장수, 고흥, 익산, 서울, 부산, 대전)
- 사업비(국비) : 60백만원(개소당 5백만원×12개소)

□지원기준

- 교육 과정을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 풀을 갖추고 농업인의 교육 수요가 있는 기관
 - * 교육시간은 총 100시간 이상으로 실습/현장학습이 전체시간 중 40~50% 이내로 구성
- 과정별 교육을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있어 품목별 자체강사로 활용이 가능하고 시설, 기자재, 실습장 등을 갖춘 교육에 적합한 기관
 - * 기타사항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시에 준하여 추진

□ 주요내용

【현장위주, 체험위주의 농업인대학 운영】

- 농가소득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장, 체험위주의 교육
 - * 농업기술 연계 강화 : 농업인대학 ↔ 연구자 ↔ 전문지도연구회원 연계

【농업인대학의 교육 품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 설계 지원】

- 농업인대학 교육담당자 역할 정립 및 역량강화 교육(4~5월)
 - 농업인대학 교육과정 설계 등 표준매뉴얼, 평가방법 등
 - * 농업인대학운영 표준매뉴얼 활용하여 시군별 교육과정 설계, 교육과정 운영 등
- 시군별 교육프로그램 및 일정 관리, 강사풀 및 교육자료 등 지원
 - * 시군담당자가 e-HRD 시스템 적극 활용 유도
- 시군별 농업인대학 교육과정 및 운영프로그램 제작·배부(300부) 등
- 농업인대학 우수수료자는 농업인교육의 협력대상자(강사, 멘토)로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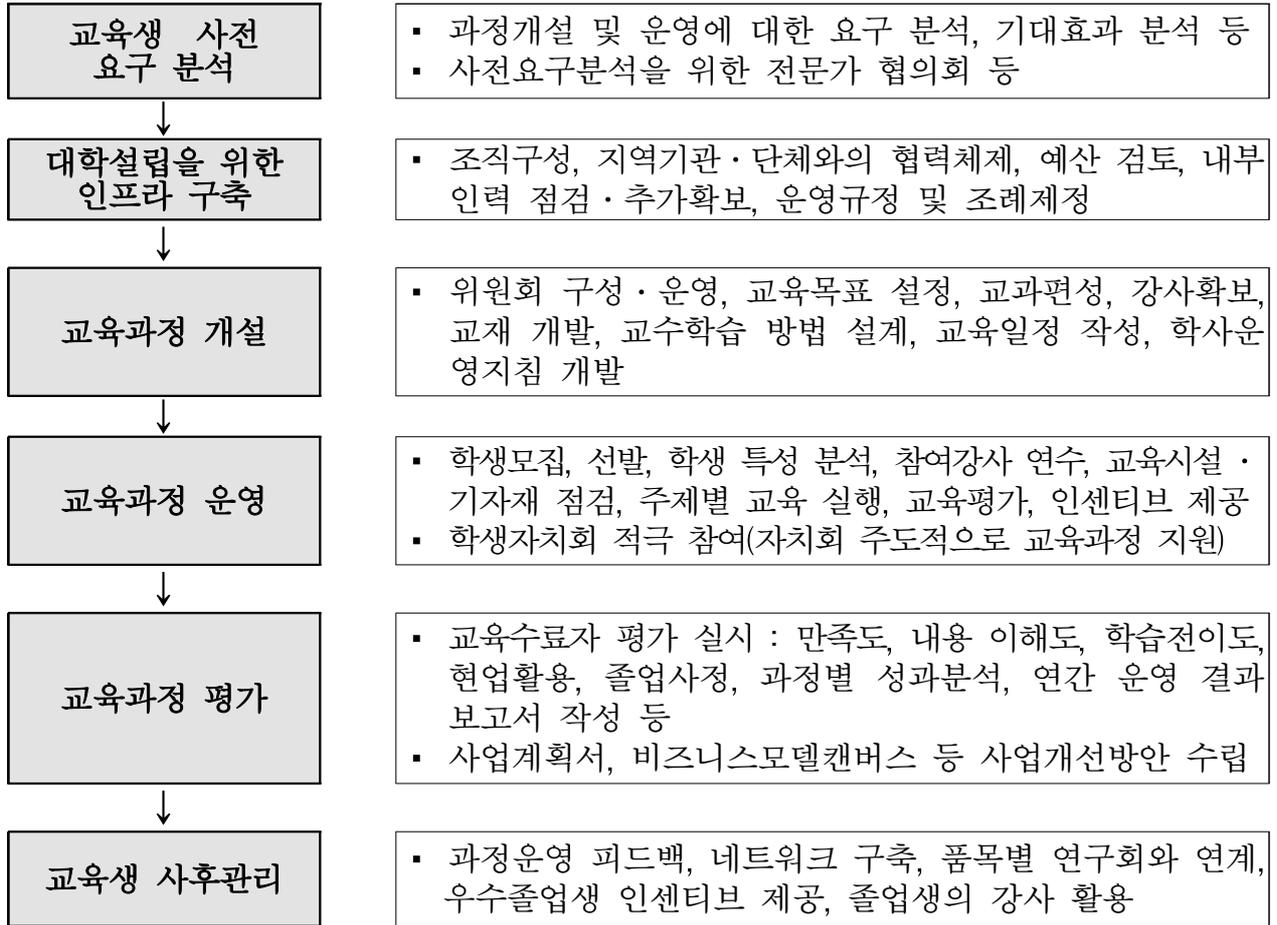
【중앙-지방간 업무협력 강화로 교육효율성 제고】

- 중앙-지방간 업무협력 강화를 위한 상호 소통활성화
 - * 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 지원, 강사지원체계 구축, 현장의견 청취 등
- 시군별 농업인대학 운영 평가(4단계) 및 평가체계 개선
 - 평가단계 : 시군센터자체평가(7월) → 도원 역량평가(8월) → 청 현장평가(9월)
→ 우수시군 최종발표(10~11월)
 - 평가개선 : 시군 및 도 평가 비율 조정, 우수사례 평가 신설 등
 - ☞ 평가결과에 의거 차년도 예산 차등지원(3단계, 개소당 국비 1천~3천만원), 농업인대학 우수기관 및 우수수료자 시상, 우수사례 홍보 등

【성과중심 농업인교육 분야별 교육평가 및 성과 확산】

- 2021년 성공사례 확산 성과보고회 개최(12월) 및 우수사례 홍보
 - 우수사례 성과 확산 : 기획보도, 웹툰, 인포그래픽, SNS 등
- 유공공무원 및 우수기관 시상 : 농업인대학 우수 수료자, 우수기관 및 유공 공무원 표창

□ 추진체계



<농업인대학 운영 모델>

□ 행정사항

○ e-HRD 시스템 입력

- 교육과정(교육 전), 수료생등록(교육 후 2주 이내), 교육실적(교육 후 2주 이내)

○ ATIS 등록

- 사업계획 : '21. 3. 31일까지, <양식 1> 참조

- 농업인대학 학습/기술수준 향상도 조사 : '21. 11. 30일까지, <양식 2> 참조

• 조사대상 : 농업인대학 교육생

• 조사방법 : 조사표에 의한 사전, 사후조사(개강일 및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 측정산식 : 수료시 학습평가 점수 - 입교시 학습평가 점수

• 조사내용 : 교육생 의식, 영농활동 및 경영의지, 자금 및 판매관리 등

시도	시군명	학습/기술수준 향상도			
		조사인원	사전점수(평균)	사후점수(평균)	사후점수-사전점수(평균)
계					

- 결과보고 : '21. 11. 30일까지, <양식 3> 참조

<양식 1>

○○○농업기술센터 ○○○대학 운영계획

센터	대학명	과정명	인원	기간	횟수	소요예산
계	00개소	00과정	00명	월	회	00천원
경기 00군	환경농업대학	전문농업	40	2~11	35	12,000
		기초농업	40	3~11	30	11,000
		농산가공	40	2~11	35	13,000

* 농촌진흥청 지원 이외의 국비 지원시군은 재원과 내역을 별지로 작성 제출
(예, 00군 농림축산식품부 지역특성화교육 000천원 등)

<양식 2>

농업인대학 학습/기술수준 향상도 조사표					
시·도 _____ 시군 성명 _____ /총점 100점 (_____ 점)					
1. 교육생 의식 (10점)	새로운 사항에 대하여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여려고 함	새로운 사항에 대하여 의심은 가나 해소하려는 노력은 다소 부족함	새로운 사항에 대하여 도입하기 전 상당한 노력을 하여 전면적으로 받아들임	새로운 사항에 대하여 위험을 판단하고 우선 소폭으로 채택하거나 위험을 분산 시키는 노력을 함	새로운 사항에 대하여 지식정보 습득에 부단히 노력하고 확실성이 확보된 후 적극적으로 행동함
(점)	②	④	⑥	⑧	⑩
2. 교육생의 영농활동 및경영의지 (10점)	주2회 이상 휴식을 취해야 하고 영농의지가 약한 편이다	주1회 휴식을 취해야 하고 영농의지가 생기고 있는 중이다	주기적 휴식을 취해야 하며, 영농의지가 많이 생겼다	가끔 피곤함을 느끼나 영농에 지장이 없고 농사를 천직으로 열심히 한다	영농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고 우수경영체로서 타의 모범이 됨
(점)	②	④	⑥	⑧	⑩
3. 농업정보 활용 (10점)	신문,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에 의존	신문, 텔레비전과 전화상담을 통해 정보수집	농업관련 전문 잡지 구독	잡지 및 농업관련기관에서 정보수집 활용	스마트폰 등 정보망을 통하여 종합정보 수집 활용
(점)	②	④	⑥	⑧	⑩
4. 자금관리(10점)	자금소요 및 조달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추정하여 계획 운영	단기의 자금소요 및 조달에 관하여 어느정도 계획 운영	단기사업계획 등 연간자금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자금관리	장기사업계획 수립으로 연차별 자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자금관리	연차별 자금 확보계획 및 월간 자금흐름을 파악하여 자금관리
(점)	②	④	⑥	⑧	⑩
5. 경영기록(15점)	영농일지를 1주 또는 한달에 1회 쓴다	영농일지를 주 2~3회 쓴다	영농일지를 매일 쓴다	단식부기로 경영기록을 한다	복식부기로 경영기록을 한다
(점)	③	⑥	⑨	⑫	⑮
6. 판매관리(15점)	판매가격 제고에 관심은 많으나, 판매시장 개척은 소극적	일부 지속적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으나, 불규칙적 판매처가 더 많음	지속적 판매처가 불규칙적 판매처보다 많음	지속적 판매처가 불규칙적 판매처보다 많고 인근 농가보다 판매 단가 높음	조직적·안정적 판매망 구축, 인근 농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
(점)	③	⑥	⑨	⑫	⑮
7. 지식 및 기술습득 (15점)	지식 및 기술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은 있음	지식 및 기술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높은 편임	영농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알고 있음	영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음	영농현장의문제를 해결하고, 인근 농가에 이 기술을 공유할 수 있음
(점)	③	⑥	⑨	⑫	⑮
8. 개인능력 개발 (15점)	연 3회미만 교육에 참가하는 정도임	연 5회미만 교육에 참가하는 정도임	언론 매체의 농업정보를 참고, 농업관련기관의 연중교육에 참여	농업관련기관의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에 지속적인 참여	교육기관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참석, 선진지 견학 등 자기주도적 학습
(점)	③	⑥	⑨	⑫	⑮

<양식 3>

○○○농업기술센터 ○○○대학 운영결과

□ 농업인대학 과정 시작년도: ○○년도

□ 2021년도 교육기수: ○○기

* 금년도 운영 농업인대학의 기수(예, '12년도 시작해서 계속했으면 금년은 10기로 표시)

□ 2021년도 과정별 수료인원

과정	입학인원	수료인원						
		계	전업농	겸업농	비농업인	성별인원		
						남	여	

* 전업농(농업소득이 전체소득의 50% 이상), 겸업농(농업소득이 50% 이하, 귀농, 부업농 포함), 비농업인(은퇴농, 농업관련 산업, 공무원·기관단체직원 등)

□ 세부과정별 교육기간 및 교육 횟수, 강사

세부과정	교육기간	교육횟수	교육시간계	형식학습			무형식학습						
				강의	토론	실습	현장견학	학습조직	자율학습	코칭등	실시간온라인	온라인	

* 국내외 현장견학은 1일 8시간 적용, 행정시간은 입학식, 졸업식, 체육행사 등의 시간

○ 해외연수 실시상황 : 기간, 연수국, 연수내용, 소요비용(공식적 비용으로 재원(지원/자부담) 구분), 특기사항, 효과 등

□ 과정별 강사확보

과정	총 강사시간		자체강사		외래강사			
	인원	시간	인원	시간	외부 전문가		사례발표	
					인원	시간	인원	시간

* 총 강사기간은 위 양식 교육시간 중 강의, 토론, 실습시의 소요시간(현장견학, 행정시간 제외)을 말하며, 특별히 같은 시간에 강사가 복수로 투입한 경우에는 각각으로 산출하여 누계로 작성

* 자체강사는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공무직 포함)이 출강한 시간

* 외래강사의 사례발표 강사는 관내, 관외 농업인으로서 순수하게 사례중심으로 발표한 강사이며, 농업인이라도 기술교육 중심이었으면 외부 전문가로 구분

□ 과정별 소요예산

과정	소요예산(백만원)					자부담 내역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예) 해외연수, 자치운영 교재비, 현장전학비 등

* 과정별 산출이 어려운 비용이라도 추정치(인원 비율 등)로 작성, 소수점 1자리로 사사오입

○ 센터에서 주관한 공식 비용(순수 자치회비 제외): 1인당 천원

□ 교육수료 후 사후관리 계획: 자유 기술

○ (가칭) 동창회 등 네트워크 구축, 품목연구회, 브랜드화 등

□ 교육 수료생 소득 분석

과정	응답인원	농가소득(평균, 백만원)		비고: 1억원 이상 소득자수(인원)	
		2020	2021	2020	2021

* 분석기준 : 2020년(교육 전)과 교육 이수 후 2021년(예상) 농가별 농업소득 추정치

* 농가소득 = 농업소득 + 농외소득(겸업소득+사업이외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

□ 홍보실적: 신문보도내용 등 주요장면 스캔 제출

□ 우수사례: 도별 2~3개소 육성, 전국·도단위 벤치마킹 교육장

□ 여성의 참여 사례(선택 작성)

항 목	내 용
여성참여율 향상 우수사례	
여성참여율 미흡 사유	

□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항 목	문제점	개선방안

□ 제도개선 등 건의사항

□ 관련사진(jpg 파일, 시군당 2매 이상)

□ 기타사항

품목별 전문교육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역량개발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역량개발과	농촌지도관 이옥희 농촌지도사 김현해	063-238-1880 063-238-1881

□ 목적

- 교육의 대상에 따라 각 단계별 목표에 따른 농업인 평생교육 체계를 확립하고 그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여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 지역에서는 평생교육체계에 따라 각 단계에 알맞게 재편하여 운영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9조(교육훈련실시), 제20조(교육훈련과정 등 연구·개선), 제21조(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 기본방향

- 다양한 현장의 교육 수요분석을 통하여 장단기 교육계획 수립 추진
 - 고도전문농업인, 전문농업인, 신중년, 청년농업인 등 교육대상자를 세분화하여 현장의 다양한 농업인 교육 수요 대응 교육
 - (고도전문농) 농업인교육의 협력대상자(강사, 멘토)로 육성
 - (전문농) 농업인대학, 품목별 장기교육, 지역특화품목교육 등 운영
 - (신중년*) 신규농업인 인생 2모작 지원 교육
 - * 신중년 :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50대)하고 재취업 또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5060세대
 - (청년농업인) 2030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창농교육
 - (여성농업인) 여성농업인의 경영참여를 위한 경영 및 마케팅 교육
 - (겸업농, 소비자) 농업입문교육, 농촌생활교육, 신수요자 교육 추진
- 단기교육(1~3일)을 줄이고 점차 중장기 교육과정(교과설계, 사전기획된 교육)으로 운영하여 교육의 질적 발전 추구
 - 소규모 집합교육 및 지속 교육과정으로 전환 권장(필요시 온라인 교육 병행)
- 양성 평등적 교육운영으로 성별 불균형적인 요인 최소화
 - 남녀 특성을 반영하는 교육프로그램 설계, 교육여건 조성 등

- 농업경영·리더십·문화 교육은 각 교육의 공통과목으로 강화하여 실시
 - 교육과정이 생산재배기술-경영-가공-마케팅·리더십·문화 등 경영체로서의 자립지향을 위한 통합적(integrated)교육 과정이 되도록 설계, 운영
- 농업기술센터를 농촌평생학습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지역주민 대상 신규농업인 교육 및 농업이해 과정을 확대하고 센터를 교육 장소로 개방하여 지역의 평생교육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전환

□ 2021년도 사업비 내역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사업량	162	1	2	2	3	1	1	1	1
사업비	1,663	10	15	25	30	10	10	10	10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사업량	22	19	13	16	15	22	24	19	
사업비	220	190	130	160	150	220	260	213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편성 과목 : 강사수당, 수용비, 재료비, 시상금, 임차료, 원고료, 보상금, 급식비, 인건비(총사업비의 10% 이내), 기타 목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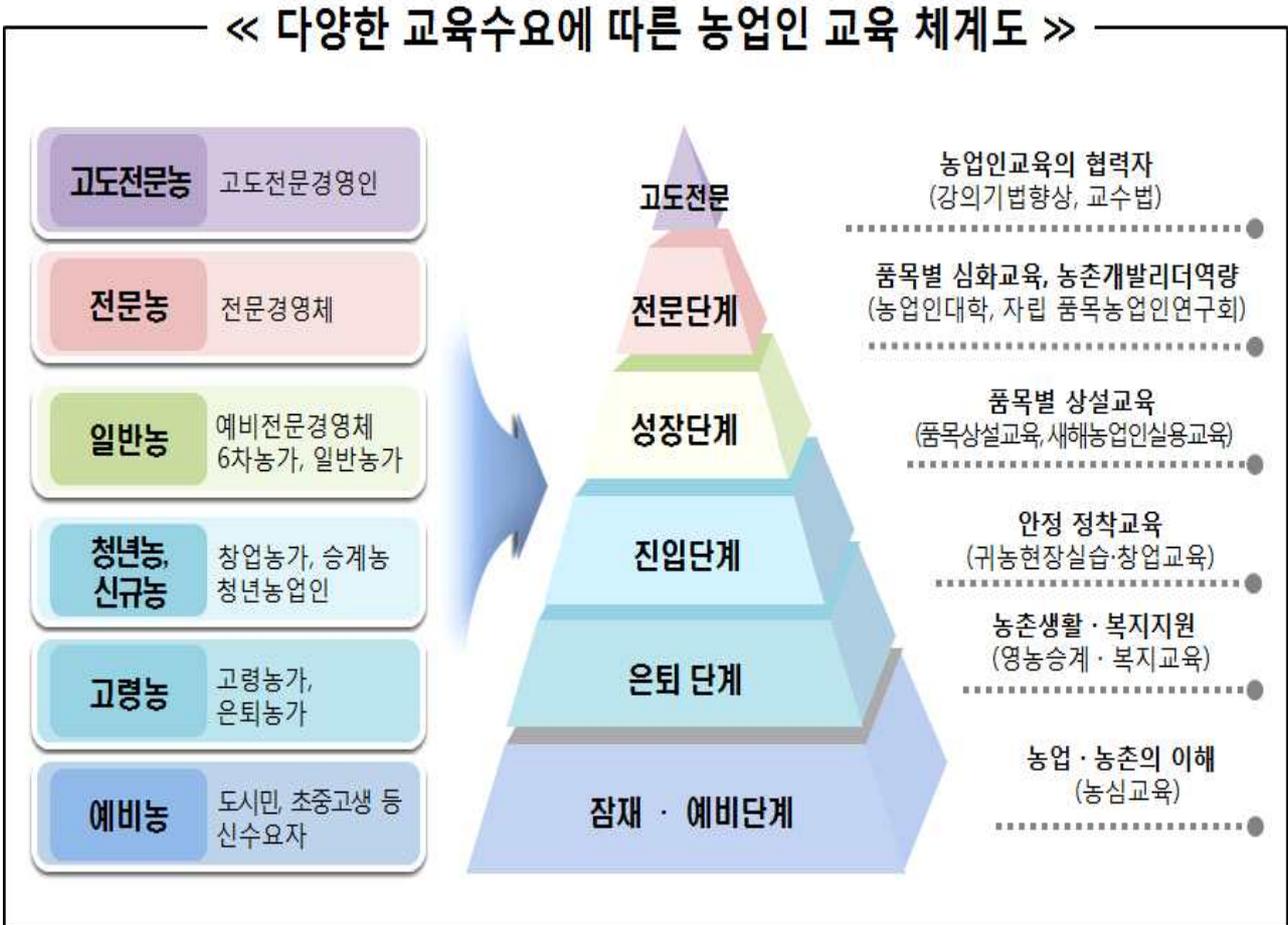
□ 농업인 평생교육체계

- 지역실정에 따라 1~3일 과정을 10회 이상 교육 과정으로 전환하고 교육인원 정예화, 농업인대학 등 중장기 과정을 확대
- 현장의 다양한 농업 수요를 반영하여 농업인의 특성에 맞는 특화교육
 - (고도전문농업인) 농업인교육의 협력대상자(강사, 멘토)로 육성
 - (전문농) 최상위 계층의 기술경영교육으로 품목별 심화교육
 - 농업인대학 : 지역특화작목 중심 농업인대학 운영(146개소, 13천명)
 - 자립단계 품목농업인연구회원(39천명)대상 우수 비즈니스모델 확산
 - * (사례) 시군당 1지역 1특화 중심 대표과정으로 육성(예, 문경사과대학)
 - (일반농) 융복합 신기술, 품목별 전문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

- 품목별 상설교육(40만명), 새해농업인실용교육(25만), 농기계안전교육(30만)
 - (신규농) 귀농한 신규농업인의 소득과 창업을 연계한 교육
 - 1단계, 기초영농기술교육 및 현장실습교육(시군센터) → 2단계, 창업교육(도원, 시군센터) → 3단계, 창업지원(도원, 시군센터) → 4단계, 농업인대학지원(도원, 시군센터)
 - (고령농) 고령농·은퇴농 대상 영농승계 및 복지교육
 - (예비농) 도시민·초중고생 대상 농업과 농촌 이해교육
- 농촌 이주 취약계층을 위한 상시교육 추진(농심교육, 생활문화교육)
- 다문화가족 등 농촌 신규 유입인력의 사회·경제적 자립기반 미흡 및 문화적 다양성과 환경변화에 따른 적응애로 해결

《교육단계》 《교육대상》 《교육방향》 《대표교육과정》

전문단계 (고도전문농)	고도전문경영인	농업인 교육의 협력자	강의기법 향상 교수법
전문단계 (전문농)	전문경영체	품목별 심화교육, 농촌개발리더 역량	농업인대학 자립 품목농업인연구회
성장단계 (일반농)	예비전문경영체 융복합농가, 일반농가	품목별 상설교육	품목 상설교육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진입단계 (신규농)	창업농가 청년농업인 신중년	안정 정착교육	영농기초기술교육 선도농가 현장실습· 창업교육
은퇴단계 (고령농)	고령농가, 은퇴농가	농촌 생활·복지지원	영농승계·복지교육
잠재·예비단계 (예비농)	도시민, 초중고생 등 신수요자	농업·농촌 이해	농심교육



<그림> 경영규모와 기술수준에 따른 농업인 평생교육 체계도

□ 주요 방향

○ 농정과 농업인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평생교육 체계 확립

- 교육과정 개발 · 운영은 평생교육 체계를 염두에 두고 추진
- 1~3일 등 단기 과정을 점차 중장기 기획 교육과정으로 전환

○ 중앙, 도, 시군단위의 특성을 살린 역할 분담

- (중앙) 도·시군단위에서 개설이 어려운 새로운 작목이나 기술 등 선진 농가들의 문제해결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 (도원) 전문강사 등 시군의 농업인 교육 지원 기능 강화
- 권역별 지역 특화 품목 중심으로 농업인 단체, 농과계 대학, 산업체와 협력하여 전문교육 및 수출교육과정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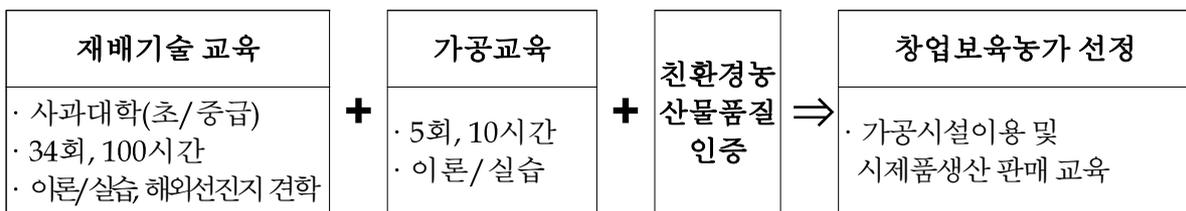
- (시군센터) 지차체 특성을 고려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농업인 영농교육 실시
 - 농업인대학, 품목별 전문(수출)교육,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농기계 교육 등 기 개발된 과정은 내용, 대상 등에 따라 평생교육체계에 반영 운영
 - 권역별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프로그램화한 교육운영 확대

○ 교육 이력관리 및 마일리지 제도 등 지도사업과 연계한 과정 운영

- 교육수료자의 이력관리 및 단계별 교육과정 운영
- 교육성과 제고를 위해 교육 참여자의 이력관리와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단계별 교육 이수 후 또는 사후 이수조건으로 시범사업 참여토록 제도화

교육실적과 지도기관사업의 연계 사례(00시 농업기술센터)

- 과정명 : 농산물가공 창업보육 프로그램
- 목 적 : 농산물 가공인력의 체계적 육성방안 마련을 통한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
- 교육과정 및 체계 : 교육과정의 목적에 따라 지속적인 실사구시 교육 실현



□ 시도별 농업인 교육 예산지원 계획

○ 예산지원 방향

- 교육과정별 예산을 지역별 필요에 따라 총량 규모에서 과정 운영
- 농업인 요구와 수요조사에 의한 과정 운영, 기술수준에 따른 단계별 교육과정 운영, 표준교과 개발 지원 등 교육 체계 정비

○ 교육예산 집행지침

- 농촌진흥법 제1, 2조에 의거 국가의 기본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신규농업인(귀농인) 교육 등 각종 교육훈련사업 추진시 농업인에 대한 보상금, 급식비, 차량지원, 기타 각종 소요경비를 각 시·군센터 및 도원 등에서 적절히 편성하여 집행(각 시·군센터 및 도원에서는 예산사용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함)

<참고>

<농업인교육훈련사업선거법저촉해소방안>질의에 대한회신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해석과-2348호('11.12.05)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②항 4호 가목 및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의 ‘법령’에 의한 행위에는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수립·시달한 기본시책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
-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이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수립된 기본시책으로서 그 안에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보상금, 차량지원, 급식비 및 기타 각종 경비”를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사용 지침을 포함하여 시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인 농업기술센터가 그 지침 범위 안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②항 4호 가목 및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의 법령에 의한 행위에 해당됨

○ 추진방법

- 중앙 : 교육기본계획 수립, 추진상황 파악, 예산확보 지원
 - 도 : 강사, 교육자료 등 시군 교육 지원
 - 시군 : 교육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교육평가
- ※ 수출농업 강화 및 관련 프로그램 보급(협력 : 수출농업지원과)

□ 행정사항

○ e-HRD 시스템 입력

- 교육과정(교육 전), 수료생등록(교육 후 2주 이내), 교육실적(교육 후 2주 이내)

○ ATIS 등록

- 사업계획 : '21. 3. 31일까지, <공통 양식> 참조
- 추진실적보고 : 상반기 '21. 6. 30일까지, 하반기 '21. 11. 30일까지, <공통 양식> 참조

<공통 양식>

품목별 전문교육 추진계획 및 실적(○○도)

* 국비지원 및 순수 도비·시군비 등 도원 및 시군센터 추진교육 모두 포함

지역	과정명	교육시기	교육시간 (hr)	교육대상	교육인원(명)		사업비 출처(단위: 천원)			
					계획	실적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시	딸기	5.1 ~ 5.2(2일)	16H	딸기재배농가						

* 품목별 교육추진 계획 및 실적 공통 양식

1. 새해농업인실용교육

□ 목 적

- 새해영농계획 수립, 농업정책, 연구 개발된 신기술 등의 교육으로 농정에 대한 일체감 조성 및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

□ 기본방침

- 교육기간은 2020. 12월 ~ 2021. 2월 또는 지역실정에 맞게 연중 운영
- 교육시간은 교과목 특성을 감안하여 최소 1일 4~5시간 편성
- 교육기간 중 다루지 못한 기술은 「품목별교육」으로 연중 실시

□ 추진방향

- 국정과제 및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정책과 연계한 교육 추진
 - * 농업정책 방향, 과수화상병 방제, 가축질병 예방, 미세먼지 대책, 공익직불제 등
- 비대면 강의역량 강화로 비대면 교육환경 변화 적극 대응
 - * 대중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SNS 비교 및 활용법 등
- 지역별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차별화된 작목기술 교육과정 운영
 - * 3분야(영농기술, 농촌자원, 농업경영)의 식량, 채소, 과수 등 편성 및 교육추진
- 감염병 예방 등 안전 지침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방식 적용
 - * 소규모 집합, 온라인교육, SNS이용 등 다양한 교육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효과 증진

□ 주요내용

- 주요 농업정책 및 최근 문제점 등을 교육내용에 포함하여 교육
 - 과수화상병 방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질병 예방, , 미세먼지 대책, 공익직불제,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진드기 매개감염병, 산불방지, 인권감수성교육 등
 - * 교육 시작 전 홍보동영상 상영, 리플릿 배부·설명 등
- 각 지역 특성 및 여건에 맞는 교육과정 개설·운영('20. 12.~'21. 2)
 - 교육분야: 영농기술, 농촌자원, 농업경영 등 3개 분야
 - * 품목기술(실습) + 경영·마케팅 교육으로 현업적용도 향상

<국민 감염병 및 가축 질병 반영 교육운영지침>

1. 코로나-19 등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준수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지역별 지침 반영 : 상시

- 대면교육 가능시 : 소규모 집합교육 운영

* 교육생 사전신청 받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발열체크 등 증상유무 체크

- 대면교육 불가 시 : 온라인교육, 동영상, SNS, 책자 등으로 대체

2. 가축질병 특별방역대책 반영 축산교육 추진

○ 특별방역대책기간 : '20. 10. 1.~'21. 2. 28.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 구제역 · AI 미발생시 : 축산교육 정상추진

* 교육장 입구에 발판소독조 등 선제적 예방조치 후 교육실시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 구제역 · AI 발생시 : 축산교육 중단

☞ 발생지역과 인접한 지역(타시군 읍면)은 발생지역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교육추진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정상 교육추진 불가 시 동영상, 책자, SNS 및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 추진계획

○ 추진기관

- 주 최 : 농촌진흥청

- 주 관 :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 후 원 : 품목농업인연구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 교육기간 : 3개월(영농기술 · 농촌자원 · 농업경영분야 중심)

○ 대상 및 인원 : 품목별 새기술 수용의지가 높은 농가 250천명

○ 사업비 지원액 : 농업인 교육사업비(전문농업기술)로 활용

※ 예산 : 교재제작비, 강사수당, 임차료, 원고료, 필요시 참가자 급식비 등

□ 추진방법

○ 1일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품목별 핵심과제를 집중 교육

- 연중 주요 영농시기별 실천과제 교육 및 현장지도와 차별화

○ 시군특성 및 현장경험을 살린 교수방법을 통하여 학습효과 극대화

- 사례분석, 질의응답 및 토의, 실물비교, 연시, 실습 등

○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참여유도 및 성과 확산

□ 기관별 역할 분담

기관별	주요 역할
농촌진흥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기본계획 수립 ▪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중앙단위 현장강사교육 추진 ▪ 분야별 농업현장강사·교재·현장 모니터링 지원 ▪ 교육 사전홍보, 우수사례 발굴, 종합평가 (유공자 포상)
도농업기술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단위 교육계획 수립 ▪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도단위 현장강사교육 ▪ 교육추진 홍보 및 강의 지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특화작목과 교육수요에 맞는 시군 교육계획 수립 ▪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추진 및 자체 홍보 ▪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결과 자체평가 및 분석

□ 교육평가

- 시군별 교육과정 중간점검, 종합평가로 개선방안 수립
 - 교육기간 중 수시 교육추진상황 협의를 통해 문제점 개선
 - 건의·요망사항 등 수렴으로 교육 및 유관기관사업 개선에 반영
- 시군별 모범적인 교육운영사례 발굴 및 확산
- 교육추진 우수 기관과 유공자에 대한 포상
 - 교육추진 성과를 올린 사례, SNS활용 사례 등

□ 행정사항

- e-HRD 시스템 입력
 - 교육과정(교육 전), 수료생등록(교육 후 2주 이내), 교육실적(교육 후 2주 이내)
- 공문 제출
 - 사업계획 : '20. 11. 30일까지
 - 결과보고 : 3회('20.12.31, '21.1.31, '21.2.28)

2. 품목별 단기교육

가. 당면과제 현장교육

□ 목 적

- 영농현장의 당면과제 및 애로기술을 해결하여 경영비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인의 영농능력 배양 및 농가소득 증대

□ 중점방향

- 영농현장에서 농업인이 요구하는 내용을 반영한 교육계획 수립추진
- 지역실정을 감안한 다양한 교육시기 및 방법 모색
- 핵심기술 중심의 구체화된 교육으로 현장애로기술 해결

□ 추진계획

- 교육시기 : 3~12월(교육기간 자율)
- 교육장소 : 시군농업기술센터, 영농현장, 선도농가 농장 등
- 대상 및 인원 : 시군 자체계획에 의함(시·군비에 의거 추진)
- 교육내용
 -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핵심전문기술 및 정보, 친환경농업기술
 - 농업인 의식전환을 위한 사례중심의 교육 실시
 - 국가 및 지방농정, 농업인 수요기술 등
- 추진방법
 - 중앙 : 교육 기본방향 제시
 - 도 : 강사, 교육자료 등 시군교육 지원
 - 시군 : 교육 실행계획수립 및 추진, 교육평가 등

□ 행정사항

- e-HRD 시스템 입력
 - 교육과정(교육 전), 수료생등록(교육 후 2주 이내), 교육실적(교육 후 2주 이내)
- 공문 제출
 - 사업계획 : '21.3.31일까지, <공통 양식> 참조
 - 추진실적보고 : 상반기 '21.6.30일까지, 하반기 '21.11.30일까지, <공통 양식> 참조

나. 지역특화 소득품목 전문교육

□ 목 적

- 지역특화 소득품목 육성을 위하여 생산과 유통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농산물 부가치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중점방향

- 지방화에 부응하여 각 도별로 자체 교육계획 수립 추진
- 도 단위 농업인교육의 특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특화품목에 대한 교육 과정 설정 및 지역민이 원하는 내용중심의 교과 편성
- 도 자체시설 및 주산단지 현장을 활용한 실기교육 등을 실시하여 생동감 있는 체험학습 제공

□ 추진계획

- 교육시기 및 기간 : 3~12월(교육기간 자율)
- 장 소 : 농업기술원, 주산단지 등
- 교육대상 및 인원 : 도 자체계획에 의함
- 사업비 : 도 비
- 교육내용 : 품목별 새기술 경영정보, 친환경농업기술, 지역별 수요기술, 국가 및 지방농정시책, 농산물 유통, 우수사례 등
- 추진방법
 - 중앙 : 교육추진 기본방향 제시
 - 도 :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교재제작, 예산확보 및 집행
 - 시군 : 교육홍보, 교육생 선발·협조 등

□ 행정사항

- e-HRD 시스템 입력
 - 교육과정(교육 전), 수료생등록(교육 후 2주 이내), 교육실적(교육 후 2주 이내)
- 공문 제출
 - 사업계획<공통 양식> : 3. 31일까지
 - 결과보고<공통 양식> : 상반기 6. 30일까지, 하반기 11. 30일까지

다. 품목별 상설교육

□ 목 적

- 시군별 주력품목에 대하여 주요 영농시기별로 실천과제교육을 연중 실시함으로써 지역 농축산물의 경쟁력 향상

□ 중점방향

- 품목별 농업인 조직을 대상으로 소집단 중심의 전문교육과정을 연중 실시하여 품목조직 육성과 농업인 교육의 연계성 강화
- 교육품목 관련 전문지도사의 조직육성 담당지도와 교육운영 지원
- 교육관련 품목조직의 성장단계별 차별화된 교육방식 운영 및 자립운영이 가능한 조직은 자율운영체제로 전환
- 여성농업인에 대한 품목별 전문교육 및 영농기술분야 교육에 참여 증진을 위한 방안 수립 시행
- 농업인 품목조직 운영과 자율적 학습활동 비교견학(벤치마킹) 확대
- 교육희망자의 단계별 교과편성 및 품목별 경영능력 향상에 필요한 기술정보자료의 수시작성 제공

□ 추진계획

- 기 간 : 3~12월(연중 3~10회)
- 장 소 : 시군 농업기술센터, 선도농가의 농장, 주산단지 등
- 대 상 : 시군 농업인 현황조사에 의하여 추진,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의 회원 등 요구조사 후 추진
- 사업비 : 국비 또는 시·군비 사업
- 교육내용
 - 현안과제 해결 토의, 실기실습, 컴퓨터이용 교육, 사전 조사표에 의한 선진농장 비교견학(벤치마킹) 등 참여식 교육 확충
 - 지역농업 여건과 교육목표, 농업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연중 학습하는 분위기 조성

□ 행정사항

- e-HRD 시스템 입력
 - 교육과정(교육 전), 수료생등록(교육 후 2주 이내), 교육실적(교육 후 2주 이내)

○ 공문 제출

- 사업계획<공통 양식> : 3. 31일까지
- 결과보고<공통 양식> : 상반기 6. 30일까지, 하반기 11. 30일까지

3. 신수요자 농업·농촌교육 및 농촌생활문화교육

가. 신수요자 농업·농촌교육

□ 목 적

- 도시 소비자 및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학생 등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친농업 마인드 제고로 농심 함양

□ 추진방향

- 도시 소비자 및 유치원·초·중·고등학 학생 대상 친농업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도시민 등 신수요자 농업·농촌교육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농촌 활력화 도모

□ 추진계획

- 기간·인원 : 연중, 희망인원
- 장 소 : 시군농업기술센터 및 유관기관시설 활용
- 대 상 : 도시민, 소비자, 유치원·초·중·고교 학생 및 교사 등
- 사업비 : 기초영농기술교육 사업비에서 통합 활용
- 내 용 : 농업기술센터 견학, 텃밭가꾸기 등 농촌체험활동, 올바른 소비활동, 농산물 안전성 등 농업의 이해

□ 행정사항

- e-HRD 시스템 입력
 - 교육과정(교육 전), 수료생등록(교육 후 2주 이내), 교육실적(교육 후 2주 이내)
- 공문 제출
 - 사업계획 : '21. 3. 31일까지, <공통 양식> 참조
 - 추진실적보고 : 상반기 '21.6.30일까지, 하반기 '21.11.30일까지, <공통 양식> 참조

나. 농촌생활문화교육

1) 여성농업인·다문화가족 생활문화 교육

□ 목 적

- 농촌생활문화교육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정서순화, 농산물에 대한 올바른 소비 촉진으로 농촌 활력화

□ 추진방향

- 다문화가족·여성농업인 등에 대한 농촌문화 이해 및 정서 함양으로 농촌 활력화

□ 추진계획

- 교육기간: 연중
- 장 소: 시군농업기술센터 및 유관기관시설 활용
- 대 상: 다문화가족·여성농업인
- 사업비: 기초영농기술교육 사업비에서 통합 활용
- 내 용: 농업·농촌의 이해교육, 농산물 가공교육을 통한 농산물 소비촉진, 체험활동, 농업기술센터 교류를 통한 지역 네트워크 확대
- 기관별 역할
 - 중앙: 기본계획 수립 및 진행 파악, 예산확보 지원, SW지원
 - 도: 강사, 교육자료 등 시·군교육 지원
 - 시군: 교육 계획 수립 및 실행, 평가

□ 행정사항

- e-HRD 시스템 입력
 - 교육과정(교육 전), 수료생등록(교육 후 2주 이내), 교육실적(교육 후 2주 이내)
- 공문 제출
 - 사업계획: '21.3.31일까지, <공통 양식> 참조
 - 추진실적보고: 상반기 '21.6.30일까지, 하반기 '21.11.30일까지, <공통 양식> 참조

2) 농업인 정보화교육

□ 목 적

- 21세기 지식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농업인전산화 이용능력 배양
- 전산을 이용 정보의 수집·분석 능력 배양 등 과학 영농 실천

□ 중점방향

- 정보화기술의 농업적 활용 마인드를 함양하고 도 및 시군 단위지역 핵심 농업인의 정보화능력 제고
- 농업용 소프트웨어 활용 확대에 경영개선 기반 구축 및 품목별 전문기술 교육과 연계하여 교육효과 제고
-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강사 초빙으로 내실 있는 정보화교육 실시

□ 추진계획

- 기간·장소 : 3~11월, 농업기술원 등 정보화 교육장이 갖추어진 곳
- 대상·인원 : 도 및 시군 자체 계획에 의함
- 강 사 : 관련공무원 및 전산 전문가, 우수 활용 농가 등
- 사업비 : 도 및 시군 자체사업비
- 주요내용
 - 농업 활동과 연계한 정보화의 필요성 및 원리, 국내외 동향
 - 인터넷 활용기법 및 홈페이지를 이용한 농산물 유통방법 교육
 - 소프트웨어 활용법, 사이버를 활용한 농산물 판매 사례 및 기법 벤치마킹 등
 - e-농장경영, 농업경영컨설팅지원시스템 활용, 홈페이지 제작·관리, 농산물 전자상거래, 운영사례 발표 등

□ 행정사항

- e-HRD 시스템 입력
 - 교육과정(교육 전), 수료생등록(교육 후 2주 이내), 교육실적(교육 후 2주 이내)
- 공문 제출
 - 사업계획 : '21.3.31일까지, <공통 양식> 참조
 - 추진실적보고 : 상반기 '21.6.30일까지, 하반기 '21.11.30일까지, <공통 양식> 참조

4. 농산물우수관리(GAP) 농업인 기본교육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농촌지도관 김대성	063-238-0980

□ 목 적

-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고자 하거나 농산물우수관리 기준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관리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기본교육 실시

□ 추진 방향

- GAP 농업인 교육과정을 별도로 개설하거나,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품목별 상설 교육 등과 연계하여 실시
 - 타 교육과정과 연계 시 농산물우수관리기준 및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 농약안전사용 등에 관한 교과목을 반드시 편성 운영
 - * 기본교육 미 이수로 인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증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 근거 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의2, 농촌진흥청 고시 2019-3호(농산물우수관리기준)
 - *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고자 하거나, 농산물우수관리 기준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 공동작업자가 실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과 정 명	농산물우수관리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이상
교육시간	2시간 이상
교육기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교육내용	농산물우수관리기준 및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 등

□ 교육기관

-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 *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 세부 추진요령

- 교육주관 : 시군 농업기술센터(도농업기술원)
 - 교육실행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 교육수요 사전조사
 - 해당 시군 내의 GAP 교육 이수 희망 농업인에 대하여 교육과정 개설 이전에 마을대표, 생산자단체, 농협, 인삼공사, 산림조합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사전수요조사를 실시
 - * 교육수요 사전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교육 희망자 중점관리
- 교육시기
 - GAP 기본교육을 개설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교육주관 기관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편성하여 운영
 - 기타 인증기관의 요청 시 상호 협의 추진
 - GAP 교육이 종료된 이후 추가 교육 신청자가 발생하여 다시 교육개설이 어려울 경우, 교육이 예정되어 있는 인근 농업기술센터로 안내하고, 인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교육이 끝난 후 교육 이수 확인서를 발급
 - * GAP교육 미이수로 인해 농업인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
- 교육장소 : 해당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교육여건이 좋은 공공 시설 등
- 교육시간 : 지역실정에 맞게 편성하여 운영하되 2시간 이상 실시
 - * 가급적 필수 교육내용이 포함된 2시간 이상 GAP 기본교육 별도과정 편성
- 교육대상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인증기관에서 통보한 농업인)
 - 농산물우수관리 기준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관리하고자 하는 자
 - GAP 인증에 관심이 있는 일반 농업인 등

○ 교육내용

- 농산물우수관리기준 및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필수)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관련 규정
- 강화되는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PLS) 및 농약 안전사용기술 등(필수)
- * 교과 과목당 시간배정은 시군의 실정에 따라 자율 편성

□ 교육 이수 확인서 발급 및 명단 통보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도농업기술원장)은 GAP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확인서(참고 1)를 발급한 후 이수확인서 발급자 명단(참고 2)을 농관원 지원장에게 통보
- 이수확인서 발급자 명단 통보처
 - 도농업기술원 : 해당 지역 농관원 지원
 - 시·군농업기술센터 : 해당 지역 농관원 관할 사무소

□ 추진 순기표

세 부 내 용	추진 시기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 교육수요 사전조사												
○ 교육 실시												

□ 행정사항

- e-HRD 시스템 입력
 - 교육과정(교육 전), 수료생등록(교육 후 2주 이내), 교육실적(교육 후 2주 이내)
- 시군농업기술센터(도 농업기술원)에서는 GAP 교육수요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세부 교육계획을 수립
- 해당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교육대상 농업인에게 교육 일정, 장소 등을 통보·홍보
- 시군농업기술센터(도농업기술원)에서는 교육 종료 후 GAP 교육 상반기 추진 실적(2021. 6. 30.) 및 하반기 추진실적(2021. 11. 30.) 등을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로 제출
 - * GAP 기본교육 추진실적은 ATIS 첨부 보고양식으로 제출
- 기본교육 후 이수확인서 발급자 명단을 농관원 지원장에게 통보

GAP 농업인 교육 및 결과 등록 체계

업무흐름	주요내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① 지침 수립</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진흥청 → 도농업기술원 및 특·광역시센터 - GAP 농업교육 기본지침 알림 - 교육 교재안, 교육자료 등 교육지원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② 교육계획 수립 및 교재안 작성</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농업기술센터(도 농업기술원) - 지역실정에 맞게 교육계획 수립 <li style="padding-left: 20px;">* 교육수요 사전조사 실시 - GAP농업인 교육용 교재 (안) 작성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③ GAP농업인 교육 실시</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농업기술센터(도농업기술원) - GAP 기본교육 과정 운영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④ 교육이수 확인서 발부</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농업기술센터(도농업기술원) - 교육이수 확인서 발급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⑤ 교육결과 통보</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농업기술센터(도농업기술원) ⇒ 농관원 지원·사무소 - (9항목) 교육기관, 교육일자, 교육장소, 교육시간, 이수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li style="padding-left: 20px;">* 교육결과는 엑셀 양식에 의거 공문 통보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⑥ 교육결과 등록</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관원 지원·사무소 - “GAP정보시스템” 교육이수자 등록 관리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⑦ 교육이수 결과 이용 및 발급</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관원 지원·사무소 - 발급 희망 농업인 기본교육 이수확인서 재발급 <li style="padding-left: 20px;">* 교육이수 결과 시스템 등록이 완료된 후 교육이수 확인서 발급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있을 경우 지원·사무소에서 확인서 발급 가능

<참고 1>

교육이수확인서 양식

기본교육이수확인서				
교육명		농산물우수관리 기본교육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교육일시 (시간)	
	주소			
위 사람은 농산물우수관리 기본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함. 2021년 월 일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 2>

GAP 기본교육 결과통보 양식

교육기관	교육일자 (8자리)	교육장소	교육시간 (분)	성명	생년월일 (8자리)	성별	주소	전화번호
○○시	20200207		120	○○○	19000101	남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300	010-0000 -0000

신규농업인(귀농·귀촌) 정착지원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역량개발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역량개발과	농촌지도관 이옥희	063-238-1880
		농촌지도사 김현해	063-238-1881

□ 목 적

-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신규농업인(귀농·귀촌인)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교육과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농장입주 현장실습 교육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9조(교육훈련실시), 제20조(교육훈련과정 등 연구·개선), 제21조(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 추진방향

- 신규농업인(귀농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체계적인 기초영농교육 지원
 - 중앙(농진청) - 도(도원) - 시군(시군센터) 연계한 기초영농교육
 - 신규농업인 - 거주지역 기술보급전문가 - 전문 농업인과의 네트워크 구축
 - 농업기술 + 농업경영 + 창업까지 일관화한 맞춤형 학습 실시
- 영농체험을 위한 선도농가 등 농장입주 현장 실습교육 지원
 - 선도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성공 귀농인 등의 농장에서 영농기술을 습득하고 안정적인 농촌정착 과정을 전수받음
 - 신규농업인 - 거주지역(시군) - 전문 농업인과의 멘토링제 운영
 - 시험연구기관 등과 연계한 연수기회 확대로 성공적 귀농 기술 지원
 - 신규농업인(귀농) 현장실습장 운영을 농산업분야 창업(일자리 창출)으로 연계
- 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 후 도단위 귀농창업프로그램 연계 강화

□ 2021년 사업내용

(가)사업별 예산내역

(단위 : 명, 백만원)

세부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재원 부담률
계	4,666	6,348	국비 50%, 지방비 50%
○ 영농기초기술교육	3,936	1,968	"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730	4,380	"

1. 영농기초기술교육

□ 목 적

- 신규농업인 등에게 체계적인 기초영농기술교육과 농업정보를 제공하여 성공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추진방향

- 신규농업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체계적 기초영농교육 지원
 - 중앙(농진청) - 도(도원) - 시군(시군센터) 연계한 기초영농교육
 - 신규농업인 희망지역 기술보급전문가- 전문 농업인과의 네트워크 구축
 - 농업기술을 기반으로 농업경영 및 기초창업기술 지원

□ 사업규모 : 3,936명 984백만원(국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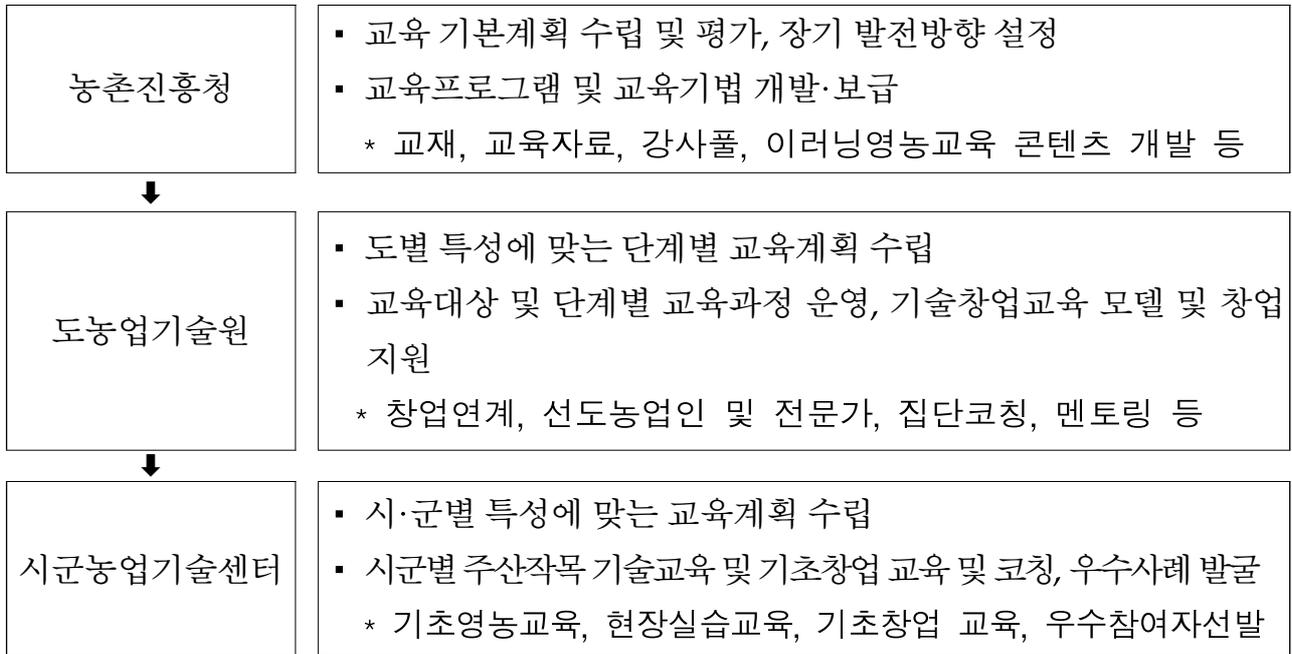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사업량	3,936	40	-	80	120	40	40	40	30
사업비	984	10	-	20	30	10	10	10	7.5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량	400	416	350	420	410	500	480	450	120
사업비	100	104	87.5	105	102.5	125	120	112.5	30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교육대상 : 농촌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자 및 청년농업인 등

□ 추진체계



□ 교육방법

○ (도농업기술원) 도별 광역단위 기초영농기술교육 추진

- 교육대상 :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 등
- 교육기간 : 1~2주(여건에 따라 확대할 수 있음)
- 반 편 성 : 귀농반(과수, 채소, 특용작물 등), 귀촌반, 농업기초반 등
- 교육과목 : 공통과목(귀농·귀촌), 과정별 과목(재배학, 토양학, 작물생리학 등)
 - * 도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와의 협력에 의한 공동과정 개설 가능
(예) 공통과목(도원, 2일) + 품목별 영농기술교육(센터, 8일)
 - * 시군에서 편성하기 힘든 과정 개설, 귀농·귀촌교육 연중 운영체계 구축

○ (시군농업기술센터) 시군별 주력작목 중심 영농정착기술교육 추진

- 교육대상 : 귀농·귀촌인 등
- 교육기간 : 수시(총 40시간 내외)
 - * 시군별 특성에 맞게 주요 영농시기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
- 운영방법 : 영농기술, 영농현장 견학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경험을 심화시켜 귀농 실천역량 및 자율적 역량배양에 기반한 일자리 창출·기초 창업교육

□ 주요내용

- 신규농업인 대상 품목중심 기초영농교육·코칭·멘토링
 - 농업기술교육: 농업의 이해, 품목별 농업기술, 농업정보 및 농업기계 활용
 - 농촌생활적용 교육: 전통문화 등 생활과학기술교육
 - 추수교육: 기 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피드백 교육 및 지원사업
- 신규농업인,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지역학습단체 등 지역의 리더와의 멘토링 지원
 - * 신규농업인의 농촌현장 밀착 지원이 가능토록 멘토링 활동비 지원
- 현장지원팀 운영: 관련전문가(농업기술원 등 분야별 전문가 포함 등) 5명 내외 구성 운영

□ 행정사항

- 농촌지도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 등록: 사업계획, 분기별실적, 결과보고
- e-HRD 시스템 입력
 - 교육과정(교육 전), 수료생등록(교육 후 2주 이내), 교육실적(교육 후 2주 이내)
- 공문 제출
 - 사업계획<양식 1>: 3.31일까지
 - 결과보고<양식 2>: 상반기 6.30일까지, 하반기 11.30일까지

2.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 목 적

- 농촌지역에 이주한 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등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창업 등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체험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률이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어촌의 활력증진에 기여

□ 추진방향

- 농촌지역에 이주한 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등에게 관심 있는 분야의 작목 재배기술 등을 선도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성공 농업(귀농)인으로부터 영농기술습득, 정착과정 상담·경영기법, 창업과정 등 연수

- 영농 초기의 경험 미숙 등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
- 농촌지역의 조기 적응은 물론, 농산업분야 창업(일자리창출) 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

□ 사업규모 : 730명(3~7개월), 2,190백만원(국비)

(단위 : 명,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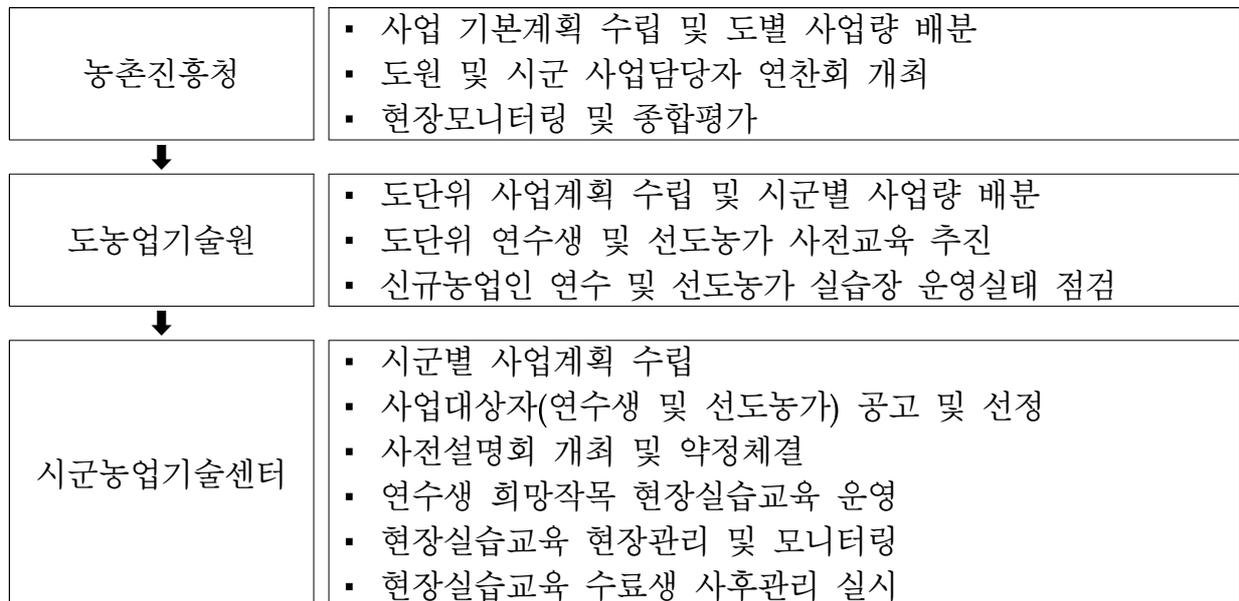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사업량	730	1	1	-	4	-	2	2	3
사업비	2,190	3	3	-	12	-	6	6	9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량	10	60	55	78	90	150	140	120	14
사업비	30	180	165	234	270	450	420	360	42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교육대상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우선 선발)
- 농촌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만40세미만 청장년층(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농식품부 2021년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독립경영에 정자에 한함) * 농식품부 청년창업농에 기 선발되어 영농정착 지원금을 수령중인 자는 사업신청 대상에서 제외

□ 추진체계



□ 운영방법

- (필수) 연수생 희망 작목별 선도농가 협력 현장실습
 - * 단순노동(작업)보다는 학습지원, 기술이전, 창업역량 강화에 역점 추진
- (선택) 오리엔테이션, 간담회, 평가회, 자율학습조직, 자가영농실습 등
- 현장실습교육 기간의 탄력적 운영 : 3~7개월, 월 160시간
 - 자가영농 실습인정(월 80시간 이내) : 사업담당 및 선도농가 협의
- 주작목(벼)+부 작목(채소) 연수가능, 선도농가 및 연수생 복수지원 가능
- 잔여 실습기간을 우수 실습농가 및 차순위 실습농가에 배정 가능
- 1명의 선도농가에 2명의 연수생이 현장실습 가능(3명 이상 연수는 불가)
- 현장실습보고서를 월 1회 이상 e-HRD 시스템에 등록
 - * 미작성자 연수비 지급불가(불가피한 경우 수기작성 가능하나 추후 반드시 e-HRD 시스템 등록)

□ 사업대상자 자격요건

【연수생】

- 농식품부 2021년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독립경영 예정자에 한함) * 농식품부 청년창업농에 기 선발되어 영농정착 지원금을 수령중인 자는 사업신청 대상에서 제외
- 농촌지역으로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귀농여부 및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선도농가】

- 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

- ①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농촌진흥사업 시범 교육장 운영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수료자를 선정시 우대 할 수 있음)
- ②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초보단계의 연수인 경우 3년 이상된 정착 귀농인도 가능)
 - * 해당 시군에 연수 관심분야의 선도농가가 없거나 연수희망자가 타지역의 맞춤형 연수를 원할 경우, 연수를 받고자 하는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확인)한 선도농가 실습장에서도 연수 가능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1. 1월 ~ 3월(지역별 여건에 따라 일정조정 가능)
- 신청기관 : 도농업기술원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
- 제출서류

【연수생】

- 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붙임 3 서식)
 - * e-HRD 시스템에 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붙임 4) 입력(필수)
- ② 보안서약서(붙임 8 서식)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붙임 9 서식)

【선도농가】

- 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붙임 5 서식)
- ②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붙임 6 서식)
 - * 운영계획서 : 연수시행자의 주작목 및 기술현황, 실습사항, 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목표의 기대효과를 포함하여 작성
 - * e-HRD 시스템에 선도농가 학습지원계획서(붙임 7) 입력
- ③ 보안서약서(붙임 8 서식)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붙임 9 서식)

□ 사업대상자 선정

【연수생】

- 도농업기술원장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수대상자 선정을 위한 시군별 후보자 목록을 작성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수대상자 선정
 - * 연수대상자 선정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또는 농정심의회에서 선정 가능
- 도농업기술원장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수대상자 선정시 2021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를 우대 할 수 있으며, 예비 귀농인의 경우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을 이수(35시간 이상)하고 해당 시군으로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 가능
- 연수대상자 선정은 연수시행자(선도농가)와의 약정체결(붙임 11 서식)을 통해 최종 선정
- 연수생은 안전을 위해 (농업인)안전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 * 가입비용은 연수생 부담

【선도농가】

- 공모를 통해 접수된 선도농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여, 도농업기술원장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선정기준에 의해 연수시행자를 최종 선정
- 도농업기술원장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선정된 선도농가와 연수생간 약정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
- 연수생과 선도농가의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약정 불가
- 약정체결은 3~7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연수생 및 선도농가 동의하에 연수 희망시 사업담당기관은 예산을 고려하여 연장하여 약정 가능
- 연수생과 선도농가는 현장실습교육 동안 각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연수생 또는 선도농가가 불성실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지정기관(도원, 시군센터)에 연수생 또는 선도농가 지정 취소를 요청 할 수 있음

□ 연수생 및 선도농가 관리

- 도농업기술원장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수생 선정 및 선도농가 현장 실습교육장 지정 완료 후 선도농가가 제출한 연수운영계획서, 현장실습교육장 관련 각종 정보자료와 연수생이 제출한 연수신청서를 서로 교환·열람하도록 하여 사전 충분한 판단기회 제공으로 약정체결이 적절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도원장 또는 시군센터소장은 일시·장소를 정하여 『사전설명회』 개최(필수)
- 도농업기술원장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약정기간 중 약정 쌍방의 약정 이행 여부를 지도·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서(붙임 12 서식)을 작성하고, 이를 관리·비치하여야 함
-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수생과 선도농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등 >

- ★ 중대한 허위사실로 약정 체결 시 약정은 무효가 되며 기 지원금액 전체 회수
- ★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연수생에 대한 약정금액 미지급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변경하고 필요시 추가 약정 체결 추진

- 연수생 및 선도농가는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약정이 가능하며, 이때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연수생과 선도농가 간 다시 약정체결 가능
- 연수생 및 선도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선도농가·연수생 pool 구축 및 연수생과 선도농가에 대한 교육 등 추진
 - * 선도농가 및 연수생 pool 구축사이트 : <http://hrd.rda.go.kr>
- 현장실습교육장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모든 연수생에게 스마트기기(휴대폰)을 활용한 「현장실습교육 출석관리시스템」을 사용하게 하고 결과를 모니터링 하여야 함
 - * <http://hrd.rda.go.kr>
 - * 『현장실습교육 출석관리시스템』 위주의 출석체크를 원칙으로 하며,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현장실습교육 출석관리시스템」과 「출근부」를 병행하여 사용 가능

□ 교육훈련비 및 교수수당 지급

【교육훈련비】

- (지급대상) 연수생
- (지원금액) 월 80만원 한도(3~7개월간)
- (지원조건) 매월 10일(1일 8시간)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며, 훈련비는 연수 시간을 계산하여 지급
 - * 10일 미만 연수시에는 교육훈련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10일 이상 연수시에도 연수기간에 비례하여 지급
 - * 1일 지급단가 산정기준(8시간 기준) : 4만원(교통비, 식비 포함)
- (1일 교육시간 한도) 8시간
- (신청방법) 연수생은 교육훈련 후 매월 단위로 출근부(사본), 입금 받을 통장 사본을 첨부한 교육훈련비 청구서(붙임 13 서식)를 도농업기술원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함
 - * 최초 신청시 및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연수약정서도 함께 제출
- (지급시기 및 방법) 도농업기술원장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수생의 월별 현장실습보고서 시스템 확인 및 제출서류 확인 후 교육훈련비를 연수생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함
 - * 출석확인 「현장실습교육 출석관리시스템」 또는 출근부(서류)를 통해 확인

【교수수당】

- (지급대상) 선도농가
- (지원금액) 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한도(3~7개월) 지급
 - * 교수수당은 연수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연수생이 2명일 경우 2배 지급
- (지원조건) 선도농가는 연수생에게 현장실습품목에 대한 실습포장과 그에 따른 재료 제공하여야 함
 - * 실습포장에서 나온 결과물은 선도농가의 소유물로 함
- (신청방법) 선도농가는 교육훈련 후 매월 단위로 연수 추진실적(결과)보고서(붙임 17 서식), 입금 받을 통장사본을 첨부한 교수수당 청구서(붙임 16 서식)를

도농업기술원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함

- * 최초 신청시 및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연수약정서도 함께 제출
- * 연수 추진실적(결과)보고서는 월별 현장실습보고서 시스템으로 대체 가능

- (지급시기 및 방법) 도농업기술원장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월별 현장실습보고서 시스템 확인 및 제출서류 확인 후 연수수당을 선도농가 은행 계좌에 입금

□ 예산 편성 기준

- 연수생 및 선도농가에 대한 경상보조(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등)

□ 제재조치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대상자(연수생 및 선도농가) 선발 또는 실습시작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실습참여를 포기하는 연수생 또는 선도농가는 다음 연도 부터 3년간 현장실습교육 사업대상에서 제외

□ 연수생 사후관리

- 도농업기술원장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현장실습교육 종료후 2년간 수료생에 대하여 관리대장(붙임 19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사후관리를 실시 하여야 함 * 사후관리내용 : 귀농여부, 영농종사 현황 등

□ 행정사항

- 농촌지도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 등록 : 사업계획, 결과보고
- e-HRD 시스템 입력
 - 교육과정 등록(담당자) : 교육 전
 - 회원가입(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선정 후 1주 이내
 - 사업대상자 매칭(담당자) : 연수생·선도농가 약정 후 1주 이내
 - 월별보고서 등록(사업대상자) : 매월
 - 수료생 등록(담당자) : 교육 후 2주 이내
- 공문 제출
 - 사업계획 : 시군별 사업대상자 선정 완료시, <양식 3> 참조
 - 추진실적보고 : 하반기 '21.11.30일까지, <양식 4>

<양식 1>

영농기초기술교육 추진계획(○○도)

시군	과정명	교육사항				비고
		횟수	시간	기간	인원	
				3.11.~11.30.		

<양식 2>

영농기초기술교육 추진실적(○○도)

1. 사업비 집행실적

시군	과정명	주요내용	사업비(단위:천원)		
			계	국비	지방비

2. 추진실적

교육실적

시군	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h)	이수율(%)	만족도(점)	입학인원			수료인원		
						계	남	여	계	남	여
		3.1. ~ 11.1.									

* 만족도 점수는 측정한 시군만 기재

현장지원팀 활동 실적

시군	인원	주요활동내용

홍보실적

시군	보도매체	보도일자	보도제목	비고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군	문제점	개선방안

4. 주요사진

○ 교육과정별 주요사진 (3~4매 이상 첨부)

<양식 3>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도)

센터	구분	성명	성별	연령	주소	이메일	휴대폰	연작	연수 기간 (개월)	영농현황			선도농가 구분				
										영농중	영농지입준비	추후결정	선도농업인	농업법인	WPL	신지식인	기타
경기 00군 1조	선도농가																
	귀농연수생																
	선도농가																
	귀농연수생																

- * 영농현황은 귀농연수생만 작성하며, 해당되는 사항에 ○표
- * 선도농가 구분은 선도농가만 작성하며, 해당되는 사항에 ○표

<양식 4>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진실적(○○도)

○ 현장실습교육 대상자 명단

센터	구분	성명	성별	연령	주소	이메일	휴대폰	연작	연수 기간 (개월)	영농현황			선도농가 구분				예산집행액(천원)
										영농중	영농지입준비	추후결정	선도농업인	농업법인	WPL	신지식인	
경기 00군 1조	선도농가																
	귀농연수생																
	선도농가																
	귀농연수생																

- * 영농현황은 귀농연수생만 작성하며, 해당되는 사항에 ○표
- * 선도농가 구분은 선도농가만 작성하며, 해당되는 사항에 ○표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군	문제점	개선방안

○ 우수사례(도별 2건)

우 수 사 례

--

○ 2019~2020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수료생 관리대장

* (붙임 19) 참조

No	성명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	주소	연수작목	연수기간(개월)	영농현황 (실습종료시)			영농현황 (실습종료1년후)			영농현황 (실습종료2년후)				
								영농중	영농진입준비	추후결정	영농중	영농진입준비	추후결정	영농중	영농진입준비	추후결정		
1	홍길동	남	2000.1.1	010-0000-0000	전주시	사과	2019.5.1.~9.30.(5개월)			○			○					
2																		

* 시군농업기술센터는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수료 후 2년간 사후관리 실시

○ 2019년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수료생 관리대장

No	성명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	주소	연수작목	연수기간(개월)	영농현황 (실습종료시)			영농현황 (실습종료1년후)			영농현황 (실습종료2년후)				
								영농중	영농진입준비	추후결정	영농중	영농진입준비	추후결정	영농중	영농진입준비	추후결정		
1	홍길동	남	2000.1.1	010-0000-0000	전주시	사과	2019.5.1.~9.30.(5개월)			○			○					
2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참고서식】

< 목 차 >

- (붙임 1) 선도농가 선정기준
- (붙임 2) 연수생 선정기준
- (붙임 3)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
- (붙임 4) 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시스템 입력)
- (붙임 5)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 (붙임 6)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 (붙임 7) 선도농가 학습지원 계획서(시스템 입력)
- (붙임 8) 보안서약서
- (붙임 9)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붙임 10)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 현황
- (붙임 11)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연수 (표준)약정서
- (붙임 12)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서
- (붙임 13) 연수생 교육훈련비 청구서
- (붙임 14) 연수생 출근부
- (붙임 15) 연수생 현장실습교육 실습일지
- (붙임 16) 선도농가 교수수당 청구서
- (붙임 17)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연수 추진실적(결과) 보고서
- (붙임 18)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수료 증명서
- (붙임 19)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수료생 관리대장

[붙임 1]

선도농가 선정기준

평가항목	배점	득점	비고
○ 연수시행 기반 및 수행능력 - 동일 또는 유사사업 수행경험 * 고용부 농산업인턴제, 농식품부 WPL 등 - 농촌진흥사업 시범교육장 및 교육이수실적 - 영농규모 및 관련분야 기술보유 현황 *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시설 등 - 실습포장, 교육장, 교재 등 구비여부	30		
○ 연수계획의 적절성 및 실효성 - 연수 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월별 실습내용의 실천 가능성 - 연수후 사후관리 및 기대효과	20		
○ 시스템 활용을 통한 코칭 및 사업화 역량 지도 - 현장실습 시스템 활용 코칭 및 지도계획 * 현장실습시스템(hrd.rda.go.kr)	30		
○ 기타여건 - 농업기업, 유관기관 등 연수관련 협력수준 - 작목반, 타 농가와의 협력 및 참여도 - 관련분야 자격증 보유 여부	20		
합 계	100		
종 합 의 견			

[붙임 2]

연수생 선정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 및 배점기준	점수
계	100점		
신청자 자격 (35점)	○ 신청자 연령(10)	○ 만 30세 이하(10), 31~40세(7), 41~50세(5), 51~60세(3), 61세 이상(1)	()
	○ 본인 포함 가족수(10) ○ 귀농후 농촌거주기간(10) ○ 2021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5)	○ 4명 이상(10), 3명(7), 2명(5), 1명(3) ○ 3~5년(10), 1~2년(7), 1년 미만(5) ○ 신청자(5), 미신청자(0) ※ 증빙서류: 주민등록관련자료(주소이력 포함)	() () ()
귀농교육 (20점)	○ 귀농교육 이수시간(20)	○ 100시간 이상(20), 71~99시간(15), 51~70시간(10), 21~50시간(5), 20시간이하(1) * 사이버교육은 수료시간의 50% 인정	()
		※ 증빙서류: 교육수료증 등	
사업규모 (10점)	○ 농지보유 및 임차규모(5)	○ 농지 6,000㎡, 대가축 2두 이상(5) 농지 6,000㎡, 대가축 2두 미만(3)	()
	○ 농업시설 및 임차규모(5)	○ 하우스 등 농업시설 1,500㎡ 이상(5) 하우스 등 농업시설 1,500㎡ 미만(3) * 임차농지 및 시설 포함	()
		※ 증빙서류: 농지원부 등 관련증빙자료	
사업계획 (20점)	○ 사업계획 수립(10)	○ 우수(10), 보통(7), 미흡(5)	()
	○ 시스템 활용의지 및 사업화 방안(10)	○ 우수(10), 보통(7), 미흡(5)	()
		※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시스템활용계획 등	
기타여건 (15점)	○ 신청자 영농 및 사업의지(10)	○ 우수(10), 보통(7), 미흡(5)	()
	○ 마을주민과 화합 및 마을기여도(5)	○ 우수(5), 보통(3), 미흡(1)	()
		※ 증빙서류: 자율양식	

[붙임 3]

<앞면>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①연 령(만)		②(이주 전) 거주지	예) 경기 수원	
③기 이수 귀농 교육 과정명	예) 농촌진흥청 제대예정군인 귀농교육('14)			
현 주소지				
연 락 처		이메일 주소		
④연수희망작목	(주작목)	(부작목)		
⑤연수희망지역	(최우선 지역)	(우선 지역)	(차선 지역)	
⑥연수희망기간				
⑦자기소개 및 연수를 받고자 하는 사유				
⑧만40세 미만의 경우	농식품부 2021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 신청사실 여부.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type="checkbox"/> 미신청			
⑨기타 특이사항				
⑩추천기관 확인란	(소속)	(직위)	성명	(인)

본인은 2021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를 받고자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일 : 2021년 월 일

신청인 : (인)

별첨 : 작성 시 유의사항(뒷면)

<뒷면>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 작성요령

- ① 연 령(만) : 사업시행연도 1월 1일 기준
- ② 이주 이전 거주지 : 귀농 전에 거주했던 지역을 간략하게 기재
- ③ 공인 귀농교육과정 : 우선 순위 선정시, 활용하고 해당 시군은 필요 시 귀농 교육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 ④ 연수희망작목 : 연수를 희망하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 ⑤ 연수희망지역 : 연수를 희망하는 지역을 순차적으로 읍면단위로 기입
(희망 선도농가(농업법인) 기재 가능)
- ⑥ 연수희망기간 : 연수희망기간을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
하되, 연수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3월~12월)
- ⑦ 연수를 받고자하는 사유 : 선도농가와와의 약정체결시 판단 근거로 활용
하는 내용이므로 구체적으로 기술(별지 사용가능)
- ⑧ 만40세 미만의 경우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 신청사실
여부에 반드시 체크
- ⑨ 기타 특이사항 : 선도농가에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 ⑩ 추천기관 : 해당 지역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귀농 총괄부서에서 연
수신청서 사전 확인·보완 후 추천 가능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붙임 4]

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시스템입력)

연수개요

시군명	연수생		선도농가 성명(예상)	현장실습기간 (희망기간)	희망 연수작목
	성명	귀농연월			
		2013. 3		4.1 ~ 9.30	

현장실습교육 동기(목적)

현장실습교육을 통해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3가지 이상)

【농업기술, 사업화기술, 사업마인드, 관계강화등】

-
-
-
-

선도농가에게 바라는 점

[붙임 5]

<앞면>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①신청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주사업장 주소			
연 락 처		이메일 주소	
②연수가능작목	(주작목) (부작목)		
③연수가능지역			
④연수가능기간			
⑤자기소개	1. 주작목의 영농규모 2. 전체 영농규모 3. 영농경력(년)		
⑥현장실습 연수 운영계획 요약			
⑦기타 특이사항			
⑧추천기관(단체) 확인란	(소속)	(직위) 성명 (인)	적합여부

본인은 2021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침에 의거 '현장실습 교육장' 지정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2021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첨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뒷면>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작성요령

- ① 신청자 : 농업인은 성명과 생년월일, 농업법인은 명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 ② 연수가능작목 : 선도농가가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 ③ 연수가능지역 : 선도농가가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기입
- ④ 연수가능기간 : 연수희망기간을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
하되, 연수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 2~12월)
- ⑤ 자기소개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 근거로 이용됨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영농규모, 영농경력, 매출액 등을 상세히 기재(필요시 별지에 작성이
가능)
- ⑥ 현장실습 연수 운영계획 요약 : 현장실습교육의 연수과정 및 연수방법 등을
기재하되, 별첨의 운영계획서를 요약하여 기입
- ⑦ 기타 특이사항 : 연수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 ⑧ 확인란 : 도농업기술원장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수시행자(선도농가)
후보자를 확인할 때에는 자질과 소양, 영농기술 수준, 연수 관련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필요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붙임 6]

<앞면>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①신청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②연수가능작목	(주작목) (부작목)		
③연수가능기간			
④영농규모 및 기술보유 현황			
⑤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⑥월별 실습사항			
⑦실습 기대효과			
⑧추천기관 확인란	(소속) (직위) 성명 (인)	적합여부	

본인은 2021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신청일: 2021년 월 일

신청인: (인)

<뒷면>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작성요령

- ① 신청자 : 농업인은 성명과 생년월일, 농업법인은 명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 ② 연수가능작목 : 선도농가가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 ③ 연수가능기간 : 연수가능기간을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 하되, 연수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3월~12월)
- ④ 영농규모 및 기술보유 현황 : 연수생이 선도농가를 선택하는 판단 자료로 이용 됨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 ⑤ 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 연수생에게 제공하는 연수 내용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
- ⑥ 월별 실습사항 : 연수희망기간 내에 월별로 진행되는 주요 현장실습 사항을 기재
- ⑦ 실습 기대효과 : 연수희망기간 내에 현장실습 수행시 기대되는 영농 기술 및 경영 능력 향상 등을 기입
- ⑧ 확인란 : 도농업기술원장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객관적인 자료에 입 각하여 선도농가 후보자의 운영계획서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선도 농가 후보자와 협의·보완 등 조치 필요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붙임 7]

선도농가 학습지원 계획서(시스템 입력)

구 분	주 요 내 용							기타 사항
개 요	시·군명	선도농가		연수생 성명 (예상)	연수희망기간		연수 지원 작목	
		성명	영농연월		시작일	종료일		
핵심 생산기술								
경영·유통 및 창업								
농촌적응 노하우								
견학·지인 소개								
기대효과								

[붙임 8]

보안서약서

본인은 농촌진흥청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현장실습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협약기간 중은 물론, 협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농촌진흥청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운영지침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담당공무원의 운영지침 상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3. 농촌진흥기관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 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현장실습교육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현장실습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성실한 자세로 현장실습교육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서약자: (인)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붙임 9]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상기 본인은 농촌진흥청의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관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성명 (인)

○○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붙임 10]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 현황

(단위 : ha, 마리, 년)

성명	연령 (만)	전화번호	이메일	영농규모 등			
				주작목명	주작목 영농규모	전체 영농규모	영농 경력

* 작성요령

- 성명 : 농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기재
- 나이 : 2021년 1월 1일 기준
- 영농규모 : 농지·시설하우스·축사 등은 평 또는 ha기준, 가축은 두수
- 영농경력 : 년 단위

[붙임 11]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연수 [표준]약정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소장을 “갑”이라 하고, 선도농가 ()를 “을”이라 하며, 연수생 ()을 “병”이라 하며, “갑” · “을” · “병”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약정기간: 2021년 월 일부터 2021년 월 일까지(개월)

2. 약정내용

제1조(총칙) “을”은 “병”에 대하여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상의 내용을 성실히 연수 및 교육 등을 제공하며, “병”은 “을”의 운영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연수 및 교육 등을 이수한다.

제2조(약정의 해약) ①“갑”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약정을 해약 또는 무효화할 수 있다.

1. “을”이 허위 사실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는 약정을 무효화할 수 있다.
2.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약정을 해약할 수 있다.
3. 기타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약정이 무효화 되었을 경우 “갑”은 “을”과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약정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해약의 귀책사유에 따라 “갑”은 “을”과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연수생과 선도농가) ①“병”은 당초 “을”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내용과 현저히 연수내용 등이 다를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을”은 “병”이 당초 “을”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연수 내용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을”과 “병”간에 연수과정 중에 발생하는 분쟁 및 이견 등에 대해 “갑”은 중재를 제공할 수 있으나 “을”과 “병”의 민사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을”은 현장실습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고예방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병”은 “을”의 지시에 따라 현장실습교육에 임하여야 한다.

⑤“병”은 현장실습교육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을”은 “병”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손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은 “을”과 “병”의 민사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지침 및 약정의 준수) ①“을”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보조금의 중단 및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②“병”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연수대상에서 제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5조(지침의 적용) 지침의 제 조항은 이 약정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7조(특약)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농촌진흥청의 지침과 본 약정 제1조내지 제6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갑”, “을”과 “병”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 특약사항: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3부를 작성하고 “을”, “병”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갑”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갑”, “을”, “병”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월 일

“갑” 시군센터소장 : 인 또는 서명

“을” 성명 : 인 또는 서명

“병” 성명 : 인 또는 서명

<붙임>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1부.

[붙임 12]

<앞면>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서

①선도농가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②연수생	(성명) (생년월일)
③연수작목	(주작목) (부작목)
총 연수기간	
④보고연수기간	
⑤ 교육의 주요 내용	
⑥기타 특이사항	
⑦종합검토의견	

2021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시행지침에 의거 상기와 같이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합니다.

2021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뒷면>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서 작성요령

- ① 선도농가 : 개인의 경우는 성명과 생년월일, 농업법인은 법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 ② 연수생 : 연수생에 따라 각각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함
 - ③ 연수작목 :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 ④ 보고연수기간 : 추진상황 보고 내용에 해당되는 연수기간을 기입(결과 보고서에서는 전체연수기간과 동일)
 - ⑤ 교육의 주요 내용 : 당초 계획에 따라 추진한 교육 내용을 기입
 - ⑥ 기타 특이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
- * 추진상황 점검시 귀농연수생이 없을시 부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외출계, 출근부 등)
- ⑦ 종합검토의견 :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한(할) 사항을 기입

[붙임 13]

()월 연수생 교육훈련비 청구서

신청인	성 명		주민 등록번호	-	
	주 소				
	은행계좌	계좌번호: (은행 지점) (예금주:)			
	총연수기간	~ (개월)		근무일수	(일)
				근무시간	(시간)
연수작목	(주작목) (부작목)				

교육훈련 내용	
------------	--

위와 같이 연수생 현장실습 근무에 따른 교육훈련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연수생 (서명 또는 인)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구비서류】 1. 연수약정서 사본(기 제출시 생략)

2. 출근부 사본

3. 통장 사본

* 연수생은 매월 시스템으로 보고 필수

[붙임 15]

현장실습교육 실습일지(연수생 작성)

[※ 해당 작업내용에 표시후 학습내역 작성]

일 자	학습구분		확 인
월 일	<input type="checkbox"/> 농약 <input type="checkbox"/> 비료 <input type="checkbox"/> 제초 <input type="checkbox"/> 파종 <input type="checkbox"/> 작물관리 <input type="checkbox"/> 환경관리 <input type="checkbox"/> 수확·선별 <input type="checkbox"/> 기타()		
	학습시간	학습내용	
	※ 필요시 사진 첨부		
월 일	<input type="checkbox"/> 농약 <input type="checkbox"/> 비료 <input type="checkbox"/> 제초 <input type="checkbox"/> 파종 <input type="checkbox"/> 작물관리 <input type="checkbox"/> 환경관리 <input type="checkbox"/> 수확·선별 <input type="checkbox"/> 기타()		
	학습시간	학습내용	
	※ 필요시 사진 첨부		

* 시군센터 여건에 맞게 경영일지 등으로 대체 가능

[붙임 16]

()월 선도농가 교수수당 청구서

사업장명	대표자
------	-----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

소재지	연락처 () -
-----	-----------

지급희망 은행계좌	계좌번호: (은행 지점) (예금주:)
--------------	---------------------------

교수수당 신청 대상기간 ~	교수수당 신청금액			원
				(₩)	
연수생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연수기간	근무일수	근무시간	청구금액
					원
					원
					원
					원

위와 같이 연수생에 대한 현장실습교육 연수시행에 따른 교수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선도농가

(서명 또는 인)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구비서류】**
1. 연수약정서 1부 사본(기 제출시 생략)
 2. 연수 추진실적(결과)보고서(연수생별 작성)
* 시스템 보고서로 대체 가능
 3. 통장 사본

[붙임 17]

<앞면>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연수 추진실적(결과) 보고서

①선도농가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②연수생	(성명) (생년월일)
③연수작목	(주작목) (부작목)
전체연수기간	
④보고연수기간	
⑤교육의 주요 내용	
⑥기타 특이사항	

2021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시행지침에 의거 상기 추진실적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선도농가는 매월 추진실적 보고, 사업종료 시에는 결과 보고서로 제출
(단, 시스템 보고자는 생략 가능)

2021년 월 일

보고자(선도농가): (인)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뒷면>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추진실적(결과) 보고서 작성요령

- ① 선도농가 : 개인의 경우는 성명과 생년월일, 농업법인은 법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 ② 연수생 : 연수생이 2인일 경우 각각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
- ③ 연수작목 :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 ④ 보고연수기간 : 추진상황 보고 내용에 해당되는 연수기간을 기입
(결과보고서에서는 전체연수기간과 동일)
- ⑤ 교육의 주요 내용 : 당초 계획에 따라 추진한 교육 내용을 기입
- ⑥ 기타 특이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

[붙임 18]

제 호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수료 증명서

성 명 :

주 소 :

생년월일 : -

연수기간 : ~ (총 시간)

연수작목 :

위 사람은 농촌진흥청이 시행하는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에 참가하여 그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2021년 월 일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

[붙임 19]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수료생 관리대장

No	성명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	주소	연수목	연수기간 (개월)	영농현황 (실습종료시)			영농현황 (실습종료1년 후)			영농현황 (실습종료2년 후)			
								영농중	영농진입준비	추후결정	영농중	영농진입준비	추후결정	영농중	영농진입준비	추후결정	
1	홍길동	남	2000.1.1.	000-0000-0000	전주시	사과	2019.5.1. ~9.30. (5개월)		○		○		○				
2																	
3																	
4																	
5																	
6																	
7																	
8																	
9																	
10																	
11																	
12																	

* 시군농업기술센터는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수료 후 2년간 사후관리 실시

<참 고>

지방단위농업인교육계획및실적종합관리

-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방단위 농업인교육 추진 계획 및 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함<양식 1, 2 활용>
- 행정사항
 - 공문 제출
 - 농업인교육 추진결과 종합<양식 1> : 상반기 6.30일까지, 하반기 11.30일까지

<관리 총괄표>

구분	ATIS 등록	e-HRD 시스템 등록	공문제출
귀농창업활성화지원	○사업계획 ○분기별실적 ○결과보고	○교육과정 등록(필수): 교육 전 ○수료생 등록: 교육후2주이내 ○교육실적 입력: 교육후2주이내	○계획: 3. 31 ○결과보고: 2회 (상반기6.30, 하반기11.30)
농업인대학 운영	○사업계획 ○분기별실적 ○결과보고	○교육과정 등록(필수): 교육 전 ○수료생 등록: 교육후2주이내 ○교육실적 입력: 교육후2주이내	○계획: 3.31 ○결과보고: 1회 (하반기11.30)
품목별 전문교육	○사업계획 ○분기별실적 ○결과보고	○교육과정 등록(필수): 교육 전 ○수료생 등록: 교육후2주이내 ○교육실적 입력: 교육후2주이내	○계획: 3.31 ○결과보고: 2회 (상반기6.30, 하반기11.30)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사업계획 ○분기별실적 ○결과보고	○교육과정 등록(필수): 교육 전 ○수료생 등록: 교육후2주이내 ○교육실적 입력: 교육후2주이내	○계획: '20.11.29. ○결과보고: 3회(월1회) ('20.12.31, '21.1.31, '21.2.28)
신규농업인 정착지원			
영농기초기술교육	○사업계획 ○분기별실적 ○결과보고	○교육과정 등록(필수): 교육 전 ○수료생 등록: 교육후2주이내 ○교육실적 입력: 교육후2주이내	○계획: 3.31 ○결과보고: 2회 (상반기6.30, 하반기11.30)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사업계획 ○분기별실적 ○결과보고	○교육과정 등록(담당자): 교육 전 ○회원가입(사업대상자): 선정 후1주이내 ○사업자매칭(담당자): 약정 후1주이내 ○월별보고서 등록(사업대상자) ○수료생등록(담당자): 교육후2주 이내	○계획: 시군별 사업대상자 선정 완료시 ○결과보고: 1회 (상반기6.30, 하반기11.30)

- ATIS(농촌지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사업계획 등록·승인 : 농진청 등록(~1월중순)→도원등록(~2월중순)→시군센터 등록(~3월중순)→도원승인(~3월하순)→농진청 승인(3월말)
 - 분기별 실적 : 매분기 말 익월 5일(시군센터), 10일까지(도원)
 - 결과보고 : 11. 30.까지

<양식 1>

농업인교육 추진결과 종합(○○도)

구 분		인원(명)			예산(천원)		주요내용	
		계	남	여	국비	지방비		
합계								
도 농 업 기 술 원	대분류	소계						
	품목특화	농업인대학					도별 중장기 농업기술교육	
	품목상설	품목별일반교육					품목교육, 자격교육 등	
		지역특화품목교육					지역특화소득품목 교육	
	실용교육	신규농업인교육					기초영농기술	
	농기계안전교육						농업기계안전사용	
기타교육						이러닝 등		
시 군 농 업 기 술 센 터	대분류	소계						
	품목특화 (장기심화)	농업인대학					시군별 중장기교육	
	품목 상설 교육 (단기 집중)	품목농업인연구회						자립단계 연구회 중심
		품목별일반교육						품목연구회 등 품목교육
		당면과제 현장교육						당면과제, 애로기술해결
		수출품목 교육						수출품목별 교육
		경영·마케팅교육						품목별 강소농, 컨설팅
		농업인자율기술교육						품목연구회 연말총회 등
		GAP교육						GAP관련제도 및 기술
		농식품 가공						농식품가공 이용방법
		농약안전관리						농약안전사용 및 관리기술
		신규농업인교육						신규농업인교육 및 멘토링
	농업기초소양교육						친농업 마인드 등	
	실용교육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생활 문화 교육	정보화교육						인터넷, SNS활용방법
		취미교양교육						농촌여가활용을 위한 기술
		여성농업인교육						농촌자원활용 및 영농기술
		다문화가족교육						농촌정착지원
		전통문화교육						전통식문화교육 등
	농심 교육	지역활동교육						축제, 박람회, 체험활동 등
		초중고생 교육						농업·농촌이해, 가치확산
기타교육	일반소비자 교육						농업·농촌이해, 가치확산	
	농기계안전교육						농기계안전 및 경정비 교육	
기타교육							공익직불제 교육 등	

- * 1. 교육체계의 분류는 <그림> “경영규모와 기술수준에 따른 농업인 평생교육 체계도”를 참조하여 시군, 도별 작성(항목이 없을 시 추가 작성 가능)
- 2. 농업인대학은 6개월~1년과정(100시간 이상)의 교육으로 계획인원은 입학생수, 실적은 수료생수를 표기
- 3. 신규농업인교육은 영농정착기술교육과 현장실습교육 인원을 합산하여 표기(누적인원 아님)
- 4. 과정별 교육운영횟수가 다를 경우 연인원, 횟수별 난에 표기
- 5. 무형식학습은 형식학습 이외에 학습프로젝트 활동, 견학 등 형식교육과 중복산입하지 않는 경우에만 산입하되, 증빙 가능하여야 함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지원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	농촌지도관 박인구 농업연구사 이상래	063-238-0941 063-238-0943

□ 목 적

- 품목농업인연구회의 협업경영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집단지도를 통한 지도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

□ 추진방향

- 역동적인 연구회 중심으로 집중 지원함으로써 전체 연구회의 활성화 도모
 - 연구회 수준별 육성 목표 및 지원내용 다각화 : 학습지원 ↔ 사업화 · 유통조직화 지원
- 기술중심에서 경영 · 마케팅 및 조직화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조(목적), 농촌진흥법 제15조(농촌지도사업의 조정),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 농촌진흥청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훈령 제1172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4.1.1. 법률 제112161호), 동법 시행령(2014.7.17. 대통령령 제25478호)

□ 사업규모

- 사업비 : 800백만원(개소당 4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량

- 사업량 : 200개회

○ 지원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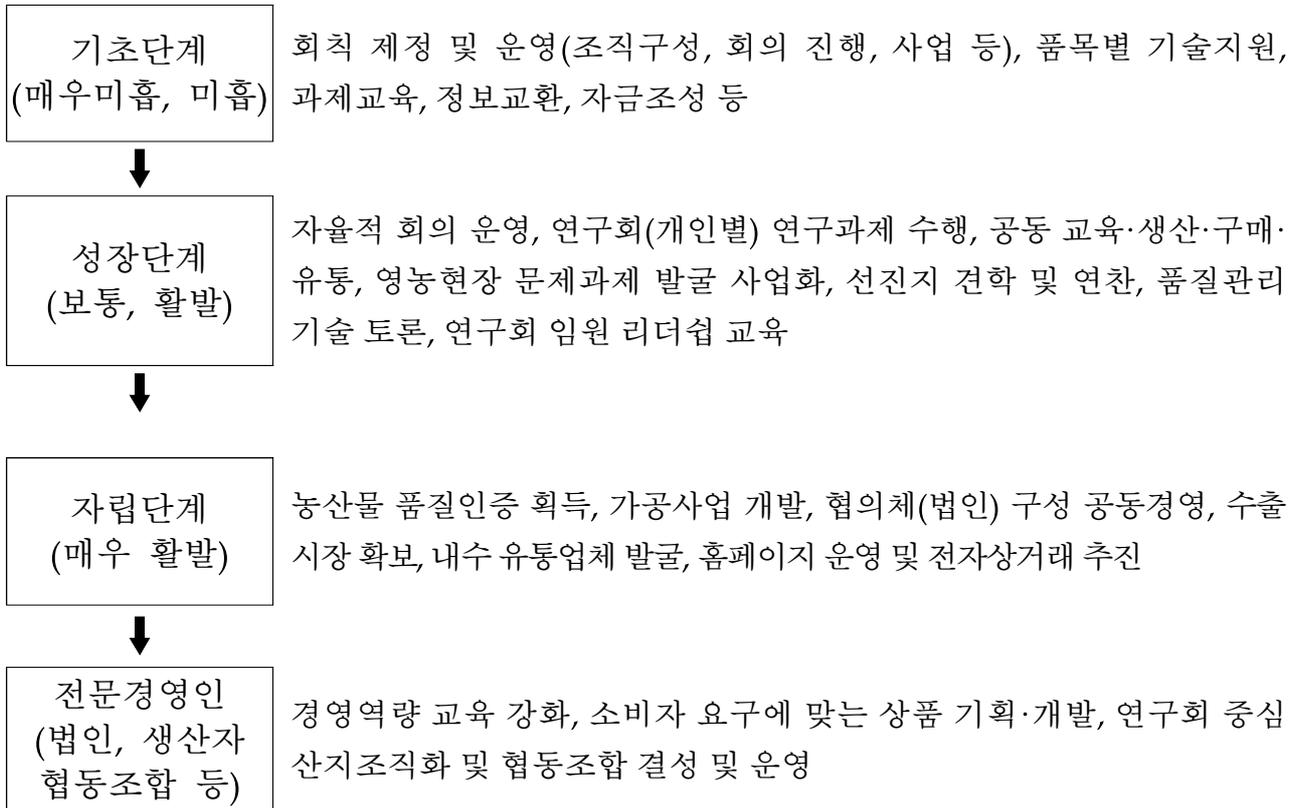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사업량	20	1	2	2	3	1	1	1	1
사업비	800	4	8	8	12	4	4	4	4
구 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량	23	20	20	26	20	28	28	20	3
사업비	92	80	80	104	80	112	112	80	12

□ 사업내용

- 기술향상과 협동경영에 관심이 많으며 연구회 활동이 활발하고 교육, 현장 학습, 영농문제해결 의욕이 강한 품목농업인연구회를 중심으로 운영 지원
 - 도원 단위 조직 : 도 단위 연합조직 중심으로 운영
 - 시군 단위 조직 : 지역 내 대표 주산작목을 중심으로 1~2개회 집중 운영
- 사업화 및 유통활성화 지원을 위해 품목연구회 조직의 재정비
 - 교육훈련, 연찬회, 연구, 토론 등에 포괄적으로 사용하되, 기술 중심에서 유통조직화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등 콘텐츠 지원 강화
 - 시군단위 이상의 품목농업인연구회에 대해서는 유통조직화 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품목농업인연구회원의 성장을 위한 활동 지원
 - 분기별 1회 이상 연구회별 연구과제 발표 등 기술정보 교환
 - 연구회 활동 및 상품 판매에 필요한 홍보, 우수사례집 제작 등
 - 품목농업인연구회 엠블럼 활용 등
 - 타 지역 동일 품목농업인연구회와의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 품목경쟁력 향상 기반조성, 현장견학 등 연구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성화
 - 농촌지도기관의 각종 전문교육을 연구회 중심으로 운영
- 품목농업인연구회 수준별, 성장단계별 지도체계 확립
 - 도원 및 시군센터에서는 모든 연구회에 기술지원, 정보제공, 사업관리를 통하여 기초단계에서 성장단계로 성장단계에서 자립단계로 끌어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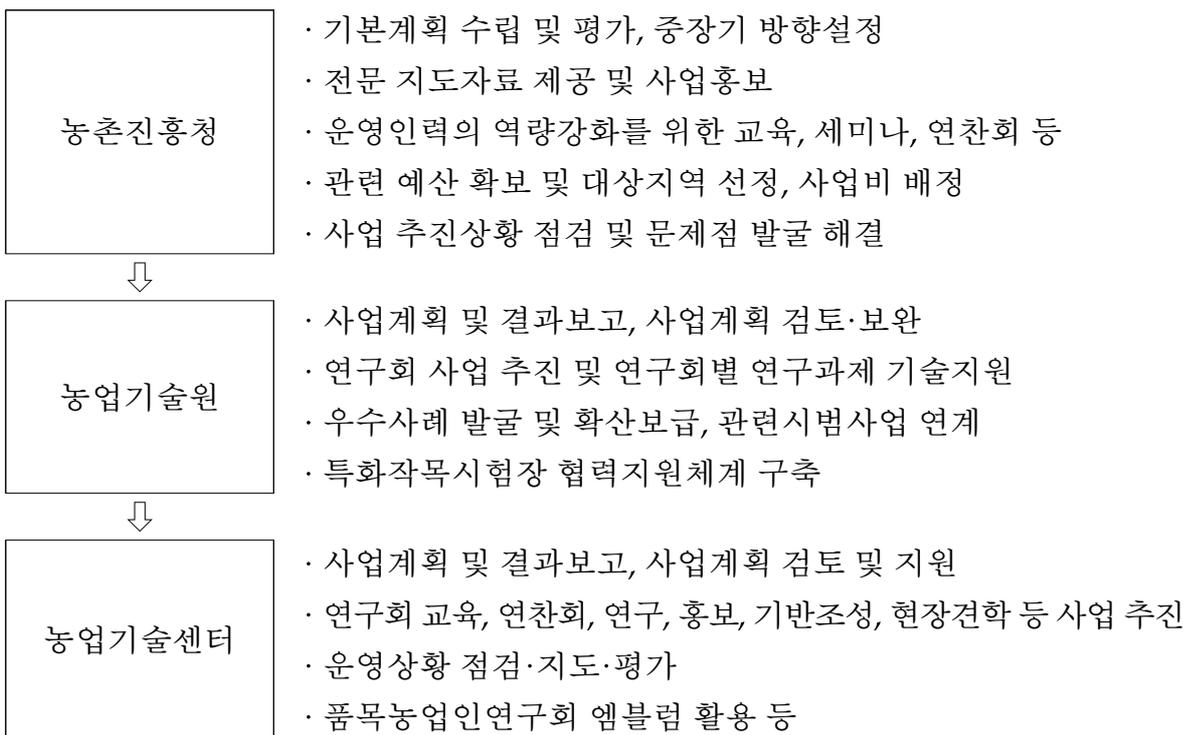
<품목농업인연구회 성장단계별 주요 지도체계>



□ 사업대상

- 품목농업인연구회

□ 추진체계



□ 기대효과

- 품목별 전문경영능력 향상 및 품목별 농업인 조직의 활성화
- 새로운 기술정보의 신속한 보급 확산 및 기술농업의 조기 정착

□ 행정사항 : ATIS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보고 : '21. 1. 30(제1호 서식)
- 사업추진 결과 보고 : '21. 11. 30(제2호 서식)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기술 교육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농촌지도관 박찬순 농촌지도사 임은성	063-238-1021 063-238-1017

□ 목적

- 우리 쌀 소비촉진을 주도할 수 있는 지역 급식관계자 및 농업인 전문 리더를 육성하여 쌀 소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함

□ 추진방향

- 쌀 관세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쌀 소비촉진 전문교육
- 쌀 관련 우리청 연구 개발기술 등을 투입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대상자별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우리쌀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 관련부서와 긴밀한 업무협조 및 분담으로 사업의 시너지 효과 향상

□ 근거법령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20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 농촌진흥법 제1조, 농촌진흥법 제15조, 제16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 사업규모

○ 사업량 및 사업비

- 우리쌀가공식품활용전문교육: 16개소, 4천명, 320백만원(국비·지방비 각 50%) * 1인당 8만원
- 다양한우리쌀활용교육: 17개소, 1만명, 300백만원(국비·지방비 각 50%) * 1인당 3만원

○ 지역별 현황

구 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특광
사업량	16개소	전문교육	1	1	1	1	1	1	1	1	1	7
	17개소	활용교육	1	1	1	1	1	1	1	1	1	8

□ 사업대상

- 우리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 대상 : 영양(교)사, 급식관계관, 쌀 소비 관련 지역리더, 외식 전문분야 전공자 등
- 다양한 우리쌀 활용교육 대상 : 농업인, 농촌지역 소비자

□ 사업내용

① 우리쌀 가공식품 활용전문교육

- 교육인원 및 대상 : 4,000명
 - 영양(교)사, 급식관계관, 쌀 소비 관련 지역리더, 쌀가공·외식사업체 운영자 등
- 시행주체 :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내용
 - 단체급식에서의 쌀소비 촉진 및 차세대 교육 역량 향상
 - 쌀에 대한 이해, 전문리더의 역할, 우리청에서 개발한 쌀품종 및 가공기술, 쌀소비 촉진방안, 차세대·단체지도방안, 관련 교구, 교재 제작 등
 - 쌀 중심의 우리 식문화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미각 형성을 위한 교육

② 다양한 우리쌀 활용 교육

- 교육인원 및 대상 : 10,000명
 - 농업인, 농촌지역소비자
- 시행주체 :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내용
 - 농업인이 소비자에게 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역량 향상
 - 쌀소비 확대를 위한 농업인의 역할, 우리청에서 개발한 쌀품종 및 가공기술, 쌀가공품·쌀요리 실습, 관련 교구, 교재 제작 등
 - 쌀 중심의 우리 식문화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미각 형성을 위한 교육

<유의사항>

- 편성불가 : 국내·외 여비, 인건비(기간제 인건비 지원 불가), 자산취득비, 시설비 및 부대비
-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행사 지원

□ 추진체계 및 추진요령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군별 사업물량 및 예산배정계획에 의거 대상자 선정, 예산집행 등을 포함한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쌀 가공기술, 체험 프로그램 교육으로 기술확산·활용
- 교육과정 운영 후 교육 만족도 및 효과분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피드백 하고 결과보고(11월)시 제출

□ 기대효과

- 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지속적인 쌀 소비 기반을 조성하고 쌀 소비 촉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지역 리더 양성

□ 행정사항 : ATIS 활용

- 2021년도 사업추진계획 보고 : '21. 3. 20 한
- 2021년도 상반기 추진현황 보고 : '21. 6. 20 한
- 2021년도 사업추진결과 보고 : '21. 11. 20 한

□ 사후관리

- 우리 쌀 가공식품 관련 교육에 대한 교육운영 실태, 교육프로그램 개발·교재·홍보물 발간물, 우리쌀 소비촉진 교육효과 등 관리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	농촌지도관 유범선	063-238-0945
		농촌지도사 윤성환	063-238-0946

1. 농업인학습단체 체계 및 육성 방향

(1) 4-H회 육성

① 목적 및 육성방향

□ 목 적

- 학생4-H회원의 인격 함양과 농심 배양으로 창조적 미래세대 육성
- 청년농업인4-H회원을 경쟁력을 갖춘 선도 농업인으로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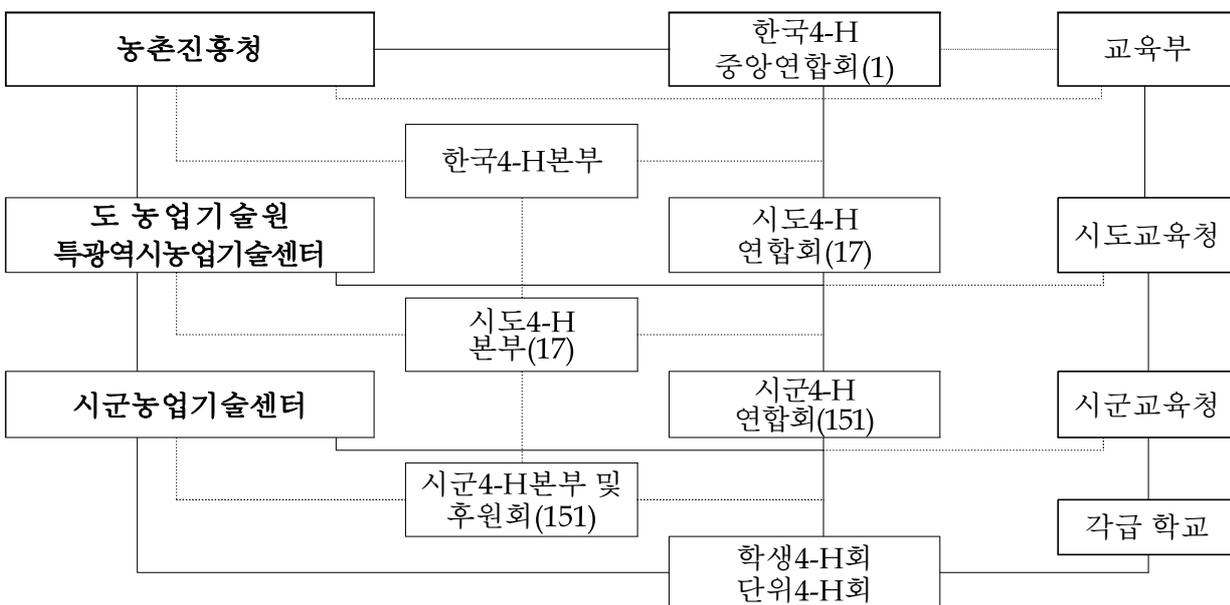
□ 추진방향

- 유·청소년(학생)4-H회원의 건전한 시민정신 습득과 농심함양
- 청년농업인(영농)4-H회원의 지식 농업경영 기반 확립
- 지역사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4-H회 육성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2조 3항 및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 4-H육성 체계



② 4-H회 조직육성

□ 기본개념

- 4-H회원 연령 : 만 9세 ~ 만 39세
- 4-H 조직유형 : 유·청소년4-H회(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 청년농업인4-H회(품목별, 지역4-H회), 일반4-H회(직장, 기타4-H회)
- 기본방향 : 회원 수요에 부응한 단위조직 육성 및 관리

□ 조직유형별 지도방향

유소년 · 청소년 4-H회

○ 육성 방향

- 초 · 중 · 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산학협동 차원에서 육성
- 인성개발활동, 봉사활동 등 특별교육과정, 정규교과목 반영 등
- 과제교육, 텃밭 가꾸기, IT활용 경진 등 활동회원의 수요중심 지도

○ 초등학교4-H회 육성

- 방향 : 자연 친화적인 태도 형성으로 농업 · 농촌의 중요성을 알리고 농심 함양으로 4-H회 활동 저변 확대
- 내용 : 4-H인성교육, 과제활동, 회의생활, 도농교류체험, 농심함양 등

○ 중 · 고등학교4-H회

- 방향 : 학교별 특성에 맞는 학교4-H지도교사 중심 육성 및 학생회원의 수요를 반영한 과제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 내용 : 4-H이념교육, 과제활동, 회의생활, 농심함양, 문화체험, 도농교류, 경진 · 야영교육, 사회봉사활동 등

○ 대학4-H회

- 방향 : 농업계열 전공자 및 4-H회에 관심 있는 대학생의 참여 유도로 농업소양이 있는 잠재 농업인력 발굴(청년농업인4-H, 일반4-H)
- 내용 : 4-H이념교육, 진로교육, 국제교류, 과제활동, 회의생활, 농심함양, 농촌청소년지도, 사회봉사활동 등

청년농업인 4-H회

○ 육성 방향

- 청년농업인에 대한 전문지식 교육 실시 및 자립 활동 기반 강화를 통하여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

○ 주요 내용

- 국제경쟁시대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경영 역량 향상
- 품목별 전문적인 생산기술,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가 양성
- 농산물직거래, 창업농교육, 정보기술 활용 등 회원 중심의 지도
- 지역중심 4-H활성화를 위한 지자체별 영농기반 조성 추진
-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및 대학4-H회원들의 단위4-H연합회 가입을 통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협력관계 구축

○ 조직구성 : 영농종사자 또는 4-H활동을 희망하는 회원

○ 조직유형

- 품목별 4-H회 : 동일 또는 유사한 작목을 재배하는 회원 조직
- 지역 4-H회 : 동일 지역에 거주하는 회원 조직

○ 4-H회 활성화 운동

- 한국농수산대, 농업관련 학교 등 농촌청소년 발굴 육성
- 핵심인재에게 4-H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및 동기 부여
- 회원의 적극적 활동 유도 및 회원관리로 평생회원제 개념을 도입하고 회비납부 유도

○ 4-H회 가입 및 등록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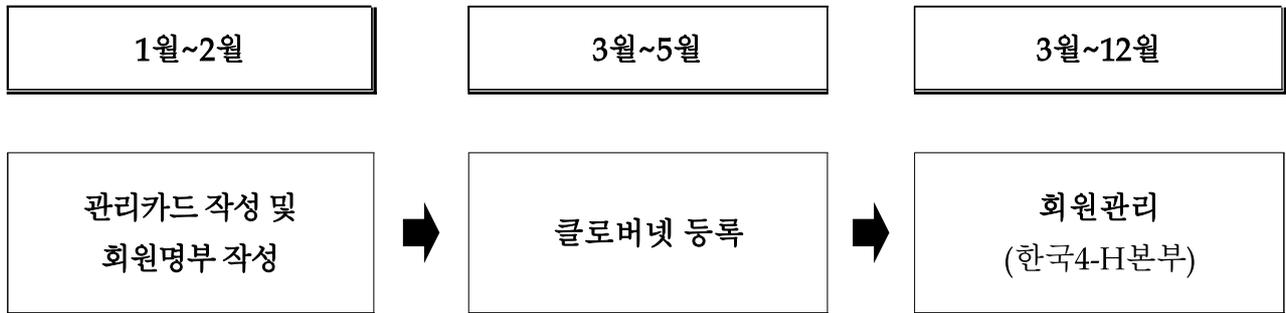
- 4-H지도교사, 지역4-H본부는 지방농촌진흥기관에 회원명부 제출
- 회원 등록 : 한국4-H본부의 '클로버넷'(프로그램)에 등록

① (학생회원) 소속 학교4-H회에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소속학교 지도교사는 클로버넷 등록 및 교내 회원명단을 농업기술센터 제출

② (대학생회원) 소속 대학4-H회에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지도교수는 클로버넷 등록 및 교내 회원명단을 농업기술센터로 제출

③ (청년회원) 가입신청서를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고, 담당자는 클로버넷 회원 등록

- 회원 등록 및 절차 추진체계



4-H연합회 육성

○ 조직 근간

- 시군4-H연합회를 기초로 하고 도 및 중앙은 회원 자율적인 운영지도
- 단위 조직별 규약에 의한 사업계획 수립, 과제 활동 및 교육행사 추진 운영

○ 각급 단위별 회원구성

- 시군4-H연합회(시군농업기술센터) : 시군 자율적으로 구성
 - 청년(영농·일반) : 4-H회와 학교 4-H회 조직이 각각 2개 이상인 시군은 단위 4-H회 임원으로 연합회 구성
 - 청년(영농·일반) : 단위4-H회가 1개인 시군은 청년(영농·일반) 4-H회원과 학교 4-H회 대표로 연합회 구성
- 도 4-H연합회(도 농업기술원) : 시군연합회 대표회원으로 구성
- 한국4-H중앙연합회(농촌진흥청) : 시도연합회 대표회원으로 구성
 - 주요활동방향 : 지도력배양, 자립역량강화, 농업경영 등 전문기술정보 습득, 시도4-H회 활동 정보교환 등

4-H지도자 양성

○ 각급 단위 4-H 후원단체 활동 장려

- 방 향 : 해당 단위 4-H회원들의 실질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직기반 마련 및 4-H 교육행사에 적극적 지원 유도
 - 지방농촌지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4-H육성업무의 효율적 추진
- 4-H 후원단체 조직 체계
 - 시군 4-H후원회(또는 4-H본부) / 시도 4-H후원회(또는 4-H본부) / 한국 4-H본부(중앙)

- 단위4-H회 우수지도자 확보 및 교육 실시
 - 마을거주 후계 농업인이나 농촌지도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지방 자체 계획으로 4-H 지도자 교육, 선진지 견학 등 개최
- 4-H지도교사협의회 조직 활성화
 - 방 향 : 학교4-H회 활동 기획, 프로그램 개발, 회원관리 강화
 - 지방농촌지도기관 4-H육성업무의 효율적 추진 협조
 - 4-H지도교사협의회 조직 체계
 - 시군4-H지도교사협의회 ⇒ 시도협의회 ⇒ 한국4-H지도교사협의회(중앙)

③ 4-H 과제활동 지도

□ 목 표 : 전 회원 1인 1과제 지도 활성화

□ 기본방향

- 시도별 지역실정에 맞는 중점 지도과제를 학생회원과 영농(일반)회원으로 구분 설정하여 실천토록 지도
- 연중 지속적인 지원으로 과제이수를 활성화하고 각급 행사시 시상반영과 사례를 발표토록 하여 사기 진작 도모

○ 과제영역(예시)

구 분	유·청소년(학생)4-H	청년(영농·일반)4-H
농심함양	자연자원, 에너지 절약, 동물과 식물	자연환경보전, 농업의 가치
문화생활	건전놀이, 취미생활, 악기다루기	전통문화, 취미생활, 문화체험
진로발달	자아탐색, 직업탐색, 진로선택	직업성장, 농업경영 등
건강과 안전	식품과 영양, 안전관리	농산물의 안전성, 안전관리
인간관계	회의생활, 의사소통, 협동생활	지도력 배양, 의사소통, 봉사정신
전문기술	IT 활용기술, UCC 제작 등	농장·경영 및 마케팅, 정보처리 등

□ 사업내용

- 체계적인 과제이수 지도 요령
 - 과제 선택 → 계획 수립 → 과제 실천 → 평가

○ 중점 실천과제 지도

- 청년농업인(영농·일반) 4-H회 : 농업경영 능력함양, 품목별 기술 과제 등
- 유·청소년(학생) 4-H회 : 농심함양 과제, 4-H 민속농악단 운영 등

□ 추진 일정

세 부 내 용	추진 시기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 과제선택 및 계획수립												
○ 과제이수 요령 교육												
○ 과제이수 기술지도												
○ 과제평가												

④ 4-H 교육행사

□ 4-H 중앙 경진대회

- 기 간 : 10월~11월 중(3일)
- 장 소 : 농촌진흥청 등
- 대 상 : 청년 및 유·청소년 4-H회원 등 800명
- 내 용 : 학생, 청년농업인 4-H활동사례 경진 및 전시

□ 4-H 지방야영교육

- 기 간 : 6월~8월중(3일)
- 장 소 : 시·도별 지역 여건에 따라 추진
- 대 상 : 청년 및 유·청소년 4-H회원
- 내 용 : 의식행사(개영식, 봉화식), 문화·체험 행사, 야영 등
* 지역실정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추진

□ 청소년의 달 행사

- 운영시기 : 5월
- 도 단위 : 시·군 단위 청소년의 달 행사 개최 지원
- 시·군 단위 : 유·청소년(학생)회원 중심으로 회원의 수요에 맞게 지역 실정을 고려한 계획 수립 추진

○ 추진 일정

세 부 내 용	추진시기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 4-H 중앙경진대회													
○ 4-H 지병야영교육													
○ 청소년의 달 행사													

⑤ 4-H 지도기반 조성

□ 4-H육성 주체별 역할 정립

○ 농촌지도기관

- 시대적 트렌드에 부합하는 4-H운동의 방향 및 발전방안 수립
- 4-H활동 주체(연합회, 지도교사, 본부 등) 협력 및 조정 역할
- 4-H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사업계획 수립 지원 등

○ 학교4-H지도교사협의회

- 학교4-H 프로그램의 계획 및 개발, 지속적 개선의 주체적 역할 강화
- 4-H활동과 연계 청소년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
- 지도교사 직무연수 프로그램의 체계화를 통한 전문성 확보
- 학교4-H회 현장 지도 및 지도기관과 협력체계 확대

○ 4-H지원 민간단체

- 농업 청소년단체로서의 질적 위상향상 및 변화적응력 강화
- 도 및 시군단위 4-H후원조직 활성화 및 자립능력 향상
- 4-H회원 육성에 필요한 교육행사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강화
- 사회문화적 변화와 회원의 지속성 확보 가능한 프로그램의 개발
- 4-H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 4-H 자원지도자의 양성 및 관리를 통해 지원자로서의 역할 확대

○ 한국4-H중앙연합회

- 4-H활동의 수혜자가 아닌 주체로서의 참여의식 확보
- 미래농업의 주역으로서 전문역량 및 품목별 기술, 경영 등 전문성 확보
- 청년농업인 참여 활성화 및 대학4-H회원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청년농업인의 전문성을 활용, 영농현장 체험학습 등의 지도자 역할 부여

□ 4-H본부(후원회) 운영

- 4-H회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 추진
 - 지도자 양성, 기금조성 및 조직체계 관리 등
- 4-H회 활동지원
 - 4-H 과제교육, 교육행사, 국제교환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 4-H 활동자료 발간 보급, 도서 및 회보 발간 지원, 수용품 개발 보급 등

□ 언론기관 주최 청소년 시상 협조

- 중 양 : 『차세대농어업경영인대상』
(주최: 서울신문사,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등)
- 지 방 : 지방신문사 등 언론기관 4-H 대상

(2) 농촌지도자회 육성

□ 목 적

- 과학영농의 선도 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 육성
- '경영개선 전문교육' 등 차별화된 방향 제시를 통한 전문 선도농업인 양성

□ 추진방향

- 지역별 특성을 기반으로 한 농업인 품목전문조직으로 육성
 - 읍·면회 및 시군연합회를 품목별농촌지도자회로 개편 유도
- 품목별 지식 정보화, 농업경영 선도, 소득 증대를 위한 전문역량 강화
- 단순 전시성,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회원 참여형 행사 전환
- 소비자와 함께하는 농촌체험사업 중심 전환, 지역 농업의 선도자로 육성, 지방단위 농업인단체의 구심체 역할 수행
 - * 품목별 생산자로 변화 추구, 개방적(젊은 층 영입) 회원관리
- 강소농 등 경영개선 교육 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선도 단체로 육성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2조 3항

2. 농업인학습단체 사업시행 주요내용

(1) 4-H회 사업시행 주요내용

□ 2021년도 사업비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			비고
	계	국비	지방비	
계	1,044	784	260	
○ 한국4-H본부 교육훈련 지원	524	524	-	
- 영농4-H회원 자율활동 지원 등	524	524	-	
○ 시도 4-H육성 및 교육지원	520	260	260	
- 4-H 양성교육	286	143	143	17개 시도
- 한국4-H 도 본부 교육지원	234	117	117	9개도

□ 추진 요령

○ 자주적 참여기반 구축과 4-H회 활성화 방안 마련

- 4-H활동 홍보 및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강화를 통해 사회적 신뢰 구축 및 대내외적 4-H활동 인식 제고
- 단위 4-H연합회 활동(회의참석, 과제활동, 문화체험 등)을 통한 지도력 배양
- 영농회원들의 신기술 습득, 6차산업화 도모를 통한 과학영농 실천

○ 각급 단위 4-H후원단체 지원 및 지도자 역량 강화

- 안정적 4-H육성을 위한 각급 단위 4-H후원단체의 조직정비 및 기금 확보
- 4-H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단계별 교육훈련체계 구축

○ 4-H활동 주관단체 지정에 따른 제도 및 기반 조성

- 4-H 장기 재원 확충 및 민간화 자생력 확보 방안 마련 및 정책유도
- 4-H운동 민간화에 따른 지방 지도기관과의 업무협약체 구성을 통한 역할 분담 및 주관단체 지원, 관리·감독 매뉴얼 확보
- 4-H회원의 적극적 참여의식 확보를 위한 회원 관리시스템 구축 및 점진적 회비제 전환 검토

4-H 양성교육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	농촌지도관 유범선	063-238-0945
		농촌지도사 윤성환	063-238-0946

□ 목 적

- 4-H회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 농업환경에 대비한 우수 농업인력 양성 및 농촌 지역사회의 활성화
- 청년농업인4-H 회원의 선진 영농기술 및 유통 등의 정보습득을 통한 유능한 청년농업인 양성
- 학생4-H지도교사 교육을 통한 학생 4-H회 활성화 추구

□ 추진방향

- 농업환경에 대비한 미래농업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품목별 전문역량 강화 및 영농정보 교류의 장(場)으로 활용
- 영농정착의지와 농심 함양을 위한 정신교육 및 4-H이념 교육 강화
- 지역과 대상, 영농시기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효과 제고
- 학생4-H회 및 청년농업인4-H회 육성을 위한 지도교사 연찬 및 교육 등의 지원으로 4-H회원 활성화 도모

□ 사업량: 17개소

시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소수	17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사업규모

- 사 업 비 : 286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6~30백만원

○ 세부추진요령

- 교육시기 : 지역별 영농시기 및 방학기간을 고려하여 설정

- 교육인원 및 대상 : 개소당 50명(청년농업인4-H회원 및 학생4-H회원, 지도교사)

○ 편성과목 : 사업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여 편성

- 기타수당, 수용비, 여비, 보상금, 임차료, 필요시 참가자 급식비 등

□ 사업대상

○ 도 농업기술원 및 특·광역시농업기술센터

- 교육대상 : 영농정착 의지가 확고하고 4-H활동에 충실한 4-H회원 및 학교 4-H회 육성을 위한 4-H지도교사 등

□ 운영요령

○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회원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운영

○ 유통교육, 전자상거래, 농산물 출하 정보검색 교육, GAP, 농가 재무관리 교육 강화 등

○ 선진농업인 농업현장 견학 및 민간 위탁교육도 가능

○ 4-H운동 이념 계승 발전을 위한 유능한 학교4-H지도교사 양성

○ 학교4-H 지도교사의 능력 향상 및 4-H회원 지도능력 강화 등

□ 기대 효과

○ 청년농업인4-H회원을 강소농 선두주자, 신지식농업인으로 양성

○ 농업환경에 발맞춘 영농기술 및 농업경영능력 강화

○ 청년농업인4-H회원의 영농 정착 지원을 통해 농촌사회 활력화 도모

○ 전국 학교4-H 지도교사의 지도능력 강화를 통한 학생4-H회 활성화

□ 행정사항 : ATIS 활용

○ 2021 4-H양성교육 결과보고 : 11. 30

한국 4-H 도 본부 교육지원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	농촌지도관 유범선	063-238-0945
		농촌지도사 윤성환	063-238-0946

□ 목 적

- 지역 4-H본부 교육활동 지원으로 우수 농업인력 양성과 지역 본부의 역량 향상을 통해 4-H운동의 체계적인 기반 구축

□ 추진방향

- 도 본부 교육 운영에 필요한 지원으로 지역4-H운동 활성화
- 중앙과 지역간 교육운영의 연계추진으로 효율적인 성과 거양

□ 사업량: 9개소

시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소수	9	1	1	1	1	1	1	1	1	1

□ 사업 규모

- 사 업 비 : 234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개소당 26백만원
- 지원기준 : 회원 수를 고려하여 도 4-H본부에 우선 배정
 - * 도 여건에 따라 시군 배정 가능
- 편성과목 : 사업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여 편성
 - 민간경상보조, 교육운영에 필요한 기타 수당, 수용비, 보상금, 임차료, 재료비, 필요시 참가자 급식비 등

□ 사업 대상

- 도 농업기술원

□ 운영 요령

-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관련교재 제작
- 지역4-H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관련행사에 필요한 지원

□ 기대 효과

- 각 도 4-H본부 교육활동 지원을 통하여 지역4-H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한국4-H운동의 활성화 및 농업·농촌 활성화 도모

□ 행정사항 : ATIS 활용

- 2021 한국4-H 도 본부 교육지원 사업 결과보고 : 11. 30

(2) 농촌지도자회 사업시행 주요내용

□ 2021년도 사업비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			비고
	계	국비	지방비	
계	559	431	128	
○ 선도농업인 육성 지원	303	303	-	
- 고품질농산물 생산교육 등	303	303	-	
○ 농촌지도자양성교육(지자체)	256	128	128	1개 사업
-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256	128	128	160개소

□ 추진요령

-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농촌지도자 회원의 의식 선진화 도모
 -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한 농촌지도자회의 차별화된 목표와 방향성 제시

- 과학영농을 실천하는 선도 전문농업인으로서의 영농기술 교육 추진
 -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등에 대한 신기술 교육
 - FTA 대응 농촌지도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사업 추진
 - 6차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촌지도자 육성 교육과정 운영
 - 품목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기술 정보 제공, 기술교육 및 지도
 - 농업환경 변화에 맞는 교육과정 다양화 추진 : 농업경영, 마케팅 등
- 지역별 특성을 기반으로 품목별 전문조직 육성
 - 읍·면 단위, 시군단위 지역특성을 고려, 품목별 농촌지도자회 육성 유도
 - 품목별 전문 특성화교육 운영으로 전문농업역량 강화
- 장소농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선도그룹으로 활용, 성공모델의 발굴·확산
 - 후계인력 발굴 및 양성을 통해 지역단위 농업인단체의 구심체 역할 수행
- 소비자와 함께하는 농촌체험사업 중심 전환, 지역 농업의 선도자로 육성, 지방단위 농업인단체의 구심체 역할 수행
 - * 품목별 생산자로 변화 추구, 개방적(젊은 층 영입) 회원관리
-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임원 및 회원 교육 강화
 - 미래 농촌사회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 함양
 - 지역사회 발전의 선도주체로서 임원 소양 및 리더십 교육 추진
 - 자율성과 창의성으로 조직 발전 및 공동체 의식함양 교육
 - 지방단위 회장단 및 회원 대상 혁신교육 확대
- 농업정보 제공 및 농촌지도자회 활동 홍보 강화
 - 농업인에게 필요한 농업정책 및 농업신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
-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선진농업 정보교류 및 연수 추진
 - 농촌지역 발전을 선도할 국제적 감각과 전문능력 함양
 - 선진농업국의 새로운 기술동향과 정보습득을 통해 국제경쟁력 제고
 - 선진국 농업인단체와의 교류 및 국제화 모색
- 농업인단체의 자율적인 조사 및 연구활동을 통해 농촌지도자회 활성화 기여
 - 농촌지도자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지원, 농업·농촌 홍보 활동 등
- 농민회관 교육시설의 리모델링을 통해 영농기술 교육장 활용기반 조성
- 선도농업인 육성을 위한 학습단체 보조금의 집행, 정산 등 투명성 제고
 - 교부결정의 목적,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보조사업 수행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지자체)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	농촌지도관 유범선 농촌지도사 윤성환	063-238-0945 063-238-0946

□ 목 적

- 과학영농의 선도 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 육성
- 청년농업인4-H회원, 후계농업인 활동 지원을 위한 자원지도자로 육성

□ 추진방향

- 지역별 특성을 기반으로 한 품목전문조직 육성으로 활성화 도모
- 품목별 지식정보화, 농업경영능력 선도, 후계세대 육성, 소득 증대
- 소비자와 함께하는 농촌체험사업 중심 전환, 지역 농업의 선도자로 육성, 지방단위 농업인단체의 구심체 역할 수행

□ 사업량: 160개소

시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소수	160	1	1	1	1	1	1	1	1	22	18	12	16	15	22	25	20	2

□ 사업규모

- 사업량: 160개소
- 사업비: 256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규모: 개소당 1.6백만원
- 세부추진 요령
 - 교육시기: 지역별 영농시기를 고려하여 설정
 - 교육인원 및 대상: 개소당 200명(농촌지도자회원 및 신규 가입자)
- 편성과목: 사업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여 편성

- 민간경상보조, 교육운영에 필요한 기타 수당, 수용비, 보상금, 임차료, 재료비, 필요시 참가자 급식비 등

□ 사업대상

- 도 농업기술원 및 특·광역시농업기술센터, 시군농업기술센터

□ 운영요령

- 농촌지도자회를 품목별 농촌지도자회로 개편
- 지도사업의 지원 내용을 개별지원에서 집단조직 중심으로 지원
- 기술정보 교류 교육, 연찬활동, 현장 견학 등 지역별 특성화된 농촌지도자회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 지원

□ 추진 순기표

세 부 추 진 내 용	추진 시기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 농촌지도자 양성 교육												

□ 기대 효과

- 품목별 농촌지도자회 활동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
- 농촌지도자회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역별 특화품목 육성
- 새로운 기술정보의 신속한 보급 확산 및 기술농업의 조기 정착

□ 행정사항 : ATIS 활용

- 2021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결과보고 : 11. 30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	농촌지도관 유범선 농촌지도사 윤성환	063-238-0945 063-238-0946

□ 목 적

- 농촌지역 고령화에 대응하여 청년 농업인의 성공모델을 구축하여 영농 조기 정착 및 농촌유입 유도
- 신기술과 결합된 경쟁력 있는 유형별(신기술, ICT, 벤처, 창업, 가공·관광, 기타) 사업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청년 농업인을 육성

□ 추진방향

- 자율형 사업(우리청 개발기술 포함) 공모 및 선정
 - (사업 공모) 개발된 신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융·복합되어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이끌어낼 자율형 사업 공모
 - * 우리청이 개발한 신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결합된 사업 공모
 - * 사업유형(5개 사업) : 신기술, ICT활용, 벤처, 창업, 가공·관광 등
 - (심사 및 선정) 타당성, 적합성, 적정성 등 사업계획 심사 등을 통한 대상자 (청년농업인) 선정
 - * 전문가, 담당자 등 심사위원회 구성 후 심사 등으로 대상자 선정
- 역량·신기술 교육 및 사업계획 보완
 - (역량 교육) 시장조사, 마케팅, 재무관리, 경영, 고객관리 등 사업대상자 경영능력 및 역량강화 교육 추진
 - * 도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민간 등의 전문가에 의한 교육(직접·위탁 교육)
 - (신기술 교육) 아이디어와 접목 가능한 신기술에 대한 전문교육
 - * 신기술 해당분야 전문가를 통해 사업실용화 교육을 추진
 - (집중컨설팅) 창업, 전문기술(가공), 제품개발 등 사업 특성에 따른 전문가 컨설팅
 - * 지도기관, 대학, 기업, 명인 등을 활용하여 사업특성에 맞는 컨설팅 지원

- (사업계획 보완) 교육·컨설팅을 통해 나타난 초기 사업계획의 문제점 보완 후 사업계획을 구체화·실용화

* 농진청·도농업기술원·시군센터·외부전문가로 자문위원회 구성하여 사업계획 보완

○ 사업비 지원 및 성공모델 확산

- (사업 지원) 보완된 사업계획을 통한 사업비 지원

* 신제품 개발, 가공·생산·상품화, 마케팅, 시제품·CI 제작, 체험교육 등 사업비 지원

- (모델 확산) 내·외부 사업평가에 의한 성공모델 선정 및 홍보

* 사업평가 및 정량적 분석을 통한 청년농업인 성공모델 선정

*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공모델 홍보·확산

□ 사업량: 40개소

시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소수	40	-	-	1	-	-	-	1	-	4	5	4	4	6	5	4	5	1

□ 사업규모

○ 사업량: 40개소

○ 사업비: 2,000백만원(국비 45%, 지방비 45%, 자부담 10%)

○ 규모: 개소당 50백만원

○ 사업대상: 만18~39세 청년농업인으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세부추진 요령

- 신기술+아이디어 등이 포함된 자율형 사업 공모 후 아이디어 사업 성공을 위한 역량개발·기술교육·집중컨설팅을 실시하여 현장 중심의 맞춤형 성공모델을 구축하여 홍보

- 사업유형: 5개 유형(신기술, ICT활용, 벤처, 창업, 가공·관광 등)

○ 사업 지원내용

역량개발 + 기술교육 지원	·총 사업비의 10%를 운영비(사업자 자체)로 편성하여 운영 * 사업자는 증빙자료 제출 및 정산 ·교육운영 : 도농업기술원·시군센터·기타교육기관 등
○역량개발교육 : 시장조사, 마케팅, 재무관리, 경영, 고객관리 등	
○신기술 교육 : 개발된 신기술, 창업, 전문기술(가공), 제품개발 컨설팅 등	

사업비 지원	·총 사업비의 90% 지원 ·사업수행 : 도농업기술원·시군센터
○가공·생산·상품화 및 신제품 개발 비용	
○마케팅, 시제품·CI 제작, 포장재 등 유통개선 지원 및 브랜드 개발 등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제작 및 홍보,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 편성과목

- (역량개발, 기술지원 교육)

교육운영에 필요한 기타수당(멘토수당 포함), 일반수용비, 재료비, 구료비, 보상금, 임차료, 현장실습교육 농가(보상금) 및 사업대상자에 대한 교육비, 사업관리를 위한 국내여비(총사업비의 10% 이내) 등

* 도농업기술원은 사업대상자에 대한 교육 예산 편성

- (사업비 지원)

신제품 개발 비용, 가공·생산·상품화, 마케팅, 시제품·CI 제작, 포장재 등 유통개선 지원 및 브랜드 개발 등,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제작 및 홍보,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 단순 시설·장비, 농기계, 기계, 저장시설, 소모성 재료비 등 지원 불가

□ 사업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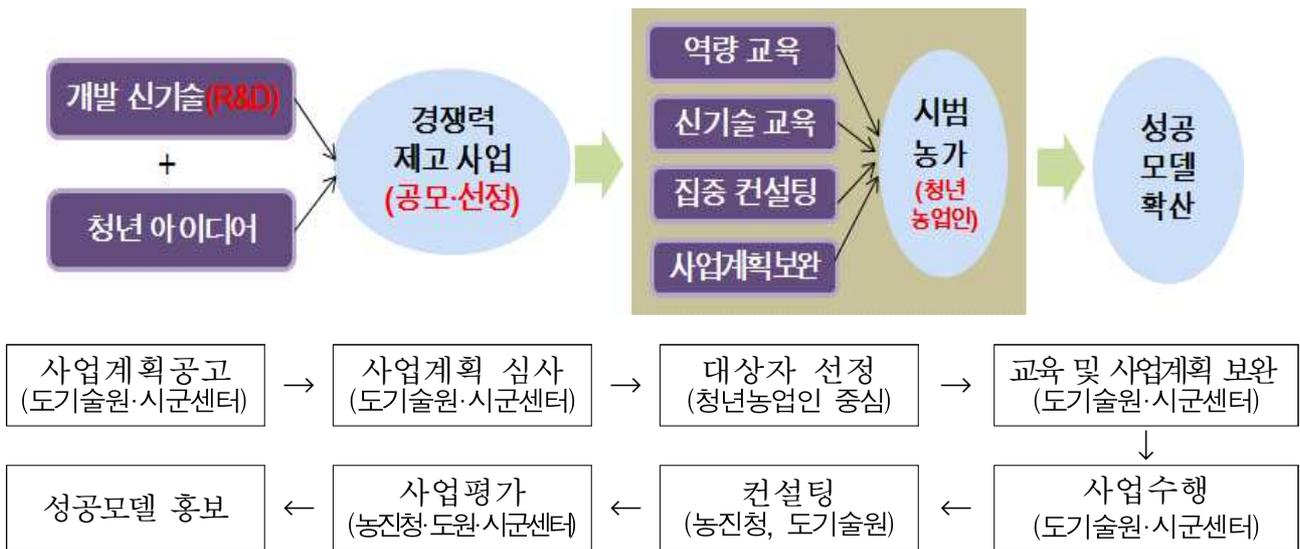
- 도 농업기술원 및 특·광역시농업기술센터, 시군농업기술센터

□ 운영요령

- 신기술+아이디어 등이 포함된 자율형 사업 공모 및 선정
- 기술 교육, 연찬활동, 현장 견학, 컨설팅 등 사업 성공을 위한 역량개발·기술교육·집중컨설팅을 실시
-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비 지원
- 현장 중심의 맞춤형 성공 모델 구축 지원 및 홍보

□ 추진 순기표

세 부 내 용	추진 시기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 기대 효과

- 청년 농업인의 농업과학기술 역량 향상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공모델 홍보를 통해 젊은 농업인을 농업·농촌에 정착토록 하여 농촌지역 활력화에 기여

□ 행정사항 : ATIS 활용

- 2021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컨설팅 후) 계획 보고 : 3. 30
- 2021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결과보고 : 11. 30

생활지도재농촌여성리더 양성 교육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농촌지도관 장선화 농촌지도사 유지현	063-238-1022 063-238-1024

□ 목 적

- 농식품의 생산·소비·유통 주체로서의 여성농업인 전문 역량 강화
- 후계 여성농업인 활동 지원을 통한 농촌지역 여성리더 양성
- 농업경영 참여 및 가족원의 협의경영 활성화로 농촌여성 지위 및 권익 향상

□ 추진방향

- 농촌여성 학습단체 운영 내실화와 후계여성 인력 발굴로 지역사회 농업인단체의 구심체 역할 수행 및 농촌사회 활력화 유도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생산, 가공, 체험 등 농촌자원 연계 융복합 기술을 품목별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해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
- 농가공동경영을 위한 가족경영협약으로 농촌여성 경영능력 및 직업적 지위 향상
-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을 위한 소비자와 함께하는 도농교류 활성화 등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제18조(농업인 조직의 육성),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제10조(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 제12조(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

□ 사업규모

- 사업량 : 32개소
- 사업비 : 224백만원(개소당 7백만원, 국비·지방비 각 50%)
- 시도별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소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량	32	1	1	1	1	1	1	1	1	4	4	2	2	2	4	3	2	1
사업비	224	7	7	7	7	7	7	7	7	28	28	14	14	14	28	21	14	7

□ 사업내용

- 농촌여성 학습단체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 (의식 강화) 조직의 정체성, 양성평등 의식, 회원의 내적 성장 등
 - (다양한 활동 지원) 지역별 특성화된 교육, 연찬, 현장견학, 도농교류, 재능기부 봉사활동 등으로 여성농업인 사회 참여 유도 및 역량강화 주력
 - (후계인력 양성) 결혼이민자 여성농업인 대상 다문화 여성 분과모임 가입 및 활동 지원, 멘토링 결연 등을 통해 영농정착 지원
- 품목별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 (소모임 활성화) 자발적으로 모임을 구성하여 다양한 학습동아리 운영을 통해 회원의 소속감 부여와 셀프리더십 함양
 - (문제해결 활동 강화) 품목별 영농기술, 농촌자원활용, 농업경영, 개인의 역량개발, 지역사회 이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구성원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해결도 자원 연계를 통해 자조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
- 공동경영주로서 지위 확보를 통해 농촌여성 권익 향상 지원
 - (가족경영협약) 가족 구성원이 농업경영 목표와 계획을 세운 뒤 근로조건, 성과분배, 경영승계 등 결정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실천교육 지원

□ 사업대상 :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 사업추진 체계

- 사업시행기관 : 시군 농업기술센터
- 사업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 도 농업기술원 : 농촌자원사업 관련 과 · 팀
 - 시군 농업기술센터 : 농촌자원사업 관련 과 · 팀 · 담당

□ 기대효과

- 생활개선회 조직 육성 지원 및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 주체로 성장 · 발전
- 소비자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여성농업인 육성으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

□ 행정사항

- 2021년도 사업추진계획 보고 : '21. 3. 20.
- 2021년도 상반기 추진현황 보고 : '21. 6. 20.
- 2021년도 사업추진결과 보고 : '21. 11. 20.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지원(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농촌지도관 장선화	063-238-1022
		농촌지도사 유지현	063-238-1024

□ 목 적

- 농업·환경·문화를 지키고 농촌사회의 활력을 주도하는 농촌여성의 잠재역량 개발
- 농업을 기반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여성농업인조직 육성

□ 추진방향

- 농식품 생산·소비·유통 주체로서의 여성농업인 전문역량강화
- 농촌여성의 경영·마케팅능력 함양 및 도농교류 사업 활성화
- 1회원 1과제 연구회 가입·활동으로 전문능력 함양
- 지역농산물·전통기술 전승 보전을 위한 향토 지킴이 육성
- 농업을 이어갈 귀농·귀촌인, 다문화여성 등 후계인력 양성
- 지역실정에 맞도록 생활개선회원 중점지도과제 선정 및 실천
- 과제선택 → 계획 수립 → 과제 실천 → 평가 및 발표 → 피드백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제18조(농업인 조직의 육성),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제10조(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 제12조(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

□ 사업규모

- 사업량 및 사업비: 1개 단체, 257백만원(국비 100%)

□ 사업대상: (사)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 사업내용

-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여성지도자의 의식·능력 함양
 - * 농촌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을 이해하고 농업·농촌발전에 기여하는데 활동적인 도시여성들도 회원으로 영입하여 활성화 유도
- 조직적·체계적인 활동을 통한 농업·농촌 가치 확산 주체로 육성
 - 조직기구 기능에 맞추어 회원 역할 정립 및 활동 강화
 - 1회원 1기술 습득을 위한 과제분과 연구모임 활성화
 - 영농신기술, 여성농업인 리더십 및 비즈니스 교육 강화
- 강소농 공감대 형성 위한 선도그룹으로 활용, 모델 발굴·확산
 - 후계 여성인력 발굴로 지방단위 농업인단체의 구심체 역할 수행
- 각종 여성농업인 단체와의 교류 활성화
- 여성농업 전문인으로서의 영농기술체험교육 추진
 -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농업기술 정보자료 제공 및 기술지도
 - 품목별 첨단 영농기술 및 능률적인 작업관리 방법 및 기술
 - 이메일, 문자, 페이스북 등 인터넷을 활용한 농산물 및 가공품 홍보, 농산물 전자상거래 방법 등 제품 판매 활성화
 - 시대 변화에 맞게 교육과정 다양화 추진 : 마케팅, 관광 서비스 등
- 농가경영개선 및 가족 경영 마인드 함양
 - 농업경영 실태의 기록을 통해 농가경영 분석, 개선 실천
 - 합의, 회의, 협의 통한 영농 의사결정, 수익배분 등 가족경영의 합리화
 - 안전과 건강을 고려한 농작업 및 휴일의 실천, 계획적인 영농
-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임원 및 회원 교육 강화
 - 미래 농촌사회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함양
 - 지역사회 발전의 선도주체로서의 임원 소양 및 리더십 교육
 - 자율성과 창의성으로 조직 발전 및 공동체 의식 함양 교육
- 소비자와 농업인들 간의 신뢰형성을 위한 우리농산물 직거래 활동
 - 우리농산물에 대한 생산자·소비자간의 지속적 관심과 이해증진 유도
 - 중앙단위 「도농교류사업단」 연계, 각 도별 활동 추진
 - 한국생활개선회원 생산 농산물 및 고품질 우수농산물 연계 활동

- 농촌지역 결혼이민 여성의 정착과 생활 적응 지원
 - 결혼이민 여성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소득창출 지원
 - * 각국의 다양한 문화와 연계한 공예·음식솜씨 발굴 상품화 지도
 - 생활적응을 위한 학습단체회원과 결혼이민 여성 간의 멘토링 운영
- 홍보 강화 및 활동사례집·화보집 발간
 - 여성농업인의 영농 및 농촌생활 우수사례집, 전문 소식지 등 발간 및 홍보
- 우수 농촌여성 국외 농업기술 협력 활동 확대
 - 개발도상국에 생활개선, 농촌자원 활용기술 전파로 국제경쟁력 제고
 - 농촌지역 발전을 선도할 국제적인 마인드 형성과 전문능력 함양
 - 해외 여성농업인 단체와의 교류 및 국제화 모색
- 도시·농촌여성 연대 교류 및 어린이 농촌현장체험 사업 추진
 - 도시소비자에게 농업·농촌을 알리고, 농산물 생산과정을 이해시켜 식량의 안정적 확보 및 환경보전의 중요성 인식, 우리 농산물 우수성 홍보
 - 농촌여성과 도시여성의 상호교류를 통한 화합과 협동심 함양으로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유지 발전에 선도적 역할 수행
 -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생산자의 지속적인 교류 및 도시소비자단체와 자매결연 사업추진
- 생활개선회 활동의 지속적인 보존관리 및 홍보로 성과 확산

□ 추진체계 및 추진요령

- 사업시행기관: 농촌진흥청
- 사업수행: (사)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 생활개선회 조직운영 내실화 및 회원 역량강화를 위해 조직 특성 및 상황에 맞게 교육 및 행사시기, 인원을 계획하여 운영
- 지원방식: 직접집행, 각 시도생활개선연합회 보조

□ 기대효과

- 농촌생활의 과학화, 합리화로 여성농업인 농가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
- 농촌여성의 지위 및 권익향상, 여성후계세대 육성으로 지역사회 발전

□ 행정사항: ATIS 첨부 양식 활용

- 2021년도 사업추진계획 보고: '21. 3. 20.
- 2021년도 상반기 추진현황 보고: '21. 6. 20.
- 2021년도 사업추진결과 보고: '21. 11. 20.

■ 2021년도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

농작업재해예방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농촌지도관 장선화 농촌지도사 유지현	063-238-1022 063-238-1024

□ 목 적

- 농업 현장에서 작목별 작업단계를 고려한 위험요인진단 및 개선으로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성 향상
- 농업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인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 추진방향

- 농업인의 안전을 저해하는 작목별 불안정한 작업 관행 개선
- 작목별 작업단계를 고려한 농작업 위험성 평가와 개선
- 불안정한 농작업 장비 및 물질 등의 개선을 위한 안전대책의 계획 수립, 실행 및 평가에서 농업인의 자주적 실천 유도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농어업작업안전 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시행령 제7조(권한의 위임), 시행규칙 제4조~제7조(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예방교육, 홍보 등)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14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 사업규모

- 사업량 및 사업비 : 76개소, 3,800백만원(개소당 50백만원, 국비·지방비 각 50%)
- 시도별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사업량	76	7	13	7	6	8	6	8	13	2	1	1	1	1	1	1
사업비	3,800	350	650	350	300	400	300	400	650	100	50	50	50	50	50	50

□ 사업대상

- 식량, 채소, 과수, 화훼, 축산 등 같은 작목이나 가축을 재배·사육하는 단체
(작목반, 법인, 연구모임, 농업인 단체, 마을 등)
 - 해당 작목의 농작업 위험요소(관행적·불안전한 작업)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단체
 - 참여 농업인수는 적정인원으로 하여 사업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고려
 - 농업활동에 보다 취약한 여성농업인 등의 적극적인 참여 지원

□ 사업내용

- 작목별 작업단계를 고려한 농작업 위험요소 분석·개선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 농작업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를 적용하여 해당 작목의 사업 참여 농업인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 평가
- 위험한 장비와 물질, 위험작업 등을 다른 형태로 변형 및 대체하여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안전장비, 보조장치 활용 등의 안전조치
- 농작업자를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보호조치
- 농작업 안전관리 기록부 작성을 통한 농가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 농업인 안전관리 및 건강관리 교육프로그램 등 안전관리 역량 강화

□ 지원방식 및 추진요령

- 사업비 지원내역
 - 농작업 위험성 평가 및 개선, 대책수립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10~15%)
 - 안전장비 등 기계적·물적 안전조치(50~70%), 보호적 안전조치(15~35%)
 - 농업인 안전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위험관리 역량강화(5~10%)

○ 세부추진사항

- 전문가 컨설팅: 기본안전교육, 작목별 작업 분석, 주요 작업 위험도 평가, 개선대책 수립 및 도입, 안전관리 개선 실천 모니터링, 사업성과 평가
 - * 안전관리수준 평가(농작업 자세, 농기계 및 도구, 농작업장, 위험물질 등)
- 농작업 위험을 감소시키고 안전성 향상 효과가 큰 안전·보조장비 선정·보급
 - : 방제기, 동력분무기, 충전식 분무기, 천정형 레일운반구, 농작업 안전의자, 전지가위, 전동가위, 농용컨베이어, 예초기, 작업대, 운반차, 농약보관함, 정리대 등
 - ※ 제외대상: 경운기 및 트랙터, SS기 부착 장비 등 대형 농기계 및 건설장비
- 농작업자를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보호조치: 농약방제복, 농작업복,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 방진·방독 마스크, 안전장갑 등의 보호구
- 안전관리 역량강화: 농업인 안전 및 건강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PAOT(참여형 개선활동), 위험예지훈련, 안전현장 견학, 작업장 내 안전수칙 안내판 설치, 안전 홍보 등
- 사업목적과 시범사업 본래 취지에 맞춰 국산장비 사용을 권장함

○ 사업 관리책임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 규정 제72조제4항 별표3에 근거하여 표찰(입간판) 설치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기관: 시군 농업기술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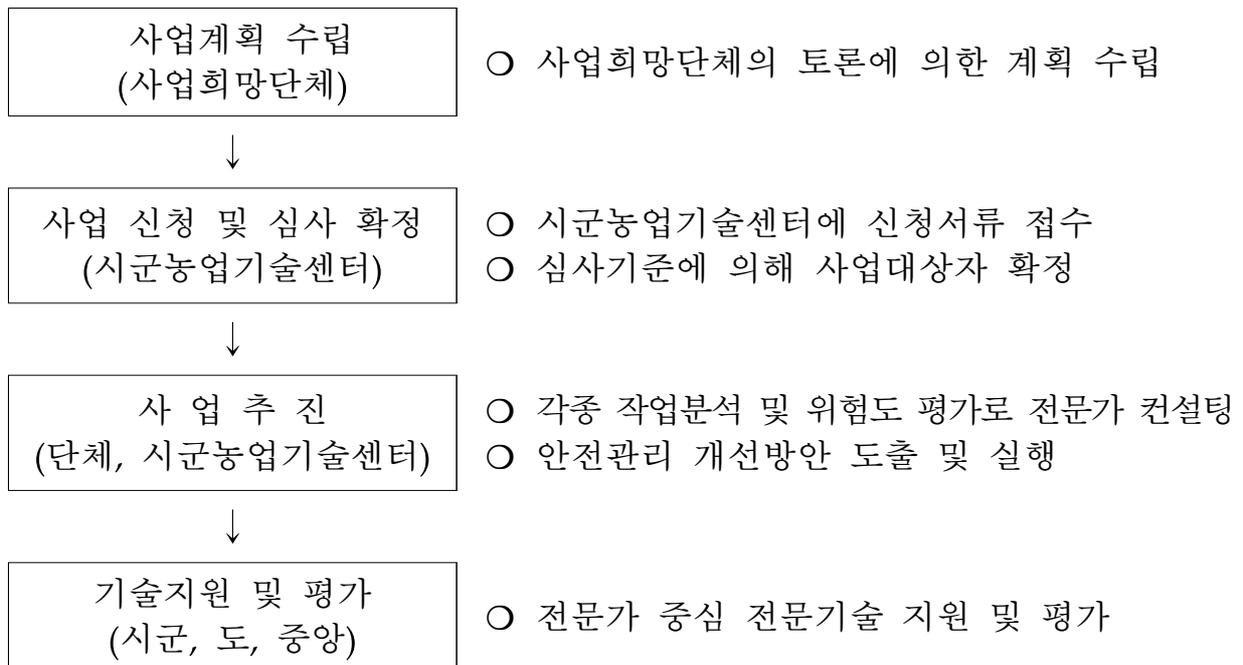
○ 사업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 도 농업기술원: 농촌자원사업 관련 과·팀
-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사업 관련 과·팀·담당
- 전문가 컨설턴트: 해당 작목의 이해도가 높고 농작업 안전분야 현장경험이 풍부한 관련 교수, 박사, 기술사 등
 - ※ ‘농작업안전보건기사’의 전문성 및 현장역량 향상을 위해 전문가 컨설턴트 선정 시 자격보유자도 함께 컨설팅 수행 인력으로 참여 권장

○ 추진주체별 역할

- 농촌진흥청 : 사업기획 및 예산, 전문교육, 홍보, 평가 등
- 도 농업기술원 : 도내 안전관리 사업 추진 종합지원, 각 시·군 전문 컨설턴트 배정, 홍보 등
 - ※ 한명의컨설턴트에게집중배정지역(도별3개지역,전국6개지역내외)
- 시군 농업기술센터 : 사업주관, 단체선정, 사업실행 지원, 농업인 교육, 홍보, 평가, 농업인 안전 이력관리 지원 등
- 작목 단체 : 안전진단 및 대책 수립 참여, 개선안 실행, 작목별 안전관리 실천 위한 안전이력관리 등
- 컨설턴트 : 기본안전교육, 작목별 작업 분석, 주요 작업 위험도 평가, 개선대책 수립 및 도입, 안전관리 개선 실천 모니터링, 전문기술지원, 사업성과 평가 등

○ 단체 선정 및 사업 추진 절차



□ 기대효과

- 작목별 농작업 유해요인 개선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작업능률 향상
-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 가치 인식과 안전관리 실천 능력 향상

□ 사후관리

- 지속적으로 개선할 사항 등이 포함된 전문가의 안전관리 개선처방전 발급으로 사후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개선 실천
- 사업효과의 지속성,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사업과 연관된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
- 취득한 중요재산(부동산, 장비 등)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등록 및 사후관리 실시
- 처분제한 및 사후관리 : 보조금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46조, 제47조에 따라 처분제한 등 사후관리
 -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5년)
 - ▷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①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② 양도, 교환, 대여 ③ 담보의 제공

□ 행정사항 : ATIS 첨부 양식 활용

- 2021년도 사업 추진계획 보고 : '21. 3. 20 한
- 2021년도 상반기 추진현황 보고 : '21. 6. 20 한
- 2021년도 사업 추진결과 보고 : '21. 11. 20 한

■ 2021년도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농업기계 교육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지원과	전문경력관 김병인	063-238-1850
		전문경력관 김종진	063-238-1852

1. 농업기계 전문인력양성

□ 목적

- 청년농업인 및 신규농업인 대상으로 농업기계 기술교육을 추진하여 농업·농촌 지역의 기계화 영농을 선도할 농업기계 전문인력 양성

□ 추진방향

- 농업기계 활용기술 향상을 위한 체계화된 기초이론과 실습 위주 교육 운영
- 기종별 참여식 현장 실습·체험형 교육 운영 및 교통사고 예방 교육 편성 필수
- 안전사고예방, 자가 점검·정비 능력배양을 통한 경영비 절감 및 성취감 제고

□ 사업규모 및 내용

- 교육시기: 연중(2주, 합숙/비합숙)
- 교육장소: 각 도농업기술원
- 교육인원: 628명
- 교육대상: 청년농업인 및 신규농업인 *여성농업인, 기계화영농 종사자 우선 선정
- 사업비(국비): 157백만원(1인당 250천원)

(단위: 명, 천원)

구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사업량	628	90	90	30	60	88	90	90	90
사업비	157,000	22,500	22,500	7,500	15,000	22,000	22,500	22,500	22,500

- 담당강사: 농업기계 담당자(전문가), 일반강사(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 교육내용

- 주요 농작업기계 안전 및 작동원리 이해, 운전조작 및 자가 점검·정비 기술, 발농업기계 활용기술, 선진지견학, 안전사고예방 및 교통안전, 교양과목 등
- 트랙터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사고체험, 각부 기능이해, 가상운전 실습 등

○ 교육방법: 기초이론 및 실습·체험

- 소모품 교환 및 고장이 많이 발생하는 주요부의 기초 정비기술교육
-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기종별 운전 및 포장작업 요령 등 실습형 교육

□ 사업추진체계

○ 교육계획 수립

- 지역 실정에 맞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일정에 맞춰 운영
- 총시간은 60~70시간으로 하고 그중 75%(53시간)는 실습교육으로 편성
- 농업기계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법규, 안전사용방법 등은 반드시 2~3시간 편성
- 여성농업인 등 초보자를 위한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실습 교육과정 편성
- 농업기계 기능사 자격 수준의 이론 및 실기 교육과정 편성
 - * 농업기계 관련 애로사항 토의, 자격취득 이론교육 등은 가능한 야간시간 활용
- 트랙터 시뮬레이터 보급 기관: 안전사고체험 과정운영 및 교과시간 편성
 - * 다수의 농업인 참여를 위해 모든 교육과정에 시뮬레이터 직·간접 체험교육 실시

○ 교육운영

- 점검·정비 실습용 공구 및 안전장치, 교재, 실습복 등을 교육생에게 지급하여 교육 기간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분해조립 등 실습에 활용하여 마을의 농업기계 점검·정비 등 관리 운영
- 교육수강자는 3~5년으로 1회 수강 제한(신규신청자 우선)
- 80% 이상 출석 시 수료 가능
- 기계화영농사증 수여
 - * 기관 자체평가에 의거 60점 이상자에게 수여(60점 미만 시 수료증만 수여)
- 트랙터 시뮬레이터 체험교육 활용실적 대장을 비치하여 항상 관리
 - * 트랙터 시뮬레이터 활용 모든 체험교육생 대상 체험교육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실적 보고 및 평가

<수혜자만족도>

- 참가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 수료시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성별 구분 등)
- 측정산식: {(만족도 총합)/(참여자 수×조사항목 수×5)}×100
- * 조사항목은 3개 항목으로 교육내용 만족, 장비 활용 만족, 교육만족도
- * 리커드 5점척도 활용(매우만족(5점), 만족(4점), 보통(3점), 불만(2점), 매우불만(1점))
- * 전체 수혜자만족도 평균값 산출은 성별 구분 없이 모든값을 측정산식으로 계산하여 산출

<기술수준향상도>

- 사전평가(교육 입소 시)
 - * 평가 문제는 농업기계 국가기술자격(기능사) 수준으로 출제하고, 기종은 교육생 수준에 맞도록 선택하여 출제하며, 실기는 기종당 1~2개 출제하여 평가
 - 이론평가(30점): 농업기계 점검·정비 30문제 출제
 - 실기평가(70점): 기종별 출제(경운기, 관리기,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 사후평가(교육 수료 시)
 - * 사전평가와 동일한 이론과 실기로 출제 후 평가하고, 두 점수 차이를 “기술 수준향상도”로 나타냄(%로 환산 수치화 할 것)
- 측정산식: (수료 시 학습평가점수 - 입교 시 학습평가점수)/입교 시 학습평가점수 × 100

○ 예산집행 관련

- 2021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집행 철저

□ 추진 순기표

세 부 추 진 내 용	추진 시기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 교육 계획수립	■											
○ 교육운영		■	■	■	■	■	■	■	■	■	■	■
○ 실적보고 및 평가						■			■		■	

□ 행정사항 : ATIS 활용

- 교육계획 보고(서식 1) : '21. 1. 30.
- 교육실적 제출(연 3회, 서식 2) : '21. 6. 24. / 9. 24. / 11. 24.
- * 트랙터 시뮬레이터 활용실적 제출 : 4회(3. 24. / 6. 24. / 9. 24. / 12. 24.)

2. 농업기계 현장실무교육

□ 목적

- 최근 대형화·자동화되고 있는 농업기계의 보급 확대와 지속적인 사용 증가에 따라 현장실무능력을 배양하여 농업기계 사고로부터 사용자 보호

□ 추진방향

- 농업기계 활용기술 배양을 위한 기종별 참여식 현장 실습·체험형 교육 강화
- 모든 농업기계 교육과정에 안전교육과 교통사고 예방과목 편성 필수
- 안전운행 홍보활동 및 주행형 기종의 안전표지판 부착이용 확산

□ 사업규모 및 내용

- 교육시기 : 영농기 이전 또는 농한기에 실시(1~2일, 비합숙)
- 교육장소 : 시군농업기술센터
- 교육인원 : 25,000명
- 교육대상 : 농업기계 보유농가, 임대농업기계이용자 또는 농업종사 희망자
*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우선 선정
- 사업비(국비) : 750백만원(1인당 30,000원)

(단위: 명, 천원)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사업량	25,000	50	140	110	350	100	100	50	50
사업비	750,000	1,500	4,200	3,300	10,500	3,000	3,000	1,500	1,500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사업량	1,500	4,000	1,800	2,100	2,050	3,500	4,800	4,300	
사업비	45,000	120,000	54,000	63,000	61,500	105,000	144,000	129,000	

- 담당강사 : 농업기계 담당자(전문가), 일반강사(경찰청, 도로교통공단)
- 교육내용
 - 주요 농업기계 안전활용 실습 및 교통사고 예방, 기종별 안전수칙
- 교육방법
 - 반복적 체험학습을 통한 지식과 기능 습득을 위해 실습 중심의 교육 실시
 - 교통사고 예방 교육 및 경운기 등 발농업기계 운전·포장작업 실습

□ 사업추진체계

○ 교육계획 수립

- 최소한의 이론과 사례 및 실무중심의 교육과정 개설, 시군에 보유한 교육용 농업기계를 활용한 기술교육 강화
- 총 시간은 7~8시간으로 하고 그중 75%(6시간)는 실습교육으로 편성
- 농업기계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법규, 안전사용방법 등은 반드시 1~2시간 편성
- 트랙터 시뮬레이터 사고체험 교육시간 편성(교과편성 참고)

○ 교육운영

- 교육교재, 안전장치 및 교육에 필요한 재료 등은 교육시작과 동시에 지급하고 원활한 교육추진과 일선에서 농업기계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
- 교육생 수준에 맞춰 교육 추진하되 현장 문제해결 능력 향상에 적극 노력
- 80% 이상 출석 시 수료 가능

○ 실적 보고 및 평가

<수혜자만족도>

- 교육에 참가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 수료시 만족도 조사(성별 구분 등)
- 측정산식 : $\{(\text{만족도 총합}) / (\text{참여자 수} \times \text{조사항목 수} \times 5)\} \times 100$
- * 조사항목은 3개 항목으로 교육내용 만족, 장비 활용 만족, 교육만족도
- * 리커드 5점척도 활용(매우만족(5점), 만족(4점), 보통(3점), 불만(2점), 매우불만(1점))
- * 전체 수혜자만족도 평균값 산출은 성별 구분 없이 모든값을 측정산식으로 계산하여 산출

○ 예산집행 관련

- 2021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집행 철저

□ 추진 순기표

세부추진내용	추진시기(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 교육계획 수립												
○ 교육운영												
○ 실적보고 및 평가												

□ 행정사항: ATIS 활용

- 교육계획 보고(서식 1) : '21. 1. 30.
- 교육실적 제출(연 3회, 서식 2) : '21. 6. 24. / 9. 24. / 11. 24.
- * 트랙터 시뮬레이터 활용실적 제출 : 4회(3. 24. / 6. 24. / 9. 24. / 12. 24.)

3. 농업기계 순회교육

□ 목적

- 농업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 해소 및 적기 영농 실현
- 자가 정비기술 능력 향상을 통한 농가 생산비 절감 및 사고 예방

□ 추진방향

- 수리점과 거리가 먼 오지마을, 여성농업인, 고령·취약농가 우선 교육
- 농번기 고장 난 농업기계 현장애로해결을 위해 지자체별 현장지원팀 구성 운영
- 농업기계 순회교육(임대사업 포함)에 안전사고예방 교육 추진
- 자연재해 피해지역 긴급 복구 상호협력 활동

□ 사업규모 및 내용

- 교육시기: 연중(2월~11월 중순)
- 교육장소: 현장(오지마을 중심), 내방교육(농업기술센터)
- 교육횟수: 지자체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시
- 교육대상: 농업기계를 보유한 전 농가
- 시기별 추진내용

시 기	내 용	대 상 지 역
2월	◦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등 사용전 점검	◦ 관내 전지역
3~10월	◦ 대상지역 선정 순회교육	◦ 수리점에서 거리가 먼 오지마을 등 취약한 지역 우선실시
11월	◦ 월동기 장기보관에 따른 점검· 손질요령 및 보관 관리요령 교육	◦ 관내 전지역

- 사업비: 지방비(100%)

○ 교육방법

- 분야별 전문담당자와 합동 순회지도반 편성 당면 실천과제 병행 지도
- 농업인 등 대상으로 고장진단 및 자가 정비, 부품교체 요령 실습 교육
 - * 농업인이 직접 실습에 참여토록 하여 자가 점검·정비 능력이 향상되도록 기술지원
- 농업기계 정비 교육 전에 고장 예방과 사용 요령 등 안전교육 실시

○ 협조사항

- 자체 농업기계 순회교육(임대사업 포함) 운영으로 농업인에 대한 농업기계 안전사고예방 교육 추진 철저
- 인근 자연재해 피해지역 상호 복구지원 협의체 구성 및 활동(순회교육 장비 활용)
- * 영농 적기 농업기계 사용을 위한 응급 복구단 활동 및 지원 등 상호협력

□ 추진순기표

세 부 추 진 내 용	추진시기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 교육 계획수립												
○ 교육 운영												
○ 실적 보고 및 평가												

□ 행정사항 : ATIS 활용

- 교육계획 보고(서식 1) : '21. 1. 30.
- 교육실적 제출(연 3회, 서식 2) : '21. 6. 15. / 9. 20. / 11. 20.

4. 농업기계 도단위 연찬교육

□ 목적

- 농업기계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현장견학 등으로 현장지도 능력을 배양하고,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금후 농업기계 교육사업의 활성화 도모

□ 추진방향

- 농업기계 교육사업 추진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
- 농업기계 교육담당자 기술 능력 배양 및 교육사업 추진 협의
- 시군 순회 연찬으로 농업기술센터 간 유대강화, 원활한 업무추진 및 정보공유

□ 사업규모 및 내용

- 시 기: 지역 실정에 맞도록 계획수립
- 장 소: 각 도농업기술원 등
- 참석대상: 농업기계담당 및 담당자 등
 - * 특·광역시는 해당 지역 농업기술원으로 참석
- 사업비: 지방비(100%)
- 교육내용
 - 농업기계의 평가와 개선방안에 따른 분임토의
 - 농업기계 순회교육 및 임대사업 등 우수사례 발표, 현장견학 등

□ 추진 순기표

세부추진내용	추진시기(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추진계획 수립												
○ 실행 및 평가												

참고 1 농업기계전문인력양성 교과편성 표준(안) (도농업기술원)

과목명	배정시간						교안지침	담당강사
	계	강의	실습	토의	견학	기타		
계(시간)	70	7	53	2	7	1	-	-
1. 농업기계 관련 교통 사고 예방	1	1					○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 예방 등(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해당분야 관련자 등
2. 발농업기계 및 정밀 농업기계 동향 등	1	1						농업기계 전문가등
3. 농업기계 기초 및 점검정비이론교육	4	4					○ 농업기계 일반 ○ 기종별 점검·정비요령 ○ 전기·전자 및 유압기초 등	"
4. 운전·정비 실기실습 (논농업, 발농업기계)	51		51				○ 조편성(6~10명당 강사1명) ○ 고장많은부위 우선 실습 ○ 운전 및 포장작업요령 * 반복 훈련을 통한 기능을 습득하여 활용능력 향상에 초점	"
5. 안전사고예방 교육	1	1					○ 사고예방 및 안전사용 ○ 트랙터 시뮬레이터 이해 ○ 시뮬레이터 사고체험 * 시뮬레이터미보급지역은 안전기술교육시간편성	"
6. 분임토의	2			2			○ 사례발표 중심	교육생
7. 현지견학	7				7		○ 농업기계 관련 분야	농업기계 전문가등
8. 실습평가	2		2				○ 주요부 반복 실습	담당자
9. 행정 및 기타	1					1	○ 등록 ○ 입·수료식 등	담당자

※ 교과편성(안)의 일부 조정은 가능하나, 교통사고 예방과목은 필수로 운영하고 농업기계 안전사고예방과 농작업 및 정비기술 등 교육에 차질 없이 운영

참고 2 **농업기계현장실무교육 교과편성 표준(안) (시군농업기술센터)**

과목명	배정시간			교안지침	담당강사
	계	강의	실습		
계(시간)	8	2	6	-	-
1. 농업기계 관련 교통 사고 예방(필수)	1	1		○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 예방 등(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해당분야 관련자 등
2. 운전·포장작업 실습 (발농업기계 위주)	6		6	○ 조편성(6~10명당 강사1명) ○ 현장 문제해결 우선실습 ○ 운전 및 포장작업요령 * 반복 훈련을 통한 기능을 습득하여 활용능력 향상에 초점	농업기계 전문가 등
3. 안전사고예방 교육	1	1		○ 사고예방 및 안전사용 ○ 트랙터 시뮬레이터 이해 ○ 시뮬레이터 사고체험 * 시뮬레이터미보급지역은 안전기술교육시간편성	”

※ 교과편성(안)의 일부 조정은 가능하나, 교통사고 예방과목은 필수로 운영하고 농업기계 안전사고예방과 농업기계 안전 활동 등 교육에 차질 없이 운영

참고 3

트랙터 시뮬레이터 체험교육 교과 편성(안)

○ 체험교육(1일 과정) 배정시간(안)

과목명	배정시간				교안지침	담당강사
	계	이론	체험	기타		
계	8	1	6	1		
1. 사용자 안전교육 및 시뮬레이터 기능이해	1	1			○ 농업기계 안전교육 ○ 시뮬레이터 기능설명 ○ 시뮬레이터 사고체험 및 운전조작 방법 이해	농업기계 전문가 등
2. 시뮬레이터 체험교육	6		6		○ 시뮬레이터 직접체험 - 모든 교육생 운전실습 ○ 시뮬레이터 간접체험 - 영상장치 활용(대형 TV)한 다수의 체험교육 ○ 시뮬레이터 수시체험 - 방문하는 모든 농업인 등에 체험 및 홍보	"
3. 설문평가 및 기타행정	1			1	○ 등록 및 수수료 ○ 체험교육 만족도 평가 등	교육담당

※ 모든 농업기계 및 농업인 교육과정에 체험교육으로 적극 활용

○ 간접 사고체험 교육 방법(예시)

- 트랙터 시뮬레이터의 내부화면과 연동될 수 있도록 외부모니터를 설치하여 다수의 농업인에게 간접체험을 할 수 있도록 안전체험 교육방법 도입



시뮬레이터 내부 체험교육



시뮬레이터 내부 화면을 외부모니터와 연동하여 간접체험교육 운영

참고 4 **농업기계 교육지원 내역 및 편성비목**

□ 농업기계 교육지원 내역

(단위 : 명, 원)

구분	교육인원	단가	사업내용
계	25,628	-	-
농업기계 전문인력양성교육	628	500,000	○ 기계화영농을 선도할 주요 농작업 기계 핵심기술 능력배양 교육 ○ 최신 농업기계의 안전, 운전 및 정비 기술, 기능사 수준의 기술교육 등
농업기계 현장실무교육	25,000	60,000	○ 농업기계 점검·정비기술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 등

- * 단가는 1인기준, 지방비(50%)가 포함된 실제 금액임
- *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성별 영향평가 대상사업)

□ 농업기계 교육비 편성비목

- 기타수당, 수용비(사무관리비), 구료비(행사실비보상금), 피복비, 연료비, 임차료, 재료비, 기타보상금, 국내여비(총사업비의 10%이내) 등
-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을 준용하여 편성비목 활용
- * 사업 목적 외 자산취득비, 시설 등으로 예산 변경 사용금지

참고 5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진흥법」 제19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5조(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제12조의2(안전교육),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4조 (농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추진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년: 농촌진흥청 발족과 함께 영농기계화 추진을 목표로 실시 ○ '70~'80년대: 농촌 노동력 부족과 임금상승 억제를 위한 정부의 농업기계화 시책지원 강화를 위한 농업기계 교육훈련 확대 ○ '90~'05년: 대형 농업기계 보급확대 및 관련 정비수리 기술교육 실시 ○ '05~'10년: 전기전자, 유압시스템 등을 이용한 농업기계 보급 및 자가 정비수리능력 제고 교육 실시 ○ '13년: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종류 및 반영주기 기준 마련(기재부 협의) * 기준을 근거로 시·도별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 '14년: 농업기계의 자동화·로봇화 및 융복합 기술보급과 발작물 기계화 확대보급 추진 ○ '17년 이후: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업인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 강화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지원과	전문경력관 김병인	063-238-1850
		전문경력관 김종진	063-238-1852

□ 목적

- 농업기계의 자동화·정밀화에 따른 효율적 활용과 안전사고예방 등 교육 강화 및 자가 점검·정비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 추진방향

- 지역특화작목별 및 발작물기계화 촉진을 위한 신기종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지원을 통한 여성 및 고령농업인 참여 촉진
- 우리 청 연구개발 농업기계의 성과향상을 위한 농업기계 시범 보급

□ 사업규모 및 대상

- 사업대상 :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규모
 - 국비보조사업 : 총 26종 122대, 1,448백만원
 - * 도농업기술원 지원 교육장비 : 8종 18대, 274백만원
 - * 시군농업기술센터 지원 교육장비 : 18종 104대, 1,174백만원

□ 추진체계

- 중앙(농촌진흥청): 사업계획 및 예산, 전문교육, 평가 등 지원
- 도(농업기술원): 국고보조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지역별 사업계획 수립
- 시군(농업기술센터): 국고보조 예산편성 및 시행지침에 의거 사업추진
 - * 교육훈련 장비를 가능한 한 교육시작 전 또는 농사철 전에 조기 구매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사업추진
 - * 농업기계 교육을 운영하지 않는 기관은 교육용 농업기계 신청·지원 불가

□ 사업별 예산내역

(단위 : 대, 백만원)

구분	합계	소계	도단위 교육용 농업기계 사업량							
			농업용트랙터 (중대형)	콤바인 (5조 이상)	승용이앙기 (6조 이상)	이식기 (채소)	농업용굴삭기	무인기 (방제,예찰)	교육용시물 레이터 (중대형)	스마트보드
사업량	122	18	2	2	1	1	1	4	1	6
예산액	2,896	548	140	152	28	9	25	104	30	60

구분	소계	시군단위 교육용 농업기계 사업량		
		농업용트랙터(중소형)	농업용굴삭기	농업용로더(스키드로더)
사업량	104	17	19	7
예산액	2,348	748	475	273

구분	시군단위 교육용 농업기계 사업량				
	이식기(양파)	이식기(고구마)	마늘파종기	감자파종기	농업용고소작업차
사업량	2	3	4	2	5
예산액	44	45	88	32	120

구분	시군단위 교육용 농업기계 사업량				
	예취기(콩등)	감자수확기	농산물줄기절단기 (양파, 마늘)	농업용동력운반차 (승용형)	농업용파쇄기 (잔가지, 목재)
사업량	4	3	3	3	14
예산액	24	15	27	42	140

구분	시군단위 교육용 농업기계 사업량				
	무인기(방제,예찰)	교육용시물레이터 (중소형)	오일계통여과기	다목적작업기테스터	스마트보드
사업량	3	5	2	3	5
예산액	78	100	20	27	50

* 재원부담 비율: 국비 50%, 지방비 50%

*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성별 영향평가 대상사업)

□ 준수사항

-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기준(참고1) 단가의 85% 이상의 제품으로 구입
-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추가 구입은 당초 사업추진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해당 사업부서(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의 승인 후 추진
- 교육용 농업기계의 처분제한 기간(내용연수)은 조달청 고시 적용
- 교육용 농업기계는 조작·취급 및 포장기술, 점검정비 등 안전교육용으로 활용
 - * 농업재해 등 발생 시 농업인 등의 일손 돕기, 재해복구에 지원가능
- 밭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동력이식기 등 장비에 대하여 주산지역 농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교육용 신기종 농업기계를 구입한 기관은 구입 후 2개월 이내에 지역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취급조작, 안전사용 및 포장작업 요령에 대한 현장 연시교육 실시
- 교육장비 선정 시 수요자 등 참여한 선정위원회 운영 및 투명한 절차 준수
 - * 농업인·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장비선정 및 구입 심의회 운영
 - * 농업기계 임대사업 설치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준용(농식품부)
- 농업기계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부착 의무화 규정 준수
 - 안전장치부착여부 및 임의 개조 금지(농용트랙터 등 9개 기종)
- 국고보조금 지원에 의한 농업기계 구입(확보) 대장 비치

구입년도	기종명	형식명	규격	관리자	교육횟수	교육인원	비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e나라도움 중요재산에 등록(보고대상 및 처분제한 기간)

□ 추진 순기표

세 부 내 용	추진 시기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 교육용 농업기계 구입												

* 농사철 전 효율적인 교육운영 및 조기집행을 위해 상반기 구입·활용

참고 1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기준

(단위 : 대, 천원)

사업명	사업량	단가	비고
26종 122대	122		
농업용트랙터	2	70,000	- 중대형
콤바인	2	76,000	- 5조이상
승용이앙기	1	28,000	- 6조이상
이식기	1	9,000	- 채소
농업용굴삭기	1	25,000	
무인기	4	26,000	- 방제, 예찰
교육용시뮬레이터	1	30,000	- 중대형
스마트보드	5	10,000	
농업용트랙터	17	44,000	- 중소형
농업용굴삭기	19	25,000	
농업용로더	7	39,000	- 스키드로더
이식기	2	22,000	- 양파
이식기	3	15,000	- 고구마
마늘파종기	4	22,000	
감자파종기	2	16,000	
농업용고소작업차	5	24,000	
예취기	4	6,000	- 콩 등
감자수확기	3	5,000	
농산물줄기절단기	3	9,000	- 양파, 마늘
농업용동력운반차	3	14,000	- 승용형
농업용파쇄기	14	10,000	- 잔가지, 목재
무인기	3	26,000	- 방제, 예찰
교육용시뮬레이터	5	20,000	- 중소형
오일계통여과기	2	10,000	
다목적작업기테스터	3	9,000	
스마트보드	6	10,000	

* 단가는 국비와 지방비가 포함된 실제 구매 금액임(국비 50%, 지방비 50%)

참고 2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내역(시도별)**

□ **도단위 교육용 농업기계 사업량**

(단위 : 대)

구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18	2	4	1	4	1	1	2	3
농업용트랙터(중대형)	2	-	-	1	-	-	-	1	-
콤바인(5조이상)	2	-	-	-	-	1	1	-	-
승용이앙기(6조이상)	1	-	-	-	-	-	-	-	1
이식기(채소)	1	-	-	-	-	-	-	1	-
농업용굴삭기	1	1	-	-	-	-	-	-	-
무인기(방제,예찰)	4	-	2	-	2	-	-	-	-
교육용시뮬레이터(중대형)	1	-	-	-	-	-	-	-	1
스마트보드	6	1	2	-	2	-	-	-	1

□ **시군단위 교육용 농업기계 사업량**

(단위 : 대)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계	104	10	10	9	12	13	9	19	12	-	2	1	3	1	1	-	2
농업용트랙터(중소형)	17	2	2	2	2	2	2	2	2	-	-	-	-	-	1	-	-
농업용굴삭기	19	2	2	2	2	2	2	3	2	-	1	-	1	-	-	-	-
농업용로더(스키드로더)	7	1	1	1	-	1	1	1	1	-	-	-	-	-	-	-	-
이식기(양파)	2	-	-	-	-	-	-	1	1	-	-	-	-	-	-	-	-
이식기(고구마)	3	1	-	-	1	-	-	-	-	-	-	-	1	-	-	-	-
마늘파종기	4	-	-	-	1	-	-	1	1	-	-	-	1	-	-	-	-
감자파종기	2	-	1	-	-	-	-	1	-	-	-	-	-	-	-	-	-
농업용고소작업차	5	-	1	-	1	1	-	1	-	-	-	-	-	1	-	-	-
예취기(콩 등)	4	-	-	-	-	-	-	1	1	-	-	-	-	-	-	-	2
감자수확기	3	-	-	-	1	1	-	-	1	-	-	-	-	-	-	-	-
농산물줄기절단기(양파,마늘)	3	-	-	-	1	1	1	-	-	-	-	-	-	-	-	-	-
농업용동력운반차(승용형)	3	1	-	-	-	-	-	1	-	-	-	1	-	-	-	-	-
농업용파쇄기(잔가지,목재)	14	1	1	2	2	2	2	2	1	-	1	-	-	-	-	-	-
무인기(방제,예찰)	3	-	1	-	1	1	-	-	-	-	-	-	-	-	-	-	-
교육용시뮬레이터(중소형)	5	-	-	1	-	1	-	2	1	-	-	-	-	-	-	-	-
오일계통여과기	2	1	-	-	-	-	-	1	-	-	-	-	-	-	-	-	-
다목적작업기테스터	3	1	-	-	-	1	-	-	1	-	-	-	-	-	-	-	-
스마트보드	5	-	1	1	-	-	1	2	-	-	-	-	-	-	-	-	-

*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자체계획 수립 추진

■ 2021년도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농촌지도기반조성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	농촌지도관 황택상 행정주사 김경자	063-238-0916 063-238-0918

□ 목 적

- 일선 지방농촌진흥기관의 기술개발 촉진과 신기술 보급을 위한 기반 시설 및 장비 지원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지역 농업기술 보급의 중추기관으로 육성
- 지역농업 여건에 적합한 교육 시설과 장비 지원으로 전문 농업기술 지도체제 확립과 신속한 기술 지원으로 농업인 만족형 지도사업 추진

□ 추진방향

-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기반 조성 시설 설치 지원
- 과학영농시설, 농업인 교육시설 지원으로 효율적인 지도사업 추진
- 지도 장비 현대화를 위한 노후 장비 교체 및 보완
- 기술정보 제공, 교육, 홍보 강화를 위한 최신 장비 지원

□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0조(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제32조(계정의 구분), 제34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35조의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35조의3(세종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농촌진흥법 제15조(농촌지도사업의 조정) 및 제25조(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2021년 예산내역

(단위 : 개소, 종, 국비,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농촌지도 기반조성	총계	소 계	552	58,620
		시 설	122	46,167
		장 비	430	12,453
	지역자율계정	소 계	531	55,810
		시 설	118	43,569.5
		장 비	413	12,240.5
	제주계정	소 계	18	2,750
		시 설	3	2,572.5
		장 비	15	177.5
	세종계정	소 계	3	60
		시 설	1	25
		장 비	2	35

□ 사업내용

○ 지도기반시설

- 과학영농종합시설, 교육시설, 종합검정실, 실증포장, 미생물배양시설, 실습체험시설 등

○ 지도기반장비

- 교육용차량, 교육용장비, 종합검정장비, 병해충진단장비, 가축질병장비, 조직배양장비, 미생물배양장비, 농산물가공장비, 과학영농시설, 냄새저감장비 등

* 타 부처나 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추진할 수 없음

□ 지원대상 :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 사업추진 체계 및 지원방식

○ 사업수행 주체 :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지방자치단체)

○ 사업비 집행절차 : 농촌진흥청 → 도 농업기술원 → 시·군 농업기술센터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보조비율에 의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지방비 추가 예산 확보 사업 추진

○ 예산편성 과목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기반시설은 실시설계비(420-02), 공사비(420-03), 감리비(420-04)

* 지도장비는 자산취득비(430-01) 편성하여 집행

□ 추진 순기표

세 부 내 용	추진 시기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사업계획, 실시설계, 사업발주 *3억이상 시설 전년도 설계 완료													
○ 지도기반시설 설치													
○ 지도장비 구입·설치													

□ 기대효과

- 지역 농촌진흥기관의 과학영농종합시설, 시험 포장 등을 지역 농업인의 영농 현장 실증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농업인 기술수준 향상 추진
- 농업인의 효율적인 상담과 신속한 기술지원으로 지도사업에 대한 농업인의 신뢰 구축
- 지도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근무 환경 개선으로 현장 지도 활동 강화
- 지도장비의 현대화로 신기술·정보의 신속 확산

□ 사업·예산집행 관리

- 사업 목적과 무관한 사업비는 집행 불가(부지매입, 사무용 집기, 비품, 실험용 재료, 인건비, 운영경비 등은 집행 불가)
- 집행부진이 예상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 현장 확인을 실시하는 등 중간진도 관리 실시(분기별 진도관리 계획 수립 추진)
- 지속적인 현장 확인을 통한 집행 관리와 함께 이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장과 3억원 이상 시설사업, 전년도 이월 사업장은 중점관리 대상 선정하여 특별 관리
- 1/4분기에 발주를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하며, 장기간 공사 기간을 필요로 하는 시설사업 외에는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 추진
 - 도 농업기술원 자체 점검계획(분기별)을 수립 현장지도 점검 실시
-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은 기반시설과 지도장비 등 세목 조정, 사업계획 변경된 경우(A시설→B시설, A장비→B장비, A시설→C장비, A장비→B시설), 집행 잔액(낙찰차액)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중앙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 추진 (제5호 서식 첨부하여 공문으로 요청)

- * 절차: 시군센터(제5호 서식 작성, 공문 요청)→도원(검토후 공문 요청)
→농촌진흥청(검토 후 도원 및 센터에 승인내역 통보)
- * 감사 등에 지적되지 않도록 변경 승인 여부는 중앙 담당자와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추경예산편성 감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 승인 요청
- * 승인 대상: 사업자체 변경, 시설 준공 후 또는 장비 집행 후 낙찰차액 사용
단, 준공전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당초 예산 범위내 사업비 증감은 승인 대상 아님, 일상감
사규정에 의한 행정절차이행 후 사업 실시
- 지도기반조성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장비 관리는 물품관리법과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관리
- 취득한 재산(부동산, 장비 등)은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재산등록) 입력 등 사후
관리 실시
- 기반시설 등의 사업 종료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기한내에 보수완료
하여 관리 추진

□ 예산 편성 착안사항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기 지원 받거나 또는 집행부진으로 이월액이 발생 또는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집행율이 저조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예산 편성시 패널티 부과
- 당회계년도 집행 불가시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편성 요구, 사업비 이월 배재
(당 회계연도에 집행가능 예산만 반영)
- 기반시설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부지확보,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결정, 공유재
산취득심의, 중기지방재정 및 투융자심사, 3억원 이상 국비 지원 사업은 설계 완료
또는 설계예산 반영)가 완료한 경우 예산 반영

□ 지원(배정) 기준

- 균형발전특별회계(시도자율편성사업)로 시·도에서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사업 계획을 심의하여 지원규모 결정

□ 행정사항: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계획 보고: '21. 2. 28.까지 (자체 계획, ATIS에 첨부된 서식 활용)
- 사업비 집행현황 보고: '21. 5월부터 매월 5일, 전월말 기준(제1호 서식)
- 사업추진 결과 보고: '21. 12. 31.(제2호, 제3호, 제4호)

참고 1 지역별 지도기반시설 사업내용

○ 지역자율계정

(단위 : 개소, 국비, 백만원)

시도	시군	사업량 사업비 (국비)	계	과업 총합 농업 시설	학 농 교 육 시 설	교 육 시 설	종 합 검 정 실	실 증 포 장	미 생 물 양 성 시 설	농 산 물 공 급 시 설	실 체 시 설 습 험 시 설	기 타
전국	총계	사업량	118	26	31	5	16	10	2	5	24	
		사업비	43,569.5	19,830.5	9,322.5	809	4,170.5	2,583	700	1,130	5,024	
부산	소계	사업량	1	1				1				
		사업비	434				434					
	부산시	사업량	1					1				
		사업비	434				434					
광주	소계	사업량	2	1							1	
		사업비	1,050	950							100	
	광주시	사업량	2	1							1	
		사업비	1,050	950							100	
대전	소계	사업량	1					1				
		사업비	10				10					
	대전시	사업량	1					1				
		사업비	10				10					
경기	소계	사업량	11	1	3	2	2	2	1			
		사업비	2,569	400	534	209	600	376	450			
	기술원	사업량	2		1		1					
		사업비	600		150		450					
	고양시	사업량	1							1		
		사업비	450						450			
	파주시	사업량	1			1						
		사업비	38			38						
	광주시	사업량	1	1								
		사업비	400	400								
	이천시	사업량	2				1	1				
		사업비	200				150	50				
	안성시	사업량	1						1			
		사업비	326					326				
	포천시	사업량	1		1							
		사업비	134		134							
양평군	사업량	1			1							
	사업비	171			171							
연천군	사업량	1		1								
	사업비	250		250								
강원	소계	사업량	14	4	4		4	1	1			
		사업비	8,715	3,640	2,450		2,025	350	250			
	기술원	사업량	4				3		1			
		사업비	1,775				1,525		250			
	춘천시	사업량	1		1							
		사업비	900	0	900							

시도	시군	사업량 사업비 (국비)	계	과업 중합 농업 시설	교 육 시 설	종 합 검정 시설	실 증 포 장	미생물 양설	농산물 공설	실 습 시설	기 타
	원주시	사업량	1		1						
		사업비	600	0	600						
	강릉시	사업량	1	1							
		사업비	40	40							
	태백시	사업량	1						1		
		사업비	350	0					350		
	평창군	사업량	1	1							
		사업비	1,100	1,100							
	화천군	사업량	1					1			
		사업비	500	0				500			
	양구군	사업량	1		1						
		사업비	700	0	700						
	인제군	사업량	1	1							
		사업비	2,000	2,000							
고성군	사업량	1		1							
	사업비	250	0	250							
양양군	사업량	1	1								
	사업비	500	500								
충북	소계	사업량	24	1	6		3	1			13
		사업비	4,033	40	1,458		515	640			1,380
	기술원	사업량	15		2						13
		사업비	1,730		350						1,380
	충주시	사업량	1	1							
		사업비	40	40							
	제천시	사업량	1					1			
		사업비	65					65			
	보은군	사업량	1		1						
		사업비	50		50						
	옥천군	사업량	1						1		
		사업비	640						640		
	영동군	사업량	1					1			
		사업비	150					150			
증평군	사업량	1		1							
	사업비	197		197							
진천군	사업량	2		1			1				
	사업비	461		161			300				
음성군	사업량	1		1							
	사업비	700		700							
충남	소계	사업량	12	2	2	3				4	1
		사업비	2,893	600	263	600				1,030	400
	기술원	사업량	1	1							
		사업비	100	100							
	천안시	사업량	1								1
		사업비	400								400

시도	시군	사업량 사업비 (국비)	계	과업 중합 농업 시설	학 농 업 시설	교 육 시 설	중 합 검 정 실	실 증 포 장	미 생 물 양 설 비	농 산 물 공 설 가	실 습 체 시 설	기 타	
	공주시	사업량	1								1		
		사업비	500								500		
	보령시	사업량	1									1	
		사업비	80									80	
	서산시	사업량	1				1						
		사업비	500				500						
	계룡시	사업량	1			1							
		사업비	150			150							
	금산군	사업량	1									1	
		사업비	200									200	
	서천군	사업량	1			1							
		사업비	113			113							
	홍성군	사업량	1		1								
		사업비	500		500								
예산군	사업량	2				2							
	사업비	100				100							
태안군	사업량	1									1		
	사업비	250									250		
전북	소계	사업량	18	6	6		4	1				1	
		사업비	5,255.5	3,402.5	722.5		520.5	565				45	
	기술원	사업량	6	1	2		2					1	
		사업비	560	80	85		350					45	
	군산시	사업량	1						1				
		사업비	565						565				
	익산시	사업량	1	1									
		사업비	500	500									
	남원시	사업량	1				1						
		사업비	20.5				20.5						
	완주군	사업량	2	1	1								
		사업비	232.5	195	37.5								
	진안군	사업량	2	1	1		1						
		사업비	265	15	100		150						
	무주군	사업량	1	1									
		사업비	2,000	2,000									
	순창군	사업량	1		1								
		사업비	300		300								
고창군	사업량	1	1										
	사업비	612.5	612.5										
부안군	사업량	1		1									
	사업비	200		200									
전남	소계	사업량	15	5	5							5	
		사업비	5,292	2,680	600							2,012	
	기술원	사업량	1									1	
		사업비	1,262									1,262	
여수시	사업량	1	1										
	사업비	600	600										

시도	시군	사업량 사업비 (국비)	계	과업 중합 농업 시설	교 육 시 설	중 합 검 정 실	실 증 포 장	미 생 물 양 상 설 비	농 산 물 공 급 설 비	실 체 시 설 비	습 합 설 비	기 타		
	순천시	사업량	1		1									
		사업비	200		200									
	광양시	사업량	1	1										
		사업비	600	600										
	곡성군	사업량	1		1									
		사업비	100		100									
	구례군	사업량	1										1	
		사업비	100										100	
	고흥군	사업량	1	1										
		사업비	600	600										
	강진군	사업량	1										1	
		사업비	200										200	
	해남군	사업량	1	1										
		사업비	480	480										
	영암군	사업량	1		1									
		사업비	50		50									
	함평군	사업량	2		1								1	
		사업비	400		150								250	
완도군	사업량	1										1		
	사업비	200										200		
진도군	사업량	2	1	1										
	사업비	500	400	100										
경북	소계	사업량	9	2	1		2	2				2		
		사업비	2,700	1,100	100		290	148				1,062		
	포항시	사업량	1										1	
		사업비	62										62	
	구미시	사업량	1						1					
		사업비	125						125					
	영주시	사업량	2	1	1									
		사업비	1,100	1,000	100									
	청송군	사업량	1										1	
		사업비	1,000										1,000	
	청도군	사업량	1					1						
		사업비	190					190						
	예천군	사업량	3	1				1	1					
		사업비	223	100				100	23					
	경남	소계	사업량	11	3	4		1	1			1	1	
			사업비	10,618	7,018	3,195		220	60			100	25	
		진주시	사업량	1					1					
			사업비	220					220					
김해시		사업량	1		1									
		사업비	1,000		1,000									

시도	시군	사업량 사업비 (국비)	계	과업 종합시설 학농시설	교육 시설	종합 검정실	실증 포장	미생 물양설 배시	농산 물공설 가시	실습 시설	기타
	거제시	사업량	1	1							
		사업비	1,918	1,918							
	의령군	사업량	1			1					
		사업비	600			600					
	창녕군	사업량	1					1			
		사업비	60					60			
	고성군	사업량	1			1					
		사업비	245			245					
	고성군	사업량	1								1
		사업비	25								25
	하동군	사업량	1								1
		사업비	100								100
	산청군	사업량	1		1						
		사업비	2,200		2,200						
	거창군	사업량	1			1					
		사업비	1,350			1,350					
	합천군	사업량	1		1						
		사업비	2,900		2,900						

○ 제주계정

(단위 : 개소, 국비, 백만원)

시도	시군	사업량 사업비 (국비)	계	과업 종합시설 학농시설	교육 시설	종합 검정실	실증 포장	미생 물양설 배시	농산 물공설 가시	실습 시설	기타
제주	총계	사업량	3	2	1						
		사업비	2,572.5	1,072.5	1,500						
	기술원	사업량	1			1					
		사업비	1,500			1,500					
	서귀포	사업량	1		1						
		사업비	900		900						
서부	사업량	1		1							
	사업비	172.5		172.5							

○ 세종계정

(단위 : 개소, 국비, 백만원)

시도	시군	사업량 사업비 (국비)	계	과업 종합시설 학농시설	교육 시설	종합 검정실	실증 포장	미생 물양설 배시	농산 물공설 가시	실습 시설	기타
세종	소계	사업량	1	0	1						
		사업비	25	0	25						
	세종시	사업량	1			1					
		사업비	25			25					

○ 지역자율계정

(단위 : 중, 국비, 백만원)

시도	시군	사업량 사업비 (국비)	소계	순회및 상담지 도차량	농기계 수량	다목적 방제기 (차량포함)	홍교 장	보육 비	농산물 공비 가장	종검 장	합정 비	가질 장	축병 비	조배 장	직양 비	미생물 양비 배장	기 타
전국	총계	사업량	413	28	3	1	56	89	108	2	1	37	88				
		사업비	12,240.5	668	110	105	431.5	630	4,342.5	73	9.35	2,887	2,964.2				
부산	소계	사업량	1				1										
		사업비	50				50										
	부산시 기장군	사업량	1				1										
		사업비	50				50										
인천	소계	사업량	1	1													
		사업비	20	20													
	인천시	사업량	1	1													
		사업비	20	20													
대전	소계	사업량	2	1						1							
		사업비	75	20						55							
	대전시	사업량	2	1						1							
		사업비	75	20						55							
경기	소계	사업량	75	7			23	12	8	2					4	19	
		사업비	2,200	198.5			193.5	235	425	73					680	395	
	기술원	사업량	27				6		2								19
		사업비	490				85		10								395
	수원시	사업량	1	1													
		사업비	16	16													
	화성시	사업량	4				4										
		사업비	40				40										
	안산시	사업량	4	1			3										
		사업비	46	22.5			23.5										
	평택시	사업량	3	2						1							
		사업비	97	67						30							
	파주시	사업량	3						1	2							
		사업비	349						59	290							
	김포시	사업량	4	1					3								
		사업비	39	18					21								
	광주시	사업량	2				2										
		사업비	11				11										
	이천시	사업량	3						1	2							
		사업비	97						55	42							
	안성시	사업량	7						1	2						4	
		사업비	806						53	73						680	
	포천시	사업량	7						7								
		사업비	100						100								
	양평군	사업량	1	1													
		사업비	50	50													

시도	시군	사업량 사업비 (국비)	소계	순회및 상담지 도차량	농기계 리량 수차	다목적 방제기 (차량포함)	홍교 장	보육 비	농산물 공비 가장	종검 장	합정 비	가질 장	축명 비	조배 장	직양 비	미생물 양비 배장	기 타	
	가평군	사업량	1	1														
		사업비	25	25														
	연천군	사업량	8						8									
		사업비	34						34									
강원	소계	사업량	189	6				20	73		40					13	37	
		사업비	1,869	101				128	375		865					300	100	
	기술원	사업량	2	1							1							
		사업비	96	21							75							
	춘천시	사업량	3								3							
		사업비	50								50							
	원주시	사업량	33	2						6								25
		사업비	152	27						75								50
	태백시	사업량	51						10	22	7						12	
		사업비	350						25	100	25						200	
	삼척시	사업량	7						6		1							
		사업비	78						43		35							
	홍천군	사업량	5								4						1	
		사업비	200								100						100	
	횡성군	사업량	3	1							2							
		사업비	120	20							100							
	영월군	사업량	1	1														
		사업비	13	13														
	평창군	사업량	57							45								12
		사업비	250							200								50
	정선군	사업량	2								2							
		사업비	90								90							
	철원군	사업량	8	1							7							
		사업비	220	20							200							
	양구군	사업량	17						4		13							
		사업비	250						60		190							
	충북	소계	사업량	11	1							3						7
			사업비	791	35							306						450
기술원	사업량	7															7	
	사업비	450															450	
청주시	사업량	2								2								
	사업비	223								223								
보은군	사업량	1	1															
	사업비	35	35															
단양군	사업량	1								1								
	사업비	83								83								
충남	소계	사업량	7	2	1						3					1		
		사업비	768	53	55						650					10		
당진시	사업량	1	1															
	사업비	18	18															
금산군	사업량	1	1															
	사업비	35	35															

시도	시군	사업량 사업비 (국비)	소계	순회및 상담지 도차량	농기계 리량 수차	다목적 방제기 (차량포함)	홍교 장	보육 비	농산물 공비 가장	종검 장	합정 비	가질 장	축명 비	조배 장	직양 비	미생 물양 비	기 타	
	부여군	사업량	2							2								
		사업비	550							550								
	서천군	사업량	1			1												
		사업비	55			55												
	예산군	사업량	1								1							
		사업비	100								100							
	태안군	사업량	1														1	
		사업비	10														10	
전북	소계	사업량	58	3	1		7	4	22					1	9	11		
		사업비	2,110.5	57.5	35		40	20	586.5					9.35	423	939.2		
	기술원	사업량	16				1	3								3	9	
		사업비	315				15	9								8	283	
	전주시	사업량	3	1			2											
		사업비	20	17.5			2.5											
	군산시	사업량	5													5		
		사업비	335													335		
	정읍시	사업량	5	1			3											1
		사업비	680	20			10											650
	남원시	사업량	3							1				1				1
		사업비	79.5							64				9.35				6.15
	김제시	사업량	2	1												1		
		사업비	100	20												80		
	완주군	사업량	3				1		2									
		사업비	17.5				12.5		5									
	진안군	사업량	4						4									
		사업비	50						50									
	장수군	사업량	4						4									
		사업비	200						200									
임실군	사업량	3		1				1	1									
	사업비	176		35				11	130									
고창군	사업량	10						10										
	사업비	137.5						137.5										
전남	소계	사업량	15	2	1				8							2	2	
		사업비	2,720	80	20				1,065							600	955	
기술원	사업량	1															1	
	사업비	900															900	
담양군	사업량	1														1		
	사업비	100													100			
곡성군	사업량	2														1	1	
	사업비	555													500	55		
보성군	사업량	2	1						1									
	사업비	190	40						150									
화순군	사업량	1							1									
	사업비	90							90									
장흥군	사업량	2		1					1									
	사업비	140		20					120									

시도	시군	사업량 사업비 (국비)	소계	순회및 상담지 도차량	농기계 리량 수차	다목적 방제기 (차량포함)	홍교 장	보육 비	농산물 공비 농가장	종검 장	합정 비	가질 장	축명 비	조배 장	직양 비	미생물 양비 미배장	기 타	
	강진군	사업량	1								1							
		사업비	130								130							
	해남군	사업량	1									1						
		사업비	300								300							
	영암군	사업량	1									1						
		사업비	145								145							
	함평군	사업량	1		1													
		사업비	40		40													
	완도군	사업량	1									1						
		사업비	30								30							
	신안군	사업량	1									1						
		사업비	100								100							
경북	소계	사업량	49	4				5			23					6	11	
		사업비	1,087	93				20			390					474	110	
	안동시	사업량	18								18							
		사업비	115								115							
	구미시	사업량	1													1		
		사업비	25													25		
	영주시	사업량	6	1				5										
		사업비	55	35				20										
	문경시	사업량	2	2														
		사업비	40	40														
	영양군	사업량	3								3							
		사업비	130								130							
	영덕군	사업량	1													1		
		사업비	90													90		
	청도군	사업량	10															10
		사업비	60															60
예천군	사업량	4	1												3			
	사업비	277	18												259			
봉화군	사업량	2								2								
	사업비	145								145								
울릉군	사업량	2													1	1		
	사업비	150													100	50		
경남	소계	사업량	5	1		1										2	1	
		사업비	550	30		105										400	15	
	진주시	사업량	1															1
		사업비	15															15
	밀양시	사업량	1	1														
		사업비	30	30														
	함안군	사업량	1													1		
		사업비	60													60		
	창녕군	사업량	1													1		
		사업비	340													340		
	남해군	사업량	1				1											
		사업비	105				105											

○ 제주계정

(단위 : 개소, 국비, 백만원)

시도	시군	사업량 사업비 (국비)	소계	순회및 상담지 도차량	농기계 수리 차량	다목적 방제기 (차량포함)	홍교 장 보 육 비	농산물 공 비 가 장	종 검 장	합 정 비	가 질 장	축 병 비	조 배 장	직 양 비	미 생 물 양 비 배 장	기 타	
제주	소계	사업량	사업량	15			1	14								12	
		사업비	사업비	177.5			10	125									42.5
	기술원	사업량	사업량	1													1
		사업비	사업비	10													10
	제주	사업량	사업량	1					1								
		사업비	사업비	40					40								
	서귀포	사업량	사업량	10				1	10								10
		사업비	사업비	80				10	40								30
	동부	사업량	사업량	1					2								
		사업비	사업비	40					40								
	서구	사업량	사업량	2					1								1
		사업비	사업비	7.5					5								2.5

○ 세종계정

(단위 : 개소, 국비, 백만원)

시도	시군	사업량 사업비 (국비)	소계	순회및 상담지 도차량	농기계 수리 차량	다목적 방제기 (차량포함)	홍교 장 보 육 비	농산물 공 비 가 장	종 검 장	합 정 비	가 질 장	축 병 비	조 배 장	직 양 비	미 생 물 양 비 배 장	기 타
세종	소계	사업량	2	1			1									
		사업비	35	20			15									
	세종시	사업량	2	1			1									
		사업비	35	20			15									

참고 3 **지역별 지도기반시설 세부사업 내용**

시도	시군	사업명	위치	사업량	예산 (국비)	유형 (번화)	
	총계	82개소 105개사업		93	43,569,500		
부산	소계	1개소 1개사업		1	434,000		
	부산시	부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 미생물배양시설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로 1285(대저1동)	1	434,000	1	
광주	소계	1개소 2개사업		2	1,050,000		
	광주	농산물종합분석실 설치 농업홍보관 리모델링	광주 광산구 평동로 639-21 광주 광산구 평동로 639-21	1식 1식	950,000 100,000	1 8	
대전	소계	1개소 1개사업		1	10,000		
대전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자동공급시스템 시설개선	농업기술센터 내		1식	10,000	5	
경기	소계	9개소 11개사업		11	2,569,000		
	기술원	원예용 유리온실 환경 개선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1(3,000㎡)	450,000	4	
		농업과학연구원 공조시설 보완공사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1(3,300㎡)	150,000	2	
	고양시	농산물가공자원센터 고도화 기반조성사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원흥동)	1(399㎡)	450,000	6	
	파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구축	경기도 파주시 통일로 600 (아동동)	1(150㎡)	38,000	3	
	광주시	과학영농시설 리모델링 공사	경기도 광주시 이배제로 209-5(목현동)	1(1,520㎡)	400,000	1	
	이천시	이천도시농업관 조성 사업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사실로 720 (농기계임대사업소 내 부지)	1(1,653㎡)	150,000	4	
		친환경미생물배양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개선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38-52(중리동)	1(746㎡)	50,000	5	
	안성시	친환경 농축산용 유용미생물 생산환경 개선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보개원삼로 219	1(264㎡)	326,000	5	
	포천시	농업인 교육 홍보시설 개선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틀못이길 11-88	1(2,800㎡)	134,000	2	
	양평군	토양분석실 시료전처리 시설 설치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산49-4	1(165㎡)	171,000	3	
	연천군	농업인교육장 리모델링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차현로 139	1(310㎡)	250,000	2	
	강원	소계	11개소 14사업		14	8,715,000	
		기술원	스마트융복합 과학영농시설 구축	춘천 신북읍 산천리 5 일원	1식 (4,999㎡)	1,000,000	4
농산물가공시설 리모델링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386-2 농식품연구소 가공연구실	1식	250,000	6	
씨감자 안정생산 시설			평창군 대관령명 차항리 96번지 일원	1식 (11,049㎡)	200,000	4	
약용작물 증식기술 기반시설 구축			태백시 철암동 머릿골길 108-38	1식 (450㎡)	325,000	4	
춘천시		농업인과 소비자의 상생교육관 신축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342-19외1	1식	900,000	2	
원주시		생활자원기술교육관 신축	원주시 흥업면 1576-7번지	1식 (377.8㎡)	600,000	2	
강릉시		농업인교육장 및 과학영농시설 환경개선	강릉시 사천면 동해대로 3738-17	1식	40,000	1.2	
태백시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신축	태백시 황지동 288	1식 (270㎡)	350,000	5	
평창군		과학영농종합시설 증축	평창군 평창읍 여만길 46	1식 (946㎡)	1,100,000	1	
화천군		과학영농실증시험포 구축	화천군 화천읍 신흥리 800번지 일원	1식	500,000	4	
양구군		친환경농업 시험연구실 및 농업업인 교육 관 신축 (친환경농업연구센터)(계속)	양구군 남면 청리 1110-7	1식 (894㎡)	700,000	1.2	

시도	시군	사업명	위치	사업량	예산 (국비)	유형 (번호)
	인제군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	인제군 덕산리 산 24 일원	1식 (6,217㎡)	2,000,000	1
	고성군	농업인 교육 신축(계속)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390번지	1식 (900㎡)	250,000	2
	양양군	과학영농종합시설 보수	양양군 동해대로 2558	1개소 (270㎡)	500,000	1
충북	소계	9개소 13개 사업		24식	4,033,000	
	기술원	농업기술원 시설보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곡길 46	1식	500,000	8
		농업인회관 리모델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곡길 46	1식	200,000	2
		미래농업교육센터 교육장 시설보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곡길 46	1식	150,000	2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활성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곡길 46	12식	880,000	8
	충주시	과학영농시설 및 교육시설 리모델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50	1식	40,000	1
	제천시	체험학습실증포 유리온실 리모델링	제천시 봉양읍 제천북로3길 20	1식	65,000	4
	보은군	생활과학관 리모델링	보은군 보은읍 남부로 4733	1식	50,000	2
	옥천군	미생물배양센터 신축	옥천군 옥천읍 옥천동이로 234	1식	640,000	5
	영동군	과수 스마트 농업 실험시설 조성	영동군 영동읍 학산영동로 1065	1식	150,000	4
	증평군	농업인 교육시설 환경개선	증평군 증평읍 내룡길 69-50	1식	197,000	2
	진천군	ICT융복합 스마트온실 조성	진천군 진천읍 삼덕1길 45-16	1식	300,000	4
		농업인 영농 상담실 증축	진천군 진천읍 삼덕1길 45-16	1식	161,000	2
	음성군	친환경농업 교육관 신축	음성군 음성읍 용광로 81-5	1식	700,000	2
충남	소계	11개소 12개사업		11	2,893,000	
	기술원	과학영농시설 보수공사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	1식	100,000	8
	천안시	한국형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기반 구축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목천안터1길 15	1식	400,000	8
	공주시	자연학습 힐링가든팜 조성	공주시 우성면 내산목천길 52-15	1식	500,000	7
	보령시	농업테마파크 조성	보령시 주포면 충서로 3220	1식	80,000	7
	서산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설치	서산시 인지면 무학재1길 99	1식	500,000	3
	계룡시	도시농업교육장 조성 및 청사 리모델링	계룡시 두마면 사계로 177	1식	150,000	2
	금산군	도시농업 치유센터 조성	금산군 금성면 의총길 25	1식	200,000	7
	서천군	농업기술센터 교육시설 및 청사환경개선	서천군 마서면 장서로 689	1식	113,000	2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친환경농업관 기반구축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420-4	1식	500,000	8
	예산군	퇴비 부숙도 분석실 리모델링	예산군 신암면 오신로 852	1식	50,000	8
		유기농자재 제조시설 확대운영시스템 구축	예산군 신암면 오신로 852	1식	50,000	8
	태안군	태안형 농업체험 테마파크 조성	태안군 태안읍 송암로 770-2	1식	250,000	8
	전북	소계	10개소 16개사업		18	5,255,500
기술원		교육시설 환경 개선사업	전북 익산시 서동로 413	2식	85,000	2
		기후변화대응 아열대 작물 시설하우스 신축	전북 익산시 서동로 413	1식(1,650m2)	250,000	4
		파프리카 신품종 보급·교육용 온실 환경 개선	전북 군산시 대야면 천수길 92-32	1식	45,000	8
		종자사업소 고품위 종자생산 기반 조성	전북 익산시 하나로 15길 179-25	1개소(144km)	100,000	4
군산시		잠사곤충시험장 곤충실용화 기반시설 설치	전북 부안군 변산면 참평로 312	1개소(150m)	80,000	1
익산시		미생물 배양센터 신축	군산시 개정면 운회길 32	1개소(500m)	565,000	5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환경개선	전북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366-20	1개소(2162m)	500,000	1
남원시		아열대 작물 실증포 기반시설 설치	전북 남원시 이백면 이백로 309	1개소(1,300m)	20,500	4
완주군		과학영농시설(종합검정실) 및 농업인정보화교육장 환경개선	전북 완주군 고산면 고산천로 720-45	2개소	232,500	1,2
		농업인 야외교육장 조성	진안군농업기술센터 내	1개소(2,300m)	100,000	2
진안군		종합분석실 환경 개선	진안군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1개소	15,000	3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작물 실증재배 온실 조성	진안읍 반월리 1393	1개소(500m)	150,000	4
무주군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한풍로로 416외 1번지	1개소	2,000,000	1
순창군		농고, 농대생 전문 농업 실습형 교육장 구축	전북 순창군 삭골길 56-1	1개소	300,000	2
고창군		고창군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구축	전북 고창군 고수면 인성로 304	1개소	612,500	1
부안군		스마트활용 양액재배 시설 구축 및 교육장화	전북 부안군 상사면 내변산로 1840-11	1개소 (450㎡)	200,000	2

시도	시군	사업명	위치	사업량	예산 (국비)	유형 (번호)
전남	소계	13개소 15개사업		15	5,292,000	
	도원	농업기술원지도연구시설환경개선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전남농업기술원)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354	1식	1,262,000	8
	여수	종합 실험·연구동 신축	여수시 주동1길 32 (여수시농업기술센터)	990㎡ (330㎡, 3층)	600,000	1
	순천	순천시 혁신농업인센터 건립	순천시 지현길 96	1,395㎡	200,000	2
	광양	광양시 과학영농관 증축	광양시 광양읍 서천변로 177 (농업용미생물실)	594㎡	600,000	1
	곡성	농업기술센터 교육관 환경개선 사업	곡성군 곡성읍 학정3길9 (곡성군농업기술센터)	362㎡	100,000	2
	구례	식물표본전시관 조성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894-5	92㎡	100,000	2
	고흥	과학영농 시험연구동 신축	고흥군 풍양면 풍남로 143 (고흥군농업기술센터)	660㎡	600,000	1
	강진	영농현장 기술보급 시설구축 (농업인상담소 신축 및 리모델링)	강진군 작천면 군자리 197-5 외 4개소	5개소	200,000	8
	해남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 (농민상담소 및 농기계교육장)	전남 해남군 해남읍 용정리 301-3 외	480㎡	480,000	1
	영암	복합교육장 조성	영암군 덕진면 금호길 11 (영암군농업기술센터)	397㎡	50,000	2
	함평	농업교육종합시설환경개선	함평군 학교면 학교화산길 90(함평군농업기술센터)	1식	150,000	2
		나비곤충 생태체험관 및 사육온실 신축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 161-9 (함평군농업기술센터)	300㎡	250,000	8
	완도	영농현장 기술보급 시설 구축 (노화농업인상담소 신축)	완도군 노화읍 도청리 881-7(염)	1식	200,000	8
진도	농산물 안전분석실 설치	진도군 군내면 가흥로 691 흥주 사업소	330㎡	400,000	1	
	농업교육종합시설 환경개선	진도군 군내면 가흥로 697 (진도군농업기술센터)	1,362㎡	100,000	2	
경북	소계	6개소 9개사업		9	2,700,000	
	포항시	농업인상담소 노후시설 개선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놀태길 15 등 5개소	1식	62,000	8
	구미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소 장비 구축 (공조시설 리모델링)	구미시 선산읍 김선로 963	1식	125,000	5
	영주시	소득작물 무독묘 바이오센터 건립	영주시 장수면 화기리 520-1 일대	990㎡	1,000,000	1
	영주시	농업인 교육관 조성	영주시 봉현면 소백로 1653	420㎡	100,000	2
	청송군	스마트팜 연구단지 조성	청송읍 송생리 784-107	1식	1,000,000	8
	청도군	신소득작목육성 스마트팜 구축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438	1,000㎡	190,000	4
예천군	실증시험포 과학영농 기반조성 - 미생물배양 배관 및 노후시설교체 - 스마트농업테스트베드교육장조성 - 농심테마공원조성	예천군 예천읍 도효자로 87-56, 생천리 56-1	3식	223,000	1, 4	
경남	소계	10개소 11개사업		11	10,618,000	
	진주시	첨단온실시설 확충 지원	진주시 문산읍 둔산리 777	1,863㎡	220,000	4
	김해시	농업인교육관 건립사업	김해시 전하동 900번지	900㎡	1,000,000	2
	거제시	과학영농종합시설(농업기술센터) 이전	거제시 거제면 서정리 855-8	4,500㎡	1,918,000	1
	의령군	농업인지식정보실 구축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 195	268.26㎡	600,000	2
	창녕군	기능성 미생물 배양시설 리모델링	창녕군 대지면 우포2로 1085	390㎡	60,000	5
	고성군	농촌생활문화관 건립	고성군 고성읍 남해안대로 2829-60	463㎡	245,000	2
		친환경유기농업자재전시·교육장 설치	고성군 고성읍 남해안대로 2829-60	108.36㎡	25,000	8
	하동군	식물공장(새싹삼) 건립사업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012	2,392㎡	100,000	7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	산청군 산청읍 물안실로 8	2,131㎡	2,200,000	1
거창군	미래농촌복합교육관 건립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	2,000㎡	1,350,000	2	
합천군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	합천군 용주면 고평리 910-318	5,280㎡	2,900,000	1	

※ 유형 : 1 과학영농종합시설, 2 교육시설, 3 종합검정실, 4 실증포장, 5 미생물배양시설, 6 농산물가공시설, 7 실습체험시설, 8 기타(위 유형 미포함)

○ 제주계정

(단위 : 천원, 국비기준)

시도	시군	사업명	위치	사업량	예산 (국비)	유형 (번호)
	총계	3개소 3사업	-	3	2,572,500	
제주	기술원	미래농업육성관 신축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212	1식(1,800㎡)	1,500,000	2
	서귀포	농업정보화회관 보수 공사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동로 7413	1식(3,273㎡)	900,000	1
	서부	청사 기반시설 보수보강	제주시 한림읍 월림7길 90	1식(5,994㎡)	172,500	1

※ 유형 : 1 과학영농종합시설, 2 교육시설, 3 종합검정실, 4 실증포장, 5 미생물배양시설, 6 농산물가공시설, 7 실습체험시설, 8 기타(위 유형 미포함)

○ 세종계정

(단위 : 천원, 국비기준)

시도	시군	사업명	위치	사업량	예산 (국비)	유형 (번호)
	총계	1개소 1개사업		1	25,000	2
세종	세종시	비대면 영농교육장 조성	세종시 연서면 월하천로 289	1개소	25,000	2

※ 유형 : 1 과학영농종합시설, 2 교육시설, 3 종합검정실, 4 실증포장, 5 미생물배양시설, 6 농산물가공시설, 7 실습체험시설, 8 기타(위 유형 미포함)

참고 4 **지역별 지도기반장비 세부사업 내용**

시도	시군	장비명	사업량		규격(용량)	예산 (국비)	유형 (번호)
			종	대·기			
	총계	81개소	881	1,241		12,240,500	
부산	소계	1개소	2	2		50,000	
	부산시 기장군	교육홍보장비	1	1	1식	5,000	4
		순회지도상담차량	1	1	2.5톤 정비용 내장탑차 1대	45,000	2
인천	소계	1개소	1	1		20,000	
	인천시	순회지도차량	1	1	승용차(하이브리드)	20,000	1
대전	소계	2개소	2	2		75,000	
	대전시	순회지도차량	1	1	승용(전기) 1대	20,000	1
		인산규산분석기	1	1	인산규산분석기	55,000	6
경기	소계	14개소	75	105		2,200,000	
	기술원	교육홍보장비	6	6	빔프로젝트 1대 전동식롤스크린 1대 무정전전원장치 1대 LED스크린 1대 교육용책상(40) 1식 교육용의자(40) 1식	85,000	4
		종합검정장비	2	4	비파계당도계(사과) 2대 비파계당도계(포도) 2대	10,000	6
		기타(쌀품질장비 등)	19	26	밥 취반식미계 1대 쌀 곡립판별기 1대 쌀 미립측정기 1대 고속 원심분리기 1대 맛 센서 분석기 1대 고소작업대 1대 굴삭기 1대 이온플라즈마분광기 1대 배지살균기 1대 환경 및 풍속측정기 2대 버섯 재배사 세척기 2대 냉장시약장 1대 이동식후드 2대 다목적운반차 2대 원심분리기 1대 DNA분석기 1대 광학현미경 1대 실체현미경 1대 식물생장조절기 4대	395,000	10
	수원시	순회지도차량	1	1	승합 1대	16,000	1
	화성시	교육홍보장비	4	13	1인 라이브방송시설 1식 농산물제품촬영및편집장비 5식 교육용 빔프로젝트 1대 편집및방송용컴퓨터 6식	40,000	4
	안산시	순회지도차량	1	1	승합 1대	22,500	1
		교육홍보장비	3	6	비디오프로젝트 3대 전자칠판 3대	23,500	4
	평택시	순회지도차량	2	3	전기차(5인승) 2대 중형승합(12인승) 1대	67,000	1
		종합검정장비	1	1	자동수은분석기 1대	30,000	6
	파주시	종합검정장비	2	2	LC-MS/MS 1대 GC-MS/MS 1대	290,000	6
농산물가공장비		1	1	농산물동결건조장비 1대	59,000	5	

시도	시군	장비명	사업량		규격(용량)	예산 (국비)	유형 (번호)
			종	대·기			
충청	김포시	순회지도차량	1	1	트럭(0.8톤 탑차) 1대	18,000	1
		농산물가공장비	3	4	탄소반죽기(50L) 2대, 유로베이커 오븐(4매,3단) 1대, LCD 스마트 도우 컨디셔너 1대	21,000	5
	광주시	교육홍보장비	2	3	전자교탁 2대 카메라 1식	11,000	4
	이천시	종합검정장비	2	2	마이크로웨이브 1대 초자세척기 1대	42,000	6
		농산물가공장비	1	1	동결건조기 1대	55,000	5
	안성시	종합검정장비	1	1	자동토양분석기 1대	53,000	6
		미생물배양장비	4	8	대량배양기 3대 중균배양기 3대 자동포장장비 1대 배지자동조제장비 1대	680,000	9
		축산장비	2	2	질소분석기 1대 정자활성도분석기 1대	73,000	7
	포천시	농산물가공장비	7	8	필피피니셔 1대 진공 잼 농축기 1대 초음파 세척기 2대 스크류착즙기 1대 순간고온살균기 1대 스파우트파우치 포장기 1대 스티포장기 1대	100,000	5
	양평군	순회지도차량	1	2	전기 2대	50,000	1
	가평군	순회지도차량	1	1	승합 1대	25,000	1
	연천군	교육홍보장비	8	8	빔프로젝트 1대 데스크탑컴퓨터(30) 1식 모니터(30) 1식 컴퓨터 책상(30) 1식 컴퓨터 의자(30) 1식 교육용 책상(25) 1식 교육용 의자(50) 1식 방송장비 140w 1식	34,000	4
	강원	소계	12개소	189	294		1,869,000
기술원		종합검정장비	1	1	ICP(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계)	75,000	6
		순회지도차량	1	1	중형승합차(7인승)	21,000	1
춘천시		종합검정 장비	3	3	UV분광광도계, 배양기, 전처리기(마이크로웨이브),	50,000	6
원주시		생활자원기술교육 장비	25	70	오븐, 발효기, 세탁기, 건조기, 냉 장냉동겸용장치, 노트북, 영상정보 디스플레이장치, 음향장비, 캐비 닛, 믹서기, 민짜기, 두유기, 책상, 의자, 주방기구소독기, 식기세척 기,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에어 컨, 주방운반차, 분쇄기 등	50,000	10
		순회지도차량	2	2	포터 II(더블캡 1톤 병해충진단차량) 1톤 트럭(농업기계 이동수리 차량)	27,000	1
		농산물가공 장비	6	7	스크류착즙기, 진동체 여과기, 보 조탱크, 추출진공농축기 2, 액상 스티포장기, 라벨프린터	75,000	5
태백시	미생물배양장비	12	18	배양기 4대, 저장조 4대, 에어 컴프레서, 냉동기, 전기보일러, 세척장치, 이송장치, 미생물포장기, 수처리장치, 스트러처, 제어시스템, 자동분주시스템	200,000	9	

시도	시군	장비명	사업량		규격(용량)	예산 (국비)	유형 (번호)
			종	대·기			
		종합검정 분석장비	7	7	초순수제조장치, 후드 2종, 실험대, Flask shake, 토양간이검정기 2종	25,000	6
		농산물 가공 교육장비	22	26	발효기, 반죽기, 오븐기, 착즙기, 포장기, 건조기, 세척기, 파쇄기, 후드시설, 제습기, 믹서기, 조리대 5, 분쇄기, 살균기, 냉장고, 찹솔, 씽크대, 빙프렉터, 벨프린터, 세탁기,음향장비, 영상정보디스플레이	100,000	5
		홍보 등 교육 장비	10	13	전자칠판 1704*1031*100 빔프로젝트 1920*1080 방송장비 마이크, 캠, 헤드셋, 조명, 스피커스크린 3000*1000 노트북 355*227*14 전자교탁 649*2235*685	25,000	4
	삼척시	홍보 등 교육 장비	6	34	전자교탁 2, 컴퓨터 17, 프린터기 6, 빔프로젝트 3, 스크린 3, 음향장비 3	43,000	4
		종합검정 장비	1	1	토양(pH,EC)자동분석기(SP2000)	35,000	6
	홍천군	농산물안전성 분석장비	4	4	수은분석기, 질소분석기, 액비 분석기, UV분광광도계	100,000	6
		유용미생물 배양장비	1	4	1.5 ton 액상미생물 배양기	100,000	9
		순회지도상담차량	1	1	스타렉스어반(9인)	20,000	1
	횡성군	종합검정장비	2	2	ICP(유도결합프라즈마분광계) TOC(총유기탄소분석기)	100,000	6
	영월군	순회지도상담차량	1	1	소형승합차	13,000	1
	평창군	가공교육장비	45	55	버블세척기, 과일파쇄기, 서비스 탱크 모노플렉스 펌프, 비타민 투입기, 브렌칭 탱크, 공압착즙기, 착즙액 서비스탱크 썬타리 원심펌프, 마이크로 여과기 2대 완제품 저장탱크, 순간고온살균기 1대 롤 파우치 포장기, 스택킹 파우치 포장기 병충진기, 스파우트 포장기, 제 품배관 2식,유틸리티 배관 2식, 다목적세척기, 애플콕 수동버블세척기(2단), 야채절단기, 세미기, 이동탈수대차 4대, 이송캐리어 2대, 싱크대, 테이블 및 작업대 2식, 낮은렌지 캐비닛 씽크대 2대, 업소용 냉장고 2대 테이블렌지, 수조형 찹기, 밴드슬러 복식 진공포장기, 소스 정량 충전기, 엔터팩 포장기, 자외선 살균기, 스팀보일러, 에어컴프레셔, 기타 (집기류 6종) 6대	200,000	5
		병해충 예찰·진단 장비	12	12	디지털 영상 실체현미경, 형광 현미경 디지털 영상 검사장비, 병해충 예찰용 드론 무균작업대 및 의자 1식 병해충 영상 출력장비, 토양 현장진단 장비 건열멸균기, 향온함습기, 무인공중포충망	50,000	10

시도	시군	장비명	사업량		규격(용량)	예산 (국비)	유형 (번호)	
			중	대·기				
	정선군	종합검정장비	2	2	예찰식물 보관 냉장고 진단 담당용 실험복, 집기류 등 ICP, 초순수제조장치	90,000	6	
		순회지도차량	1	1	승합용 소형(9인승)	20,000	1	
	철원군	종합검정 장비	7	8	퇴비분석기, 액비성분분석기, 토양시료조제기, 시료전처리 교반기, 초자세척기, 유도결 합플라즈마 분광분석기(ICP), 초순수제조기 2	200,000	6	
		종합검정 장비	13	13	ICP, 분광광도계, 흡후드, 실험대 등	190,000	4	
	양구군	교육·홍보 장비	4	8	빔프로젝트 2, 전자교탁 2, 방송장비, PC 3대	60,000	6	
		총계	4개소	54	60		791,000	
충북	기술원	교육과정관리시스템	1	1	학습관리시스템(LMS)	130,000	10	
		쌀 품질 분석용 장비	4	5	중합효소연쇄반응장치 등 4종	77,000	10	
		식품개발 분석 장비	5	5	액체크로마토그래프 등 5종	100,000	10	
		농업환경 분석 장비	4	4	마이크로웨이브 등 4종	55,000	10	
		지역특화버섯 신품종 육성 장비	4	5	클린벤치 등 4종	23,000	10	
		곤충종자 사육 및 시험 장비	7	11	멀티룸인큐베이터 등 7종	52,000	10	
		한국형 외인생산 연구 시험 장비	5	5	반자동 정량주입기 등 5종	13,000	10	
	청주시	농작물 병해충 진단 장비	18	18	초저온냉동고 등 18종	105,000	6	
		종합검정 분석 장비	3	3	자외-가시광선분광광도계 등 3종	118,000	6	
	보은군	순회지도상담차량	2	2	소형화물, 중형승합	35,000	1	
단양군	종합검정실 장비	1	1	유도결합플라즈마	83,000	6		
총계	7개소	33	58		768,000			
충남	당진시	병해충 예찰 및 상담차량	1	1	소형화물차 1대	18,000	1	
	금산군	농촌지도차량	1	1	소형화물차 1대	35,000	1	
	부여군	버섯산업연구소 분석장비	15	36	광학현미경, 초고속원심분리기, 고압살균기, 탈염장비, 초저온냉동고, 자동C/N분석기, 항온실, 실험대, 사무용가구, PCR, 나노드롭, 항온기, 흡후드, 크린벤치, 초정밀전자저울	480,000	10	
		종합검정실 분석장비	4	5	인산규산분석장비, 수질분석IC장비, 마이크로웨이브시료전처리장 비, 초자건조기	70,000	6	
	서천군	농기계 순회수리차량	2	2	3.5톤 유개트럭, 2.5톤 지게차	55,000	2	
	예산군	퇴비 부숙도 분석실 분석장비	7	10	ICP장비, 후드장비, 시약장, 건조기, 냉장고, 전자저울, 회화로	100,000	10	
	태안군	농업미생물 검정장비	3	3	위상차현미경, 카메라, 노트북	10,000	9	
	총계	13개소	257	366		2,110,500		
	전북	기술원	빔프로젝터	1	1		3,500	4
			스크린	1	1		1,500	4
책상 등 교육장비			6	40		10,000	4	
ICT 해충 예찰 장비			1	8	ICT 해충 예찰 장비 8세트 (실시간 통신 모듈, 원격화상 모니터링, 유인트랩장비 등 포함)	120,000	10	
트랙터			1	1	110마력	80,000	10	
콤바인			1	1	6조식	50,000	10	
지게차			1	1	3t	20,000	10	
사료배합기			1	1	500kg, 1.3m ³	6,000	7	
잔가지파쇄기			2	2	DDK-700, 180kg	3,000	7	

시도	시군	장비명	사업량		규격(용량)	예산 (국비)	유형 (번호)
			종	대·기			
전남		항온진탕배양기	2	2	JS-34304	3,000	6
		항온항습기	1	1	150ℓ,-10~120℃	5,000	6
		온습도제어장치	1	1	발효실기준	3,000	9
		미생물발효기	1	1	1800*900*1300cm	5,000	9
		환풍기, 저울, 수분측정기 등	5	5		5,000	9
	전주시	순회지도 차량	1	1		17,500	1
		교육장비(노트북 및 디지털캠코더)	2	2		2,500	4
	군산시	살균(멸균)배양기, 보일러, 포장(공급기)기타장비	5	8	배양기(1.5톤), 보일러(전기식) 기타장비는 배양기사양 고려추진	335,000	9
	정읍시	순회지도 차량 구입	1	1	SUV하이브리드	20,000	1
		농업인 교육장 환경개선 장비	3	12	냉난방기, 교육용 음향장비, 수강용 테이블	10,000	4
		잔류농약 분석장비	29	40	1식	650,000	10
	남원시	쌀 성분분석기 외 3종	4	4		64,000	6
		초순수 제조장치 등 3종	3	3		9,350	8
		온풍기 등 2종	2	2		6,150	10
	김제시	발효사료기	2	2	4ton	80,000	9
		현장기술 지원 차량	1	1	승합차	20,000	1
	완주군	검정장비 2대, 컴퓨터 21대	3	23	추후결정	17,500	4,6
	진안군	중급속 전처리기	1	1		32,500	6
		분광광도계	1	1		10,000	6
		열풍순환식 건조기	1	1		2,000	6
		내산성 흡후드	1	1		5,500	6
	무주군	해당없음					
	장수군	ICP(유도결합플라즈마)	1	1	Dual view	90,000	6
		UV기(분광광도계)	1	1	Wavelength range 200~1100nm	60,000	6
		전자동 pH 측정기	1	1	Auto measure	30,000	6
		실험대	1	4	400*2400*800	20,000	6
	임실군	ICP	1	1	외자구입	80,000	6
		C/N분석기	1	1	외자구입	50,000	6
		저온진공농축기 1대	1	1	80L	11,000	5
		지게차	1	1	2.5톤	20,000	10
		트럭	1	1	1톤	15,000	2
	순창군	해당없음					
고창군	ICP, 초순수제조장치, 비색장치, 자동 ph EC 측정기 외	10		ICP(ICP-OES), 초순수제조장치(20L/H) 등	137,500	6	
소계	12개소	185	231		2,720,000		
	도원	청년 창농타운 제품지원센터 장비구입	151	180	전처리 버블세척기 외 10종 습식가공 파쇄기 외 11종 습식포장 충전기 외 12종 휴산균기 외 1종 열풍건조기 외 3종 분쇄 핀 크러셔 외 2종 건식가공 과립기 외 8종 건식포장 분말충진기 외 10종 오픈키친 살균기 외 29종 기계 보일러 외 2 유틸리티 배관 외 4종 이화학 실험대 외 21종 미생물 실험대 외 16종 발효 실험대 외 1종 외포장 커팅 플로터 외 6종	900,000	100
담양	잔류농약분석기기 -기체크로마토질량분석기	1	1	1식	100,000	6	

시도	시군	장비명	사업량		규격(용량)	예산 (국비)	유형 (번호)	
			종	대·기				
	곡성	고농도 농업미생물 배양기	1	4	배양기 1,000리터 4대, 포장기 1대	500,000	9	
		양액분석 및 화아분화 검경	9	10	연구용 실체현미경 1대 실체현미경 2대 중탄산분석기 1대 pH meter 1대 전자저울 1대 클린벤치 1대 약품장 1식 EC meter 1대 시약냉장고 1대 등	55,000	10	
	보성	과학영농기술실천 종합검정실 노후 장비 교체	2	2	GC/MSMS 1대, 초자기구세척기 1대	150,000	6	
		농촌현장 지도차량 구입	2	2	화물트럭 2대	40,000	1	
	화순	양이온분석장비(ICP)	1	1	양이온분석장비 1대/ 166~847nm	90,000	6	
	장흥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 (화물 차량)	1	1	화물트럭(1톤)	20,000	2	
		종합검정실 시설개선 (과학영농장비 구입)	2	2	ICP(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계) 1식 액비성분분석기 1식	120,000	6	
	강진	ICP기기	1	1	625 x 740 x 887mm	90,000	6	
		마이크로웨이브 전처리 기기	1	1	2,400watts	40,000	6	
	해남	농산물 안전성 분석 및 운영 장비 구입	2	12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2대, 후드·시약장 등 기자재 1식	275,000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운영 시료채취 및 상담용 차량구입	1	1	차량구입 1대	25,000		
	영암	초음파 육질진단기	1	1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	25,000	7	
		퇴비부숙도 검정장비	1	1	ICP-OES analyzers - Multiview, - LDMS Generator 130nm~770nm - 32 CCD 검출기 - Ar순환형, 상온동작 실험기자재	100,000	6	
		병해충 진단장비	1	1	Real Time PCR - TP950 실험기자재	20,000	6	
	함평	순회지도 및 상담용 차량구입	1	3	대형승용차량 1대, 화물트럭차량 2대	40,000	1	
	완도	종합검정실 중금속 전처리 장비 구입	1	1	중금속전처리 장비 1대	30,000	6	
	신안	순회지도상담차량	1	1	디젤	30,000	1	
		종합분석실 검정장비	4	4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광도계(ICP) 1대 자외선-가시광선 분광도계 1대 킬달분해장치 1대 항온배양기 1대	70,000	6	
	경북	소계	10개소	49	68		1,087,000	
		안동시	병해충 진단장비	18	34	광학현미경 외 17종 (Eclipse Ni-U 외)	115,000	6
구미시		미생물 배양장비	1	1	멸균배양기(500리터)	25,000	9	
영주시		순회지도 상담차량	1	2	전기자동차 2대	35,000	1	
		교육장비	5	5	빔프로젝트, 전자교탁 등 교육장비	20,000	4	
문경시		순회지도 상담차량	2	2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 1대 승합차 : 1대	40,000	1	
영양군		종합검정 장비	3	3	ICP(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기) 토양 수은 분석기	130,000	6	

시도	시군	장비명	사업량		규격(용량)	예산 (국비)	유형 (번호)
			종	대·기			
경상북도					수질 수은 분석기		
	영덕군	미생물 배양장비	1	1	미생물자동포장기1열식 (로타리, 60BPM)	90,000	9
	청도군	스마트팜 운용장비	10	10	복합환경제어시스템, 양액기, 난방기 등	60,000	10
	예천군	미생물 배양장비	3	5	미생물배양기, 혼합탱크 냉각수 시스템 등	259,000	9
		순회지도 상담차량	1	1	미생물배달 및 순회지도차량	18,000	1
	봉화군	종합검정 장비	2	2	유도결합플라즈마(ICP) 전자동 토양분석기	145,000	6
	울릉군	미생물 배양장비	2	2	미생물 배양기(1,000ℓ) 등	150,000	9
소계	5개소		34	54		550,000	
경남	진주시	농촌지도장비	1	2	전기카트 2대	15,000	10
	밀양시	과학영농 현장기술교육용 차량 및 진단장비	2	2	전기차 1대, 디지털영상실체현미경 1대	30,000	1
	함안군	미생물품질관리 시험장비	21	37	멸균기, 클린벤치, 항온배양기, 고속원심분리기, 건조기 등	60,000	9
	창녕군	기능성 미생물 배양장비	8	11	멸균배양기, 살균배양기, 작업대, 공기압축기, 배양장비제어시스템 등	340,000	9
	남해군	다목적생력화장비	2	2	트럭 1대, 탑재용 광역살포기 1대	105,000	3

※ 유형 : 1 순회지도상담차량, 2 농기계순회수리차량, 3 다목적방제기, 4 홍보 및 교육장비, 5 가공교육장비,
6 종합검정장비, 7 가축질병진단장비, 8 조직배양장비, 9 미생물배양장비, 10 기타(위 유형 미포함)

○ 제주계정

(단위: 종, 대(기), 국비기준, 천원)

시도	시군	장비명	사업량		규격(용량)	예산 (국비)	유형 (번호)
			종	대·기			
제주	총계	5개소	39	160		177,500	
	기술원	과학영농분석 운영장비	6	12	분석 운영장비 6종 12대	10,000	10
	제주	교육용 노후 PC 교체 및 비대면 교육장비 구입	4	31	컴퓨터, 전자교탁, 전자칠판, 비디오프로젝터	40,000	4
	서귀포	과학영농실증포 무인방제기	1	1	동력분무기(WK-500SS)	10,000	3
	서귀포	농업인교육 운영 장비	10	50	비디오프로젝터, 전자교탁 등	40,000	4
	서귀포	과학영농시설 등 운영 장비	10	50	과학영농시설 등 운영 기타장비 1식	30,000	10
	동부	농촌지도사업 장비 구입	2	10	전자교탁, 비디오프로젝터 등	40,000	4
	서부	비대면 교육 운영 장비	5	5	태블릿, 웹캠, 캠코더, 대형 모니터 등	5,000	4
	서부	과학영농시설 운영 장비	1	1	천장형 에어컨	2,500	10

※ 유형 : 1 순회지도상담차량, 2 농기계순회수리차량, 3 다목적방제기, 4 홍보 및 교육장비, 5 가공교육장비, 6 종합검정장비, 7 가축질병진단장비, 8 조직배양장비, 9 미생물배양장비, 10 기타(위 유형 미포함)

○ 세종계정

(단위: 종, 대(기), 국비기준, 천원)

시도	시군	장비명	사업량		규격(용량)	예산 (국비)	유형 (번호)
			종	대·기			
세종	총계	1개소	11	19		159,000	
	세종시	비대면 영농교육 장비	10	18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오디오인터페이스, 조명, 모니터, 노트북, 컴퓨터, 집벌, 보조하드 등	15,000	4
	세종시	현장교육용 차량	1	1	승합차 1대	20,000	1

※ 유형 : 1 순회지도상담차량, 2 농기계순회수리차량, 3 다목적방제기, 4 홍보 및 교육장비, 5 가공교육장비, 6 종합검정장비, 7 가축질병진단장비, 8 조직배양장비, 9 미생물배양장비, 10 기타(위 유형 미포함)

【제1호서식】

‘00년도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사업비 집행현황 (. . . 현재)

(단위 : 천원)

시도명	사업명	예산액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집행액	집행률	향후집행 계획
				19년	20년				
합계	소계								
	시설								
	장비								
기술원	소계								
	시설								
	장비								
00시	소계								
	시설								
	장비								
00군	소계								
	시설								
	장비								
00시	소계								
	시설								
	장비								
00군	소계								
	시설								
	장비								
00시	소계								
	시설								
	장비								
00군	소계								
	시설								
	장비								
00시	소계								
	시설								
	장비								
00군	소계								
	시설								
	장비								
00시	소계								
	시설								
	장비								

【제2호서식】

○○년도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추진결과

(단위 : 천원, %)

사도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이월 및 불용사유 (구체적으로)	
	예산액 (A)	교부액 (B)	미교부액 (C)	전년도이 월액(D)		예산 현액 (E =B+D)	집행액 (F)	다음연도 이월액 (G)	불용액 (H)		실집 행율 (F/E)
				19 년	20 년						
합계											
기술원											
00시											

※ 본 서식(총괄표)은 엑셀로 작성하여 별도 제출(시설·장비 구분없이 총괄로 작성)

□ 지도기반시설

○ 총사업비 : 천원(국비 , 지방비)

- 집행액 :

○ 사업기간 : '00. 0. 0 ~ '00. 0. 0

○ 주요사업내용

- 청사신축 및 리모델링 0, 교육시설 0, 과학영농시설 0, 농심테마파크 0, 체험관 0, 기타 0

○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시군	사업명	주요사업 내용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기술원		·위치 : ·면적 : ·주요내용 - -									
00시											

□ 지도장비

(단위 : 천원)

시군	구입 장비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기술원										
00군										

□ 사업추진상 문제점

< 00시 >

- 청사이전 계획변경(리모델링 및 증축 → 신축) 및 신축 예정부지 군관리 계획 결정(변경) 용역 추진에 따른 사업 발주 지연

□ 애로 및 건의사항(개선사항)

< 00시 >

○

□ 주요성과(수치화 기재)

<00시>

- 미생물 생산시설 건립으로 미생물 공급능력 확대로 수요 대처
 - 미생물 생산 80 → 200톤, 공급농가 900 → 1,300 농가

<00군>

- 00점정장비 구축으로 친환경 농업 실현
 - 토양점정 건수(연) 1,800 → 3,600건

□ 성과지표[**성과지표는기획재정부에제출되는지표임(실적증빙자료구비)]

1) 사업참여방문자증가율

구분	실적			측정산식	비고
	구분	사업추진년도 방문자 수	전년도 방문자 수	증가율 (%)	
방문자1) 증가율 (%)	기술원				*기반조성 사업을 수행한 농촌지도 기관에 대한 농업인 방문자 증가율
	00시				*산출식 {(사업 추진 년도 방문자 수 - 전년도 방문자 수) / 전년도 방문자수}×100
	00시				
	00시				
	계				
농촌지도2) 장비 연간활용 실적 (회)	구분	사업추진년도 활용실적	전년도 활용실적		*당해연도 지원 지도장비 연간 활용실적
	기술원				*산출식 {(지도장비를 구입한 당해연도 활용실적(장비별 활 용실적 합계)/ 지원장비수(당해연도 구입한 장비수)}×100
	00시				
	00시				
	계				

□ 사업추진 전·후 사진 등

0000사업(00시)	0000사업(00군)

1) 지도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한 도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방문자 수

2) 지도기반조성사업 중 지도장비가 지원된 도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지원장비에 대한 활용실적

【제3호서식】

(이월사업)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추진결과

【000도】

□ 지도기반시설

- 총사업비 : 원(국비 , 지방비)
- 2020년 이월사업 : 원(국비 , 지방비)
- 2019년 이월사업 : 원(국비 , 지방비)
- 공사기간 : ○○. ○. ○○ ~ ○○. ○. ○
- 사업규모 : 00개소
- 청사신축 및 리모델링 0, 교육시설 0, 과학영농시설 0, 농심테마파크 0, 체험관 1, 기타 0

○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연도	시군	사업명	주요사업 내용	이월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기술원		·위치 : ·사업비 : ·면적 : ·주요내용 : ·									
	00시											

※ 전년도 이월사업에 한하여 작성(당년도 이월사업 제외)

□ 지도장비

(단위 : 천원)

연도	시군	장비명	이월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기술원										
	00시										

※ 전년도 이월사업에 한하여 작성(당년도 이월사업 제외)

□ 주요성과(수치화 기재)

<00시>

- 미생물 생산시설 건립으로 미생물 공급능력 확대로 수요 대처
- 미생물 생산 80 → 200톤, 공급농가 900 → 1,300 농가

<00군>

- 00검정장비 구축으로 친환경 농업 실현
- 토양검정 건수(연) 1,800 → 3,600 건

□ 사업추진 전·후 사진 등

0000사업(00시)	0000사업(00군)

0000사업(00시)	0000사업(00군)

【제4호서식】

'00년도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이월사업조서

【000도】

□ 사업비 이월내역

(단위 : 국비기준, 원)

연도	시군명	사업명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이월액 D	불용액 E=C-D
		총계					

※ 본지의 기재는 '20.12.31일 현재 '21년도로 이월한 사업은 모두 작성(예산편성 연도와 관계없이)

※ 연도는 최초 예산 반영한 연도를 기재, 예산액은 당년도 예산액(전년도 이월사업은 이월한 금액이 예산액임)

※ 이월액은 '20. 12. 31현재 '21년도로 이월한 금액 기재

□ 이월사유(구체적 작성)

-
-

□ 그동안 추진사항(구체적 작성)

-
-

□ 향후 집행계획(일정 구체적 작성)

-
-

【제5호서식】

0000사업변경계획

□ 사업개요

【당초사업】 * 사업계획, 추진사항(사업명, 위치, 사업량, 금액 등)

-
-

【변경후 사업】 * 사업내용 자세히 기재(사업명, 장비명, 사업량, 금액 등)

-
-

□ 사업변경 내역

구분	당 초(국비, 천원)		변 경(국비, 천원)			비고
	사업내용	예산액	사업내역	예산액	증감	
00도 (00시)	(지도장비) ○ 미생물배양장비 -멸균배양기 2기 -살균배양기 2기 -저장탱크 4기 등	250,000	(지도장비) ○ 미생물배양장비 -멸균배양기2기 -살균배양기 2기 -저장탱크 4기 등	203,587	△46,413	○ 보조비율 -국비 50%, -지방비 50%
			(지도장비) ○ 미생물배양장비 -배지혼합조, 이동식 고압세척기 -로컬 컨트롤시스템, 중앙제어시스템	46,413	46,413	

□ 변경사유(필요성)

- 집행잔액(낙찰차액) 미생물배양실 00장비 등 내용연수 경과로 구입 필요
-

□ 향후계획(구체적 일정 기재) *추경예산 반영, 집행일정 등

- 추경예산편성 : 00년 0월 0한
- 장비구입발주 : 00년 0월 0한
- 장비구입완료 : 00년 0월 0한

■ 2021년도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농촌지도관 이진영 농촌지도사 장시연	063-238-1019 063-238-1020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사업은 농산물가공 창업을 통한 농외소득 활동 지원 및 지역 농특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농산물 가공시설을 설치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 목적

- 시군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산물 가공기술의 전진기지로 육성하여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창업 활성화 지원
- 농산물 가공기술의 효율적 이전, 보급·확산과 공동기기 지원으로 농업인의 농외 소득 활동 지원

□ 추진방향¹⁾

-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로컬푸드, 농촌융복합산업 등 활성화 지원
- 농산물가공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설보완, 장비 구입, 창업 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효율적인 기술 이전·보급·확산 기반 조성
- 아이디어는 있으나 가공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업인이 공동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시제품을 생산하고 상품화하도록 지원
-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창업코칭을 받은 우수농가에 우리 청 및 관계기관 창업사업 연계 강화
- 소규모 창업 보육제품 디자인 개발 및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농산물 가공 전담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 구축
 - 연구소, 지자체, 유관기관, 가공업체, 농업인 등 상호 연계협력 추진
- 농식품 가공 농업인(2차산업)과 지역특화 작목반(1차산업) 및 경영체간의 연계를 통한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 가공업체와 외부기관 협력사업 연계를 통해 외연확대 지원

1)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매뉴얼 참조(농업과학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rda.go.kr' 다운로드 가능)

□ 추진근거

- 국정과제(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조성)
- 농촌진흥법 제1조, 농촌진흥법 제15조, 제16조
-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동법 시행령 제6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제11조, 제27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 식품위생법 제48조

□ 사업대상 : 사업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지방농촌진흥기관

- 지역단위 푸드플랜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시군 선정 우대

□ 사업규모

- 사업량 및 사업비 10개소, 4,800백만원(국비·지방비 각 50%)
- 시도별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소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사업량	소 계	10	1	1	1	1	2	3	1
	1년차	6		1 영월		1 부안	1 곡성	2 군위,구미	1 진주
	2년차	4	1 평택		1 당진		1 나주	1 예천	
사업비	소 계	4,800	600	400	600	400	1,000	1,400	400
	1년차	2,400	-	400	-	400	400	800	400
	2년차	2,400	600	-	600	-	600	600	-

* 개소당 사업비 단가 : 10억원(1년차 4억원, 2년차 6억원/국비·지방비 각 50%), 2년간 지원

□ 운영추진요령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인의 가공활동을 통한 농외소득 개발을 위한 종합기술지원
-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위한 공동이용 공간(증축, 보수, 신축)확보, 건축, 시설 및 장비 배치를 위한 설계, 기자재 및 장비 설치

* 가공시설 구축시 HACCP 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성하며, 사업종료 후 3년 이내에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창업 및 농산물 가공 활동 희망 농업인·농업법인의 상품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가공 기술이전, 창업교육 및 코칭 프로그램 개발·운영
 - * 창업교육 및 코칭, 전문가 풀 구축 등은 반드시 1년차부터 실시
- 가공기계 도입시 공신력 있는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을 통한 기술지원 및 검수
 - * 설치 전·후 기술지원, 원물을 활용한 시운전, 검수 및 검수보고서 작성 등
- 가공기술 개발, 표준화, 상품화, 컨설팅 등에 따른 운영
- 지역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 및 컨설팅 지원
- 취득 재산(부동산, 장비 등)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목록 제출(반기별) - 별도 공문 시행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 연차별 추진계획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적용 실천
- <연차별 추진내용>

단계	사업 준비단계	사업시행 1년차	사업시행 2년차	구축완료 후
주요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환경 분석 및 가공품목 선정 ◆ 타 사례분석 및 예산검토 ◆ 가공시설 운영 방향 설정 ◆ 인력 확보 방안 모색 ◆ 부지확보 ◆ 투융자심사, 공유재산 심의 대상 여부 등 행정사항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추진 계획수립 ◆ 전담인력 배치 ◆ 가공설비 도입설계 (동선, 프로세스 등) ◆ 건축설계 및 시설구축 ◆ 창업보육 프로그램 개발·운영(교육, 코칭 등) ◆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전담팀 구성 ◆ 가공설비 도입 ◆ 시제품 개발 ◆ 공정 및 기술표준화 ◆ 담당자 교육 및 건강검진 ◆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 품목제조보고 ◆ 관련 보험 가입 ◆ 농업인 창업보육 추진 (수준별 교육, 1:1 코칭 등) ◆ 조례, 운영 규정 등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 및 창업관련 농공상 연계 ◆ 농업인 창업보육 확대 (수준별 교육, 1:1 코칭 등) ◆ 창업자 지원 ◆ 가공시설 확대 등 사업 활성화 추진 ◆ 품질관리 강화 (시설구축, 전문인력 확보 등) ◆ 운영 성과도출 및 확산
주요 착안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품목은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 후 품목변경 시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예산투입, 사업지연 애로발생 ▶ 가공시설 구축 예산 및 인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당 건축비 단가 등 고려하여 충분한 예산계획 수립 * HACCP 기준 시 단가 상승가능 ▶ 식품제조업이 가능한 부지확보 • 용도지역, 개발행위 검토 등 ▶ 각종 인허가, 심사, 인증 등 행정사항 사전검토 및 준비 • 인허가 관련부서와 협의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성 있는 전담인력 배치 ▶ 공정설계, 건축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CCP 대응 설계 • 공정설계를 먼저 실시하고, 건축설계는 1~2개월 병행 * 1/4분기 내 완료 • 시설·장비 고려 충분한 전기가 인입 • 창고, 냉장·냉동고, 기계실 등 부대 면적 확보 • 향후 2층 이상 증축 예정 시 사전검토·반영 ▶ 도입설비 전문가 검토 • 전자동화 지양 • 반자동화, 소규모 시설, 반제품 시설설치 등 권장 ▶ 폐수의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폐수처리장치, 하수처리장 유입 ▶ 입찰 시 담당자 의견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성 있는 운영인력, 지원인력 확보(정규인력) ▶ 가공기계 규격결정 검토 • 가공유형별 장비조합·구성 • 활용도, 적정 처리용량, 최적의 기능 및 성능, 작업편의, 효율성 등 고려 • 분해, 세척의 편리성, 효율적인 CIP 대책 • 식품안전 및 위생대책 • HACCP 인증을 고려한 레이아웃 ▶ 기초, 심화 등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상해, 화재, 제조물 등 시설 운영 관련 보험가입 ▶ 지식재산권 확보(특허, 상표) ▶ 표시기준을 준수한 적정 포장지 개발 및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분석, 자가품질검사 등 기반구축 및 전문인력 확보 ▶ 창업보육수료자 지속 관리 ▶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 농업인 주도 활성화 유도 ▶ 박람회 등 홍보 및 마케팅 지원 강화 ▶ R&D 기술 등 활용 경쟁력 있는 시제품 개발·생산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대학, 연구기관 등 연계 기술이전 체계구축 등 • HMR, 반가공 등 분야확대 ▶ 중장기 계획수립 ▶ 이용자 확대 및 가동률 증대 ▶ 조직화, 개별창업 지원 등 확대

※ 공모사업으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한 적기 추진필요

- 각종 인허가 사항, 심사, 인증 등은 관련 기관·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시설구축 매뉴얼, 농업인 가공 창업교육 및 조직화 매뉴얼 참조(농업과학도서관)

<사업관리>

- 시군농업기술센터는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편성하되, 예산과목은 지역에 맞게 조정 가능
 - * 창업보육, 컨설팅, 협의체 운영 등의 제반비용은 총사업비(10억 원)의 10% 내외로 하여 사업연차별로 편성 가능
- 당해년도 예산 이월방지를 위해 1/4분기 발주완료, 집행부진 예상 사업장에 대해 도농업기술원에서는 수시 현장 확인 등 중간진도 관리 실시
 - * 도 농업기술원 자체 점검계획(반기별)을 수립하여 현장지도
- 집행잔액을 사용하는 경우 감사 등 행정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의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
- 여성, 청년 등 사회적 배려층 참여 홍보 및 창업관련교육 과정 적극 추진

<운영인력 확보 및 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 전담인력(팀) 확보 :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각 지자체별 적정 인력확보
 - * 지자체에서는 정규인력 및 관련 인건비 확보

<전담 인력 필요 부문(예시)>

운영팀장급 / 창업보육 부문 / 제품개발·생산 부문 / 품질관리 부문 / 시설 및 장비 운영·관리 부문 / 운영 지원인력 등

- *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경영학 및 가공기술관련 전공자, 관련 국가 자격증 소지자 등 전문인력 확보
- * HACCP 인증 시 HACCP팀 구성과 원활한 생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추가 인력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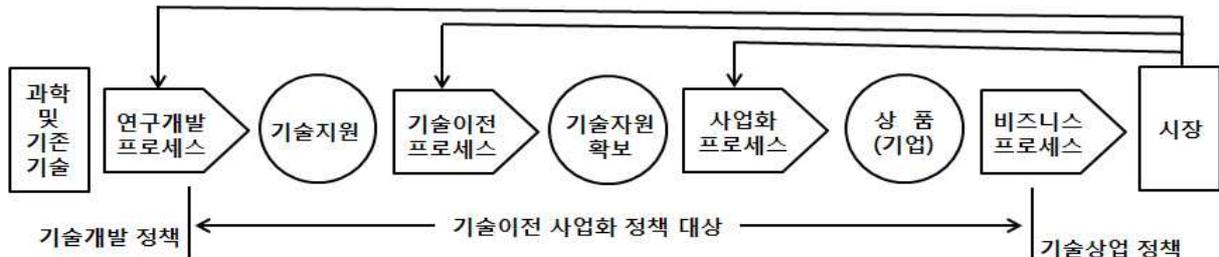
- 운영위원회 설치 :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담당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사업의 방향 설정 또는 의사결정 기구로 설치
 - * 당연직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포함하여 구성(위원회 구성, 임기, 임무 등은 시군 자율)

<창업코칭프로그램(농업인 창업학교) 운영>

- 창업에 필요한 소양교육(식품위생법, HACCP, 경영, 회계, 포장, 마케팅 등)
- 제품개발·제품 생산을 위한 가공기기 사용방법 교육
- 창업 전 과정에 걸친 프로그램 운영
 - * 농업인 스스로 아이템 개발, 제품생산, 상품화, 유통 판매활동 진행
- 창업 준비부터 최종 창업단계에 이르기까지 시제품 생산과 판매 경험 축적 등을 위해서 센터 내 시설 활용토록 함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활용) 시스템 구축>

- 가공품 개발 시 소비시장 분석 및 마케팅 연계 시스템 구축
- 지역의 식품업체, 농업법인, 관련 연구소와 연계하여 수요에 맞는 기술 개발과 기술이전체계 마련



<공동이용 공간 확보 및 공동기기 활용 시스템 구축>

- 지역 농업여건을 반영하여 실정에 맞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시설 설치
 - 농업인의 가공 창업을 활성화하고 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시설 설치
 - * 예시 : (도시인근) 창업교육 및 제품개발 중점지원형
(군 단 위) 농업인조직화 가공품 생산판매 창업형
 - * 가공센터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단순가공기기활용(건조, 분쇄 등) 임가공 가능(지역 조례 제정, 식품관련허가 구비)
- 다수의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는 가공기기 설치
- 가공품 생산판매 시설의 경우 지역 특성에 따라 제조시설 운영자를 공공기관 또는 농업인 대표가 맡을 수 있음(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등)
 - * 식품제조허가 영업등록을 실시하고 관리자 지정
 - * 식품가공시설의 경우 500㎡ 이하 면적(공장등록 필요 없음)으로 사업계획 지원 목적과 식품위생법에 맞도록 시설, 기자재를 갖추도록 함
- 식품 생산 장비를 임대할 경우 식품안전상의 문제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관련 규정 마련
 - * 지역 여건에 맞도록 이용자 및 이용료에 대한 산정기준 마련(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등 자격을 갖춘 자 등)
 -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미설치 지역 농가가 이용을 원할 경우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추진 가능(설치된 지역의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 등)

-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에 표시 철저
 - * 시제품, 개발제품 : “판매 불가” 표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 없이 가공품 판매 절대 불가)
 - * 판매제품 : 유통기한, 제조원·판매원, 영양성분 등 표시기준 준수
 - 생산물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입 등 반드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생산 제품의 위생, 안전 등 품질관리 및 시설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시행
 -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취득한 건축물, 주요장비에 대한 표지판 설치
 - * 지자체의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참고
 - 유통업체, 마케터 등을 대상으로 상시적 품평회 및 공동 홍보 추진
- <창업·코칭을 위한 전문가 지원체계 구축(전문가 인력pool)지원>**
-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도원·시군센터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분야별(가공, 경영, 위생, 인허가 등) 컨설팅과 종합기술 지원 → 신속한 기술 확산



- 전문가 또는 기관과의 업무네트워크 구성으로 업무지원 연계 활용
 - * 대학·연구소의 창업보육센터, 농산물가공연구소 등과 네트워크 구성
- 전문가 pool은 수시 업데이트하고,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사업에서 지원한 창업농업인, 졸업농업인, 창업지원 희망농업인에게 공개
- 지원-졸업 농업인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등의 교류시스템 구축



<사업 성과관리>

- 지역 여건을 반영한 운영 성과지표 설정으로 체계적인 성과관리 실시
 - 공통지표는 필수적으로 설정, 선택지표는 1개 이상 반영(지표 설정 후 3년 이상 관리)
 - * (공통지표) 창업 보육경영체 매출 증가율, 창업 보육경영체 일자리 창출, 시제품 개발건수, 신규창업 농가수, 창업교육 인원, 창업코칭 인원
 - * (선택지표) R&D 기술 적용건수, 지식재산권 확보, 농업인 가공 조직화 수 또는 참여인원, 사회 배려층참여, 지역 농산물 활용실적, 일평균 생산실적, 창업보육과정 이수자 비율, 지역 특화작목을 활용한 제품 생산량 증가율 등

□ 기대효과

- 열악한 농산물 가공 여건을 효율으로 보완함으로써 지역 가공사업 활성화 도모
- 국내농산물의 소비촉진과 경제활동 영역 확대에 따른 농업인 일자리 창출
- 경쟁력 있는 가공품 개발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및 지역특성에 맞는 지속적인 농가소득원 확보

□ 행정사항 : ATIS 첨부된 보고양식 활용, 기한 내 등록할 것

- 2021년도 사업추진계획 보고 : '21. 3. 20 한
- 2021년도 사업추진결과 보고 : '21. 11. 20 한
- 2020~2021년도 사업 추진계획 보고 : '21. 1. 20 한(제1호 서식)
- 2020~2021년도 사업 추진결과 보고 : '21. 11. 20. 한(제2호 서식)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²⁾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농촌지도관 이진영 농촌지도사 장시연	063-238-1019 063-238-1020

□ 목적

- 시군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산물 가공기술의 전진기지로 육성하여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창업 활성화 지원
- 농산물 가공기술의 효율적 이전, 보급·확산과 공동기기 지원으로 농업인의 농외 소득 활동 지원

□ 추진방향

- ‘창업준비~자립경영’ 단계까지 지역 농업인 등의 가공창업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강화와 효율적인 운영 체계구축
 -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개발을 위한 종합기술지원 강화
 - 체계적인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농업인 역량강화 및 활동지원
 - 아이디어는 있으나 가공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업인, 기 경영체가 공동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시제품을 개발하고, 상품화할 수 있도록 지원
 - 농산물가공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시설·장비 개선 및 운영 고도화
 - 유관기관, 연구소, 지자체, 가공업체, 농업인 등과 상호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기술이전 체계구축
 - 우수한 창업보육 농가에 우리 청 및 관계기관 창업사업 연계 강화
-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로컬푸드, 농촌융복합산업 등 활성화 지원
- 농식품 가공 농업인(2차산업)과 지역특화 작목반(1차산업), 경영체 간의 연계를 통한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 지역 현황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 추진으로 농촌지역 상생·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창업보육 모델개발

2)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사업 시행지침을 기본적으로 적용

□ 추진근거

- 국정과제(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조성)
- 농촌진흥법 제1조, 농촌진흥법 제15조, 제16조
-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동법 시행령 제6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제11조, 제27조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식품산업진흥법
- 식품위생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설립한 시군 농업기술센터
- 사업량 : 86개소 ('10 ~ '19까지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사업을 추진한 지역)
※ '20 ~ '21년 사업 추진지역 제외(1년차 6개소, 2년차 4개소)

□ 운영요령

-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사업 지침에 명시된 운영요령 준수 및 고도화
 - 창업보육 인프라 구축, 공동이용 공간 확보 및 공동기기 활용 시스템 구축
 - 운영인력 확보 및 운영위원회 운영, 창업코칭프로그램 운영,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 (활용) 시스템 구축, 창업·코칭을 위한 전문가 지원체계 구축(전문가 인력pool)지원 등
- 농촌진흥청에서 보급한 매뉴얼 등¹⁾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
- 역량있는 신규 창업경영체 육성 및 기존 가공사업장의 지속적인 성장지원
 -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를 통한 품질향상 및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
 -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게 가공제품의 신시장 개척 테스트 지원
* (예시) 상품기획 → 레시피 개발 → 시제품 출시 → 소비자 반응조사 → 상품화 결정
 - 식품위생법, 소비트렌드, 마케팅, 사업개발 등 보수교육
 -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와 연계한 리빙랩²⁾ 시스템 등 새로운 창업보육 모델도입
 - 농업인 생산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및 우수 성과 확산 등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연계·협력 강화

1)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매뉴얼, 농업인 가공 창업교육 및 조직화 매뉴얼 등('농업과학도서관'에서 전자책 열람가능)

2) 리빙랩(Living Lab) : '살아있는 실험실', '일상생활 실험실', '문제해결 아이디어 플랫폼'로 불리어짐

- * 농업기술실용화재단(R&D 기술이전, 가공기기 검수 등),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협력과제 발굴 등) 등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실무자 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 적극 참여
- HACCP 인증, 자가품질검사 체계구축 등으로 농식품 위생·안전 강화
- 효율적인 운영 및 품질관리를 위한 전담인력을 확보 (농외소득법 제7조)
- 지역 특화작목, 지역 현황, 소비트렌드 등을 반영 맞춤형 사업 추진
- 여성, 청년 등 사회적 배려층 참여 홍보 및 창업관련 교육 등 적극 추진

□ 사업 성과관리

- 지역 여건을 반영한 운영 성과지표 설정으로 체계적인 성과관리 실시
 - 공통지표는 필수적으로 설정, 선택지표는 1개 이상 반영(지표 설정 후 3년 이상 관리)
 - * (공통지표) 창업 보육경영체 매출 증가율, 창업 보육경영체 일자리 창출, 시제품 개발건수, 신규창업 농가수, 창업교육 인원, 창업코칭 인원
 - * (선택지표) R&D 기술 적용건수, 지식재산권 확보, 농업인 가공 조직화 수 또는 참여인원, 사회 배려층참여, 지역 농산물 활용실적, 일평균 생산실적, 창업보육 과정 이수자 비율, 지역 특화작목을 활용한 제품 생산량 증가율 등

□ 기대효과

- 열악한 농산물 가공 여건을 효율으로 보완함으로써 지역 가공사업 활성화 도모
- 국내농산물의 소비촉진과 경제활동 영역 확대에 따른 농업인 일자리 창출
- 경쟁력 있는 가공품 개발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및 지역특성에 맞는 지속적인 농가소득원 확보

□ 행정사항 : ATIS 첨부된 보고양식 활용, 기한 내 등록할 것

- 2021년도 운영계획 보고 : '21. 3. 20 한
- 2021년도 운영결과 보고 : '21. 11. 20 한

〈참고〉 〈단계별 창업지원 내용〉

창업 이전단계

- 창업자 발굴, 창업 기초 소양 및 기술 교육 실시

코칭농업인의 선정(졸업·퇴출 추진요령)

- 선정 : 모집계획수립 → 모집공고 시행 → 신청서 교부·접수 → 심사 → 코칭 농업인 확정·통보 → 계약 체결
 - 졸업 : 졸업(연장)신청 접수 → 심사계획 수립 → 심사 → 졸업(연장)
 - 퇴출 : 다음과 같은 경우 발생시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시행
 - 입주농업인이 입주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창업성공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한 경우
 - 코칭 모니터링 결과 사업진행이 더 이상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 참여업체 대표자가 스스로 중도 포기하는 경우
- * 사업운영 각종 서식, 참고자료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매뉴얼」 참조

시작단계

- 창업지원 농업인과의 계약 : 기본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1년 단위로 3년까지 연장 가능
 - * 계약기간은 시군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제품개발, 기술지도, 인허가, 판로개척 및 마케팅 활동 지원 등
- 시제품 생산, 판매경험 축적,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정부·금융기관 등 다양한 자금원과 창업농업인 연계, 적절한 조언 필요

정착단계

- 사업계획, 마케팅, 회계, 일반경영 등의 다양한 분야의 밀착된 지도를 위해 내·외부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원체계 구축
- 사업진행 정도를 비교·평가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 (분기별 또는 반기별)하고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여 코칭

사후관리(3년)

- 졸업 농업인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농산물가공 품질관리 디지털 기반조성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농촌지도관 이진영 농촌지도사 장시연	063-238-1019 063-238-1020

□ 목적

- 농업인 생산 가공품에 대한 위생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식품 안전사고 예방 및 소비자 신뢰 제고
-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식품위생 관리를 위한 첨단 자동화 시스템 구축으로 가공품 생산 효율화 및 노동력 절감

□ 추진방향

- 농업인 생산가공품 품질관리 지원을 위한 상시 위생·안전 관리 체계구축
- 자체 품질검사실 구축, 스마트 HACCP 기술적용, 전문 인력 확보 등
- IoT 등 스마트 HACCP 기술 적용으로 HACCP 인증 관리 효율화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생산제품 기준규격 이탈 예방 및 품질관리 강화
- 원료관리, 생산관리, 환경관리 등 현장 맞춤형 디지털 기반구축
- 농촌진흥청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연구 개발된 기술의 현장 적용 촉진
- 관련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품질관리에 대한 역량향상

□ 추진근거

- 농촌진흥법 제1조, 농촌진흥법 제15조, 제16조
-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3조
* (제7조 2항의 5) 생산제품에 대한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실 설치 및 운영인력 확보 명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63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 식품위생법 제31조, 제48조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 사업규모

- 사업량 및 사업비 : 4개소, 1,600백만 원(국비·지방비 각 50%)
- 시도별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소계	강원	전북	전남	대구
사 업 량	4	1	1	1	1
사 업 비	1,600	400	400	400	400

* 개소당 단가 : 400 백만원 (국비·지방비 각 50%)

□ 사업대상 :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설치되어있는 시군농업기술센터

- 농업인 생산가공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시설 장비가 필요한 지역
-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 예정인 지역

□ 사업내용

- 가공품 위생·안전 강화 및 품질관리 지원을 위한 자체 품질검사 기반 조성
 - 주요 자가품질검사 항목 등 분석, 실험실간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장비 구축
 - * (예시) 일반 실험실, 전처리실, 기기분석실, 미생물실 등
 - 농촌진흥청 R&D 기술인 쉽고 빠른 대장균(군) 검사법 도입 등
- 미생물, 이물, 당도, 염도, 수분 등 주기적 측정을 통한 상시 관리
- 스마트 HACCP 관리(생산, 모니터링, 기록, 보관 등) 자동화 시스템 도입
 - 스마트 HACCP 솔루션 적용, 솔루션 연동 자동화 장비, 제어기, 센서 등 설치
-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자체 모니터링, 운영 및 Data 관리, 능동제어 등
- 스마트 기술적용을 위한 생산설비·라인 자동화 등 시설·장비 개선
- 생산제품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관련 교육·컨설팅 지원
- 시스템 운영 매뉴얼 개발, 선진지 벤치마킹 및 홍보·마케팅 등

□ 기대효과

- 농업인 생산 가공제품의 소비자 신뢰제고를 통한 판로 확대
- 스마트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 안전사고 예방 및 생산성 향상

□ 행정사항

- 2021년도 사업추진계획 보고 : '21. 3. 20 한(제1호 서식)
- 2021년도 사업추진결과 보고 : '21. 11. 20 한(제2호 서식)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농촌지도관 이진영 농촌지도사 장시연	063-238-1019 063-238-1020

□ 목 적

- 농식품 가공기술 균일화·표준화로 경쟁력 강화 및 사업화 촉진
- 지역 특성에 맞는 표준화 된 농식품 가공기술 지원으로 농가 창업제품의 경쟁력을 식품기업 수준까지 향상 지원

□ 추진방향

-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가공·생산되는 제품의 표준화된 가공기술 정립
- 가공 관련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제품의 균일화, 안정화를 위한 연구 개발
- 지역 특색을 반영한 경쟁력 있는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 및 기술이전 활성화
- 가공 창업사업장, 6차산업 인증 가공사업장, 청년 농업인 등 연계 강화
- 농촌진흥청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연구 개발된 기술의 현장적용 강화
- 가공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현장 컨설팅 지원
- 민·관·산·학·연구기관과 연구·협업을 통해 새로운 가공기술 개발 및 품질향상

□ 추진근거

- 농촌진흥법 제1조, 농촌진흥법 제15조, 제16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6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 사업규모

- 사업량 및 사업비 : 55개소, 2,200백만원(국비·지방비 각 50%)

○ 시도별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인천 (인천)	대구 (달성)
사업량	55	8	9	5	6	6	5	8	6	1	1
사업비	2,200	320	360	200	240	240	200	320	240	40	40

* 개소당 단가 : 40백만원(국비·지방비 각 50%)

□ 사업대상 : 도 농업기술원 및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 제조원이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 예정인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있는 지역 우선 지원
- 경쟁력 있는 가공품 개발, 품질향상을 위한 가공기술 표준화가 필요한 지역

□ 운영요령

<사업관리>

-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편성하되, 사업 목적 외 사용금지
 - * 국내여비(5%이내) 편성가능, 국외여비 및 자산취득비 편성 불가, 판매용 제품 포장지 구입 금지
-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여 안정적인 생산·판매가 가능한 시제품 개발 전략수립
- 도농업기술원에서는 시군 가공역량강화 지원 및 수시 현장 확인, 중간진도 관리 등 사업관리 실시

<자금 사용용도>

도농업기술원

-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등의 R&D 기술 적용 및 지역특화품목을 이용한 가공기술개발 및 기술이전 교육·컨설팅
- 지역 특성과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시제품 개발 및 매뉴얼화, 특허출원 등록 등
 - * 밀키트 등 HMR, 반가공, 즉석섭취, 즉석조리식품 등
- 개발기술 반영 시제품 생산 및 소비자 반응 조사 활동 등
- 농산물 가공인력 전문성 강화 및 품질관리 능력 향상 교육 추진
 - * 농촌진흥청에서 보급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필수(지역 현황에 맞게 재구성하여 활용가능)

○ 도내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생산품 공동 품질관리 매뉴얼 개발 등 지원활동

시군 농업기술센터

-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등 기관의 R&D 성과를 적용한 가공기술 표준화
 - * R&D 기술을 활용한 제품개발(1건 이상 필수)
- 기 생산 품목의 품질 및 생산성, 안전성, 기호도 향상 등을 위한 기술 정립
 - * 예시) 과채류 착즙수율 향상, 음료류 여과공정 개선, 저당 음료 기호성 향상 등
- 지역 특색을 고려한 경쟁력 있고 안전한 시제품 및 공정개발
 - * 밀키트 등 HMR, 반가공, 즉석섭취, 신선편이, 즉석조리식품 등 지역 여건과 소비트렌드 반영
 - * [개발절차 예시] 전처리 공정 개발 → 주공정 개발 및 최적 조건확립 → 부원료 배합 공정 개발, 시제품 생산 → 품질평가 및 관능검사 실시 → 포장유형 검토 → 시제품 제작 → 제조공정 확립 및 설비검토 → 제조원가 산출
- 표준 레시피 개발 및 가공기술 매뉴얼화, 기술이전 교육, 컨설팅 등
 - * 개발 기술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인 내용만으로 구성된 교육금지
- HACCP 인증을 위한 공정개선, 시스템 구축 및 전문가 컨설팅
- 특허 출원·등록, 영양성분 검사, 자가품질 검사, 유통기한 설정 등 제반비용
- 시제품 생산 및 소비자 반응 조사 활동, 포장지 개발 등
- 추진순기표

세부내용	추진시기(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추진												
◦ 사업성과 평가 및 피드백												

□ 기대효과

- 농산물 가공제품 품질향상 및 신제품 개발 지원을 통한 농업인 가공사업 경쟁력 향상

□ 행정사항 : ATIS 첨부된 보고양식 활용, 기한 내 등록할 것

- 2021년도 사업추진계획 보고 : '21. 3. 20 한(제1호 서식)
- 2021년도 사업추진결과 보고 : '21. 11. 20 한(제2호 서식)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농촌지도관 이진영	063-238-1019
		농촌지도사 장시연	063-238-1020

□ 목 적

- 국내원료를 기반으로 한 농업인의 창업활동 지원으로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 및 경제활동 역량 향상
- 농업 이외의 경제활동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사회의 활력 부여

□ 추진방향

- 신규사업장 육성 및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업인의 소득활동 기반조성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창업교육 이수자와 연계하여 시너지 상승
- 소규모 창업을 위한 고품질 제품생산 및 2·3차 전문기술 지도 강화
- 블로그·홈페이지 운영, 경영교육,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지역 벤치마킹 등
- 2차산업(가공)의 기반 위에 3차산업(체험, 관광) 도입이 가능하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외연확대, 경영체간 연대 등을 유도

□ 추진근거

- 농촌진흥법 제1조, 농촌진흥법 제15조, 제16조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63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 식품위생법 제48조

□ 사업규모

- 사업량 및 사업비 : 25개소, 2,440백만원(국비·지방비 각 50%)

○ 시도별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천
사업량	25	4	4	3	3	4	1	2	2	1	1
사업비	2,440	400	400	300	300	400	100	200	200	40	100

* 개소당 단가: 경제계정 100백만원(국비·지방비 각 50%), 제주계정 40백만원(국비·지방비 각 50%)

□ 사업대상

-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인조직체, 2농가 이상 공동 참여자 *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인 조직체도 구성원내 2농가 이상 참여 필수
- 소자본으로 농촌자원을 활용한 소득활동이 가능한 역량있는 대상
-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하며, 가공·생산·상품화 작업이 지역 거주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대상
- 중앙 및 도단위 창업기술교육 및 경영교육에 적극적인 대상
- 지역농산물 소비에 앞장서고,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대상
-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운영능력과 의지를 갖춘 대상
- *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창업교육을 이수한 자, 역량을 갖춘 청년농업인(40세 미만) 기점 부여
- * 신규 창업을 위해 1년 이내 설립하여 운영 중인 농업법인도 참여가능

□ 사업내용 및 운영요령

- 제품가공·생산·상품화에 필요한 시설, 장비구입 등 기반조성
 - HACCP 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업장 조성 및 HACCP 인증 지원
 - * 기반조성 사업비는 가공장비 구입에 우선 투입
- 상표등록 및 출원, 전자상거래 및 홍보·마케팅 지원 등
- 위생적인 가공사업장 설계, 건축, 시설, 제품개발 등을 위한 컨설팅
-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 및 우수지역 벤치마킹 등 추진
- 보조사업자 대상 변경: 사업대상 농업인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시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역여건에 맞게 차순위자를 결정하거나 새로운 대상 선정 등을 의결하고 변경확정 후 도 농업기술원장의 승인을 받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
- * 기타 사항은 『국고보조금관리 관련 법령 및 시행령』 참고
- 취득한 재산(부동산, 장비 등)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목록 제출(반기별) - 별도 공문 시행

- 농촌여성, 청년 등 사회적 배려층 참여 적극 홍보
-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취득한 건축물, 주요장비에 대한 표지판 설치
 - * 지자체의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참고

□ 기대효과

- 지역 농산물과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업인 창업활동 지원으로 새로운 농의 소득원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행정사항 : ATIS 첨부된 보고양식 활용, 기한 내 등록할 것

- 2021년도 사업추진계획 보고 : '21. 3. 20 한(제1호 서식)
- 2021년도 사업추진결과 보고 : '21. 11. 20 한(제2호 서식)
- 2018~2020년(3년간) 지원 사업장 운영실적 보고 : '21. 10. 10 한(제3호 서식)

농가형 가공식품 마케팅기술지원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농촌지도관 이수미 농촌지도사 홍송원	063-238-1016 063-238-1028

□ 목 적

- 농업경영체가 생산한 가공식품의 디자인 개선, 판매처 발굴, 제품홍보 등 제품의 상품성 향상부터 유통까지 현장 맞춤형 마케팅 기술지원
- 농업경영체의 우수 가공식품을 발굴하고 유통·판매 조직화 지원으로 소비 시장에서의 거래 교섭력 높이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추진방향

- (1단계) 농업경영체별 가공식품 포장디자인, 유통, 마케팅 등 경영진단
* 농촌진흥청 또는 지자체의 농업경영체 경영수준·기술진단표 활용
- (2단계) 농업경영체별 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제품개선·판로개척을 위한 관련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 등 지원
- (3단계) 농업경영체 가공식품의 특성에 따른 온-오프라인 시장 입점·판로확보를 위한 행사지원 및 선물세트·묶음상품 개발 등

□ 추진근거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 농촌진흥법 제1조, 농촌진흥법 제15조, 제16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 사업대상 :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 * 상품의 다양성, 규모, 조직화 정도 등을 고려해 도농업기술원에 우선 배정
(단, 우수역량 및 사전준비로 성과가 기대되는 시군농업기술센터도 배정 가능)

□ 사업규모

○ 사업량 및 사업비 : 12개소, 1,200백만 원(국비·지방비 각 50%)

○ 시도별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소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인천
사 업 량	12	2	2	2	1	1	1	1	1	1
사 업 비	1,200	200	200	200	100	100	100	100	100	100

* 개소당 단가 : 100 백만원 (국비·지방비 각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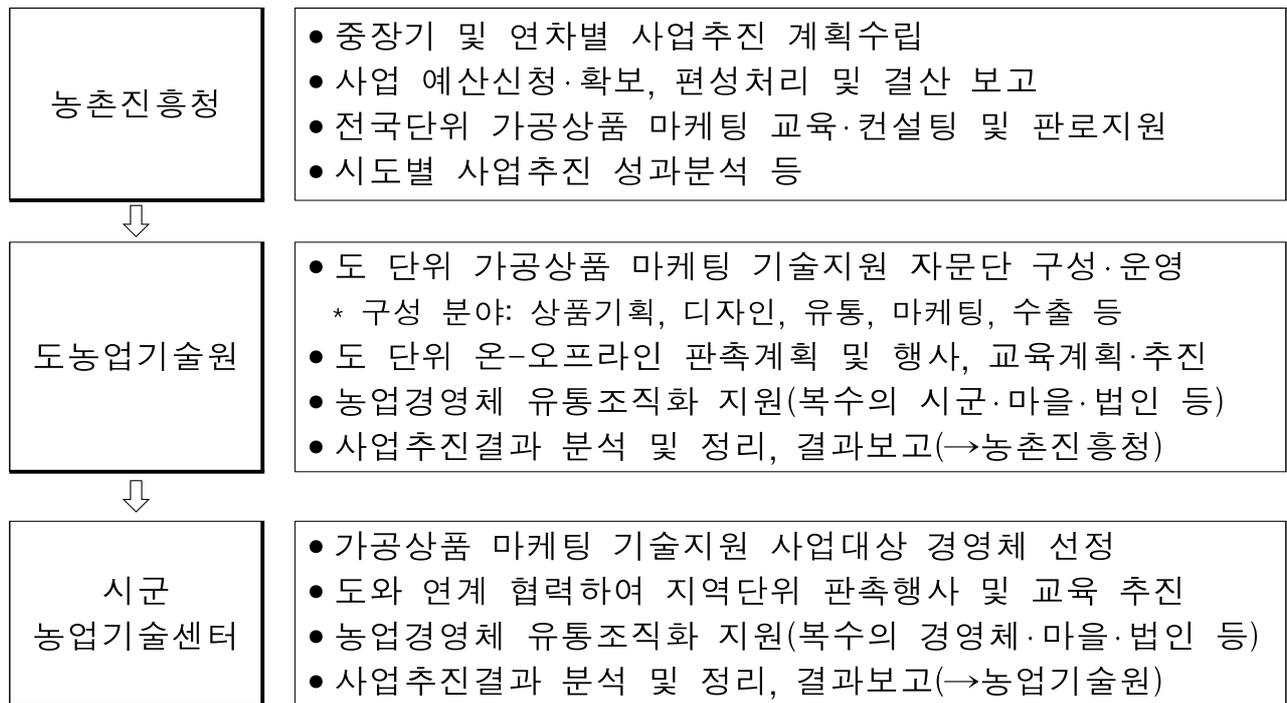
□ 사업내용

- 농업경영체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구성 및 운영
 - 상품기획, 가공, 디자인, 유통,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가 Pool 구축
 - 경영체 경영진단, 애로사항 해결 등 현장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지원
- 농업경영체의 가공제품 생산·유통 및 홍보·마케팅 역량강화 지원
 - 소비트렌드 변화, 유통시장별 특징 및 입점조건, SNS 활용 마케팅 등
 - 고객관리, 판매서비스, 유통조직화 방안,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 지역단위의 가공상품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행사 등
 - 온-오프라인 기업 연계 입점, 품평회, 박람회, 판촉전, 직거래 장터 등
 - 도원 및 시군센터 사업참여 경영체 중심 유통조직체 구성·운영 지원

□ 추진체계 및 추진요령

- 사업추진 주체는 사업에 참여 희망 경영체 모집 계획 수립 및 추진
 - 경영체 창업·성장단계(초기/성숙 등)별 연간 활동에 따른 대상 모집
 - *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상품에 대한 판로개척 의지가 높은 경영체
 - * 청년농업인(승계농),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보육 농업인 우선 지원 검토
- 농촌진흥청에서 공동추진·협력과제를 포함해 지역별 운영계획 수립
 - 지역단위 사업추진을 위해 보조사업자들의 역량강화, 집행현황 등 현황 점검
 - 사업추진 여건 변화 등에 따라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보조사업대상자의 계획 변경요청을 검토하여 승인 후 농업기술원을 통해 농촌진흥청 즉시 보고
 - 단, 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농업기술원에 변경 승인을 요청하고 도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과 사전협의 후 변경 승인하여 해당시군 안내

○ 사업추진성과는 수치로 환산 가능한 성과(정량적)로 결과를 집계하고, 참여 경영체에 대한 정보 등 DB로 구축하여 향후 홍보자료로 활용



□ 기대효과

- 소비트렌드 및 유통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마케팅 기술지원으로 가공식품 시장경쟁력 제고 및 농업경영체 매출액 증대 기여
-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판로확대 및 소비촉진을 통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행정사항

- 2021년도 사업추진계획 보고 : '21. 3. 20. 한(제1호 서식)
- 2021년도 상반기 추진현황 보고 : '21. 6. 30. 한(제2호 서식)
- 2021년도 사업추진결과 보고 : '21. 11. 20. 한(제3호 서식)

전통식문화 계승활동 지원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농촌지도관 박찬순 농촌지도사 임은성	063-238-1021 063-238-1017

□ 목적

- 지역 농특산물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향토음식, 전통음식 및 식생활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한국형 전통식문화를 계승하는 전문인력 양성
- 농업·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및 올바른 식생활 실천 교육으로 지역 식문화 리더 및 식생활 지도자 양성

□ 추진방향

- 사업운영 매뉴얼³⁾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수요자 요구와 목적에 맞게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운영
- 농업·농촌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식농교육 중점 추진
- 교육과정에 대한 성과관리 및 교육생 이력관리 강화
- 지역 농산물, 전통식품, 향토음식 등 로컬푸드 홍보 및 소비 활성화
- 향토 식문화 리더 및 식생활체험 지도자 양성, 활동 지원
- 농가맛집 등 관련 사업을 통해 향토 식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역량이 있는 인적자원 발굴

□ 추진근거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20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
- 농촌진흥법 제1조, 농촌진흥법 제15조, 제16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3) 한국전통음식학교 운영 매뉴얼(농촌진흥청, 2011)

□ 사업규모

○ 사업량 및 사업비 : 8개소, 390백만원(개소당 50백만원, 국비·지방비 각 50%)

* 지원계정별 현황 : 지역지원 5개소, 제주 3개소

* 개소당 사업비 단가 : 지역지원 50백만원, 제주 46.7백만원

○ 시도별 현황

구 분	소계	경기	충남	경북	경남	인천	제주
사업량	8	1	1	1	1	1	3

□ 사업대상

○ 사업대상 : 농업기술원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식생활교육 여건, 교육수요 및 확산 효과가 큰 지방농촌진흥기관)

□ 사업내용

○ 교육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육과정 운영

- 향토음식연구회, 농업인, 차세대, 학교급식 관계자, 일반소비자 등

○ 농촌 식생활 체험, 향토음식 경연, 로컬푸드 운동 등 지역별 특색있는 전통식 문화계승 활동 추진

○ 전통식문화계승 교육 및 활동 성과 확산을 위한 전문가 양성 및 활동지원, 지역 농산물 활용 향토음식 상품 개발 등

- 민사상책임, 사고, 식중독, 도난, 화재 등의 위험대비 보험 가입

<유의사항>

· 편성불가 : 국내·외 여비, 인건비(기간제 인건비 지원 불가), 자산취득비, 교육장 시설비 및 부대비

· 행사 중심의 사업 추진, 위탁 및 용역과제 추진 지양

□ 운영매뉴얼

○ 식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교육을 운영하며 행사성·일회성 교육 지양

○ 교육과정은 필수·선택·재량 교육과정으로 구분하고 과정별 적절한 편성 비율 유지

○ 필수교육 : 전체 교육(과정 수 또는 교육시간)의 30%이상 핵심교육대상자 위주로 편성하고 입문·기초·심화과정으로 나누어 교육대상별 총 60시간 이상 되도록 운영

* 예시) 농업인 전통식문화 교육 : 입문 20시간(4시간×5일), 기초 20, 심화 20

- 선택교육 : 전체 교육(과정 수 또는 교육시간)의 40%이하 운영
- 재량교육 : 전체 교육(과정 수 또는 교육시간)의 30%이하 운영
- 일회성 단순 조리기능 교육은 지양하고 농업·농촌의 기능, 지역 농산물, 농촌체험 등을 포함한 식농(食農)교육으로 편성하고 교육생의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 가능한 모든 교육과정에 이론교육을 기본으로 편성
- 교육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교육생 이력관리 실시
 - * 교육만족도 및 현업적용도 측정, 자격증 취득 관리 등 성과관리 실시
 - * 교육기관, 교육과정, 강사 등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 실시
 - * 교육생 선발/입학·출결·성적·수료/졸업·교육이력, 강사 등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DB) 관리

□ 추진체계 및 추진요령

- 사업기관에서는 사업량, 예산집행 등을 포함하여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우리청에서 개발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교재 등을 활용하여 개발기술 확산
- 교육과정 운영 후 교육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11월)시 제출

□ 기대효과

- 한국형 전통식문화 계승·보급을 통한 올바른 식생활 실천 문화 확산
- 농업·농촌의 이해증진 및 향토음식,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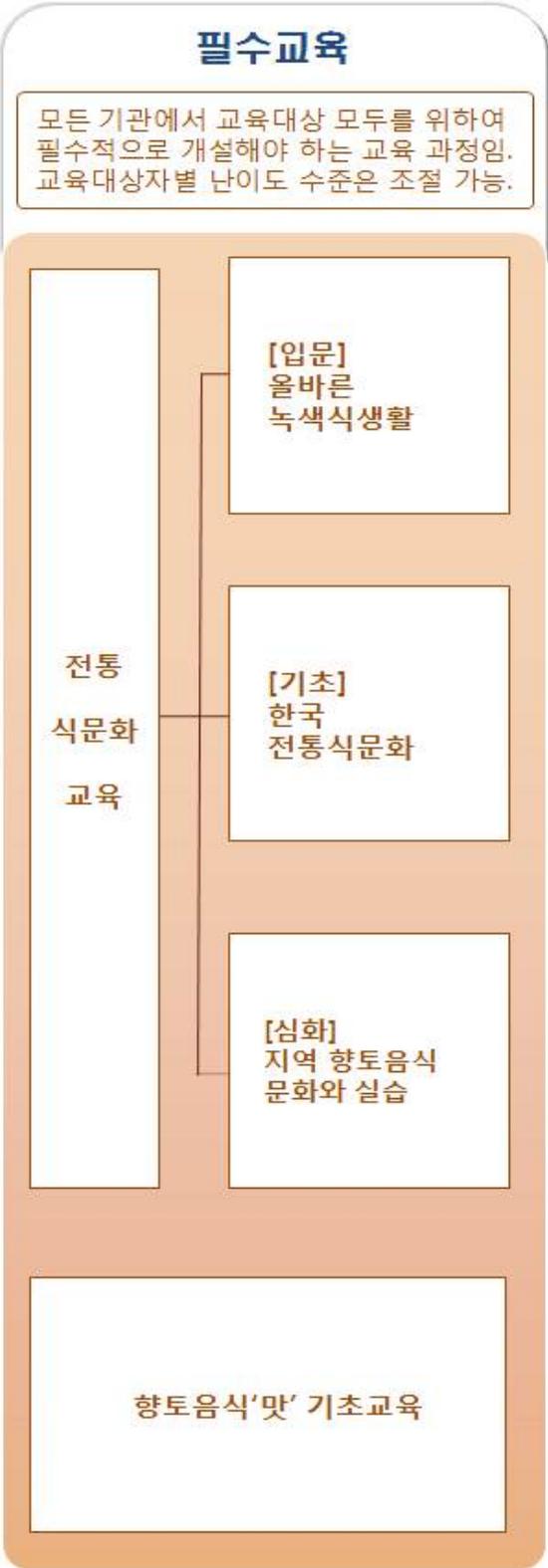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2021년도 사업추진계획 보고 : '21. 3. 20 한
- 2021년도 상반기 추진현황 보고 : '21. 6. 20 한
- 2021년도 사업추진결과 보고 : '21. 11. 20 한
 - * “교육참석자 만족도”는 추진결과에 포함하여 보고

□ 사후관리

- 전통식문화계승 활동에 따른 교육운영, 관련 행사, 교육프로그램 개발·교재
·홍보물 발간물, 교육생 만족도 등 관리

참고 1 전통식문화 계승교육 과정구성(예시)



참고 2

전통식문화 계승 교육 만족도 설문서

□ 다음의 각 항목을 5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매우 불만족 ← 보 통 → 매우 만족

조 사 항 목	1점	2점	3점	4점	5점
① 교육과정 구성의 충실성					
② 교육과정 내용의 실용성					
③ 교육과정 운영자의 전문성					
④ 교육진행 강사의 전문성					
⑤ 교육과정 평가의 합리성					
⑥ 교육매체 사용의 다양성					
⑦ 교육시기 선정의 적절성					
⑧ 교육시간 배정의 적절성					
⑨ 교육장소 및 시설의 편리성					
⑩ 교육운영 관계자의 친절성					

○ 교육과정 이수 후의 식생활 변화 정도

조 사 항 목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점)	동의하지 않은 편이다 (2점)	보통이다 (3점)	동의하는 편이다 (4점)	매우 동의한다 (5점)
① 교육 전보다 환경친화적인 식품을 더 구매한다					
② 교육 전보다 제철식품을 더 먹는 편이다					
③ 교육 전보다 지역농산물을 더 구매한다					
④ 교육 전보다 전통식생활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⑤ 교육 전보다 음식을 알맞게 먹으려고 노력한다					
⑥ 교육 전보다 먹을 만큼만 조리하려고 노력한다					
⑦ 교육 후 음식을 만들어 먹는 횟수가 늘었다					
⑧ 교육 후 음식을 제공해주는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더 가지게 되었다					

○ 농업·농촌 및 전통식문화에 대한 인식 정도

조 사 항 목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점)	동의하지 않은 편이다 (2점)	보통이다 (3점)	동의하는 편이다 (4점)	매우 동의한다 (5점)
①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전통식문화의 우수성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교육과정 이수 후의 지역식문화 리더 활동 정도

조 사 항 목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점)	동의하지 않은 편이다 (2점)	보통이다 (3점)	동의하는 편이다 (4점)	매우 동의한다 (5점)
① 교육 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전통식생활의 중요성을 자주 설명한다					
② 교육 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전통식생활을 할 것을 자주 권유한다					
③ 교육 후 다른 사람들의 식생활을 변화시키는 지역식문화 리더로서 사명감을 더욱 느낀다					

농촌자원 활용 체험기술 시범(총괄)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농촌지도관 박찬순	063-238-1021
		농촌지도사 임은성	063-238-1017

□ 목적

-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연구개발기술의 시범사업화로 현장보급 확대
- 농업인의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체험·상품화기술 향상

□ 추진방향

- 농업·농촌분야 연구개발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시범사업 기반조성
- 농업인 및 소비자의 현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시범요인 현장 적용
- 시범사업 확산을 위한 사업설명회, 단계별 연사회, 평가회 등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7과제, 24개소, 1,400백만원(국비·지방비 각 50%)
- 사업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인단체 등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개소, 백만원)

세부과제명	구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인천
계	사업량	24	4	3	2	3	5	2	2	2	1
	사업비	1,400	230	150	100	160	330	110	110	160	50
쌀 누룩 이용 발효식품 (주류, 음료류) 제조(19~)	사업량	4	-	1	1	1	1	-	-	-	-
	사업비	200	-	50	50	50	50	-	-	-	-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19~)	사업량	6	1	-	-	1	1	1	1	1	-
	사업비	360	60	-	-	60	60	60	60	60	-
전분질 원료 농축액 활용 소규모 맥주 제조(20~)	사업량	2	1	1	-	-	-	-	-	-	-
	사업비	100	50	50	-	-	-	-	-	-	-
동물교감치유 환경조성 시범(20~)	사업량	2	1	-	-	-	1	-	-	-	-
	사업비	140	70	-	-	-	70	-	-	-	-
유기농 외식 창업 지원(21)	사업량	2	-	-	-	-	-	1	1	-	-
	사업비	100	-	-	-	-	-	50	50	-	-
유망지역 자원 관광상품화 (21)	사업량	2	-	-	-	-	1	-	-	1	-
	사업비	200	-	-	-	-	100	-	-	100	-
식농학습 농장(21)	사업량	6	1	1	1	1	1	-	-	-	1
	사업비	300	50	50	50	50	50	-	-	-	50

* 개소당 단가 : 50~100백만원(국비·지방비 각 50%)

□ 기대효과

-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체험·상품화를 통한 농외소득 향상 기여

쌀 누룩 이용 발효식품(주류·음료)제조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촌지도관 피정의 농업연구사 김세나	063-238-2313 063-238-2314

□ 목적

- 쌀누룩 이용 발효식품 가공을 통한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 및 관련 시장의 확대
- 발효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확보를 통한 시장경쟁력 확보

□ 추진방향

- 발효식품의 제조공정 개선과 한국형 쌀누룩 사용으로 생산 원가 절감

□ 근거법령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20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
- 농촌진흥법 제1조, 농촌진흥법 제15조, 제16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 사업규모

- 사업비 : 200백만원(개소당 50백만원, 국비50%, 지방비50%)
- 규모 : 쌀누룩을 이용한 발효식품 (주류, 음료류) 가공 라인1식

□ 사업량 : 4개소

시도	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개소수	4	1	1	1	1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쌀누룩을 활용한 주류 또는 음료 가공제품 개발 및 품목제조 보고
- 관련기술
 - 한아름 품종을 이용한 증류식 소주용 쌀 낱알누룩 제조방법, 카로미세스 세레비지에 N9를 이용한 증류식 소주 및 이의 제조 방법, 쌀 발효제를 이용한 잡곡발효음료의 제조방법 및 상기 방법으로 제조된 곡물발효음료, 아스퍼질러스 오리제 83-10균주를 이용하여 제조된 쌀알누룩 및 발효제를 이용한 청조제조 기술

○ 지원범위

- 쌀누룩 이용 발효식품 가공 제조 시설, 장비 우선 지원, 위생설비 지원 가능
- 건물 신축·증축 비용, 단순 포장재, 원료 구입비 지원 불가

□ 사업대상

○ 영농조합법인, 2농가 이상 공동참여자

- 최종 가공제품이 주류일 경우 주류제조면허 소지자

□ 사업추진 체계 및 지원방식 등

○ 추진체계 및 지원방식

- (농촌진흥청) 기본계획 수립, 예산확보, 모니터링, 사업평가, 성과확산, 개발 기술지원, 교육, 워크숍, 자료제공 등
- (도농업기술원) 사업 점검·지도·평가, 사례 발굴,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
- (농업기술센터) 사업대상자 선정·관리, 사업계획·결과보고, 사업자 교육 등
- (사업농가) 사업계획 수립·추진, 교육참여, 사업장 홍보 등
- * ATIS 승인완료 후 사업비 교부결정(시군센터)

○ 추진 요령

- 사업장 조성 위치가 식품제조가공업인·허가가능지역임을 확인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 적용후 상품화가 가능하도록 추진
-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임을 알리는 표찰을 설치(지자체 규격 따름)

□ 기대효과

○ 우리 고유의 증류주용 효모 사용으로 로열티 문제 극복

- 기술가치 : 128.2백만원, 생산유발효과 12.8억원, 취업유발 12명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 사후관리

○ 사업 당해 연도에 제품개발, 사업이후 2년차부터 소득 창출

- 사업 후 운영에 대한 결과 보고* 제출 (사업완료 후 3년간 반영)

* 성과지표 : 소득증가율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농촌지도관 박찬순 농업연구사 손호기	063-238-1021 063-238-1015

□ 목적

-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활용한 자유학기제에 특화된 농생명 진로체험 교육 콘텐츠 지원으로 농촌체험 활성화 및 농가 소득 향상
-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농생명 분야의 비전을 제시하고 농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확산모델 구축

□ 추진방향

- 기존 체험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진로체험부분 교육 콘텐츠개발을 기반으로 특화된 진로체험농장 육성
- 고도화된 진로체험의 주체적 운영을 위한 농가 역량강화
- 농업기술센터-체험농장-학교(교육기관)-지역사회의 긴밀한 관계망을 통해 형성된 프로그램 및 체험농가의 질적 관리체계 마련
- 농진청 기술개발자의 프로그램 검토의견 반영을 통한 농산업 직업체험 프로그램 차별화 및 품질관리

□ 추진근거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 농촌진흥법 제1조, 농촌진흥법 제15조, 제16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 사업규모

○ 사업량 및 사업비 : 6개소, 360백만원 (개소당 60백만원 : 국비·지방비 각 50%)

* 사업량 1개소당 진로체험농장 2개소 조성

○ 지역별 현황

구 분	계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사업량(개소)	6	1	1	1	1	1	1

□ 사업대상

○ 농장에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가능 농업경영체

※ 농업법인의 경우 1년 이상이 경과한 법인으로 제한하지 않음

※ 농림축산 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1. 공통지원조건 마.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 법인(단, 개별 사업시행지침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사업내용

○ 자유학기제 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운영

-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체험환경 조성(시설, 장비, 교구, 교재)
- 농업·농촌 유망직업에 대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참고자료 참조)

○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역량강화 교육 및 프로그램 품질관리

○ 프로그램 실습에 필요한 교구 제작(워크북, 농산물활용 소품제작 키트 등)

○ 학교의 수요와 농가의 공급 매칭을 연계한 관계망 구축 ※ 필수 추진내용

※ 필수 추진내용

- 농업·농촌 유망직업 20가지 중 1개를 선정하여 진로체험 프로그램 1종 이상 개발(참고자료 참조)
 - * 프로그램 내용 : 프로그램 설계, 교재, 교구
- 개발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1종에 대하여 1회 이상 시범운영
-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실내 체험·교육 공간 조성(교실환경)

□ 지원범위

- 체험장 조성(리모델링), 교육교재·교구 제작, 사업자 역량교육

<지원제한>

- 건물 신축 및 증축 비용 지원 불가(리모델링 가능)
- 체험에 필요한 원재료, 단순 포장재 구입비, 인건비 지원 불가
단, 체험 활동과 연계된 패키지 개발 및 디자인 개발 지원은 가능

<유의사항>

- 농촌진흥청에서 사업계획 ATIS 승인이 완료된 후 사업대상자에게 교부결정할 수 있음
- 단순한 텔레비전, 컴퓨터, 복사기 등 가전제품 중심의 사업비 지출 지양
- 본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성 있는 내용에 지출

□ 추진체계

- (농촌진흥청) 기본계획 수립, 예산확보, 모니터링, 사업평가, 성과확산, 개발 기술지원, 교육, 워크숍, 자료제공 등
- (도농업기술원) 사업 점검·지도·평가, 우수사례 발굴,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등
- (농업기술센터) 사업대상자 선정·관리, 사업계획·결과보고, 사업자 교육 등
- (사업농가) 사업계획 수립·추진, 교육참여, 사업장 홍보 등

□ 기대효과

- 진로체험 프로그램 상품화로 체험 수요를 창출하고 농가소득 향상
- 농생명 산업 분야에 대한 학생 및 교사들의 진로인식 제고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2021년도 사업추진계획 보고 : '21. 3. 20 한
- 2021년도 상반기 추진현황 보고 : '21. 6. 20 한
- 2021년도 사업추진결과 보고 : '21. 11. 20 한

□ 사후관리

-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콘텐츠 제공 및 모니터링
- 진로체험 박람회 참가 등 홍보·마케팅

참고 **진로체험농장 농업·농촌유망직업 20가지**

□ 농업·농촌 유망직업군 50선, 100선 (농촌진흥청 발간자료) 활용

□ 농가 소득창출 고려한 재배, 유통, 가공 분야 직업군 고려

직업		직업	
<p>곤충사육사</p> <p>식용곤충, 체험곤충을 키우며 판매하는 전문가</p>		<p>초음파진단 관리자</p> <p>의사처럼 가축을 초음파 진단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리하는 전문가</p>	
<p>농촌교육농장 플래너</p> <p>학교교육과 연결한 농촌교육체험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는 전문가</p>		<p>마을기업 운영자</p> <p>주민과 함께 마을자원으로 사업을 하는 경영자</p>	
<p>농산물유통 전문가</p> <p>농업인이 수확한 농산물이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기전까지 모든 과정(저장, 수송, 판매)을 담당하고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p>		<p>식생활교육 강사</p> <p>건강한 식습관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에게 식생활 교육을 하고, 식생활 실천활동을 하는 전문가</p>	
<p>스마트농업 전문가</p> <p>농업의 모든 영역에 ICT기술을 연결시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과 컨텐츠를 개발하는 전문가</p>		<p>협동조합 플래너</p> <p>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상담, 홍보, 마케팅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전문가</p>	
<p>농가카페 매니저</p> <p>지역의 특산물(채소, 과일 등)을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조리하거나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전문가</p>		<p>재활승마치료사</p> <p>말을 이용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치료승마 전문가. 말의 건강도 돌본다.</p>	
<p>유기농업전문가</p> <p>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을 높여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 농산물 생산으로 지속가능한 청정 농업 육성을 담당하는 전문가</p>		<p>치유농업 전문가</p> <p>농업·농촌자원을 이용하여 신체, 정서, 심리, 인지 등 건강을 증진시키는 전문가</p>	

<p>돌봄농장 운영자</p> <p>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농업생산·가공·유통 활동으로 직업교육, 일자리제공, 주거지원 등을 지역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자</p>		<p>팜파티 플래너</p> <p>농촌문화와 생산농산물을 주제로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행사·이벤트 기획자</p>	
<p>지역 음식관광코디네이터</p> <p>지역 농·특산물 자원을 활용한 특색있는 메뉴 발굴 및 음식체험을 테마로 교통, 숙박, 음식 등 음식관광루트 진행 또는 기획자</p>		<p>텃밭농장디자이너</p> <p>생태·친환경 작물을 재배하는 농장환경을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의 농장으로 디자인하는 계획가</p>	
<p>동물교감 치유사</p> <p>동물교감을 통해 정서적·인지적·사회적·신체적 문제를 예방하거나 회복하는 활동을 돕는 전문가</p> <p>*동물교감 치유사는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적절한 동물 선택에도 전문적인 역할이 필요함</p>		<p>농업유산해설사</p> <p>농업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 방문객에게 관광과 농업유산을 연계한 문화관광적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p> <p>*농업유산: 오랜 기간 농업활동을 통하여 만들어진 다랑논, 돌담, 저수지, 식물군락지 등을 보전 및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p>	
<p>농촌관광 플래너</p> <p>지역 농촌관광협의체와 시·군을 중심으로 지역민의 자율적인 연계와 협력을 유도하여 지역 관광체험상품과 코스개발을 통해 농촌활력을 이끄는 전문가</p>		<p>생태관광디렉터</p> <p>생태관광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자 이면서 지역 생태자원과 주민, 방문객이 함께 자연의 의미를 이해시키는 전문 가이드</p>	

전분질 원료 농축액 활용 소규모 맥주 제조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촌지도관 피정의	063-238-2313
		농업연구사 김세나	063-238-2314

□ 목적

- 소규모(하우스) 맥주 제조업체의 현장 애로기술 해결 및 소득증대 기여

□ 추진방향

- 국산원료(쌀) 활용 고품질 맥주 제품화를 통해 지역내 새로운 소득원 창출

□ 추진근거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20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
- 농촌진흥법 제1조, 농촌진흥법 제15조, 제16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 사업규모

- 사업비 : 150백만원(개소당 5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량: 2개소

시 도	계	경기	강원
개소수	2	1	1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전분질 원료 농축액 활용 맥주 (농진청 개발 기술 적용) 및 품목제조 보고

○ 관련기술

- 전분질 원료 활용 당화액 제조 및 농축기술, 농축액 활용 소규모 맥조 제조기술

○ 지원범위

- 소규모 가공 제조 시설, 장비 우선 지원, 위생설비 지원 가능
- 건물 신축·증축 비용, 단순 포장재, 원료 구입비 지원 불가

□ 사업대상 : 영농조합법인, 2농가 이상 공동참여자

- * 주류제조면허를 소지하였거나 취득 예정자

□ 사업추진 체계 및 지원방식 등

○ 추진체계 및 지원방식

- (농촌진흥청) 기본계획 수립, 예산확보, 모니터링, 사업평가, 성과확산, 개발 기술지원, 교육, 워크숍, 자료제공 등
- (도농업기술원) 사업 점검·지도·평가, 사례 발굴,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
- (농업기술센터) 사업대상자 선정·관리, 사업계획·결과보고, 사업자 교육 등
- (사업농가) 사업계획 수립·추진, 교육참여, 사업장 홍보 등

- * ATIS 승인완료 후 사업비 교부결정(시군센터)

○ 추진 요령

- 사업장 조성 위치가 식품제조가공업 인·허가 가능 지역임을 확인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 적용후 상품화가 가능하도록 추진
-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임을 알리는 표찰을 설치(지자체 규격 따름)

□ 기대효과

○ 쌀맥주 제조기술의 현장 실용화를 통해 국내 농산물 소비촉진 강화

- * 맥주 전분질 원료의 50%를 국산 원료로 대체

□ 사후관리

○ 사업 당해 연도에 제품개발, 사업이후 2년차부터 소득 창출

- 사업 후 운영에 대한 결과 보고* 제출 (사업완료 후 3년간 반영)

- * 성과지표 : 소득증가율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ATIS 기준(일정·양식 참조)

동물교감치유 환경조성 시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촌지도관 어윤중	063-238-7205

□ 목적

- 동물이 지닌 치유와 위로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동물교감치유 농장 환경 조성
- 농장동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 인식 제고

□ 추진방향

- 사람과 동물이 서로 교감하는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제공
- 동물교감치유의 탁월한 가치 및 효과 확산

□ 추진근거

- 농촌진흥법 제1조, 농촌진흥법 제15조, 제16조
-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 개정안 제43조의2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 사업규모

- 사업비 : 140백만원(개소당 70백만원, 국비50%, 지방비50%)

□ 사업량

구 분	계	경기	전북
사업량(개소)	2	1	1

□ 사업내용

- 동물교감치유 프로그램, 교구 등 콘텐츠 개발 및 운영
- 치유환경 조성(시설개선, 장비, 교구 등 구입)
- 전문가 컨설팅, 홍보, 성과분석 등

□ 사업대상

- 동물교감치유를 희망하고 운영이 가능한 농장 또는 단체

□ 사업추진 체계 및 지원방식 등

○ 추진체계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본계획 수립, 예산확보, 모니터링, 사업평가, 성과확산, 개발기술지원, 교육, 워크숍, 자료제공 등
- (도농업기술원) 사업 점검·지도·평가, 우수사례 발굴,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등
- (농업기술센터) 사업대상자 선정·관리·교육, 사업계획·결과보고 등
 - * ATIS 승인완료 후 사업비 교부결정
- (시범사업 농가) 사업계획 수립·추진, 교육참여, 사업장 홍보 등

○ 추진 요령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 적용 후 상품화가 가능하도록 추진
-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임을 알리는 표찰을 설치하되 규격 및 내용은 시군 자체적으로 결정

□ 기대효과

- 동물체험농장에서 치유농장으로 전환 기반 마련으로 농가 소득 증대
- 치유와 위로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정서적 안정 도모에 기여

□ 사후관리

- 사업 당해 연도에 제품개발, 사업이후 2년차부터 소득 창출
 - * 성과지표 : 소득증가율(사업완료 후 3년간 반영)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2021년도 사업추진계획 보고 : '21 3. 20 한
- 2021년도 상반기 추진현황 보고 : '21 6. 20 한
- 2021년도 사업추진결과 보고 : '21 11. 20 한

유기농 외식 창업지원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농촌지도관 박찬순 농촌지도사 임은성	063-238-1021 063-238-1017

□ 목적

- 식재료 생산 유기농 정원과 외식공간을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유기농 식재료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는 농가형 외식 창업지원

□ 추진방향

- 유기농·경관적 가치를 반영한 식재료 공급 정원과 건강 메뉴를 콘셉트로 하는 농가형 외식공간 조성
- 유기농 식재료 사용, 자연 친화적 가치 추구로 소비자 호응 유도
- 재료를 재배하는 농장을 정원처럼 활용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수준 높은 조리로 음식의 매력을 더하고, 농업 활동과 음식의 일체감으로 식재료에 대한 설명이 없어도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메뉴 제공
- 농경지에 초화류를 재배하여 화분매개곤충과 천적 곤충류의 서식처 제공을 통해 해충관리

* 초화류: 메리골드, 백일홍, 금계국, 불란서국화, 허브류 등

□ 추진근거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20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
- 농촌진흥법 제1조, 농촌진흥법 제15조, 제16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 사업규모

- 사업량 : 2개소
- 사업비 : 100백만원(개소당 50백만원, 국비·지방비 각 50%)

○ 시도별 현황

구 분	계	전남	경북
사업량(개소)	2	1	1

□ 사업대상 : 2농가 이상 참여 농업경영체

□ 사업내용

- 계절 농산물을 활용한 레시피 개발 및 식당 운영
- 식당 주변 유기농 식재료 재배공간(정원) 조성
 - * 유기농 가드닝 재배기술 교육·체험
- 유기농 전문분야 컨설팅 및 외식 창업 코칭
- 유기농 식재료 재배공간 조성 및 필요한 시설·장비 구축 등

□ 지원범위

- 식재료 생산 유기농 정원 조성, 외식공간 조성, 메뉴개발, 컨설팅

<지원제한>

- 건물 신축 및 증축 비용 지원 불가(리모델링 가능)
- 단순 소모품, 인건비 지원 불가

<유의사항>

- 농촌진흥청에서 사업계획 ATIS 승인이 완료된 후 사업대상자에게 교부결정할 수 있음
- 본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성 있는 내용에 지출
- 텔레비전, 컴퓨터, 복사기 등 가전제품 중심의 사업비 지출 지양

□ 추진체계

- (농촌진흥청) 기본계획 수립, 예산확보, 모니터링, 사업평가, 성과확산, 개발기술 지원, 교육, 워크숍, 자료제공 등
- (도농업기술원) 사업 점검·지도·평가, 우수사례 발굴,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등
- (농업기술센터) 사업대상자 선정·관리, 사업계획·결과보고, 사업자 교육 등
 - * ATIS 승인완료 후 사업비 교부결정
- (사업농가) 사업계획 수립·추진, 교육참여, 사업장 홍보 등

□ 기대효과

- 농산물 생산과 체험·관광·외식 연계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 안전한 식재료 활용으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관광자원화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2021년도 사업추진계획 보고 : '21. 3. 20 한
- 2021년도 상반기 추진현황 보고 : '21. 6. 20 한
- 2021년도 사업추진결과 보고 : '21. 11. 20 한

참고 **유기농 정원을 활용한 정원 레스토랑 해외사례**

업체명	방문지 요약
Villa August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객 : 연인원 100만명(호텔, 레스토랑, 가드닝 도구 판매장) ◦ 주요시설 : 호텔(객실 45개), 레스토랑, 정원(1.5ha), 마켓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텔) 1930년대 사용했던 급수탑을 리모델링하여 운영 - (레스토랑) 주 7일 영업, 정원에서 재배한 식재료 활용 - (정원) 채소밭, 과수원, 포도나무 온실, 이탈리아 정원 등 - (마켓) 가드닝 도구, 빵집, 과일과 채소, 책, 예술품 등 판매 ◦ 특 징 : 경관을 고려한 재배작물 구성으로 정원이 아름다우며, 유기농으로 소비자 선호, 아기자기한 가드닝 도구 판매점, 품격 있는 메뉴로 매력적인 공간으로 호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추, 루콜라, 겨자, 콜리 플라워, 시금치, 양배추, 들판 완두콩 등 * 과일 나무 (사과, 배, 복숭아, 무화과 및 뽕나무)가 공작의 꼬리, 촛대, 팔 메테 및 벨기에 울타리와 같은 예술적 형태로 자라도록 관리
De K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수 : 연인원 5만명 ◦ 주요시설 : 유리온실, 식당, 주방, 직영농장 ◦ 메뉴구성 : 식당이 위치한 유리온실 유기농으로 재배한 식재료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재료는 식당이 위치한 정원에서 20%, 나머지는 인근 직영농장 - 유리온실에서는 가지, 오이, 새싹채소, 케일 등을 재배 - 식당 입구가 유리온실을 지나도록하여 고객들에게 식재료 신뢰 제공 * 식대(1인 기준) : 3점시(35.5유로), 4점시(40유로), 5점시(57유로), 6점시(65유로)

<Villa Augustus>



유기농 농장



레스토랑 내부



유기농 마켓



가드닝 도구 판매

<De Kas>



정원식당(온실식당)



유기농 온실



주방



식당 홀

유망지역자원 관광상품화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농촌지도관 박찬순 농업연구사 손호기	063-238-1021 063-238-1015

□ 목적

- 지역 식문화 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 콘텐츠 지원으로 음식과 맛을 연계한 식문화 관광을 활성화하고 농촌 활력화

□ 추진방향

- 맛을 즐기고 탐구하는 목적관광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지역의 맛과 음식을 소재로 하여 식문화 관광 추진
- 지역성, 특이성, 스토리가 있으며 확장 가능성(음식-가공-체험-유통)이 높은 아 이템을 발굴·자료화하고 관광 콘텐츠로 활용
 - * 정미소, 저장고, 전통 가공기술·기기·식기류 등 자원 활용
- 관광 가치가 있는 지역 유망자원을 활용한 판매상품을 개발하고 지역의 체험장, 가공장, 외식업,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 브랜드로 활용
 - 식문화와 연관된 공간, 시설을 식재료, 식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전시·홍보하여 지역의 음식관광산업 촉진
 - * 소스류(간장, 된장, 식초 등), 떡류(전병, 수수부꾸미, 세시음식 등), 술(누룩, 주조장, 주막, 효모), 면류(제면실, 국수), 만두·빵, 식사류(등), 음료(식혜 등)

□ 추진근거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20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
- 농촌진흥법 제1조, 농촌진흥법 제15조, 제16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 사업규모

- 사업량 : 2개소
- 사업비 : 200백만원(개소당 100백만원, 국비·지방비 각 50%)
- 지역별 현황

구 분	계	전북	경남
사업량(개소)	2	1	1

□ 사업대상 : 농촌마을

□ 사업내용

- (필수) 지역 식문화자원 발굴 및 자료집, 관광 코스 개발(1식)
 - 식문화자원의 유래 역사·사회적 배경 자료화
 - 식문화자원 제조방법, 조리레시피, 역사·사회적 배경 자료화
 - 음식관광 코스개발 및 시범운영
- 음식 및 자원 해설사 교육, 유망자원 활용한 관광코스개발·운영 컨설팅
- 상품 콘셉트에 맞는 체험·관광 기반 조성

□ 지원범위

- 식문화체험·관광 기반조성, 컨설팅, 사업자 역량교육, 자료집 제작

<지원제한>

- 건물 신축 및 증축 비용 지원 불가(리모델링 가능)
- 단순 포장재 구입비, 인건비 지원 불가

<유의사항>

- 농촌진흥청에서 사업계획 ATIS 승인이 완료된 후 사업대상자에게 교부결정할 수 있음
- 단순한 텔레비전, 컴퓨터, 복사기 등 가전제품 중심의 사업비 지출 지양
- 농가맛집과 같이 외식사업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아니며 다양한 식문화 상품화임
- 1개 사업장을 지원하는 개인 사업장 형태로는 지원 불가

□ 추진체계

- (농촌진흥청) 기본계획 수립, 개발기술지원, 모니터링, 사업평가, 성과확산 등
- (도농업기술원) 사업 점검·지도·평가, 우수사례 발굴,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등
- (농업기술센터) 사업대상자 선정·관리, 사업계획·결과보고, 사업자 교육 등
- (사업농가) 사업계획 수립·추진, 교육참여, 사업장 홍보 등

□ 기대효과

- 지역 유망자원 상품 발굴·개발·운영을 통한 관광객 유입으로 농가 소득 증대
- 전통·향토 식문화, 유망자원에 대한 가치를 재인식하고 지역 브랜드화

□ 행정사항 : ATIS, e-나라도움 활용

- 2021년도 사업추진계획 보고 : '21. 3. 20 한
- 2021년도 상반기 추진현황 보고 : '21. 6. 20 한
- 2021년도 사업추진결과 보고 : '21. 11. 20 한

식농학습 농장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농촌지도관 박찬순	063-238-1021
		농촌지도사 임은성	063-238-1017

□ 목적

- 농촌체험+미각교육+요리체험을 연계한 단계별 프로그램 적용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식농학습 농장 육성

□ 추진방향

- 미각교육, 농사·농촌체험, 요리체험을 포함하는 단계별 다회체험 운영
 - * 다회교육(예시) : 미각 사전교육 → 농장체험(종자·수분·공기·흙에 대한 이해 및 체험 - 씨앗파종 - 거름주기 - 작물채취) → 농장요리(모듬별 요리계획 세우기-요리-맛보기) - 평가(식재료에 대한 인식, 식재료 알아 맞추기, 맛에 대한 표현의 변화)
- 음식을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요리에 대한 재미와 즐거움을 주고 건강과 식생활 개선을 목적으로 한 요리체험
- 환경과 농업의 관계, 안전한 농산물, 배려와 감사, 맛을 즐거움과 지역 사회의 가치에 공감하고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프로그램 운영
- 체험활동 경험을 글짓기와 말하기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성과 측정

□ 추진근거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20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
- 농촌진흥법 제1조, 농촌진흥법 제15조, 제16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 사업규모

- 사업량 : 6개소
- 사업비 : 300백만원(개소당 50백만원, 국비·지방비 각 50%)
- 지역별 현황

구 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인천
사업량(개소)	6	1	1	1	1	1	1

□ 사업대상 : 2농가 이상 참여 농업경영체

□ 사업내용

- (필수) 농사체험-미각교육-요리경험을 제공하는 식·농체험 개발(1식)
 - 식재료 정원에서 직접 채취한 재료를 활용한 요리공간 조성
 - 농사체험-미각교육-조리활용을 포함하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
- 토종 종자의 재배와 식재료의 활용, 토종종자 수집·나눔
- 토종 식재료의 연구와 이를 활용한 새로운 향토음식 “맛” 연구
- 전통 식재료 조달 및 활용 체험(미나리짬, 염장, 건조 등)

□ 지원범위

- 체험프로그램 개발, 체험교재·교구 개발, 체험용 요리환경 조성, 컨설팅

<지원제한>

- 건물 신축 및 증축 비용 지원 불가(리모델링 가능)
- 체험에 필요한 원재료, 단순 포장재 구입비, 인건비 지원 불가
단, 체험 활동과 연계된 패키지 개발 및 디자인 개발 지원은 가능

<유의사항>

- 농촌진흥청에서 사업계획 ATIS 승인이 완료된 후 사업대상자에게 교부결정할 수 있음
- 단순한 텔레비전, 컴퓨터, 복사기 등 가전제품 중심의 사업비 지출 사양
- 본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성 있는 내용에 지출

□ 추진체계

- (농촌진흥청) 기본계획 수립, 개발기술 지원, 모니터링, 사업평가, 성과확산 등
- (도농업기술원) 사업 점검·지도·평가, 우수사례 발굴,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등
- (농업기술센터) 사업대상자 선정·관리, 사업계획·결과보고, 사업자 교육 등
- (사업농가) 사업계획 수립·추진, 교육참여, 사업장 홍보 등

□ 기대효과

- (소비자) 농업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식생활 실천으로 건강 증진
- (농업인) 지역 식재료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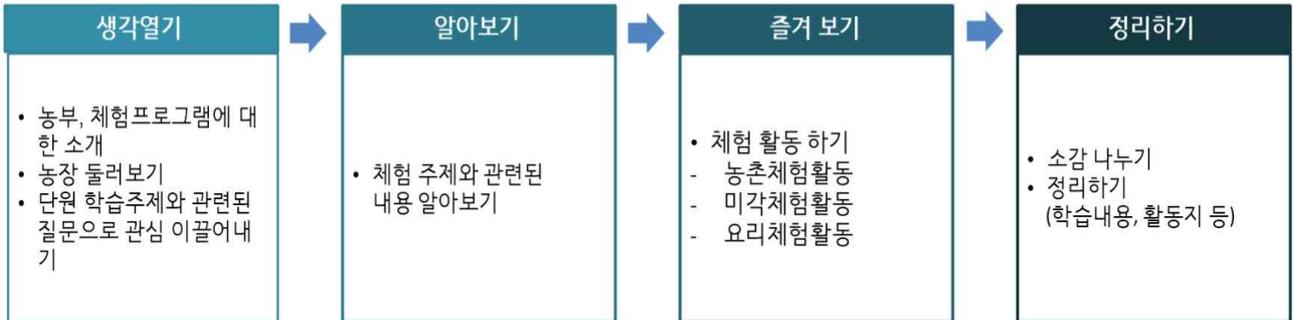
□ 행정사항

- 2021년도 사업추진계획 보고 : '21. 3. 20 한
- 2021년도 상반기 추진현황 보고 : '21. 6. 20 한
- 2021년도 사업추진결과 보고 : '21. 11. 20 한

참고

식농체험 연계 미각교육 프로그램(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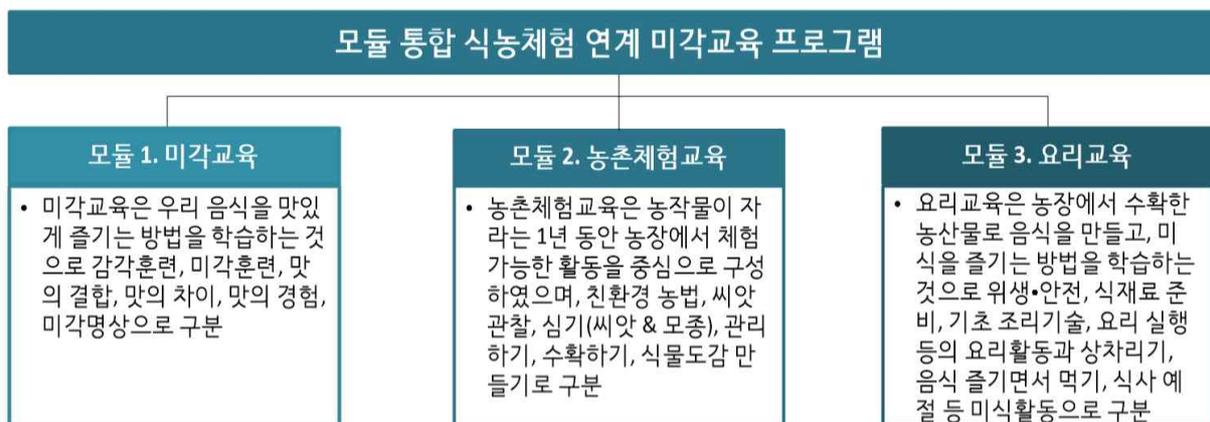
□ 미각교육 프로그램 진행 체계



□ 식농체험 연계 미각교육 프로그램 세부 단원 구성 내용(예)



□ 식재료(농사)-미각교육-요리경험을 제공하는 식농체험 운영(예)



■ 2021년도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

지역농업기술정보화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지식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지식정보화담당관실	전산주사보 김수경	063-238-0490

□ 사업목적

- 지역특성에 따른 농업기술 정보 제공 및 농업인 정보화 능력 향상
- 지역농업정보화 촉진 및 중앙과 지방간 정보화사업 연계·협업 강화
- 농업인 정보화 마인드 확산 및 정보화 선도 농업인 육성

□ 추진방향

- 자율적인 정보화사업추진 지원을 통하여 지역특성 반영을 유도
- 우수 정보화사례 발굴·육성을 통하여 농촌정보화 확산을 유도

□ 근거법령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6조(지방정보화의 추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농업 및 농촌 지역의 정보화 촉진)
- 농촌진흥법 제25조(농촌지도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에 사업비 보조)

□ 사업내용

-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
 - 중앙과 지방을 연계한 농촌진흥사업 관련 현장데이터의 수집 및 DB화 사업
 - 지역 특화기술 정보 수집 및 연계 : 농업기술포탈(농사로)과 연계하는 지역특화 기술정보 및 연구결과 콘텐츠 수집
 - 농촌지도기관 홈페이지 운영관리 등 지역농업 정보서비스 운영
 - 농산물 전자상거래 등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 농업인 정보화 교육 및 지역 내 정보화 확산 사업
 - 지역민 대상 국가농업기술포탈(농사로) 교육 및 홍보 추진
- ※ 정보화 전문 인력이 우선 채용 될 수 있도록 정보화 관련 자격증 보유자 채용 권장

○ 농업인 정보화경진대회 개최지원

- 지방(도별) 지역특성에 맞는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대회 개최
- 경진분야: SNS활용 농산물 마케팅, 지역내 정보문화 확산, ICT의 선도적 활용 등 자체 실정에 따라 프로그램 구성
- 정보화 특강, 농업인 우수사례 발표 등 학술 대회
- 정보화대회 우수작, 최신 ICT 장비, 농산물 등 전시
 - ※ 세부내용은 지방(도별) 기관의 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 ※ 연말 중앙대회(농진청)와 연계 추진

□ 사업성과 목표

○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

-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 DB 구축: 400건/1인 이상
- 기관별 월평균 홈페이지 방문자수
 - 농업기술원: 20,000명/월 이상, 농업기술센터: 5,000명/월 이상
- 농업인 정보화교육시 '농사로' 교육 및 홍보 추진: 1회 이상

○ 농업인 정보화경진대회 개최지원

- 경진대회 참가자 대상 만족도 조사: 82% 이상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2,015	2,015	2,015	2,015	1,810
보 조	806	806	806	806	724
지방비	1,209	1,209	1,209	1,209	1,086

□ 사업량과 사업비

○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

- 149개 기관, 169명(센터1, 도원4(경기 0, 경남3, 제주2))

구분/시군	계	특·광역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69	12	14	22	15	17	16	22	24	21	6

- 지원비율 : 국고 40%, 지방비 60%

· 169명(149개소) × 10백만원/인 × 0.4(보조율) = 676백만원

- 사업대상자 :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 농업인 정보화경진대회 개최지원

- 사업량 : 도농업기술원 9개소

시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소수	9	1	1	1	1	1	1	1	1	1

- 지원비율 : 국고 40%, 지방비 60%

· 8도 농업기술원 : 13,750천원 × 8개도 × 0.4(보조율) = 44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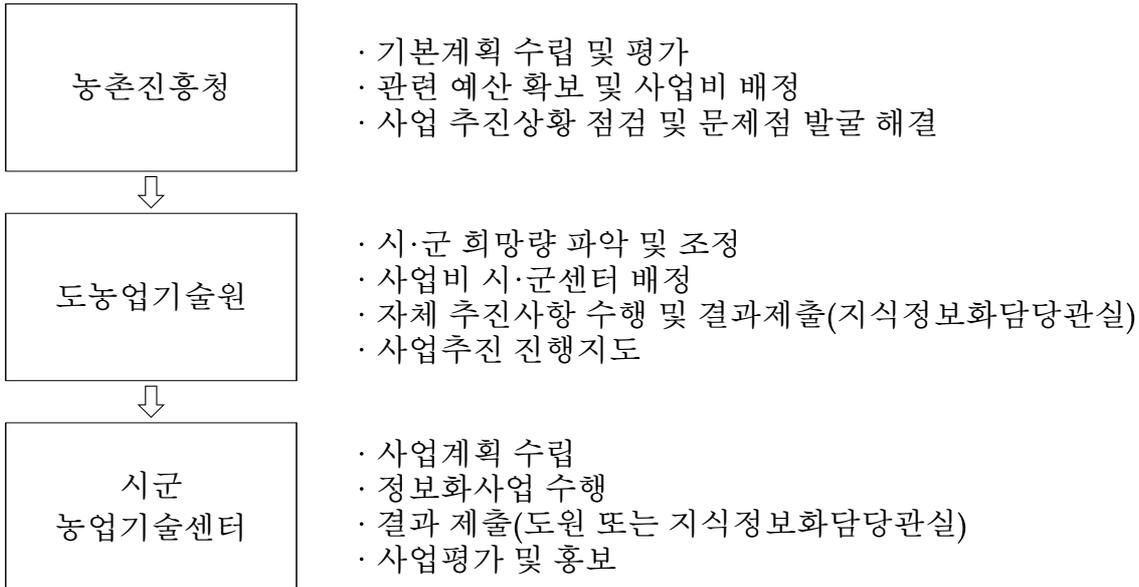
· 제주도농업기술원 : 10,000천원 × 1개도 × 0.4(보조율) = 4백만원

- 사업대상자 : 도 농업기술원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신청, 선정, 세부계획수립, 자금배정, 이행점검

○ 사업추진체계



□ 예산편성 및 사후관리

○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

- 예산편성

- 인건비(110) 및 민간이전(320)(법정경비)
- 편성기준 : 인건비 + 법정경비(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 법정경비(연금지급금) 산출방법(기관실정에 맞도록 조정 가능)
 (고용보험 : 인건비 × 13/1,000, 산재보험 : 인건비 × 4/1,000,
 국민연금 : 인건비 × 4.5%)

- 사후관리 : 추진실적 제출(하반기)

○ 농업인 정보화경진대회 개최지원

- 예산편성

- 대회에 필요한 부분을 기관 사정에 따라 운영비(210), 여비(220) 및 보전금(310) 등으로 여건에 맞게 편성 가능

- 대회 목적외 사용 금지 및 농업인 포상과 관련된 내용은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 지침,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편성 및 집행
- 개소당 단가(편성예) : 13,750천원(제주 10,000천원)
- 포상금 : 정보화경진 우수자 시상 등
- 수용비 : 정보화 특강, 정보화 우수사례 발표(강사료, 책자유인, 원고료, 영상제작) 등
- 임차료 : 정보화 전시(텐트설치, 장비임차) 등
- 여비 : 관련 정보수집 등 출장
- 기타 : 현수막 설치, 초청장 인쇄 등
- ※ 식비 · 홍보용품 구매 등 행사성 경비는 본 예산에서 집행 불가

□ 행정 사항

- e-나라도움 활용 : 예산 편성, 교부, 신청, 집행관리, 정산관리 등
- ATIS 활용 : 사업계획 및 실적관리
- ※ 보조 예산을 목적외 사용하거나 추진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차년도 지원을 조정할 수 있음

■ 2021년도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

농산물소득조사분석

농산물소득조사분석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농업연구관 오상현	063-238-2317
		농업연구사 소남호	063-238-1201

□ 목적

- 지역별 작물 소득을 조사·분석하여 농업경영 진단 및 설계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경영개선 연구·지도 기초자료로 활용

□ 추진방향

- 정기통계품질진단 과제수행(자동내부점검 시스템)으로 자료 신뢰성 제고
- 농산물소득조사 자료 신뢰성을 바탕으로 경영개선 연구·지도에 활용
- 경영개선 연구·지도, 농업정책 결정의사지원으로 농가소득 제고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5조(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 농촌진흥법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 농촌진흥법 제26조(농촌진흥사업 연구·조사)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제②항의 12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제⑥항의 6
- 농촌진흥청 사무분장규정 제25조 5의 다
- 통계법 제15조(통계작성기관의 지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 사업규모

- 사업비 : 1,853백만원(국비 100%), 개소당 15백만원

□ 사업량

○ 총사업량 : 121개소(도원 109개소, 특광역시 12개소)

도원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량	21	19	12	16	15	1	1	19	5

특광역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사업량	1	2	2	3	1	1	1	1

□ 사업내용

○ 조사자 :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담당 및 분야별 전문지도사

- 도광역조사(전남·경북)는 도원 소득조사 담당자 및 공무원 등 수행

○ 조사방법 : 경영기록장(종이·모바일앱 등), 소득조사표 등 이용

○ 조사내용 : 경영기록장(농가현황, 영농일지, 생산·판매일지 등) 및 소득조사표를 이용하여 총수입, 수확량, 투입량 및 투입비용, 작업단계별 노동시간, 소득 등

○ 조사시기는 지역별 조사작물 재배 및 수확시기를 고려

- 도농업기술원(제주 제외)

세부내용	추진시기(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 8개 도농업기술원	계획 제출		결과 보고								하계작물 보완조사, 검토		
	하계작물 보완조사, 검토			동계작물 보완조사, 검토									
○ 108개 시군농업기술센터	계획 제출		결과 보고								하계작물 본조사		
	하계작물 본조사		동계작물 본조사										

- 제주도농업기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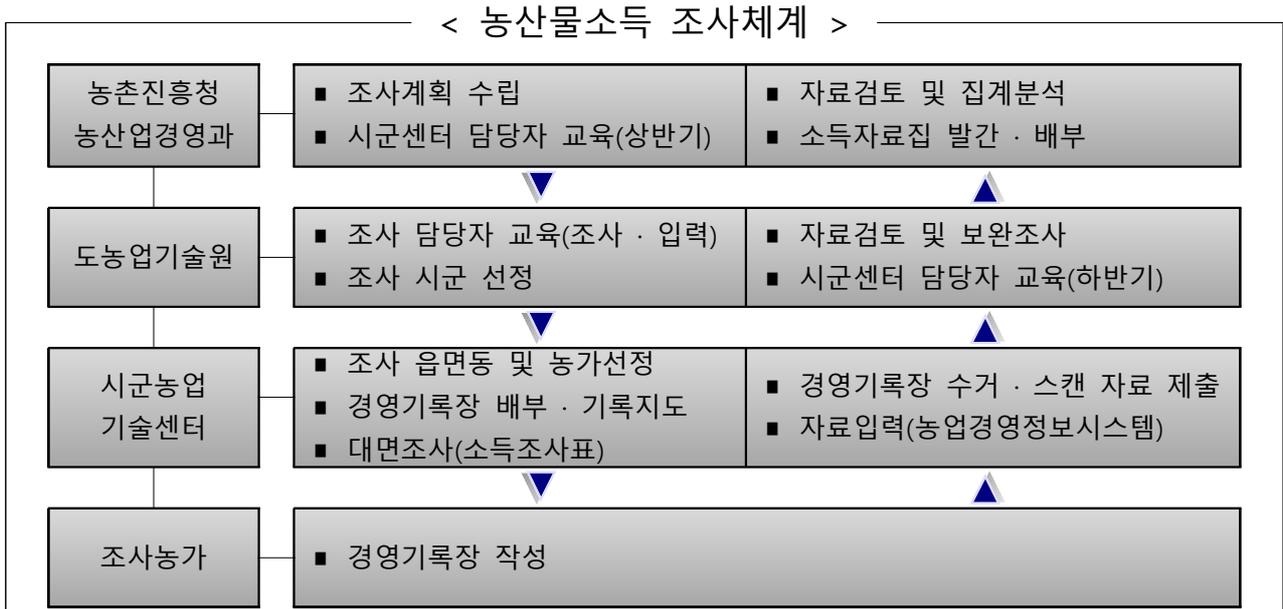
세부내용	추진시기(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 도농업기술원	계획 제출		결과 보고								하계작물 보완조사, 검토		
	하계작물 보완조사, 검토			동계작물 보완조사, 검토									
○ 4개 시군농업기술센터 (제주, 서귀포, 서부, 동부)	계획 제출		결과 보고								결과 보고		
	하계작물 본조사		동계작물 본조사						하계작물 본조사				

□ 사업대상

- 작물별 조사대상 5,300농가

□ 사업추진 체계 및 지원방식 등

- 조사체계



- (시군농업기술센터) 경영기록장(승인작물 중 맥류와 인삼4년근 제외)과 소득조사표(지역작물, 맥류와 인삼4년근)를 기반으로 소득 등을 조사하여 농업경영정보시스템(AMIS)에 입력, 집계 및 분석
- (도농업기술원 및 특광역시) 시군센터 집계 및 입력한 자료를 검토 및 보완조사
- (농촌진흥청) AMIS에 입력된 자료검토하여 도원에 보완조사를 요청하며, 조사자료 집계·분석, 자료집 발간

※ 농산물 소득자료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56호('15.11.27)에 의거 공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경지의 실농보상액 산정기준 자료로 활용되므로 조사 및 검토에 정확을 기하여야 함

○ 조사농가선정

- (전국) 작물별 중요도에 따라 목표오차를 정하여 작물별 표본수 결정
- (시도) 도별 재배면적과 소득의 표준편차를 감안하여 전국자료의 표본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별 표본농가를 배정하며, 조사작물 재배면적에 비례한 확률비례추출에 의해 조사시군을 선정하고 표본농가 배정
- (시군) 작물에 따라 단순임의추출 및 유의표본추출로 조사농가를 선정

□ 기대효과

- 농산물소득조사 자료 신뢰성을 제고하여 자료 대표성 확보
- 신뢰성 높은 자료기반 농업경영 연구 및 지도로 농가 경영개선
- 농가 경영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

□ 행정사항

구 분	조사결과 시스템입력 (시·군센터)	경영기록장 전자파일 등 제출 (시·군센터 → 도원)
2021년산 동작물	~2021년 8월 31일까지	~2021년 9월 31일까지
2021년산 하작물	~2022년 2월 28일까지	~2022년 3월 31일까지

※ 제주는 추진시기 별도 운영(사업내용-조사시기 참조)

○ 경영기록장 및 소득조사표 전자파일 제출

- (시군센터) 경영기록장과 소득조사표는 전자파일로 만들고, 소득조사 분석결과(서식 1), 기장조사 및 면접조사 농가현황(서식 2)을 작성하여 도원·특광역센터에 제출하고 경영기록장은 농가에 반납
- (도원·특광역) 시군센터 제출자료를 취합하여 농촌진흥청에 공문 발송
 - * 파일명: 「작물명-시군명-농가명(예:사과-수원시-홍길동)」으로 작성하여 전체파일 압축
 - * 도원 등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경영기록장 또는 농업회계 시스템에서 경영기록(웹, 모바일앱 등)을 작성할 경우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파일 활용 가능

□ 사후관리

- 조사표(원본)은 3년간 자체 보관하고, 제출된 경영기록장 전자파일은 농촌진흥청과 도농업기술원에서 영구보관 및 활용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따르되, 지정통계 중 조사표로 간주
- 통계청에 소득자료를 제출하여 공공활용 증대
 - * 통계DB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통계포털(KOSIS)에 소득조사 자료 전송
- 농업경영정보시스템(AMIS)에 입력된 소득조사 원시자료 유지·관리

【제1호 서식】

<소득분석결과>

구분	작물	수량 (kg)	총수입 (원)	경영비 (원)	소득 (원)	소득률 (%)
전국 조사 작물						
지역 조사 작물						

【제2호 서식】

<경영기록장기장농가현황>

번호	작물	시군센터명	농가명	면적(m ²)
1	사과	수 원	홍길동	1,000
2	사과	화 성	김농가	2,000
3				
4				
∴	∴	∴	∴	∴

<소득조사표면접농가현황>

번호	작물	시군센터명	농가명	면적(m ²)
1	사과	수 원	홍길동	1,000
2	사과	화 성	김농가	2,000
3				
4				
∴				

■ 2021년도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

기 타

실용 농업기술 정보 제공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농촌지도관 안정구	063-238-0971

□ 목 적

- 농업인과 농촌진흥공무원이 필요로 하는 최신실용농업기술을 수요자와 시대 흐름에 맞게 수록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최신농업기술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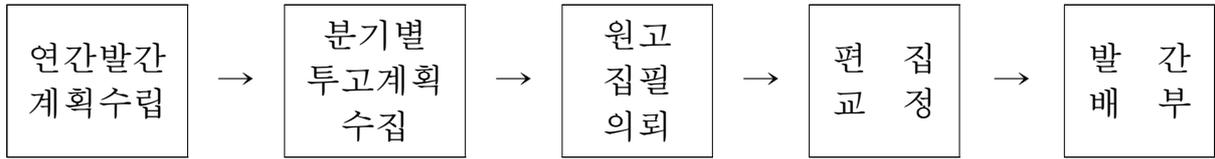
□ 추진방향

- 월간 「농업기술」은 시기별 실용농업기술을 제때 제공하는 맞춤형 정보 제공 및 농업인과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
- 「농업기술 길잡이」는 청을 대표하는 농업기술전문서로서 품목별 최신 실용 기술과 경영정보를 제공하여 선도농업인과 예비농업인에게 제공
- e-book을 통한 신속한 현행화 서비스로 최신 농업기술 제공

□ 사업내용

- 월간 「농업기술」
 - 발간목적 : 농업인과 농촌진흥공무원이 필요로 하는 농업기술과 맞춤형 정보 제공
 - 발간부수 : 연12회 396천부(매월 3.3만부, 전월 말 배부)
 - 발간주기 및 면수 : 월간, 36면 내외(표지 포함)
 - 배부대상 : 농업인(강소농, 품목별거점농가 등), 농촌진흥기관 및 유관기관 등
 - * 지방농촌진흥기관의 배부대상자는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 주소변경
 - 발간내용 : 당면영농기술 제공, 현장 기술지원 및 농촌융복합 사업 관련 내용 소개, 농작업 안전 등

- 발간추진체계



○ 「농업기술길잡이」

- 발간목적: 농업인 및 예비농업인을 위한 품목별 최신농업기술 지침서로 농업인 소득증대 및 표준기술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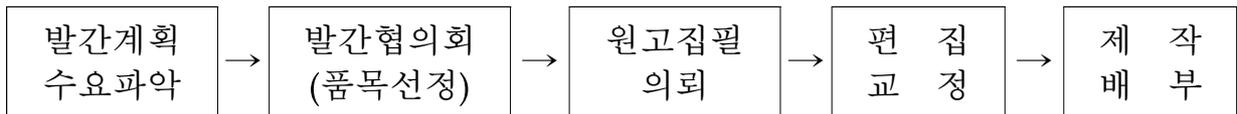
- 신간 및 개정: 현장 수요를 반영

- * 개정본은 e-book으로 발간되며 2~4년 주기 현행화
- * 농업과학도서관 전자책(e-book) 서비스

- 배부대상: 농촌진흥기관(시군센터 각5부), 농과계학교 및 유관기관 등

- * 신간 발행시, 청에서는 1천부만 발간하여 관련기관에 배부하고 그 외는 수요자 부담원칙에 따라 외부출판승인

- 발간추진체계



참 고

「농업기술길잡이」 발간 목록

총160종	63종	기존 책자 중복 및 절판 등으로 번호목록에서 제외
-------	-----	--------------------------------

(1974~2020. 10월 현재)

No	교 본 명	최초 발간	개 정	No	교 본 명	최초 발간	개 정
1	낙농	'74	'77, '92, '03, '13, '14, '16	91	조사료	'98	'05, '11, '13, '17
2	양계	'74	'77, '90, '03, '12, '14, '18	96	양과	'00	'11, '13, '16, '18
3	돼지기르기	'74	'77, '89, '05, '13, '16, '18	97	축산환경과 시설	'00	'13, '14, '15, '16
4	시설원예	'74	'77, '88, '05, '13, '14	98	온주밀감 월동수확	'00	'13
5	사과재배	'74	'77, '88, '96, '03, '13, '16, '18	99	축산기계	'00	'13, '14, '18
6	한우	'74	'76, '93, '01, '07, '13, '16, '18	100	사슴기르기	'00	'13, '14
7	약용작물	'74	'79, '89, '94, '09, '13, '18	103	인삼	'00	'09, '13, '14, '18
9	식용버섯	'74	'77, '80, '10, '13, '18	104	고품질 수박	'01	'12, '14, '18
12	포도	'77	'97, '02, '10, '13, '18, '18	105	참외	'01	'13, '18
13	배	'75	'77, '86, '91, '00, '13, '15, '18	106	토마토	'01	'09, '13, '14, '17, '18
15	양봉	'75	'77, '81, '03, '13	107	오이	'01	'13, '17, '18
16	복숭아	'75	'77, '86, '95, '02, '13, '18	108	선인장 재배	'01	'13, '18
18	유지작물	'75	'77, '99, '10, '13, '14, '15, '16, '17, '18	109	(구-농토배양기술) 가축분뇨처리와 자원화	'01	'07, '13
24	감	'75	'77, '80, '86, '90, '01, '13, '18	110	과원토양관리	'01	'09, '13, '18
28	고구마	'76	'81, '96, '06, '13, '17, '18	111	자두, 매실	'01	'13, '18
31	감자	'77	'93, '03, '12, '14, '15, '16, '18	112	원예산물 수확 후 관리	'01	'13
35	옥수수	'77	'00, '11, '13, '15, '18	114	시설원예 에너지절감기술	'01	'13, '14
40	딸기	'77	'86, '01, '09, '13, '14, '18	115	고추	'01	'08, '13, '14, '17, '18
41	잡초방제기술	'77	'89, '00, '13, '18	116	콩	'01	'12, '14, '15, '16, '17, '18
42	올바른 비료사용법	'78	'02, '13	117	마늘재배	'01	'13, '14, '16, '17, '18
44	밀	'78	'01, '11, '13, '15, '18	118	보리	'01	'13, '18
47	채소 병해충	'79	'89, '99, '12	119	양란	'01	'13, '18
48	양채류	'79	'84, '89, '03, '13, '18	120	장미	'01	'12, '14, '18
56	맥주보리	'82	'12, '14, '18	121	재래 돼지 기르기	'01	'13
59	농산물 저장과 가공	'84	'91, '07, '13	122	새로운 자원작물	'02	'11, '13, '14, '18
60	산채류	'84	'90, '99, '13, '18	124	착색단고추	'02	'13, '14, '18
61	약용버섯	'84	'95, '03, '11, '13, '18	125	시설원예 토양관리	'02	'13, '14
62	과수병해충	'85	'97, '13, '14, '16, '18	126	무	'02	'13, '17, '18
69	기계화영농(이앙기방제기)	'90	'12	127	부추	'02	'13, '18
71	수경재배	'90	'97, '04, '13	128	배추	'02	'13, '14, '17, '18
77	과수시설	'91	'04, '13	129	카네이션	'02	'13
78	(구-농토배양기술) 농경지 토양 관리기술	'92	'13, '15, '17	130	국화	'02	'13, '18
81	과수적지선정기술	'94	'13	131	가지	'02	'13, '18
82	채소의 영양장애	'94	'07, '13	132	가축위생과 질병(소편)	'02	'11, '13
83	관엽식물 I	'94	'07, '13, '18	133	나리	'02	'13, '18
85	구근화훼 (구-구근식물재배기술)	'95	'13, '14, '18	134	말	'03	'13
87	초화류	'96	'13, '18	135	가축위생과 질병(돼지)	'03	'12, '14
89	퇴비제조와 이용	'97	'02, '13, '17	137	생활원예	'03	'13
90	숙근화훼류	'98	'13, '18	138	우리꽃 기르기	'03	'13

No	교 본 명	최초 발간	개 정	No	교 본 명	최초 발간	개 정
139	관상화목류 I	'03	'13 '18	181	누에	'11	'18
140	엽채류	'03	'13, '17 '18	182	전통발효식품	'11	'13 '18
141	호박	'04	'13, '17 '18	183	심비디움	'11	'13 '18
142	논농사 기계	'04	'13	184	농업경영 마케팅	'12	'14
143	밭농사 기계	'04	'13	185	새로운 아열대 및 열대과수	'12	'14
144	살구, 체리	'04	'13, '18	186	오리	'12	'14
145	관상화목류 II	'04	'13 '18	187	전통지식자원	'12	'14, '15, '18
146	부지화시설재배	'04	'13	188	한우 섬유질배합사료 (TMR) 제조기술	'13	
147	가축위생과 질병(닭)	'04	'13	189	고품질 감귤 생산지침	'13	
148	가축인공수정과 수정란이식	'05	'13	190	뽕나무·오디	'13	'18
149	두류	'05	'13, '15 '18	191	식물공장	'13	'14, '18
150	생강	'05		192	조·기장	'13	'16 '18
151	멜론	'05	'13, '14 '18	193	농산물 우수관리, GAP	'14	'18 '18
152	파	'06	'13 '18	194	당귀	'14	
153	당근	'06	'13 '18	195	곤충산업	'14	
154	가축위생과 질병 (기타 가축 편)	'06	'13	196	수수	'14	'16 '18
155	원예산물 저온 유통	'06	'14	197	오미자	'14	'18
156	농업기계 안전이용기술	'06	'13	198	우리가 알아야 할 농업유산	'14	'15, '16, '18
157	쌀 품질 고급화 기술	'06	'13, '15, '17 '18	199	잎들깨	'14	'18
159	흑염소 기르기	'07	'13, '14	200	철쭉	'14	'18
160	상추	'07	'13, '17 '18	201	칼라	'14	'18
161	차	'07	'13 '18	202	팥	'14	'15, '16 '18
162	농산물 수확 후 처리기계	'07	'13, '14	203	기후변화 대응 - 식량 작물 안정 생산 기술	'15	'18
163	관엽식물 II	'08	'13 '18	204	시금치	'15	'18
164	블루베리	'08	'13, '15, '18	205	유기농 쌀 생산	'15	'18
165	프리지어	'08	'13 '18	206	정원과 도시녹화	'15	'17
166	조사료 생산기계	'08	'13	207	황기	'15	
167	유채	'08	'13 '18	208	식용곤충 메뉴개발 및 사육기술 표준화	'16	
168	농업시설기상재해 경감기술	'08	'13	209	농작업 유해요인의 노출평가와 개선	'16	
169	벼 직파 재배기술	'09	'13 '18	210	경관작물	'16	
170	참다래	'09	'13, '14, '17	211	아마란스와 퀴노아	'16	'18
171	화분매개곤충 뒤영벌	'09	'13	212	감초	'16	'17 '18
172	건강한 생활을 위한 화훼장식	'09	'13, '16, '17	213	주요 원예·특용작물 재배력	'16	
173	씩채소, 어린잎 채소	'09	'13	214	무화과	'17	
174	귀농귀촌	'10	'14	215	아콘	'17	
175	헤어리베치	'10	'13, '15	216	메밀	'18	
176	유산양	'10	'13	217	여주(쓴오이)	'18	
177	망고	'10	'13	218	삼주(백출)	'18	
178	도시농업	'10	'13, '16, '17	219	올리브	'18	
179	육우	'10	'13	220	주민이 함께 가꾸는 농촌마을	'19	
180	애완학습곤충	'11		221	농약 바르게 이해하기	'19	

농작물 생육조사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팀, 기술보급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팀	농촌지도관 강석주	063-238-1496
		농촌지도사 노석원	063-238-1497
		농촌지도관 최윤희	063-238-1499
	기술보급과	농촌지도관 고인배	063-238-0976
		농촌지도사 박환규	063-238-0977
		농촌지도관 김기형	063-238-0981
		농촌지도사 배선아	063-238-0987

□ 목적

- 벼, 밭작물, 채소, 과수 등 주요 작목별 생육조사포를 주산단지 중심으로 선정하고 주기적으로 농작물의 생육상황을 조사하여 병해충 방제, 시비 등 기술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 자료로 활용
- 농산물 생육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수급조절 및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추진방향

- 각 시군 주산단지 중심으로 일반 포장이나 농업기술센터 보유포장 중 적합한 곳을 생육조사 포장으로 선정하여 시기별로 생육상황을 조사하여 현장기술 지원 및 정책지원 자료로 활용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2조 제3항 마호
 -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조사
- 농촌진흥청 훈령 제845호(2010. 12. 28)
 - 보리, 콩 등 14개 작목의 생육조사

□ 사업규모

○ 사업비 : 636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개소당 30만원

○ 규모 : 개소당 10~50a내외(시군단위 주산단지 포장)

* 병해충 관찰포 운영 예산과 동일

□ 사업량

○ 작목별 설치계획 : 벼 690, 밭작물 204, 채소 671, 과수 555

* 벼, 밭작물(보리, 콩), 채소(고랭지무·배추, 가을무·배추, 고추, 마늘, 양파), 과수(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단위 : 개소, 천원)

구분	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사업량	2,120개소	3	7	15	15	8	16	13
사업비	636,000	900	2,100	4,500	4,500	2,400	4,800	3,900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량	170	219	173	247	250	358	355	247	24
사업비	51,000	65,700	51,900	74,100	75,000	107,400	106,500	74,100	7,200

□ 사업대상

○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농가 포장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운영비(농가보상비, 인건비, 재료비, 표찰 등) 등 지원

□ 운영요령

1 벼

○ 사업량 : 690개소

구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설치 시군수	136	16	14	9	14	13	21	22	18	1	1	3	1	1	1	1
관찰포 개소수	690	75	45	42	99	87	126	96	81	3	3	15	6	3	6	3

○ 사업내용

- 벼 병해충 관찰포와 동일한 포장을 벼 생육조사 포장으로 활용하여 시기별 생육상황을 조사
- 조사결과 자체 활용 및 전산 입력, 전국 생육상황 추정 자료로 활용

○ 세부 추진요령

① 조사포장선정

- 생육관찰포장은 일반 농가포장이나 농업기술센터 포장 중 조사목적에 적합한 포장을 선정하여 활용
-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벼 재배면적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가장 재배가 많이 되고 있는 품종 재배포장으로 지력이 중 정도이고, 표준 경종방법에 의해 재배하고 있는 포장을 생육조사 포장으로 선정
- 산간지, 중간지, 평야지의 대표적인 들에 생육조사 포장을 선정하고 지대별 선정 개소 수는 시군의 벼 재배면적 비율에 따라 선정하되, 조사 필지는 최소 면적이 1,000m² 이상 되는 필지를 선정
- 시군별로 조사지점을 관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출장소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선정지역이 생육상황을 대표할 수 없는 지점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책임 하에 적지를 선정

<재배면적에 따른 조사포장 선정기준>

재배면적	5,000ha미만	5,001~11,000	11,001~
개 소 수	3개소	6	9

② 조사방법

- 생육조사 기준일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작물 생육조사의 날”로 정하여 조사의 효율을 높이도록 하고 조사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을 기준으로 조사 실시

③ 조사기준 : 농업시험연구 조사기준에 의거 조사

④ 결과활용

- 생육조사결과 분석된 자료는 작물별 재배기술 지도와 재해대책 관리기술 자료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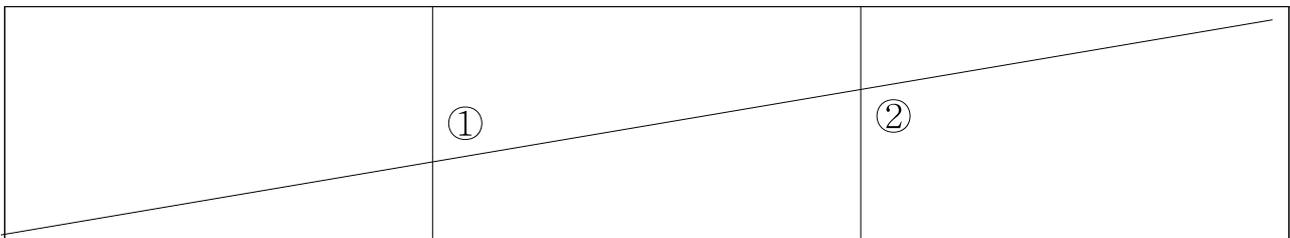
⑤ 조사지점 선정

- 조사필지를 길이 방향으로 3등분 한 선과 길이방향으로 대각선을 그어 교차되는 2개 지점(① ②)을 조사 기준점으로 선정

* 1필지에 2개 지점을 조사하여 평균함

- 선정된 필지의 조사기준 포기여 표시마대를 설치하고 연중 동일 지점에서 조사 실시

<조사지점 선정방법>



⑥ 조사시기 및 항목

- 조사시기 : 6. 1~9. 16(매월 1일, 16일 총 8회 조사)
- 기상재해 등에 의하여 유실, 매몰 등 조사 불가능 필지는 서면보고 후 조사를 하지 아니함

⑦ 조사결과 전산입력

- 생육상황 조사결과는 현장에서 조사하여 조사한 결과를 국가병해충관리 시스템(<http://ncpms.rda.go.kr>)에 직접 입력
- 각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센터에서는 생육상황 홈페이지 입력내용 확인 후 오류 정정하여 정보의 정확도 향상에 노력하여야 함

<시기별 조사항목>

시 기	조 사 항 목
6. 1	m ² 당 주수(m ² 당 입모수), 초장, 주당경수(m ² 당 경수)
6. 16	초장, 주당(m ² 당) 경수
7. 1	초장, 주당(m ² 당) 경수
7. 16	초장, 주당(m ² 당) 경수, 조생종출수예정일
8. 1	출수기(예정일), 조생종의 주당(m ² 당)수수·수당(m ² 당)총립수
8. 16	출수기(출수예정일), 주당(m ² 당)수수, 수당(m ² 당)총립수
9. 1	주당(m ² 당)수수, 조·중생종수당(m ² 당)완전립수
9. 16	조·중·만생종입실립수(m ² 당), 등숙률, 현미천립중, 현백률

2 보리·콩

○ 사업량 : 204개소(보리 110개소, 콩 94개소)

작 목	시 기	시·군 수	관찰포 개소수	설 치 구 분
2작목	-	102	204	-
보리	3~6월	55	110	주산지 시군당 2개소
콩	6~9월	47	94	"

○ 사업내용

- 농가포장에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설치, 생육상황 및 병해충 발생 상황을 시기별 조사
- 해당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생육상황 및 병해충 발생상황을 시기별로 정확 하게 조사하여 결과를 시스템에 신속히 입력하고 집계 분석한 후 시비, 방제대책 마련 등 현장기술지원 자료로 활용
- 시기별 발작물(보리, 콩) 생육상황을 분석하여 병해충 방제, 비료시용 등 기술 지도 자료로 활용

○ 세부 추진요령

① 조사방법

- 생육조사 기준일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작물 생육조사의 날”로 정하여 조사의 효율을 높이도록 하고 조사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을 기준으로 조사 실시

② 조사기준

- 「농작물생육조사 매뉴얼」 및 「농업시험연구 조사기준」에 따라 생육 조사 실시

③ 작목별 생육조사 시기와 시군수 및 설치구분

작 목	시 기	시군수	설치개소수	설 치 구 분
보리	3~6월	55	110	적과, 만과 1개소
콩	6~9월	47	94	1모작 재배 47개 시군

④ 작목별 조사시기 및 항목

<보리>

- 조사시기 : 3.1일~6.16일(조사횟수 5회)

시 기	항 목
3. 1	초장, 경수, 고엽률, 고사경률
3.16	초장, 경수
4.16	초장, 경수
5.16	출수기, 간장, 이삭수, 영화수
6.16	성숙기, 이삭당알수, 천립중, 예상수량(입수계산)

<콩>

- 조사시기 : 6.16~9.16일(조사횟수 6회)

시 기	항 목
7. 1	초장, 잎수, 개체수/m ²
7.16	초장, 잎수, 가지수/개체, 개체수/m ² (2모작)
8. 1	초장, 가지수/개체, 잎수, 개화기
8.16	초장, 가지수/개체, 꼬투리수/개체, 개화기
9. 1	경장, 꼬투리수/개체, 알수/꼬투리
9.16	꼬투리수/개체, 알수/꼬투리

⑤ 조사결과 전산입력

- 생육상황 조사결과는 현장에서 조사하여 조사한 결과를 국가병해충관리 시스템(<http://ncpms.rda.go.kr>)에 직접 입력
- 각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센터에서는 생육상황 홈페이지 입력내용 확인 후 오류 정정하여 정보의 정확도 향상에 노력하여야 함

3 채소

○ 사업량 : 193개소

- 마늘 33, 양파 23, 고추 71, 고랭지배추 5, 고랭지무 4, 가을배추 29, 가을무 28

○ 조사포장선정

- 농작물 생육조사 대상은 '병해충 관찰포 운영' 대상지와 동일하게 선정

- 관찰포는 개소당 지번단위로 각각 입력함

○ 작목별 생육조사 시기와 시군수 및 설치구분

작 목	시 기	시군수	관찰포 개소수	조사횟수	설 치 구 분
7작목	-	193	671	39	
마늘	3~5월	33	66	6	주산지 시군당 2개소
양파		23	46	6	"
고추	6~9월	71	355	7	주산지 시군당 5개소
고랭지배추	6~9월	5	50	6	주산지 시군당 10개소
고랭지무		4	40	6	"
가을배추	9~10월	29	58	4	주산지 시군당 2개소
가을무		28	56	4	"

○ 작목별 조사시기 및 항목

〈마늘·양파〉

- 조사시기 : 3. 1. ~ 5. 16.(6회)

작 목	시 기	조 사 항 목
난지형마늘 양 파	3.1	3.3m ² 당 포기수, 초장, 엽수, 주요병해충 발생현황
난지형마늘 한지형마늘 양 파	3.16, 4.1, 4.16, 5.1	3.3m ² 당 포기수, 초장, 엽수, 구직경, 주요병해충 발생현황
	5.16	3.3m ² 당 포기수, 초장, 엽수, 구직경, 예상수량, 주요병해충 발생현황

〈고추〉

- 조사시기 : 6. 16. ~ 9. 16.(7회)

시 기	조 사 항 목
6.16, 7.1, 7.16, 8.1, 8.16, 9.1	3.3㎡당 포기수, 초장, 포기당착과수, 주요병해충
9.16	3.3㎡당 포기수, 초장, 포기당착과수, 예상수량, 주요병해충

〈고랭지배추·무〉

- 조사시기 : 6. 16. ~ 9. 1.(6회)

시 기	조 사 항 목
6.16, 7.1, 7.16, 8.1, 8.16	3.3㎡당포기수, 초장, 엽수, 주요병해충
9.1	3.3㎡당포기수, 초장, 엽수, 예상수량, 주요병해충

〈가을배추·무〉

- 조사시기 : 9. 1. ~ 10. 16.(4회)

시 기	조 사 항 목
9.1, 9.16, 10.1	3.3㎡당포기수, 초장, 엽수, 주요병해충
10.16	3.3㎡당포기수, 초장, 엽수, 예상수량, 주요병해충

※ 「농작물 생육조사 표준매뉴얼」 참고 : 농업과학도서관 다운로드

○ 조사결과 보고

- 보고시기 : 2일 이내(조사당일 포함)
- 보고요령 : 국가병해충관리시스템(<http://ncpms.rda.go.kr>)에 생육조사 결과 자료 입력
- 생육조사 기준일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작물 생육조사의 날”로 정하여 조사의 효율을 높이도록 하고 조사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을 기준으로 조사 실시

참고

작목별 생육조사 해당 시군

구분	마늘	양파	고추	고랭지배추	고랭지무	가을배추	가을무
계	33	23	71	5	4	29	28
경기	-	-	화성, 이천, 안성, 여주, 양평	-	-	화성, 평택	화성
강원	삼척(한지)	-	원주,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강릉, 태백 삼척, 평창 정선	강릉, 홍천 평창, 정선	춘천, 영월 평창	춘천, 영월 평창
충북	제천(한지) 증평(한지) 단양(한지)	-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① (6.16부터 조사 시작) - 5.20파종 및 정식 ② (7.16부터 조사 시작) - 6.20파종 및 정식 ③ (8.16부터 조사 시작) - 7.20파종 및 정식	-	청주	청주
충남	태안(한지)	-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당진, 청양, 예산, 태안	-	-	보령, 아산 서산, 당진 홍성, 태안	보령, 아산 서산, 당진 홍성, 태안
전북	완주 부안	부안	정읍,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	-	정읍, 김제 완주, 고창 부안	정읍, 김제 완주, 고창 부안
전남	여수, 나주 고흥, 강진 해남, 무안 함평, 완도 신안	여수, 고흥 해남, 무안 함평, 신안	여수, 순천, 나주, 화순, 강진, 해남, 무안, 함평, 영광, 진도, 신안	-	-	나주,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진도	나주,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진도
경북	경주(한지) 안동(한지) 영천 군위(한지) 의성(한지) 예천(한지) 울진(한지)	김천, 안동 영천, 군위 의성, 청도 고령, 예천	포항,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예천, 봉화, 울진	-	-	안동, 구미 영덕	안동, 구미 영덕
경남	통영, 사천 거제, 함안 창녕, 남해 하동, 산청 합천	거제, 의령 창녕,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창녕, 거창	-	-	김해 함안	김해 함안
대구	달성	달성	-	-	-	-	-
광주	-	-	-	-	-	광주	광주

※ 마늘은 한지형(11시군)과 난지형(23시군) 구분하여 조사

4 과수

- 사업량 : 111시군 555개소(주산지 시군당 관찰포 5개소)
- 사과 25, 배 23, 복숭아 21, 포도 19, 단감 19, 감귤 4

도 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계	111	10	5	10	11	11	17	21	16	4	1	1	2	2
사과	25	2	2	4	3	2	2	8	2	-	-	-	-	-
배	23	3	1	1	4	4	3	2	3	-	-	-	1	1
포도	21	2	2	3	1	3	2	5	2	-	-	-	-	1
복숭아	19	3	-	2	3	2	2	4	2	-	-	1	-	-
단감	19	-	-	-	-	-	8	2	7	-	1	-	1	-
감귤	4	-	-	-	-	-	-	-	-	4	-	-	-	-

○ 사업내용

- 해당시군의 평균적인 수세를 유지하는 과원을 생육조사 포장으로 선정하여 시기별 생육상황을 조사
- 조사결과 자체 활용 및 전산 입력, 전국 생육상황 추정 자료로 활용

○ 세부 추진요령

① 조사포장선정

- 일반 농가포장이나 농업기술센터 보유 포장 가운데 조사목적에 적합한 포장을 선정하여 활용
-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주산단지 또는 주 재배지역의 재배면적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생육조사 포장을 선정하되, 표준이 되는 경종방법에 의해 재배되고 지력이 중간정도인 포장 선정

② 조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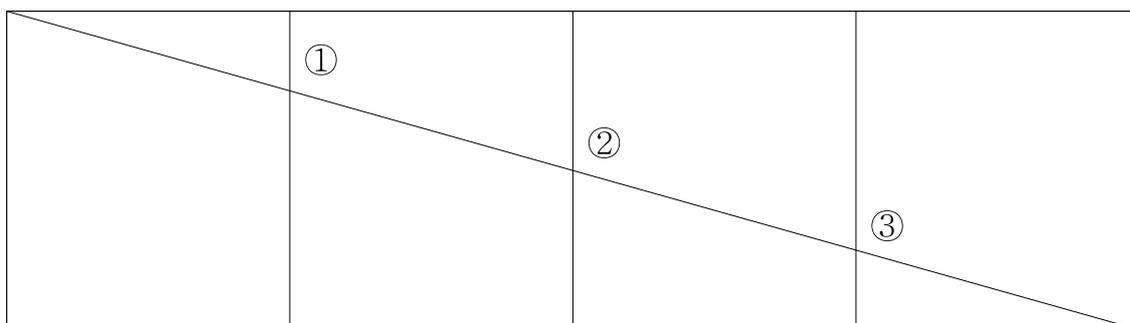
- 개화상황 조사
 - 꽃이 나무 전체의 70~80% 개화된 만개기 때 조사
 - 본년 상황을 전년과 비교하여 조사
 - * 양호 : 작황이 좋을 때(전년 대비 100% 이상)
 - * 보통 : 작황이 비슷할 때(전년 대비 80~100%)
 - * 불량 : 작황이 많이 떨어질 때(전년 대비 80% 미만)
 - * 평년은 5년간 최상값과 최하값을 제외한 평균값

- 착과상황 조사

- 조사시기 : 최종 적과 후 실제 착과량을 조사
- 재배농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달관조사를 겸하여 조사
 - * 양호 : 작황이 좋을 때(전년 대비 100% 이상)
 - * 보통 : 작황이 비슷할 때(전년 대비 80~100%)
 - * 불량 : 작황이 많이 떨어질 때(전년 대비 80% 미만)
 - * 평년은 5년간 최상값과 최하값을 제외한 평균값

- 예상생산량 조사

- 과원 및 나무 선정
- 표준재배법으로 관리되는 과원 선정
- 선정된 과원 4등분 후 대각선으로 만나는 3개 지점 선정
- 선정된 3개 지점에서 착과수 조사



* 선정된 나무의 생육이 현저히 불량하면 평균적인 나무로 변경 조사

- 예상생산량은 착과수를 조사하여 산출
- 예상생산량 = 주당 착과수 × 10a당 주수 × 평균 과중

* 과종 및 품종별 평균과중

- 사과 : 후지(300g), 홍로(300) - 배 : 신고(550), 원황(560), 추황배(500)
- 복숭아 : 유명(300g), 백도(240), 황도(310)
- 단감 : 부유(200g), 상서조생(240)
- 포도 : 캠벨얼리(400g), 거봉(500) - 감귤 : 온주밀감(90g), 한라봉(320)

③ 조사보고

- 조사시기

과 종 (시군수)	생육상황			조사 구분
	개화상황	착과상황	생산예상량	
사 과 (25)	4월 중하순	6월 상순	7월 상순	시군당 5개소
배 (23)	4월 상하순	6월 상순	7월 상순	”
복숭아 (21)	4월 상중순	6월 상순	6월 하순	”
포 도 (19)	6월 상순	6월 중순	7월 상순	”
단 감 (19)	5월 하순	6월 하순	7월 하순	”
감 꺾 (4)	5월 하순	7월 하순	9월 상순	”

- 시기별 조사항목(개화상황 조사 선정포장을 생육상황별 조사)

시 기	조 사 항 목
개화상황	조사 농가수, 10a당 나무주수(금년, 전년, 평년), 최초개화일, 만개일, 전년대비 만개기(-10~+10), 주당 총화총수(금년, 전년, 평년), 개화상황(양호, 보통, 불량)
착과상황	주당 착과수(금년, 전년, 평년), 착과상황(양호, 보통, 불량)
생산예상량	주당 최종착과수(금년, 전년, 평년), 과당 평균무게(금년, 전년, 평년), 10a당 생산예상량(금년, 전년, 평년), 평균당도(금년, 전년, 평년)

- 조사품종

과 종	품 종
사 과	후지, 홍로
배	신고, 원황, 추황배
포 도	캠벨얼리, 거봉
복숭아	유명, 백도, 황도
단 감	부유, 상서조생
감 꺾	온주밀감, 한라봉

- 보고시기 : 2일 이내(조사당일 포함)

- 보고요령 : 국가병해충관리시스템(<http://ncpms.rda.go.kr>)에 생육조사 결과 자료 입력

참고

과종별 생육조사 해당 시군

도 별	사 과	배	복숭아	포 도	단 감	감 귤
계	25	23	21	19	19	4
경 기 (10)	가 포 평천	평택 안양주	이천 천주	안성 화성평	-	-
강 원 (5)	춘영 춘월	원주	원주	-	-	-
충 북 (10)	충주 충주영보	청주	음성 음성충	옥천 천동	-	-
충 남 (11)	예산 산진산	천안 안산산	공주	천안 안령산	-	-
전 북 (11)	정무 읍주	완주 창제산	전주 전실원	남원 원제	-	-
전 남 (17)	곡성 성성	나주 주천암	순천 천순	담양 양성	순창 진안, 광양, 담양, 구례, 장성, 양성	-
경 북 (21)	안동, 영주, 영천, 의성, 의령, 군위, 청송, 포항	상주 주주	청경영의 김	도산, 덕성, 천주	경주 주곡	-
경 남 (16)	거밀 창양	진해산 주동청	진해 주녕	함안 안창	창원, 진해, 김해, 밀양, 창원, 진해, 함안	-
제 주 (4)	-	-	-	-	-	제주 서귀포 서동부
광 주 (1)	-	-	-	-	광주	-
대 전 (1)	-	-	-	대전	-	-
울 산 (2)	-	울산	-	-	울산	-
세 종 (2)	-	세종	세종	-	-	-

영농종합상황실 운영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농촌지도관 김쌍수	063-238-1051
		농촌지도사 고창호	063-238-1052
		공업주사보 박명일	063-238-1054

□ 목 적

- 상시화된 자연재해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농업피해 최소화 및 농산물 안정생산·공급

□ 추진방향

- 영농현장의 신속한 정보 수집·분석을 통한 현안사항 조기대응으로 농축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립
- 성공적인 농정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의 공유 및 신속대응체제 구축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2조 제3호
-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 지도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제2호
- 한해·수해·풍해·냉해·우박·서리·조해·설해·동해·병해충 및 기타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피해의 최소화
- 농촌진흥청훈령 제1255호(농촌진흥청 영농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규정)

□ 사업대상

- 농촌진흥청, 각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 운영체계

- 농촌지원국장을 '상황실장'으로 농촌지원국 각 과 직원으로 구성
 - * 별도 구성체계 없음

□ 운 영

- 기 간 : 연 중
- 근무장소 : 영농종합상황실(606호)
- 근무대상 : 농촌지원국 각 과 직원
- 근무시간 : 평일(18:00~22:00, 익일 07:00~09:00), 휴일(09:00~18:00)
- 주요임무 : 일일기상 및 당면영농상황 보고(옹달샘에 등록)
 - 기상정보 수집 및 확산
 - 일일기상 및 영농상황 작성
 - * 기상청 기상정보, 행정안전부·농식품부 재해 및 영농상황 등
 - 옹달샘(알림마당-오늘의 영농상황 게시판)과 농촌진흥기관 정보공유시스템(당면영농정보 게시판)에 보고자료 등록
 - 근무일지 작성 및 근무상황 인수·인계(농업기상재해팀)
- (재해 우려·발생 시) 재해대책상황실 별도 편성·운영
 - * 운영지침 : 풍수해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농촌진흥청)

□ 농작물 재해예방 관리기술정보

- 기 간 : 연 중
- 시 기 : 월1회(1월~12월)
- 내 용 : 월중 농작물 재해예방관리 기술

□ 기대효과

-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지원

【제1호 서식】

 농촌진흥청	<h1 style="margin: 0;">일일 기상 및 영농상황</h1> <p style="margin: 0;">- 2000. . . () -</p>	 영농종합상황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1 기상상황 </div> <p>○ 오늘(8. 22.) : 전국 흐리고 비(강원산지 비 또는 눈) (최고 7~17℃)</p> <p style="margin-left: 20px;">* 미세먼지 : 전 권역이 '보통'으로 예상됨</p> <p><예상강수> (5~6일) 남해안·제주도 : 20~60mm, 그 밖 : 10~20</p> <p style="margin-left: 20px;">* 강수량(5.15.~18. 07시) 이천 30mm, 총주 25</p>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div style="background-color: yellow;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기상특보</div> </div> <p><주의보/경보></p> <p>※ 피해상황(행안부, 잠정) : 농업분야 피해없음</p> <p style="margin-left: 20px;">* 우리청 피해상황 : 피해없음(07시현재, 당직실) 확인(내선0005)</p> <p>○ 내일(8. 23.) : 전국 흐리고 비, 새벽 서울·경기도부터 그치기 시작, 낮에 대부분 그침 (최저 4~13℃, 최고 9~16℃)</p> <p>○ 중기전망(8. 25.~7. 2.) : 11일은 서울·경기도와 강원영서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가끔 구름이 많겠음</p> <p style="margin-left: 20px;">* 기온은 평년(최저: 5~13℃, 최고: 18~24℃)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음, 강수량은 평년(1~8mm)보다 적겠으나, 서울·경기도와 강원영서는 비슷</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2 영농상황 </div> <p>□ 주간 이슈품목 중점분석 - 건고추(8월 3주, aT)</p> <p>○ (생산전망) `19년 건고추 생산량 전년 대비 36% 증가</p> <p>○ (재배면적) `19년 재배의향면적은 전년 대비 3% 증가</p> <p>○ (가격동향) 8월 상순 도매가격은 11,826원/600g</p> <p style="margin-left: 20px;">* ('17.6) 5,735원/600g → ('18.5) 11,500 → ('18.6상) 11,826, *(평년 6월) 7,236</p>		

가축질병방역대책상황실 운영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농촌지도관 박현경 농촌지도사 이병철	063-238-1041 063-238-10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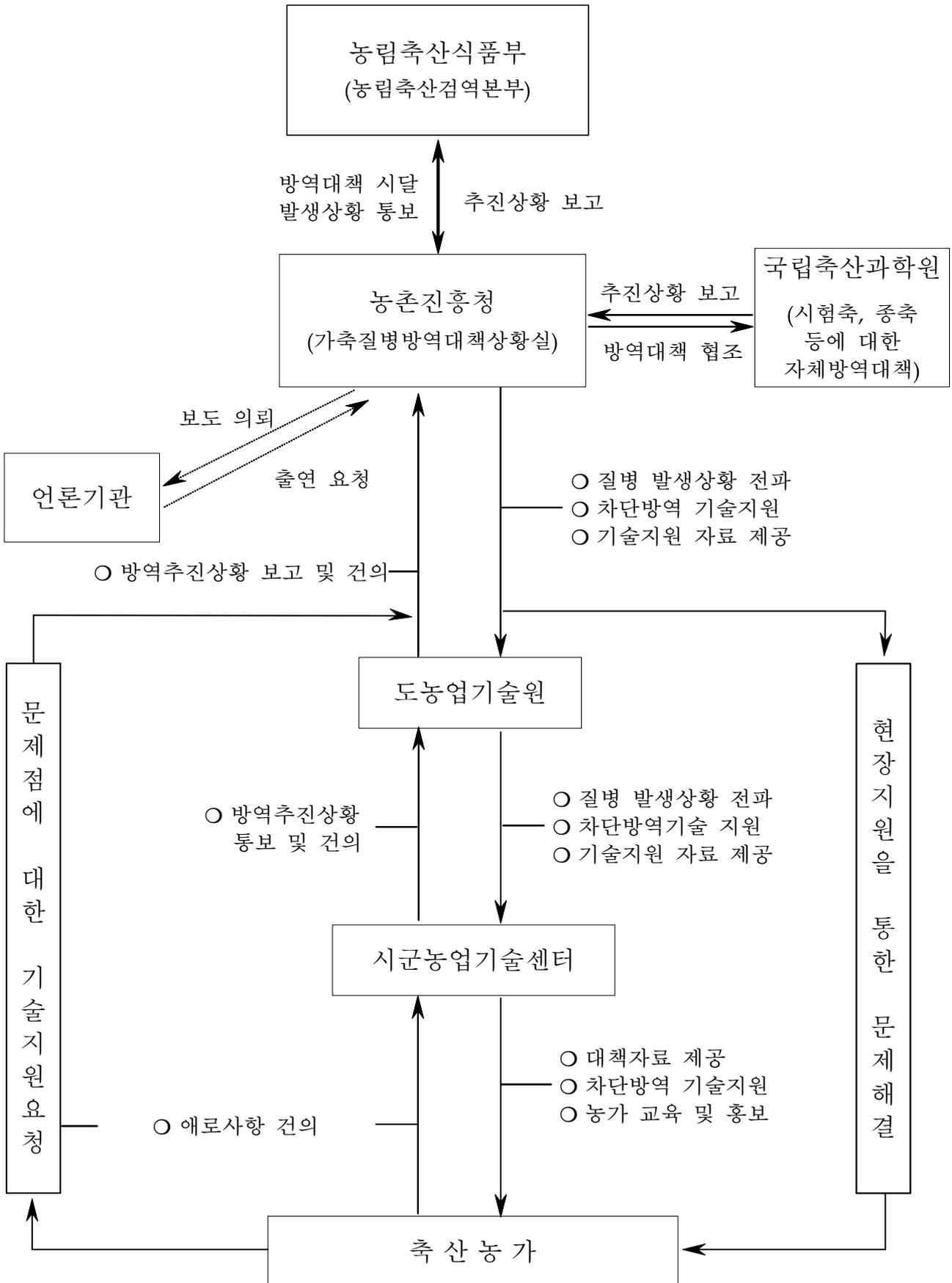
□ 목 적

- 악성가축전염병 확산방지 기여를 위한 맞춤형 가축방역 교육 및 홍보
- 지방농촌진흥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차단방역 교육 및 방역활동 지원

□ 국가 위기경보 수준

구분	판단 기준	비고
관심 (Blue)	○ 주변국 발생 시(평시)	징후활동 감시
주의 (Yellow)	○ 구제역 - 의사환축 발생 - 백신 접종 유형의 환축 발생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 겨울철새 이동/유입 시기(당해 연도 10월~다음해 2월, 필요시 연장) - 농장 의사환축 발생시 - 평시(3~9월) 농장 발생시 ○ 아프리카돼지열병 : 국내 의사환축 발생 ○ 신종가축질병 : 국내 원인불명의 의사환축 발생	협조체제 가동
경계 (Orange)	○ 구제역 - 백신 접종 유형이 타 시·도 발생 ○ 신종가축질병 - 국내 신종가축질병 발생	대응태세 강화
심각 (Red)	○ 구제역 - 백신 접종 유형이 여러 시·도 발생 및 전국 확산 우려시 - 백신 미접종 유형 발생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 겨울철새 이동/유입 시기(당해 연도 10월~다음해 2월, 필요시 연장)에 농장 발생시 - 평시(3~9월) 인접·타 지역 전파 등 전국 확산 우려시 * 인접하지 않은 3개 지역(시·군) 이상에서 발생시 ○ 아프리카돼지열병 : 국내 발생시 ○ 신종 가축질병 : 여러 지역발생 및 전국 확산 우려시	총력대응

□ ASF · 구제역 · AI 발생 위기관리 업무수행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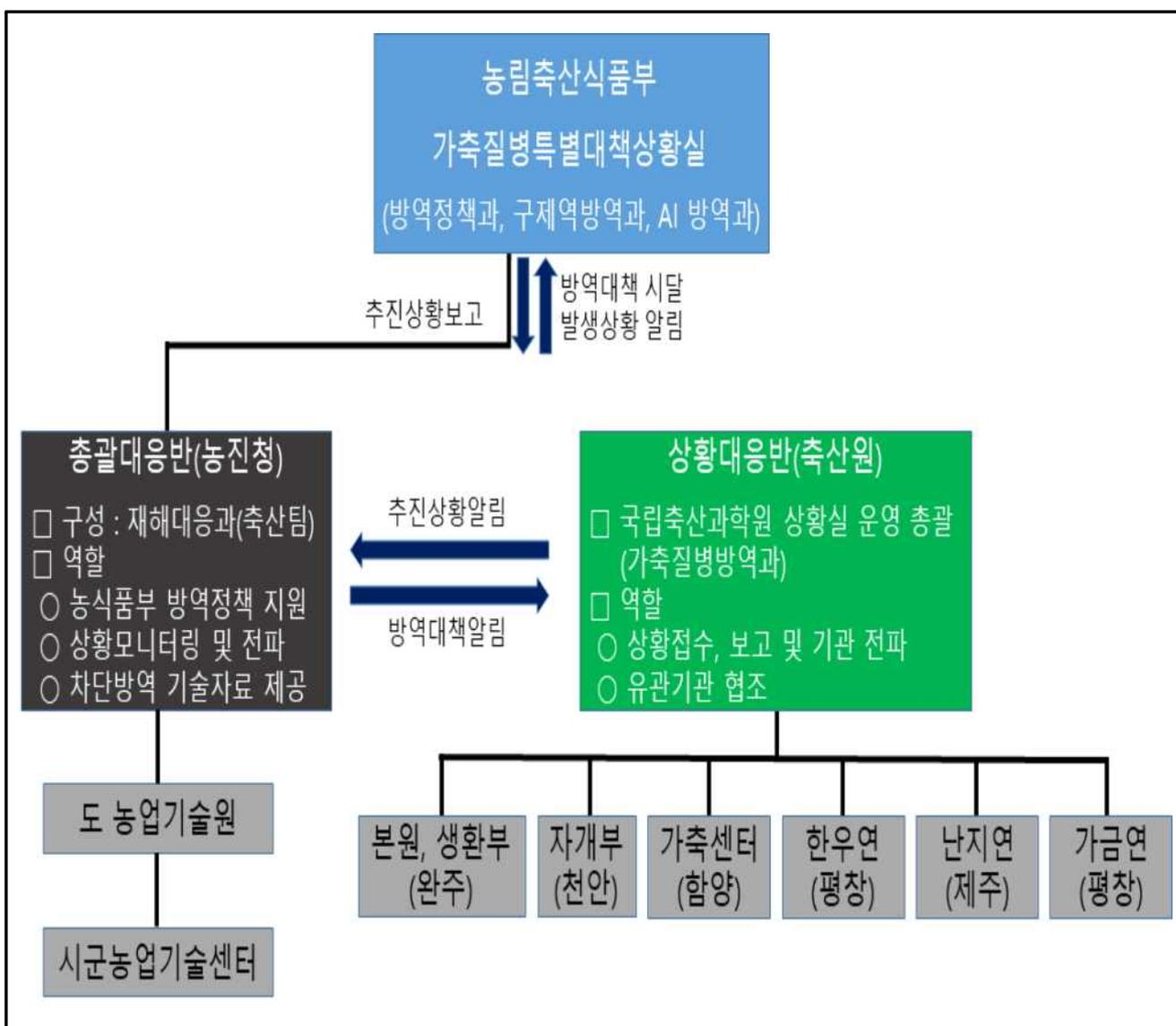
□ 특별대책상황실 구성 운영(안)

○ 심각단계는 특별대책상황실장을 농촌지원국장으로 격상하고 실무적인 총괄대응반장은 재해대응과장으로 한다.

* 평상 시 축산팀에서 상시대응 및 비상연락망 유지

○ 그 외 긴급사항(인력지원, 중앙점검반 참여 등) 발생 시 재해대응과(축산팀) 상황대책회의를 통하여 별도 지침 마련 시행

□ ASF · 구제역 · AI 특별대책상황실 업무수행 체계도



* 심각단계 발생 시 특별대책 상황실 운영에 따른 비상근무명령 별도수립

□ 기관별 임무 및 역할

<농촌진흥청>

- ASF·구제역·AI 발생상황 전파 및 상황보고
 - 차단방역 강화 알림 및 SNS활용 신속한 발생상황 전파
- 농림축산식품부 등 유관기관 업무협력 및 협조체제 유지
- 상황 발생 시 비상근무 및 상황대처 강화 조치
- 축산농가 교육 및 홍보지도 강화를 위한 기술 대응자료 제공
 - * 예방접종, 소독실시, 차단방역 실시 등 관련 리플릿 제공
- 국립축산과학원 종축보호를 위한 차단방역 조치 사항 등 협조

<국립축산과학원>

- 축산원 보유 국가유전자원 및 시험축 안전관리
 - * 지역별 시험장 종축 예찰·차단방역·종축분산 등
- 자체 가축질병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의한 상황실 운영
 - * 자체 위기경보 심각 단계 의사 결정
- ASF·구제역·HPAI 국내·외 동향 파악 및 기술적 대응자료 제공
- 가축사육시설 및 원내 방역추진 상황 점검·확인

<지방농촌진흥기관>

-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
 - * 위기 상황에 따른 비상연락 체계 구축 및 비상상황 유지
- 가축질병발생상황 신속 전파 및 농가 차단방역 SMS 발송 등 홍보
- 축산신기술 시범사업 보급 시 차단방역 기술지원
- 평상시 품목 연구회 모임, 관련 협회 연계 차단방역 교육·홍보 강화
 - 농가 차단방역 생활화를 위한 수시 교육 협조

농업현장 민원처리 기술지원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	농촌지도관 정동완	063-238-0593
		행정사무관 이정현	063-238-0590
		농업연구사 고희철	063-238-0591

□ 목 적

- 농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영농애로 사항을 신속·정확히 해결하여 농업의 경쟁력과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

□ 근 거

- 「농촌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72호, 2019. 7. 9.) 제2조

□ 현장 기술지원 대상

- 농업인이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한 민원 중에서 자체 해결이 어려워 기술지원을 요청한 경우
- 국민신문고, 전화, 서신 및 방문을 통해 신청된 민원 중에서 현장 확인, 조사, 진단 등의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한국소비자원, 환경부 등 전문기관에서 기술지원을 요청한 경우
 - 한국소비자원 : 농약, 비료, 농기계 등 농자재에 의한 피해구제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공사장 먼지, 건물에 의한 일조부족 피해, 폐기물, 수질 오염, 대기오염 등에 의한 작물피해 조정
 - 국립종자원 : 종자유통, 유전자 분석, 품종등록 등 종묘 분쟁
 - ※ 분쟁 관련 민원(농약, 수질오염, 종자 등)은 해당 전문기관(한국소비자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종자원 등)에 구제 신청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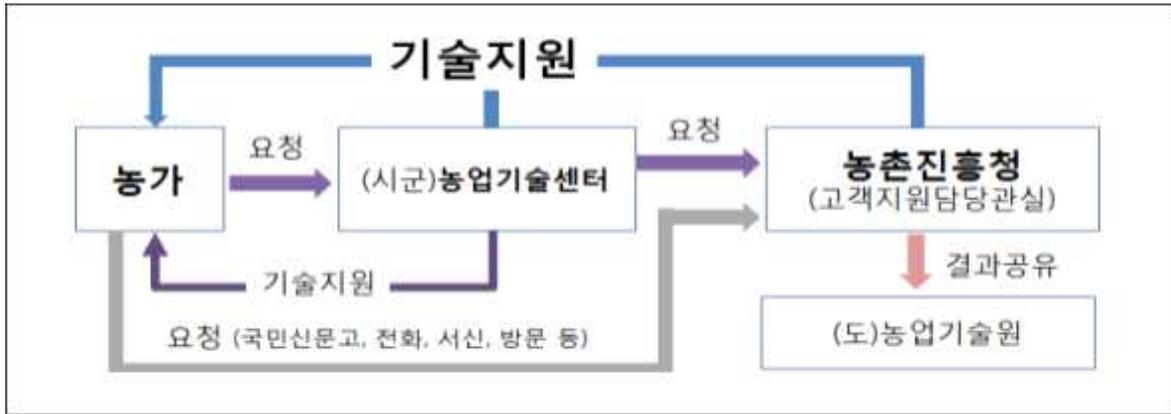
□ 현장 기술지원 절차

- 농가 → 농업기술센터 → 농촌진흥청(고객지원담당관실)
 - 농업기술센터: 1차 기술지원, 해결이 어려운 경우 농촌진흥청(고객지원 담당관실)으로 지원요청(공문, 서식1 및 서식2를 첨부)
 - 농촌진흥청: 기술지원 및 결과통보

○ 농가 → 농촌진흥청(고객지원담당관실)

- 사안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서 1차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또는 직접 기술지원 및 결과통보

[농업현장 기술지원 흐름도]



* 지방기관 : 중앙에 기술지원 요청 시 '표준 신청양식' 준수

□ 현장 기술지원 주요내용

○ 기술지원 요청(농업기술센터)

- 민원인이 농업기술센터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자체 및 해당 농업기술원의 기술지원을 통해 해결하고, 해결이 어려울 경우 농촌진흥청에 기술지원을 요청함.
 - * 기술지원 요청 공문 발송 시 해당 농업기술원에도 송부하여 내용 공유
- 신속하고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현장 기술지원 요청은 표준양식에 준하고,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를 첨부한다.(참조: 서식 1,2)

○ 현장 기술지원

- 현장민원팀은 농업기술센터(또는 요청기관) 담당직원과 함께 현장을 방문한다.
- 현장민원팀은 현장에 도착하면 관련 기술위원을 소개하고, 민원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현장조사, 분석, 사진촬영, 시료채취 등 필요한 조사활동을 수행한다.
 - 민원인 응대에 있어 최대한 공손하게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재배시설 및 작목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 현장 조사가 마무리된 후에는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농가에 설명하고, 추가 조사할 내용 유무를 확인한 후 현장지원을 종결한다.

○ 결과 통보

- 작목 전문 기술위원은 현장조사 및 시료분석 결과,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 검토한 후 현장 기술지원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 토양, 식물체 등의 시료분석(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등)
- 현장민원팀은 현장 기술지원 결과보고서를 최종 검토한 후 요청 기관에 공문으로 통보한다.
- 현장 기술지원 결과보고서는 농업인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 사용은 가급적 피하고, 우리말 용어를 사용한다.
- ※ 현장기술지원 결과는 농업인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 자료로만 활용하며, 소송·보상·민원제기 등 타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을 명시

□ 사후 관리

-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 처리한 경우 민원인이 새로운 민원을 야기할 우려가 예상될 때에는 별도로 관리한다.
- 현장 기술지원 내용이 시험연구사업 반영에 필요한 경우 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청 및 소속 연구기관, 도원 등 관련부서에 제안 한다.
-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례의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홍보, 사례집 등을 제작하여 활용한다.

□ 관련서식

<서식1> 현장민원 기술지원 요청서(예시)

<서식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1> 현장민원 기술지원 요청서(예시)

배추 생육불량 원인규명을 위한 기술지원 요청

1. 농가현황

- 농가명 : 이○○ (010-0000-0000)
- 재배경력 : 10년
- 포장주소 : ○○시 ○○면 ○○리 ○○번

2. 재배현황

- 작 목 : 배추(품종 : 000)
- 면 적 : 6,000m²(노지재배)
- 재배현황
 - 파종일 : 2020년 8월 10일
 - 정식일 : 2020년 8월 30일
 - 시비량
 - 밑거름 : 7월 20일, 우분퇴비 2톤/330m², 복합비료(17-18-18) 200kg/330m²
 - 웃거름 : 9월 15일, 요소비료 10kg/330m²,
: 9월 30일 4종복비(품명 : 000) 관주 등
 - 병해충 방제
 - 9월 20일 : 진딧물 방제(품명 : 000)
 - 10월 10일 : 흰가루병, 총채벌레 방제(품명 : 000, 000 혼용)
 - 관수 : 5일 간격으로 2톤/330m² 정도 점적테이프 이용하여 관수
 - 토양 검정자료 첨부 : 가장 최근 자료
- * 농가가 재배관리 하였던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함

3. 피해상황

- 발생시기 : 2020년 10월 20일경
- 발생면적 : 포장전체 6,000m² 중 1,000m²
- 발생형태 및 증상
 - 생육 초기부터 생육상태가 불균일하고 잎이 황화 후 고사 발생

4. 민원발생 및 처리경과

- 2020년 10월 25일경 현지 답사 및 관리방법 청취
- 토양 및 재배관리 안내 및 피해포장과 정상 포장 시료 채취 분석 의뢰

5. 요청사항

- 변경한 퇴비에서 심한 냄새가 난 것으로 보아 부숙이 덜 되어 유해가스가 발생된 것으로 생각되나, 정확한 원인규명과 개선대책에 대한 현장기술지원을 받고 싶음

[관련사진]

- 전체 포장사진
- 이상증상 식물체 또는 부위



포장 전경



개체군의 생육



이상증상



이상증상



토양검정 결과서

경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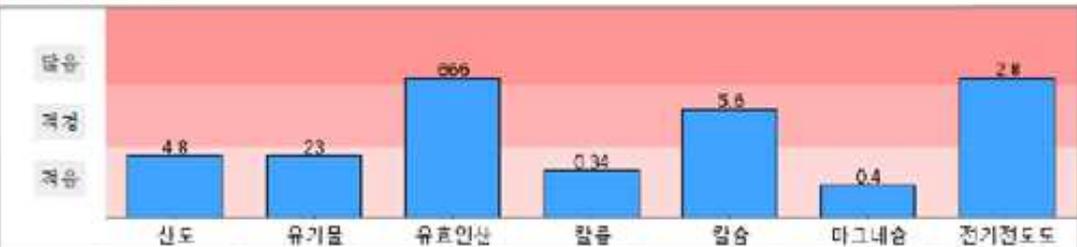
조사번호	2018-4	작물명	에호박	면적	2,007㎡		
경작자명	[REDACTED]	경작지	[REDACTED]				
경작자주소	[REDACTED]						
토양유형	사질담	토성	새 사양토	토양층	갈서분	배수등급	약간 양호
토양특성	지하수위가 높거나 물이 솟는 토양으로 습해가 우려되므로 배수개선과 배수시설 관리가 필요하며 습해에 강한 작물 재배를 권장합니다.						

토양검정 결과

단위

비율

비율



단위	pH(1:6)	g/kg	mg/kg	cmol+/kg	cmol+/kg	cmol+/kg	dS/m
적정범위	6.0-7.0	26-36	300-660	0.6-0.8	6.0-6.0	1.6-2.0	0.0-2.0

* pH가 낮은 토양에서는 아질산가스 발생에 의해 작물 생육이 저조할 수 있습니다. 석회질비료와 퇴비를 살포하고, 인산질 비료는 적게 주는것이 좋습니다.

담당자 의견

▶ 비료 추천량의 1/3만 화학비료로 추천하였으니 추가 비료 필요량은 친환경 유기자재로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토양검정일: 2018년 02월 12일

발급일자: 2018년07월16일

<서식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수 집 항 목 (필수항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수집·이용목적	기술지원, 상담 사후관리(농사관리, 병충해 방제 등), 기술지원 결과 설문조사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1년
개인정보 제공동의 거부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 기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도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

부록 1. 농촌진흥법



농촌진흥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16호, 2020. 5. 26, 일부개정]

농촌진흥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063-238-0453

농촌진흥청(국제기술협력과) 063-238-1111

농촌진흥청(연구정책과) 063-238-0719

농촌진흥청(지도정책과) 063-238-09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사업"이란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 나. 품종개발 및 농업유전자원의 수집·보존·활용과 이에 관련된 조사·연구
 - 다. 농축산물·농식품의 생산성 향상, 안전성, 수확 후 관리, 가공·이용, 부가가치 제고 등에 관한 조사·연구
 - 라. 농업 및 농업환경의 유지·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 마. 농업·농촌 생활환경, 문화의 보존 및 여성 농업인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 바. 농업생물자원의 활용을 위한 첨단기술 연구개발
 - 사. 농기계·농약·비료 등 농자재의 표준규격 설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 아.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 "농촌지도사업"이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 나. 농업경영체의 경영 진단 및 지원
 - 다.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 개선 지원
 - 라. 농업후계인력, 농촌지도자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
 - 마.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 지도
 - 바.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술 지도
 - 사. 그 밖에 농촌지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4.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 나.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 다. 농업관련 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교육훈련
 - 라.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5. "국제협력사업"이란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 등과 협력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국제기구 및 국제연구기관 등과의 농업기술에 관한 공동연구개발·보급사업
 - 나. 외국의 정부, 대학, 민간기구 등과의 농업기술에 관한 공동연구개발·보급사업
 - 다. 그 밖에 국제협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3조(지방농촌진흥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113조에 따른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촌진흥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농촌진흥사업

제1절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의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진흥사업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2. 농촌진흥사업별 중점 추진전략
3. 농촌진흥사업의 기반 조성 및 재원 조달방안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촌진흥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추진 실적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26.>

⑥ 제5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 5. 26.>

1.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3.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그 평가 결과
4. 그 밖에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⑦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26.>

제6조(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①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를 둔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농촌진흥사업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촌진흥사업의 평가와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연구개발사업

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실시)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유연구사업 이외에 공동연구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사업은 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농업인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 이 경우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지방농촌진흥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③ 농촌진흥청장은 공동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의 기관 등에 출연할 수 있다.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촌진흥청장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2020. 3. 24., 2020. 5. 26.>

1. 제11조에 따른 평가에서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업비를 정당한 용도 이외에 사용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하거나 사업을 수행한 경우 또는 연구개발의 업적이나 결과물을 연구개발 성과로 등록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여제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별 제한기간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제9조(현장 수요조사) 농촌진흥청장은 현장에 필요한 농업과학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현장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제10조(연구개발사업의 심의·조정)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기관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조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기관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연구수행에 관한 사항
3. 연구 인력의 양성·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평가와 성과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① 농촌진흥청장은 매년도 연구개발 성과 중 농업인 등에게 기술보급과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을 건의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농촌진흥청장의 의견을 들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보급과 지원에 관한 정책을 건의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정책 건의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여 개발된 기술 등이 신속히 보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 성과 중 지식재산권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는 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보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 ②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3. 27.>
- ③ 농촌진흥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을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출원하는 경우 특허 등록 전이라도 그 기술을 조기에 산업화하는 것이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특허청장과 협의하여 특허 등록 전까지 이를 산업화하려는 자에게 그 기술을 산업화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제14조(북한 농업 연구개발사업 등) 농촌진흥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북한 농업을 지원하거나 남·북한 농업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3절 농촌지도사업

- 제15조(농촌지도사업의 조정)**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농촌진흥청장은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농업과학기술을 전국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개발기술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7조(농촌지도사업의 평가)**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8조(농업인 조직의 육성)**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지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제4절 교육훈련사업

- 제19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제목개정 2015. 3. 27.]
- 제20조(교육훈련과정 등 연구·개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담당 공무원의 전문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교과내용 및 교육방법이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에 적합하도록 연구·개선하여야 한다.
- 제21조(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 등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절 국제협력사업

- 제22조(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기구나 국제연구기관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의 범위와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외국 등과의 협력)**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과학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선진농업기술의 도입 등 외국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개발도상국의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농촌진흥청장은 다수 국가와의 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들과 협의하여 국제협력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방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24조(농업기술 연수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외국과의 협력사업을 촉진하고 농업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의 농업 관련자에 대하여 농업기술 연수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농촌진흥청장은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갖춘 농업 관련자를 선발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제6절 농촌진흥사업 지원

-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① 정부는 농촌진흥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학교,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26조(농촌진흥사업 연구·조사)**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 또는 조사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또는 조사와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농촌진흥사업 협조) ① 다른 법률에 따라 농촌진흥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농촌진흥청 및 지방농촌진흥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학술교류 활동 지원)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 종사 공무원이 농촌진흥사업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자, 대학, 국제기구 및 국제연구기관 등과의 다양한 학술 교류와 협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제29조(시상)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업적이 탁월하거나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개인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30조(농업 산·학협동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관련 산업계·학계·관계 및 연구기관과의 협동사업(이하 "농업 산·학협동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농업 산·학협동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에서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관련 학교, 농업단체, 연구기관, 기업, 농업인에게 농업 산·학협동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농촌진흥사업 종사 공무원

제31조(연구직·지도직 공무원 등) ①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을 둔다.

② 삭제 <2015. 3. 27.>

③ 농촌진흥청장은 퇴직한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으로서 그 재직 중 업적이 우수한 사람을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농촌진흥사업에 계속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수당, 위촉방법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5. 3. 27.]

제32조(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복무) 연구직 공무원과 지도직 공무원은 이 법에서 정한 사업 외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4장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제33조(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설립·운영) ① 농촌진흥청장은 정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민간 등의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하 "실용화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실용화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실용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 8. 20.>

1.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중개와 알선
2.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조사와 연구
3. 영농 현장에서의 연구개발 성과 활용 지원
4.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5.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위탁관리 업무
6. 농가와 농업생산자 단체 등의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지원
7.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8.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9. 그 밖에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4조(실용화재단에 대한 예산 지원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실용화재단의 설립·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사업자단체
5. 농업·식품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실용화재단은 제33조제1항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실용화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용화재단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실용화재단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양여, 대부 및 사용·수익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실용화재단 업무의 지도·감독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용화재단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용화재단의 장부·서류·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1. 제33조제3항 각 호와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위탁한 사업이나 농촌진흥청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 3. 각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수립·집행 및 예산편성·결산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실용화재단은 제33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과 협의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실용화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 ③ 실용화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36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농촌진흥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제19조에 따른 교육훈련사업 등에 관한 농촌진흥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27.>

제3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실용화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7316호, 2020. 5.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촌진흥청장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농촌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0. 1. 29] [대통령령 제30367호, 2020. 1. 29, 일부개정]



농촌진흥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063-238-0453

농촌진흥청(지도정책과) 063-238-0911

농촌진흥청(국제기술협력과) 063-238-1111

농촌진흥청(연구정책과) 063-238-0719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촌진흥사업의 범위) ①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아목에서 "연구개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 7. 9.>

1. 농업 분야 기후변화의 적응과 영향 평가,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평가 및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에 관한 연구
2. 농업경영, 농산물 유통·마케팅, 농업 정보화 및 농업인 복지에 관한 연구
3. 농업인·농촌의 현장에 기술 및 농작업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4.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농업"이라 한다) 관련 연구
5. 농업 기초 과학기술 및 기초 농산물, 수출 유망 작목(作物)에 관한 연구
6.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새로운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법 제2조제3호사목에서 "농촌지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 7. 9., 2020. 1. 29.>

1. 도시농업 등 농촌 외 지역 농업의 활성화 지원
2.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및 고령 농업인 생활 안전 관련 기술 지원
3. 친환경농업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 지원
4. 지역 특색에 맞는 농업 개발을 위한 지원
5. 농업인·농촌의 현장에 해결을 위한 지원
6. 첨단기술의 확산을 위한 과학영농기술기반의 조성 및 지원
7.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새로운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③ 법 제2조제4호라목에서 "교육훈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 7. 9.>

1. 신규 농업인 등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2. 도시 등 농촌 외 지역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 관련 교육훈련
3. 농업기계의 수리·정비 및 안전사용에 관한 교육훈련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새로운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④ 법 제2조제5호다목에서 "국제협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농업기술 관련 국제규범에 대한 국제협력사업 추진
2. 농업기술 분야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3조(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수립)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기술 현황과 예측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중 연구개발사업 분야에 관하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0. 1. 29.>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 29.>

1. 농촌진흥사업의 추진 방향

2. 농촌진흥사업의 분야별 세부계획 및 투자계획
3. 그 밖에 농촌진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 29.>

제4조(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농촌진흥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 9. 23.>
 1. 당연직위원: 농촌진흥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4명
 2. 민간위원: 농업, 농촌 및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⑦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開會)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지명한다.
 - ⑨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의2(위원의 해촉) 농촌진흥청장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31.]

제5조(공동연구사업의 분야별 연구과제 선정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동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연구사업계획에는 공동연구사업 또는 공동연구과제의 내용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모(公募)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농촌진흥청장이 공동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모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농업인 등 중에서 그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진 자로 하여금 공동연구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공동연구사업 협약 등) ①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협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연구과제의 명칭, 연구의 범위, 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출연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3.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4. 공동연구 결과 보고
5. 공동연구 결과의 귀속 및 활용
6. 공동연구 결과 평가
7. 협약의 변경 및 해약
8. 협약 위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연구사업에 필요한 사항

-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기관, 단체, 농업인, 법인의 대표 등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출연을 받은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공동연구사업을 마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 집행실적 보고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출연금의 지급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심의·조정)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0조 각 호의 업무를 심의·조정하기 위한 기본지침을 수립하고, 그 기본지침을 기준으로 심의·조정 업무를 수행한다.

-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지침을 수립하면 각 소속 기관의 장 및 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구를 말하며, 이하 "지방농촌진흥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개발 성과의 사용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3.>

- ② 농촌진흥청장이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이하 이 항에서 "성과"라 한다)의 사용에 대한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9. 23.>

1.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성과를 보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출 진흥이나 수입 대체 등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하여 성과의 보급이 필요한 경우
3. 농업환경 보전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성과를 보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중소기업 지원·육성 등 정부시책 추진을 위하여 성과의 보급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별히 성과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5. 9. 23.]

제9조(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사용) ① 농촌진흥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이하 "직무발명"이라 한다)로서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출원 중인 직무발명을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산업화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화하려는 자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3.>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술료의 징수 및 면제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교육식별정보의 처리)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 중 지식재산권의 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사용과 관련하여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제11조(시범사업의 요건) 법 제16조에 따른 시범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개발 성과를 농업현장에 조기에 보급할 필요가 있을 것
2.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3. 지방농촌진흥기관, 대학, 농업인 등이 제안한 농업기술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시범사업의 효과가 클 것으로 인정하는 농업기술일 것

제12조 삭제 <2015. 9. 23.>

제13조(다른 교육훈련기관의 협조) 공공단체는 법 제27조에 따라 농촌진흥사업 중 교육훈련사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촌진흥청 및 지방농촌진흥기관과 협조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교육훈련 교재 편찬
3. 교육훈련시설과 기자재 및 실습포장(實習圃場)의 공동이용
4. 교육훈련 강사 지원
5. 교육훈련 이수자의 사후관리
6. 교육훈련 실시에 필요한 자금 지원

제14조(명예직연구관 및 명예직지도관의 자격 등)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연구직공무원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재직 중의 농촌진흥사업 실적이 뛰어나고 재직 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가목·나목 또는 같은 표 제2호가목이나 같은 규정 별표 2의2 제1호가목 또는 같은 표 제2호가목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의 직명(職名)은 "명예직연구관" 또는 "명예직지도관"으로 한다.

제15조(위촉기간 및 수당 등) ① 명예직연구관 및 명예직지도관의 위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명예직연구관 및 명예직지도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촉받은 농촌진흥사업의 수행을 위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위촉 해제) 농촌진흥청장은 명예직연구관 또는 명예직지도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으로 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7조(복무) ① 명예직연구관 또는 명예직지도관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명예직연구관 및 명예직지도관은 위촉받은 농촌진흥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사업 범위) 법 제33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하기 위한 제품, 기술 등과 관련한 시험·분석·평가 사업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여 긴급하게 보급하려는 종자·종묘의 증식·보급 사업

제19조(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대한 출연 및 지원) 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경비 또는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하려는 자는 출연 또는 지원 금액·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하 "실용화재단"이라 한다)과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제20조(경비의 출연 또는 지원 기관)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한국마사회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② 법 제3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5. 12. 22.>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3. 농업·식품 관련 「상법」상의 회사

제21조(실용화재단의 수익사업) ① 실용화재단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익사업계획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수익사업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실용화재단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국유·공유 재산의 무상양여 등)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해당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에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34조에 따른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의 양여, 대부, 사용·수익 허가의 내용·조건 및 절차는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실용화재단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5. 9. 23.>

제23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이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사용에 따른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계약 상대방 선정 및 기술료 결정·감면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제9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이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사용에 따른 계약 체결(계약 상대방 선정 및 기술료 결정·감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그에 따른 기술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실용화재단에 위탁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실용화재단이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의 1000분의 1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용화재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교육훈련사업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

관 또는 단체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시설·인력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 9. 23.>

1. 교육훈련 관련 기관

2.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농업인, 청소년과 관련된 단체

⑤ 농촌진흥청장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9. 23.>

⑥ 농촌진흥청장은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교육 운영과 시설 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9. 23.>

부칙 <제30367호, 2020. 1.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5. 9. 2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63호, 2015. 9. 23, 일부개정]



농촌진흥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063-238-0453

농촌진흥청(지도정책과) 063-238-0911

농촌진흥청(연구정책과) 063-238-0719

농촌진흥청(국제기술협력과) 063-238-11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협력사업의 범위) 「농촌진흥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제4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국외상주연구원 파견 등을 통한 농업기술정보 및 인적자원 교류
2. 농업기술 분야 다자간 협력에 관한 업무

제3조(공동연구사업계획의 수립) 농촌진흥청장은 영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동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 연구개발사업의 심의·조정 결과,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결과,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및 이전과 연구비 총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연구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영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연구사업의 목적
2. 공동연구사업별 연구개발비 및 사업기간
3. 공동연구사업 결과의 활용방안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공동연구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출연금의 지급방법 및 관리)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7조제3항 및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연구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여러 번 나누어서 지급한다. 다만, 공동연구사업의 규모·착수시기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전액을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의 사용내용에 대한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제6조(연구개발 성과의 사용·양도·대여계약 등) ① 공동연구에 참여한 기업 등(이하 "공동연구기업등"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 중 지식재산권(이하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연구기업등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과 지식재산권의 사용·양도·대여·수출에 관한 기술료 납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3.>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공동연구사업의 개요
2. 해당 지식재산권의 범위
3. 사용기간 또는 대여기간
4. 기술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계획

③ 공동연구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료 납부 계획서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등 기술료 납부의 이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기술료를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계획서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기술료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준용한다.

제7조(기술료의 감면) 지식재산권을 사용하려는 공동연구기업등이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료 감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연구기업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기업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기업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8조(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 사용계약 등) ① 법 제13조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출원 중인 연구개발 기술(이하 "직무발명"이라 한다)을 산업화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발명 사용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하 이 조에서 "실용화재단"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3.>

1. 직무발명의 산업화 계획서
 2. 직무발명 기술료 예정가격 견적서
 3.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직무발명 기술료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 기업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기업이 직무발명 기술료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②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직무발명 사용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직무발명을 유상으로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술료 예정가격을 같이 결정하여야 하고, 직무발명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실용화재단의 장은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의 장이 선정한 직무발명 사용계약 상대방과 직무발명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의 내용 및 사용기간
 2.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이 가지는 지분율(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과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같이 직무발명을 하여 그 지식재산권의 지분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직무발명 기술료 예정가격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 ④ 실용화재단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직무발명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직무발명 기술료 예정가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협력사업의 추진방법 및 운영)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외국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제협력협의체를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가들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협력사업의 운영이나 국제협력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약정에는 협력사업 또는 국제협력협의체 구성의 목적, 협력 분야와 구성원 역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비영리법인, 학교, 단체 또는 개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직제, 규약 또는 정관(개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시설의 설계서, 설계 명세서 및 설계도면[기성(既成) 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매매계약서(장비나 기성 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서류
-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지급한다. 다만, 보조할 사업·시설 또는 장비의 원활한 운영·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63호, 2015. 9. 23.>

이 규칙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직무발명 기술료 예정가격의 산정기준 (제8조제5항 관련)

1. 직무발명 기술료 예정가격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기술료 예정가격} = \text{직무발명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times \text{제품의 판매
단가} \times \text{점유율} \times \text{기본율} \times \text{지분율}$$

2. 제1호에 따른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제품 단위당 기술료 예정가격을 직무발명 기술료 예정가격으로 한다.

$$\text{제품 단위당 기술료 예정가격} = \text{제품의 판매단가} \times \text{점유율} \times \text{기본율} \times \text{지분율}$$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식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총판매예정수량: 직무발명 사용기간 동안의 총판매예정수량

나. 제품의 판매단가: 직무발명 사용기간 동안 매 연도별 공장도 예상가격의
평균

다. 점유율: 단위 제품 생산에 해당 직무발명이 이용되거나 차지하는 비율

라. 기본율: 3퍼센트. 다만, 농촌진흥청장은 직무발명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
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본율을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의 범위
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마. 지분율: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과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같이 직무발명을 하여 그 지적재산권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경우 농촌
진흥청이 그 직무발명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비율

■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기술료 감면 신청서

연구개발 과제현황	연구과제명			과제번호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천원)	연구기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소계
		1차					
2차							
3차							
	합계						

연구개발 성과 활용현황	성과활용명						
	지적재산권 종류				유형		
	특허	명 칭					
		번 호			일 자		
	연구성과 사용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전자우편		

기술료 산정내역					
-------------	--	--	--	--	--

기술료 감면	감면 근거				
	감면 사유 및 내용				
	감면금액 산출 내역				

「농촌진흥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개발 성과 사용에 대한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첨부 서류	1. 공동연구에 참여한 기업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기업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기업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9.23.>

직무발명 사용계약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명칭(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신청내용	권리의 표시	특허 출원 00-0000-0000000호	
	직무발명의 명칭		
	사용 범위	기간: 20 . . . ~ 20 . . . (년간) 지역: 대한민국 전역 내용: 「특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실시행위	
	기술료 견적금액		
	계약 근거		
	기술료 감면 신청 여부	*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면제 신청사유를 적습니다.	

「농촌진흥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사용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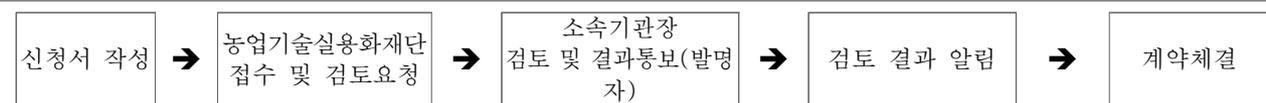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장(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특허 출원 중인 공무원 직무발명의 산업화 계획서 1부 2. 기술료견적서(「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제5항 및 별표에 따라 산정합니다) 1부 3.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직무발명 기술료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기업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기업이 직무발명 기술료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보조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신청 내용	사업명	사업 장소
	사업장 소재지(주소)	
	사업기간	사업비 예산액
	지급 신청 금액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 동의 여부		[]동의함, []동의 안함

「농촌진흥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직제, 규약 또는 정관(개인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3. 시설의 설계서, 설계 명세서 및 설계도면[기성(既成) 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각 1부 4. 매매계약서(장비나 기성 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5.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2021년도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

부록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보조금법)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145호, 2020. 3.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 044-215-7158

제1장 총칙 <개정 2011. 7. 25.>

제1조(목적) 이 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절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8.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8., 2017. 7. 26.>

③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7. 1. 4.>

[전문개정 2011. 7. 25.]

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 <개정 2011. 7. 25.>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①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그 시장·군수에 대한 보조금은 관할 도지사(광역시의 군인 경우에는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종합하여 일괄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서식, 첨부서류, 제출일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출일은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

[전문개정 2011. 7. 25.]

제5조(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국가는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국가시책 수행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6조(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 예산 요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로부터 신청받은 보조금의 명세 및 금액을 조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더라도 그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별 명세 없이 총액으로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내용과 중앙관서의 장의 조정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7조(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서(지방자치단체 의견을 포함한다)를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 2014. 11. 19., 2017. 7. 26., 2020. 3. 31.>

[전문개정 2011. 7. 25.]

제8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자료 제출 등) ①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요구할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보조금의 예산요구액을 조정할 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8.>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하여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8.>

[전문개정 2011. 7. 25.]

제10조(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있다.

②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분야별 재정지출지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며,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산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차등보조율의 적용으로 인한 국고보조금의 추가적인 소요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11조(보조금 예산의 편성에 관한 의견 제시)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보조금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해당 관할구역의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또는 보조금 예산액의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8.>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시한 의견 중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8.>

[전문개정 2011. 7. 25.]

제12조(보조금 예산의 통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예산안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9월 15일까지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4.>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보조금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 4.>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해당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인 경우에

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1. 4., 2017. 7. 26.>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일괄하여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7. 1. 4.>

[전문개정 2011. 7. 25.]

제13조(지방비 부담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14조(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 제한)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업 수행상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 연장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1. 28.]

제3장 보조금의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개정 2011. 7. 25.>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공모(公募)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7. 25.]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19조(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단위사업별·보조사업자별로 작성한 교부 결정 내용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7. 25.]

제20조(보조금의 통합 운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할 때 보조사업의 명세를 세분함으로써 보조금의 규모가 영세하여질 경우에는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하는 금액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목적이 유사한 보조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21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하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함으로써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교부 결정의 취소 등을 하여야 할 사유
2. 교부 결정의 취소 등에 대한 해당 보조사업자의 의견
3. 교부 결정의 취소로 인한 미교부 보조금의 향후 사용계획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게 된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일부 취소할 경우에 수정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에 대하여도 제2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개정 2011. 7. 25.>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26조(보조사업의 수행명령)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하고,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2016. 1. 28., 2017. 1. 4.>

② 중앙관서의 장(제38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받은 소속 관서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에서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은 제외한다. <신설 2017. 1. 4.>

③ 보조금통합관리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조금관리정보"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 7. 20., 2017. 1. 4.>

1.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이하 "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선정 및 자격확인 등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수급자격의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출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집행의 적절성 확인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이력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급부금 중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과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급부금의 수급 이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
5. 「국가재정법」 제54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보조금 집행실적
6.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 운용 평가 결과
7. 그 밖에 보조사업의 효과적인 통합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 7. 25.]

[제목개정 2017. 1. 4.]

제26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등의 선정 및 자격관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의5부터 제26조의9까지에서 같다)할 수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3.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등기기록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5. 「주민등록법」 제28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 관련 자료 또는 정보
 -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나. 「국세징수법」 제6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 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또는 정보

- 라.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관련 자료 또는 정보
- 바.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
- 7.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8.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②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는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관련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집행 및 중복·부정 수급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보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1. 4.]

제26조의4(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등의 선정 및 자격관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명의인의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서면은 전자적 형태로 바꾸어 제출할 수 있다.
- ③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및 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 4.]

제26조의5(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① 보조금관리정보를 보유한 자는 그 정보를 보유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까지 보유할 수 있다.

- ②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한 자는 자격 검증 등 처리 목적을 달성한 즉시 수집한 자료 또는 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거나 증거자료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7. 1. 4.]

제26조의6(보조금관리정보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보조금관리정보의 처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보조금관리정보를 위조·변경·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 2. 업무상 알게 된 보조금관리정보를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하는 행위
- 3.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위조·변경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 4. 정당한 권한 없이 보조금관리정보를 처리하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보조금관리정보를 처리하는 행위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관리정보를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 목적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 외의 용도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보조금관리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③ 제2항 각 호에 따라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관리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관리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물리적 대책을 포함한 보호조치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 4.]

제26조의7(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의 총괄 및 업무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 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처리할 수 있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정보가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으로 본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유지·개선 등 운영에 관한 업무
2. 보조금관리정보 및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신청, 접수, 결정, 교부 및 사후관리의 전자적 지원에 관한 업무
4.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관리에 관한 업무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재정정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보조금을 위탁(預託)하여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되는 보조금의 범위, 구체적인 위탁 방법, 위탁된 보조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 4.]

제26조의8(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조금통합관리망과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3.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
5. 「영유아보육법」 과 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전산시스템
6.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7. 「아이돌봄 지원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자시스템
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
9.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② 제1항 각 호의 시스템과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보조금 집행 내역 및 보조금 집행 적절성 확인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다만,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6조의9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 4.]

제26조의9(운영기관 협의회 설치 등) ①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과 제26조의8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스템과의 연계 및 정보보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이하 "운영기관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운영기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정책
2. 시스템 접속기록 관리 등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체계
3. 악성프로그램 방지 등 시스템 보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항
- ③ 그 밖에 운영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 4.]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제27조의2에 따라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 1.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 내역
- 3.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 5.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 6.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보조금의 삭감 또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정보공시, 시정명령 및 보조금 삭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 4.]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 28., 2017. 10. 31.>

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 및 서류를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지연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1.>

④ 제2항 후단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정산 및 검증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28., 2020. 3. 31.>

[전문개정 2011. 7. 25.]

[제목개정 2016. 1. 28.]

제27조의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업자"라 하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특정사업자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사업자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갈음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작성된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0. 3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특정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다시 교부하는 등 그 특성상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특정사업자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회계감사의 기준 및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8.]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으

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 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개정 2016. 1. 28.>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것일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 명세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초과액을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해당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유사한 사업에 초과액을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정부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다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

회 이상 받은 경우

-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수령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아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 대하여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 및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자등을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4.>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간접보조금 수급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기준과 이와 관련된 정보의 통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8.]

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1. 7. 25.]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 28.]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행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할 수 있다.

- 1.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2.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한 반환명령의 적정성을 조사·확인한 후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5.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가산금의 산정방법 및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6. 1. 28.]

제33조의3(강제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2020. 6. 9.>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31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2. 보조금수령자가 제33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3. 보조사업자등이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가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 [본조신설 2016. 1. 28.]

제6장 보칙 <개정 2011. 7. 25.>

제3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②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는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8.>

- ②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8.>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1. 7. 25.]

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취득·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로 부동산의 등기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양도·교환·대여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8조제2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를 국가에 반환하고,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본조신설 2016. 1. 28.]

제36조(검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36조의2(명단 등의 공표)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4.>

1. 제26조의10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2.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3.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중앙관서에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공표 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한 제37조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불복절차가 끝난 후에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단 등의 공표 방법, 절차,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8.]

제37조(이의신청)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결정의 내용,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명령 또는 삭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8.>

- ②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의 반환 명령 또는 삭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8.>

-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 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자가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 28.>

[전문개정 2011. 7. 25.]

제38조(사무의 위임)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39조(회계 관계에 관한 규정) 보조금의 회계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11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39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28.>

1.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2.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보조사업자
3.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제39조의3(대국민 이용 지원)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 또는 보조사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국민에게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검색, 조회 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대국민 포털을 구축·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정보취약계층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구축·관리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사용 지원 대책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 4.]

제3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의7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 1. 4.]

제7장 벌칙 <개정 2011. 7. 25.>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7. 1. 4.]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28., 2017. 1. 4.>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자
3.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2011. 7. 25.]

제42조(벌칙) ①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2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7조 또는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전문개정 2016. 1. 28.]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 30.]

부칙 <제17339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보조금법 시행령)
[시행 2020. 10. 1] [대통령령 제31055호, 2020. 9. 29,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재정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추진단 기획법령팀) 02-6312-8312

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 044-215-7158

제1조(목적) 이 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0. 26.]

제2조(급부금의 지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부담금 외의 급부금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 따른 소득보조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0. 26.]

제3조(신청이 없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법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전문개정 2011. 10. 26.]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 4. 28.>

② 기준보조율은 해당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액,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된 금액,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0. 26.]

제5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등) ① 법 제10조에 따라 기준보조율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차등보조율(이하 "인상보조율"이라 한다)은 기준보조율에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더하여 적용하고,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기준보조율에서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빼고 적용하며, 그 적용기준과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계산식은 별표 3과 같다.

② 인상보조율은 재정사정이 특히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인상보조율의 적용을 요구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0. 26.]

제6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 설정 제외대상 사업)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 11. 28., 2016. 4. 28.>

1.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 사업
2.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 심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되어 진행 중인 계속사업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
4. 그 밖에 존속기간의 설정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3년 이내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1. 10. 26.]

[제목개정 2016. 4. 28.]

제6조의2(보조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조사업평가위원을 선정하여 보조사업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4. 28.>

1. 보조금의 운용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4. 그 밖에 보조금 사업 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② 평가단은 평가대상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보조사업의 평가와 관련된 자료 및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0. 26.]

제6조의3(보조금관리위원회) ①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관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5. 8.>
1. 보조사업과 관련된 주요정책의 결정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선정 등의 타당성 확인에 관한 사항
 3. 보조금의 중복 또는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운영과 보조사업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법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보조사업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추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 보조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2명 이내의 민간위원
-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6. 4. 2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 4. 28.>

[본조신설 2015. 7. 24.]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서) ① 법 제16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의 금액
 4.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 10. 26.]

제7조의2 삭제 <2017. 5. 8.>

제8조(보조금의 통합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하는 금액의 기준은 개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이 연간 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업목적이 유사한 보조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운용하려는 경

우에는 각 보조사업 간 집행금액의 변경 가능성, 보조사업 예산을 통합 집행하는 경우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 간 집행금액의 변경 가능 범위, 구체적인 집행 방법 및 절차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0. 26.]

제9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 등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를 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10. 26.]

제10조(교부 결정의 취소에 따라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비로 한정한다.

1. 보조사업에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임시건물의 철거와 그 밖의 남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
2.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

[전문개정 2011. 10. 26.]

제10조의2(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는 「감사원법」 제25조에 따른 계산서, 증거서류 및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 한다.

[본조신설 2011. 10. 26.]

제10조의3(보조사업 수행의 일시 정지)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적합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0. 26.]

[제11조에서 이동 <2017. 5. 8.>]

제10조의4(보조금관리정보) 법 제26조의2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조금을 교부, 집행 및 정산하는 사업의 단위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의 유사·중복 여부의 검증 및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단위별 보조사업의 정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7. 5. 8.]

제10조의5(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① 법 제26조의3제1항제6호가목 및 같은 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각각 별표 4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8. 3. 13.>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해당 자료 또는 정보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과 같은 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관련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본조신설 2017. 5. 8.]

제10조의6(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4.>

1.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이하 "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범위, 조회 기준일 및 조회 기간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

용을 포함한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보조사업자등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내용
-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5. 8.]

제10조의7(5년 초과 보유대상 자료 또는 정보) 법 제26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조금 중복·부정 수급 여부 확인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법 제30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 배제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제한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5.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6. 법 제35조에 따른 중요재산의 처분 제한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7. 법 제36조의2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본조신설 2017. 5. 8.]

제10조의8(보조금의 예탁 및 지급) ① 법 제26조의7제5항 전단에서 "한국재정정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이하 "한국재정정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6조의7제5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각각 교부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기관(이하 "예탁기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계좌에 예탁(預託)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예탁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1.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예탁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행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예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2. 보조금의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금 전용카드의 거래승인내역
 3. 그 밖에 보조금의 집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예탁기관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요청한 보조사업자등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예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예탁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집행잔액, 이자수입 및 보조사업의 수익금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대신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5. 8.]

제11조(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6조의9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이하 "운영기관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3. 13.>

1.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거나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재정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독립기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국장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법 제26조의8제1항 각 호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장
4.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5. 보조금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사람
- ② 운영기관 협의회의 의장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⑥ 운영기관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6조의2제3항의 보조금관리정보 및 법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법 제26조의8제1항 각 호의 시스템과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법 제26조의9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한 운영계획
 4.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유지·개선 등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5. 그 밖에 운영기관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⑦ 운영기관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과 의장이 회의 때마다 지정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⑧ 운영기관 협의회의 회의는 제7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⑨ 운영기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운영기관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 5. 8.]

[중전 제11조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17. 5. 8.>]

제11조의2(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26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란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말한다. 다만,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시대상 규모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5. 8.>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 제26조의10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의10제1항제5호에 따른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는 그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8.>
- ③ 법 제26조의10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5. 8.>
 1.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
 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3.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④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의10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내용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8.>
- ⑤ 중앙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10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해당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개정 2017. 5. 8.>

[본조신설 2016. 4. 28.]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로서 해

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보조사업 수행계획이 다를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20. 9. 29.>

1. 3개월 이상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삭감
2. 6개월 이상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삭감
3. 12개월 이상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삭감

[전문개정 2011. 10. 26.]

제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 ① 법 제2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정산보고서에는 해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에 따른 사용내역 및 반환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3억원을 말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은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당초 교부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여 검증 관련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30.>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출하는 정산보고서 및 감사인이 작성하는 검증 관련 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검증항목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4. 28.]

제12조의3(특정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정사업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턴 4개월 이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감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인 선정 절차 및 감사보고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4. 28.]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한다.

1.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3.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4. 지방자치단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중앙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이자

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반환 기한을 연장받으려는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연장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내용을 적은 서류에 해당 보조사업에 관련된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치한 사항, 그 보조금을 반환하기 곤란한 이유와 그 밖에 필요한 참고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0. 26.]

제13조의2(보조금 초과액의 사용요건 등) ①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 2. 원래 예정된 공정 및 집행방법을 개선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 3. 일상 업무 추진방법을 개선하여 정상적 성격의 경비를 절감한 경우
- 4. 보조금을 절약 집행하여 집행 잔액이 소액인 경우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른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 1.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지출이 감소된 경우
 - 2. 원래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에 따라 지출이 감소된 경우
 - 3. 예측한 수요와 실제 수요의 차이로 인하여 지출이 감소된 경우
 - 4. 예측하지 못한 상황변경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③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이란 같은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사업 중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같은 부문에 속하는 사업을 말한다.
- ④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1. 신규사업
 - 2. 별표 2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초과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액"이라 한다)의 사용대상, 사용금액(사업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상적 성격의 경비는 제외한다), 사용시기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을 세워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초과액은 원칙적으로 초과액이 발생한 해당 연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사용계획에 구체적인 사용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⑦ 법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른 초과액의 사용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1. 초과액의 발생사유 및 산출근거
 - 2. 초과액을 사용한 보조사업의 목적, 사업명세 및 집행액
 - 3. 그 밖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 10. 26.]

제13조의3(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들을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 제한을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8.>

- 1. 보조사업자들의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보조사업자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법인명·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을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 3.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 제한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들을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이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이 제한된 보조사업자들이 상호·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 제한의 통보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4. 28.]

제14조(보조금 반환명령 사실 통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그 사실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반환명령을 받은 보조금수령자의 성명·상호, 나이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를 말한다)
- 2. 반환명령의 구체적 사유
- 3. 반환명령을 받은 보조금수령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금액
- 4.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반환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6. 4. 28.]

제14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의 기준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 5. 8.>

- ②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별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별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등"이라 한다)를 부과받는 경우를 말한다.
- ③ 중앙관서의 장은 과태료등과 제재부가금의 합계액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법 제33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⑤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보조사업자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⑧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호 본문에 따른 가산금에 더한 금액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4. 28.]

제15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중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중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재산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 ④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명확하게 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6. 4. 28.>
- ⑤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5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의 현재액이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현재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으로 하여금 해당 중요재산의 현재가치를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재산의 현재가치 평가에 소요된 비용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6. 4. 28.>

[전문개정 2011. 10. 26.]

제16조(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자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2.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 다만, 제2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

[전문개정 2011. 10. 26.]

제17조(사무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전문개정 2011. 10. 26.]

제17조의2(명단 등의 공표방법) ① 법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표 대상 보조사업자등의 성명·상호, 나이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를 말한다)
 2. 공표 대상 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 내용
 3. 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에 따른 보조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
 4. 그 밖에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공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그 게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하려는 경우 공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법 제36조의2제3항에서 "공표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공표 대상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 4. 28.]

제17조의3(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차관(차관이 없는 중앙관서는 해당 중앙관서의 부기관장을 말한다)이 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중앙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3명 이내
 2. 보조사업에 대한 전문적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서 5명 이내
-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⑤ 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6조의3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4. 28.]

제1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후에 해야 한다. <개정 2016. 4. 28., 2020. 1. 29.>

-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통보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항에서 "당초 신고포상금"이라 한다)과 달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9.>

구분	지급기준
1. 당초 신고포상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 또는 30퍼센트 미만 지급
2. 당초 신고포상금(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최소한 지급할 필요가 있는 포상금의 금액(이하 "최소지급액"이라 한다)을 정하고, 당초 신고포상금이 최소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최소지급액 지급. 이 경우 최소지급액은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0. 26.]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관서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5. 8.>

1.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운영·관리 및 이를 이용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무
3.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무
5.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33조의3에 따른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
7. 법 제35조에 따른 재산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무
8. 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 등의 공표에 관한 사무
9. 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6. 4. 28.]

부칙 <제31055호, 2020. 9. 29.>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보조금법 시행령)

[시행 2020. 10. 1] [대통령령 제31055호, 2020. 9. 29,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재정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추진단 기획법령팀) 02-6312-8312

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 044-215-7158

제1조(목적) 이 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0. 26.]

제2조(급부금의 지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부담금 외의 급부금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 따른 소득보조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0. 26.]

제3조(신청이 없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법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전문개정 2011. 10. 26.]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 4. 28.>

② 기준보조율은 해당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액,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된 금액,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0. 26.]

제5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등) ① 법 제10조에 따라 기준보조율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차등보조율(이하 "인상보조율"이라 한다)은 기준보조율에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더하여 적용하고,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기준보조율에서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빼고 적용하며, 그 적용기준과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계산식은 별표 3과 같다.

② 인상보조율은 재정사정이 특히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인상보조율의 적용을 요구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0. 26.]

제6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 설정 제외대상 사업)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 11. 28., 2016. 4. 28.>

1.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 사업
2.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 심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되어 진행 중인 계속사업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
4. 그 밖에 존속기간의 설정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3년 이내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1. 10. 26.]

[제목개정 2016. 4. 28.]

제6조의2(보조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조사업평가위원을 선정하여 보조사업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4. 28.>

1. 보조금의 운용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4. 그 밖에 보조금 사업 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② 평가단은 평가대상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보조사업의 평가와 관련된 자료 및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0. 26.]

제6조의3(보조금관리위원회) ①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관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5. 8.>
1. 보조사업과 관련된 주요정책의 결정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선정 등의 타당성 확인에 관한 사항
 3. 보조금의 중복 또는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운영과 보조사업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법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보조사업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추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 보조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2명 이내의 민간위원
-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6. 4. 2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 4. 28.>
[본조신설 2015. 7. 24.]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서) ① 법 제16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의 금액
 4.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 [전문개정 2011. 10. 26.]

제7조의2 삭제 <2017. 5. 8.>

제8조(보조금의 통합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하는 금액의 기준은 개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이 연간 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업목적이 유사한 보조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운용하려는 경

우에는 각 보조사업 간 집행금액의 변경 가능성, 보조사업 예산을 통합 집행하는 경우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 간 집행금액의 변경 가능 범위, 구체적인 집행 방법 및 절차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0. 26.]

제9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 등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를 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10. 26.]

제10조(교부 결정의 취소에 따라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비로 한정한다.

1. 보조사업에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임시건물의 철거와 그 밖의 남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
2.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

[전문개정 2011. 10. 26.]

제10조의2(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는 「감사원법」 제25조에 따른 계산서, 증거서류 및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 한다.

[본조신설 2011. 10. 26.]

제10조의3(보조사업 수행의 일시 정지)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적합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0. 26.]

[제11조에서 이동 <2017. 5. 8.>]

제10조의4(보조금관리정보) 법 제26조의2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조금을 교부, 집행 및 정산하는 사업의 단위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의 유사·중복 여부의 검증 및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단위별 보조사업의 정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7. 5. 8.]

제10조의5(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① 법 제26조의3제1항제6호가목 및 같은 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각각 별표 4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8. 3. 13.>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해당 자료 또는 정보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과 같은 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관련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본조신설 2017. 5. 8.]

제10조의6(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4.>

1.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이하 "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범위, 조회 기준일 및 조회 기간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

용을 포함한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보조사업자등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내용
-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5. 8.]

제10조의7(5년 초과 보유대상 자료 또는 정보) 법 제26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조금 중복·부정 수급 여부 확인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법 제30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 배제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제한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5.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6. 법 제35조에 따른 중요재산의 처분 제한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7. 법 제36조의2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본조신설 2017. 5. 8.]

제10조의8(보조금의 예탁 및 지급) ① 법 제26조의7제5항 전단에서 "한국재정정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이하 "한국재정정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6조의7제5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각각 교부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기관(이하 "예탁기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계좌에 예탁(預託)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예탁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1.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예탁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행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예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2. 보조금의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금 전용카드의 거래승인내역
 3. 그 밖에 보조금의 집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예탁기관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요청한 보조사업자등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예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예탁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집행잔액, 이자수입 및 보조사업의 수익금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대신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5. 8.]

제11조(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6조의9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이하 "운영기관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3. 13.>

1.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거나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재정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독립기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국장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법 제26조의8제1항 각 호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장
4.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5. 보조금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사람
- ② 운영기관 협의회의 의장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⑥ 운영기관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6조의2제3항의 보조금관리정보 및 법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법 제26조의8제1항 각 호의 시스템과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법 제26조의9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한 운영계획
 4.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유지·개선 등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5. 그 밖에 운영기관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⑦ 운영기관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과 의장이 회의 때마다 지정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⑧ 운영기관 협의회의 회의는 제7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⑨ 운영기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운영기관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 5. 8.]

[중전 제11조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17. 5. 8.>]

제11조의2(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26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란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말한다. 다만,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시대상 규모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5. 8.>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 제26조의10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의10제1항제5호에 따른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는 그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8.>
- ③ 법 제26조의10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5. 8.>
 1.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
 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3.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④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의10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내용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8.>
- ⑤ 중앙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10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해당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개정 2017. 5. 8.>

[본조신설 2016. 4. 28.]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로서 해

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보조사업 수행계획이 다를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20. 9. 29.>

1. 3개월 이상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삭감
2. 6개월 이상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삭감
3. 12개월 이상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삭감

[전문개정 2011. 10. 26.]

제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 ① 법 제2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정산보고서에는 해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에 따른 사용내역 및 반환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3억원을 말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은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당초 교부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여 검증 관련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30.>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출하는 정산보고서 및 감사인이 작성하는 검증 관련 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검증항목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4. 28.]

제12조의3(특정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정사업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턴 4개월 이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감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인 선정 절차 및 감사보고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4. 28.]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한다.

1.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3.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4. 지방자치단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중앙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이자

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반환 기한을 연장받으려는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연장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내용을 적은 서류에 해당 보조사업에 관련된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치한 사항, 그 보조금을 반환하기 곤란한 이유와 그 밖에 필요한 참고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0. 26.]

제13조의2(보조금 초과액의 사용요건 등) ①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2. 원래 예정된 공정 및 집행방법을 개선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3. 일상 업무 추진방법을 개선하여 정상적 성격의 경비를 절감한 경우
4. 보조금을 절약 집행하여 집행 잔액이 소액인 경우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른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1.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지출이 감소된 경우
 2. 원래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에 따라 지출이 감소된 경우
 3. 예측한 수요와 실제 수요의 차이로 인하여 지출이 감소된 경우
 4. 예측하지 못한 상황변경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③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이란 같은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사업 중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같은 부문에 속하는 사업을 말한다.
- ④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신규사업
 2. 별표 2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초과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액"이라 한다)의 사용대상, 사용금액(사업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상적 성격의 경비는 제외한다), 사용시기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을 세워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초과액은 원칙적으로 초과액이 발생한 해당 연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사용계획에 구체적인 사용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⑦ 법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른 초과액의 사용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초과액의 발생사유 및 산출근거
 2. 초과액을 사용한 보조사업의 목적, 사업명세 및 집행액
 3. 그 밖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 10. 26.]

제13조의3(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을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 제한을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8.>

1. 보조사업자등의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보조사업자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법인명·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을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3.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 제한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등을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이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이 제한된 보조사업자등이 상호·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자등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 제한의 통보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4. 28.]

제14조(보조금 반환명령 사실 통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그 사실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반환명령을 받은 보조금수령자의 성명·상호, 나이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를 말한다)
2. 반환명령의 구체적 사유
3. 반환명령을 받은 보조금수령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금액
4.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반환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6. 4. 28.]

제14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의 기준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 5. 8.>

- ②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별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별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등"이라 한다)를 부과받는 경우를 말한다.
- ③ 중앙관서의 장은 과태료등과 제재부가금의 합계액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법 제33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⑤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보조사업자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⑧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호 본문에 따른 가산금에 더한 금액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4. 28.]

제15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중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중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재산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 ④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명확하게 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6. 4. 28.>
- ⑤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5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의 현재액이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현재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으로 하여금 해당 중요재산의 현재가치를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재산의 현재가치 평가에 소요된 비용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6. 4. 28.>

[전문개정 2011. 10. 26.]

제16조(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자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2.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 다만, 제2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

[전문개정 2011. 10. 26.]

제17조(사무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전문개정 2011. 10. 26.]

제17조의2(명단 등의 공표방법) ① 법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표 대상 보조사업자등의 성명·상호, 나이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를 말한다)
 2. 공표 대상 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 내용
 3. 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에 따른 보조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
 4. 그 밖에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공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그 게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하려는 경우 공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법 제36조의2제3항에서 "공표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공표 대상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 4. 28.]

제17조의3(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차관(차관이 없는 중앙관서는 해당 중앙관서의 부기관장을 말한다)이 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중앙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3명 이내
 2. 보조사업에 대한 전문적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서 5명 이내
-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⑤ 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6조의3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4. 28.]

제1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후에 해야 한다. <개정 2016. 4. 28., 2020. 1. 29.>

-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통보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항에서 "당초 신고포상금"이라 한다)과 달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9.>

구분	지급기준
1. 당초 신고포상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 또는 30퍼센트 미만 지급
2. 당초 신고포상금(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최소한 지급할 필요가 있는 포상금의 금액(이하 "최소지급액"이라 한다)을 정하고, 당초 신고포상금이 최소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최소지급액 지급. 이 경우 최소지급액은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0. 26.]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관서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5. 8.>

1.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운영·관리 및 이를 이용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무
3.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무
5.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33조의3에 따른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
7. 법 제35조에 따른 재산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무
8. 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 등의 공표에 관한 사무
9. 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6. 4. 28.]

부칙 <제31055호, 2020. 9. 29.>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4. 28.>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제4조제1항 본문 관련)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1. 일반여권 발급	100	
2. 119구조장비 확충	50	
3.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	30	

4. 재해 위험지역 정비	50
5. 삭제 <2019. 12. 24.>	
6. 삭제 <2019. 12. 24.>	
7. 배수 개선	100
8. 방조제 개·보수	
가. 국가관리	100
나. 지방관리	50
9. 가뭄대비 농업용수 개발	80
10. 토양개량사업	70
11.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가. 정착촌 구조개선	50
나. 개별시설	20
다. 공동자원화시설 퇴비화 (堆肥化)·액비화(液肥化) 시설	40
라. 공동자원화시설(에너지화 시설)	50
12. 삭제 <2019. 12. 24.>	
13. 연근해어선 감척(減隻)	연안: 80 근해: 100
14. 농기계임대사업	50
15.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100
16. 유기질비료 지원	정액
17.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50
18. 소규모 바다목장	50
19. 농가경영안정 재해 대책비 (공공시설)	국가관리: 100 지방관리: 50 한국농어촌공사관리: 70
20. 풋거름 작물 종자대금	50
21.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30
나.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계속: 40

	신규: 30	
22.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50	
23. 농산물유통 개선	40	
24.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수도권: 50 그 밖의 지역: 70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은 수익자부담 50%
25.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일반: 50 추가: 70 우선: 10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구분에 따라 지원
26. 폐기물 처리시설	서울특별시: 30 광역시: 40 시·군 및 도서지역: 50	서울특별시·광역시는 공동시설만 지원하고, 시·군의 단독시설 및 도서지역의 매립시설은 30퍼센트 지원
27. 삭제 <2016.4.28.>		
28.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70	
29.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정액	
30. 비위생매립지 정비	50	
31. 하수처리장 확충		
가. 광역시	10	
나. 광역시(총인처리시설)	50	
다. 시지역(읍 이상)	50	
라. 군지역(면 이하)	70	
마. 주한미군공여구역, 방폐장 주변지역	80	
32. 분뇨처리시설 확충	50	
33.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70	
34.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광역시: 30 도청소재지: 50 일반 시·군: 70	
35.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가. 광역시	60	

나. 광역시(군지역)	80	
다. 시·군·구	80	
라. 지역단위 통합관리 센터 (전지역)	70	
36.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정액	공사비만 해당(용지보상비 제외)
37. 삭제 <2018. 12. 18.>		
38. 경전철 건설	정액	
39. 항만배후도로 건설	정액	
40. 해양 및 수자원 관리	50	내역사업 중 연안보전사업은 보조율 70%
41. 삭제 <2019. 12. 24.>		
42. 지역거점 조성 지원	100	내역사업 중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은 보조율 50%
43.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 지원	30	
44. 삭제 <2019. 12. 24.>		
45. 해양보호구역 관리	70	
46. 도시철도 건설	서울: 40 지방: 60	민간투자 경량전철건설사업은 제외
47. 산림병해충 방제		
가. 약제대금	100	
나. 기타	50	
48. 산불방지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	40	
49. 조림사업(造林事業)		
가. 장기수(長期樹)	60	
나. 큰나무	50	
50. 숲 가꾸기	50	
51. 사방사업	70	
52.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	50	
53. 임산물(林産物) 유통구조 개선	50	
54. 임산물 생산기반 정비	20	
55. 삭제 <2019. 12. 24.>		
56. 임도시설	70	

57. 산림서비스 증진	50	
58.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50	
59. 시·군농업기술센터 육성·운영 및 시설장비 보강	50	
60. 원원종(原原種) 및 원종 생산	100	
61.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50	
62.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100	
63. 지역농업특성화기술 지원	50	
64.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40	용지매입비 제외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보조율 80%
65. 관광자원 개발	50	용지매입비 제외
66. 전국체육대회 운영	50	
67. 국제경기대회(동계대회 포함) 지원		
가. 도로(동계)	50(70)	
나. 경기장	30	
68. 체육진흥시설 지원	30	용지매입비 제외
69. 전국체전시설 지원	30	용지매입비 제외
70. 삭제 <2019. 12. 24.>		
71. 지역문화산업 육성 지원	50	
72. 삭제 <2019. 12. 24.>		
73.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70	
74.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	50	
75.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소아환자 관리	서울: 30 지방: 50	
76. 한센환자 보호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50	
77. 한센양로자 지원	서울: 30	
78. 국가예방접종 실시	지방: 50	
79. 방과 후 돌봄서비스	서울: 30 지방: 50	

8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서울: 50 지방: 8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8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서울: 50 지방: 8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8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급여	서울: 50 지방: 8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8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서울: 50 지방: 8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

8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서울: 50 지방: 80	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이하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85.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서울: 50 지방: 80	
86.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87.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서울: 50 지방: 80	
88.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서울: 50 지방: 70	
89.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서울: 35 지방: 65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90.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서울: 50 지방: 80	
91. 사회복지보장시설 및 장비 지원	50	재가노인복지시설 개수 · 보수 제외 용지매입비 제외
92. 어린이집 기능 보장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의 신축 · 증축 · 개축만

93.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화장로	70	해당(용지매입비 제외) 용지매입비 제외 화장로 개수·보수는 50%
94. 긴급복지지원	서울: 50 지방: 80	
95. 보육돌봄서비스, 육아 종합지원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어린이집 지원 및 공공형어린이집	서울: 20 지방: 5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 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96.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운영	서울: 50 지방: 80	
97. 장애인활동 지원	서울: 50 지방: 70	
98. 장애인연금	서울: 50 지방: 70	
99.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울: 50 지방: 70	
100.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성장촉진지역: 80 사업비의 3분의2	
101.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80	
102. 사회적기업 육성	75	내역사업 중 사업개발비지원사업은 70%
103. 지방과학문화시설 확충사업	50	
104. 가족관계등록사무	100	
105. 위험도로구조 개선	50	
106.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50	회전교차로 설치 시범사업은 정액 지원
107.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50	
108.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50	

109.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50	
110. 삭제 <2019. 12. 24.>		
111.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50	
112. 하수관로 정비	광역시: 30 도청 소재지: 50 시·군: 70	가. 개량(교체·보수)의 경우 광역시는 20%, 도청 소재지는 30%, 시·군은 50% 나.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도청 소재지의 기준보조율에 따른다.
113. 비점오염저감사업	일반: 50 비점오염원관리지역: 70	
114. 우수저류시설 설치	50	
115.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116.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117.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118. 양로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119. 정신요양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120.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50	
121. 학대아동보호쉼터 설치 및 운영	40	
122.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	사업 수행의 근거 법령·성격에 따라 정률(100%, 80%, 70%, 50%, 40%, 30%, 20%) 또는 정액 보조	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대상사업 명칭과 기준보조율을 분명하게 밝히거나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12. 24.>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 (제4조제1항 단서 관련)

사 업	
1.	초·중등학교 학생 중식 지원
2.	초·중등학교 인터넷통신비
3.	민간개발소프트웨어
4.	사이버 가정학습
5.	일반계 고교 직업교육
6.	전문계 고교 확충 등(경상)
7.	지역평생교육센터 운영
8.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경상)
9.	주요 교육정책 홍보
10.	교육정보화우수기관 지원
11.	실업계 고교 확충 등(자본)
1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자본)
13.	농어촌 실업계 고교 학과 개편
14.	저소득층 고교생자녀 학비 지원
15.	중학교학력 인정시설 수업료 지원
16.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17.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利差補填)
18.	지역정보화 지원
19.	자전거도로 정비
20.	전통향교문화 전승 보존
21.	공공도서관 운영
22.	농어촌공공도서관 지원(자료 구입)
23.	문화의 집 조성
24.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중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25.	문화시설 운영평가 인센티브
26.	관리책임자대회
27.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
28.	유명예술인 기념조형물 설치
29.	조각공원 조성
30.	통영국제음악제(공모사업은 제외한다)
31.	문화학교 운영
32.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33. 지역별 특성화 사업
34. 문화인물 기념사업
35. 노랑해전 재현(공모사업은 제외한다)
36. 문화의 거리 조성
37. 조선통신사행렬 재현(공모사업은 제외한다)
38. 근대문인 탄생 100주년 기념
39. 예술창작공간 조성
40.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
41. 공주미술제(공모사업은 제외한다)
42. 청소년문화의 집(리모델링만 해당함)
43. 청소년상담실 운영
44.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45.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46. 농가도우미 지원
47.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48. 농촌 PC 보내기 사업
49. 농산물유통시설 보완
50. 지방자치단체 종자 보급
51. 시·도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
52.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53. 삭제 <2015.7.24.>
54. 사회복지시설 운영
55. 공공보건인력 개발
56. 공공보건사업
57.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58. 지역봉사사업
59. 장애인복지관 운영
60.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
61.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62.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63. 공동생활가정 운영
64. 의료재활시설 운영
65. 장애인체육관 운영
66.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67.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68. 청각장애인 한국수어통역센터 운영

69.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70. 장애인 해피콜봉사센터 운영
71. 장애인특별운송사업(운영비)
72. 편의시설설치 시민 촉진단
73.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수술 지원
74.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75. 장애인생활시설(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영유아거주시설은 제외한다) 운영
7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77. 장애인복지관 기능 보강
78. 장애인체육관 기능 보강
79.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차량 지원
80. 장애인생활시설 치과유닛
81. 경로당 운영(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제외한다)
82. 경로당 활성화 지원
83. 경로식당 무료급식
84.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85. 노인건강진단
86. 치매상담센터 운영
87.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
88.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
89.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90. 노인시설(양로시설은 제외한다) 운영
91. 노인복지회관 신축
92. 아동시설 운영
93. 결연기관 운영
94. 입양기관 운영
95. 삭제 <2015.7.24.>
96.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97. 소년소녀가장 지원
98. 가정위탁양육 지원
99.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00. 결식아동 급식
101. 삭제 <2015.7.24.>
102.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
10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104. 미혼모 중간의 집 운영
105. 사회복지관 운영
106.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107.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108. 사회복지무요원 인건비
109. 업무보조 사회복지무요원 인건비
110.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
111. 노숙인 등 보호(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운영은 제외함)
112. 쪽방생활자 지원
113. 중소도시보건소 신축
114.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방센터 운영
115.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운영
116. 노인복지회관 운영
117. 재가노인복지시설 개수·보수
118. 결연기관 PC 구입비
119.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120.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이차보전
121.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이차보전
122. 하수처리장 이차보전
123. 재활용기반시설 이차보전
124. 나눔장터생활문화 정착 지원
125.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126. 시·도 주최 여성주관사업 지원
127.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128.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129. 선계획 후개발 국토이용체계
130. 산업단지문화재 조사비
131. 환승주차장 건설
132. 삭제 <2019. 9. 10.>
133. 삭제 <2019. 9. 10.>
134. 삭제 <2019. 9. 10.>
135. 김 유기산처리제 구입
136. 불가사리 구제(驅除)
137. 자영수산물과 급식비 지원
138. 장보고축제
139. 담수어 첨단양식장 시설

140. 내수면환경조사, 어도시설(魚道施設) 등 지원
141. 내수면시험장 개수·보수
142. 연어 치어(稚漁) 방류
143. 재래어종 치어 방류
144. 수산물유통시설 보완
145. 수산물 위생안전
146. 잔류물질 통제계획 이행
147. 수출주력상품 개발
148. 국제수산산업전(부산광역시)
149. 양식기반시설
150. 마을어장 개발
151. 현충시설(顯忠施設)
152. 시·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153. 시·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54. 과학영농기술 현장문제해결기술 개발비 지원
155. 원격영농상담시스템
156. 도 농업기술원 정보전산화사업
157. 친환경 화장실
158. 개발기술소득사업 및 지역특성화시범사업
159. 영농4H시범 영농사업
160.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지원
161. 보호수(保護樹) 정비
162. 임산물 유통·가공
163. 인권교육시범학교 운영
164. 소하천 정비
165. 농어업기반 정비
166.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167. 거점지역기반시설 지원
168.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169. 물류단지 진입도로 조성
170.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지원
171. 지방하천 정비
172. 산림경영자원 육성
173. 관광지 개발조성
174. 문화관광자원개발 조성
175.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176.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지원(시설 개·보수 사업에 한정한다)
177. 관광안내체계 구축(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지원하는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사업은 제외한다)
178. 탐방로안내체계 구축
179. 청소년시설 확충
180.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지원
181.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물류기반 조성
182.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
183.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
184. 문화특화지역 조성
185.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
186. 문예회관 건립 지원
187.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188.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
189. 지역 전통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190.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정부지급금
191. 복합문화시설 조성
192. 전통사찰 보수정비(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
193. 제주 태고문화센터 건립
194. 대구디자인패션산업 육성 지원
195.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
196. 광주공예문화산업 육성
197. 경기문화창조허브 설립 운영
198.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199. 작은영화관 건립
200. 실내영상스튜디오 건립
201. 지역문화행사 지원
202. 지역대표공연예술제
203.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204.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원
205.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지원
206. 반려동물놀이시설 조성
207. 마을만들기
208. 기초생활인프라 정비
209. 농촌다움 복원
210. 농촌현장포럼

211.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212. 농촌 재능나눔
213.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214.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215. 식수전용저수지 확충
216.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
217. 생태하천복원(수계기금으로 지원하는 수질개선사업은 제외한다)
218.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219.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
220. 비산먼지저감사업
221. 서식지 외 보전기관 설치(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서식지 외 보전기관 지원 사업은 제외한다)
222.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223.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
224. 생태휴식공간 확대
225.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 지원(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
226. 제주국제자유도시기반시설 지원
227.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제외한다)
228. 지역 해양관광자원시설 지원
229. 지역 마리나시설 조성
230.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231.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
232. 공유수면 방치선박 정리 지원
233. 내항여객선 운임보조(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
234.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및 관련 냉동·냉장시설 지원(클러스터형 사업은 제외한다)
235. 지방자치단체 수산물 안전검사체계 구축
236. 낚시터 환경개선
237. 적조피해 예방 지원(가두리시설 현대화 지원을 말한다)
238.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239. 지역활력화작목 기반 조성
240. 지역특화 우수품종 보급
241.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
242.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243.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
244. 농업인조직체 가공 플랜트 지원

245. 농업전문인력 양성(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
246. 농가경영개선 지원(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
247. 농업기계안전교육(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
248.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249. 숲길조성·관리
250.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251. 유아숲체험원 조성
252. 치유의 숲 조성
253. 지방자치단체 도시숲 조성
254. 지방정원 조성
255.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256. 지역생태숲 조성
257. 산림교육센터 조성
258. 산림복지단지 조성
259. 수목장림 조성
260. 공동체 정원 조성
261. 임도시설 조성 및 관리(간선임도 조성은 제외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1.10.26>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제5조제1항 관련)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의 지표와 보조사업 해당 지역의 발전도 및 국가재정 사정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지표	산식 및 사용자료 등
1. 재정자주도	<p>가. 계산식: $\{(\text{지방세수입} + \text{세외수입} + \text{지방교부세} + \text{재정보전금} + \text{조정교부금}) / \text{일반회계 예산규모}\} \times 100$</p> <p>나.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 예산상의 재정자주도를 사용한다.</p>
2. 분야별 재정지출 지수	<p>가. 계산식: $\{\text{분야별 세출예산 순계(純系) 규모(일반회계 + 특별회계)} / \text{세출예산 순계 규모(일반회계 + 특별회계)}\} \times 100$</p> <p>나. 분야별 세출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기능 분류에 따른 13개 분야(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및 기타) 각각의 예산 규모를 말한다.</p> <p>다.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 예산상의 분야별 재정지출 지수를 사용한다.</p>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0. 4. 28.>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10조의5 관련)

구분	요청 자료 또는 정보
법 제26조의3 제1항제6 호가목 관련	1. 「부가가치세법」 제55조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2.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3.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4.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5.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6.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자료
법 제26조의3 제1항제8 호 관련	1. 「고용보험법」 제4조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2. 「고용보험법」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과 관련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자료
	3. 「고용보험법」 제21조에 따른 근로자의 휴직정보
	4. 「국가기술자격법」 제7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정보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에 따른 장기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에 관한 자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지급에 관한 자료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자료
	9.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지원사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관한 자료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

<p>훈대상자 교육비 지원에 관한 자료</p>
<p>1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제대군인 사회복지 지원에 관한 자료</p>
<p>12. 「군인연금법」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 지급에 관한 자료</p>
<p>1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자료</p>
<p>14.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p>
<p>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적공부</p>
<p>16.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정보</p>
<p>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자금지원과 관련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자료</p>
<p>1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정보</p>
<p>19. 「상업등기법」 제2조에 따른 등기기록</p>
<p>20.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자료</p>
<p>21.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 지급에 관한 자료</p>
<p>22. 「별정우체국법」 제24조에 따른 장기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p>
<p>2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자료</p>
<p>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른 사망자정보</p>
<p>2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정보</p>
<p>26. 「의료급여법」 제3조의 수급권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자료</p>
<p>27.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재해유족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p>
<p>2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 정보</p>
<p>2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에 따른 부정당 제재정보</p>
<p>30.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등록정보</p>

31. 「어선법」 제13조에 따른 어선 등록정보
32.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행정처분에 관한 자료
33. 「주민등록법」 제28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 성명 및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3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에 관한 자료
3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자료
36.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국민건강 보험료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자료
3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자료
38.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55조의2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자료
39.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자료
4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자료
41. 그 밖에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운영기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7. 5. 8.>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2제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재부과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가. 법 제33조의2제1항 제1호의 사유에 해 당하는 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0%
나. 법 제33조의2제1항 제1호의 사유에 해 당하는 간접보조사 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을 위반한 경우	200%
다. 법 제33조의2제1항 제2호의 사유에 해 당하는 보조금수령 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2.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3. 부과권자는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반행위가 해당 보조금 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2021년도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

부록 3.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시행 2020. 7. 1.]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106호, 2020. 6. 30.,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재정성과평가과), 044-215-537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의 보조금과 제2조제4호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해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중 정당보조금, 국제기구 지원, 해외 긴급구호, 개도국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지원, 남북협력 등이 지침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를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하며,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2. ‘보조금’,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간접보조금’, ‘간접보조사업’,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3. ‘상위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목적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해주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말한다.
4. ‘내역사업’이란 세부사업의 하위단위로서 보조금법 제12조에 따른 예산의 통지, 보조금의 교부신청, 집행, 정산 등 보조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단위를 말한다.
5.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보조금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라 구축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말한다.
6. ‘부정수급’이란 「보조금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와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7. ‘별도 계정’이란 「보조금법」 제34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단위를 말한다.
8. ‘중요재산’이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9. ‘보조사업비 카드’란 보조금의 집행을 목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 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보조금법 시행령」 제10조의8제3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 전용카드를 말한다.
10. ‘정산’이란 「보조금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사용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11. ‘검증’이란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 ‘검증기관’이란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감사인을 말한다.
13. ‘예탁기관’이란 「보조금법 시행령」 제10조의8에 따라 보조금을 하위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 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업무를 위탁 및 예탁 받은 기관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을 말한다.
14. ‘업무대행자’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전담기관이나 상위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시스템 사용을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보조금법」 제2조에서 정의한 바를 준용한다.

제4조(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① 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수령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보조사업의 연장평가

- 2. 보조금시스템 구축 및 운영, 통합관리지침 마련
- 3. 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4.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 5. 그 밖에 보조사업의 효율적 집행, 평가, 점검 등을 위한 조치
- ③ 중앙관서의 장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신규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관리체계 사전검토
 - 2. 부정수급 실태점검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 3. 보조사업자 선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
 - 4. 보조사업자 관리감독 및 보조사업의 집행점검
 - 5. 그 밖에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보조사업 관리규정 마련 등
-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적법한 방법 및 절차를 통해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 2.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상위보조사업자에게 보고
 - 3. 사업 완료시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 4.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 등에게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경우, 보조금 법령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등
 - ⑤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법 및 보조금법 시행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보조금을 수령하여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⑥ 기획재정부, 중앙관서,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의2(보조금 예산의 관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내역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② 내역사업의 분류, 명칭, 속성정보는 별표2 내지 별표4에 따른다.
- ③ 내역사업 중 하단계의 내역사업을 신설, 변경, 삭제시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고보조금을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사업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출연금, 출자금 등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수행자를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3 (보조금 예산의 통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예산안을 내역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9월 15일까지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보조금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내역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2장 보조금관리위원회(‘보조금법 시행령 제6조의3 보조금관리위원회’ 관련)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보조금법 시행령」 제6조의3의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정부위원은 보조사업을 관리하는 주요 중앙관서의 1급 공무원으로 한다.
- ③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식·경험·성별을 고려하여 12명 이내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 2. 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조금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
 -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 4. 시민단체 대표
 - 5. 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 6. 그 밖에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새로운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는 그 임기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⑤ 위원회는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을 간사로 둔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을 포함한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하며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보조금법시행령」 제6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③ 공무원인 정부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보조사업 선정(‘보조금법 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 관련)

제9조(보조사업 선정기준) ①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을 신규로 선정하거나 사업의 계속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사전절차 이행 여부
 3.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4. 보조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 여부 등
- ②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에 의한 기본계획 중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제10조(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국고보조금 규모가 100억 이상인 신규 보조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적격심사를 거쳐야 한다.

- ② 적격성 심사의 심사대상, 심사절차, 심사방법, 등 심사기준은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③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수행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최종결과는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한다.
- ⑤ 각 부처는 적격성이 인정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1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① 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는 「보조금법」 제15조 및 부칙 제2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보조금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며 구체적인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과 평가결과는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②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제① 항의 연장평가 결과를 보조금 관련 예산편성 및 기타 재정운용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보조사업의 시행 공고) 중앙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총괄표와 세부사업계획을 해당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회계연도의 3월 31일까지 보조금시스템 및 해당부처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계획 수립여부,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고시기, 공고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외교, 통일, 안보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고가 적절치 않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장 보조사업자 선정(‘보조금법 제3장 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관련)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①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 ② 중앙관서의 장은 동일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신청시 수혜이력과 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③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가능성과 지방재정 영향평가결과, 부지확보 여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

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4조의2에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제14조(보조사업자 공모) ① 중앙관서의 장은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보조금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게시하되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해당 부처 홈페이지나 일간지 등에 공고문을 함께 게시할 수 있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4조의2(중복수급 확인·점검) ① 중앙관서의 장 및 상위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중복수급 여부를 보조사업자 선정시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중앙관서의 장 및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중복수급 여부를 사후에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중복수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④ 보조금수령자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외교, 안보 등 국가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업은 제1항 및 제2항의 중복수급 확인·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중복수급 검토에서 제외된 내역사업 및 동 내역사업의 모든 하위 상세내역 사업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복수급 확인·점검 시 제외되도록 보조금시스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수급자격 확인·점검)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 상위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수급자격의 적격 여부를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확인·점검할 수 있다. 단,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수급자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자가 하위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수급자격 확인·점검하는 경우에 민간보조사업자는 필요한 정보를 당해 보조사업을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관계기관에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자료를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과 예산·재정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2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공모 관련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심의내용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심의내용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

⑤ 보조사업자가 공모방식으로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제16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3. 삭제
 4. 삭제
 5. 삭제
 -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
 - ③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④ 보조사업자가 중앙관서의 장에게 교부신청시 보조사업별 계좌정보를 포함하여 교부신청 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는 그 보조금을 예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단,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기관에 예탁하여 교부되는 보조금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예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④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5장 보조사업 집행관리(‘보조금법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관련)

제18조(보조금 사용방법) ① 보조금 사용방식은 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사용만을 인정한다.

- ② 보조금 지출거래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카드사용 및 제한)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1의 업종에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보조사업자는 별표 1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19조의2(보조사업비카드 부수수익의 배분 등) 예탁기관은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으로 발생하는 캐시백 등 부수수익을 보조사업 재원별 비율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부수수익은 예탁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한국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제20조(별도 계정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34조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별로 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

는 변경할 수 없다.

- ③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에 따라 예탁기관에 예탁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
- ④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도 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0조의2(업무처리의 대행) ① 보조금시스템으로 업무처리를 수행하지 못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 ② 업무대행자의 지정을 원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3(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회계연도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 보조금을 수령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을 따른다.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보조사업과 관련된 계약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업무를 관리함에 있어서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재 관련 공사, 연구결과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범사업 등 이에 따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2.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③ 제2항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2조(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 ①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30억원(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민간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2. 공사계약 체결
3.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를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외 공사, 재해 또는 긴급 복구 공사, 기술의 특수성을 요구하는 공사,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재 관련공사
2.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 단 공사계약 체결은 제1항에 따른다.
3. 그 밖에 조속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 준공 이전에 현장조사 등 집행점검을 위해 조달청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부담의 경우
 2.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에 한한다.)
 3.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자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업인 경우
-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제2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기부담분 확보 이전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확보가 불가피하게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기부담금 확보이전에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전년도 자기부담금 확보 및 보조사업의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⑥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다.
- ⑦ 제1항, 제2항, 제4항 내지 제6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4조(예산절감액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31조제4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4호의 소액은 5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 ⑤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
- ②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반납 받아야 하는 ‘집행잔액’은 보조금시스템의 재원별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하고, 반납받아야 하는 ‘보조사업의 수익금’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보조금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통일·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집행잔액을 산정한다.
 -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보조사업자는 예탁된 보조금의 집행잔액, 이자수입 및 보조사업의 수익금을 예탁기관으로 하여금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게 할 수 있다.
 - ⑥ 보조사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민간사업자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한다.
 - ⑦ 보조사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한다. 다만, 반납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자는 「보조금법」 제31조제2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다.
 - ⑧ 제1항, 제5항과 제7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 제27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6조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

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1. 3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이내 보조금 삭감
2. 6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이내 보조금 삭감
3. 12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이내 보조금 삭감
- ④ 보조사업자 등의 정산 방법, 정산보고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서 정한다.
- ⑤ 제1항과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8조(정산보고서의 검증) ①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보조사업자 등의 정산보고서 검증은 「보조금법」 제27조제2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해당 법령에 따른 결산서 또는 회계감사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검증기관의 정산보고서 검증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이 작성하는 검증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검증항목 등은 중앙관서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을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전액 교부·지급하는 사후 보조의 경우
 2. 그 밖에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등의 특성으로 인해 이 지침에 따른 검증이 곤란한 경우

제29조(검증기관의 책임) 중앙관서의 장은 검증기관의 정산결과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과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라 작성되지 않아 오류나 누락이 외부기관의 감사 등에 의하여 발견된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년간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
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
3.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경미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을 지체하거나 검증 조서의 작성·관리가 부실한 경우 주의 조치를 취하며 연간 3번 이상 주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1년간 제한

제30조(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회계감사를 위한 세부기준은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다

- ②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3제2항의 회계연도가 보조사업자 등의 사업연도와 다른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등의 사업연도를 회계연도로 간주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다.

제31조(자료보관) ①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사업의 수행, 정산, 회계감사 등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 국세청 등으로부터 카드사용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송받은 경우, 종이영수증 원본을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시스템에 제출하여 등록된 자료는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제32조(보조사업 집행점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등의 수행상황을 점검하며 다음 각 호의 보조사업 등을 주요점검대상으로 한다.

1. 총사업비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의 경우
2.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보조사업의 경우
3. 부정수급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보조사업의 경우
4.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조사업의 경우
5.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의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는 조사개시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현장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 ③ 중앙관서의 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조금 반환 결정은 검찰의 공소제기 시까지 하여야 한다.
- ④ 중앙관서의 장은 조사결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제33조(보조사업점검평가단) 중앙관서의 장은 제32조의 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위하여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운영하며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점검 실적은 연1회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3조의2(보조금관리정보의 목적 외 이용) ① 「보조금법」 제26조의6제3항에 따라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관리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조금관리정보의 제공을 승인할 수 있다.

1. 이용 목적의 정당성
2. 이용자료범위의 적정성
3.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4. 신청내용의 타당성·적합성·공익성
5. 이용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확보 여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 제26조의6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장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보조금법 시행령 제11조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제34조(구성) ① 「보조금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보조금법」 제26조의9의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으로 한다.

② 「보조금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의회의 민간위원은 보조금 또는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시스템 보안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제5조제3항 각 호의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식·경험·성별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사람으로 한다.

제35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구성원 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협의회의 회의) ① 회의는 의장의 요청에 따라 반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보조금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고위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로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이 대리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보조금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한국재정정보원 원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 직위의 임원이 대리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의장은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4의 「보조금법」 제26조의3제1항제8호 관련 35호에 따라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중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는 안건 상정 전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 한다)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간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부의 과장급 직위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38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의 안건을 미리 연구·검토하고, 협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의 의장이 회의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2.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회에서 처리하도록 위임받은 사항

③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지명된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고, 구성원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중앙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원, 제34조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제38조제2항에 따른 안건과 관련하여 개최하는 실무협의회 회의는 제3항에 따른 위원 중 실무협의회 의장이 회의 때마다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부의 과장급 직위 공무원 중에서 실무협의회 의장이 지명한다.

⑥ 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9조(수당 등의 지급)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비밀준수의무) 위원은 회의에 참석 시 알게 된 정보나 관련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보조금법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관련)

제41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33조의2 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별표 5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33조제3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명령에 대한 사항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한 경우 보조사업자 등에게 위반행위의 종류와 예상 제재부가금 등 관련사항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중앙관서의 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중앙관서의 장은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42조(과오납의 환급)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등과 관련하여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환급하되, 환급 가산금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43조(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결정 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등의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제한과 지급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한다.

-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제1항의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사업 수행배제에 관한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중앙관서의 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제한 또는 보조금수령자 수급제한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사항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⑥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의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제한과 지급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하거나 타 기관에서 통보되어 부정수급으로 인지된 사항을 보조금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부정수급심의위원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제재부가금 산정,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대상자 및 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보조금법」 제31조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조사업자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 「보조금법」 제39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포상금액 및 그 밖에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③ 부정수급심의위원장은 해당 중앙관서에서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중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며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부가금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안건 관련 담당공무원, 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의뢰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제1항 내지 제5항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제45조(부정수급 점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보조금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반환 건수 및 반환 금액
 2. 「보조금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지급 금액
 3.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대상자 수 및 명단
 4.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징수 건수 및 금액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건수 및 대상자 명단
 6. 기타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보조사업 관련 정책수립 및 부정수급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사항을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의2(부정수급 모니터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시스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점검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 ⑤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를 실시한 즉시, 그 내용을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장 보조사업 사후관리(‘보조금법 제6장 보칙’ 관련)

제4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보고는 「보조금법」 제35조제1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별지 제3호서식 ‘중요재산 현황’ 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보조금법」 제35조의 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등 자산평가업무에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을 「보조금법」 제35조제2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해야 하고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변동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시 기간은 최초 공시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의 경우 10년
 3. 항공기의 경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의 경우 5년
-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을 관리하되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재산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처분제한과 반환은 「보조금법」 제35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 ②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재산양도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며 「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제2호의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조건 등을 통해 정하는 기간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까지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본다.

제48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는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다.

- ②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 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보조금법」 제39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

- ② 「보조금법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한은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행정심판, 소송 등이 진행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39조의2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④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⑤ 중앙관서의 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장 기타

제5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106호, 2020. 6. 30.>

제1조(시행일)이 공고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제19조 관련)

-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接客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별표 2】 내역사업 단계별 분류기준 (제3조 관련)

수준	특징	상·중·하 단계의 분류방법
상·중 단계	중앙기관 별로 탄력적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여부) 선택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보고하거나 통계목적 등 가장 중요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단위로 등록·관리 ▪ (작성방향) 중앙기관별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단위로 분류 ▪ (고려사항) 속성정보에 의해 관리가 가능한 내용은 상·중단계에서 별도 관리 불필요
하 단계	기획재정부 협의 (부처 임의변경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여부) 필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등록·관리 ▪ (작성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부·집행·정산하는 단위 - 사업별 속성정보를 관리하는 단위 - 광역시도 및 기초 지자체의 세부사업과 매핑 되는 단위 - 지역별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동일 내역사업으로 관리(e호조를 통해 지자체별 세부사업으로 자동 분류) - 특정 지역·기관·목적 사업의 경우, 별도 내역사업으로 분리하여 관리 ▪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삭제, 변경 시 반드시 재정당국과 사전 협의 필요 - 하나의 내역사업이 복수의 실/과에서 수행되는 것을 지양

【별표 3】 내역사업 명칭부여 기준 (제3조 관련)

○ 사업 특성을 반영한 명칭 사용

- 추상적 표현을 지양하고, 명칭만으로도 사업 내용을 추정할 수 있도록 명명

현행	개선(예시)
상품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류 융복합 협력프로젝트 발굴 지원(한류상품수출지원) • 한류 융복합 협력프로젝트 발굴 지원(아이템발굴컨설팅)
Biz-Desk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콘텐츠기업 수출경쟁력강화 지원(Biz-Desk운영) • 중소콘텐츠기업 수출경쟁력강화 지원(콘텐츠박람회개최)

○ 단순 비용성의 명칭 등 지양

현행	개선(예시)
인건비	대한체육회 운영 지원(인건비)
경상비	대한체육회 운영 지원(경상비)
지방이전비	대한체육회 운영 지원(지방이전비)
고유사업비	대한체육회 사업비 지원(고유사업비)

○ 기관명 표기

- 특정 기관에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 내역사업명에 기관명을 포함

현행	개선(예시)
저작권 조정제도 운영	한국저작권위원회 운영(저작권 조정제도)
저작권 심의제도 운영	한국저작권위원회 운영(저작권 심의제도)

○ 종결단어 표현

- 동사형 명사로 사업명 종결어 사용

○ ○사업 관리	△ △ 상황	□□단지 조성
○ ○ ○센터 건립	△ △ △ 센터 운영	□□운영비 지급
○ ○차량 구입(구매)	△ △ △ 지도자 육성	□□□사업발굴 지원
○ ○커뮤니티 구축	△ △ 지역 정비	□□단체 후원 등

【별표 4】 내역사업 관리속성 구성 (제3조 관련)

대분류		세부항목
공 통 속 성	지역별	국내(지역공통, 특정 광역시도)
		국외(아시아, 유럽,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성 별	남성, 여성
	생 애 주기별	영유아(0~5세), 아동(6~12세), 청소년(13~18세), 청년(19~29세), 중년(30~49세), 장년(50~64세), 노년(65세이상)
	소 득 기준별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소득하위 50%이하, 소득하위 70%이하, 기타취약계층
	경 제 활동별	사회초년생, 근로자/직장인, 농업인, 임업인, 축산인, 취업모, 실직자/구직자, 창업자, 자영업자
	교 육 단위별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일반인 등 기타
	기 업 규모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개 인 가구구성 유형별	다문화가족, 이주배경청소년, 새터민, 한부모, 신혼부부, 임신/출산,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서 비 스 유형별* (18개)	행정/통일/외교 지원, 안전 보장, 교육 보장, 문화 활동, 관광/휴양 활동, 종교 활동, 환경 향상, 사회복지 향상, 보훈 향상, 고용안정, 주거안정, 보건/의료지원, 1차산업지원, 산업/에너지 지원, 국토개발지원, 교통/물류 진흥, 방송/통신 진흥, 과학기술 진흥
개 별 속 성 (예)	보 훈 유형별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기타보훈대상자
	장 애 인 유형별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 모든 보조금을 제공자인 정부의 기능별구분에서 수혜자인 국민의 입장(서비스 관점)으로 재분류

【별지 제1호 서식】 보조사업 총괄표

I. 보조사업 총괄표

1. 공모사업

민간보조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내역 사업	지원 예산	지원 대상

자치단체보조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내역 사업	지원 예산	지원 대상

2. 비공모 사업

민간보조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내역 사업	지원 예산	지원 대상

자치단체보조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내역 사업	지원 예산	지원 대상

II. 세부 사업계획

사업명 (세부사업 또는 내역사업 등)

○ 지원예산: (예산금액)

○ 지원내용: (정률/정액, 자부담, 지원기간 등 기재)

○ 지원대상: (민간/지자체 지원 구분하고 구체적인 지원대상 기재)

○ 사업일정: (공모일 경우, 공모기간, 선정일자, 사업기간)

○ 사업담당: (보조사업 담당자 연락처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예시)

수신 : ○ ○ ○ (보조사업자)

1. ○ ○ ○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보조 사업명:

보조 사업자: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사업규모:

(단위: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용자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 국고보조 비율 : OO%

○ 사업내용 :

예산 과 목 : 0000회계 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20	123	3000	3031	306	330-01
교통및물류	도시철도	0000	0000	00000	자치단체 경상보조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 ○ 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중요재산 현황

중앙관서명					
세부사업명					
재 산 명					
유 형					
목적(용도)					
주소	시·도 구분				
	상세주소				
면적(m ²)					
내역	수량				
	단위				
취득가액(원)		계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현재가액(원)					
보조금유형					
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					

【별지 제6호 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① 신청인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②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③포상금 지급신청 내용	신고접수 번 호	제 - 호	통보서 수령일
	신청금액	포상금 원	
④포상금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신청인 (예금주)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관서의 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7호 서식】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업무 대행기관	소속기관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위임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임대상사업		
위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시스템에서 처리해야 하는 정보처리 업무를 업무대행기관을 통해 처리합니다. · 단, 은행이체 관련한 업무는 제외합니다. · 업무대행기관은 해당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위임대상사업에 대한 대행업무를 수행합니다. · 위임업무 수행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일체의 책임은 업무대행기관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업무대행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

유의사항

※ 신청인은 보조금시스템 사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보조금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조금시스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가입,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절차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 의사 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조금시스템은 회원가입 및 정보공개 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수집항목

가. 보조금시스템 회원정보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법인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공인인증서, 주민번호

- 선택항목 : 일반전화번호, 이메일수신여부, SMS수신여부

(2) 수집방법

가. 업무용 포털

나.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에 의한 오프라인 청구서 시스템에 입력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1) 보조금시스템 회원정보

- 수집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2, 전자정부법 제9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보유기간 : 탈퇴 후 5년까지

(2) 주민등록번호 수집고지

- 보존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2, 전자정부법 제9조

위와같은 근거로 주민번호 수집, 이용을 관리합니다.

(3)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이용자는 보조금시스템에서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의 거부 시에는 회원가입, 업무시스템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정보제공 동의 내용			
거래은행	계좌번호	정보내용	비고
		입출금 정보 잔액 정보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서 유효기간	동의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정보제공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정보를 제공받을 자	한국재정정보원(보조금시스템 운영기관) 보조사업 관리기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국고보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을 위하여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의 계좌에 대한 정보제공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업무대행기관의 장 귀하

유의사항

- ※ 동의자의 자필서명(인감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
- ※ 동의자의 금융정보는 국고보조 사업의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합니다.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시행 2020. 7. 1.]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106호, 2020. 6. 30.,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재정성과평가과), 044-215-537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정산보고서 검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작성하는 정산보고서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검증기관이 검증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증"이란 검증기관이 이 지침에 따른 절차를 수행하고 정산보고서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2. "검증기관"이란 이 지침을 적용하여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 ② 제1항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한 바를 준용한다.

제4조(검증기관의 의무 등) ① 검증기관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검증기관이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지침에서 정하는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을 따른다.
- ③ 검증기관은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와 관련된 장부와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요구에 지체 없이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④ 검증기관은 정산보고서가 중요하게 왜곡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검증계획을 수립하고 검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⑤ 검증기관은 정산보고서를 검증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제5조(검증기관의 선정원칙)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비 집행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전문적으로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검증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선정과 관련하여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제6조(검증기관의 업무제한) 검증기관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감사
3.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4. 재무정보체계의 구축 또는 운영
5. 그 밖에 보조사업비 검증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업무

제7조(검증기관의 윤리기준 준수) 검증기관은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검증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검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검증기관은 검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가적 적격성을 갖추어야 하며 정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검증기관은 검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검증기관은 검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가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검증업무의 범위 등) ① 검증기관의 검증업무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보고서와 이와 관련된 서류를 근거로 수행한다.

- ② 검증기관이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검증기관은 검증과정에서 보조사업비 집행과정에 관한 중대한 문제점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수정방안 및 개선방안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검증업무의 기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검증업무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폐지의 승인을 받은 후 또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 기한(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검증업무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검증업무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검증계획의 수립) ① 검증기관은 검증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정산보고서의 검증업무를 계획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의 현황,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와 보조금수령자와의 관계,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내용변경 승인내역,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제3자에 의한 업무수행) 다른 검증기관 또는 전문가에 의해 수행된 업무를 이용할 경우 검증기관은 이러한 업무가 검증의 목적에 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어야 한다.

제12조(검증증거의 문서화 및 보관) ① 검증기관은 검증보고서 작성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증거에 관한 사항과 이 규정에 의하여 검증업무가 수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문서화(이하 본 조에서는 '검증조서'라 한다)해야 한다.

② 검증기관이 직접 작성한 검증조서는 검증기관이 5년간 보관하며,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요구하기 전에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제13조(정산보고서의 검증절차) ① 검증기관에 의한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이해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이해
 3.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대한 이해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 구비의 완전성 확인
 5.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집행관련 지출거래의 증빙서류 확인
 6.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와 사업계획서의 연관성 확인
 7. 보조사업별 또는 간접보조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보조사업비 사용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의 위배 또는 한도초과액 확인
 8.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동 수익금의 정확성 확인
 9.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한 발생이자 정확성 확인
 10.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법령 또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부합되지 아니한 불인정금액의 산출
 11. 보조사업비의 일부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월되거나 기타 법령 등에 의하여 보조금 잔액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이월금액 또는 미반환액의 정확성 확인
 12.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및 보조금반환액의 정확성 확인
- ② 검증기관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류 외에 필요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추가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검증기관은 보조사업별 또는 간접보조사업별 특성에 따라 보조사업비의 보조비목별 산정기준이 구체화된 경우 그 기준을 따라야 한다.
- ④ 검증기관은 여비 등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제14조(검증보고서일) ① 검증기관은 검증업무가 종료된 일자(이하 "검증보고서일"이라 한다)를 검증보고서에 기재한다.

② 검증보고서일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를 검증기관에 제출한 날보다 빠를 수 없다.

제15조(검증보고서의 보고방법) ① 검증기관은 확보한 증거로부터 도출된 결론을 검증보고서에 명확하게 표명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검증과정에서 확보한 정보에 의거 정산보고서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위배된

경우 불인정금액을 보조비목별로 산출하여야 한다.

- ③ 검증기관은 해당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의 집행금액, 집행잔액, 불인정금액, 발생이자, 차기이월액, 수익금반환액, 보조금반환액 등을 검증보고서에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④ 검증기관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에서는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

제16조(검증보고서의 보고사항) ①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다.

- 1. 제목
 - 2. 수신인(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 3. 도입문단(검증대상 정산보고서 명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책임과 검증기관의 책임에 대한 구분 설명)
 - 4. 범위문단(적용된 검증기준 및 검증절차)
 - 5. 결론문단(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기준, 집행금액, 집행잔액, 불인정금액, 반환대상액, 보조금반환액 명시)
 - 6.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금을 당초 교부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는지 여부
 - 7. 검증보고서일
 - 8. 검증기관의 명칭과 서명
- ② 검증보고서 표준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른다.
- ③ 검증보고서의 부속서류로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결과가 첨부될 수 있다.

제17조(검증보고서의 제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제3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적 보고 기한(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검증보고서가 첨부된 정산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등 검증보고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검증보고서는 제1항의 실적 보고 기한에서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106호, 2020. 6. 30.>

제1조(시행일)이 공고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시행 2020. 7. 1.]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106호, 2020. 6. 30.,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재정성과평가과), 044-215-537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정산보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보고할 때 첨부하여야 하는 정산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산보고서"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작성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말한다.
 2. "보조사업비"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 포함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말하며, "보조사업비"는 상위보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과 자기부담금의 합계액을 지칭하는 "총보조사업비"와 총보조사업비에서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한 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 제외한 "순보조사업비"로 구분한다.
 3. "보조비목"이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구성항목으로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구개발비, 보전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등 이전, 기타이전, 출연금, 토지매입비, 건설비, 유형자산, 무형자산, 용자금, 출자금, 상환지출, 전출금, 반환금 등 기타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4. "보조세목"이란 별표 1에 분류된 보조비목의 세부항목을 말한다.
 5. "자기부담금"이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하며, 「국가재정법」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7. "검증기관"이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을 적용하여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8. "상위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목적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해주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말한다.
- ② 제1항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한 바를 준용한다.

제4조(보조사업 사업계획서 및 산정기준)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비 보조비목을 산정하고, 이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상위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보조사업비는 보조금, 지방자치단체부담금, 자기부담금 등으로 구성된다.
- ③ 보조사업비는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구개발비, 보전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등 이전, 기타이전, 출연금, 토지매입비, 건설비, 유형자산, 무형자산, 용자금, 예치금 및 유가증권매입, 예탁금, 지분취득비, 출자금, 정산금, 상환지출, 전출금, 반환금 등의 보조비목으로 구분하며 별표1과 같다.
-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보조사업비의 보조비목별 산정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다.
- ⑤ 수당, 복리후생비, 여비 등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보조비목은 그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정한 규정이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이전부터 적용하던 규정을 말한다.
- ⑥ 시제품, 시험설비, 제작설치물 등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자체 제작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계상하여야 하며, 별도의 항목으로 일괄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일괄적으로 적절한 보조비목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5조(보조사업비의 불인정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경우에는 보조사업비 지출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비 계좌에서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만,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조사업비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다만, 보조사업비카드 발급받기 전 사용한 법인카드 및 개인카드 사용은 일시적으로 허용한다.

3. 보조금 지출거래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해당 사업기한 종료 후 집행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기한 내에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정상적으로 보조사업비가 집행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재화의 입고, 용역의 제공, 계약의 이행 등은 사업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5. 보조사업비의 지출이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무관한 경우
6.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위조된 경우
7. 보조사업비의 변경 및 이월 등 중앙관서의 장 등의 승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
8. 다른 법령이나 협약 또는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나 위원회 등으로부터 사전 승인, 동의, 허락 등을 받거나 신고,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비를 임의로 집행하거나 허위로 신고, 등록하여 집행한 경우
9. 해당 사업기한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최종보고서 인쇄비, 검증수수료를 제외한) 또는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지 않고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10.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한 경우
11. 기타 중앙관서의 장이 정상적인 보조사업비 집행으로 간주하지 않은 경우

제6조(보조사업비의 변경)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상의 보조비목을 준수하여 집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조사업비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조비목을 명시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상위 보조사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신설
2. 보조비목 간의 전용

제7조(수익금 관리 및 반환 기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금은 수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조(정산보고서의 작성) ① 보조사업자가 작성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의한 정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다.

1. 일반현황
 2. 보조사업의 개요
 3. 당해연도 보조사업비
 4.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 반환액
- ② 정산보고서 양식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 ③ 제1항의 정산보고서에는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별 사용명세서를 보조금, 지방자치단체부담금, 자기부담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일자별 집행명세서를 첨부한다.
- ④ 보조사업자는 신속한 보조금 정산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 "순보조사업비" 기준의 정산보고서를 우선 제출하고, 하위 보조사업자의 정산이 완료된 후에 이를 총괄하여 "총보조사업비" 기준의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내지 제3항과 관련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화할 수 있다.
- ⑥ 제1항 내지 제5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9조(정산보고서의 제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상위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할 때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정산보고서를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는 경우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다수의 보조사업자가 공동으로 보조사업을 수행(컨소시엄 형태)하는 경우에는 주관 보조사업자가 총괄하여 정산보고서를 제출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106호, 2020. 6. 30.>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시행 2020. 7. 1.]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106호, 2020. 6. 30.,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재정성과평가과), 044-215-537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의 정보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제1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정보공시 사항)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내역
 3. 정산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5.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6.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7. 그 밖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입내역은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지자체 부담금(시도, 시군구), 자기부담금 등 재원별 합계액을 말하고, 지출내역은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별표 1에 따른 '보조비목·보조세목별 합계액'을 말한다.
-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재무제표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전체 사업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말하고, 결산서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전체 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마감한 총괄표(계정과목별 합계액)를 말한다.

제4조(정보공시 기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3조 각 호의 정보공시 사항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자는 제3조제5호의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관련 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회계연도는 사업이 종료되어 제3조의 각 호에 대한 공시가 가능한 회계연도를 말한다.

제2장 불성실공시

제5조(정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제2항의 공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시불이행: 공시내용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허위공시: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 내용을 공시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제6조(제재조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시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했을 경우 당해 사실의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명령에 불응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1. 시정명령에 1회 불응한 경우 10%이내 삭감
2. 시정명령에 2회 불응한 경우 20%이내 삭감
3.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50%이내 삭감

제3장 기타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지침에 대

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106호, 2020. 6. 30.>

제1조(시행일)이 공고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1년도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

부록 4. 농림축산식품분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시행 2020. 2. 27.]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352호, 2020. 2. 27.,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혁신행정담당관), 044-201-138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식품사업"이란 농식품사업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농식품사업자금"이란 사업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예산, 기금, 자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집행 운용·관리하거나 감독 권한이 있는 재정을 말한다. 농식품사업자금은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관리한다.
 - 가. "보조금"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지급하는 농식품사업자금을 말한다.
 - 나. "융자금"이란 특정 대상이나 부문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중금리보다 저리로 대출 가능한 농식품사업자금을 말한다. 이하 취급기관에 따라 '대여금', '대출금' 등으로 칭한다.
 - 다. "이자보전금"이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농식품사업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하는 농식품사업자금을 말한다.
 - 라. "기타자금"이란 보전금, 출자금 등에 해당하는 농식품사업자금을 말한다.
3. "총괄부서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산림청(이하 "청"이라 한다),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자치구(이하 "시군 등"이라 한다)의 과단위로서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4. "사업부서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 등의 과단위로서 농림축산식품사업의 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 사업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5. "사업시행기관의 장"이란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이하 "사업시행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시행을 책임지는 기관의 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 등, 농업협동조합(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 이하 같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산림조합중앙회 등의 장(개별 지침 등에 명시된 사업주관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사업대상자"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자조·협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의 공동조직 및 「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10522호) 부칙 제6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
 - 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관련되는 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및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관련되는 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 마. 그 밖의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법령 등에서 정한 자
7. '보조금',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간접보조금', '간접보조사업',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 등은 「보조금법」 제2조에 따른다.
8. "사업지원과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관하여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을 감독하는 과장을 말한다.
9. "사업자금과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과 단위 보조기관(직제상 과장과 같은 급의 담당관을 포함하며, 이하 "과장"이라 한다)으로서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자

금관리자를 감독하는 과장을 말한다.

10. "사업자금관리자"란 농식품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 외의 기관을 말한다.
11. "공모(公募)"란 사업시행기관이 사업대상자에게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안내(공고)하고, 농식품사업 자금을 사업대상자로부터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으며, 자격검증, 사업성검토 등을 통하여 농식품사업 자금을 지원할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등의 절차를 말한다.
12. "보조금통합관리망"이란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원활하게 관리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13. "예탁교부"란 사업시행기관이 교부하고자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한국재정정보원의 별도 계좌(가상계좌)로 교부하는 방법을 말한다.
14. "정보취약계층"이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이용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정보통신제품 등을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사업대상자로서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15. "사업평가"란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 등을 점검하고,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며, 환류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이 직접 집행·운영·관리하거나 감독 권한이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그 시행에 관하여 법령 등에서 정한 세부사항은 그에 따른다.

② 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금, 농업융합자금,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제58조제2항에 따른 자부담금 우선집행, 제58조제4항에 따른 대출 실행, 제67조에 따른 융자한도액의 배정 요구, 제69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대여금 반납, 제70조에 따른 회계연도를 경과한 대여금 반납, 제79조에 따른 지원 제한 등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개별규정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분류 및 공개) ① 「보조금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은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3.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부서장의 직근 상급자가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공모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지침이 확정되면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연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홈페이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보조금통합관리망 등을 활용하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시행지침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이 정하는 서식(별표 1에 따른 농림축산식품사업 표준프로세스를 반영)에 따라 사업시행지침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사업시행지침 작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과 협의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시행지침안을 제6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20일까지 확정하고, 30일 이내 출판물 또는 전자파일 형태로 사업시행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 및 사업부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시행지침에 대하여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신청 자격,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청의 경우에는 자체 심의기구로 같음하고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부서장은 사업시행지침 중 제6조제2항 이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 및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장 재정사업관리위원회

제6조(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농림축산식품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 하에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훈령 중 중요사항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지침 중 신청 자격,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
3. 신규사업의 선정 및 그 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각 국장 및 국장급 보좌기관(대변인, 감사관, 정책기획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청의 정책기획관
2.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제8조(심의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3. 제6조제2항 각 호의 심의요구가 있는 때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부서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⑥ 위원장은 안건 심의가 긴급하거나 심의안건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의 정책기획관 또는 제7조제2항제2호의 위원은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이 된다.

제11조(실무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실무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기획관이 된다.

④ 실무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장인 위원 소속의 직제상 가장 상위과의 장(이하 "주무과장"이라 한다)이 된다.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⑥ 의결조건 및 의견청취 등은 제9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제12조(전문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신규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실·국별로 전문가위원회를 둔다.

② 전문가위원회는 해당 사업부서 소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규사업 선정 및 그 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지침 중 신청자격,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문에 관한 사항
4.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사업 중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대상자를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는 경우,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사업 중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대상자를 지정하는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40조부터 제42조의 규정에 따른다.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전문가위원회 구성) ① 전문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각 국·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각 주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해당 국·관 사업부서장
2. 해당 사업부서 소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제14조(전문가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전문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전문가위원회 간사) 전문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6조(준용규정) 의결조건 및 의견청취 등은 제9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제17조(자체평가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농림축산식품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업무 자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구성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며, 평가위원은 평가 또는 농림축산식품업무와 관련하여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④ 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이 된다.

제18조(자체평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평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9조(자체평가위원회의 기능)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자체평가계획 및 자체평가결과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농림축산식품업무 평가제도의 개선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업무 평가에 관한 것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0조(회의) ①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평가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평가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장 및 소위원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되, 소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정한다.

④ 소위원장은 소위원회를 대표하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소위원회의 회의) ① 소위원장은 소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소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소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의결권한을 위임받아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23조(위원의 수당) 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용

제24조(보조금통합관리망 운용원칙) ① 농식품사업자금 중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사무에 대해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망두절, 천재지변 등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제24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조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1.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예산안 및 예산의 통지
 2. 제32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공모, 제34조에 따른 사업신청서 제출(또는 사업등록)
 3.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의 결정
 4. 제58조에 따른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
 5. 제59조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검증
 6. 제60조에 따른 중요재산의 등록 및 공개
 7.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에 따른 보조금 확정, 이월, 집행잔액 등 반납
 8. 제64조에 따른 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9. 제76조에 따른 중요재산의 사후관리
 10. 제87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 관리
- ②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출을 위해 제54조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계좌의 온라인 뱅킹이 가능하도록 해당 금융기관의 인준서 등을 발급받아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해야 한다.
-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재정정보원의 계좌에 예탁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에 직접 교부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이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간접보조사업자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3. 「보조금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른 정보취약계층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4. 전년도 사업실적에 따라 보전하여 지급하는 실적급 집행사업인 경우
 5.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해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6. 「보조금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7.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탁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인정한 사업인 경우
- ④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예탁교부하는 사업대상자는 제58조제2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법」 제39조의3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농업인, 농업법인 등 사업대상자에 대한 시스템 사용자 교육지원,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업무지원, 이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등 관련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⑥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법」 제26조의6에 따라 보조금통합 관리망의 보조금관리정보 등을 보호해야 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 목적 범위에서 사용해야 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예산편성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예산안이 확정되면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9월15일까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보조금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내역을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12월 31일까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사업자가 제2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보조사업자를 지정하여 초기에 사업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6조(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공모 등)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공모방식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고문을 등록·게시하되,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 홈페이지, 일간지 등을 통해 공고문을 게시할 수 있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일정

6. 그 밖에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계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②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공모된 사업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보조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보조사업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정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등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사업신청을 접수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은 그에 따른다.
-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해 「보조금법」 제26조의3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자격검증 항목을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의 제35조에 따른 사업신청서 검토, 제36조에 따른 사업성검토, 제37조에 따른 신용조사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전문가위원회 또는 제40조에 따른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결과는 선정위원회 명단,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공개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선정된 사업대상자에 대해 선정결과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의 통지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지할 수 있다.
- ⑥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의 변경,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제27조(정보취약계층의 보조금통합관리망 이용 지원)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법」 제39조의3 제2항에 따라 정보취약계층에 대하여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대행자로 지정할 수 없다.

- 1. 개인정보유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부정등록, 부정집행 등으로 업무대행 지정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와 계약한 시공·납품업체
- ② 정보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관리 업무대행을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업무대행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업무처리 위임장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사업시행기관의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업무대행자는 업무대행자 지정등록, 사업등록 또는 변경, 교부결정, 집행정보등록, 정산보고, 중요재산 등록, 정보공시 등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에 관한 사무를 대리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취약계층이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 1. 보조금통합관리망 업무처리 위임장 작성 및 제출
 - 2.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 및 이와 연계된 보조금 전용카드 개설
 - 3.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계약
 -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된 거래처 자금 이체
 - 5. 집행잔액, 이자 등 반납
 - 6. 중요재산의 사후관리
-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업무대행자가 개인정보유출, 보조사업 및 간접보조사업의 부정등록, 부정집행 등록 등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즉시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 또는 사업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보조금 집행)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교부요청을 하여야 한다.

-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제57조에 따른 계약 업무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예약계좌로 교부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보조사업 전용 카드, 기타 증빙자료 등 전자증빙자료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 후 지출하여야 한다.
- ④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지출구조는 기본적으로, 지출승인과 동시에 자동으로 예약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전용 계좌로 이체된 후 자부담과 합쳐져서 거래업체로 총지출금액이 이체되는 3자 이체방식을 따른다.
- ⑤ 인건비 지급, 자부담 우선집행, 해외송금,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카드 지출 등과 같이 제4항에 따른 3자 이체방식으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약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로 우선 이체 후 지출할 수 있다.
- ⑥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증빙서류 없이 예약계좌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로 이체할 수 없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먼저 보조사업 전용

계좌로 이체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에 반드시 집행증빙 서류를 등록하고 집행잔액 및 보조사업 전용 계좌에서 발생된 이자는 예탁계좌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29조(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정산보고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제59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자치단체는 3개월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되어 있는 감사인에게 정산보고서의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별도로 감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정산보고서의 검증보고서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해 교부조건의 이행 여부, 사업추진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집행잔액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산정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만일 실적보고의 내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제3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확정 통지를 받은 경우 제63조에 따라 집행잔액, 불인정액, 이자, 사용 승인받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을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반납하여야 한다.

제30조(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사업관리 모니터링, 중요재산 등록 등)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부정집행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경우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검토 또는 조치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제60조에 따른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15일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중요재산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경우 1개월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된 중요재산에 대해 사후관리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반기별(6월, 12월) 현재액, 증감액 등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6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한 교부확정을 한 후, 「보조금법」 제26조의10에 따른 정보공시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해 「보조금법」 제26조의10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는 공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서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 및 지출 내역
3. 정산보고서
4.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
5.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6.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7.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및 결산서
- ⑦ 제59조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 대상자는 감사보고서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에 감사보고서에 대한 정보공시를 하여야 한다.

제31조(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자 관리)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78조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 사유 또는 제78조제2항에 따른 중도회수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한 환수를 명한 경우 즉시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을 하고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같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등에 대하여 제83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78조제10항에 따른 명단공표를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에게 제88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명단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장 계획수립 및 신청

제32조(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방법의 공고 및 홍보)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시군 등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중 사업예정 연도의 자금지원계획
 2.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종류와 이에 대한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3.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4. 그 밖에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할 경우 홈페이지·게시판·반상회보 게시, 지역설명회 개최하는 등 농업인 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해 공모를 할 경우 사업 신청 시 최소 15일 이상 접수기한을 두어야 한다.

제33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안내 등) ① 시장·군수 등, 읍·면·동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협동조합장, 산림조합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지부장,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사장은 해당 기관의 직원 중에서 상담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원은 사업의 종류 및 내용, 지원규모, 보조금통합관리망 등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해서 성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34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신청 등) ①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를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공모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모 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해당 사업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지정받은 사업대상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사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가 사업예정지 관할 외의 기관으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사업예정지를 관할하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사업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신청서의 내용과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기관을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이 경우 사업신청서의 접수기관은 사업예정지를 관할하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제36조에 따른 사업성검토서, 제37조에 따른 신용조사서 및 제39조에 따른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을 수 있다.
- ⑤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 ⑥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농식품사업자금 중 대출금이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대출 신청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⑦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요청자금(농식품사업자금과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자금 모두를 포함한다)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5조(사업신청서의 검토)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사업신청서 등을 검토한 후 신청한 지원요청자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사업성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1.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인 경우 해당 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소장
2. 농·축·인삼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업협동조합장
3. 임업과 관련된 사업은 산림조합장
4. 사업시행지침에서 별도 정한 경우는 해당하는 기관의 장
5. 제40조에 따른 선정위원회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융자금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6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을 대출하는 기관(이하 "대출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신용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6항에 따라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대출신청자료
2. 제1호 외의 경우는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지원신청금액 등을 기재한 신청자 명단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성검토와 신용조사의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해당기관에 일괄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
-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대출취급기관에 대출가능액을 확인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의 경우, 대출취급기관에서 사업성공가능성, 회수가능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⑥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제79조제7항에 따라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2.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3.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 및 제79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78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 ⑦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식품사업자금 지원신청을 한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경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 결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변경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 ⑧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제34조제7항에 따른 지원요청자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하여야 한다.
 1.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자격검증,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2.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수혜이력, 제34조제7항에 따른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3.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업대상자가 정해진 사업
 - 나. 제79조제7항 단서에 따른 다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급안정사업자금(계약재배), 수매사업자금 등 생산자단체에 지원되는 자금, 재해복구 자금 및 가축예방접종(의무예방접종) 등 관련 법률 등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자금 등
 - 다.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등 1년 단위 단기 운영자금
 - 라. 산지유통활성화(원물구입, 운영자금 등) 관련 자금
 - 마. 토양개량제와 같이 일정기간 경과 후 반복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
 - 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 성격의 사업 등
 - ⑨ 사업대상자가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인 경우 별표 6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6조(농업기술센터 등의 사업성검토) ① 농업기술센터 등의 기관은 사업시행기관의 장 또는 제34조제4항에 따른 접수기관으로부터 사업성검토를 의뢰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업성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성검토를 실시할 때에는 읍·면·동 및 농업협동조합 등의 직원과 합동으로 현지확인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지원요청자금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계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지 확인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대출취급기관의 신용조사) ① 대출취급기관은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용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출취급기관은 제35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대출신청자료를 생략한 경우에는 신용조사서 대신 불량거래자 또는 대출부적격자 명단을 일괄 제출할 수 있다.

제38조(사업신청서의 심사) 사업시행기관은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사업성검토 및 신용조사 결과와

더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서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자치단체 등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
2.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농업경영체 유형별·발전단계별 지원방향 및 당해 자치단체 등의 주요 육성 품목(주산지)과의 적합성 여부
 - 가. 농업경영체 유형별 지원방향 : 전업농(침단·수출 등), 중소농(6차 산업화, 규모화·공동생산 등), 영세·고령농(소득안정, 복지 등)
 - 나. 농업경영체 발전단계별 지원방향 : 초기단계(교육·훈련, 기초 시설·장비의 보조지원 등), 성장단계(규모화를 위한 융자·보조지원 등), 기업화 단계(침단·수출농업 등 농산업 전문 기업화를 위한 융자지원 등)
 - 다. 주산지 여부 : 사업을 신청한 지원 대상 품목(분야)이 당해 시군 등의 주요 육성 대상(주산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자치단체 등의 농지이용계획 및 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4.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의 현황
5. 자치단체 등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의 자체 지원계획
6. 자치단체 등 전체계획과의 조화
7.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준 및 순서에 적합한 자
8. 전년도 사업을 추진한 결과에 따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9.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 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자치단체 등의 수시점검 또는 정기 합동점검에서 지적을 받은 자의 현황

제39조(자금지원우선순위안 작성 등)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제38조에 따른 사업신청서의 심사 후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할 때에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신청자에게 우선하여 순위를 부여할 수 있고, 다음 제7호의 경우에는 후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1. 제73조에 따른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를 성실하게 기록한 자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이 개별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교육을 이수한 자
 3. 산림청·통계청에서 시행하는 농림통계조사의 표본농립어가로써 경영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한 자
 4. 한국농수산물대학 졸업생 및 2년 이상의 장기 농림축산식품교육(농업마이스터대학 등)을 수료한 자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성실하게 등록 및 변경 등록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자
 6. 농림축산관련 자조금 성실 납부자, 친환경 농업·축산 또는 GAP 인증농가, 동물복지형 및 깨끗한 축산농장, 재해보험가입자, 생산자 단체 가입자, 계약재배사업 가입자,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자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법령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춘 농업경영체에 해당하는 자
 7. 가축질병 발생 농가, 인증제도 위반 농가,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 축산법상 교육 미이수 농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방역·검역의무 미준수 농가 및 소독설비 미구비·소독 미실시 농가, 허용되지 않은 농약사용 또는 과다사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성실하게 등록 및 변경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에 해당하는 자
-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할 때에는 신청자가 사업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실적을 포함한다)의 가액을 사업비에 포함하여 사업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외부전문가를 위원의 3분의 2 이상 포함하되, 성별·지역별·직능별로 위원을 균형 있게 포함한다.
1.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4.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기관이 자체심의기구를 운영하거나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우선순위안에 대하여 제2항에서 구성한 선정위

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5조제8항제3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선정위원회에서 현지조사, 사업자 발표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⑦ 선정위원회의 구성원은 선정 심의결과에 대해 공개될 때까지 비밀준수의 의무를 진다.
- ⑧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심사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42조(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의결과의 공개)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의 선정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선정위원회의 최종 심의결과는 선정위원회 위원 개인정보, 개별 심의결과를 제외하고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공모한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장 예산편성

제43조(예산 및 기금 요구안 편성원칙)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에서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해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에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은 「국가재정법」 제29조에 따라 예산안편성지침이 통보되면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예산요구서에는 제95조에 따른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또는 「보조금법」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총 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 이상인 신규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적격성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사업
 2.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3.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은 사업연도 예산 및 기금 요구안 수립 시 사업시행기관의 예산편성요

구에 따른 의견수렴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기획재정담당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4조(요구안 작성시 고려사항) ① 다음 연도 예산 및 기금 요구안 수립시 각 사업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한다.

1. 용자사업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 가. 회임기간이 5년 이하 용자사업은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이차보전 방식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성상 재정용자사업으로 운용하는 기금사업의 경우 예외로 한다.
 - 나. 회임기간이 6년 이상 용자사업은 재정용자방식으로 하되, 금융기관의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2.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은 지방재정력 지수(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배정기준)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3. 사업의 특성상 전문적인 사전심의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 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관련 사업(내역사업 포함)은 경영인력과장의 사전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육 및 컨설팅 관련 보조사업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고보조율을 50 이하로 하여야 한다.
 - 나. ICT 관련 사업(내역사업 포함) 및 통계 관련사업의 경우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의 사전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R&D관련 사업(내역사업 포함)은 과학기술정책과장의 사전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라. 개별사업의 내역으로 정책연구용역 사업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정책과장의 사전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마. 홍보 관련사업(내역사업 포함)의 경우 홍보담당관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바. 그 밖에 전문적으로 사전 심의가 필요할 경우,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 부내 담당부서 및 외부 기관의 사전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재정수반 중장기계획 협의지침 대상사업은 예산 요구 전에 사전 절차 이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5. 한시적 사업(일몰사업)은 원칙대로 폐지해야 한다. 단, 여건변화 등에 의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 사업간 공동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등 통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
7. 실비용(집행잔액 제외)이 2년 연속된 사업은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근 3개년 실적행 수준으로 반영한다.
8. 30억원 이상의 민간 시설사업은 총사업비의 1 이내에서 사업계획수립 등을 위한 컨설팅비용을 반영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 ③ 「보조금법」 제7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량과 소요예산액을 정하여 사업예정연도의 전년도 4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신규사업의 제안) ① 자치단체의 장은 신규로 농림축산식품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자치단체의 장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부의 자금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과의 유사성
 3. 전문가 등의 경제성 분석 및 지역여론
 4. 농업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인과 협의를 마쳤거나 공청회를 거친 경우는 그 결과
 5. 법령 또는 국제규범에 저촉되는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③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제안서를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 제안한 신규사업에 준용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계통조직으로 구성된 생산자단체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중앙조직의 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중앙조직의 장은 타당성을 분석하여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해당 시군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예산심사)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기획재정담당관은 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 요구서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심사하여야 하며, 사업별로 자치단체의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조정한 후 사업별 예산요구안에 자치단체의 조정명세서를 붙여 이를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군 등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및 시군 등의 농지이용계획에 반영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2. 다른 부서의 사업계획과 연계성
3. 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결과
4.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지에 관한 사항

③ 제4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안된 신규사업 중 보조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담당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적격성심사를 거쳐야 한다. 기획재정담당관은 보조사업 적격성심사 결과 및 면제사업을 사업예정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전임자문관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제46조에 따라 채택된 신규사업 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이하 "전임자문관제"라 한다)

제48조(시범사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신규사업으로 채택된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해당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는 등 충분한 검증을 한 후 본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시급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도상연습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9조(정부예산안의 통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면 사업예정 전년도 10월 15일까지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농식품사업자금 중 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9월 15일까지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정부예산안에 따라 시도의 예산안을 조정하여 사업예정 연도의 전년도 11월 15일까지 시군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정부예산의 통지 등)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사업예정 연도의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사업별로 시도 및 시군 등에 대한 예산배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시도에 통지하여야 한다. 농식품사업자금 중 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사업시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의 확정)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0조에 따라 정부예산 확정 통지를 받은 경우 사업별 자금지원계획안을 수립하고 제39조에 따른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자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포기 또는 업종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영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자금지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금 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제39조에 따른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2. 제1호에 따른 차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새로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제38조에 따라 사업신청서의 심사가 완료된 사업대상자 또는 제40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자
3.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신청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 확정 공지)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1조에 따라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할 때에는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의 홈페이지와 홍보지 및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별 지원대상의 명단이 모두 확정되면 전체 명단을 사업별로 일괄하여 사업시행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다.

-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지를 할 때에는 해당 시군 등 관할구역의 농업협동조합 등,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사 등을 통하여 지원되는 사업도 함께 공지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최근 3년간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혜자 및 금액, 보조시설물 관리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장 집행관리

제53조(농식품사업자금의 예산배정)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2조에 따라 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사업시행기관의 농식품사업자금 소요를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지침 및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사업시행기관에서 소요되는 농식품사업자금에 대해 검토한 후 기획재정담당관실 또는 기금관리자에게 분기별 예산배정을 요청하여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농식품사업자금 중 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예산배정계획을 입력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매월 농식품사업자금이 확보되면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농식품사업자금 지급(보조금은 교부, 융자금은 대여)을 신청할 수 있다.

제54조(별도 계정) ① 사업대상자는 사업별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보조사업 전용 계좌’라 한다)를 별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사업1계좌를 원칙으로 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 ②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는 사업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 자부담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5조(보조금 교부결정)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반드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예약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금액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전년도 사업실적에 따라 보전하여 지급하는 실적급 집행사업인 경우
3. 전년도 사고이월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4.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5. 다른 법령에 따라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6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부조건을 붙이는 때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제

- 부기준」,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 신청한 경우
 6. 사업시행지침서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7.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가 등록된 농업경영정보(재배면적 등)의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등록하지 않은 경우
-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
-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중요재산에 대한 제77조제5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승인 후에도,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7조제6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취소할 수 있음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 제78조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호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2.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3.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4.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2조에 따른 벌칙

제57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계약)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민간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다만, 정보취약계층 등으로 인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계약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2.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② 제1항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30억 원(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 원) 이상인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민간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공사 준공 이전에 현장조사 등 집행점검을 위해 조달청의 참여를 요청(이하 ‘조달서비스’라 한다)할 수 있다.
1.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2. 공사계약 체결
 3.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를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외 공사, 재해 또는 긴급 복구 공사, 기술의 특수성을 요구하는 공사,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재 관련 공사
 2.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 단 공사계약 체결은 제2항에 따른다.
 3. 그 밖에 조속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시공·납품업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수행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확인된 날로부터 2년간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한 시공·납품업체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울러 상기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체 제재확인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서식 참조)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 및 공개하여야 한다.

⑥ 사업대상자의 임직원, 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단체와 계약 또는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자치단체 또는 조달청에 계약을 위탁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3.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경쟁입찰에 따라 계약체결을 한 경우

제58조(농식품사업자금 집행 등) ① 사업대상자는 농식품사업자금 및 자부담금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집행증빙자료 형태로 증빙하여야 한다.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는 민간보조사업자는 아래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제54조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를 통한 이체 및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
3. 제54조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와 연계된 보조사업 전용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4. 제57조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계약에 대한 선수금 또는 정산금 요청관련 서류 일체
5.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공급자가 판매하는 품목이 적시된 자료 및 자필로 서명한 거래영수증. 이와 관련된 금융기관 거래자료. 다만, 이 경우 1천만원 이내의 농산물로 제한한다.
6. 원칙적으로 사업대상자의 자가시공으로 인한 인건비 지출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6분의 1 한도 내에서 직접노무비 및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해당하는 부분(사업대상자 및 직계 존·비속 중 1인에 한함)을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자료

나. 계약당사자로부터 직접노무에 대한 용역비를 받은 경우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관련한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연간 사업비의 일부를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은 사업 착수 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하고,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2. 제1호 외의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 전액을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
- ③ 제69조제4항에 따라 대출금을 반납한 경우는 제2항에 따른 지원 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금액만큼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자부담금에 따른 사업의 실적(세부 사업 내용 또는 세부 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업시행지침과 제54조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 사용, 제5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노무비 증빙자료, 제58조제2항에 따른 자부담금 우선집행원칙 등 농식품사업자금 집행이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으로 통보하여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별표 2의 표준단가에 해당하는 공중, 시설, 설비 등에 대하여는 사업자금의 집행이 표준단가 내에서 집행되도록 사업계획수립을 검토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표준단가를 초과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시공사례 등)을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에 따른 입찰계약 및 제57조제3항에 따른 조달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리스금융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비 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며 사업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농식품사업자금 실적보고 및 검증) ① 농식품사업자금 중 보조금인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시

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인 농업경영체가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농업경영정보의 등록을 유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이 정하는 서류란 계산서 등을 말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거나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인 경우
 3. 그 밖에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농림축산식품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산보고서의 검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보조금법」 제27조의2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업자’라 한다)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특정사업자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제4항의 감사보고서를 갈음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작성된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할 수 있다.
- ⑦ 정산보고서 작성 및 검증, 회계감사를 위한 세부 기준은 각각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다.

제60조(중요재산의 등록 등) ①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별표 4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15일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된 중요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대국민 공개하여야 한다.
- ③ 민간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별지 제9호서식)를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발부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부기등기를 하고, 제59조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에 부기등기를 한 등기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통합관리망으로 등록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부기등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61조(농식품사업자금 확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제59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에 대해 법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 정산보고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② 정산보고서 지출내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공사계약을 수반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경우 공사원가 중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제 경비는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실적보고서의 검토 결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만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실적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하여야 할 농식품사업자금을 확정하고 사업대상자 및 대출취급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조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참고하여 실적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1. 3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 이내 삭감
2. 6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 이내 삭감
3. 12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 이내 삭감
- ⑥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9조제3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검증보고서 및 제59조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 보고서에 대하여 오류나 누락이 외부 기관의 감사 등에 의하여 발견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은 검증기관의 귀책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검증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검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간 농림축산식품 사업에 대하여 검증업무 수행을 제한한다.
 2.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간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검증업무자격을 제한한다.
 3.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경미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을 지체하거나 검증 조서의 관리가 부실한 경우 주의 조치를 취하며, 연간 3번 이상 주의 조치를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1년 간 검증업무 수행을 제한한다.

제62조(농식품사업자금의 이월) ① 사업대상자는 사업자금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협중앙회 등에 이미 대여된 금액은 제외한다)은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월 또는 재이월하여 사업자금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월액 또는 재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이에 해당하는 경우 재이월 가능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이월한 사업자금에 대해서는 다시 이월할 수 없다.

제63조(집행잔액 등 반납)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61조제4항에 따른 농식품사업자금 확정을 한 경우 사업대상자로부터 집행잔액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등을 반납 받아야 한다. 반납 받아야 하는 집행잔액은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율 등에 따라 산정한다. 이자산정이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사업대상자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
2.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
-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농식품사업자금 확정을 한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하여 반납을 명해야 한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납부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환수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자치단체인 경우 집행잔액 및 이자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 신청 전이라도 최초 정산 시에 예상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보조비율 만큼을 미리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재투자를 승인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보조비율 만큼은 자부담금으로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

제64조(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해 「보조금법」 제26조의10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서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 및 지출 내역

3. 제5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및 검증보고서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5. 제59조제4항에 따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6.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및 결산서
-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제65조(융자 조건의 결정) ① 융자 조건은 사업자금과장이 이를 결정 또는 변경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받은 자로부터 대출 기간의 연장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지원과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업자금과장에게 융자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개별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는 사업지원과장과 사업자금과장의 합의를 거쳐 직접 변경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경우 사업자금과장은 미리 사업자금의 세입을 담당하는 과장 및 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지원과장이 융자 조건을 변경한 때에는 사업자금과장과 합의된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6조(융자의 방법) ① 융자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금관리자(사업자금관리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자금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산림조합중앙회, 그 밖에 법령에 의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의 지정을 받아 사업자금의 융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농협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사업자금을 농협중앙회등에 대여한다.

- ② 농협중앙회등은 제1항에 따라 대여금을 사업대상자에게 직접 대출하거나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등에 재대여한다.
- ③ 농업협동조합 등은 제2항에 따라 재대여금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한다.

제67조(융자한도액의 배정 요구 등) ① 사업지원과장은 매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장에게 융자한도액의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시군 등을 사업시행기관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는 해당 시군 등을 관할하는 시도
2. 제1호 외의 사업의 경우는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기관
- ② 시도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할 때에는 시군 등으로 하여금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파악한 금액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시군 등이 사업대상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을 때에는 회계연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이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야 한다.
-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이 제4항에 따라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할 때에는 회계연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사업대상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제68조(융자한도액의 배정 및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 ① 사업자금과장은 제67조제1항에 따라 사업지원과장이 요구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금 관리자에게 융자한도액을 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사업지원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사업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 한도액 중 소관 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제67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배분하고 그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 및 농협중앙회등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시도가 제2항에 따라 사업지원과장으로부터 융자한도액을 배분받은 때에는 이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시군 등에 재배분하고 그 내용을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시군 등은 제3항에 따라 배분된 융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체없이 사업대상자별로 대출할 금액(이하 "대출예정금액"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그 확정일(이하 "대출예정금액확정일"이라 한다) 및 대출예정금액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이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여 사업대상자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할 때에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항 중 "시군 등"은 "사업시행기관"으로, "제3항"은 "제2항"으로 한다.
- ⑥ 대출취급기관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을 통지받은 때에는 이를 해당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하게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 ⑦ 대출취급기관이 제6항에 따라 촉구한 후 3개월 이상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업

시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9조(대여 및 대출의 실행 등) ①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지원과장으로부터 제68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농협중앙회등으로부터 제6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제68조제1항에 따른 융자한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68조제4항에 따라서 확정된 대출예정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취급기관이 그의 자금으로 미리 대출을 실행한 경우로서 농협중앙회등이 그 증명서를 붙여 해당 금액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업자금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액을 대여하여야 한다.

③ 대출취급기관이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자부담금 우선 집행을 사업시행기관이 확인한 해당 사업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실적확인전 지급사유"라 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시행기관은 제68조제7항에 따른 대출취급기관의 통지 내용과 매 분기 말 현재 사업대상자의 사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78조제2항에 따른 중도회수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해당 회계연도 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10일 이내의 반납 기한을 정하여 농협중앙회등이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 관리자에게 반납하도록 대출취급기관(농협협동조합등에 한한다)을 경유하여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사업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대출취급기관은 매 분기말 현재 제4항에 따른 통지가 있기 전에 제79조에 따른 부정수급 사유 등으로 대출예정금액을 해당 회계연도 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기관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내용을 확인한 후 대출예정금액을 해당 회계연도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이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농협중앙회등이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액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대여일로부터 기산하여 반납기한(반납기한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농협중앙회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율(약정금리율이 이보다 높은 경우는 약정금리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반납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 ⑦ 대출취급기관은 제6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융자한도액의 배정 일자별로 구분하여 대출원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0조(회계연도를 경과한 대여금의 반납 등) ① 농협중앙회등은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대출마감일 연장 또는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업지원과장은 사업시행기관의 대출마감일 연장 또는 예산이월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 해당 회계연도 내 대출 실행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와 연장승인시 대출 실행 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실적, 신용수준, 융자담보확보 여부 등), 지원대상사업의 추진 가능성(원인행위 여부 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사업지원과장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대출기한이 연장된 자금 중에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인하여 대출마감일까지 대출하지 아니한 자금은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다음 연도 8월 말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업지원이 보조금과 융자금으로 이루어진 경우 보조금 이월시 동 기간까지 융자금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3. 사업지원과장은 대여된 자금 중에 다음 회계연도 7월 1일 이후에 대출이 예상되는 자금은 해당 연도 말 이전에 회수하여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서 대출마감일을 연장할 때에는 사업지원과장이 사업시행기관 및 농협중앙회등에 제1호의 경우 1월15일까지, 제2호의 경우 대출마감일 전일까지 그 내용을 통지하고, 농협중앙회등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자금과장에게 연장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대출취급기관은 융자한도액 중 해당 회계연도말(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연장된 금액은 대출마감일)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금액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농협중앙회등, 사업자금관리

자 및 사업시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농협중앙회등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대여금을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대출마감일이 연장된 경우에는 대출마감일로부터 10일까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④ 농협중앙회등이 제3항에 따라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1. 대여일부부터 기산하여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1월 20일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 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출마감일 경과 10일(10일이 되는 날 이전에 반납할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 제1항제3호에 따른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농협중앙회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율(약정 금리율이 이보다 높을 경우는 약정 금리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반납 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21일 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출마감일 경과 11일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 현재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 ⑤ 사업시행기관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대상자에게 해당 금액을 대출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 제71조(이자의 납부)** ① 대여금(대여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여일부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개별규정에 납부 일자를 따로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대출금(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출일부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대출취급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니거나 사업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납부 주기를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제7장 사후관리

-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 ① 「보조금법」 제38조에 따른 위임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으로 교부된 농림축산식품사업의 관리책임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
- ② 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통합관리망에 시설등을 등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장은 지원된 농식품사업자금이 3천만원 미만인 시설등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점검·보완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사업시행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2항에 의한 시설등에는 별표 3의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표준안에 의한 표지를 시설등의 입구·몸체 또는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안전관리에 위해가 된다고 시장·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⑤ 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1회 농업협동조합 등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에 참여한 기관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⑥ 농림축산식품사업의 계획과 집행 및 사후관리 업무에 참여한 농림축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 등의 공무원과 농업협동조합등(중앙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은 모든 관련 자료에 실명을 표기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73조(경영장부의 기록 등)** ① 자치단체의 장은 국고와 지방비의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하게 하고,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사업의 진행상황과 경영성과 등을 분석토록 하여야 한다.
- ② 자치단체의 장은 국고와 지방비의 합계가 3천만원 미만을 지원받은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경영일지에 수입 및 지출상황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

- 제74조(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체계적인 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실·국별로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 및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부처 보조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
- ③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은 매 분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서를 정책기획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
2.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조건 이행사항 및 관련 규정 준수여부
3.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집행, 사후관리 개선 및 관리감독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기타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 등
- ④ 정책기획관은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이 제출한 점검결과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7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에 송부하여 점검결과에 대한 검증 등을 실시하고 제도개선 등 사후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75조(검사 및 사후관리 지도)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농식품사업자금의 검사 및 사후관리 지도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용자 및 이차보전의 경우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 제4항제1호에 따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이 수행할 수 있다.
- ③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은 제2항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79조에 따른 부정수급 사유 등의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에 대하여 대출금을 회수토록 하고,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토록 조치할 수 있다.
- ④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은 제3항에 따라 대출금 회수 또는 이차보전금의 신청대상에서 제외 조치를 한 때에는 조치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달 말일 이내에 조치한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 및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시행지침서 및 여신 관계 규정(대출과 관련된 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대상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항에서 같다)의 사용 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6조(중요재산의 사후관리) ① 민간보조사업자는 제60조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된 중요재산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또는 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정한 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반기별(6월, 12월) 현재액을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하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전문성 있는 평가인이란 자산평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 및 평가대상 자산과 관련된 시장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③ 재평가는 공정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가 공정가액의 30를 초과할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차액이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60조제3항에 따라 부기등기한 중요재산이 제7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반환 명령된 보조금의 전부를 반환하거나,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경우에 민간보조사업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부기등기 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시도지사가 처리할 수 있다.

제77조(중요재산 처분의 제한) ① 민간보조사업자는 별표 4의 중요재산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중요재산에 대한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이 필요할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청장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1. 제77조제3항 및 별표 5에 따라 중요재산의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환수명령된 보조금 전부를 국가에 환수한 경우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소속 청의 사업부서장이 정하는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교부조건에 처분 제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까지는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간주
3.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승계취득은 포함되지 않음). 다만 제2호에 따른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대여를 승인하는 경우 대여 승인기간 만큼 잔여사후관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별표 5의 보조금 환수 기준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재산의 현재가치 평가에 소요된 비용

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한 보조금 환수를 명하는 경우 납부기한은 제63조제2항을 적용한다.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승인 및 환수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8호가목에 따라 시도지사가 처리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 후에도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78조(보조금의 부정수급)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부정수급 사유’라 한다)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1.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3호, 제30조제2항제3호,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또는 지급받은 경우
- 2.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1호, 제30조제2항1호,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 또는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령,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4. 「보조금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령을 위반한 경우
- 5. 「보조금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이하 이 조에서 ‘중도회수 사유’라 한다)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5의 보조금 환수기준에 따라 환수할 수 있으며, 중요재산의 현재가치 평가에 소요된 비용의 부담은 제77조제3항을 준용한다.

- 1. 삭제
- 2. 삭제
- 3. 삭제

③ 사업시행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환수 또는 회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날부터 기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일
- 2. 제1항제2호 부터 제5호제2항까지의 경우로서 사업시행기관이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부정수급 사유 또는 중도회수 사유가 발생한 개시일. 다만, 개시일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시행기관 등이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일자
- 3. 삭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환수할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의 취소에 해당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령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정부 정책 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다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3. 「보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이에 근거한 지침,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⑥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수령자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처분을 ‘보조사업 수행배제’라 한다)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아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⑦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처분을 명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 및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⑧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3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별표 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대상자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이하 '제재부가금 부과'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보조금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할 수 있다.
 1.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한 경우
 2.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⑨ 제8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업대상자는 제85조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내야 하며,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33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8항에 따라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호 본문에 따른 가산금에 더한 금액
- ⑩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성명·상호, 나이 및 주소,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를 말한다)과 위반행위 내용 및 위반행위에 따른 보조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 간 공표(이하 '명단공표'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사업대상자의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88조에 따른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그 게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64조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2.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3.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4. 공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5. 공표 대상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6. 제88조에 따른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⑪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 결정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 하여야 하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제79조(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부정수급 사유'라 한다) 지원된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이하 '용자금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대출취급기관이 부정수급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부정수급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 등, 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허위자료를 사업시행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대출받은 경우
2.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5조에 따라 사업시행기관 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이차보전금의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라는 통지 또는 조치가 있을 때
 -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중도회수 사유’라 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융자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하며,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대출취급기관이 중도회수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중도회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 등, 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개별규정에 회수 사유를 따로 정한 경우
3. 제75조에 따라 사업시행기관 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통지 또는 조치가 있을 때
 - ③ 사업시행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융자금등을 환수 및 회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날부터 기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금의 대출실행일
 2. 제1항제2호,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사업시행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이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부정수급 사유 또는 중도회수 사유가 발생한 개시일. 다만, 개시일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시행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 등이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일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계규정에 정한 기한의 다음 날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출금을 회수할 때에는 회수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수일의 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 대출이자를 포함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부정수급 사유와 제2항의 중도회수 사유(이하 이 조에서 제1항의 부정수급 사유와 제2항의 중도회수 사유를 ‘부정수급 사유등’이라 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부정수급 등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할 것을 명하고,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⑥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원받은 융자금의 상환 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 후 1년 이상 영농활동 중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피해농지를 상속받아 영농을 지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잔여대출금의 승계 및 채무자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 ⑦ 융자금등에 대하여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정수급 사유등이 확인된 때에는 당사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등으로 해당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동안 사업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이하 ‘지원제한’이라 한다). 다만, 다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급안정사업자금(계약재배), 수매사업자금 등 생산자단체에 지원되는 자금, 재해복구 자금 및 가축예방접종(의무예방접종) 등 관련 법률 등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의 의무 이행을 지원 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부정수급 사유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 5년
 2. 부정수급 사유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 4년
 3. 부정수급 사유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 3년
 4. 부정수급 사유등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 2년
 5. 부정수급 사유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 1년
 - ⑧ 둘 이상의 사업 또는 2 회계연도 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정수급 사유등이 확인된 경우 당사자에 대하여 제7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⑨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중도회수 사유에 대하여는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제한 기간을 100분의 50으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부정수급 사유등으로 지원제한이 2회 이상 반복된 때에는 지원제한기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⑩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원제한기간의 기산일은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정수급 사유등이 발생한 사실을 사업시행기관의 장 또는 대출취급기관 등이 확인한 일자로 한다.
 - ⑪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포함된 융자사업인 경우, 제7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지원제한 기산일 이전에 이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으로 시설물 설치공사가 착공되어 진행중인 사업은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0조(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등)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

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2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경우, 제78조제1항·제2항에 따른 환수 또는 회수, 제78조제5항·제6항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제78조제8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제78조제10항에 따른 명단공표 등
2. 융자금등의 경우, 제79조제1항·제2항에 따른 환수 또는 회수, 제79조제7항에 따른 지원제한 등
 - ② 부정수급 등에 따른 환수 또는 회수 관련 처분명령 및 납부기한은 제63조제2항을 적용한다.
 -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또는 회수의 명령을 한 경우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때, 제78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78조제10항에 따른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에게 제88조에 따른 명단공표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78조제5항·제6항 및 제78조제8항에 따른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에게 제83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식품사업자금 부정수급 사유 등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별도 법령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81조(강제징수)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환금, 제77조에 따른 중요재산에 대하여 임의처분자에 대한 보조금 환수금, 제80조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명령이 된 환수금 또는 회수금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 납부하도록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2조에 따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2. 「보조금법」 제33조의3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강제징수 할 경우 반환금 또는 환수금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제82조(대여금 등의 반납) ① 농협중앙회등이 제79조제1항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의 부정수급 통지를 받은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한까지 그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경우는 부정수급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는 부정수급 사실을 통지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이내
- ② 농협중앙회등이 제79조제2항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중도회수 통지를 받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중도회수 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③ 농협중앙회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1. 통지 받은 날로부터 반납기한까지는 농협중앙회등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에 따른 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83조(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같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같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담당공무원, 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

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사업시행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며,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4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은 제8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농식품사업자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해 환수 명령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반여부, 위반종류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들의 검토를 받을 수 있다.

1. 「보조금법」 제30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의 위반여부, 같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산정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대상자 및 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보조금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환수명령 금액의 적정성 여부
 3.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와 관련된 사항으로 보조사업자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을 위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4. 「보조금법」 제39조의2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신고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포상금액 및 그 밖에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조사업자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명단공표 등을 위하여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법」을 위반한 자로 결정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위반행위의 종류와 예상 제재부가금 등 관련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 위반행위의 종류 및 예상되는 제재부가금 또는 보조사업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과 관련된 사항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금액,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및 금액,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에 대해 보조사업자에게 행정처분 통지(처분 사전통지) 후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받아야 한다.
- ⑥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이 제80조제5항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한 경우, 제3항의 절차와 제5항의 절차 사이에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제85조(제재부가금 등 납부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78조제8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와 금액 등을 밝혀 보조사업자에게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통지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서를 당사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④ 가산금 부과는 제78조제9항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86조(과오납의 환급)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대한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환급하되, 환급 가산금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87조(보조금 부정수급자 등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속 청의 사업부서장은 매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반환 건수 및 반환 금액
2. 「보조금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지급 금액
3.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대상자 수 및 명단
4.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징수 건수 및 금액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건수 및 대상자 명단
- ②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총괄부서장 또는 사업부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법 시행령」 제19조에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총괄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88조에 따른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자
 2.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④ 제3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한다.

제88조(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총괄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② 명단공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법」 제36조의2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③ 명단공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른다.
- ④ 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통해 명단을 공표하기로 결정한 자에 대해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 ⑤ 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장 평가 및 환류

제89조(평가원칙) 사업평가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이 확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0조(사업부서의 점검 및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별표 1의 농림축산식품사업 표준프로세스에 따른 사업이행 및 점검을 연 3회 이상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이 훈령에 따라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사업 효율성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해 집행부진 또는 부당행위 등에 대한 사업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예산편성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91조(자율평가계획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평가지침을 반영하여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사업 자율평가계획을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1. 해당 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자율평가 대상, 절차, 방법, 일정 등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평가보고서 작성요령 및 양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포함토록 권고한 사항
-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재정사업 자율평가계획을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92조(자율평가대상 선정) 총괄부서장은 기획재정부 성과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해당 회계연도 성과관리대상 재정사업 중에서 자율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제93조(자율평가 절차) 총괄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총괄부서장은 재정사업 자율평가계획 수립 후 사업부서장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이하 ‘사업부서장’ 이라 한다)은 재정사업 자율평가계획에 따라 해당 재정사업별 자율평가보고서와 근거서류를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한다.
3. 총괄부서장은 사업부서장이 제출한 평가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한다.
4. 자체평가위원회는 평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재정사업별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한다.
5. 총괄부서장은 자체평가위원회가 실시한 재정사업별 평가결과를 해당 사업부서장에게 공개하고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 접수한다.
6. 총괄부서장은 사업부서장이 제출한 이의신청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자체평가위원회에서는 이를 재평가한 후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한다.
7. 총괄부서장은 재정사업별 평가결과를 취합·정리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8. 자체평가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한다.

제94조(자율평가결과 후속조치) ①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된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으로 평가받은 재정사업의 사업부서장은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 중에서 환류계획을 마련하여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한다.

1. 성과관리개선대책
2. 지출구조조정
- ② 총괄부서장은 제출받은 후속조치계획을 검토한 후 자체평가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 ③ 자체평가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환류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 ④ 총괄부서장은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된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및 환류계획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95조(자율평가결과 환류) ① 사업부서장은 자율평가 결과를 다음 회계연도 재정사업 운영에 반영하여 성과중심의 사업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사업 운영에 반영해야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사업 운영방식 개선 및 대안 제시
 - 가. 성과목표·지표 조정
 - 나. 성과목표·지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 등의 조정
 - 다. 성과목표·지표의 달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대안의 제시
 - 라. 그 밖에 총괄부서장이 정하는 사항
2. 예산편성방향 제시
 - 가. 증액 : 재정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사업의 효과성이나 시책 및 정책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나. 현수준 유지 : 재정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사업의 효과성 및 정책기여도가 보통 정도라고 판단되는 경우
 - 다. 감액 : 재정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정책의 효과성이나 시책 및 정책기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라. 통폐합·폐지 : 재정사업의 성과목표·지표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정책기여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 재정사업 추진 목적을 이미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해당 재정사업의 대체가능성, 정책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통합, 즉시폐지, 단계적 폐지로 구분)
- ② 사업부서장은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성과목표·지표 등을 달성하지 못한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예산편성방향 대신 재정사업의 효과성이나 정책기여도 등을 감안한 예산편성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제96조(재정사업 평가대응) ① 총괄부서장은 기획재정부 등 외부기관에서 우리 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추진실태 및 개별 재정사업 평가 등을 실시할 경우 해당 재정사업 사업부서장과 긴밀히 협조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장은 외부기관 평가대응을 위해 필요시 사업부서장에게 자료 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부서장은 동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7조(자율평가결과 공개) ① 우리 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는 외부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 공개는 홈페이지 게시 등 농업인이나 국민이 알기 쉬운 방법을 선택한다.

제98조(모니터링 등) ① 총괄부서장 및 사업부서장은 해당 회계연도 성과계획서에서 제시한 성과목표·지표의 달성도, 예산집행실적, 사업방식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성과목표·지표 달성을 위해 재정사업별로 성과관리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9조(전담기관 활용) 총괄부서장은 재정사업 자율평가 및 환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지정된 농식품정책 성과관리 전담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100조(정부사업 집행관리) 사업자금과장은 사업자금의 효과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산 처리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 및 농협중앙회등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예정금액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하는 시점에 맞추어 사업자금관리자가 사업자금을 농협중앙회등에 대여하는 방안
2. 사업대상자별 사업자금의 집행 실적 및 사용 실태를 관계 기관이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상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부칙 <제352호, 2020. 2. 27.>

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3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제5조제1항 관련]

농림축산식품사업 표준프로세스

프로세서	대 상	시 기	주 요 내 용	e나라도움 (보조사업)
[기초 및 계획단계]				
사업지침 안 내	농식품부	N-2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시행에 필요한 지침 시달 	
농식품사업 수요조사	자치단체	N-1 1-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는 농식품사업에 대한 민간수요조사 실시 N-2년도 기준으로 내역사업별 예산 계상신청(e-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해 사업에 대한 공모
예산요구	농식품부	N-1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단체 사업수요 및 예산반영여부 검토 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부처안) 	
내역사업 확정	기재부 농식품부	N-1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사업, 통폐합사업 등을 반영 내역사업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역사업 확정 및 정보입력
가 내 시	농식품부	N-1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역사업별 정부안에 맞추어 자치단체 사업계획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내시
자치단체 예산편성	자치단체	N-1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내시된 내역사업에 맞추어 자치단체 예산편성(e-호조) 	
확정내시	농식품부	N-1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시행 예산 확정내시 및 통보 e나라도움과 e-호조 간 사업 매핑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정내시
사업등록 접 수	농식품부 자치단체	N-1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 단체, 협회 등 N년도 사업계획 등록 자치단체는 민간보조사업자 안내 및 사업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모결과등록 사업등록접수 확정
사업지침 안 내	농식품부	N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시행에 필요한 지침 시달 	
[추진단계]				
자금배정	농식품부 자치단체	사업 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기별 또는 일괄적 자금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배정, 사업배정
자금신청	사업 대상자	사업 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 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자 보조금 등 교부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부결정, 지출 등
사업시행	사업 대상자	사업 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금 집행
이행점검	농식품부 자치단체	사업 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독기관 사업 추진 모니터링 및 온·오프라인 점검결과 등록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행모니터링 결과등록
사업 실적보고	사업 대상자	사업 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에 대한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 집행잔액, 이자 등 반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적(정산)보고서 제출
[관리단계] OFF-LINE				
성과점검	농식품부 자치단체	사업연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성과지표 달성여부 판단 	
사업평가	농식품부	N+1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환 류	농식품부	N+1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결과 환류(예산편성 방향 등) 	

[별표 2 : 제58조제5항 관련]

표준단가 적용대상 및 단가

구분	기준단가			
냉 난 방 시설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사업>			
	구분		단가(㎡)	지원내용
	다겹보온 커튼	수평권취식	13천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분흡수 방지를 위한 코팅 보온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보온커튼 - 단, 저온성 작물 또는 제주도 등 품목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대체가 가능할 경우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지원 가능 ◦ 보온자재(항온법 기준 보온율 70% 이상) ◦ 알루미늄스크린의 겹수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재료를 사용한 다층 보온커튼은 보온율(항온법 기준 보온율 55% 이상) * 보온효과 향상을 위해 보온율은 점진적으로 강화
		예인식 외부권취식	11천원 이하	
		알루미늄 스크린	11천원 이하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5천원 이하	◦ 순환식의 경우만 지원하며, 일반 비순환식 수막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열회수형 환기장치			◦ 열회수형 환기장치 개별지원
	자동 보온덮개		2.5천원 이하	◦ 작물별·시설별 특성에 맞는 자동 보온덮개, 배기열 회수장치 지원
	배기열 회수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증된 장비의 구매, 사후관리 보장 등을 위해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 보온자재의 열효율 측정은 공인시험기관의 자료 활용 			
<공기열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사업비는 지역별 최저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시설부하용량(kW)에 따라 지원 - 시설특성은 재배작물 온도조건 및 필요온도를 검토 - 사업비 : 시설부하용량(kW)×적용단가 				
설비형식		적용단가(천원/kW)		
공기-공기(공급)		617		
공기-물(공급)		8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시설부하용량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대부하용량의 90% 용량까지 지원 * 검증된 장비의 구매, 사후관리 보장 등을 위해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구분	기준단가		
냉난방 시설	<지열·지중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열 냉난방시설 : 지원 사업비는 지역별 최저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 산출된 시설부하용량(kW)에 따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특성은 재배작물 온도조건, 양계, 양돈 필요 온도를 검토 - 사업비 : 시설부하용량(kW)×적용단가 		
	설비형식		적용단가(천원/kW)
	수직밀폐형		1,638
	수평밀폐형		1,260
	개방형(SCW형)		1,5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시설부하용량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대부하용량의 90% 용량까지 지원 * 적용단가를 반영한 사업비 한도를 초과하거나 사업대상자의 요구로 추가 사업비 발생시, 초과분은 사업자 자부담으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중열 냉난방시설 : 880천원/k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 시설부하용량(kW)×적용단가 * 신청 시설부하용량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대부하용량의 90%까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열 재이용시설 : 1,250백만원/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 설치면적(ha) × 지원한도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지원사업>		
구분	단가(천원/661㎡)	열효율	설치비 지원 내용
온수형	3,000	8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료저장탱크, 기계장치 연결밸브, 전기배선, 인건비, 축열탱크(필요시) ○ 온실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수분배기(헤더), 배관, 팬코일, 송풍기, 온도센서, 순환모터
온풍형	1,500	7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료저장탱크, 기계장치 연결밸브, 전기배선,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가는 난방기가격과 설치비를 합산하여 적용하되, 온실내 미설치된 목록에 대해서는 지원 제외 * 검증된 장비의 구매, 사후관리 보장 등을 위해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별표 3 : 제72조제4항 관련]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표준안

1. 표준안

가. 준공전 안내문

<p>사 업 개 요</p> <p>이 사업은 ○○○○년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p> <p>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지원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p> <p style="text-align: center;">사 업 자 ○ ○ ○</p>
--

←————— 110cm —————→

다. 스티커형 표지

- 사업비에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조금이 포함된 경우라도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관리하는 경우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된 것입니다.

- 사업비에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한 것으로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대 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별표4에 따라 정한 중요 재산

< 예시 >

- 건축물 :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저장창고, 유리온실, 집하장, 농산물가공공장, 농산물생산·유통시설, 축산시설, 직거래 판매시설 등
- 시설물 :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농어촌도로, 임도 등
- 사업장 : 농지종합정비지구, 재정지정리지구,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지구, 문화마을정비사업지구, 간척사업지구, 관광농원, 축산단지, 농공단지 등
- 기 타 : 대형농기계 등

<제외사업>

- 예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도난·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특화사업의 장뇌삼 등 약용작물

3. 표시방법

- 준공전 안내문

- 사업장 입구나 현장사무소에 녹색바탕에 흰색글씨의 입간판 또는 벽면 부착물로 표시 (규격 110cm×80cm)

- 준공후 안내문

- 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규격 30cm×21cm)

- 경지정리 등 정부지원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가능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커도 가능함

[별표 4 : 제60조제1항 관련]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의 범위	사후관리기간
<p>■ 부동산</p> <p>- 농식품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 한 대상</p>	<p>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3년)</p> <p>*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p>
<p>■ 부동산의 종물</p> <p>-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절감시설(지열냉난방시설 등),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p>	<p>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3년)</p> <p>* 부동산과 그 종물을 같이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부동산의 종물만 지원받은 경우 별표 3에 따른 스티커형 표지를 반드시 부착</p>
<p>■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p> <p>- 농기계 등(트랙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p>	<p>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p>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별표 5 : 제77조제3항 관련]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 기준

가. 담보제공 승인한도

$$\text{담보제공 승인한도} = \text{담보제공 대상물 감정평가액} - \text{보조금} \times \left(\frac{\text{잔여사후관리기간(개월수)}}{\text{사후관리기간(개월수)}} \right) - \text{기 담보설정액}$$

* 담보제공 승인한도액은 등기서류의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함

- 담보제공 승인한도 산출할 경우 교부된 보조금(국고+ 지방보조금)은 담보의 제공대상에서 제외, 자치단체가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는 승인한도 차감 대상에서 제외
- 담보제공 승인한도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에서 업체의 신용상태, 경영상황, 사후관리현황 등을 고려하여 가감 가능
 - 중요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받을 대출금(융자) 등으로 기 담보설정액을 대환하고자 하는 경우, 사후관리기관은 담보제공 승인한도액 산출 시 기 담보설정액을 차감 대상에서 제외 가능
 - 기 담보설정액 대환을 위해 담보제공 승인한도에서 기 담보설정액 차감제외를 요청하고자 하는 보조사업자는 담보제공 승인 요청 시 기 담보설정액 대환 이행계획(대환예정일, 처리예정 금융기관 등) 및 이행확약서를 사후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보조재산을 담보 제공하여 운영자금을 대출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재대출은 추가 승인 불필요(다만, 기 담보제공 승인 이후 당해 재산에 대한 추가 근저당 설정 등 권리·의무 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승인 필요)

나. 보조금 환수기준

<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

$$\text{보조금 환수금액} = \text{보조율} \times \left(\frac{\text{잔여사후관리기간(개월수)}}{\text{사후관리기간(개월수)}} \times \text{감정평가액} + \text{재산상의 이득금} \right)$$

< 시설의 개보수, 사전철거 등으로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text{보조금 환수금액} = \text{보조금} \times \left(\frac{\text{잔여사후관리기간(개월수)}}{\text{사후관리기간(개월수)}} \right) + (\text{재산상의 이득금} \times \text{보조율})$$

[별표 6 : 제35조제9항 관련]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① 공통 지원요건

①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한다.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으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4.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5.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단, 당해 법인 명의를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다만, 개별사업시행지침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①항의 농업법인 설립요건을 준수하였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 여부 및 ②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 ④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1. 1회 3일 이상의 교육을 받은 법인. 교육은 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뜻한다.
 - 2.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는 법인. 단, 개별사업지침에서 규정한 일자리 지표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② 사업별 지원요건

- ① 공통지원요건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따른다.
- ② 공통지원요건은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강화하여 규정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등기부등본상 설립일 1년 이내의 농업법인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경우 공통지원요건의 1. 출자금 및 3. 운영실적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③ 집행 및 사후관리 기준

- 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의 각 사항과 같다.
 - 1. 개별사업의 근거법에서 별도의 준공검사를 규정하는 경우,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여야 한다. 기술직 공무원은 근거법에서 규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준공 검사를 실시한다.

2.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3.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4.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를 위하여 각 목의 사항 추진(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 가.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할 것.
 - 나.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림축산식품사업 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농림축산식품 사업 계획서

1. 현 황

영 농 규 모 (ha)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유							
	임차							
계								
재 배 현 황 (ha)	벼	사과	배	포도			계	
시 설 현 황	개별 시설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선과기	기 타		
		관 정 : ha	m ²	m ²	대			
		점적관수 :						
		스프링쿨러 :			(톤)			
	공동 시설	저온저장고	선과장	인공수분기	수송차량	교육장	기 타	
		m ²	개소 (톤)	식	대 (톤)	m ²		
	<p>(주) : 1. 선과기의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p>							
기 타 사 항								

2. 사업계획

◦ 사업명 :

◦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지방비	자담
				합계	정부지원(재원명기재)			대출		
					계	보조	대출			
계										
농가	○○○○									
	○○○○									
	○○○○									
생산 자단 체등, 회사, 기타	공 동 시 설									
	○○○○									
	○○○○									
	기 타 시 설									
	○○○○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				

* “←→”로 표시

<작성요령>

- “1.현황”은 “과실생산유통사업”의 예이므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항목을 변경할 수 있음
- 생산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립)계획 등 작성

[별지 제2호서식 : 제27조제2항 관련]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업무 대행기관	소속기관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위임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임대상사업		
위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시스템에서 처리해야 하는 정보처리 업무를 업무대행기관을 통해 처리합니다. · 단, 은행이체 관련한 업무는 제외합니다. · 업무대행기관은 해당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위임대상사업에 대한 대행업무를 수행합니다. · 위임업무 수행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일체의 책임은 업무대행기관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업무대행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

유의사항

※ 신청인은 보조금시스템 사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보조금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조금시스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가입,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절차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 의사 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조금시스템은 회원가입 및 정보공개 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수집항목

가. 보조금시스템 회원정보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법인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공인인증서, 주민번호
- 선택항목 : 일반전화번호, 이메일수신여부, SMS수신여부

(2) 수집방법

가. 업무용 포털

나.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에 의한 오프라인 청구서 시스템에 입력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1) 보조금시스템 회원정보

- 수집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2, 전자정부법 제9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보유기간 : 탈퇴 후 5년까지

(2) 주민등록번호 수집고지

- 보존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2, 전자정부법 제9조
- 위와같은 근거로 주민번호 수집, 이용을 관리합니다.

(3)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이용자는 보조금시스템에서 수집하는 고유식별 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의 거부 시에는 회원가입, 업무시스템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정보제공 동의 내용			
거 래 은행	계 좌 번 호	정 보 내 용	비 고
		입출금 정보 잔액 정보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동의서 유효기간	동의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정보제공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정보를 제공받을 자	한국재정정보원(보조금시스템 운영기관) 보조사업 관리기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국고보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을 위하여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의 계좌에 대한 정보제공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업무대행기관의 장 귀하

유의사항

- ※ 동의자의 자필서명(인감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
- ※ 동의자의 금융정보는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 제34조제6항 관련]

대출신청자료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생산자단체등의 형태		참여자수				
성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 -			
주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천원)					
	사업 규모		합계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사업 예정지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금 현황			융자금 현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 의 관계	예상 평가액 (백만원)	비고 (기설정금액)

4. 농림축산식품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4호서식 : 제34조제7항 관련]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 · 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별지 제5호서식 : 제36조제1항 관련]

사업성검토서

1.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참여자수			
성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			
주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천원)					
	사업규모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사업예정지							

2.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구역	지구	구역	지구

3. 사업검토

구분		평가			검토의견
		상	중	하	
사업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농경력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영농기술 또는 경영능력 ·영농규모 				
사업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입지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이용계획 ·생산 또는 원료조달 ·용수 ·전력 				

※ 사업성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4. 종합의견

년 월 일
○○○○장(인)

[별지 제6호서식 : 제37조제1항 관련]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생산자단체등 · 회사·기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현재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천원		

※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사업신청인 제시 담보물건에 대하여 감정가를 추정하여 대출가능액 산출)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 (조사기준일현재) : 천원

유의사항
 동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신청 시 사업신청자의 여건 및 금융기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그 결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 시군지부장 (인)

[별지 제7호서식 : 제56조제3항 관련]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예시)

※ 양식은 민간보조사업 및 자치단체보조사업 모두에 적용

수신 : ○○○(보조사업자)

1.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 사업명:

보조 사업자: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용자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 보조비율 : ○○% (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 사업내용 :

※ 전체 사업목적 및 내역사업별 핵심내용을 기술

교 부 목 적 :

예 산 과 목 : 0000회계(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20	123	3000	3031	306	330-01
교통및물류	도시철도	0000	0000	00000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라. 중앙관서(또는 시·도지사) 승인없이 중요재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 마.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 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사. 등록된 농업경영정보(재배면적 등)에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등록하지 않은 경우

3.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 한 자에게는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2조에 따른 벌칙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2 년 ○○월 ○○일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 아래 내용은 부처별 업무 참고를 위한 샘플로서 각 사업시행기관에서는 보조금법, 예산 및 기금운용집행지침 등을 반영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수정·활용하여 교부조건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법」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 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 시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보조금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수익금이 전체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기관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인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는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재배면적 등)의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의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하 ‘우리부’) 또는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 또는 양도·교환·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2억원 초과 시 시설공사 및 5천만원 초과 시 용역과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업의 계약체결·집행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계약체결·대금지급 등을 하여야 합니다.
4.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 장관 또는 자치단체의 장이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금을 직접 지원받지 않아 중요재산으로 관리되지 않음으로 인해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의 경우에는 향후 별표 5의 중요재산 담보제공 승인한도 산식에 따른 담보제공 대상물 감정평가액 산출 시 제외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서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집행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우리부 또는 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고로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가. 보조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 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무당국이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 나. 부가가치세 환급금 신청 전이라도 최초 정산 당시에 품목 및 품목별 구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미리 사업비에서 공제됩니다.
 - 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시행기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보조비율 만큼은 자부담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 나.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 증빙서류, 첨부서류 등 보조금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가.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 나. 보조금으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정산완료 전까지 부기등기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중요재산 현황을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라.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사업시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마.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승인 후에도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할 경우 이를 농식품부 장관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보조사업자는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명단 공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 제58조제4항 관련]

발급번호 제 호						
()사업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						
주소						
성명			생년월일			
사업내용						
건축물 소재지						
건축물 규모(m ²)				구조		
사업계획	합계 (A=B+C+D))		자부담(B)	보조금(C)	용자금(D)	
	1000천원		400천원(40%)	300천원(30%)	300천원(30%)	
* 총투자계획은 공사 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사업실적	공정률 (J=E/A)	합계 (E=F+G+H+D)	자부담(F)	보조금(G)	용자금(H)	기타(I) (시공업체 우선집행액 등)
	40%	400천원	200천원	100천원	0천원	100천원
* 사업실적은 누계로 기재(단, 기타(I)는 신청 당회 분 실적금액만 기재)하고, 증빙자료 및 현장답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정 -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영수증, 노무비 명세, 공정 확인서 등으로 확인						
대출현황	금번 대출 신청액(L)		기 대출액(K)		대출 총계(=L+K)	
	120천원		천원		천원	
사업대상자 결정	년 월 일					
현장 점검자	(직 급)			(성 명)		
위와 같이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추진 실적(기성고)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상기 내용에 대한 추진실적(자부담 우선집행률 이행, 착공준공(예정), 공정율)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인)						

※ 대출 가능금액 산출(대출취급기관에서 최종 산출)

금번 대출취급 가능금액 산출 시 유의사항
1. 자부담비율이 연간 사업비의 20%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 ①최초 대출시 F는 B*1/2 이상 집행 여부 확인 ②대출금은 기성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금액 이내로 산출(예시 : (A×J) - (F+G+K))
2. 1호 이외의 경우 : 대출금은 기성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금액 이내로 산출(예시 : (A×J) - (B+G+K))
천원

[별지 제13호서식 : 제69조제4항 관련]

(사업자금명) 대출 불가능한 융자한도액 통지서

경유 : 대출취급기관
 수신 : (농협·수협산림조합)
 발신 : 사업시행기관

중양회	접수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확인	〇〇시·군·자치구〇〇과	〇〇〇	〇〇
	20	〇〇조합 〇〇부서	.	.

사업명	주 소	성 명	연 간 예산액 (천원)	사업 자금의 과용자 한도 액 배정 일	사업 자금의 과용자 한도 액 배 분 일	시· 도의 융자 한도 액 재 배 분 일	대출예 정금 액		대출 불가능한 융자한도액		
							확 정 일	확 정 금 액 (천원)	금 액 (천원)	반 납 기 한	사 유
〇〇〇사 업		김삿갓	10,000,000	'98. 5.20	'98. 5.21	'98. 5.22	'98. 5.23	5,000,000	5,000,000	'98. 7.3.	사업포기
〇〇〇사 업		김개동	500,000	'98. 7.21	'98. 7.22	'98. 7.23	'98. 7.24	100,000	80,000	'98. 10. 5.	폐업
합 계											

(주)·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사업시행기관은 대출취급기관의 접수 여부를, 대출취급기관은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시도의 융자한도액 재배분일” 난은 시·군·자치구가 사업시행기관인 경우만 기재

[별지 제15호서식 : 제70조제5항 관련]

[사업자금명] 용자한도액 대출 마감 통지서

주소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번지	통 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p>2000. 00. 00. 귀하에게 대출하기로 확정 한 바 있는 00 000사업의 용자한도액 00,000,000천원중 00,000,0 00천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어 귀하에게 대출하지 아니함을 통 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 . .</p> <p style="text-align: center;">(사 업 시 행 기 관 의 장) (직인)</p>					

275-01611일
1997. 11. 7. 승인297mm×210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 제73조제1항 관련]

경 영 장 부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성명 또는 명 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일반현황(년 월말 현재)

경영규모	* 주요품목별 재배, 사육, 취급 물량 기재(예:사과3ha, 젓소200두)					
자금조달	연도	계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보조	자부담·기타
		천원				
	계					
부 동 산 보 유	토지계	논	밭	과수원	임야	대지·기타
	m ²					
	건물계	창고류	공장류	축사류	주택	기 타
기타주요 자산보유	* 경영목적의 주요보유자산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량 기재					

[별지 제17호서식 : 제73조제2항 관련]

경 영 일 지

월일	수 입			지 출			잔 액 (천원)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금액(천원)	
월 1일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계							

(주) 지원금액이 15백만원이상 3천만원(후계농업인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 경우는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 작성

[별지 제18호서식 : 제76조제4항 관련]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주소	
물건 ¹⁾	명칭 면적(m²)
말소 사유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 연월일

이 부동산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 시도지사)



[별지 제19호서식 : 제77조제1항 관련]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시설처분 승인신청서								
<input type="checkbox"/> 목적외 사용 <input type="checkbox"/> 양도 <input type="checkbox"/> 교환 <input type="checkbox"/> 대여 <input type="checkbox"/> 담보의 제공								
1. 신청자								
구분	법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개인 (법인대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2. 보조내역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보조	용자		보조	용자				
지원시설 현황		용도 또는 명칭		규격(단위)	사후관리기간			
토 지				m^2	yyyyymmdd~yyyyymmdd			
시 설				m^2	yyyyymmdd~yyyyymmdd			
설 비				식	yyyyymmdd~yyyyymmdd			
장 비				대	yyyyymmdd~yyyyymmdd			
3. 승인신청내용								
<i>(예시) 일시적 경영난 해소를 위한 원료구입 등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에 300백만원 근저당 설정 * 승인신청 목적 및 내용이 명확히 제시되도록 작성, 보조사업자가 대한 요청 시 관련 서류 제출 여부 포함</i>								
4. 지자체 검토의견								
시군구	<i>○ 보조사업자의 발전가능성(재무현황, 경영능력), 보조시설 관리·운영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의견 제시(승인 또는 반려)</i>							
5. 첨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보조사업 정산결과 ②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등록증(시설, 장비) 등 소유자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내역(당해 사업에 한함) 및 승인신청 대상 재산 상세현황(관련 사진대장 포함) ④ 시설물의 감정평가액(담보제공시 해당하며, 금융기관의 감정결과도 가능) ⑤ 승인에 따른 향후 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담보제공 승인시 대출금 활용계획 등 ⑥ 신청자의 신용평가서 또는 별지 제4호 신용조사서(담보제공시 해당) ⑦ 대한 이행계획서 또는 이행확약서(보조사업자의 대한요청시) 								

※ 자료작성시 참고사항

< 지원시설 현황 >

- 시설 : 공장, 창고, 축사, 퇴비사, 온실 등과 같은 건축물, 구조물 및 그에 따른 부속시설
- 설비 : 시설 내 고정·설치되어 있거나 인력으로 이동이 어려운 기계류(예: 숙성탱크, 발효탱크, 관정, 공조시설 등)
- 장비 : 자체동력 또는 바퀴 등이 달려있어 인력으로 이동이 가능한 기계류(예: 광역방제기, 트랙터, 트레일러, 트럭 등)

< 용도·명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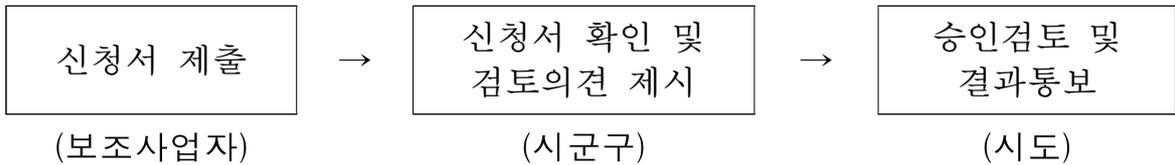
- 토지는 주요 용도(체험관 등)을 기재하고, 시설, 설비, 장비는 각각의 명칭 기재

< 규격(단위) >

- 시설 : 바닥면적(m²)을 기재하되, 필요시 층수, 연면적 등 병기
- 설비·장비 : 설비, 장비를 대표하는 단위(대, 식 등)를 기재
- 토지 : 면적(m²)으로 표시하되, 필요시 필지수 등 병기

※ 승인 및 사후관리 절차

- 승인절차



- * 필요 시 농식품부 및 양청의 사업담당과와 협의, 시도(또는 시군구)에서는 그 결과를 'e나라도움'을 통해 등록 및 주기적인 관리
- * **결과통보 절차** : 시도 → 시군구 → 신청인(보조사업자)
- * 사업추진체계상 지지체가 없고 개별 사업시행지침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농식품부 및 양청의 사업담당과에서 신청서 확인·승인검토·결과통보 등의 절차를 수행토록 함

- 사후관리 절차

- 보조사업자는 승인 결과에 따른 타 용도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최종 처리결과를 시군구에 보고
-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농식품부에 결과를 송부

< 처리결과보고(안) >

승인신청내용	승인내용	처리결과	비 고

[별지 제20호서식 : 제80조제3항 관련]

1. 부정수급기본정보

보조사업 개요			
사업명	00000사업	지원연도	'2015.~
사업비	▶ 총계 : 123,400,000천원(국고 34,567,000) ▪ 00년도 : 000천원(국고 0000) ▪ 00년도 : 000천원(국고 0000)		
보조사업자			
법인명	00000	법인등록번호	000000000
성명	홍길동	주민번호	00000000000
부정수급 관련 정보			
부정수급 확인 경위	* 01.23일자 000의 신고에 의해 적발 등 구체적으로 서술		
부정수급 내용	* 농업인 000이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하여 000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 등 * 이에 대해 보조사업 대표자에 대해 사실확인서 징구		
기타	*		

2. 제재검토기본정보

제재부가금 부과 관련 정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환수금액	480천원(국고 480천원)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환수금액 결정 내역	*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 추진 등
제재부가금 감경·면제사유	
보조사업 수행 배제 관련 정보	
보조사업 수행배제 조치에 대한 의견	*
보조사업 수행배제 예외 사유	
명단공표 관련 정보	
명단공표 조치에 대한 의견	*
명단공표 제외 사유	

2021년도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

등록번호 11-1390000-004591-10
ISBN 978-89-480-6692-0 93520

발행인 농촌진흥청장 허태웅

감수인 농촌지원국장 이천일

편집인 지도정책과장 권철희

황택상, 김정아, 김경자, 윤미순, 이선주, 윤성환, 김창수, 차지은,
전영삼, 정성욱, 이우일, 소남호, 김수경, 한종석, 정동완, 이병철,
노석원, 정명옥

발행처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지도정책과

전화 (063)238-0918

인쇄처 한국나눔복지연합회

